

2013年 東洋史學會 春季研究發表會

동아시아에서의 통치와 지역지배

- 일시: 2013년 5월 25일(09:30~18:00)
- 장소: 서울대학교 인문대 8동

주최 : 동양사학회

주관 : 서울대 동양사학과

후원 : 동북아역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3년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東洋史學會 2013年 春季研究發表會 日程

■ 전체 일정

참가자 등록: 09:30~10:00 (인문대 8동)

오 전 발 표: 10:00~12:00 (인문대 8동)

점 심 시 간: 12:00~14:00

오 후 발 표: 14:00~17:00 (인문대 8동)

우호 동양사학저작상 시상 및 종회: 17:10~17:40 (인문대 8동 301호)

中國古代史

장소: 8동 401호

오전사회: 심재훈(단국대)

오후사회: 임병덕(충북대)

- 송 진(서울대): 商周時期 境界 出入과 通過祭儀

토론: 박재복(경동대)

- 오준석(경북대): 里耶秦簡[壹]과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토론: 이성원(전남대)

- 김동오(서울대):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 『里耶秦簡』 ‘令史’를 중심으로 —

토론: 민후기(연세대)

- 전해란(숙명여대): 秦·漢初 郡에 대한 고찰

— 內史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토론: 김진우(고려대)

中國中世史

장소: 8동 402호

오전사회: 조성우(서울대) 오후사회: 김종섭(서울시립대)

- 홍승현(서강대): 後漢代 墓碑의 성행과 建安十年 禁碑令의 의미
토론: 소현숙(원광대)
- 戴衛紅(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魏晉南北朝時期官員諡法制度研究
토론: 김정식(성균관대)
- 채지혜(동국대): 唐 前期 北方 羈縻府州의 設置와 變化
토론: 이기천(서울대)
- 김한신(고려대): 唐末 · 五代시기 福建지역 閩정권의 宗教정책
토론: 김상범(한국외대)

宋遼金元史

장소: 8동 304호

오전사회: 이석현(연세대) 오후사회: 박지훈(경기대)

- 정일교(경기대): 남송시기 위조지폐 연구
토론: 나영남(한국외대)
- 조복현(경희대): 송대 최저생계비 연구
토론: 김영제(단국대)
- 조 원(한양대): 蒙元제국기 다루가치 任用과 轉任
토론: 고명수(덕성여대)
- 김성규(전북대): 宋 · 遼 · 金 및 高麗帝王生日考
토론: 육정임(경희대)

明清史

장소: 8동 403호

오전사회: 이준갑(인하대) 오후사회: 정지호(경희대)

- 서인범(동국대): 明 天啓年間の 陵工과 殿工 비용 조달
토론: 권인용(고려대)
- 김형열(동의대): 清末 龔自珍의 經學思想과 社會改革論
— 경전해석에 드러난 ‘史’觀을 중심으로 —
토론: 전경선(부산대)
- 이선애(고려대): 흥타이지 시기 對蒙정책과 ‘外藩’ 개념의 형성
토론: 윤영인(영산대)
- 송미령(전북대): 淸 중기 總理事務王大臣 체제와 정국운영
토론: 이영옥(성신여대)
- 이상훈(서울대): 19세기 전반 常關 稅收의 缺損과 物流 路線의 變化
— 淮安關과 滸墅關의 사례를 중심으로 —
토론: 조영현(고려대)

中國近現代史

장소: 8동 303호

오전사회: 정지호(경희대) 오후사회: 오병수(동북아역사재단)

- 권소연(이화여대): 『동아시아사』에서 중국근대사 내용구성방향
토론: 이병인(한국교원대)
- 문명기(국민대): 대만 · 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
— 경찰 부문의 비교를 통하여 —
토론: 배성준(동북아역사재단)
- 조세현(부경대):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淸關係
토론: 윤 욱(고려대)

- 석미자(고려대):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등장에 대한
일고찰

토론: 박경석(인천대)

- 최은진(국민대): 韓寒-方舟子 論爭에 나타난 현대 중국 담론 형성과 확산
네트워크

토론: 정문상(가천대)

日本史

장소: 8동 302호

오전사회: 송완범(고려대) 오후사회: 강태웅(광운대)

- 김은정(충남대): 고대일본의 庭園과 祥瑞

토론: 홍성화(건국대)

- 고은미(방송통신대): 鎌倉幕府의 對馬장악과 대高麗관계

토론: 김보한(단국대)

- 최자명(펜실베니아대): 전시일본 스포츠 정화운동으로 본 여가 속 중간계급
정체성의 형성과 변형

토론: 김종식(아주대)

- 정지희(동경대): ‘듣는 주체’의 창출과 전시 동원

— 전쟁기 (1931-45) 일본의 라디오 청취 지도 —

토론: 박순애(호남대)

目次

[중국고대사]

- 商周時期 境界 出入과 通過祭儀 송진 1
- 里耶秦簡[壹]과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오준석 15
-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김동오 35
- 秦·漢初 郡에 대한 고찰 전혜란 47

[중국중대사]

- 後漢代 墓碑의 성행과 建安十年 禁碑令의 의미 홍승현 65
- 魏晉南北朝時期 官員諡法制度研究 戴衛紅 83
- 唐 前期 北方 羈縻府州의 設置와 變化 채지혜 99
- 唐末·五代시기 福建지역 閩정권의 宗教정책 김한신 111

[송요금원사]

- 남송시기 위조지폐 연구 정일교 133
- 송대 최저생계비 연구 조복현 145
- 蒙元제국기 다루가치 任用과 轉任 조원 159
- 宋·遼·金 및 高麗帝王生日考 김성규 175

[명청사]

- 明 天啓年間の 陵工과 殿工 비용 조달 서인범 .. 195
- 清末 龔自珍의 經學思想과 社會改革論 김형열 .. 207
- 흥타이지 시기 對蒙정책과 ‘外藩’ 개념의 형성 이선애 .. 225
- 淸 중기 總理事務王大臣 체제와 정국운영 송미령 .. 247
- 19세기 전반 常關 稅收의 缺損과 物流 路線의 變化 이상훈 .. 263

[중국근현대사]

- 『동아시아사』에서 중국근대사 내용구성방향 권소연 .. 271
- 대만 · 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 문명기 .. 291
-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淸關係 조세현 .. 305
-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등장에 대한 일고찰 석미자 .. 321
- 韓寒-方舟子 論爭에 나타난 현대 중국 담론 형성과
확산 네트워크 최은진 .. 339

[일본사]

- 고대일본의 庭園과 祥瑞 김은정 .. 357
- 鎌倉幕府의 對馬장악과 대高麗관계 고은미 .. 371
- 전시일본 스포츠 정화운동으로 본 여가 속 중간계급 정체성의
형성과 변형 최자명 .. 383
- ‘듣는 주체’의 창출과 전시 동원 정지희 .. 399

商周時期 境界 出入과 通過祭儀

송 진(서울대)

目次

서론

I. 宗廟와 聖域의 境界

II. 境界 出入과 그 절차

III. 齋戒와 매개물을 통한 通過祭儀

결론

서론

中國 古代 국가 형성 과정에서 세력권을 구분하는 경계는 다양한 형태를 띠었고, 정치 세력의 판도에 따라 그 성격이 변하였다. 종래 경계 관련 연구는 주로 각 시대별 정치권력의 세력 범위를 확인하거나 영역 지배의 구체적 방법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영역 국가가 등장한 이후를 그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지리적 공간에 형성된 경계는 신석기시대부터 확인된다. 초기 취락 유지를 살펴보면 姜寨 遺址와 같이 그 外緣에 環壕를 파서 외부 세계와의 경계를 삼았다.

신석기시대 취락 주위의 경계는 기본적으로 외부 세계의 위협으로부터 자신들의 공동체를 방어하는 기능을 하였다. 다만 신석기시대에도 경계를 통과하는 門을 중시하였고 궁전의 門에 犧牲이나 무기를 묻고 惡鬼의 침입을 막는 의식을 행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경계 역시 단순한 방어의 기능을 넘어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이런 초기 사회의 경계는 이후 고대 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그 성격이 변하게 되지만, 지금까지 戰國時代 이전 시기 경계 관련 연구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국가 형성 과정에서 군주는 呪術과 祭儀를 근거로 지배하는 司祭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또한 관할지 전체를 배타적으로 지배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초기국가단계에서 사람들이 인식하였던 지리상의 경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甲骨文 중 商王이 大邑[商]으로 出入하는 날짜·방향·장소에 대한 길흉을 점쳤던 내용이나, 타지로 여행하기 전에 여정의 安寧을 기원했던 道祭 역시 자신이 거주하는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분하는 경계

인식이 존재하였음을 의미한다. 다만, 商周時期와 같이 정치 중심지가 일정치 않거나 지리상의 권역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없는 초기국가단계의 경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리상의 疆域을 추적하는 방법이 아닌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고는 商周時期 경계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경계를 둘러싼 사람의 왕래 문제에 주목하였다. 곧 商周時期 각 집단의 인적 교류에서 출입을 나누는 기준으로서 경계가 존재하였는지, 만약 경계가 존재하였다면 당시 경계를 넘나드는 왕래와 그 형식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I장에서 商周時期 國의 공간 구조를 정치적 중심지와 그 이외지역으로 나누어 정리하고, II에서 갑골문과 金文 중 지역 간 왕래 사례를 분석하여 당시 사회에서 경계의 존재 형태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경계 혹은 경계의식이 외부인과의 만남에 어떤 영향을 끼쳤으며, 그 성격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비록 자료상의 한계가 존재하지만 이러한 고찰은 영역 지배가 등장 이전 경계와 경계를 넘나드는 지역 간 교류의 성격을 밝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 宗廟와 聖域의 境界

商代 취락은 신석기 후기 취락형태와 같이 거대 城址 주변에 다양한 규모의 촌락이 분포하는 형태를 띠고 있었다. 河南省 偃師에서 발견된 商 初期 城址나 河南省 鄭州에서 발견된 中期 城址를 보면, 商의 정치적 중심지는 초기 단계부터 주변 취락에 비해 압도적으로 큰 城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商 후기 중심지인 安陽에서는 비록 대형 성벽 유지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洹水를 東北으로 끼고 약10m 정도 너비의 대형 壕溝로 둘러싸인 宗廟-宮殿 유지가 확인된다. 이 유지는 安陽 殷墟 지역으로 옮겨온 초기 단계의 중심지로 보인다.

갑골문에는 商의 중심지를 칭하는 ‘大邑’, ‘天邑商’, ‘商’이라는 용어가 보인다. 이는 商王室에서 자신들이 거하였던 구역을 지칭한 용어이다. 商에서는 商邑을 기준으로 주변 지역을 방위에 따라 四土 혹은 四方으로 인식하였다. 商王은 주변 지역 중심지와 연맹 혹은 복속관계를 맺고 일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그 중에는 商과 적대 관계의 方도 있었지만, 商王이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사람을 파견하는 등 商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많은 거점이 존재하였다. 갑골문에는 500개가 넘는 地名이 보이는데, 이는 商왕실에서 비교적 광범위한 지역의 집단과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갑골문에 보이는 商王은 수시로 이동하며 商과 동맹하거나 복속한 자들을 관리하였고, 장기간 商邑을 벗어나 있기도 하였다. 당시 商邑은 자원의 재배치 혹은 제도적 지배를 위한 중앙의

핵심 지역은 아니었지만, 商 왕실의 구성원들이 의례나 주요 활동을 행하는 중요한 거점 중 하나였다.

商邑에 위치한 왕실 종묘는 商 왕실의 정치적 핵심 공간으로서 神과 교통할 수 있는 神聖한 공간이었다. 이 때문에 신성한 공간인 종묘를 들어가는 문은 단순한 출입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偃師 二里頭에서 발견된 宗廟-宮殿 유지를 보면 사방이 壁으로 둘러싸였고 건물의 正南에는 大門이 있다. 商王은 때로 大庭의 門에 딸린 塾에서 畝라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혹은 正門에서 羌人을 犧牲으로 삼아 畝이라는 의례를 행하기 위해 점을 쳤다. 商邑의 정치적 핵심 공간인 宗廟-宮殿 건물의 大門에서 犧牲으로 사용하는 의례를 거행하였던 이유는 이 문이 바로 성스러운 宗廟-宮殿로 들어가는 통로이자 그곳에서 神을 맞이하였기 때문이었다. 곧 商邑의 중심지에 위치한 宗廟-宮殿은 神과 교통할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었고, 大門은 聖所와 俗世를 나누는 일종의 경계 지점이었다.

다음으로 西周의 초기 근거지가 어디였는지 분명치 않지만, 『史記』의 기록과 같이 古公亶夫가 등장한 시점에 周의 세력은 渭水 근처 岐山으로 옮겨왔던 것으로 보인다. 克商 이후 周의 중심지는 成周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주요 거점지에 晉·應·燕·衛國을 分封하고 魯와 같은 姬姓 제후국을 세워 西周의 영향력을 확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西周 初期 토지 賜與에 관한 기록이 분명하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봉건을 통해 형성된 각국의 관할 범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비록 동시기 문자기록인 金文이 남아있지만, 周王이나 作器者의 업적을 기념하는 내용이 많고 西周 초기 제후국의 관할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은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현재 渭水 유역에서 西周 王都이라 추정할 만한 城址가 확인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西周 金文 중에도 王都의 구조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으므로 당시 王都의 지리적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王都의 중심에는 왕실의 핵심 공간인 宗廟-宮殿이 위치하였고, 그 주위에 諸侯들의 采邑이 분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西周時代 정치적 핵심 공간인 宮은 商代와 마찬가지로 종묘와 궁전의 기능이 복합된 건물이었다. 西周 金文에 보이는 宮의 종류는 다양한데, 그 성격에 따라 ㉠ 周王이 거주하는 건물, ㉡ 조상의 위패를 모신 廟, ㉢ 기타 관명이나 인명으로 지칭되는 건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宮의 위치나 성격은 분명하지 않아 각 銘文의 내용에 따라 살펴보아야 하지만, 鎬에 위치하였던 太廟나 周原에 있었던 康宮·昭宮·穆宮·夷宮 등은 조상의 위패를 모신 廟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지금까지 陝西省 周原 유지에서 발견된 건축 基址는 주로 岐山縣의 鳳雛, 扶風縣의 召陳과 齊鎮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1976년 鳳雛에서 발견된 西周 초기 건축 유지는 그 성격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西周時期 宗廟-宮殿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발견된 基址의 구조를 보면, 正南 방향에 門이 있고 門의 左右에는 東·西塾이 있

다. 正門을 들어가면, 中庭과 前堂이 차례로 있고, 前堂 뒤에는 回廊을 사이에 두고 東·西庭이 있으며 건물의 맨 뒤에는 後室이 위치하였다. 이 건물은 후대 문헌에 보이는 三代時期 종묘의 구조와 유사하며 그 구조상 ‘正門-中庭-前堂-後庭-後室’로 이어지는 重層의 경계가 존재한다.

西周 제후국의 공간 역시 西周의 중심지와 마찬가지로 그 핵심 공간은 종묘와 제후의 거주 공간으로 구성되었다. 公室의 一族이 거주하였던 중심지에 위치한 종묘는 祖神과 씨족 공동체가 청동기와 神主와 같은 매개물을 통해 교통하는 종교적 공간이자 중요한 의례를 집행하는 정치적 중심지였다. 특히 周 왕실의 分族 혹은 그 의례적 질서에 동참하는 제후의 종묘는 王都에 있는 周 왕실의 종묘와 의례적인 의미에서 상호 연결되어 있었다. 天命은 周 왕실의 종묘를 통해 계승될 뿐 아니라 天命을 體現한 天子의 命을 받은 제후 역시 종묘 의례를 통해 그 命을 대대로 계승하였다. 요컨대 西周時代 王都나 제후국의 중심지는 종묘를 중심으로 형성되었고, 의례적 중심지와 정치적 중심지는 일치하였다.

한편 商周時期 王都와 같은 정치적 중심지 이외 지역은 대체적인 관할 범위가 있었을 뿐 일정한 경계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갑골문 중 ‘封’과 관련된 기록은 商代에도 田地를 일정하게 구획하고 관리하였음을 짐작케 하지만, 그 실상은 분명치 않다. 西周 초기 金文 중 ‘域’이라는 용어가 보이기는 하지만 그 의미는 중심지 이외 지역의 疆土를 의미할 뿐, 후대 문헌에서 국가를 의미하는 ‘國’의 용례는 보이지 않는다. 西周 후기 金文에 보이는 ‘我域’과 ‘四域’이라는 표현은 西周 후기 일정한 정치적 권역을 구분하는 개념이 차츰 등장하였음을 의미한다. 西周 후기 厲王 胡[鞫]가 제작한 鞫鐘의 銘文에서, 厲王은 자신이 文·武王을 본받아 周의 疆土를 성실히 다스렸으나, 南國[域]의 戠子[孳]가 周의 疆土[我土]를 침범하여 그들의 都를 정벌하니 그들과 南夷·東夷 26邦의 세력이 복속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 南國[域]은 ‘我域’인 西周와 구분되며 南夷·東夷와 같이 방향에 따라 구분한 남쪽의 ‘非周’세력을 지칭한다. 南國[域]의 戠子는 西周에 속한 ‘我域’을 침범하였는데, 周王 역시 戠子의 정치적 중심지인 都를 공격하였다. 西周의 ‘我域’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분명치 않지만, ‘四域’과 구분되는 ‘我域’은 지리상에 형성된 西周의 관할 범위를 뜻한다.

西周 제후국의 공간은 公室 一族이 장악한 핵심 공간과 여러 邑 및 하사받은 토지로 구성되었다. 西周 초기 제후국의 관할 범위는 분명치 않지만, 1954년 江蘇省 丹徒縣에서 발견된 宜侯矢簋 銘文은 西周時期 제후국을 세우는 과정과 그 구성 요소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宜侯矢簋 銘文의 내용을 보면, 周王은 宜侯를 冊封하면서 제사에 사용할 술·청동기 및 색깔이 다른 활과 화살을 하사하였고, 아울러 宜에 속한 땅과 사람에게 대한 관할권을 부여하였다. 특히 周王은 冊封 의식을 社에서 행하였다. 특정 장소

에 社를 세우고 社의 儀禮를 집행하는 행위는 그 지역의 지배를 확정짓는 儀式이었음을 상기하면, 周王이 직접 宜의 社에서 儀禮를 행한 것은 곧 宜에 대한 西周의 지배를 확정짓는 의식이었다. 그리고 周王이 宜侯를 冊封한 장소인 社는 西周가 宜國을 차지하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핵심 공간에 해당한다.

현재 西周 金文 중 社에 대한 다른 기록이 보이지 않아 社에 대한 더 이상의 분석은 어렵다. 다만, 王都와 諸侯國의 중심에 社를 만든 후 社의 확장된 형태로서 王都와 諸侯國의 경계를 표시한다는 『周禮』의 내용은 社가 관할권의 범위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周禮』에서 封人의 임무는 크게 社稷의 壇 및 사방의 담을 만드는 일과 각 통치 영역의 경계를 정하여 표시하는 일로 나뉜다. 특히 諸侯를 封할 때 먼저 社稷의 壇과 그 사방의 담을 만들었는데, 이는 社가 國의 핵심 공간이자 國의 경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周禮』의 기록을 西周時代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지만, 宜侯矢簋 銘文에 周王이 宜를 西周의 지배하에 편입시키면서 그 상징적인 행위로서 社의 의례를 장악하였고, 그 권위로써 矢을 宜侯로 임명하였다는 점에서 제후국의 관할권과 社의 의례는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아울러 社의 장악을 통해 종래 宜에 속했던 관할권이 모두 宜侯 矢에게 轉移되었으므로 西周 諸侯國의 관할 범위는 社의 神이 갖는 영향력의 범위와 연관 관계에 있었다.

II. 境界 出入과 그 절차

전술한 대로 商周時期 王都의 중심에는 宗廟와 宮이 위치하였고, 이 宗廟와 宮은 정치적 핵심 공간이었다. 특히 宗廟·宮의 위치와 기능은 중첩되거나 거의 혼연일치되었고 祭·政은 엄격하게 분리되지 않았다. 宗廟와 宮은 祖神과 씨족 공동체가 占卜과 제사를 통해 교통하는 공간이었고, 이런 聖所가 있는 王都는 神聖한 공간으로 인식되었다.

특정 공간을 신성한 공간으로 인식하였다면, 이런 공간인식은 분명 외부와의 교류와 왕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II장에서는 甲骨文과 金文에 보이는 사람의 왕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商周時期 境界 출입의 절차를 살펴보고자 한다.

1. 王都의 출입 의례

현재 殷墟에서 발견된 갑골문은 주로 왕의 행적이나 왕실에서 모셨던 神에 대한 제사 행위 혹은 왕실 주요 구성원들의 행적과 관련된 卜辭로서, 그 중에서도 商王에 대한 기록이 많다. 따라서 왕래 관련 내용 역시 왕과 관련된 卜辭와 기타 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갑골문 중 외부에서 商邑으로 들어오는 문제와 관련된 卜辭를 보면, 商邑으로 들어오는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에 대해 그吉凶 여부를 점쳤다. 왕이 出行하였다가 商邑으로 귀환할 때는 商邑으로의 귀환 자체를 점치거나 미래의 특정 일자 혹은 當月·當日의 귀환과 같이 귀환 시기를 자세하게 점쳤다. 그런데 商王이 商邑으로 돌아오는 문제가 占卜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왜냐하면 商邑의 최고 통치자 역시 자신의 정치적 중심지로 들어갈 때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甲骨에 왕의 귀환 시기에 관한 여러 占卜 기록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왕은 商邑으로 귀환하는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음을 알 수 있다. 왕이 商邑으로 들어올 때 占卜을 통해吉凶 여부를 확인한 이유는 왕의 귀환과 함께 외부로부터 해로운 요소가 商邑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당시 각 방향과 지역에는 다른 성격을 지닌 神이 거하며 인간 사회에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이 존재하였고, 商王 역시 占卜을 통해 그 영향력에 대응해야 했다.

商王 이외 다른 사람들이 商邑으로 들어오는 문제 역시 占을 쳐서 그吉凶을 결정하였다. 冢方과 같이 商과 적대 관계에 있던 여러 方의 도래 여부를 점쳤던 일은 商邑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의 공격을 미리 파악하여 祖神에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었겠지만, 人名 혹은 族名으로 보이는 缶·廛가 왕을 알현하러 올지 여부를 미리 점치기도 하였다. 卜辭 중 왕이 執을 맞이하는 일의 可否나 商에 속한 사람이 商邑으로 들어오는 문제를 점쳤던 기록을 보면 商邑의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이들에 대해 먼저吉凶 여부를 점을 쳐서 可否를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甲骨에 남아있는 刻辭 중에는 甲骨을 공납한 다양한 地名이 보이는데, 이는 다양한 지역에서 商邑으로 갑골을 공납하였음을 의미한다. 甲骨을 공납하러 오는 자들을 어떻게 맞이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왕실 제사에 희생 제물로 사용하였던 羌人을 들여올 때는 商王이 직접 특정 장소에서 맞아 들였다. 예컨대 王이 직접 滴水로 나가 羌人을 맞이한다던가, 宗廟의 정문인 南門에서 羌人을 맞이하는 문제를 점을 쳐서 결정하였는데 이 역시 외부에서 오는 羌人을 商의 중심지로 들일 때 발생할 수 있는 禍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王이 羌人을 맞이하는 장소이다. 宗廟의 南門은 商의 정치적 핵심 공간인 聖所로 들어가는 경계 지점인데, 왕은 때로 종묘가 아닌 滴水로 나가서 羌人을 맞이하였던 것 같다. 만약 滴水를 오늘날 衛河 근처로 비정할 수 있다면, 滴水는 바로 祖神의 보호를 받는 商邑의 외곽 지역으로서 聖域인 商邑으로 들어가는 경계 지점에 해당한다. 商王을 비롯하여 商邑에 들어오는 이들의 왕래에 대해 占卜을 통해 可否를 결정하였던 근본 원인이 祖神의 加護를 받을 수 있는 商邑과 그렇지 않은 외부 세계를 구분하였던 당시 인식에 있었다면, 商王이 羌人을 맞이하였던 滴水는 商邑과 외부 세계를 구

분하는 일종의 경계 지점이었다. 商王이 제사 제물인 羌人을 맞이하거나 羌人 犧牲을 써서 神을 맞이하였던 장소는 商王室의 핵심 공간인 聖所의 南門이었고, 商邑이라는 聖域의 외곽에 있는 滴水 또한 犧牲으로 쓸 羌人을 맞이하는 일종의 경계 지점이라면, 당시 商邑의 경계는 宗廟라는 聖所를 중심으로 그 영향력이 미친다고 인식되었던 商邑 주변 지역까지 확대된 일종의 동심원 형태로 상정해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공간인식은 祖神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당시 경계는 지리상에 형성된 실제적인 경계라기보다 종교적 성격을 띤 관념상의 경계에 해당하였다.

요컨대 갑골문에 보이는 왕래 관련 기록을 보면, 외부에서 商邑을 들어올 때는 商王은 물론 왕을 알현하러 오는 외부인이나 희생 제물로 사용된 포로까지 모두 占卜을 통해 그吉凶 여부를 판별하였다. 특히 商王이 귀환할 때 商邑으로 들어오는 일 자체부터 귀환 시기 및 출발지까지 神의 뜻을 물어 결정했다는 사실은, 商邑을 관장하는 최고 권위가 商王에게 있지 않고吉凶을 결정지을 수 있는 神에게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 때문에 商의 祖神이 領護하는 商邑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占卜을 통해 神의 허락을 받아야 했다.

다음으로 西周時代 왕실을 방문하는 사례와 그 절차를 살펴보자. 우선 왕실을 방문하는 사례로는 西周에 속한 제후가 朝覲하는 경우와 策命이나 賞賜를 받기위해 周王을 알현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西周 金文에서 策命 및 왕의 謁見은 대개 鎬에 위치한 太廟나 周原에 있었던 康宮·昭宮·穆宮·夷宮 등에서 진행되었고, 이들은 모두 祖先의 위패를 모신 廟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太廟나 宮廟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는 周王이 先王에게 행하는 의례 행위가 수반되었기 때문에, 太廟나 宮廟에서 행해지는 周王과의 만남이나 의식은 周王을 대면하는 것뿐 아니라 해당 공간에 모신 周 왕실의 祖神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이기도 했다.

周王을 謁見하거나 策命을 받을 때 그 대상자는 혼자 들어가지 않고 右者의 매개 하에 入宮하였다. 周王을 謁見하는 의식에 右者와 같은 매개자가 필요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주왕과 외부인 혹은 일반 臣僚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특히 庭으로 들어간 다음 대상자와 右者는 서로 다른 층계를 이용하여 前堂으로 나아갔고, 太室에서 南面한 周王과 대상자는 일정한 거리가 유지되었다. 祖靈을 모신 太廟·宮廟에서 진행되는 의식에서 周王은 祖靈의 권위를 대변하는 존재였기에 周王과의 대면은 곧 先王의 靈前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의미했다. 이런 점에서 商代 神과의 만남에서 貞人이 매개자였던 것처럼, 西周時期 右者 역시 祖靈을 대면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매개자에 해당하였다.

이와 같이 西周的 王都를 방문하는 주요 이유였던 謁見·策命·祭祀 등의 의식은 대개 王都의 핵심 공간인 祖神을 모신 太廟·宮廟에서 진행되었다. 그리고 王都의 핵심 공간을 출입하기 위해서는 右者의 매개를 받아 入宮하는 등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했다.

당시 祖神을 모신 공간이 일종의 聖所로 여겨졌고, 공식적인 의례에서 周王은 西周의 先王을 대변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의식을 거행했던 건물의 門은 외부 세계와 聖所를 연결하는 통로이자 상이한 두 공간을 나누는 일종의 경계에 해당하였다.

그렇다면 여러 의례가 진행되었던 宗廟·宮廟가 아닌 王都를 출입할 때도 일정한 의례를 행하였을까? 현재 확인된 西周 金文에는 王都의 출입에 관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詩經』 『韓奕篇』에 策命을 받은 韓侯가 王都를 떠나는 장면을 묘사한 구절은 王都가 갖는 공간적 특징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韓奕篇』은 西周 金文의 策命 관련 기록과 그 형식이 유사할 뿐 아니라, 金文에서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보인다는 점에서 西周 後期 상황을 반영한 詩로 볼 수 있다. 『韓奕篇』은 모두 6章으로 구성되었는데, 그 중 第3章은 韓侯가 周王으로부터 下賜를 받은 후 자신의 본거지로 돌아가기 전에 屠에 머물며 顯父가 베푼 송별연을 즐기는 내용이다. 특히 첫 번째 구절에서 韓侯는 어디에선가 ‘出’한 후에 道祭를 지냈다. 『儀禮』 『聘禮』의 절차 중에도 道祭가 보이는데, 鄭玄은 道祭가 聘享의 절차를 모두 끝내고 돌아갈 때 國門을 나와 출발하기 전 道神에 제사지내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만약 『韓奕篇』의 屠를 王都 밖 郊 지역으로 볼 수 있다면 韓侯가 道祭를 지낸 곳은 鄭玄의 설명처럼 王都의 門 밖으로 볼 수 있겠다.

현재 西周時代 王都의 門이 어떤 형태로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金文 중 王都 외곽의 광범위한 지역을 칭하는 용어로서 ‘還’이라는 표현이 보인다. 『韓奕篇』에서 韓侯는 西周 王室의 핵심 공간인 宗廟 혹은 특정 宮에서 策命을 받은 후 王都를 벗어나 還으로 나왔을 것이고, 바로 이 때 道祭를 지내 귀환 길의 안전을 기원했을 것이다. 西周時代 王都를 방문하고 떠날 때 韓侯와 같이 王都의 경계 지점에서 道祭와 같은 특정 의례를 행하였다면, 당시 宗廟나 宮廟와 같은 핵심 공간 외에 王都와 같은 비교적 넓은 권역에 대한 경계인식 역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단, 현재 王都의 구체적인 공간 구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王都에 대한 경계인식 여부와 그 경계를 출입할 때의 의례 절차는 이를 뒷받침할 다른 증거가 추가되어야 한다. 일단 이 문제는 유보하기로 하고, 王都의 방문이 아닌 제후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2. 王都 이외 지역의 출입 의례

商王은 자신의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여러 지역을 시찰[省]하거나, 무력정벌을 위해 직접 出征하였다. 商王이 商邑을 벗어나 出行할 때는 해당 사안의 길흉을 묻는 占卜을 행하였다. 卜辭 중 王이 比西 지역을 시찰하기 위해 比西 지역으로의 出行을 점치거나, 出征이나 田獵을 위한 出行 및 제사를 지내기 위해 黃河로 나가는 일에 대한 기록 등은 모

두 그 예이다. 王이 商邑을 나가는 일 역시 商邑을 들어올 때와 마찬가지로 나가는 일 자체에 대한 可否로부터 시작하여 출행하는 날짜와 하루 중의 시점 및 出行하는 장소까지 그 吉凶 여부를 占卜을 통해 자세하게 확인하였다.

商王이 商邑을 벗어나는 문제 자체가 出行하는 장소에 대해 점을 쳐서 神의 뜻을 물었던 이유는 商邑을 벗어난 지역에서 神의 加護를 얻을 수 있는지, 出行할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神들로부터 재앙을 받게 될지 여부를 확인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마치 祖神이 領護하는 商邑을 들어올 때 그 可否를 허락받아야 했던 것처럼 다른 神이 관장하는 지역으로 떠날 때도 祖神의 보호나 해당 지역의 神의 허락 여부를 확인해야 했다. 즉, 각 공간이나 지역에는 각기 다른 神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곳으로의 出行은 商人을 보호하는 祖神이나 여러 神의 허락이 필요하였다. 商王이 黃河나 岳·沔·耶·多亞 등지로 들어가는 일, 나아가 商王 이외에 使者를 다른 지역으로 파견하는 문제 등 당시 商邑 이외 지역을 방문하는 일에 대해 모두 占卜을 통해 그 可否를 결정하였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공간인식에 있었다.

한편 西周時代 王都에서 기타 지역으로의 왕래는 그 주체에 따라 왕의 出行과 그 이외 사람의 왕래로 나눌 수 있다. 周王은 厲王의 남방 遠征과 같이 出征이나 의례를 행하기 위한 出行, 제후국의 視察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현재 西周 金文 중 王都 이외 지역에서 周王의 활동을 전하는 기록은 일부 단편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西周 金文에 보이는 왕래 사례는 대부분 周王의 명령을 받은 使者들에 대한 내용이다. 예컨대 克鐘의 銘文을 보면 孝王으로 추정되는 周王은 宗周의 康烈宮에서 士인 晉을 시켜 克을 불러오게 한 후 克에게 涇水를 따라 京師 지역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使行에 필요한 田車(甸車)와 馬乘을 克에게 하사하였으며, 克은 왕의 명령에 어긋나지 않도록 행한 후 그 일을 기념하는 鐘을 만들었다. 克이 使行으로 갔던 지역이 周 王室에 속한 곳이었는지 분명치 않지만, 周王은 제후국에 下命·下賜할 때 使者를 파견하여 周王을 대행하게 하였다.

周王이 파견한 使者는 王都 이외 지역들을 이동하며 주왕의 명령을 수행하였고, 使者를 맞이하는 곳에서는 周王에 대한 의례로 使者를 맞이하였다. 2009년 5월 山西省 翼城 大河口 西周 墓地에서 발견된 尙盂 銘文은 周王이 보낸 使者를 맞이하는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好例이다. 尙盂 銘文의 내용을 보면, 周王은 霸國의 伯尙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伯考를 霸國으로 보냈다. 周王의 명령을 전하는 伯考에 대해 霸伯 尙은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는 예를 행하였는데, 이는 使者에게 周王에 대한 의례를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使者의 공식 임무가 완료된 후 霸伯 尙은 使者를 술로써 접대하였고, 이에 伯考는 虎皮와 璋을 선물로 주었다. 다음날 霸伯 尙은 周王에 보답하는 말과 玉器를 使者를 통해 전

달하는데, 이 때 역시 霸伯 尙은 周王에 대한 예로 使者를 대했을 것이다. 임무를 마친 使者가 돌아가려 하자, 다시 술과 음식, 璋과 馬·車로써 접대하고 賓을 전송하였다. 霸伯 尙은 여러 차례에 걸쳐 賓을 접대하였는데, 이런 절차는 『儀禮』 『聘禮』의 절차와도 유사하다.

특히 두 사람이 의례를 행하는 공간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霸伯 尙이 伯考를 맞이하여 주왕의 下賜를 받았던 장소나 稽首의 예를 마친 후 술로써 伯考를 饗하였던 곳은 모두 霸國의 핵심 공간이자 先祖의 위패를 모신 종묘로 보인다. 西周時代 왕의 使者를 饗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제작된 靑銅 器物은 모두 종묘에 보관하였다가 제사에 사용하는 물건이었다. 周王의 使者인 伯考는 첫째 날 霸國에 도착하여 그 宗廟에서 周王의 命을 전하였고, 그 다음 날 떠나기 전에 霸伯 尙으로부터 周王에게 전할 말과 璋을 받았는데 이 의식 역시 霸國의 宗廟에서 祖先의 靈前 앞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賓客으로서 제후국을 방문할 경우 기본 의례는 모두 宗廟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接賓 절차는 기본적으로 祖先에 대한 종교적 의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伯考는 돌아가기 전 절차에 따라 霸國의 送別宴을 받았고 돌아가기 위해 정치적 핵심 공간을 벗어나 郊에 이르렀는데, 霸伯 尙은 郊까지 전송하며 각 단계마다 의례를 행하였다. 郊는 霸國의 외곽 지역으로서 霸伯 尙이 使者를 전송하는 의례를 행하였던 마지막 지점이자, 사실상 霸國의 경계로 인식되었던 지역이다. 요컨대 諸侯國을 방문하는 절차는 기본적으로 宗廟를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接賓 절차 역시 祖靈에 대한 祭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결국 王都의 宗廟와 의례적으로 연결된 제후국의 宗廟 역시 제후국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출입해야 했던 정치적 핵심 공간이자 聖所에 해당하였다.

Ⅲ. 齋戒와 매개물을 통한 通過祭儀

앞서 살펴본 대로 商周時期 의례가 행해지는 종교적 공간과 정치적 공간은 구분되지 않았고, 宗廟·宮廟가 위치한 정치적 중심지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가 필요하였다. 商周時期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의 이동 절차에서 두 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主賓에 대한 饗禮와 예물의 증여이다.

1. 接賓과 齋戒 儀式

갑골문이나 金文에 보이는 ‘饗’字는 청동기인 殷[潔]를 사이에 두고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는 형태로서, 기본적으로 청동기를 사용하여 祖神에게 올린 음식이나 술을 함께 먹거나 마시는 행위를 의미한다. 갑골문에 보이는 ‘饗’은 대개 大庭[廳·召廳], 宗廟 혹은

점을 쳐서 특정 장소에서 행하였는데, 주로 祖神이나 여러 神에 대한 의례이지만 때로 邑子나 史와 같이 외부에서 온 사람을 대상으로 삼기도 하였다.

특히 邑子를 불러 酒를 饗한다는[饗酒] 표현에서 보듯이 饗을 할 때는 술을 사용하였다. 宰甫卣 銘文을 보면 商王은 豆 지역으로 狩獵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禩라는 지역에서 饗을 행하였다. 商王은 出行·耕藉·田獵 및 조상에 대한 제사를 행하기 전에 ‘藿’이라는 의식을 행하였는데, 이는 鬯을 마심으로써[禩] 修祓하는 절차였다. 왕이 商邑을 벗어나 출행하였다가 귀환할 때 그 시기와 장소, 귀환 여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점을 쳤던 점을 고려하면, 禩에서 행한 饗은 왕이 商邑을 들어가기 위해 醴酒나 鬯으로 자신을 정화하는 일종의 齋戒 의식으로 볼 수 있다. 西周 청동기인 效尊의 銘文에서 公東宮이 醴酒를 바쳐 왕의 齋戒를 도왔던 것처럼, 宰甫卣 銘文에서 宰甫 역시 왕에게 酒를 바쳐 饗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商邑으로 귀환하던 왕이 商邑 밖에서 饗을 하였던 것은 聖域이었던 商邑을 들어가기 위해 일종의 정화의식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갑골문이나 金文에 보이는 ‘同’字는 ‘凡’ 과 ‘口’ 字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 幃帳 아래 사람들이 모여 會합하는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凡을 祓除하는 酒를 담은 盤으로 보아 ‘同’자가 酒로써 祓除하고 합일하는 會合 의례를 의미한다고 보기도 한다. 외부에서 온 대상을 酒로써 饗하는 의식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不淨한 요소를 祓除하고 상호 합일하는 절차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接賓 절차 중 술로써 祓除하는 饗은 聖所를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通過祭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한편 西周時代 청동기는 대개 神·人과의 교류와 연합에 필요한 술과 음식을 담은 용기로서 의례상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銘文의 맨 마지막의 獻辭에는 해당 청동기의 용도가 간단히 명시되어 있는데, 일부 청동기는 宗廟를 방문하는 賓을 饗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되었다. 西周 金文에 보이는 饗禮의 대상은 여러 朋友를 비롯하여 同僚 및 왕이 파견한 使者 역시 포함되었다.

당시 饗禮를 행할 때는 效尊·三年癘 壺 銘文에서 보듯이 醴酒 혹은 鬯을 사용하였고, 이러한 饗禮는 술을 통해 修祓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小盂鼎 명문에서 周王은 邦賓을 맞이하며 술을 써서 修祓하는 禩禮를 행하였는데, 그 대상은 전리품을 바치는 의례에 참여하는 盂·明伯 및 여러 大臣·邦賓·君들이었다. 이렇게 종묘에 들어가 의례를 행하기 전에 鬯酒를 마시는 절차는 일종의 齋戒 儀式에 해당하였다. 鄂侯馭方鼎 銘文에서도, 주왕이 南征에서 돌아와 冢 지역에 머물 때 鄂侯馭方은 알현하여 醴酒를 바쳤고 이에 주왕은 그에게 禩禮를 베풀었다. 주목할 점은 周王이 南征을 마치고 王都로 귀환하기 전에 鄂侯가 祓除 의식에 사용하는 醴酒를 바쳤다는 것이다. 주왕이 禩禮를 행하여

자신과 鄂侯 모두를 修祓한 행위는 한편으로 聖域으로 인식되었던 王都를 들어가기 위한 정화의식이기도 했다.

西周時代 器物 중 賓客을 饗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청동기는 모두 接賓 의례와 관련이 있다. 특히 서주시대 饗禮에서는 祭酒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祭酒의 鄉飲을 통해 邪惡을 제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西周時代 接賓 의례가 종묘에 모신 祖靈 앞에서 진행되었던 점을 상기하면, 小盂鼎에서 주왕이 종묘에 들어가기 전에 邦賓들에게 裸禮를 행하였던 것처럼 외부에서 온 賓客 역시 宗廟를 출입하기 위한 의례가 필요하였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祖神과의 교통을 매개하는 청동기에 정화의 기능을 하는 술을 담아 賓客과 함께 마시는 饗禮는, 외부 세계에서 온 부정적인 요소를 정화하여 자신의 神·人 공동체로 맞아들이기 위한 의례 절차로 이해할 수 있다. 즉, 王都나 諸侯國을 방문할 때 제일 먼저 종묘에서 饗禮를 행하였다면, 饗禮는 경계를 넘나드는 왕래에서 聖所 혹은 聖域을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通過祭儀였던 것이다.

2. 예물의 교환과 神·人的 매개

西周時代 接賓 의례의 특징 중 하나는 主人과 賓客이 서로 예물을 贈與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尙盂 銘文에서 周王이 보낸 伯考와 霸伯 尙은 서로 옥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예물을 주고받았다. 특히 霸伯 尙은 盂를 만들면서 伯考를 賓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그를 主賓으로 맞이하여 그 禮로 대하였음을 뜻한다. 그렇다면 主人과 主賓은 왜 예물을 증여하였으며,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西周 金文에 보이는 ‘賓’字는 때로 ‘賓客’, ‘邦賓’이라 하여 周王으로부터 ‘賓’으로 대우를 받는 자를 지칭하기도 하였지만, 주로 외부에서 온 賓客이자 그 賓客에게 예물을 주어 예우하는 接賓 행위를 의미하였다. 이는 賓을 賓할 때 예물이 필요했다는 것을 뜻한다. 西周時代 接賓할 때 예물을 증여한 이유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賓’의 본래 의미를 검토해야 한다.

갑골문 중 ‘賓’의 字形은 廟室의 지붕을 나타내는 ‘宀’과 頭部가 강조된 사람 혹은 동물을 상형한 字素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비록 ‘賓’字의 형태와 용례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廟에서 神을 맞이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령 卜辭 중 ‘王賓’이라는 표현에서 ‘賓’은 商王이 제사 장소에서 제사 대상인 神靈이나 祖靈을 맞이하는 행위를 말한다. ‘王賓’이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賓’은 商王이 祖靈이나 여러 神에게 제물을 바쳐 賓으로 맞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商王은 이런 제사를 통해 神과 교통하였다.

갑골문 중 ‘賓’이 神을 맞이하여 제물을 바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西周時代 接賓 의례에서 ‘賓(賓)’ 역시 祭儀와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다. 作冊鬲卣와 公賓鼎의 銘文

을 보면 主人인 夷伯·箕伯은 鬻과 布에게 각각 예물을 주며 賓으로서 맞이하였다. 使者였던 鬻이나 布는 王姜과 叔氏에게 命令을 받았지만, 사실 이들 使者는 王姜과 叔氏가 속한 宗廟에서 神의 명령을 받아 그 신적 권위를 대행하는 자들이었다. 특히 周王은 天命을 膺受한 ‘余一人’으로서, 西周王朝와 왕실을 구성하는 권위를 收斂하여 體現한 권위의 源泉이었기 때문에 주왕이 파견한 使者는 바로 天命을 膺受한 天子의 권위를 대행하는 자였다. 이런 점에서 中묘에서 祖靈의 명령을 받아 그 권위를 대행하는 使者를 賓으로 맞이하는 행위는 곧 使者를 파견한 祖靈의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마치 商代 上帝와의 교통을 매개하는 祖神에게 祭物을 바쳐 賓으로 예우하였던 것처럼, 西周時代 王·王后가 파견한 使者에게 예물을 贈與하며 接賓한 이유는 바로 使者가 天子와의 교통을 가능케 하는 매개자였기 때문이었다. 이를테면 尚孟 銘文에서 周王의 使者인 伯考는 霸國과 周 왕실을 중개한 매개자였고, 이에 霸伯 尙은 使者인 伯考에게도 여러 예물을 주며 接賓하였다.

요컨대 商周時期 ‘賓[賓]’은 서로 다른 집단이나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자에게 예물을 주며 賓으로서 예우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使者와 같이 자신의 中묘를 방문한 외부인을 主賓으로 삼아 예물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主賓이 대행하는 신적 권위에 대한 의례이자, 그가 매개하는 上급 권위와 교통하기 위한 절차에 해당하였다. 西周時期 周王의 使者에게 玉器나 帛 등의 禮物를 주며 接賓하였던 까닭은 使者가 天子를 대신하여 자신의 中묘를 방문하였고 또한 그가 周 왕실과의 관계를 중개하는 매개자였기 때문이었다.

결론

商周時期 정치적 중심지는 특정 지역에 정착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商周時期 특정 지역을 자신들의 중심지로 삼아 중요시하는 인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갑골문에 王이나 王室에 속한 사람이 商邑을 出入할 때 時期·장소 등 出入에 관한 세부 사항을 神의 뜻에 따라 결정하였던 이유는 祖神의 보호가 있는 내부 공간을 벗어날 때 생기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외부에서 不淨한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갑골문에 반영된 商王과 商王室에 속한 자들은 出征·田獵 및 視察 등의 이유로 商邑을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며 활동하였고, 刻辭에서 보듯이 주변 지역에서는 甲骨를 비롯한 주요 물자를 商邑에 공납하였다. 다만, 商 왕실에서 賓으로서 접대하였던 대상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갑골문에 보이는 接賓 의례는 대개 神에 대한 제사 의례에 해당하였다. 갑골문의 성격상 대부분 商王室의 주요 세력에 대한 기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당시 商 왕실을 정기적 방문하였던 賓客은 매우 드물었던 것으로 보인다.

西周時代 金文에 보이는 사람의 왕래는 주로 王都와 제후국 간의 왕래이고, 각각 일정한 절차에 따라 賓客을 맞이하였다. 제후들이 王都를 방문하는 경우로는 朝覲·下賜·冊命儀式을 위한 謁見 또는 祭祀 의례에 참여하는 일이 있었다. 특히 제후가 冊命을 받기 위해 周王을 알현할 때는 右者의 매개 하에 太室이나 정해진 宮에 들어갈 수 있었고, 제사에 참여할 때는 醴酒·鬯을 사용하여 裸禮를 행한 후에 宮으로 들어갔다. 周王 역시 王都를 벗어나 여러 지역으로 이동하였지만, 王都에서 제후국으로 이동하였던 이들은 대개 周王이 파견한 使者였다. 西周時代 周王의 使者를 饗하기 위해 종묘에서 사용하는 청동기를 별도로 제작하였던 것처럼 周王의 使者는 제후국의 주요 賓客이었다. 金文에 보이는 饗의 대상은 商代 주로 祖神에 한정되었으나, 西周 초기 祖神 이외 一族인 朋友나 왕의 使者도 추가되고 점차 친척이나 동료까지 그 범위가 확장되었다. 제후국에서 接賓하였던 장소는 祖靈을 모신 종묘였고, 接賓儀禮는 祖靈까지 포함한 씨족 공동체가 賓客을 맞이하는 절차에 해당하였다. 賓客에 대해 술을 사용한 饗禮를 행하거나 예물을 교환하는 행위 등은 사실 神에 대한 의례가 외부인에게 적용된 것이었고, 이는 賓客의 방문이 한편으로 賓客이 속한 공동체의 神 역시 동행한 것으로 여겨졌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神에 대한 의례가 적용된 賓禮는 사실상 賓客과 동행한 그들의 神에 대한 의례 역시 포함한 通過祭儀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다만, 商周時期 문자기록인 甲骨文과 金文의 성격상 현재 王室 一族 혹은 제후와 같은 핵심 정치 세력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당시 일반인들의 이동이나 정치적 중심지 이외 지역의 상황은 확인하기 어렵다. 단지 商代 주요 중심지의 정치적 위상이 변하면서 인구 이동이 진행되거나, 西周 諸侯의 冊封과 함께 대규모의 徙民이 수반되는 등의 정치권력에 의한 대규모 인구 이동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뿐이다. 아울러 西周 後期 종묘 의례가 一族 중심에서 다수의 청중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변하면서, 의례에 참여하는 賓客의 왕래 역시 이전과 달리 다소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周 왕실을 방문하는 賓客 역시 周 왕실에 속한 제후 이외에 다양한 집단에서 周王을 찾아와 알현하였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일정한 의례 절차가 존재하였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추후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里耶秦簡[壹]과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오 준 석(경북대)

目次

- I. 머리말
- II. 里耶秦簡 행정문서의 분류
- III.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 IV. 맺음말

I. 머리말

중국의 고대 帝國인 秦·漢시기는 전국적 범위에서 郡縣制가 시행됨으로써, 황제에 의한 통일적 국가 지배체제가 확립된 시기이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 지배체제의 성립을 가능하게 한 기본적인 요소로 문서행정의 체계가 기능하고 있었음은 그 당시부터 지적된 사실이다.¹⁾ 즉 황제를 중심으로 한 중앙 관료기구와 지방의 통치를 담당하는 郡·縣 행정라인이 문서를 매개로 한 정보전달 시스템 안에 묶여짐으로써, 일반 백성들이 거주하는 鄉里에 대한 황제 지배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문서를 통해 중국 고대 帝國의 통일적인 국가 지배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러한 체계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처음으로 정립해 활용한 秦帝國 시기의 문서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는 중국 고대 帝國의 전반적인 통치체제를 이해하는데 있어 관건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秦代의 문서행정체계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漢代 문서행정체계에 대한 연구의 일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일변하는 계기가 된 것이 바로 戰國時代 및 통일기 秦 遷陵縣의 행정문서를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里耶秦簡의 발굴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까지 그 전체 釋文이 발표되지 않았지만²⁾, 里耶秦簡의 자료를 활용한 秦代 문서행정체계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활발하

1) 『論衡校釋』(中華書局, 1990) 第13卷 別通第38, p.591. “蕭何入秦, 收拾文書, 漢所以能制九州者, 文書之力也. 以文書御天下, 天下之富, 孰與家人之財?”

2) 里耶秦簡의 釋文은 우선적으로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文物處·龍山縣文物管理所, 『湖南龍山里耶戰國-秦代古城一號井發掘簡報』, 『文物』, 2003-1; 湖南省文物考古研究

게 이루어지고 있다.³⁾

필자도 일전에 里耶秦簡의 행정문서를 몇 가지 형식으로 분류하고, 秦代 행정문서 기록의 몇 가지 특징을 언급한 논문을 이미 발표하였지만⁴⁾, 당시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秦代 문서행정체계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2012년 초에 전체의 약 1/5에 해당하는 里耶秦簡 釋文이 발표되었는데, 여기에 포함된 遷陵縣廷과 주변 행정기구 사이에 왕래된 많은 문서를 통해, 당시 중앙 관료기구의 명령이 문서에 의해 어떻게 전달되고 이 문서를 접수한 지방의 縣廷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어떠한 행정적 절차를 통해 이 문서를 처리했는가 하는 문서행정의 諸 과정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秦代 縣廷을 중심으로 한 기층 행정기구 사이의 문서전달 계통 및 문서처리 과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里耶秦簡 행정문서의 분류

1. 분류기준의 설정

秦代 縣廷을 중심으로 왕래된 문서의 처리과정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里耶秦簡 문서를 수·발신 기관 및 작성 형식에 따라 몇 가지 종류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 里耶秦簡 문서가 가진 독특한 격식을 감안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하였다. 藤田勝久의 경우 遷陵縣廷과 문서를 주고 받은 기관의 관계를 기준으로 郡에서 縣으로의 정보전달 문서, 縣의 하부기관에서 縣廷에 회답한 문서, 縣에서 인근 縣을 통해 郡으로 회답하는 문서의 3종류로 구분하고, 이와는 별도로 ⑨1~12簡의 경우 수신이나 발신기록이 없는 보존문서로 구분하였으며.⁵⁾ 최근에는 한 簡牘 안에 포함된 문서가 單件이

所·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文物處, 『湘西里耶秦代簡牘選釋』, 『中國歷史文物』, 2003-1;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里耶發掘報告』, 岳麓書社, 2007, pp.179-239에서 일부가 발표되었으며, 최근 출간된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 編著, 『里耶秦簡(壹)』(文物出版社, 2012)에서는 里耶古城 1號井 5層, 6層, 8層에서 발굴된 2,600枚 가량의 釋文이 발표되었다.

3) 대표적인 연구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王春芳·吳江松, 『從里耶簡看秦代文書和文書工作』, 『大學圖書情報學刊』, 2005-2; 藤田勝久, 『里耶秦簡의 文書形態와 情報傳達』,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人文學科編』No.21, 愛媛大學法文學部, 2006; 陳治國, 『從里耶秦簡看秦的公文制度』, 『中國歷史文物』2007-1; 陳偉, 『秦と漢初の文書傳達システム』, 『古代東アジアの情報傳達』(藤田勝久·松原弘宣 編), 汲古書院, 2008; 胡平生, 『里耶簡所見秦朝行政文書的製作與傳送』, 『簡帛研究2008』,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藤田勝久, 『里耶秦簡所見秦代郡縣的文書傳遞』, 武漢大學簡帛研究中心·北京大學出土文獻研究所 『中國簡帛學國際論壇2012秦簡牘研究論文集』, 2012; 畑野吉則, 『里耶秦簡の郵書記録と文書傳達』, 『資料學の方法を採る』12(愛媛大學『資料學』研究會), 2013; 呂靜, 陳根利, 『文書を以て天下を御す - 里耶秦簡から見た秦代の文書行政システム -』, 『資料學の方法を採る』12(愛媛大學『資料學』研究會), 2013.

4) 拙稿,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文書行政方式과 그 특징』, 『中國古中世史研究』21, 2009.

나, 多件이나에 따라 문서를 분류하는 연구도 등장하였다.⁶⁾ 이러한 분류 기준 자체는 나름대로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이런 기준 모두 里耶秦簡의 모든 문서를 일률적으로 분류하는 데 일정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⑧1510	正面	廿七年三月丙午朔己酉, 庫後 敢言之 : 兵當輸內史, 在貳春□□□□ 五石一鈞七斤, 度用船六丈以上者四艘(艘). 謁令司空遣吏、船徒取、 敢言之.
	背面	右 三月辛亥, 遷陵守丞敦狐告司空主, 以律令從事. /..... 昭行.
		左 三月己酉水下下九, 佐赳以來. / 鈞半.
⑩69	正面	廿六年五月辛巳朔庚子, 啓陵鄉□ 敢言之 : 都鄉守嘉言渚里□□ 劾等十七戶徙都鄉, 皆不移年籍. 令曰移言, 今問之劾等徙□ 書告都鄉, 曰啓陵鄉未有某(牒), 毋以智(知)劾等初產至今年數, □ □□□謁令, 都鄉 ⁷⁾ 具問劾等年數. 敢言之.
	背面	右 □遷陵守丞敦狐告都鄉主以律令從事. 建手
		左 甲辰水十一刻[刻]下者十刻, 不更成里午以來. 隼手

위에서 예로 든 두 건의 문서는 모두 문서의 正面부분과 背面 좌,우측 내용이 확실히 구분되는 전형적인 형식의 행정문서로서, 遷陵縣 하부기관에서 발송된 후 縣廷의 접수·처리를 거쳐 다른 하부 기관으로 하달됨으로써 문서의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고, 문서의 서술 형식 또한 거의 동일하다. 藤田勝久의 기준으로 이들 문서를 분류하면 ‘縣의 하부기관에서 縣廷에 회답한 문서’로 보아야 하지만, 이 두 문서 모두 縣廷에서 縣 하부기관으로의 발송기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분방식만으로 里耶秦簡의 모든 행정문서를 분류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문서를 縣廷과 문서 수·발신기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분류한다면, 1차적으로 ‘縣廷과 縣 하부기관 사이에 왕래된 문서’, 2차적으로는 ‘縣 하부기관에서 발송해 遷陵縣에서 수신한

5) 藤田勝久, 『里耶秦簡の文書形態と情報傳達』, 『愛媛大學法文學部論集 人文學科編』No.21, 愛媛大學法文學部, 2006, pp.65-70;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社會システム - 長江流域出土資料の研究』第5章 『里耶秦簡の文書形態と情報處理』, 汲古書院, 2009, pp.185-187.
6) 呂靜, 『秦代における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考察 - 里耶秦簡の性格をめぐって -』,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58, 2011, pp.261-262; 呂靜, 陳垠昶, 『文書を以て天下を御す - 里耶秦簡から見た秦代の文書行政システム -』, 『資料學の方法を探る』 12(愛媛大學 『資料學』研究會), 2013.
7) 여기의 “謁令, 都鄉”의 표점은 이 簡文이 발표된 『里耶發掘報告』의 표점을 따른 것이다. 위 ⑧1510簡과 ⑩69簡은 형식이 거의 같은 문서이므로, 이 표점 또한 “謁令都鄉”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문서'로, 3차적으로는 '수신문서 자체에 縣廷의 처리사항을 기록한 문서'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里耶秦簡에는 遷陵縣 수신문서 이외에 遷陵縣에서 발송한 문서도 포함되며, 縣廷과 縣 하부기관 사이의 왕래 문서 이외에도 遷陵縣과 洞庭郡 사이에 왕래된 문서 및 遷陵縣과 다른 縣 사이에 왕래된 문서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한편 里耶秦簡 문서를 '單件문서'와 '多件문서'로 구분하는 연구에서는, 위의 두 문서를 한 簡牘 안에 수신문서와 발송문서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多件문서'로 규정하고 있지만⁸⁾, 문서의 재전달과 같은 縣廷의 처리사항이 수신문서에 그대로 기록된다고 해서 이 문서가 곧 발송문서로 사용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多件문서'가 아니라 '單件문서'인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里耶秦簡 문서를 분류한다면 遷陵縣廷의 [발송문서 부분], 遷陵縣廷에서 접수한 문서인 [수신문서 I], 그리고 遷陵縣廷의 수신문서이면서 縣廷의 처리사항이 함께 기록된 [수신문서II]로 크게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⁹⁾ 그리고 이렇게 분류된 문서를 遷陵縣廷과 문서 수·발신기관 사이의 관계를 고려해 <郡과 縣 사이의 왕래 문서>, <縣과 縣 사이의 왕래 문서>, <縣廷과 縣 하부 기관 사이의 왕래 문서>로 세분하고, 수신문서의 형식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아래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里耶秦簡 행정문서 분류 기준

里耶秦簡	郡↔縣	발송문서 부분	遷陵縣→洞庭郡
		수신문서 I(단순 수신문서)	洞庭郡→遷陵縣
		수신문서 II(수신문+발신문 부분)	洞庭郡→遷陵縣→縣 하부기관
行政文書	縣↔縣	발송문서 부분	遷陵縣→他縣
		수신문서 I(단순 수신문서)	他縣→遷陵縣
		수신문서 II(수신문+발신문 부분)	他縣→遷陵縣→縣 하부기관
縣廷↔縣	縣廷↔縣	발송문서 부분	縣廷↔縣 하부기관
		수신문서 I(단순 수신문서)	縣 하부기관→縣廷
	하부기관	수신문서 II(수신문+발신문 부분)	縣 하부기관→縣廷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 <div style="display: inline-block; vertical-align: middle; margin-left: 5px;"> 他縣 縣 하부기관 </div> </div>

8) 呂靜, 『秦代における行政文書の管理に関する考察 - 里耶秦簡の性格をめぐって -』,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58, 2011, p.261.

9) 이러한 구분방식 자체는 필자의 전고에서 이미 언급한 바이지만(拙稿,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文書行政方式과 그 특징』,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p.115. <표1> 참조), 본고에서는 이러한 구분에 더해, 里耶秦簡 문서를 수·발신기관의 관계에 따라 세분하고, 이런 분류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秦代 縣廷의 문서처리 과정과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2. 발송문서 부분

<표 2> 遷陵縣→洞庭郡 발송문서

종류	簡號 ¹⁰⁾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발 송 문 서 부 분	⑧62	遷陵丞	(泰守府)	遷陵縣→洞庭郡
	⑧71	遷陵丞		遷陵縣→(洞庭郡)
	⑧154	遷陵守丞		遷陵縣→洞庭郡
	⑧183	遷陵[守]丞		遷陵縣→洞庭郡
	⑧197	遷陵守丞		遷陵縣→洞庭郡 / □
	⑧653	遷陵守丞	(守府)	遷陵縣→洞庭郡
	⑧664	遷陵守丞	(守府)	遷陵縣→洞庭郡
	⑧704	遷陵守丞	(守府)	遷陵縣→洞庭郡
	⑧768	遷陵守丞	(守府)	遷陵縣→洞庭郡
	⑧1449	遷陵守丞		遷陵縣→洞庭郡
	⑧1511	遷陵守丞		遷陵縣→洞庭郡
	⑧1516	遷陵守		遷陵縣→洞庭郡

遷陵縣에서 洞庭郡으로 발송된 문서의 부분은 <표2>에 보이는 것처럼 모두 12건이 있다. 이 중 일반적인 형식을 갖춘 문서는 3부분으로 나뉜다. 즉 먼저 발신일과 발신자, 그리고 문서의 주된 내용을 簡牘의 正面에 기록하고, 簡牘의 背面 좌측 하단에 “某手”의 형식으로 簡牘 正面 문서의 초록자를 기록하며, 마지막으로 簡牘의 背面 좌측 상단부터 문서의 발송일자 및 行書者 직책과 이름을 명기하는 순으로 작성되었다. 전체 12건의 발송문 부분 중 8건의 문서가 이러한 형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¹¹⁾ 또한 이러한 형식을 갖춘 발송문 부분 문서의 필체를 확인해 보면 簡牘의 正面에 기록된 문서 내용과 背面 좌측 하단에 기록된 문서 초록자의 필체가 동일한 반면, 背面 좌측 상단부터 중간 부분에 걸쳐 기록된 문서의 발송기록은 대부분 이와는 다른 필체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필체의 차이가 문서 초록자를 구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고 하더라도¹²⁾,

10) 『里耶秦簡牘校釋』(第1卷)에는 몇 개의 簡을 조합해 하나의 문서로 복원한 경우가 많은데, 본고 표의 簡號 표기는 해당 문서에 속하는 여러 簡 중 『里耶秦簡[壹]』의 편집 순서 상 가장 앞에 위치한 簡의 簡號만을 적은 것이다.

11) 이 8건의 문서를 제외한 ⑧183+290+530簡은 背面 좌측에 문서의 발송기록이 없는 簡이고, ⑧197簡, ⑧653簡, ⑧704+706簡은 원 발송문서와 함께 追書를 함께 기록한 것이다.

12)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里耶秦簡 문서를 분류할 때 필체의 차이를 강조하였지만, 사실 簡牘에 쓰여진 필체를 구분하는 것은 용이한 작업이 아니며, 이들 연구자들의 필체 구분 기준도 모두 다르다. 예를 들어 동일한 ⑨1~12簡 문서의 필체를 구분함에 있어서도, 胡平生 같은 경우는 이들 문서에 나오는 모든 필체가 동일인에 의한 서로 다른 필체라고 하여(胡平生, 『里耶簡所見秦朝行政文書的製作與傳送』, 『簡帛研究2008』,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pp.50-51. 참조), 필체가 다르다고 반드시 서로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한 반면, 林進忠은 이들 문

글자의 크기, 글자 사이의 간격, 글자가 기울어진 정도, 먹의 濃淡 등을 볼 때, 簡의 正面과 背面 좌측 부분이 동일한 시간과 상황에서 쓰여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背面 좌측에 기록된 문서 발송기록은 簡의 正面과는 다른 시기, 즉 문서가 실제 발송된 이후에 추가로 기록된 부분임을 알 수 있다.

<표 3> 遷陵縣→他縣 발송문서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발송문 부분	⑧158	遷陵守丞	西陽丞主, 令史	遷陵縣→西陽
	⑧75	遷陵	鄴丞	遷陵少內→遷陵縣→鄴縣

遷陵縣에서 他縣으로 발송된 문서 중 ⑧158簡이 앞에서 살펴본 전형적인 발송문 부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면, ⑧75+166+485簡은 상당히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는 이 문서가 추가 발송 문서[追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문서 형식과 필체를 보면 ⑧158簡의 경우 正面과 背面 기록이 분명히 구분되어 두 부분의 필체가 분명히 다를 수 있지만, ⑧75+166+485簡은 正面과 背面의 내용 구분 없이 한 사람에 의해 초록된 문서로 생각된다. 里耶秦簡에는 발신문서와 수신문서를 막론하고, 원 발송문서와 함께 追書의 발송사항이 기록된 문서가 꽤 많은데, 追書가 함께 기록된 문서는 처음 문서를 발송한 당시 작성한 부분이 아니며, 追書의 발송 및 사안의 처리가 완료된 이후 정리와 보존을 위해 초록된 簡으로 생각된다.

<표 4> 縣廷→縣 하부기관 하달 문서¹³⁾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발신 문서 부분	⑥4	遷陵守丞	船官	縣廷→船官
	⑧137	遷陵丞	畜官	縣廷→畜官
	⑧155	遷陵守丞	少內	縣廷→少內
	⑧198	遷陵丞	鄉官	縣廷→鄉官 (“守府昌行廷”)
	⑧378	遷陵丞	少內	縣廷→少內 (“遷陵丞遷下辭少內”)
	⑧770	遷陵丞	啓陵鄉畜夫	縣廷→啓陵鄉
	⑧1008	遷陵守丞	少內	縣廷→少內
	⑧1538	遷陵守丞	□	縣廷→□

서 각 부분이 모두 7명에 의해 쓰여졌다고 주장하였다.(林進忠, 『里耶秦簡“貲贖文書”的書手探析』, 『湖南大學學報』(社會科學版) 24-4, 2010, p.35. 참조)

- 13) 里耶秦簡에 포함된 발송문 부분에는 縣廷에서 縣 하부기관으로의 발송문도 있지만,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 상달된 문서의 부분도 보인다. 하지만 이는 縣廷의 문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외하였다.

遷陵縣廷에서 縣 하부기관으로 발송된 문서 중 일반적인 발송문 부분의 형식을 정확하게 따르고 있는 것은 ⑧770簡이 유일하지만, 이 簡의 正面과 背面에는 필체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⑧137簡의 경우 정면문서의 조사자가 簡의 背面 좌측 하단에 기록된 것은 일반적인 형식과 같지만, 정면의 문서내용이 背面 우측 부분까지 이어져 있고, 불에 타 끊어진 부분으로 인해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背面 좌측 상단에 문서의 발송기록도 없었던 것 같다. 또한 ⑥4簡, ⑧155簡, ⑧1538簡의 경우 背面의 기록 자체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들 簡牘 중에서도 ⑧155簡과 ⑧1538簡은 簡牘의 정면에 문서내용과 함께 문서의 조사자명과 발송기록이 기록되어 있어, 일반적인 발송문 부분 正面과 背面내용을 한 면에 모두 초록한 것이다. ⑧1008+1461+1532簡 문서는 일반적인 발송문서와 형식이 완전히 다른 문서이다. 일반적인 문서가 문서의 작성일자와 발신자명이 먼저 등장하는 것에 반해, 이 문서에는 먼저 令佐 華의 自言이 등장하고, 뒤이어 이 自言을 기반으로 한 遷陵守丞의 少內에 대한 명령문서가 기록되어 있다. 또한 이 문서에는 背面 좌측에 발송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이 문서가 일반적인 발송문 부분문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遷陵縣에서 他縣 혹은 洞庭郡으로 발송된 문서 부분의 경우, 追書의 발송사항이 기록된 일부 문서를 제외하고, 정확한 부분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遷陵縣 내부에서 왕래된 문서는 다양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里耶秦簡에 포함된 발신문서 부분이 모두 동일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문서가 아니며, 문서 수신기관에 따라 부분 작성 방법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수신문서 I

수신문서 I 은 접수사항만이 기록되고, 문서의 처리사항이 기록되지 않은 단순한 형태의 수신문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문서 또한 수신기관에 접수되어 보존되는 과정에도 다양한 차이가 있었으며, 문서의 발신기관이 郡인지 縣 하부기관인지에 따라서도 문서 형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표 5> 洞庭郡/西陽縣→遷陵縣 수신문서 I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수신 문서 I	⑧755	洞庭守	遷陵丞	洞庭郡→遷陵縣
	⑧1523	洞庭(假)守	遷陵	洞庭郡→遷陵縣
	⑧2159	(洞)庭守		洞庭郡→遷陵縣
	⑧61	洞庭守	遷陵畜夫	巴郡→洞庭郡→遷陵縣
	⑧159	[洞庭]		御史丞→洞庭郡…→西陽縣→遷陵縣
	⑨1~12	洞庭假尉	遷陵丞	陽陵司空→陽陵縣→洞庭郡→遷陵縣
	⑧647	西陽守丞	遷陵丞主, 令史	西陽→遷陵縣

<표 6> 縣 하부기관→縣廷 수신문서 I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수신 문서 I	⑧67	尉守	(遷陵)	尉→縣廷
	⑧1477	尉	(遷陵)	尉→縣廷 (“謁徙遷陵陽里,謁告襄城”)
	⑧141	發弩守	(遷陵)	發弩→縣廷
	⑧1524	司空	(遷陵)	司空→縣廷
	⑧648	司空守	(遷陵)	司空→縣廷
	⑧73	司空	(遷陵)	司空→縣廷 (“謁告啓陵”)(내용불명)
	⑧136	倉守	(遷陵)	倉→縣廷
	⑧1490	倉	(遷陵)	倉→縣廷
	⑧173	庫	(遷陵)	庫→縣廷
	⑧152	少內守	(遷陵)	少內→縣廷
	⑧163	廐守	(遷陵)	廐→縣廷
	⑧660	都鄉守	(遷陵)	都鄉→縣廷
	⑧1562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 (追書 발송)
	⑧767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
	⑧2441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 (缺簡)
	⑧769	啓陵鄉守	(遷陵)	啓陵鄉→縣廷
	⑧672	田官守	(遷陵)	田官→縣廷 (“官田自食簿謁言太守府”)
	⑧1514	庫守	(遷陵)	庫→縣廷 (“今牒書當令者三牒,署第上”)
	⑧1565	貳春鄉	(遷陵)	貳春鄉→縣廷 (“受西陽..今上其校一牒”)
	⑧645	貳春鄉守	(遷陵)	貳春鄉→縣廷 (“水火敗亡課一牒上”)
⑧1539	貳春鄉守	(遷陵)	貳春鄉→縣廷 (“上不更以下徭計二牒”)	

먼저 <표6>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에 전달된 문서를 보면 전체 21건의 문서 중 ⑧163簡, ⑧648簡, ⑧1539簡, ⑧1563簡, ⑧1565簡을 제외하고는 모두 수신문서의 기본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다.¹⁴⁾ ⑧1563簡의 경우 기본적인 형식은 일반 수신문서와 같지만, 背面의 우측에 追書 발송 기록이 있는 것이 특징이며, ⑧163簡, ⑧648簡, ⑧1565簡, ⑧1539簡은 背面 좌측 문서 접수기록이 없는 문서이다.

한편 <표5>의 수신문서 중 西陽縣에서 遷陵縣으로 전달된 ⑧647簡도 일반적인 수신문서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洞庭郡에서 遷陵縣으로 전달된 문서는 다양한 형식으로 서사되어 있다. 먼저 ⑧755-759簡, ⑧1523簡, ⑧2159簡은 洞庭郡에서 遷陵縣으로의 전달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가장 간단한 형식의 수신문서라고 할 수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⑧755-759簡과 ⑧1523簡의 원본문서와 追書의 작성일자가 모두 秦始皇 34년 6월, 7월, 8월로 이어져 있으며, 追書의 발송자가 모두 洞庭(假)守인 繹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들 두 문서의 필체가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⑧755-759簡과 ⑧1523簡이 서로 이어져 있는 하나

14) 이들 문서 외에도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 보고된 문서에는 作徒簿나 爰書 등을 보고하며 독특한 형식으로 작성된 문서도 있지만, 일단 이 표에서는 제외하였다.

의 문서라고 주장하였다.¹⁵⁾ 이들 두 문서가 연결될 경우 〈⑧755-759簡+⑧1523簡〉 문서는 1건의 원본문서 내용과 3건의 追書 발송기록, 그리고 縣에서의 문서 접수기록으로 이뤄진 형식을 갖추게 된다. 한편 ⑧61+293+2012簡, ⑧159簡, ⑨1-12簡의 문서는 모두 중앙이나 他郡에서 발송된 문서를 洞庭郡이 접수한 후 다시 遷陵縣으로 하달한 문서이다. ⑧61+293+2012簡과 ⑧159簡에는 遷陵縣에서의 문서 접수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簡牘의 正面과 背面이 내용상 구분되어 있지 않고, ⑨1-12簡에는 遷陵縣에서의 문서 접수기록 없이, 한 건의 追書를 포함하여 4건의 발송 문서만 하나의 簡牘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縣 하부기관에서 발송되어 縣廷에 접수된 문서는 대부분 수신문서의 일반적인 형태로 남아 있지만, 洞庭郡을 통해 縣廷으로 전달된 문서는 대부분 실제 전달과정을 거친 수신문서 正本이 아니라 사안의 정리와 보존을 위해 만들어진 문서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郡 혹은 외부기관에서 縣으로 전달된 문서 正本은 또 다른 형태로 처리되었음을 보여준다.

4. 수신문서 II

<표 7> 洞庭郡→遷陵縣 수신문서 II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수신 문서 II	⑧657	洞庭守	縣嗇夫	琅邪郡→洞庭郡→遷陵縣→尉官→貳春鄉
	⑩65	洞庭守	縣嗇夫	洞庭郡→遷陵縣→尉, 鄉, 司空, 倉主
	⑩66	洞庭守	縣嗇夫	

<표 8> 他縣→遷陵縣 수신문서 II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수신 문서 II	⑤1	零陽	過所縣·鄉	零陽倉守→零陽守→遷陵縣→倉嗇夫
	⑧60	樊道	遷陵丞主	都府守→樊道→遷陵縣→少內
	⑧63	旬陽丞	遷陵丞主	左公田→旬陽→遷陵縣→司空
	⑧140	臨沮丞	遷陵丞主, 令史	臨沮尉守→臨沮→遷陵縣→尉主
	⑧746	枳鄉守	(遷陵)	枳鄉→□縣→遷陵→□(?) (“謁告遷陵”)
	⑨984	酉陽守丞	遷陵丞主	酉陽→遷陵縣→都鄉

洞庭郡이나 他縣에서 遷陵縣으로 발송된 문서 중 동일한 내용을 가진 ⑩5,6簡과 인접한 酉陽縣에서 보낸 ⑨984簡만이 ‘單件문서’에 속하는 것이며, 나머지 문서는 他郡 혹은 他縣의 하부기관에서 발송된 후 洞庭郡이나 소속 縣을 거쳐 遷陵縣에 전달된 ‘多件문서’

¹⁵⁾ 陳根利, 『里耶秦簡8-1523編連和D5-1句讀問題』, 『簡帛網 www.bsm.org.cn』, 2013. 1. 8.

이다.¹⁶⁾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표5>에 보이는 ⑧61+293+2012簡, ⑧159簡, ⑨1-12簡의 문서 또한 중앙 혹은 他郡縣에서 발송된 문서가 洞庭郡을 통해 遷陵縣으로 전달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외부에서 遷陵縣으로 전달된 문서 대부분은 일정한 행정라인을 따라 중계 전달된 ‘多件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縣 하부기관→縣廷 수신문서Ⅱ

종류	簡 번호	발신자	수신자	전체 전달경로
수신 문서 Ⅱ	⑧50	倉	(遷陵縣)	遷陵倉→遷陵縣→西陽,臨沅
	⑧133	獄史(?)	遷陵	獄史→縣廷→司空
	⑧135	司空守	遷陵	司空→縣廷→司空
	⑧143	畜□	遷陵	畜官(?)→縣廷→□
	⑧157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啓陵鄉
	⑧1525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倉(券첩부문서)
	⑩69	啓陵鄉	遷陵	啓陵鄉→縣廷→都鄉
	⑧661	貳春鄉	遷陵	貳春鄉→縣廷→縣尉→都鄉,□(?)
	⑧673	貳春□	遷陵	貳春鄉→縣廷→□
	⑧1510	庫	遷陵	庫→縣廷→司空
	⑧1563	尉守	遷陵	尉→縣廷→倉

이상의 簡 중에서, ⑧661簡의 경우 簡牘의 상당부분이 끊어진 부분으로, 그 구체적인 형식은 확정할 수가 없다. ⑧133簡, ⑧157簡, ⑧1510簡, ⑩69簡의 경우, 簡牘 正面의 내용과 背面 좌측 및 우측의 기록이 확실히 구분되어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나머지 簡은 형식상 조금씩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한편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에 전달된 문서 중 대부분은 縣 하부기관으로 다시 하달되고 있고, 縣 외부로 전달되는 사항을 기록한 문서는 ⑧50簡이 유일한데, 이것도 洞庭郡으로 보고되는 일반 문서가 아니라, ‘過所縣鄉’으로 전달된 공무 여행자의 傳食 지급 관련 문서이다. 분명 鄉이나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에 보고된 문서 중 상당수는 郡으로도 보고되었을 것인데, 수신문서Ⅱ의 형식으로 정리된 문서에서는 이러한 사례를 확인할 수가 없다. 이것은 수신문서Ⅱ가 가진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이를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과정과 관련해 살펴보도록 하자.

16) 里耶秦簡의 문서를 單件과 多件으로 구분한 연구에 따르면 ‘수신문서Ⅱ’에 속하는 문서, 즉 縣廷의 처리기록이 담긴 모든 문서를 ‘多件문서’로 구분하고 있는데(呂靜, 陳垠昶, 『文書を以って天下を御す - 里耶秦簡から見た秦代の文書行政システム -』, 『資料學の方法を探る』 12(愛媛大學『資料學』研究會), 2013. 참조), 필자의 생각으로는 縣廷의 처리기록을 한 건의 문서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單件’과 ‘多件’의 구분은 문서가 발송기관으로부터 바로 전달되느냐, 일정한 행정라인을 따라 중계 전달되느냐를 가지고 구분해야 하며, <표9>에 보이는 縣 하부기관으로부터 縣廷으로 전달된 문서는 ‘多件문서’로 구분할 수 없다.

Ⅲ. 秦代 縣廷의 문서행정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里耶秦簡의 행정문서 중에서는 같은 수신문서 혹은 발송문 부분에 속하는 문서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형식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수신문서의 경우, 해당 문서가 실제 전달과정을 거쳐 전달된 正本 문서인지, 아니면 모든 행정처리가 끝난 이후 정리 및 보존을 위해 별도로 초록된 문서인지에 따라 문서의 형식에 차이가 있었으며, 발송문서의 경우에도 문서를 발송할 당시에 작성한 副本인지, 追書의 발송 이후 만들어진 副本인지에 따라 문서의 작성 형식에 큰 영향을 주었던 것이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遷陵縣廷과 문서 수·발신기관과의 관계에 따라 문서의 형식이나 문서 처리방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즉 같은 발송문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縣廷에서 郡府로 발송한 문서 부분이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 縣廷에서 縣 하부기관으로 발송한 문서의 부분은 다양한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었으며, 수신문서 I의 경우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 전달된 문서가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고 있는 반면, 郡이나 他縣에서 전달된 문서는 조금 더 복잡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수신문서 I 과 수신문서 II의 관계 문제이다. 왜 里耶秦簡 수신문서는 縣廷의 처리사항이 기록된 것과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뉘었을까? 그리고 縣廷에서 수신한 문서 背面에 縣廷의 처리사항을 추가로 기록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漢代 詔書を 비롯한 행정문서가 중앙에서 발송되어 지방의 각 급 기관으로 전달될 때는, 일정한 행정계통 즉 〈중앙→郡→縣→鄉〉, 〈중앙→郡→都尉府→候官→部〉를 따라 전달되었으며, 郡/都尉府나 縣/候官 등의 기구에서는 전달받은 문서를 관할 기관으로 하달할 때, 수신한 문서를 그대로 초록한 후 여기에 해당 기관에서의 하달 명령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문서를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居延漢簡』행정문서에 대한 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¹⁷⁾ 李均明과 劉軍은 簡牘 행정문서를 분류함에 있어, 문서를 처음 받

17) 漢代 詔書を 하달할 때, 이러한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居延漢簡』에 대한 초기 연구를 수행한 王國維에 의해 언급되었으며(羅振玉, 王國維 編著, 『流沙墜簡』, 中華書局, 1993, 屯戍叢殘考釋 簿書類, pp.103-104. 참조), 이러한 詔書 전달의 방법과 계통이 분명히 확인된 것은 1960년대 〈元康五年詔書冊〉을 복원한 大庭脩에 의해서였다.(大庭脩, 『居延出土の詔書冊』, 『秦漢法制史の研究』倉文社, 1982, 第3篇 第2章, p.236. 참조) 그리고 富谷至는 甲渠候官 유지에서 발견된 일련의 上行문서를 조합하고, 下行문서 뿐만 아니라 上行문서에서도 이러한 문서전달의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富谷至 著, 임병덕 譯, 『목간과 죽간으로 본 중국 고대 문화사』, 사계절, 2005, pp.171-175. 참조) 이해의 편의를 위해 大庭脩가 복원한 〈元康五年詔書冊〉 下行 詔書を 아래에 적시한다.

二月丁卯, 丞相相, 下車騎將軍、將軍、中二千石、二千石、郡太守、諸侯相, 承書從事, 下當用者,

송하는 기관에서 작성한 시행문서를 “始發文”으로, 타 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를 관할 기관으로 하달하기 위해 만든 시행문서를 “轉發文”으로 구분하였다.¹⁸⁾ 이것은 당시 각급 행정기관 사이에 왕래된 문서의 상당수가 이러한 중계과정을 통해 전달되었음을 의미하는데, 里耶秦簡에서도 이러한 경우를 많이 찾을 수 있다. 즉 앞의 〈표5〉와 〈표7〉, 〈표8〉에서 살펴본 洞庭郡 혹은 他縣에서 遷陵縣으로 전달된 문서 15건 중 9건의 문서가 일정한 행정라인을 따라 遷陵縣으로 중계 전달된 문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보면, 타 기관에서 받은 문서를 관할 기관으로 하달해야 할 경우, 해당 기관에서는 수신한 문서를 별도의 簡牘에 초록한 후 해당 기관의 명령문을 덧붙이는 방법으로 실제 전달할 문서[正本]를 만들었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진 문서를 다시 별도의 簡牘에 초록한 후, 正本문서를 발송한 뒤에 正本문서가 발송된 날짜 및 시각, 行書者 등을 簡牘 한쪽에 초록하여 이를 副本으로 삼아 보관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정본과 부분 문서를 만든 기관에는, 실제 타 기관으로 전달된 正本 문서를 제외하고도, 正本 문서를 만들 때 함께 만들어진 副本 문서와, 正本 문서를 만들 때 底本으로 활용된 타 기관에서의 수신문서가 모두 남게 되고, 이들 두 문서의 내용은 해당 기관에서 문서를 전달하며 덧붙인 명령문과 발송기록을 제외하면 사실상 동일한 것이 된다.

이처럼 거의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두 건이나 보관되는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신 문서의 한쪽에 해당기관의 문서 처리사항을 남기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즉 수신문서의 한쪽 면에 이 문서를 전달하며 덧붙인 명령문과 正本 문서의 발송기록을 남김으로써 수신문서 자체를 副本으로 삼는 방법인데, 里耶秦簡 행정문서의 형식을 살펴보면 秦代에는 바로 이러한 방법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遷陵縣에서 수신한 문서 중 縣廷의 처리사항이 기록된 경우는 縣廷에서 접수한 문서를 그대로 다른 기관으로 전달할 경우와¹⁹⁾, 縣廷에서 문서를 접수한 후 縣令 혹은 縣丞의 코멘트를 붙여 다시 문서의 발송기관으로 회답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는데²⁰⁾, 이는 里耶秦簡 수신문서에 기록된 縣廷의

如詔書.

少史慶、令史宜王、始長。(居延漢簡 10.30簡)

三月丙午，張掖長史延行太守事、肩水倉長湯兼行丞事，下屬國農部都尉小府縣官，承書從事，下當用者，如詔書。 / 守屬宗、助府佐定。(居延漢簡 10.32簡)

閏月丁巳，張掖肩水城尉誼以近次兼行都尉事，下候城尉，承書從事，下當

用者，如詔書。 / 守卒史義。(居延漢簡 10.29簡)

閏月庚申，肩水土吏橫以私印行候事，下尉候長，承書從事，下

當用者，如詔書。 / 令史得。(居延漢簡 10.31簡)

즉 문서가 행정라인을 따라 하달될 때마다 실제 문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원 문서 외에 위와 같은 下行문서가 차례차례 부가되어 함께 하달된 것이다.

18) 李均明·劉軍, 『簡牘文書學』, 廣西教育出版社, 1999, pp.154-158.

19) 앞에서 살펴본 ⑧1510簡이나 ⑩69簡 문서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20) ⑧157簡 문서가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예이다.

문서 처리기록이 단순한 ‘처리사항 기록’이 아니라, 수신문서가 縣廷을 통해 중계 전달되는 데 있어, 부분 문서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수신문서Ⅱ에 속하는 里耶秦簡 문서는 ‘遷陵縣의 수신문서’입과 동시에, 이 수신문서를 중계 전달하는 ‘遷陵縣 발송문서의 부분’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수신문서Ⅱ의 방식으로 중계 전달 문서의 부분을 만드는 것이 郡이나 他縣 혹은 縣 하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를 다시 縣의 하부기관으로 하달하는 경우에만 한정되었으며, 縣 하부기관으로부터 수신한 문서를 郡이나 他縣 등의 외부로 전달할 때는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래에서는 당시 遷陵縣廷을 중심으로 진행된 문서의 상달과 하달, 그리고 동급기관으로의 문서전달이 실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진행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1. 郡→縣→鄉의 문서 하달과정

里耶秦簡의 행정문서 중, 遷陵縣에서 郡의 문서를 접수하여 縣의 하부기관으로 전달함으로써, 문서처리를 완료한 대표적인 사례는 郡→縣 수신문서Ⅱ에 속하는 ⑩5,6簡과 ⑧657簡의 문서가 있으며, ⑧153簡, ⑧159簡, ⑧155簡, ⑧152簡, ⑧158簡 등으로 구성된 일련의 문서군을 통해서도 이러한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²¹⁾

이들 문서군의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秦始皇 32년 2월 5일, 御史丞 去疾이 “舉事可爲恒程者”라고 하는 制書에 근거해 洞庭郡의 “絡裙” 가격을 보고하라는 丞相의 명령을 하달하였고²²⁾, 3월 16일 이 문서를 접수한 洞庭郡에서는 “以次傳”의 방식으로 이 문서를 郡內 각 縣으로 하달하였는데, 遷陵縣에서는 西陽縣을 통해 4월 8일 이 문서를 수령하였다[⑧159簡]. 遷陵縣은 문서를 받은 즉시 欣으로 하여금 少內로 하달할 문서를 만들게 하고 遷陵守丞 色의 이름으로 하달하였다[⑧155簡].²³⁾ 문서를 접수한 少內에

21) ⑧152, 153, 155, 158簡은 2003년과 2007년에 이미 釋文이 발표되었고, 이들이 모두 한 가지 사안에 관련된 문서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다.(胡平生, 『里耶秦簡所見秦朝行政文書的製作與傳送』, 『簡帛研究2008』,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10, pp.53-54. 참조) 하지만 2012년 ⑧층에서 발굴된 모든 문서를 정리한 『里耶秦簡(壹)』(文物出版社, 2012)이 발표되고, ⑧159簡의 釋文이 공개되면서 이들 문서의 전체적인 내용 및 형식, 문서전달 경로 등에 대한 연구가 최근 새롭게 진행되었다.(于洪濤, 『試釋里耶簡“御史問直絡裙程書”』, 『簡帛網www.bsm.org.cn』, 2012. 05. 30. 참조)

22) 于洪濤의 『試析里耶簡“御史問直絡裙程書”』(『簡帛網 www.bsm.org.cn』, 2012. 5. 30)에 의하면 중앙에서 洞庭郡으로 하달된 것은 “舉事可爲恒程者”라고 하는 制書와 ‘絡裙’의 가격을 보고하라는 丞相의 명령서라고 하여 이 양자의 문서가 각각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23) ⑧159簡 背面기록을 통해 문서가 遷陵縣에 접수된 시각이 “四月[癸]丑水十一刻刻下五”라고 적혀있는데, ⑧155簡의 기록에 의하면 이 문서를 접수한 遷陵縣이 문서를 少內로 발송한 시각 또한 “四月癸丑水十一刻刻下五”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접수된 문서가 빠른 시간내에 재전달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문서 지연전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도

서는 다음날인 4월 9일 少內佐인 處로 하여금 문서의 수령 보고문을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 문서는 少內守 是의 이름으로 당일 정오경 縣廷에 도착하였다. 이 문서를 접수한 縣廷에서는 앞서 少內로 문서를 내려보낸 欣으로 하여금 이 문서를 개봉하도록 하고 접수한 문서의 背面에 접수기록을 하였다[⑧152簡]. 또한 少內的 수령 보고문서를 받은 縣廷에서는 역시 欣으로 하여금 酉陽縣에 보낼 수령 보고문을 만들도록 하였고, 이 문서는 遷陵守丞 色의 이름으로 4월 11일 아침 酉陽縣으로 발송되었다[⑧158簡].

이 중 ⑧159簡 문서의 형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洞庭郡에서는 중앙으로부터 받은 문서를 관할 縣으로 하달할 때, 접수한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다음, 郡에서의 하달 명령과 함께 발송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이 문서를 수신한 遷陵縣에서는 수신문서에 背面 좌측에 접수기록을 남기고 있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당시의 행정문서가 일정한 행정라인을 따라 전달될 때, 최초 발송문서가 여러 기관의 중계과정을 거치면서도 그 문서 내용이 그대로 보존된 채 전달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⑧ 155	正面	四月丙午朔癸丑, 遷陵守丞色下: 少內謹案致之. 書到言, 署金布發, 它如律令. /欣手. 四月癸丑水十一刻刻下五, 守府快行少內.
⑧ 152	正面	卅二年四月丙午朔甲寅, 少內守是敢言之: 廷下御史書舉事可爲恒程者, 洞庭上裙直(值), 書到言, 今書已到, 敢言之.
	背面	四月甲寅日中, 佐處以來. /欣發. 處手.

문제는 그 다음 부분이다. 만약 이 문서가 수신문서Ⅱ의 작성 방식을 따라 발송문 부분을 만들었다면, ⑧155簡 부분이 ⑧159簡의 背面에 기록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簡에 초록하였는데, 이것은 洞庭郡에서 酉陽縣을 거쳐 전달된 ⑧159簡 문서에 이미 중앙으로부터 洞庭郡에 전달된 문서 내용과 洞庭郡의 하달 명령문이 이미 초록되어 있어, ⑧155簡 부분을 초록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⑧155簡 문서의 경우 ⑧159簡 문서를 접수한 遷陵縣에서 이 문서를 少內로 하달할 때 만든 문서로 보이며, ⑧152簡 문서의 경우 遷陵縣으로부터 문서를 수령한 少內가 무사히 문서를 받았음을 보고한 문서수령 보고문서이다. 즉 ⑧152簡 문서는 ⑧155簡 문서에 대한 답신으로 작성된 문서이다. 물론 少內에서 수령한 문서는 ⑧155簡 단독 문서가 아니라 ⑧159簡 문서의 초록본에 ⑧155簡 문서를 덧붙인 문서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縣에서 접수한 문서를 관할 하부기관으로 재전달할 경우에도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전달받은 문서를 그대로 초록한 뒤에 해당 기관의 명령문서를 덧붙이는 형식으로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모른다.

이와 관련해 지적하고 싶은 점은 ⑧155簡의 형식 문제이다. ⑧155簡의 경우 이미 2003년에 그 釋文이 발표된 簡으로, 필자는 일견 일반적인 발신문서의 부분으로 보이는 ⑧155簡의 형식이 일반적인 발신문서보다는 ‘수신문서Ⅱ’에서 簡의 背面 우측에 기록되는 縣廷의 처리기록과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 문서의 경우 일반적인 발신문서의 부분이 아니라 수신문서의 背面 우측에 기록되는 문서의 처리기록이 무언가의 이유로 인해 다른 독립된 簡牘에 기록된 것이라고 추정하였다.²⁴⁾ 만약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遷陵縣에서 少內로 전달된 문서가 ⑧159簡과 ⑧155簡이고, ⑧159簡의 내용이 너무 많아 ⑧155簡의 내용이 ⑧159簡 背面에 기록되지 못한 것이라고 한다면 수신문서의 처리기록인 ⑧155簡이 다른 簡牘에 기록된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⑧155簡 문서의 경우 실제 少內로 전달된 문서가 아니라, 그 문서의 부분으로서 縣廷에 남겨진 문서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⑧159簡과 ⑧155簡의 전달 처리과정을 다음과 같이 복원할 수 있을 것이다. 즉 ⑧159簡 문서를 접수한 遷陵縣에서는 이 문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문서를 少內로 하달하여야 했고, 이를 위해 ⑧159簡 문서의 내용을 초록한 簡牘과 ⑧155簡 내용에 해당하는 발신문서를 함께 제작하여 이를 少內로 하달하였을 것이다.²⁵⁾ 한편 이 ⑧155簡 하달문서의 부분이 되는 문서를 ⑧159簡 背面 우측에 기록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⑧155簡을 따로 제작하고, 문서에 기록된 명령문 뒤에 이 문서가 하달된 시각과 少內로 문서를 가지고 간 行書者를 기록하였는데, 이 ⑧155簡 문서는 ⑧159簡 문서를 하달하며 덧붙인 명령문이므로 일반 발신문서의 부분과 같은 형식으로 기록하지 않고, 수신문서의 背面 우측에 기록하는 문서 처리 기록과 동일한 형식으로 기록하여 부분으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⑧155簡과 동일한 문서형식은 ⑧1538簡의 경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⑧1538簡은 아랫부분이 끊어진 斷簡이지만 문서의 형식은 ⑧155簡과 거의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⑧155簡과 ⑧1538簡을 포함하여 縣에서 縣 하부기관으로 하달된 발송문서 부분의 경우 대부분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이 또한 위와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 즉 縣에서 縣 하부기관으로 전달되는 문서 중 상당수는 洞庭郡 또는 다른 기관에서 縣廷으로 전달되어 온 문서인데, 이 경우 중계 전달하는 문서

24) 拙稿,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文書行政方式과 그 특징』,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pp.141-144. 참조. 이 글에서는 문서의 여러 형식 중 “某手”의 위치 부분에 착안하였다. 일반적 발송문서나 접수문서의 경우 정면문서의 조사자는 簡牘 背面 좌측 하단에 기록되는 반면, 접수 문서의 背面 우측에 기록되는 문서 처리기록의 조사자는 사선표시[/]와 함께 문서의 중간에 기록되는데, ⑧155簡의 경우 이러한 접수문서의 처리기록 형식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

25) 이 ⑧159簡 뒤에 ⑧155簡 내용을 붙여 하나의 牘을 수신문서 겸 발신문서 부분으로 보존하는 것은 ⑧159簡 문서의 분량으로 인해 불가능하였지만, 이 두 문서를 저본으로 만들어진 正本 문서는 하나의 木牘 안에 모두 초록을 하는 것도 가능하였을 것이다.

의 부분은 수신문서Ⅱ의 방식을 따라 수신문서의 背面 우측에 기록되었으며, 수신문서의 분량이 많은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다른 별도의 簡에 그 부분을 남겼지만, 전형적인 형식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 보고된 문서가 郡으로 중계되는 경우는 어떠했을까?

2. 鄉→縣→郡의 문서 상달과정

里耶秦簡의 행정문서 중에서는 鄉 혹은 縣 하부기관에서 보고된 문서가 縣廷을 거쳐 郡으로 보고되는 문서의 실례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달되는 문서의 일반적인 내용은 정기적 혹은 비정기적으로 縣內의 상황을 정리한 簿籍을 첨부문건으로 하여 보고하는 것이었다.

⑧ 645	正面	廿九年九月壬辰朔辛亥, 貳春鄉守根敢言之: 牒書水火敗亡課一牒上. 敢言之.
	背面	九月辛亥旦, 史邛以來. /感半. 邛手.
⑧ 1511	正面	廿九年九月壬辰朔辛亥, 遷陵丞昌敢言之: 令令史感上水火敗亡者課一牒. 有不定者, 謁令感定. 敢言之.
	背面	已 九月辛亥水下九刻, 感行. 感手.

이 두 문서는 모두 秦始皇 29년 9월 20일에 작성, 전달된 문서로서, 모두 “水火敗亡課”라고 하는 제목의 牒書를 첨부물로 하여 보고한 문서이다. ⑧645簡은 貳春鄉에서 보고한 문서를 遷陵縣廷에서 접수한 것이고, ⑧1511簡은 이러한 貳春鄉의 보고문서에 기반해 만든, 遷陵縣에서 洞庭郡으로의 보고문서 부분이다.

위 문서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처럼, 縣은 鄉에서의 보고문서를 접수하여 이를 다시 郡으로 보고해야 할 경우, 하달문서와 같이 이 문서를 그대로 초록해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縣廷의 문서로 새로 기안해 만든 다음 郡으로 상달하고 있다. ⑧645簡 鄉의 縣에 대한 보고가, 郡의 명령에 의한 것이라는 문장은 보이지 않지만, ⑧645簡의 문서를 접수한 당일로 문서가 縣廷에서 발송, 상달된 것을 볼 때, 당시 貳春鄉에 水災와 火災로 인한 손실이 있어, 縣에서 이를 課의 문서로 만들어 보고하라는 명령이 貳春鄉에 내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명령을 받은 鄉은 관련 課牒을 보고하며, ⑧645簡과 같은 행정문서를 작성해 첨부하였다. ⑧645簡 문서를 보면 鄉史인 邛은 이 보고문서를 작성한 후, 簡의 背面 좌측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貳春鄉守인 根의 결재를 얻은 후 바로 縣廷으로 문서를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였다. 그리고 문서를 전달받은 縣에서는 ⑧645

簡의 背面 좌측 상단에 문서가 전달된 시각과 문서 전달자의 이름을 쓰고, 문서를 접수한 令史 感은 문서를 개봉한 후 역시 자신의 이름을 접수문서의 背面에 기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일단 ⑧645簡 접수문서의 활용은 끝나게 된다. 한편 令史 感은 鄉의 보고에 기반하여 郡으로 보고할 행정문서를 작성하고, 簡의 背面 좌측 하단에 자신의 이름을 쓴 후, 縣丞 倉의 결재를 얻어 洞庭郡으로 문서를 보고하고 있다. 이 때 縣에서는 실제 洞庭郡으로 가지고 갈 문서를 만드는 동시에 縣에서 부분으로 보존할 문서인 ⑧1511簡을 작성하고 令史인 感이 문서를 가지고 洞庭郡으로 떠난 시각과 그의 이름을 기록하였다. 그리고 문서의 처리가 모두 끝난 이후 背面 상단에 “已”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문서처리가 끝났음을 기록하였다.²⁶⁾

이처럼 鄉에서 발송되어 縣을 거쳐 郡으로 보고된 문서는 앞에서 본 하달문서와 달리 문서 중계 기관에서 명령문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발송된 것이 아니라 縣에서 새로운 기안문을 작성해 郡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遷陵縣에서 洞庭郡으로 발송된 문서 상당수가 전형적인 부분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 보고된 수신문서Ⅱ 대부분이 縣 하부기관으로 중계 전달되는 문서이며, 洞庭郡으로 보고된 문서가 한 건도 없다는 점과도 관계된 것이다. 즉 縣의 하부기관으로부터 발송된 문서를 縣廷에서 郡으로 보고할 경우, 대부분 이를 縣廷의 문서로 새로 기안해 보고했기 때문에, 縣의 하부기관에서 발송된 문서 중 상당수가 수신문서Ⅰ의 전형적인 형식을 한 채 남겨진 것이고, 縣廷에서 郡으로의 보고문서는 일반적인 발송문 부분의 형식으로 남아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秦·漢代 縣급 관서가 문서행정의 기본 단위로 기능했던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있다.²⁷⁾ 즉 鄉을 비롯한 縣의 하부기관에서도 문서를 접수해 처리하고, 필요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 보고하는 등의 문서행정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 鄉급 기관의 문서가 郡 등으로 보고될 때에는, 소속 縣廷에서의 재기안을 통해 縣의 문서로 새로 작성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시의 平行문서가 전달되는 계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26) ⑧197簡에는 역시 背面 상단에 “報別臧”이라는 글자가 크게 쓰여져 있는데, ⑧1511簡의 “已”와 마찬가지로 모든 문서처리가 끝난 뒤에 남긴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

27) 秦·漢代 문서행정의 기본단위가 縣이었다는 사실은 居延漢簡 등의 簡牘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 것이지만(永田英正, 『簿籍簡牘の諸樣式の分析』, 『居延漢簡の研究』, 同朋舍, 1989, pp.400-401), 里耶秦簡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金慶浩, 『이천년 전 里耶鎮으로의 旅程과 『里耶秦簡』簡介』, 『中國古中世史研究』 19, 2008, p.361, 拙稿,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文書行政方式과 그 특징』,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p.112.)

3. 秦代の 平行 문서와 縣廷의 기능

里耶秦簡에는 上·下行문서와 함께 동급기관 사이에서 전달된 平行문서 또한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郡과 郡, 그리고 縣과 縣 사이에서 전달된 문서가 확인되지만, 鄉과 鄉 사이에 직접 문서가 전달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참고가 될 수 있는 簡이 앞에서 살펴본 ⑩9簡 문서이다. 이 문서는 遷陵縣 啓陵鄉에서 遷陵縣 都鄉으로 전달되어야 할 문서였지만, 啓陵鄉에서는 이 문서를 바로 都鄉으로 보내지 않고, 縣廷으로 하여금 都鄉에 문서를 송달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즉 당시 문서전달 과정에서는 鄉에서 鄉으로의 직통 문서전달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鄉과 鄉 사이에 문서를 전달할 일이 있을 경우 반드시 縣을 경유하여 문서를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²⁸⁾

그렇다면 縣과 縣 사이 문서전달의 경우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 전달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만약 秦代의 문서행정체계에서 縣과 鄉이 가진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다면, 縣에서도 他縣으로 직접 문서를 보내지 못하고 소속 郡으로 먼저 문서를 보내 문서를 처리하도록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표8〉을 통해 이미 살펴본 것처럼 里耶秦簡에는 零陽縣과 西陽縣 등 같은 洞庭郡에 속한 縣 뿐만 아니라 樊道, 旬陽縣, 臨沮縣, 枳鄉²⁹⁾ 등 他郡에 속한 縣에서도 바로 遷陵縣으로 직접 문서를 전달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縣이 鄉과 달리 자체적으로 문서를 처리할 수 있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거이며, 秦代 지방 기층의 문서행정체계에서 문서를 처리할 수 있는 기준 기관이 縣급 기구로 규정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다.

縣에서 소속 郡이 아닌 他郡으로 바로 문서를 보낸 ⑨1-12簡의 경우도 縣과 縣 사이의 직접적인 문서전달이 가능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⑨1-12簡은 陽陵縣에서 작성되어 洞庭郡을 거쳐 遷陵縣으로 전달된 일련의 문서인데, 문서의 내용을 보면 陽陵司寇이 처음 문서를 작성해 陽陵縣으로 상달하고, 陽陵縣은 이를 洞庭郡으로 전달했으며, 洞庭郡은 이를 遷陵縣으로 하달했음을 알 수 있다. 陽陵縣 司寇이 陽陵縣廷으로 문서를 상달하며, 債錢이 있는 아무개가 洞庭郡에서 戍하는 것을 알 뿐, 어느 縣에서 근무하는지 알지 못한다(“戍洞庭郡, 不智(知)何縣署”)는 문장을 작성한 것을 보면, 이 陽陵縣은 洞庭郡 관할 하에 있는 縣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데³⁰⁾, 만약 그렇다면, 秦代 縣은 他郡에 속한 동급기관

28) 拙稿, 『里耶秦簡을 통해 본 秦代 文書行政方式과 그 특징』, 『中國古中世史研究』 21, 2009, p.112.

29) 『里耶秦簡牘校釋』에서는 枳鄉이 縣名일 것으로 생각하였다(p.215). 하지만 ⑧746+1588簡에 “謁告遷陵”이라는 문장이 있는 것, “枳鄉守”가 “敢言之”라는 용어를 사용해 문서를 발송한 것을 보면, 이 枳鄉은 某縣에 속한 鄉이며, ⑧746+1588簡은 枳鄉守가 소속 縣으로 문서를 보내, 이를 遷陵縣으로 이송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0) 만약 陽陵縣이 洞庭郡 관할이었다면, 郡名을 이렇게 기록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다음 연구들에

인 縣 뿐만 아니라, 他郡에 대해서도 소속 郡을 거치지 않고 직접 문서를 발송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縣이 문서행정의 기준 기관으로 운용된 것은 당시 문서행정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로 생각된다. 만약 縣과 縣 사이에 왕래되는 平行 문서가 鄉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급기관인 郡을 통해서만 전달되었다고 한다면, 縣과 縣, 縣과 郡 사이의 문서전달 거리는 직접 전달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늘어나게 되고 상당히 많은 중계 기관을 거쳐야 되었기 때문에, 문서행정의 효율성에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IV. 맺음말

이상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里耶秦簡의 문서는 대부분이 遷陵 縣廷의 문서이며, 그 형식에 따라 발신문서 부분, 수신문서 I, 수신문서 II로 나눌 수 있는데, 수신문서 II는 수신문서를 관할기관으로 하달할 경우 背面에 縣廷의 처리사항을 남김으로써 이를 발송문 부분으로 삼는 것이었다. 둘째, 里耶秦簡 문서는 遷陵 縣廷과 문서 수·발신기관 사이의 관계에 따라 기록 형식에 일정한 차이가 있었다. 즉 縣 하부기관에서 縣廷으로의 보고문서와, 縣廷에서 郡으로의 보고문서가 각각 수신문서 正本, 발신문서 副本으로서의 전형적인 형식을 하고 있었으며, 수신문서 II의 방식으로 문서의 처리사항을 기록한 문서는 모두 縣의 하부기관으로 중계 전달되는 경우에 한정되었다. 셋째, 縣은 鄉의 문서를 郡으로 보고할 때, 이를 縣의 문서로 다시 만들어야 했고, 縣과 縣, 縣과 郡 사이의 문서전달은 郡의 경계를 뛰어넘어 이루어졌다면, 鄉과 鄉 사이의 문서전달은 縣廷을 통해야만 했는데, 이는 지방 기층의 문서행정체계에서 縣이 일정한 기준 기관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도 陽陵 縣을 洞庭 郡 소속이 아닌 他郡 소속 현으로 보고 있다. (晏昌貴, 鍾煒, 『里耶秦簡所見의 陽陵與 遷陵』, 『中國歷史地理論叢』 21-4, 2006, pp.86-87; 王偉, 『里耶秦簡賞贖文書所見 陽陵地望考』, 『考古與文物』 2007-4, pp.27-28.)

秦帝國시기 縣廷의 구조

— 『里耶秦簡』 ‘令史’를 중심으로 —

김 동 오(서울대)

目次

서론

I. 令史의 官·鄉 감독

II. 令史의 轉任과 屬吏 운용

III. 縣廷의 구조와 令史의 위상

결론

서론

『里耶秦簡』¹⁾에는 秦始皇 25년(前222)부터 2세 2년(前208)까지 15년간 洞庭郡 遷陵縣에서 처리된 행정문서가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秦代 縣 屬吏들의 縣政 운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수많은 현 속리중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令史이다. 기존의 문헌사료에서 令史는 ‘縣令에 직속된 문서서기관’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고작이었다. 이후 발견된 秦律을 통해 漢代 미미한 서기직에 불과한 令史가 秦代에는 그보다 훨씬 높은 위상에서 다양한 縣政 업무에 참여했음이 밝혀졌다.²⁾

- 1)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湘西土家族苗族自治州文物處, 『湘西里耶秦代簡牘選釋』, 『中國歷史文物』, 2003-1; 里耶秦簡講讀會, 『里耶秦簡譯註』, 『中國出土資料研究』 8, 2004;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里耶發掘報告』, 岳麓書社, 2006(이하 『發掘報告』로 略稱); 馬怡, 『里耶秦簡選校』,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學刊』 4, 商務印書館, 2007; 王煥林, 『里耶秦簡校詁』, 中國文聯出版社, 2007; 湖南省文物考古研究所編, 『里耶秦簡』(壹), 文物出版社, 2012; 陳偉, 『里耶秦簡校釋』(第1卷), 武漢大學出版社, 2012(이하 『校釋』(1)로 略稱) 본고에 제시된 자료는 기본적으로 『校釋』(1)에 따른다.
- 2) 秦代 令史에 관한 논문은 『睡虎地秦簡』 발견 직후에 발표된, 于豪亮, 『雲夢秦簡所見職官述略』, 『文史』 8, 中華書局, 1980; 高恒, 『秦漢簡牘中的職官及其有關問題』, 『秦漢簡牘中法制文書輯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에 일부 언급되어 있다. 이어 근래에는 劉向明, 『從出土秦律看縣‘令史’一職』, 『齊魯學刊』, 2004-3; 劉向明, 『從睡虎地秦簡看縣令史與文書檔案管理』, 『中國歷史文物』, 2009-3; 劉曉滿, 『秦漢令史考』, 『南都學壇』(人文社會科學學報), 2011-7 등의 專論이 있다. 하지만 이들 모두 기본적으로 令史의 다양한 職掌과 秩次를 정리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한편 漢代 서북지역 簡牘에 등장하는 漢代 令史를 분석한 글로는 吉川佑資, 『漢代邊境における令史と尉史』, 『史泉』 107, 2008가 있다.

본고에서는 『里耶秦簡』을 통해 令史의 업무를 일부 재검토해보고, 令史들의 轉職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秦代 縣廷 구조의 일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I. 令史의 官·鄉 감독

令史³⁾가 담당하는 업무는 매우 다양하다. 秦律에는 통계보고서 작성에 따른 책임을 묻는 爰文⁴⁾, 漢律에는 戶籍 및 각종 田籍 작성과 관련된 爰文⁵⁾이 확인된 바 있다. 『里耶秦簡』에서는 戶曹令史가 작성한 인구 통계(<8-487+8-2004>), 令史 尙이 작성한 計錄(<8-480>, <8-481>)이 남아 있어 당시 令史들이 작성한 문서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秦簡 『封診式』이나 漢簡 『奏讞書』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令史에 의한 治獄 조사 과정을 엿볼 수 있는 殘簡(<8-1463>, <8-1298>, <8-1764>) 역시 확인된다.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令史의 업무로는 行廟와 관련된 자료도 있다. <8-138>에는 26년 6월 縣令·丞의 명에 따라 27년 11월부터 6월까지 정기적으로 令史들로 하여금 行廟한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令史만 11명의 인명이 기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재해피해보고서의 작성(<8-1511>), 上計(<8-1472>), 爰令의 校讎(<6-4>), 식량의 수송(<8-1525>) 등 업무에도 令史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양한 업무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각 官·鄉에 대한 감독 업무이다. 秦簡 『法律答問』에는 “빈 창고 안에 거적이 있는데, 거적 밑에 1石 이상의 양식이 있는 경우, (...) 令史로 감독하는 자에게 벌금 1盾을 부과한다.”⁶⁾라는 기록이 있고, 또한 최근 공개된 『嶽麓秦簡』 『關市律』에는 “縣官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 반드시 令史로 하여금 감독케 하고, 令에 따르지 않는 자는 貲1甲에 처한다”라는 조문도 발견되었다.⁷⁾

『里耶秦簡』에서는 令史의 이러한 감독 업무가 몇몇 상황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행해

3) 『里耶秦簡』에는 令史외에도 令佐가 등장하는데, 兩者간의 업무내용은 거의 동일하다. 다만 令史 혹은 令佐가 기록된 紀年簡을 시간순서로 배열해보면, 令史는 전 기간에 걸쳐 등장하는데 반해, 令佐는 가장 이른 것이 30년 9월이며(<8-890>, ‘<>’는 『校釋』의 簡牘 編號를 가리킴) 32년 7월 이후에야 다수 등장한다. 본고에서는 令佐·史를 구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令史라고 부르기로 한다.

4) 『睡虎地秦簡』, 效律, “官畜夫貲二甲, 令·丞貲一甲; 官畜夫貲一甲, 令·丞貲一盾. 其吏主者坐以貲·詐如官畜夫. 其它冗吏·令史掾計者, 及都倉·庫·田·亭畜夫坐其離官屬於鄉者, 如令·丞.”; “司馬令史掾苑計, 計有劾, 司馬令史坐之, 如令史坐官計劾然.”

5) 『張家山漢簡』, 戶律, “恒以八月令鄉部畜夫、吏、令史相襍案戶籍, 副臧其廷.”; “民宅園戶籍、年細籍、田比地籍、田命(合)籍、田租籍, 謹副上縣廷, 皆以篋若匣置盛, 緘閉, 以令若丞、官畜夫印封, 獨別爲府, 封府戶; 節有當治爲者, 令史、吏主者完封奏令若丞印, 畜夫發, 卽襍治爲.”

6) 『睡虎地秦簡』, 法律答問, “空倉中有薦, 薦下有稼一石以上, (...) 令史監者一盾.”

7) (編號1265) “關市律曰: 縣官有賣買也, 必令令史監, 不從令者, 貲一甲” (陳松長, 『嶽麓書院所藏秦簡綜述』, 『文物』, 2009-3, p.86)

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官·鄉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徑廩粟米一石二斗半斗. ·卅一年十二月戊戌, 倉妃、史感、稟人援出稟大隸妾援. // 令史朝視平. <8-762>
- ㉡ 卅五年六月戊午朔己巳, 庫建、佐般出賣祠宮 □□□一胸于隸臣徐, 所取錢一. // 令史獻 監. 般手. <8-1002+8-1091>
- ㉢ 徑廩粟米四石. 卅一年七月辛亥朔朔日, 田官守敬、佐壬、稟人姪出稟罰戍公卒襄城武宜都肱、長利士五(伍)甌. // 令史逐視平. 壬手. <8-2246>
- ㉣ 粟米一石九斗少半斗. 卅三年十月甲辰朔壬戌, 發弩繹、尉史過出資罰戍士五(伍)醴陽□祿. 卅 // 令史兼視平. 過手. <8-761>
- ㉤ 粟米一石二斗六分升四. 令史逐視平. // 卅一年四月戊子, 貳春鄉守氏夫、佐吾、稟人藍稟隸妾廉. <8-1557>

㉠~㉤까지는 약 70여개 이상 등장하는 각 官·鄉의 물품 출납 기록이다. 어느 것이나 簡文의 형식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출납물품과 양+출납시기+출납책임자+출납대상자 그리고 令史가 ‘監’ 혹은 ‘視平’했음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위 사례 외에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令史가 감독한 물품 출납 기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官·鄉	物品 (용도)	지급대상	근거 簡號
倉	稻	徒隸	<8-211>, <8-217>
	稻	遷陵丞	<8-1345+8-2245>
	粟米	徒隸	<8-760>, <8-762>, <8-763> 외 4건
	粟米	冗作大女·屯戍	<8-1239>, <8-1545>
	餘徹豚肉·酒 (賣)	徒隸	<14-649>, <14-679> 외 2건
	白翰羽 (買)	小女子	<8-1549>
	?	令史·庫佐	<8-1031>, <8-1063>
庫	餘徹脯·酒 (賣)	?	<8-907+8-923+8-1422>, <8-1055>
	? (賣)	徒隸	<8-1002+8-1091>
少內	錦繒 (獻)		<8-891+8-933+8-2204> 외 1건
	錢 (購)	士伍	<8-811+8-1572>
?	錢 (購)	徒隸	<8-992>
司空	粟米	徒隸	<8-212+8-426+8-1632>
田官	粟米	貲賞	<8-764>
	粟米	屯戍·罰戍	<8-1574+8-1787>, <8-2246>
	? (賣)	罰戍·居貲	<8-781+8-1102>, <8-1328>
發弩	粟米 (賣)	罰戍	<8-761>
貳春鄉	粟米	徒隸	<8-1335>, <8-1557>, <8-2247>
啓陵鄉	稻	佐	<8-1550>
	粟米	徒隸	<8-925+8-2195>

위의 표를 근거로 당시 遷陵縣에서의 물품 출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선 감독 대상 관부로는 倉·庫·少內·司空·田官·發弩가 있고, 鄉으로는 貳春鄉과 啓陵鄉이 보인다. 물품 출납 내용은 상당히 복잡하다. 이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倉·司空·貳春鄉·啓陵鄉에서 徒隸들에게 식량(月食)을 지급하는 기록이다. 또한 倉·啓陵鄉에서는 遷陵丞 등의 縣屬吏에게, 倉·田官·發弩에서는 屯戍·罰戍·居貲 등에게 식량을 지급하거나 혹은 대출(貸)하는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倉과 庫에서는 徹祭한 酒·肉을 徒隸를 대상으로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기도 하였고, 특히 倉에서는 白翰羽를 매매하기도 하였다. 少內에서는 錦繒을 상부에 ‘獻’하는 기록과 공을 세운 이들에게 錢을 상금(購)으로 내리는 기록도 있다.

縣의 官과 鄉을 단위로 이루어지는 출납기록에는 항상 令史 감독자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 범위는 縣 단위 재정운용 혹은 물류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 즉 令史의 감독없이 어떠한 물품의 출납도 허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令史의 직속상관인 縣令·丞의 직접적인 통제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시사한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것은 令史가 각 官·鄉을 감독하는 만큼 官·鄉의 숫자만큼 배치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倉·庫·田官·少內·司空·發弩·貳春鄉·啓陵鄉만 세어보아도 8명의 令史가 필요한 셈이 된다. 앞서 언급한 行廟簡에서 27년 11월에서 6월까지 무려 11명의 令史 이름이 보이는 것은 실제로 당시 遷陵縣에 상당한 숫자의 令史들이 縣 속리로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단적인 비교로 『尹灣漢簡』에 등장하는 각 현의 속리 原額에 東海郡의 下邳·蘭陵·襄贛縣에 6인의 令史가 배치된 것이 최대임을 감안하면, 秦代 縣廷 屬吏에서 令史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⁸⁾

II. 令史의 轉任과 屬吏 운용

이번에는 遷陵縣 令史의 운용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里耶秦簡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① 資中令史陽里鈞伐閱 // 十一年九月隄爲史 // 爲鄉史九歲一日 // 爲田部史四歲三月十一日 // 爲令史二月 // □計 // 年卅六 // 戶計 // 可直司空曹. <8-269>

8) 『尹灣漢簡』에서 令史는 縣邑侯國, 都官 등에 없는 곳이 없으며, 東海郡을 통틀어서 모두 144인이다. 이는 斗食小吏중에는 가장 많은 숫자에 해당한다. (李解民, 「<東海郡吏員簿>所反映的漢代官制」, 李學勤·謝桂華 主編, 『簡帛研究』(2001), 廣西師範大學出版社, 2001, p.411)

①은 遷陵縣에 재직했던 令史 鈞의 관직경력서(伐閱)이다. 鈞는 資中縣 陽里 출신이며, 秦始皇 11년(前236) 9월 ‘史’가 된 이래, 鄉史·田部史를 거쳐 令史가 된 인물이다. 이외에도 鈞를 찾을 수 있다. <8-138>에는 27년 2월과 5월에 ‘令史鈞’가 분명히 표시되어 있다. 적어도 鈞는 27년 2월 이전에 遷陵縣으로 부임했음이 틀림없다.

鈞는 계속해서 ‘史’직을 전전하고 있다. 『睡虎地秦簡』編年記에 기록된 ‘喜’라는 인물은 秦始皇 3년(前244)에 ‘史’가 된 이후, ‘安陸□史’·‘安陸令史’·‘鄴令史’등을 역임하였다.⁹⁾ 鈞와 마찬가지로 喜 역시 ‘史’직을 역임하고 있는데, 이는 ‘史’가 요구하는 문자서사 능력을 감안한 인사조치로 추측된다.

令史 鈞는 資中縣 출신으로 遷陵縣으로 전임되었다.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몇몇 속리들의 관적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타지 출신이라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인명	遷陵縣 속리	신분	본적지(郡-縣-里)	근거 간호
詘	?	士五	北地 - 泥陽 - ?	<8-1466>
田□	均佐	上造	北地 - 郁郅 - 往春	<8-1277>
竭	史冗(冗史?)	公士	漢中 - 旬陽 - 隄陵	<8-1275>
操	冗佐	上造	漢中 - 旬陽 - 平陽	<8-1306>
謝	獄佐·少內守	士伍	巴 - 朐忍 - 成都	<8-988>, <8-1469>
鄒般	尉史	士伍	蜀 - 郫 - 小莫	<8-1364>, <8-1025>
亭	冗佐	公士	蜀 - 樊道 ¹⁰⁾ - 西里	<8-60+8-656+8-665+8-748>
鈞	令史		蜀(?) - 資中 ¹¹⁾ - 陽里	<8-269>
福	貳春鄉守	士五(伍)	蜀(?) - 棗(資)中 - 華里	<8-2014>
夫	啓陵鄉守	上造	蜀 - 梓潼 - 武昌	<8-1445>
毘	守丞	上造	南郡 - 競陵 - 陽處	<8-896>
援	庫佐冗佐	上造	? - 臨漢 - 都里	<8-1555>
駟	冗佐	上造	? - 陽陵 - 西就	<8-1450>
昌	丞	上造	平□縣	<8-754+8-1007>

위 자료에 등장하는 속리들의 본적지를 살펴보면, 南郡을 제외한 北地·漢中·巴·蜀郡은 모두 秦人의 故地이다. 令史 鈞가 蜀郡 資中縣에서 洞庭郡 遷陵縣으로 전임한 것도 특수한 사례는 아닌 것이며, 동시에 佐·史급 小吏도 타지에서 다수 전임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는 秦의 문서행정에 익숙한 이 지역 출신 속리들을 새로운 지배지역인 楚지역으로 대거 전임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楚지역의 행정운동을 秦식으로 재편하고, 秦과

9) 『睡虎地秦簡』編年記, “三年 八月, 喜掄史. // [四年], □軍. 十一月, 喜□安陸□史. // 六年, 四月, 爲安陸令史. // 七年, 正月, 甲寅, 鄴令史. // 十二年, 四月癸丑, 喜治獄鄴. // 十三年, 從軍. // 十五年, 從平陽軍.”

10) 秦代 蜀郡 속현이나 漢代 分置되면서 犍爲郡 속현이 되었다.

11) 秦代 소속 郡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록이 없지만, 『中國歷史地圖集』을 참고하면 蜀郡 속현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漢代 犍爲郡이 分置되면서 犍爲郡 속현이 되었다.

새로운 지배지와의 행정적 운영을 일원화하여 일률적인 행정 지배를 관철하려는 의도로 추측된다. 또한 이 중에는 同縣출신의 속리들도 보인다. 秦人의 故地에서 수천 리 떨어진 타향으로 이입한 현정 속리들이 특수한 당지의 언어, 풍습, 기득권에 대해 동향출신 속리들간의 상호 의지를 보장함으로써 현지 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한 조치였을 것이다.¹²⁾

이번에는 令史의 관직 경력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里耶秦簡』에는 많은 令史들이 등장하며, 곳곳에는 이들의 업무 활동이 기록되어 있다. 紀年簡에 기록된 이들의 인명을 중심으로 시기별로 분류해보면 이들의 관직 경력을 알 수 있다.¹³⁾ 이 중 추출된 11인의 令史 경력자들의 관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⁴⁾

㉠ 逐	(庫?)史→田官吏→	令 史	→啓陵鄉守 →令史
㉡ 尙	倉佐→		→啓陵鄉守 →令史
㉢ 華	尉史→		→少內守 →令史
㉣ 感	倉史→		→倉史
㉤ 囙	庫佐→司空守→		
㉥ 慶	廩守→		
㉦ 俱	司空守→		
㉧ 扁	少內守→		
㉨ 繞			→啓陵鄉守 →少內守
㉩ 敞			→司空守 →少內守
㉪ 夫			→啓陵鄉守 →司空畜夫 (臨沅縣)

일단 令史가 되기 전의 前職에 주목해보자. 앞서 언급했던 鈎나 喜의 경우와 같이 ‘史’ 직에서 令史로 전임한 경우는 ㉠㉢㉣의 사례이다. 이보다 눈에 띄는 점은 ㉤㉥㉦㉧와 같이 畜夫官을 거쳐 令史로 轉職한 경우이다. 또한 ㉠㉡㉢와 같이 이미 令史에서 啓陵鄉守·少內守와 같은 畜夫官으로 轉職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令史로 복귀한 경우도 존재한다.

12) 『尹灣漢簡』에도 縣 長吏중 상당수를 同郡 혹은 同縣 출신으로 임용한 것이 기록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李成珪, 『前漢 縣長吏의 任用方式: 東海郡의 例-尹灣漢牘<東海郡下轄 長吏名籍>의 分析』, 『歷史學報』160, 1998, pp.99. 참조.

13) 필자는 同名異人일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令史 경력자들 중에서도 최소한 3차레이상 紀年이 확실한 簡에 등장하고, 시기적으로도 수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인명이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간주하였다.

14) 근거 簡號: ㉠逐:<8-686>, <8-672>, <8-1335>, <8-1278>, <8-781>, <8-1574>, <8-2247>; ㉡尙:<8-1490+8-1518>, <8-216+8-351>, <8-925+8-2195>, <8-1241>, <8-760>, <8-45>, <8-1336>, <8-211>, <14-649>, <14-679>; ㉢華: <8-1008>, <8-433>, <8-58>, <8-1008>, <8-811>; ㉣感:<8-1690>, <8-1511>, <8-766>, <8-762>, <8-1239>, <8-1580>, <8-800>, <8-2249>, <8-606>, <8-763>, <8-448>, <8-45>, <8-1345>, <8-1540>, <8-1794>, <8-217>, <8-1153>, <8-211>; ㉤囙:<8-1514>, <9-2294>, <8-1135>, <8-1267>; ㉥慶: <8-78>, <8-163>, <8-138>; ㉦俱:<8-898+8-972>, <8-824>, <8-891>, <8-1751>; ㉧扁: <8-1783>, <8-1545>, <8-766>, <8-1081>, <8-764>, <8-1576>; ㉨繞: <8-1066>, <8-651>, <8-1751>, <8-891>; ㉩敞: <8-1490>, <8-666>, <8-2034>; ㉪夫: <8-138>, <8-1445>

일반적으로 令史는 縣의 小吏로서 고정된 직급이 없는 斗食吏로 이해된다. 반면, 耆夫官은 秦 중앙조정에서 임명했을 가능성이 있고, 漢代에는 일부 고정된 秩石도 가지고 있었던 ‘長吏에 가까운’ 縣 屬吏이다.¹⁵⁾ 직급에 있어서 耆夫官은 令史보다 상관이었음은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耆夫官에서 令史로의 전직은 일종의 좌천인가? 이 문제는 당시 遷陵縣의 令史를 포함한 속리 운용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고 생각되므로, 조금 번잡하지만 상세히 설명해보기로 한다

㉑ 逐이 처음 令史로 등장하는 것은 31년 4월 9일이다. 그가 啓陵鄉守로 기록된 시점은 4월 21일이다. 그런데 그가 다시 令史로 기록된 시점은 31년 6월 6일이다. 그렇다면 逐이 啓陵鄉守로 재직한 기간은 아무리 길게 잡아도 4월 9일에서 6월 6일 사이이므로 겨우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㉒ 尙이 令史로 기록된 시점은 30년 6월에서 31년 정월사이이다.¹⁶⁾ 啓陵鄉守로 기록된 시점은 31년 정월이며, 다시 令史로 등장하는 것은 31년 3월이다. 즉 尙이 令史에서 啓陵鄉守가 되고 다시 令史로 돌아온 기간은 30년 6월에서 31년 3월 사이 즉, 10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이다. ㉓ 華도 마찬가지로 35년 3월 시점에 令佐였으며(<8-433>), 少內守를 거쳐, 다시 令佐로 기록된 시기는 35년 6월이다(<8-1008+8-1461+8-1532>). 즉 華가 少內守로 재직한 기간은 3월에서 6월로, 최대 4개월을 넘지 못한다. ㉔ 囿가 司空守로 기록된 시점은 32년 10월이다. 여타 簡文을 참고해보면, 31년 정월의 司空守는 增이었으며(<8-212+8-426+8-1632>), 32년 정월의 司空守는 色이었다(<8-478>) 즉 囿가 司空守로 재직한 기간은 최대 1년이다. ㉕ 俱가 司空守로 등장하는 시점은 35년 5월~7월이다. 그가 令佐로 기록된 시점은 35년 9월의 簡文(<8-891+8-933+8-2204>)이다. 한편 34년 8월 시점에 司空守는 茲였다. ㉖ 俱가 司空守로 재직한 기간 역시 최대 1년 정도이다. ㉗ 繞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少內守 재직기간이다. 少內守로 등장하는 시점은 35년 9월 1일이다. 35년 8월 30일 시점에 少內守는 沈이었고, 9월 4일 簡文에도 少內守는 역시 沈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㉗ 繞가 재직한 것은 8월 30

15) 『張家山漢簡』 秩律에는 100石이상의 색부관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에 縣 小吏중에서 120石이상은 중앙 조정에서 직접 임명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등장하였다. (廖伯源, 『漢初縣吏之秩階及其任命 - 張家山漢簡研究之一』, 『社會科學戰線』, 2003-3, p.101)

16) 근거가 되는 <8-216+8-351>은 紀年이 殘缺되어 있다. 하지만 簡文에는 令史 尙과 함께 司空守 茲, 佐 得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司空守 茲는 30년 6월(<8-1647>)과 34년 8월(<8-1635>)에 등장한다. 30년 5월에는 司空守가 敞이었으며(<8-666>), 31년 정월에는 司空守가 增이었다(<8-212>, <8-474>) 그렇다면 司空守 茲는 일단 아무리 길어야 30년 5월에서 31년 정월 사이에 司空守로 재직했던 셈이 된다. 또한 33년 3월에 司空守 色이 등장하며(<8-1135>), 35년 8월에는 司空守 俱가 등장한다(<8-1544>) 그렇다면 司空守 茲는 역시 이 기간 사이에 재직하였다. 또한 佐 得은 31년 정월에 등장한다(<8-212+8-426+8-1632>) 28년 6월에는 司空佐로 郇가 등장하며(<8-985>) 33년 3월에는 司空佐로 午가 등장한다(<8-1135>) 그렇다면 역시 아무리 길어야 28년 6월에서 33년 3월 사이에 재직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 사이를 비교해보면 결국 이 간문은 30년 5월에서 31년 정월사이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일에서 9월 4일이었던 셈이다. ㉠敵도 이와 다르지 않다. 尙史 이후 그가 司空守로 기록된 시점은 30년 5월이다. 그런데 30년 4월의 司空守는 ‘文’이었고(<8-44>), 6월에는 ‘茲’였다.<8-1647> 역시 ㉠敵이 司空守로 재직하는 것은 4월에서 6월 사이, 2달이 채 되지 않는다. 또한 그가 少內守였던 것은 31년 後9월인데, 30년 9월의 少內守는 扁이었고(<8-1783+8-1852>), 32년 정월의 少內守는 是였다.<8-478> 즉 ㉠敵이 少內守로 임직한 것도 1년 정도에 불과하였다.

위에 제시된 尙史 경력자 11인 중에서 10인이 담당할 색부관직은 모두 임시직으로 추측된다. 秦律에는 관색부 부재시에는 尙史로 하여금 임시대리직을 맡게 한다는 조문이 포함되어 있다.¹⁷⁾ 위의 사례들은 모두 尙史에서 여타 색부관으로 전직한 것이 아니라 임시로 색부관직을 대리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사례를 살펴보면 尙史가 齋夫官을 임시로 대리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점이다. 위에 제시한 표에서 尙史들이 임시대리직을 수행했던 啓陵鄉守, 少內守, 司空守의 역임자들을 현재까지 공개된 『里耶秦簡』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⁸⁾

1) 啓陵鄉守		2) 少內守		3) 司空守	
시 기	인 명	시 기	인 명	시 기	인 명
28년 7월	趙	28년 7월	公	26년 3월	得
30년 10월	高	28년 8월	敬	26년 8월	穆
31년 1월	尙	29년 12월	𠃉	27년 11월	昌
31년 4월	逐	29년 後9월	武	28년 6월	長
31년 7월	帶	30년 9월 5일	增	29년 12월	色
32년 1월	夫	30년 9월 19일	扁	30년 4월	文
33년 1월	繞	31년 後9월	敵	30년 5월	敵
34년 7월	意	32년 1월	是	30년 6월	茲
35년 5월	恬	32년 4월	是	31년 1월	增
35년 8월	狐	33년 2월	履	32년 10월	𠃉
		34년 9월	狐	32년 1월	色
		35년 1월	壬	33년 3월	色
		35년 3~6월	華	34년 8월	茲
		35년 6월 19일	沈	35년 8월	俱
		35년 6월 21일	問		
		35년 8월 30일	沈		
		35년 9월 1일	繞		
		35년 9월 4일	沈		

17) 『睡虎地秦簡』, 置吏律, “官齋夫節(即)不存, 令君子毋(無)害者若令史守官, 毋令官佐·史守.”

18) 근거 簡號: 1) 啓陵鄉守: 趙<8-1652>, 高<8-801>, 尙<8-925>, <8-1241>, 逐<8-1278>, 帶<8-1550>, 夫<8-157>, 繞<8-651>, 意<8-1525>, 恬<8-770>, 狐<8-769>. 2) 少內守: 公<8-75>, 敬<8-409>, 𠃉<8-60>, 武<8-164>, 增<8-890+8-1583>, 扁<8-1783>, 敵<8-2034>, 是<8-478>, <8-152>, 履<8-561>, 狐<8-806>, <8-1170>, 壬<8-1457>, 華<8-58>, 沈<8-888>, <8-914>, <8-1214>, 問<8-1008>, 繞<8-1751>, <8-891>. 3) 司空守: 得<8-133>, 穆<8-135>, 昌<8-1665>, 長<8-985>, 色<8-1524>, <8-478>, <8-1135>, 文<8-44>, 敵<8-666>, 茲<8-1647>, <8-1635>, 增<8-212>, <8-474>, 𠃉<9-2294>, 色<8-1524>, <8-478>, <8-1135>, 俱<8-824>, <8-1544>, <8-2093>.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啓陵鄉守 인명은 현재까지 확인된 紀年簡에 의하면 모두 11명(趙·高·歟·尙·逐·帶·夫·繞·意·恬·狐)이다. 이 중 歟은 정확한 재직기간을 알 수 없어 일단 제외하였다. 11명 중에서 임시직으로 확실한 이는 尙·逐·繞 3명이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은 帶·恬 2인이다. 또한 少內守로 등장하는 인명은 모두 15명이다. 이 중에서 敝·華·問·繞 4인과 같이 확실히 임시직을 수행했던 이들을 제외하고도, 재직기간 1년 이하의 임직자는 敬·增·扁·壬 모두 4명이다. 마지막으로 司空守 인명은 모두 12명이며, 敝와 같이 임시 대리직이었던 1명을 제외하고, 재직기간 1년 이하의 司空守는 穆·茲·囿 모두 3명이다.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啓陵鄉守·少內守·司空守 역임자에 관한 자료를 분석해보면, 遷陵縣에서는 官·鄉을 막론하고 耆夫의 교체 혹은 부재가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¹⁹⁾ 이에 수반된 현상은 令史가 耆夫의 임시대리로서 耆夫官을 운영하는 누적기간이 늘어난다는 점이다. 令史가 縣令·丞의 직속 속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縣廷이 令史를 통해 耆夫官을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기간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Ⅲ. 縣廷의 구조와 令史의 위상

이상으로 遷陵縣 令史는 각 官·鄉에 파견되어 물품의 출납에 있어서 포괄적인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색부관 부재시에는 令史가 이를 임시로 대리하였으며, 또한 이러한 대리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秦代 縣廷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令史의 이러한 움직임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지를 살펴보기로 하자.

秦漢代 縣政을 총괄하는 최고 장관은 縣令·長이었고, 이를 보좌하는 丞과 尉는 각기 행정·사법과 군사를 분담하였다. 縣令·丞 휘하에는 다수의 令史·令佐가 배치되어 縣의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관색부로 총칭되는 다수의 耆夫官들이 존재하였다. 이들은 주로 현내 생산부문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일반적으로 耆夫-佐-史로 구성되어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里耶秦簡』에서는 耆夫官중에서 司空·少內·倉·庫·廩·田官·發弩·畜官이 확인된다.

이와 같이 秦代의 縣廷은 크게 縣令·丞을 중심으로 한 廷과 耆夫官을 중심으로 한 官으로 대분된다. 秦律에는 현정과 색부관을 공간적으로 구분한 조문이 존재한다. 즉 기물 혹은 문서를 보관하는 창고에 대한 야간 순찰시 官耆夫는 官을, 令史는 廷府를 순찰하도

¹⁹⁾ 이들의 재직기간은 평균적으로는 약 1년이 고작이다. 더욱이 현재까지 공개된 것만을 토대로 정리한 것인 만큼, 앞으로 공개될 자료를 감안하면 이 평균 재직기간은 더욱 짧아질 가능성도 높고, 그만큼 임시 대리자들의 숫자도 많아질 것이다.

록 한다²⁰⁾는 것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官과 廷은 각기 官齋夫와 令史의 근무장소로서²¹⁾, 양자 모두 縣令의 관할하에 있으나, 그 내부에서는 공간적으로 구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里耶秦簡』에 등장하는 개개 官의 위치를 비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田官은 貳春鄉에 존재하고 있음은 확인할 수 있다. 貳春鄉으로 하여금 田官으로 문서를 전송하도록 한 기록²²⁾, 31년 4월에서 32년 8월까지 田官과 貳春鄉의 물품 출납을 令史 逐이 함께 감독했다는 점²³⁾, ‘丯’이라는 인물이 30년 6월에서 31년 7월까지 계속해서 田官佐로 재직중이었으나 유독 31년 3월에는 貳春鄉佐로 기록되어 있는 점²⁴⁾ 등은 田官이 縣廷으로부터 이탈하여 貳春鄉에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廷과 官 사이의 구분은 단지 공간적인 구분만은 아닌 것 같다. 다음의 자료를 살펴보자.

① 四月丙午朔癸丑, 遷陵守丞色下: 少內謹案致之. 書到言, 署金布發, 它如律令. /欣手.
/四月癸丑水十一刻刻下五, 守府快行少內. <8-155>

①는 遷陵守丞 色이 少內에 문서를 송달하면서, ‘문서가 도착하면 (접수했음을) 보고하는데, 金布에서 개봉하도록 서명하라’는 내용이다. 여기에는 金布와 少內가 현 체제상 명백히 구분되어 나타난다. 金布는 일단 金布曹로 여겨지는데, 『里耶秦簡』 곳곳에는 ‘廷金布發’이라는 簡牌 및 標題簡이 다수 등장한다. 또한 遷陵守丞이 少內守의 보고를 자신이 아니라 金布曹로 보내라고 한 것은, 金布曹가 廷에 소속된 하위 부서임과 동시에 縣丞과 일체화되어 있는 행정부서이며, 반대로 少內는 현정의 바깥에 위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행정문서에는 官과 廷사이의 문서 왕래에 있어서 ‘詣廷’, ‘廷曰’ 등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官 자신이 廷과 동일시하지 않고, 다른 계통의 기구로 인식했음을 보여준다.²⁵⁾

이와 같이 廷에 대해 官이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고, 행정상 他者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은 秦代 縣廷의 구조가 縣令을 중심으로 일원적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廷과 官이 상대적으로 이원적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 같다.

縣令이 縣政을 총괄하는 최고 장관인 이상 이들 齋夫官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하는

20) 『睡虎地秦簡』, 內史雜律, “毋敢以火入臧(藏)府·書府中. 吏已收臧(藏), 官齋夫及吏夜更行官. 毋火, 乃閉門戶. 令令史循其廷府. 節(即)新爲吏舍, 毋依臧(藏)府·書府.”

21) 仲山茂, 『秦漢時代の‘官’と‘曹’ - 縣の部局組織』, 『東洋學報』 82-4, 2001, p.41.

22) “ \square 傳畜官. 貳春鄉傳田官, 別貳春亭、唐亭. \square ” <8-1114+8-1150>

23) 근거 簡號: <8-1557>, <8-1335>, <8-781+8-1102>, <8-2246>, <8-1574+8-1787>, <8-2247>

24) 근거 簡號: <8-1566>, <9-981>, <8-764>, <8-1576>, <8-1574>, <8-2246>

25) 青木俊介, 『里耶秦簡に見える縣の部局組織について』, 『中國出土資料研究』 9, 2005, pp.106~109.

문제는 현정 운영의 주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애초에 국가권력이 색부조직에 대해 상대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근본 원인은 이들이 기본적으로 縣내 생산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현지 사정에 적합한 방식을 통해 효율적인 생산을 이끌어내기 위함이었다.²⁶⁾ 그렇다면 廷과 官의 문제는 더 나아가 秦代 廷으로 대변되는 국가권력이 官으로 상징되는 지역 세력을 어떤 식으로 통치할 것인가하는 문제로도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廷의 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다면, 이들에 대한 자율성 보장은 이원적인 현정 구조하에서 廷과 官 사이의 잠재적인 대립 혹은 갈등을 야기하여, 효율적인 생산은커녕, 오히려 郡縣制적 지배 자체에도 위협이 될 가능성도 상정된다.

秦律에서 확인되는 官에 대한 廷의 엄격한 통제는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 것으로 추측된다. 예를 들어 官畜夫가 부재할 시, 그 휘하의 佐史가 아닌 감독자인 令史로 하여금 守官하도록 한 律文은 畜夫 부재 시 官 내부에서 그 업무를 통할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廷의 통할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²⁷⁾ 또한 畜夫가 타지로 전직할 경우 본래 휘하에 있던 佐·史를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규정²⁸⁾은 畜夫와 그 휘하 속리들간에 장기간 업무를 통해 맺어진 개인적 관계, 더 나아가서는 家臣적 세력을 구축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²⁹⁾ 또한 『里耶秦簡』의 수많은 행정 문서들이 모두 縣廷을 주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縣廷이 문서행정을 독점적으로 장악함으로써, 官에 대한 절대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함이었다.³⁰⁾

『里耶秦簡』에 기록되어 있는 令史의 업무와 운용 양상은 이러한 구조적 관점하에서만 본질적인 이해가 가능할 것이다. 즉 廷과 官이라는 이원적인 구조하에서 縣政을 총괄하는 縣令·丞이 다양한 각 官에 대해 일일이 자신의 속리인 令史를 파견함으로써 이들의 생산업무의 결과물인 각종 물품의 출납과 운용을 세밀하게 감독하게 하였다. 또한 색부의 빈번한 교체에 따른 부재 기간에는 令史로 하여금 직접 그 官의 업무를 대리하도록 함으로써 각 官에 대한 廷의 직접적인 통제관리를 시행하였던 것이다.

결론

秦代 縣廷의 구조속에서 令史는 상당히 독특한 위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현령·

26)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 縣의 組織과 그 機能을 中心으로』, 『東洋史學研究』 31, 1989, pp.48-50.

27) 土口史記, 『戰國·秦代の縣 - 縣廷と‘官’의關係をめぐる一考察』, 『史林』 95-1, 2012, p.24.

28) 『睡虎地秦簡』, 置吏律, “畜夫之送見它官者, 不得除其故官佐·吏以之新官.”

29) 高恒, 『秦簡牘中的職官及其有關問題』, 『秦漢簡牘中法制文書輯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8, p.31.

30) 土口史記, 위의 논문, pp.27~29.

승에 직속된 현정의 小吏에 불과했지만, 이들은 縣令을 대신하여 官·鄉을 감독하고, 耨夫 부재시 官의 업무를 대리로 주관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里耶秦簡』의 발견을 통해 이들의 감독 범위가 각 官·鄉에서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물류 운용이라는 포괄적인 범위에 미치고 있었으며, 동시에 耨夫를 임시 대리하는 횃수도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임시 대리 기간의 누적도 상당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秦代 遷陵縣에서 이루어지는 令史의 이러한 운용방식은 당시 秦縣 내부의 廷과 官이 상대적으로 이원화된 가운데에서 일어난 구조적인 현상이었다. 즉 令史가 각 官·鄉에 대해 자신의 속리인 令史를 파견, 감독, 대리하도록 하였으며, 令史는 바로 이러한 令史의 목적을 구현하는 실질적인 매개 수단으로서의 위상을 지니고 있었던 것이다.

秦·漢初 郡에 대한 고찰

— 內史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전혜란(숙명여대)

目次

- I. 머리말
- II. 戰國秦 縣·郡의 출현과 內史와 郡의 整備
- III. 戰國秦·統一秦·漢初의 內史와 郡
- IV. 漢初 中央集權體制確立 과정 속 郡
- V. 맺음말

I. 머리말

古代 中國에서부터 성립한 中央集權體制를 유지할 수 있었던 제도적 장치인 郡縣制의 기원과 성격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다. 하지만 戰國秦에서부터 漢初까지 郡 자체의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며, 그 역할과 권한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등장하였다.¹⁾ 특히 戰國時代 秦律(『睡虎地秦簡』)에 보이는 ‘內史·縣의 일원적 체계’로 인해 秦의 郡은 縣의 상위기관으로써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고, 군사업무 또는 중개역할 정도만 담당했다고 평가되었다. 이와 함께 漢初의 『張家山漢簡』에서 보이는 ‘郡·縣’의 행정체계는 인정은 하지만, 여전히 漢初 郡도 中央과 縣과의 매개 역할 및 감찰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이었다.²⁾ 漢初 郡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秦의 郡이 漢初와

1) 紙屋正和, 『前漢時代の郡·國縣の守·相の支配權の強化について』(『東洋史研究』 41-2, 1982); 山田勝芳,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二年律令』と秦漢史研究』(『日本秦漢史學會會報』 3, 2002); 森谷一樹, 『『二年律令』にみえる內史について』(『江陵張家山二四七號出土漢律令の研究』, 富谷至 編, 朋友書店, 2006);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社會システム』(汲古書院, 2009); 張功, 『漢代郡縣關係探析』(『青海師範大學學報』, 2003-4); 周張山, 『漢代地方政治史論』(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李成珪, 『秦의 地方行政組織과 그 性格: 縣의 組織과 그 機能을 中心으로』(『東洋史學研究』 31, 1989); 任仲嫻, 『戰國 秦의 地方 行政組織』(『中國學論叢』 7, 1993); 金秉駿, 『漢代 太守府 屬吏組織의 變化와 그 性格: 江蘇省 連雲港 出土 尹灣漢簡의 분석을 中心으로』(『古代中國의 理解』 3 (지식산업사, 1997).

2) 前漢 初期의 지방지배는 주로 縣에 의해 행해지고 前漢 中期 이후 郡守가 지배권을 강화해간다는 견해가 제출되었다.(紙屋正和, 『前漢郡縣統治制度の展開について(上)』 『福岡大學人文論叢』

같이 소극적 역할을 했다는 견해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다. 그런데 최근 『里耶秦簡』(『里耶秦簡牘校釋』) 등의 ‘새로운 簡牘 출토와 釋文의 발표’로 戰國秦에서 漢初까지 郡의 역할과 성격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된다. 『睡虎地秦簡』, 『張家山漢簡』, 『里耶秦簡』등을 포함해서 秦·漢簡을 분석하면, 秦·漢初 郡에 대한 역할과 권한이 일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존의 인식보다 郡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이다.³⁾ 이렇게 秦·漢初의 行政體系⁴⁾에서 郡의 역할과 권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이 없어 보인다. 특히 『里耶秦簡』(『里耶秦簡牘校釋』)을 분석하면, 戰國時代 秦律(『睡虎地秦簡』)에 나타나는 ‘內史-縣의 일원적 체계’로 인하여 秦의 郡이 소극적 역할을 했다는 견해와 다른 모습이 보인다. 이러한 점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內史를 통해 郡에 대한 고찰을 시도하고자 했다. 또한 漢初의 郡이 內史, 와 여러 중앙관직과 같은 二千石의 秩級으로 규정되고 있는 사실에서, 郡에 대하여 內史를 그 중심으로 놓고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러한 관점을 토대로 戰國秦에서 漢初까지 內史와 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簡牘자료를 중심으로 시대에 따라 그 역할과 권한을 분석해보려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통괄하여 戰國秦에서 漢初까지 郡의 변화과정을 그려보고, 그 위상을 평가해 봄으로써 郡이 中央集權體制 완성의 한 指標임을 고찰하고자 한다.

II. 戰國秦 縣·郡의 출현과 內史와 郡의 整備

1. 春秋·戰國時代 秦 縣·郡의 출현과 성격

먼저 성공적으로 縣을 中央에 직속된 縣으로서 수립시킨 國들은 그 세력이 막강해졌

13-4, 1982); 前漢 初期에 제도상으로는 郡의 설치로 縣은 郡의 下級機關이었지만, 그 역할은 지방에 군사를 주둔시켜 지키거나 管轄 縣을 감독하는 大縣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하였다. (張功, 「漢代郡縣關係探析」, 『青海師範大學學報』, 2003-4, p.60); 景帝 이전의 郡守는 군사와 감찰관의 성격이 강하고 행정관의 성격은 약하여 縣 이하 관료조직을 유기적으로 지배하지 못했으며, 武帝 이후 국가기구의 정비강화에 따라 郡, 相은 구체적 행정에 관여하고 상급의 행정관으로서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고 했다. (周張山, 『漢代地方政治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

- 3) 『睡虎地秦簡』등의 출토로 秦漢初 郡에 대한 소극적 측면이 부각되었지만, 다시 郡의 권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등장한다. 山田勝芳는 『張家山漢簡』을 통해서 郡이 행정과 재판에 대하여 그 권한이 강한 편이라고 했다. (山田勝芳, 「張家山二四七號漢墓竹簡 『二年律令』と秦漢史研究」, 『日本秦漢史學會會報』 3, 2002); 森谷一樹는 內史 기능을 분석하면서 郡에 대한 縣의 독립성이 강했다는 의견은 수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森谷一樹, 「『二年律令』にみえる內史について」, 『江陵張家山二四七號出土漢律令の研究』, 富谷至 編, 朋友書店, 2006); 藤田勝久는 『里耶秦簡』을 통한 郡의 새로운 역할을 언급했다. (藤田勝久, 『中國古代國家と社會システム』, 汲古書院, 2009).
- 4) 行政은 형식적으로는 행정부가 실시하는 작용의 전체로, 법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구체적으로 국가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 형성적 국가 활동이다. 여기서는 정치와 사무, 군사, 법률 등의 모든 것을 포괄하는 역할을 ‘行政體制’로 지칭한다.

다. 즉, 秦은 다른 國들과 달리 縣을 봉건의 성격으로 발전시키지 않은 것에 그 성공이 있다.⁵⁾ 이러한 秦은 점차 국력의 신장을 그 목적으로 두고 縣을 설치했으며, 孝公이 商鞅의 變法을 받아들여 강력한 中央集權制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⁶⁾ 秦에 있어 郡도 마찬가지로 다른 六國과는 차이가 있었다. 물론 최초로 郡은 軍事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설치되었다고는 하지만, 秦國은 六國과는 다르게 정복전쟁을 통해 편입된 대규모의 영역을 처리하기 위해 행정상의 매개로 郡을 설치한 경향이 다분했다. 戰國秦의 郡에서는 兵器製造의 권한⁷⁾과 上計制度는 일찍이 확립되어 있어 보인다.⁸⁾ 秦의 郡은 처음 등장하는 시기부터 縣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로 변모되기 용이한 조건을 갖추었다. 이렇게 秦 郡만의 특징은 秦이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하나의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2. 戰國秦의 영역확장과 內史의 변화

『睡虎地秦簡』의 秦律에서 縣의 상급기관으로 군사와 경제방면 뿐 아니라 諸 분야의 행정도 관할하고 있는 것은 郡이 아니라 內史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睡虎地秦簡·語書』에는 郡이 縣 내의 범법한 사건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여 縣에 직접 개입하고

-
- 5) 春秋時代의 晉과 齊의 縣이 卿大夫에게 封邑으로 수여됨으로써 봉건적 색채가 강한 반면에 秦과 楚의 縣은 君主의 직할지로 戰國시기 이후에 秦漢적 縣으로 연결된다고 했다.(顧詒綱, 『春秋時代의 縣』, 禹貢學會, 1937).
- 6) 秦은 春秋時代 末期가 되자 각국 사이의 싸움이 격화되면서 서민에게도 軍役을 부과할 필요성을 절감했다. 따라서 왕으로서의 지배권 확립을 강화하여 徵發·徵稅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관리를 파견하고, 縣을 재편성·직할지화해서 지배하기 시작했다. “秦의 孝公이 商鞅의 건의를 받아들여 나라의 작은 촌락을 합쳐 41縣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은 중앙에 직속된 縣이 제도적으로 완비되었음을 시사한다. 여기에서의 縣이 바로 春秋時代의 한계를 극복한 이후 등장한 秦漢帝國 地方行政體制의 原形이다.
- 7) 郡이 중앙관의 직무를 행한 단적인 사례로 中央에는 相邦, 丞相의 관할이 된 청동기의 監造를 戰國秦에서는 郡에서 행한 것이다. 첫째, 秦의 工官은 內史의 관할 내에 설치했는데 內史 이외의 지역에는 郡에 설치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內史에 설치된 工官은 相邦 또는 丞相이 최고책임자였으나, 郡이 설치된 工官은 郡守가 최고책임자였다. 마지막으로, 內史에 설치된 工官은 工官嗇夫→縣令→內史→相邦이라는 체계로 관할되었는데, 郡이 설치된 工官은 郡守와 工官 間에 工官嗇夫→縣令→郡의 체계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즉 郡은 縣의 兵器제조와 관리를 통제하는 상급기관으로 출현한 것이다.(角谷定俊, 『秦における青銅工業の一考察-工官を中心に-』, 『駿台史學』 55, 東京, 1982); 또한 縣令이 兵기를 督造한 三晉과 달리 秦에는 縣 단독으로 兵器를 제조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睡虎地秦簡』 秦律에는 縣소속 作坊이 兵器를 제조한 것은 보이나, 출토 자료인 銘文에는 최고책임자로서의 郡守가 督造한 것으로 나타난다. 郡守가 監造權이 있다는 것은 相邦, 丞相의 기능을 內史 지역 외의 郡에서 대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邊郡에서 발견된 兵器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王五年 上郡守疾戈”와 “上郡守疾之造 戟”으로서 王 五年이라는 연대는 惠文王 後元 5년(B.C.320)이라고 보아야 한다.
- 8) 魏에서는 郡이 아니라 西門豹가 鄴令이 되어 일년 후 직접 上計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縣이 직접 朝廷에 상계하고 있다. 그러나 “秦의 昭王이 王稽를 河東守로 임명했는데, 삼년이나 上計를 하지 않았다”는 기사를 통해 戰國秦의 郡守가 이미 上計하는 제도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있어 상반된 측면이 보인다. 이것은 郡이 縣의 상급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명확한 결론을 내려주지 못한다.

먼저 『睡虎地秦簡』은 오랜 시간동안 축적된 律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睡虎地秦律·倉律』에는 關中지역에서 재배되는 곡물인 禾가 보이는 조문과, 같은 倉律에 巴蜀 등 남방지역의 농사와 관련되는 稻가 보이는 조문이 함께 보인다. 이렇게 禾가 등장하는 律文은 秦의 영토가 關中으로 국한된 시점에 형성되었을 것이고, 稻가 등장하는 律文은 남방지역을 점령한 후에 추가된 律일 것이다. 또한 『睡虎地秦簡·法律答問』에 있는 일부 律文이 형성연대가 매우 빠르다는 사실이다. 編年記에 의하면 昭王·孝文王·莊襄王은 모두 稱王을 하고 있으나 律文에 계속 稱公이 보이는 이유는, 律文을 추가하되 先王들의 律文 자체에 대해서는 수정을 가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다.⁹⁾ 이처럼 『睡虎地秦簡』은 孝公시기부터 이미 있었던 律令이라는 것인데, 이러한 秦律은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통일 전까지 개정될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¹⁰⁾ 孝公시기가 조금 지난 이후 秦은 郡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郡설치 전에 이미 內史에 의해 內史지역(關中)의 縣이 관할된 사실이 계속해서 『睡虎地秦簡』에 남아 있게 되었다는 견해가 도출된다. 그래서 마치 內史가 戰國時代에 郡에 소속된 縣을 포함하여 전국의 縣을 직접 관할했다는 의견이 일반화되었던 것 같다. 이와 같이 『睡虎地秦律』의 ‘內史-縣 중심의 체제’는 戰國秦의 全時期와 全領域의 범위를 반영하는 것은 아닌 듯하다.

秦은 영토 확장 이전에 이미 京師지역의 縣을 관할하는 郡레벨의 內史가 정비되어 있었다. 그런데 內史는 ‘관직명’이자, 京師지역을 지칭하는 ‘지역명’이기도 했다.¹¹⁾ 秦의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內史 이외의 지역은 郡에서 관할하는 체계로 나아갔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內史와 內史地의 성격과 관할 범위와 함께 고찰해야 郡의 관할 범위와 그 역할을 명확히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縣의 설치 이전에 內史의 직무는 國君을 보좌하는 중앙의 관직이었는데,¹²⁾ 다수의 縣이

-
- 9) 또한 法律答問은 律文 중 어구의 의미 및 특수사례에 대한 刑의 적용 등을 문답형식으로 해설한 실무자료로 ‘公祠’ 어구의 의미를 ‘王室祠’로 풀이하고 있다. ‘公祠’는 ‘王室祠’와 같은 뜻을 의미하는데, 시대 차이에 의한 異稱이다. ‘公祠’는 稱公시기인 孝公 때 까지의 것이고, ‘王室祠’는 稱王한 惠文王 이후의 것이다.
- 10) 秦始皇 27년(B.C.220)에서 二世皇帝 3년(B.C.207)까지 14년 간의 律令인 『龍崗秦簡』에는 백성대신 ‘黔首’가 9개 보이고 ‘馳道’와 ‘皇帝’ 등 통일 이후의 法律用語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또한 『里耶秦簡』에서도 통일 이후의 용어가 개정되어 있음의 詔書가 보인다. 과거 통일전쟁 기간 중에는 法律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여유가 없었지만, 통일 후에는 새로운 帝國으로서의 변화를 위해 개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 11) 『漢書』 卷28下 『地理志第八下』, p.1639, “本秦京師爲內史, 分天下作三十六郡.”, 본은 본래라는 뜻으로 內史는 원래 관청과 지역의 명칭으로 겸칭으로, 36郡의 설치는 오히려 內史地가 秦통일 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 12) 周代의 內史는 史官과 內官의 직무 이외에도 治官과 비서관의 직무를 담당했고, 또한 “至政事

설치되고 공식적으로 商鞅의 縣制가 시행될 정도로 京師를 중심으로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내관적 성격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商鞅의 耕戰체제에서 영토전쟁에 필요한 식량과 군비를 조달하는 중요한 직무를 위임하기 위해 황제의 측근인 內史가 재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¹³⁾ 이 시기에 首都는 咸陽으로 縣과 동급이었고, 秦이 영역을 확장할수록 內史의 관할범위도 확대되었다. 그런데 『睡虎地秦律』을 보면 內史는 財政관련된 경제 분야 뿐 아니라 諸 분야를 관할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후 점차로 王權의 中央集中化를 위해 君主의 정책을 집행하는 실무행정관의 역할과 때때로 군사도 관할하는 역할¹⁴⁾을 담당하게 되었던 것이다. 가장 오래된 자료를 통해 보이는 秦 최초의 內史인 王廖 이후, 惠文王시대(B.C.324-311)에 內史인 操(“秦內史操伐”¹⁵⁾)라는 인물이 보인다. 이는 秦의 최초의 郡이라 할 수 있는 上郡이 설치되기 바로 직전시기이다. 이때까지도 秦은 內史가 전국을 모두 관할할 수 있을 정도의 영토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후 上郡이 설치되면서 ‘內史지역’이라는 것이 점차로 구분되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이후 秦은 關中지역에서 기원하여 점차로 동쪽으로 세력범위를 넓히며 천하를 통일했다.

3. 戰國秦의 영역확장과 郡의 설치

上郡(B.C.328)에서 南陽郡(B.C.273)의 설치까지 약 50년 동안은 內史地를 둘러싼 關中 주변의 郡들이 설치되었다. 그 이후, 秦統一까지(B.C.221) 약 50년 동안은 20개 이상의 郡이 급속도로 설치될 정도로 정복전쟁이 활발하였다. 초기에는 軍事방면의 역할을 중점적으로 담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秦의 郡守가 독자적으로 督造한 兵器가 보인다. 또한 점차적으로 설치된 郡이 秦의 본토로써의 역할을 감당하는 과정이 巴·蜀郡에 보인다. 蜀侯와 중앙에서 직접 파견된 蜀守가 함께 蜀을 통치했고, 秦 본토에서는 백성 萬戶를 이주시켜 巴蜀 지역의 안정을 꾀했다. 巴蜀 지역을 점령한지 7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지역에 田律이 반포됐다. 巴·蜀 지역 점령 31년 후(B.C.285)에 蜀侯가 반란을 꾀했다고 하여 蜀守만 두어 秦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¹⁶⁾

또한 『睡虎地秦簡·封診式』을 보면, 咸陽지역에서 成都로 문서를 보낼 때 중간에 縣을 경유하기는 했지만 최종 수령자는 成都에 있는 蜀郡太守이며, 太守府에 보고한 후에 遷

以逆會計”처럼 재정관의 흔적이 있다. 內史는 이미 재정관과 행정관의 역할을 초기부터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었다.

13) 이는 『睡虎地秦律』의 내용이 대다수 경제분야에 집중되고, 武王 2년(B.C.309)의 四川省 『青川木牘』에서 田律에 관여하는 모습을 통해 內史가 중앙기구로 전국 財政을 총괄했다고 보인다.

14) 秦王 政 17년 內史 騰이 韓을 공격하여 韓王 安을 사로잡고 그의 땅을 빼앗아 郡으로 만들어 命을 내려 潁川이라 부르게 했는데, 이는 內史가 군사를 통괄한 것으로 보인다.

15) 王輝·蕭春源, 『珍秦齋藏王八年內史操戈』.

16) 『華陽國志』卷3 『蜀志』五, pp.128-129, “(赧王)三十年, 疑蜀侯綰反, 王復誅之. 但置蜀守.”

徙된 죄수의 식량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외에도 秦의 蜀守로 임명된 李永은 洙水의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渠를 개착했는데, 이는 郡이 단순한 軍區에서 行政區로 전환하여 행정업무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외에도 『墨子·號令』의 기록에는 秦의 郡에 대한 사정을 반영하는 것이 있다.¹⁷⁾ 그 내용은 城의 郡守가 위로 君主를 받들고 하부기구로서 縣에 명령을 발할 수 있으며, 수비 시에 적의 습격을 받을 경우에 守 이하의 노인과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전쟁 시의 행동요령과 縣令에 관한 상벌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이는 郡이 縣令을 통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秦이 동방 六國의 영토에서 획득한 縣을 “上郡十五縣”, “上黨郡十七縣” 등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은 郡과 縣이 하나의 통속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郡의 縣 통제가 없었다면 “上郡十五縣”이라 기술하지 않고 “□□縣 等 15縣”이라 했을 것이다.¹⁸⁾

위에서 언급했듯이 郡은 軍事업무 뿐 아니라,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 어느 지역까지 內史가 관할한 것이고, 어느 시기에 시작하여 어느 지역에 郡守의 행정적 권한이 이루어져 관할한 것인가? 秦 최초의 郡이 설치된 惠文王시기에 이미 郡守가 직접 병기를 督造한 銘文이 있었다. 그러나 확실히 縣의 상급기관으로서 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늦어도 秦 昭王시기로 보인다. 이 시기 河東守 王稽가 3년 동안 上計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郡수가 직접 上計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昭王시기 河東太守 王稽의 무렵부터 南郡守 藤의 『睡虎地秦簡·語書』가 발포된 秦王 政 20년 사이에 郡은 內史와 병칭될 정도의 역할과 권한을 획득하게 된 것이다. 內史에 집중된 모든 행정권이 일시에 郡에 위임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새로운 영토에도 內史의 영향력이 미치다가 郡에 이양되어 갔다. 『睡虎地秦簡·語書』에 보이는 南郡守는 屬縣의 인사, 행정명령, 考課, 치안유지의 권한을 보유했는데, 이는 秦王 政 20년 무렵의 郡守의 권한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睡虎地秦律』에는 郡에 대한 법률규정이 많지 않지만, 郡守의 권한은 B.C.320년(上郡 및 巴郡 설치)부터 점차 증대되어 B.C.227년까지 소속 縣에 행정명령을 내릴 정도로 그 권한이 컸던 것이다. 또한 秦代 郡守로 임명된 인물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軍事업무도 담당하면서 內史보다 그 지위도 낮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¹⁹⁾戰國秦에서의 郡은 결코 그 영향력이 적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 장

17) 『墨子·號令第七十』; 關內侯, 五大夫, 公乘 등 秦제의 官爵, 秩祿, 刑制가 보이는 것은 이것이 秦에서 기술된 것임을 보여준다.

18) 任仲嫻, 『戰國 秦의 地方 行政組織』, 『中國學論叢』 7, 1993, pp.103-105.

19) 惠文王 시기의 上郡守였던 樗里疾과 蜀郡守였던 司馬錯과 張若, 昭王시기의 漢中太守였던 任鄙, 秦戈의 銘文에 보이는 昭王시기의 上郡守인 向壽는 유명한 인물들이다. 樗里疾는 惠文王 8년에 右更으로서 曲沃을 정벌했고, 秦惠王 25년에 장군이 되어 趙를 정벌했다. 司馬錯은 惠文王, 武王, 昭王에 걸쳐 활동한 장군으로 張儀와 함께 蜀을 멸망시켰고, 昭王 16년에는 魏의 軹·鄧을 昭王 27년에는 隴西에서 출발해서 蜀에서 楚를 공격했다. 張若도 楚를 정벌했다. 任鄙는 씨름을 좋아한 武王시기에 力士였는데 중앙의 높은 관직에 있었다. 向壽는 昭王 13년 秦의 兵을 인

에서는 戰國秦에서 漢初까지의 郡을 고찰하여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였고, 그 권한은 어떠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Ⅲ. 戰國秦·統一秦·漢初의 內史와 郡

1. 戰國秦·統一秦·漢初의 郡府 조직

秦에서는 郡의 長官은 郡守(秦守=太守)라 하고 별도로 治安담당인 郡尉(改名하여 都尉), 監察 담당²⁰⁾인 監御史가 있었지만, 漢에서는 監御史를 폐지하고 丞相이 사람을 派遣하여 監察케 하는 점 외에는 대체로 秦의 地方制度를 계승했다. 都吏는 郡의 佐吏로, 漢初 郡國에서는 都吏로 하여금 屬縣들을 循行하게 했다.²¹⁾

郡屬吏에 대해서 『睡虎地秦簡·置吏律』을 통해서 이미 秦國에서 郡守는 屬吏 임면권을 부여받은 사실을 볼 수 있다. 郡의 屬吏로 『里耶秦簡』 16-5,6에 洞庭郡의 郡屬吏인 卒史(假卒史)와 屬이 보인다. 이외에도 『張家山漢簡·奏讞書』·案例14,15,18,22에 卒史, 假卒史 등의 활동모습이 보인다.²²⁾ 또한 『關隴秦漢墓簡牘』의 秦始皇34년 曆譜에 南郡 太守府 소속의 史와 屬吏組織인 左曹도 보인다. 이외에 郡守 밑에도 정식관리는 아니지만 郡守를 위해 일하는 정원 외 屬吏로는 門下(詰問, 密書, 경호 등의 업무)와 舍人²³⁾이 있다.

자료에 한계가 있지만 秦에서 漢初의 郡吏의 직능은 대부분 軍事·司法·監察과 관련되었고, 대체로 屬吏組織은 거의 정비되지 않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²⁴⁾ 문헌사료를 보면 漢初 景帝이전에는 郡守가 地方의 民政을 처리하는 것이 보이지 않고, 漢初 郡의 吏는 軍事職과 많이 관련되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簡牘과 封泥²⁵⁾ 등의 출토자료가 발굴

술하고 韓을 공격했다.

20) 郡監은 秦統一 이후 郡마다 설치되었고, 『漢書·百官公卿表』에는 監御史로 보이고, 漢代에는 폐지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감찰사례는 御史가 蕭何를 郡卒史로 삼아 郡監하는 것을 보좌한 기사가 있다. 또한 秦始皇 35년에 아들 扶蘇를 上郡에 주둔하고 있던 蒙恬 군대의 監郡으로 파견한 것으로 군사감찰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 監御史는 지방의 인재를 중앙에 추천하는 역할도 담당했다.

21) 『二年律令』에도 都吏가 보이고 있는데, 재판에 대한 조사 및 하급관부에서 郡에 취조한 ‘上獄’이라는 조서를 상신하는 역할도 담당하였다.

22) 案例14-15(高祖시기)에 郡守, 郡丞과 함께 卒史가 재판을 담당, 案例18(秦始皇27-28년)에는 獄事를 재심할 때, 卒史와 假卒史가 담당하고 있다. 案例22에 안건처리의 공이 있어 卒史로 임명하고자 하는 모습이 보인다.

23) 池田雄一, 『中國古代の聚落と地方行政』, 汲古書院, 2002, pp.614-635.

24) 列曹의 등장은 昭帝이후며, 功曹와 督郵 또한 사료에 처음 보이는 것은 昭帝때 라고 했다.(栗勁, 『秦律通論』, 濟南: 山東人民出版社, 1985, p.334; 池田雄一, 『中國古代の聚落と地方行政』, 汲古書院, 2002, p.627; 中山 茂, 『兩漢功曹考』, 『名古屋大學東洋史研究報告』 27, 2003) 참조.

25) 郡縣지배의 근간은 文書行政과 律令制度이다. 印章은 관리의 신분을 표시하는 위세품일 뿐 아

되면서, 다양한 曹가 이미 秦에서 등장하고 있고, 그 郡府의 屬吏들도 활동하는 모습이 엿보인다. 이것은 郡이 諸 方面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縣의 상급기관으로서 일정 이상의 권한을 보유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郡級組織에서 分曹의 설치유무는 郡의 행정권 한과 범위를 보여주는 지표일 것이다. 먼저 秦의 封泥를 통해서 여러 조직이 설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²⁶⁾

또한 『睡虎地秦簡·語書』를 통해 太守 아래 曹가 성립해 있었고, 縣의 曹에 상응한 曹가 郡府에 설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關沮秦漢墓簡牘』에 南郡 太守府 소속의 屬吏組織인 左曹가 보인다. 더군다나 최근 석문집이 발표된 統一秦 시기의 『里耶秦簡』에 다양한 曹가 보인다. 獄東曹(5-22), 獄南曹(8-728), 尉曹(8-253), 司空曹(8-269), 倉曹(8-776), 戶曹(8-1533) 등이 다수 보이고 있다. 이는 縣과 郡 중, 어느 곳에 소속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縣에 설치되어 있었다면 縣에 상응하여 郡府에도 曹가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秦에서부터 郡은 諸 분야에 대한 상급기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보았다. 다음은 簡牘 자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역할과 권한을 분석하고자 한다.

2. 戰國秦·統一秦의 內史와 郡

① 睡虎地秦簡²⁷⁾의 內史와 郡

內史雜에는, 해당 縣에 설치되어 있는 都官은 폐기처분한 후 보충할 기물의 수량을 內史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히 이러한 경제방면에서 內史-縣 체제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內史雜 외에 倉律, 效律, 金布律, 均工律에서도 나타난다. 이외에 內史는 人的·物的 자원의 財政 관리(賦稅, 戶口, 手工業, 商業 및 곡물저장, 창고 및 재물관리)와 관리임용 뿐만 아니라 工匠의 양성과 文書, 學室, 藏書에 대한 규정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內史는 지방행정조직을 관할하기 위한 중앙에 속한 행정기구였고, 전쟁에 참가하는 등 軍事활동

나라, 문서행정 상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이다. 중요한 문서의 전달에는 郡縣관리의 印章이 찍힌 封泥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秦封泥와 행정문서 상의 郡의 모습은 秦의 郡級 관리들의 영향력을 보이는 증거다. 秦의 郡守가 秦簡·銅器·封泥·璽印 등의 銘文 중에 여러 개가 보인다.

- 26) 秦印에 “蜀邸倉印”이 보여 倉官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양식창고 관리이다. 또한 織官도 보이는데, 秦封泥 인 “蜀左織官”과 같이 蜀郡은 비단 織造를 관리했고, 다른 郡 같은 경우도 布麻 등의 織造를 관리했다. 司馬는 軍馬를 주관했는데, 秦封泥 “琅琊司馬”, “東郡司馬”가 있다. 田官은 秦封泥 “越郡左田”이 있는데 農田을 주관했다. 또한 司空은 郡 내의 건축을 주관했는데, 秦印에 “南海司空”, 秦封泥에 “南郡司空”으로 나타난다.
- 27) 『睡虎地秦簡』이 부장된 묘주인 熹가 활동한 南郡은 戰國時代 楚지역이었다가 昭王 28년(B.C.279) 秦에 편입되었다. 대체로 秦 昭王 元年(B.C.306)-秦始皇 30년(B.C.217)의 90년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 하고 있었다. 內史는 체계적으로 다양한 부분에서 실무행정을 담당하고 있었다. 이렇게 戰國秦에서 統一秦 初期까지의 지방행정체제를 보여주는 『睡虎地秦簡』의 秦律(秦律十八種)에는 郡이 하위기관을 관할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內史-縣·都(大內·太倉)의 일원적 체계만 보인다. 그런데 같은 『睡虎地秦簡』의 실무문서라 할 수 있는 語書와 法律答問 등에 등장하고 있는 郡에 대한 자료들을 분석하면, 戰國秦에서 郡이 어느 정도 이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이 보인다.

또한 語書를 통해서 郡에 이미 각 부서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語書에는 “문서에 기록된 명을 받들지 않는다면, 縣·道에서는 이를 郡에 보고해야 하고, 郡에서는 휘하의 실무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명령하고, 과오가 가장 많은 관리는 소속한 부서에서 縣의 令과 丞에게 보고하고, 令과 丞이 해당관리가 부정하다고 인정하면 郡의 관리가 이를 簿籍에 기록하고 郡 전체에 통보하여 惡吏로 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는 太守 아래 曹가 성립해 있었는데 縣의 曹에 상응한 曹가 郡府에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郡은 행정체계 상 어느 정도 구체화되어 다양한 직무를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內史와 마찬가지로 郡도 여러 하급기관을 관할하고 있다.

內史는 모든 분야에서 內史-縣·都官(大內·太倉)의 행정체계를 보이고 있다. 상급기관으로서 內史가 諸 분야를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바로 위에서 고찰한 郡을 통해 볼 때, 자료가 많거나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郡-縣의 행정체계도 경제분야 외의 모든 분야에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睡虎地秦簡』을 통해서 는 대체로 內史-縣의 관할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郡도 縣의 상급행정기관(郡-縣)으로서의 역할과 권한을 일정부분 이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② 里耶秦簡²⁸⁾의 內史와 郡

『里耶秦簡』에서는 內史가 거의 등장하지 않고, 『睡虎地秦律』에서처럼 ‘內史-縣’의 실질적인 모습은 잘 보이지 않지만, 재정과 관련된 경제분야나 약간의 군사업무 및 문서를 하달하는 역할 등²⁹⁾이 보이고 있다.³⁰⁾

28) 최근에 석문집이 발표된 『里耶秦簡』은 秦王 政 25년(B.C.222)부터 二世 皇帝 2년(B.C.208) 시기의 洞庭郡 遷陵縣의 官府文書로서 『史記·秦始皇本紀』의 기사와 동시대의 상황을 보여준다. 『睡虎地秦簡』과 漢初시기의 내용을 담고 있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내용의 중간에 위치하여 秦漢時期의 사회변화와 성격을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무행정자료이다. 이미 秦 郡縣制가 편벽한 南方 지방까지 미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29) ① 8-228은 상단 부분에 “內史守 衷이 律令에 따라 縣에 문서를 전달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縣과의 연계성이 보이는 내용은 이 한 가지뿐이지만, 여전히 內史-縣으로의 체제가 남아있음이 보인다.

② 16-5·6에, “洞庭의 무기를 內史로 운송하고, 巴郡·南郡·蒼梧도 甲兵의 전달이 많아 운송해야 하는데, 먼저 乘城卒·隸臣妾·城旦舂·鬼薪·白粲·居賞·贖責(債)·司寇·隱官·踐更縣者

郡은 諸 분야에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 8-153·8-156·8-152·8-158에는, 중앙의 御史가 洞庭郡으로 문서를 하달했고 洞庭郡이 屬縣들에게 문서를 하달했다. 따라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秦朝廷-洞庭郡-遷陵縣 3급의 예속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16-5에는 洞庭太守가 중앙의 령을 받아서 무기를 內史로 운송하라고 명령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와 함께 洞庭郡守가 屬縣의 수송노동에 대하여 농번기의 백성에 대한 징발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洞庭郡이 인근 郡縣에서 필요한 각종 물자를 제공하고, 소농민의 田事를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郡太守가 병기 운송의 독려를 위하여 屬吏를 縣으로 파견하여 縣이 장악한 각종 노동자의 명부를 점검하여 가능한 백성을 동원하는 것을 억제시키려 했던 것은, 秦의 郡이 이미 縣의 요역 동원에 직접 개입한 증거이다. 또한 徒隸의 매입수가 郡에 보고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도 보인다. 8-154(秦始皇 33년)에는 徒隸의 매입수를 매달 초하룻날에 보고하고 있다.³¹⁾이외에도 9-1~12(秦始皇 34년)에는 洞庭郡이 戍卒하는 사람들의 貲余錢, 貲錢과 관련된 것을 기록하여 노동력을 장악했다. 9-1에서 9-12까지 12개의 簡牘에는 노역으로 채무를 갚기 위해 관청 아래 戍卒하는 陽陵縣 출신자들의 기록이 있다. 이들은 貲錢을 빚져서 이미 洞庭郡에서 파견되어 있었다. 이들이 어느 縣에서 戍卒하고 있는지 모르며, 돈이 없어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 洞庭尉에게 이들이 소재하는 縣에 돈을 재촉하여 지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³²⁾ 郡은 이렇게 인적·물적 자원을 관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본 16-5에서, 백성을 규정과 다르게 징발하면 그 劾(죄)를 縣으로 보내어 (縣)은 서둘러 율령에 따라 논하라고 하는데, 관련된 자의 이름과 신분을 太守府(太守府)에 고하여 屬縣을 감찰하는 모습도 보인다. 이외에도 『周家臺30號秦墓簡牘』의 『秦始皇34년(B.C.213) 曆譜』에는 1-3월까지 郡의 小吏가 郡太守를 수행하여 출장을 하는 모습이 보인다. 鐵官, 後府, 竟陵縣을 감찰하는데, 중앙 직속기관들임에도 中央에서 감찰하

를 보내라”는 내용이다.

③ 8-1510도 마찬가지로 “武器를 內史로 운송하라는 내용”이 보인다.

④ 8-657은, “琅邪假守(郡守級)가 內史와 屬邦, 郡守 主에게 遷徙와 관련하여 필요한 것에 대해 문서를 통해 전달하고 있다.”

30) 『嶽麓秦簡』에 보이는 令名 중에는 內史戶曹令, 內史倉曹令, 內史旁金布令이 있는데, 이는 內史 아래 구체적인 조직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嶽麓秦簡』에 『睡虎地秦簡』의 『內史雜』과 유사한 『內史雜律』이 있다.

31) 이외에도 8-664+8-1053+8-2167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遷陵縣에서 徒隸의 매입수를 상부에 보고”하고 있다. 8-147은 “(秦始皇 34년)은 遷陵縣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무기장비의 출고 통계문서를 보고한 것이다.

32) 이 외에도 “田官守가 官田에 대해 太守府에 보고하는 내용(8-672)”이 있다. 또한 “遷陵金布發【洞】(8-304)”에서 遷陵縣이 회계 관련하여 洞庭郡에 그 문서를 보내는 것을 통해서도 재정 부분에서의 郡이 이를 관할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假守가 啓 전차를 빌려갔는데 어느 縣에 소속해 있는지 洞庭郡에 요청하는 내용(8-677)”도 보인다.

는 것이 아니라 지방 행정기관에서 감찰을 한다는 점이다. 일부 관할지역과 관부에 대한 강도 높은 순행과 屬縣에 대한 太守權이 강화된 것을 보여준다.³³⁾

또한 “재심한 안건의 전달 내용만 나와 있는 간독이 있지만, 遷陵縣에서 洞庭郡에 전달된 것(8-255,8-492)” 등이 보인다. 이외에도 “秦始皇 34년 6월에 洞庭守가 遷陵守에게 재판에 대한 내용(8-755~8-759)”을 하달하고 있다.³⁴⁾ 이외에도 『張家山漢簡·奏讞書』에는 秦代의 司法처리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몇 가지 판례가 있다. 案例18은 秦始皇 27년 (B.C.200) 中央에서 南郡의 卒史와 假卒史에게 修縣의 사건을 재심하라고 한 獄簿가 보인다. 이외에도 『嶽麓秦簡』에는 재판모습과 재판의 결과를 하달하는 모습 등이 보인다.³⁵⁾

또한 『里耶秦簡』에는 曹로 분류되는 다양한 부서가 이미 존재하고 있음이 보인다. 『里耶秦簡』에 ‘獄東曹’, ‘獄南曹’, ‘倉曹’, ‘尉曹’, ‘戶曹’, ‘司空曹’ 등이 다수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서 이미 秦의 郡에서도 구체적인 조직이 분화되어 있는 듯하다.³⁶⁾ 앞에서 언급한 『睡虎地秦簡·語書』에는 태수 아래 曹가 성립해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睡虎地秦簡』에서도 구체적인 曹에 대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단지 출토되는 封泥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 『里耶秦簡』에는 다양한 조직이 실제로 설치되었음을 보인 것이다. 秦에도 이미 행정체계 상에서 조직화된 부서가 정비되어 있었다.

33) 李成珪, 『秦末과 前漢末 郡屬吏의 休息과 節日』, pp.179-186.

34) 또한 8-134에는 “秦始皇 26년 시기의 문서로 배를 빌렸는데 반환하지 않은 것에 대해 郡의 卒史가 심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밖에 『里耶秦簡』에는,

(a) “獄東曹書一封,洞庭太守府 (8-273+8-520)”

(b) “獄南曹書二封,遷陵印:一洞庭太守府,一洞庭尉府. · 九月 (8-728+8-1474)”

(c) “獄東曹書一封,令印,詣洞庭守府. · 九月戊戌,水下二刻,走佗以來. (8-959+8-1291)”

(d) “獄東曹書一封,丞印,詣泰守府. (8-1155)”

(e) “獄南書一封,丞印,詣洞庭尉府. (8-1823)”

獄東曹書, 獄南書는 遷陵縣 사법관련 문서로 太守·太尉府 등이 刑獄을 심의 해결 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있다.

35) ① 『嶽麓秦簡』 1114號簡에는, “泰山(郡)守가 말하길, 新黔首인 不更 昌 등 부부가 도둑질하였는데, 耐爲鬼 薪白燧이다”

② 『嶽麓秦簡』 0083號簡에는, 郡이 재판결과를 전달하는 것이 보이는데, “25년 6월 丙辰朔 己卯, 南郡假守賈가 州陵守 綰, 丞 越에게 답변하기를 네가 讞한 求盜 尸 등 4인을 체포하고 ……”

③ 『嶽麓秦簡』 0163號簡에는, “25년 7월 丙戌朔 乙未, 南郡假守 賈가 州陵守 綰, 丞 越에게 보고하기를 子가 讞하기를 荊長癸等, 男子治等告”

36) 『里耶秦簡』, “獄東曹書一封,丞印,詣無陽. · 九月己亥水下三刻以來(5-22)”; “獄東曹書 一封.(8-273)”; “獄南曹書二封 (8-728)”

“倉曹發(8-3); 倉曹當計禾(8-776); · 庚子,史華移倉曹 (8-1463)”

“尉曹卅四年正月(8-253)”; “尉曹書二封,遷陵印,一封詣洞庭泰(太)守府,一封詣洞庭尉府.(8-1225)”;

“尉曹書一封詣洞庭主司空.(8-1616)”

“廷戶曹發(8-263)”; “行戶曹(8-1318)”; “戶曹書四封,遷陵印,一咸陽·一高陵·一陰密·一競陵.(8-1533)”

“可直司空曹(8-269)”; “司空曹(8-1428).”

“吏曹當上尉府 (8-98)”; “廷吏曹(8-1126)”

정리하자면, 『里耶秦簡』에서 地方의 행정체계는 內史에 대해서는 ‘內史 - 縣’의 체계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재정 관련된 경제분야나 약간의 군사업무 및 문서를 하달하는 역할 등이 보인다. 郡은 『睡虎地秦簡』에서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경제분야까지 포함해서 諸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즉 ‘中央(御史)-郡-縣’의 행정체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대체로 統一秦의 『里耶秦簡』과 『嶽麓秦簡』에는 諸 분야에 걸쳐 ‘郡-縣’의 관할모습이 많이 보인다.

3. 前漢初 二千石官 內史와 郡

漢初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張家山漢簡·二年律令』의 제작연대는, 대체로 蕭何에 의해 秦의 律令 등을 토대로 정리된 高祖 2년에서 7년 사이의 것을 중심으로 완성된 지방 행정 체제가 나타나 있다고 할 수 있다.³⁷⁾

漢初에는 二千石官이라는 官稱이 등장한다. 이 二千石官은 보통 지방 郡國의 守相을 가리킨다고 보는데, 『二年律令』에 官稱의 秩를 규정한 秩律을 보면 郡國의 守相 뿐 아니라, 중앙의 諸 官職들도 二千石官이라 하고 있다. 더군다나 諸侯國의 相은 이 二千石官의 官稱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는 이 漢初의 二年律令이 國을 포함하지 않은 漢 官制에서의 적용되는 律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둔다면, 漢帝國의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 이 二年律令에 등장하는 二千石官은 지방의 郡守와 內史를 포함한 中央의 諸 官職들도 포함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① 張家山漢簡의 二千石官 內史

‘內史’라고 직접적으로 명시된 조문과 ‘二千石’이지만 內史가 포함된 조문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內史는 縣(道)의 屬吏들의 녹봉과 재물 소비량, 운반 물자 등을 上計를 통해 보고 받는 대체로 재정과 관련된 경제분야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³⁸⁾ 또한 內史는

37) 『二年律令』의 ‘二年’을 대부분의 학자들은 高后 2년으로 여겨서 시행년도를 이때로 여기지만, 惠帝의 이름에 ‘盈’이 있어 『二年律令』중에 피휘되지 않은 ‘盈’이 29번이나 등장한다는 등의 근거로 惠帝 이전의 高祖 2년에 무게를 실는 학자들도 있다.(王寧, 『也談張家山漢簡《二年律令》的頒行年代』, 『魯東大學學報』 23-3, 2006) 漢律의 형성 또한 한 시기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된 수정과 증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여겨진다. 그렇기 때문에 발견된 율문의 최종완성은 高后시기까지가 그 하한임은 인정은 하지만 각각의 율령의 작성 시작 년대는 그 시기 이전일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년이라는 것이 꼭 시행년도를 지칭한다고는 볼 수 없다.(張忠輝, 『二年律令 年代問題研究』, 『歷史研究』 3, 2008) 즉 高祖 2년-7년에서 惠帝·高后시기까지를 율령이 완성되는 시기라 본다.

38) ① 직접 명시된 內史로 분석: 田律에는 內史가 馬와 牛 및 기타 가축의 식량 잉여분의 수량을 보고 받고 있다. 또한 津關令에는 백성과 郡이 말을 구매하여 관 밖으로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데, 구매한 말의 정보를 기록하고 火印을 찍어 津關에 통보했다. 關中지역 말에 대한 통제를

司法관련 부분에는 관여할 수 없었지만³⁹⁾, 津關令에는 內史가 關中의 津關 출입에 관한 문제에 관여하는 모습 및 郡과 병칭되어 보고 받는 모습 등을 통해 關中의 縣을 관할(‘中央-內史-縣’)하는 지방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② 張家山漢簡의 二千石官 郡

田律에는, 縣·道에서 이미 田을 경작하고 있는 것은 그 數를 二千石官(郡守)에게 보고하고, 徭律에는 해마다 요역을 해야 하는 인원수와 실제 요역에 나간 수를 郡守에게 보고하는 규정이 있다. 또한 捕律에는 참수·체포하였거나 살상한 수와 장물의 수를 관할 郡에 귀속시키고, 郡은 丞相·御史에게 보고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 金布律에는 租, 저당금·戶賦·園池稅로 錢을 현재 金과 錢의 액수를 郡太守에게 보고하고 郡太守는 丞相·御史大夫에게 보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郡은 조세징수, 요역과견, 재정상황 등을 감찰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특히 재정과 관련된 경제 분야에서 ‘郡-縣’의 행정체계를 보여준다.

이외에도 郡守는 관리를 파견해 屬縣에서 정치명령의 집행 상황, 위법자의 처리를 조사하고 縣令·丞의 탄핵을 행할 수 있는 권한, 각 縣의 치안상황에 대해 엄격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즉, 縣·道관원의 공정한 사법처리, 보고가 정확한지 등의 방면을 감찰한다.⁴⁰⁾ 司法방면에는 縣·道가 二千石에게 奏讞하는 형식으로 하여금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에 대해 판결하도록 했다.⁴¹⁾ 또한 中央과 縣·道사이의 법령과 문서

가한 것이다. 또한 置吏律에 郡守와 함께 內史는 縣·道官이 올리는 屬吏의 급여 및 재물의 양과 운반 등을 上計 받고 있다.

② 二千石으로 등장한 內史로 분석: 田律에서는, 縣·道에서 이미 田을 개간한 것이 있으면, 그 수를 5월을 넘기지 않게 二千石官인 內史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金布律에서는 二千石官의 治所가 있는 縣에서의 10월 달 金의 기준 가격의 기준이 되는 곳을 지칭했는데, 이 역시 內史도 포함될 것이다.

- 39) 『二年律令·置吏律』에는 ‘郡 이하의 縣은 郡’에, ‘京師(內史地:關中) 이하의 縣은 內史가 아닌 廷尉正’에게 奏讞하고 있다.(『張家山漢簡』, p.161, “郡守二千石官·縣道官言變變事急者, 及吏遷徙·新爲官屬尉·佐以上毋乘馬者, 皆得爲213(C76)駕傳. 縣道官之計, 各關屬所二千石官. 其受恒秩氣稟及求財用年輸, 郡關其守, 中關214(C77)內史. 受爵及除人關於尉. 都官自尉·內史以下毋治獄, 獄無輕重關於正; 郡關其守. 215(C78)”); 『漢舊儀』등의 기록을 검토하면, 漢初에는 京師(關中)의 縣을 丞相이 御史를 파견하여 監察하기는 했지만, 關中(京師)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의식하여 중앙에서 직접 이를 담당했을 가능성도 있다.
- 40) 興律에는 漢初의 지방행정에서 재판과정만을 놓고 보면, 死罪 및 고의가 아닌 살인사건 즉 중요한 사건은 縣·道가 1차 심리를 하고, 조서를 만들어 관할 二千石官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보고받은 二千石官은 都吏에게 조사하게 한 후 판결을 해서 다시 縣·道에 집행하도록 지시하는 방식이었음을 알 수 있다. 徹侯의 食邑도 縣·道와 마찬가지로 소재한 郡守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郡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 41) 『漢書·刑法志』의 기록은 高祖 7년으로 이때부터 3단계를 거쳐 재판이 처리되었다고 전한다. 실제로 『張家山漢簡·奏讞書』에는 漢初에 하급관리가 奏讞하는 것에 있어서 상급기관에 ‘廷報’

의 전달을 맡았다. 『漢書』 『高帝紀』를 보면, 조정에서 조서를 전달하는 과정은 漢初에는 “御史大夫 → 相國 → 諸侯王 / 御史中執法 → 郡守”였다. 上計의 과정을 郡·縣으로 파악해서 볼 때, 『睡虎地秦簡』의 南郡太守 騰이 縣·道嗇夫에게 敎示하고 있는 것과 같이, 漢初에도 中央의 詔書가 郡國을 통해 縣·道에 전달되고 있다. 즉, 中央으로의 報告와 上書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즉, 郡은 上書, 法令 및 文書의 하달, 軍사업무, 刑獄의 판결, 屬縣의 감찰, 官吏의 통제를 관할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문서관리 및 교육 등의 諸 분야에 대한 역할과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본적으로 ‘郡-縣(道)’의 행정체계가 정비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분석을 아래의 <표 1>로 정리해 보았다.

內史·郡 직무	秦				漢	
	戰國秦		統一秦		前漢 初	
	睡虎地秦簡 (青川木牘) 중심		里耶秦簡 (嶺南秦簡) 중심		張家山漢簡 중심	
	內史	郡	內史	郡	內史	郡
上書		●		●	○	●
法令·文書의 하달	○	●	○	●		●
財政관리(人的·物的)	○		○	●	○	●
官吏 및 조직의 통제	○	●	○			●
문서관리 및 교육	○					●
律令관련 업무	○				○	
軍사업무	○	●	○	●		●
屬縣의 감찰		●		●		●
刑獄의 판결		●		●		●
關에 대한 통제					○	●
행정 체계 [縣에 (道)도 포함]	①內史-縣·都官 (諸분야)②內史- 大內·太倉·都官 (경제분야)	郡-縣 (경제분야 외 諸분야)	內史-縣 (주로 경제를 중심으로 諸분야)	中央 - 郡 - 縣 (諸분야)	中央 - 內史-縣(주 로 경제를 중심으로 諸분야)	中央 - 郡-縣 (諸분야)

라 칭해 縣→郡→廷尉에 회답을 요청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案例 6-13은 연대를 알 수는 없으나, 郡守에서 廷尉에게 직접 奏讞하는 형식을 보이고 있다. 마지막에 疑罪라고 표기한 점 등으로 보아 6-13은 하나의 형식으로 묶여진 것 같다. 비교적 爵이 높은 자를 판결하는 경우로, 爵에 따라 減刑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해한 경우이기에 奏讞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案例 14-16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高祖시기로 縣이 郡守에게, 郡守는 敢言之(上甲)의 형식으로 中央의 廷尉에게 올리는 경우와 郡이 직접 처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14-16은 가장 명확하게 ‘縣-郡-中央’의 체제 속의 郡이 司法權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나 奏讞書 案例 14-15는 郡守·郡丞·卒史가 재판을 담당하였다. 하지만 ‘縣이 郡의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中央에 재판을 상주’한 奏讞의 사례들은 高祖 7년 이후로 案例1-5가 있지만, 그것에 관해서는 더 고찰하고자 한다.

4. 秦·漢初의 內史와 郡의 직무와 행정체계

<표 1>은 秦·漢初의 郡을 內史와 함께 비교분석하였다.

대체로 戰國秦시기의 『睡虎地秦簡』을 분석했을 때, 律令에서는 대체로 內史가 諸 분야를 관할하는 모습과 ‘內史-縣’의 체계가 보였다. 반면에 실무문서라 보이는 語書 및 法律答問 등을 통해서도 郡도 경제분야를 제외하고는 ‘郡-縣’이라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統一秦시기의 『里耶秦簡』을 분석했을 때, 『里耶秦簡』은 대부분 실무행정문서인데, 內史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재정 관련된 경제 분야나 약간의 군사업무 및 문서를 하달하는 역할 등이 보인다. 郡은 『睡虎地秦簡』에서 보이지 않던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諸 분야를 관할하는 모습과 ‘郡-縣’의 체계가 다수 보였다.

漢初의 『張家山漢簡』을 분석했을 때, 內史는 대체로 재정과 관련된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업무를 담당했지만 關中의 縣을 관할(‘中央-內史-縣’)하는 지방관처럼 보이기도 한다. 郡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里耶秦簡』에서 보이지 않던 다양한 분야까지 관할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中央-郡-縣’의 체계적인 계통이 확립되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郡은 이미 戰國秦에서부터 諸 분야에 걸쳐 직무를 담당하며, 統一秦에서 漢初까지 행정체계 상에서 더욱 다양한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권한도 일정정도 이상이었다.

IV. 漢初 中央集權體制確立 과정 속 郡

1. 京師(內史)지역과 郡의 통치체제

內史地는 周의 王畿가 周왕권의 안정과 東方諸侯와의 투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것과 마찬가지로, 秦과 漢도 內史地인 關中을 근거지로 해서 동방으로 진출하여 天下를 통일하여 기반을 다졌는데, 內史의 역할은 중요했다. 그러나 통일 과정 중에 秦의 영토가 확장됨에 따라 郡이 關中지역(內史地) 외의 지역을 內史를 대신하여 점차 관할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통일 후에 內史의 직무가 형식적으로는 ‘京師지역을 치리하는 지방관적인 內史’와 ‘국가의 전반적인 財政을 관리하는 治粟內史’로 나뉘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內史는 京師지역을 담당하는 內史와 중앙관으로 재정을 담당하는 治粟內史로 완벽히 분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⁴²⁾ 또한 津關令에는 內史가 關中의 津關 출입에 관한 문제에 관여

42) 高祖시기 中尉 周昌이 內史를 겸임하여 敖倉을 수비하는 모습도 內史는 關中의 지방장관과 경제부처 장관 두 가지 역할을 담당했음을 의미하는 듯 하다.

하는 모습 및 郡과 병칭되어 보고 받는 모습 등을 통해 關中の 縣을 관할(‘中央-內史-縣’) 하는 지방관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司法관련 등의 어느 일부분은 다른 관을 통해 관할되는 측면도 보였다.

吳楚七國의 亂 이후에 諸侯王國이 약화되면서 직할 郡縣이 전국으로 확대되어 景帝中 6년(B.C.144)에 官名이 개칭되고, 이후에 內史가 三輔로 나뉘어 지면서 확실히 內史는 縣에 대하여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관할하는 ‘京師지역의 특수한 지방행정조직’으로, 治粟 內史(→大農令→大司農)은 ‘전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官’으로 명확히 분화되었을 것이다.

결국, 전반적인 지방관할의 역할을 하게 된 內史(이후 三輔)와 郡은 모두 中央의 丞相에게 上計와 보고를 하는 체제가 성립된 것이다. 그래서 漢初에 지방은 ‘郡-縣’이라는 체계가, 京師(關中지역)인 內史地는 ‘內史-縣’체계가 어느 일부분에서는 ‘諸 中央官-縣’의 체계로 관할되었던 것 같다. 이후 內史가 三輔로 바뀌면서 京師지역의 모든 영역에서 縣을 관할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縣-郡(內史)-丞相-御史-皇帝’라는 일원적 체제가 완성됨으로써 皇帝中央集權體制가 확립에 기여를 하게 되었던 것이다.

2. 漢初 二千石官 郡의 位相

漢初에는 二千石이 가장 높은 질급으로서 二千石의 郡守·尉는 그 권한이 中央官들과 같을 정도로 상당했던 것을 의미한다. 文景帝 이후에 二千石이 상위의 中二千石, 하위의 比二千石으로 분화되면서 그 권한에 차이가 발생했다. 그 경과를 살펴보면 文景帝이후의 郡의 위치를 점해볼 수 있으며, 이는 皇帝中央集權體制로의 변모를 살펴보는 단서가 된다.

中二千石이 최초로 등장하는 시기는 景帝 元年 (B.C.156)으로 中二千石의 형성은 秩律보다 늦다는 것을 시사한다. 中은 京師(關中지역)을 가리키며, 郡國과 대립되는데 郡과 國의 관원을 억제하면서 점차 中二千石이 질급으로 확정되었다.⁴³⁾ 文景帝시기를 거쳐 武帝시기에 들어서면 諸侯王(比二千石)의 세력이 상당수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와 함께 등장한 것이 지방과 구분된 中央官(및 關中지역)의 직위를 나타내주었던 中二千石이다. 결국에는 比二千石의 諸侯相의 지위가 二千石의 郡守(尉) 아래에 있게 되었던 것이다.⁴⁴⁾ 즉, 中央과 地方, 諸侯國의 권한의 차이가 二千石官의 분화로 나타난 것이다. 二千石官의 郡守는 漢初의 中央集權體制로의 변모에 한 指標가 되었던 것이다.

京師지역의 內史와 동급이고, 諸侯國의 相보다 그 지위가 상승된 이러한 二千石의 郡은 점차로 그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을 자행하게 되었다. 地方郡國의 장관들은 上計簿를

43) 閻步克, 『從《秩律》論戰國秦漢間祿秩序列的縱向伸展』, 『張家山漢簡<二年律令> 研究文集』, 2007; 周群, 『西漢二千石秩級的演變』, 『史學月刊』 10, 2009.

44) 『漢書』 卷9 『元帝紀』, p.283, “三年春, 令諸侯相位在郡守下.”

조작하였다.⁴⁵⁾ 上計簿는 郡國이 행정의 결과를 자체에서 보고한 것이어서 粉飾이 많을 수밖에 없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刺史部를 설치했던 것이다. 결국 地方郡國의 감찰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刺史部를 설치한 것이다. 武帝가 “流民이 많아졌음에도 上計文에는 戶口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대(石慶)는 長吏들을 바로잡지 않고 있다”⁴⁶⁾ 고 문책한 시기는 武帝 元封 5년(B.C.106) 13州 刺史部가 설치되기 1년 전 사건이다. 前漢의 13州 刺史部는 지방의 최고위관인 郡의 郡守, 郡尉와 諸侯國의 丞相 및 지역의 유력자 등을 감찰하기 위한 것이었다.

郡은 지방의 모든 분야에서 縣보다 상급기관으로서 관할하였고, 그 권한 또한 막강해졌다. 그 막강해진 권한은 결국 郡守와 郡尉 등의 불법을 자초하게 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漢中央에서는 결국 刺史部를 설치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V. 맺음말

먼저 『睡虎地秦簡』의 ‘內史-縣 중심의 체계’가 보이는 현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漢初의 郡과 內史가 같은 秩級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郡과 함께 內史를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戰國時代 다른 國과는 다른 秦만의 縣과 郡의 특징을 분석하였는데, 秦의 郡은 초기부터 상급행정기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또한 통일 과정 속에서 秦의 영역확장에 따른 ‘郡’과 ‘京師지역의 縣을 관할하는 內史’의 변화를 함께 살펴보았다. 秦이 확장된 영역을 통치하는데 內史로는 한계를 지녔기에 郡이 설치되었고, 그러한 측면에서 戰國秦에서도 郡은 軍사업무 뿐 아니라 行政업무도 담당하였다.

다음으로 戰國秦과 統一秦의 『睡虎地秦簡』과 『里耶秦簡』을 중심으로 秦의 內史와 郡에 대한 검토를 거치고, 漢初의 『張家山漢簡』까지 분석하였다. 戰國秦시기의 『睡虎地秦簡』에서 內史는 諸 분야를 관할하며 ‘內史-縣’의 체계가 보였다. 반면에 郡도 財政관련된 경제 분야를 제외하고는 ‘郡-縣’이라는 체계가 확립되어 있었다. 統一秦시기의 실무문서가 중심인 『里耶秦簡』을 중심으로 한 자료에서 內史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주로 재정 관련된 경제 분야나 약간의 군사업무 및 문서를 하달하는 역할 등이 보인다. 郡은 경제분야를 포함하여 諸 분야를 관할하고 ‘郡-縣’의 체계가 다수 보였다. 漢初 『張家山漢簡』에서의

45) 武帝가 “流民이 많아졌음에도 上計文에는 戶口수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그대는 長吏들을 문책해서 바로잡지 않고 있다”고 꾸짖는 것, 宣帝가 “上計簿는 具文일 뿐이다. 기만하는 데에만 힘 씌우므로 그 고과를 피하고 三公은 이것을 헤아리지 않으니 짐은 장차 무엇을 믿으리니” 라고 한 것은 모두 上計簿의 부정이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武帝 元狩 2년(B.C.121) 衆利侯 郝賢은 上谷太守 재직시 戍卒財物의 上計를 허위로 보고해서 파면된 예가 있다.

46) 『漢書』 卷46 『萬石傳』, p.2198.

內史는 司法관련 등의 어느 일부분은 다른 관을 통해 관할되는 측면도 있지만, 關中에 대한 통제권과 郡과 병칭되어 보고 받는 모습 등을 통해 關中의 縣을 관할(‘中央-內史-縣’)하는 지방관처럼 보이기도 한다.⁴⁷⁾ 郡은 경제분야 뿐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까지 관할하고 있는데, ‘中央-郡-縣’의 체계적인 계통이 확립되어져 있었다. 郡은 이미 戰國秦에서부터 漢初까지 행정체계 상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권한도 일정정도 이상이었다.

마지막으로 前漢初에 二千石官인 郡이 여러 관직과의 질급차이의 변화를 통해 郡의 位相을 평가했다. 前漢初에 郡은 內史 및 여러 관직들과 같은 二千石이었다. 그러나 후에, 郡은 二千石보다 높은 中二千石의 中央官(및 關中지역)과 二千石보다 낮은 比二千石의 諸侯國의 相의 중간에 위치했다. 이는 皇帝中央集權體制의 완성과정에서 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郡은 漢의 文帝와 景帝시기를 거치면서 점차 체제가 정비되어가다가, 武帝시기에는 막강해진 권한을 통해 불법을 자행하였다. 결국 武帝시기 刺史部의 설치로 귀결되었고, 이 같은 사실은 이미 漢初에 郡의 영향력이 일정정도 이상이었음을 의미한다.

47) 그런데 秦의 통일 후에 內史의 직무가 형식적으로는 ‘京師지역을 치리하는 지방관적인 內史’와 ‘국가의 전반적인 財政을 관리하는 治粟內史’로 나뉘었지만, 완벽히 분화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이후에 內史가 三輔로 나뉘어 지면서 확실히 內史는 縣에 대하여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관할하는 ‘京師지역의 특수한 지방행정조직’으로, 治粟內史(→大農令→大司農)은 ‘전국의 경제를 담당하는 官’으로 명확히 분화되었을 것이다.

後漢代 墓碑의 성행과 建安十年 禁碑令의 의미

홍 승 현(서강대)

目次

머리말

I. 立碑의 출현과 立碑의 원인

II. 士大夫의 弔祭 행위와 立碑 활동

III. 禁碑令의 반포와 의미

맺음말-墓誌의 출현에 대하여

머리말

後漢末 士大夫들의 스승을 비롯한 舊君, 舉將에 대해 행했던 三年喪은 經典에 없는 行禮 혹은 경전의 규정을 넘어선 過禮라는 점에서 古禮에 대한 공공연한 위반이라 할 수 있다. 儒學의 절대성으로 황제의 故事에 맞서며 황제의 권위를 압도하려했던, 유학만을 유일한 행위 규범의 근거로 받아들였던 사대부들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를 두고 아직 후한시대에는 禮經에 기술된 내용으로부터 服이나 婚娶에 부합하는 법칙을 추출해서 사회적으로 확인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 앞선 단계의 작업이라고 할 수 있는 예경의 확정도 불충분했었기 때문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다.¹⁾ 그러나 행위의 적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經典을 분석했던 수많은 사례들은 유학의 실천자이자 수호자를 자처했던 사대부들의 경전을 위배한 과례의 사례를 해석하기 힘들게 한다.

여기에는 단순히 유학의 사회적 浸潤의 미완숙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후한 말 喪葬禮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立碑 행위와 私諡 행위다. 스승의 장례 혹은 구군과 거장에 장례에 몰려 간 사대부들은 비용을 釀出하여 비석을 세웠고, 墓主의 頌德을 기리는 墓碑銘과 더불어 비의 뒤편에 세심하게 자신들의 이름과 각출한 비용을 적었다. 이들은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행한 弔問 중에 사사로이 死者를 위해 諡號를 獻上하였다. 그러나 시호는 임금의 죽은 자를 위해 내리는 것이고,²⁾ 애초에 묘비는 신하가 군주를 위해, 자식이 부친을 위해 세운 것이었다.³⁾ 이들

1) 神矢法子, 『漢唐間における喪服禮の規範的展開』, 『東洋學報』 63-1・2(1981), p.77.

의 집단적이며 고의적인 고례 파괴행위를 유학의 미완성으로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⁴⁾

이것은 황제권력 밖에서 독자적인 기준을 만들어 가던 사대부 사회의 존재와 관련 있을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재야에서 자신들만의 기준에 의해 명성을 획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러한 움직임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식물화된 후한정부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방기하였지만 새로운 정부로서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폭력적인 해체의 모습도 보이고, 체제 안으로 견인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인다. 曹操는 일명 ‘浮華事件’이라는 사대부 서클의 수장들을 차례로 제거하는 유래 없는 폭력적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⁵⁾ 그의 아들 魏文帝 曹丕는 九品中正制를 실시하여 사대부들을 체내로 견인하였다.⁶⁾ 이것은 사대부들의 행례 행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후한 말 사대부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행례 행위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였는지를 조조가 내린 건안 10년의 禁隄令을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조조의 금비령은 일반적으로 厚葬 풍습의 금지, 즉 薄葬의 일환으로 이해되었다.⁷⁾ 그러나 금비령을 박장의 표현으로 이해하려면 묘비의 유행을 후장의 경쟁 결과로 이해해야 할 것인데, 그럴 경우 다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우선 묘비가 桓帝와 靈帝時期 45년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다는 점이다. 후장은 양한시기 내내 사회문제가 되었다. 그럼에도 특정시기 묘비 건립이 쏠려있다는 것은 묘비를 후장의 폐해로만 이해하기를 주저하게 한다. 다음은 과연 입비행위가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켰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 입비는 한 사람에 의해 건립되기보다는 다수에 의해 세워진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후한시기 세워진 묘비의 상당수가 가족이 아닌 門生 故吏 등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하여 우선 후한시기 입비행위의 성행 원인을 밝혀보고자 하는 목적에 의해 작성되었다. 이를 통해 양한시기 상장의례에 대한 이해의 단

2) 公叔文子卒, 其子戌請諡於君曰: “日月有時, 將葬矣. 請所以易其名者.”(『禮記』, 『檀弓下』, p.291)

3) 臣子述君父之功美, 以書其上, 後人因焉(『釋名』, 『釋典藝』, p.219)

4) 실제로 당시 이러한 사사로운 諡號의 獻上은 사대부들 안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袁山松 書曰: 『蔡邕議曰: 『魯季文子, 君子以爲忠, 而諡曰文子. 又傳曰: 『忠, 文之實也.』 忠以爲實, 文以彰之.』 遂共諡穆. 荀爽聞而非之. 故張璠論曰: 『夫諡者, 上之所贈, 非下之所造, 故顏·閔至德, 不聞有諡. 朱·蔡各以衰世臧否不立, 故私議之.』(『後漢書』 卷43, 『朱穆傳』, p.1473)

5) 洪承賢, 『漢末魏初 士大夫 社會와 浮華』, 『中國古代史研究』 12(2004)를 참조.

6) 渡邊義浩, 『九品中正制度における 『孝』』, 『大東文化大學漢學會誌』 41(2002), p.33.

7) 劉選·辛向軍, 『魏晉薄葬成因의 考察』, 『甘肅社會科學』 1994-1, p.110; 韓國河, 『論秦漢魏晉時期的厚葬與薄葬』, 『鄭州大學學報(哲社版)』 31-5(1998), p.99; 沙忠平, 『魏晉薄葬論』, 『文博』 2001-3, p.30; 蔡明倫, 『魏晉薄葬原因探析』, 『湖北師範學院學報(哲社版)』 22-2(2002), p.8; 陳穎, 『三國時期的薄葬與厚葬』, 『成都大學學報(社科版)』 2009-6, p.81.

서를 찾고자 한다. 또한 작업을 통해 후한 말 조조에 의해 내려진 금비령의 의미를 고찰하고, 입비금지에 의해 묘비를 세우지 못하게 되면서 그에 대응하는 새로운 상장 의례행위인 墓誌 출현의 의의를 조금이나 규명하고자 한다.

I. 立碑의 출현과 立碑의 원인

1. 墓碑의 출현과 성격

고대 중국 喪葬制度의 특징 중 하나는 厚葬이다. 사람이 죽어도 그 魄은 지하에서 이승에서와 동일하게 삶을 지속한다는 영혼불멸관은 지하에서 생활하는 백을 위한 모든 편의를 제공하려는 노력을 요구하였고,⁸⁾ 이것은 현실에서 후장으로 나타났다. 더하여 유가의 孝에 대한 稱揚 역시 후장의 원인으로 작용하여,⁹⁾ 중국 고대의 후장은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많은 노력과 비용을 필요로 했던 후장은 사치라는 사회경제적 문제를 유발하였고, 이로 인해 前漢 중기 이후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역대 황제들은 폐해를 줄이기 위해 후장을 금지하는 詔書를 반복적으로 내렸다.¹⁰⁾ 그러나 반복적인 조서가 의미하듯이 후장의 폐해는 쉽게 근절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파산하는 이까지 등장하였다.¹¹⁾ 후한이 되면 후장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져, 후한 말 사대부들의 저작에서 후장의 폐해를 비판하는 내용을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¹²⁾ 그런데, 이렇듯 사치스러운 상장의례 속에서 후한시기가 되면 특징적인 사항 하나가 눈에 띈데, 다른 아닌 立碑 행위의 성행이다.¹³⁾

기록에 따르면 본래 碑는 고대 궁실이나 종묘에 있던 것으로 시간을 측정하거나¹⁴⁾ 제

8) 마이클 로이/이성규 역, 『古代中國人の 生死觀』(서울 : 지식산업사, 1987 : 1998), pp.42~43.
 9) 黃金明, 「東漢墓碑文興盛的社會文化背景」, 『漳州師範學院學報』 53(2004), p.22.
 10) 대표적으로 前漢 文帝, 成帝를 들 수 있다. 그리고 후장의 폐해가 더욱 커지는 후한에서는 光武帝와 明帝, 和帝, 安帝의 후장 금지 詔書를 볼 수 있다. 『史記』 卷4, 「文帝紀」, p.132 ; 『漢書』 卷10, 「成帝紀」, p.324~325 ; 『後漢書』 卷1下, 「光武帝紀」, p.51 ; 『後漢書』 卷2, 「明帝紀」, p.115 ; 『後漢書』 卷4, 「和帝紀」, p.186 ; 『後漢書』 卷5, 「安帝紀」, p.207 참조.
 11) 初, 寔父卒, 剽賣田宅, 起冢塋, 立碑頌. 葬訖, 資產竭盡, 因窮困, 以酤釀販鬻爲業(『後漢書』 卷52, 「崔寔傳」, p.1731)
 12) 今京師貴戚, 郡縣豪家, 生不極養, 死乃崇喪, 或至金刻鏤玉, 櫛梓輿柩, 良田造營, 黃壤致藏, 多埋珍寶, 偶人車馬, 造起大冢, 廣種松柏, 廬舍祠堂, 崇侈上僭. 寵臣貴戚, 州郡世家, 每有喪葬, 都官屬縣, 各當遣吏賫, 車馬帷帳, 貸假待客之具, 竟爲華觀(『潛夫論』, 「浮侈」, p.209) ; 乃送終之家亦大無法度, 至用輜梓黃腸, 多藏寶貨, 饗牛作倡, 高墳大寢. 是可忍也, 孰不可忍? 而俗人多之, 咸曰「健子」! 天下跋扈, 恥不相逮. 念親將終, 無以奉遺, 乃約其供養, 豫修亡歿之備, 老親之飢寒, 以事淫法之華稱, 竭家盡業, 甘心而不恨(『政論』, 「闕題三」, p.89)
 13) 自後漢以來, 碑碣雲起(『文心雕龍』, 「誄碑」, p.96)
 14) 宮必有碑, 所以識日景, 引陰陽也(『儀禮注』, 「聘禮」, p.409)

사에 사용하는 희생을 매어 놓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¹⁵⁾ 또한 무덤 앞에 있던 豐碑는 비석 가운데 구멍을 이용하여 구덩이에 관을 내릴 때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⁶⁾ 이러한 용도를 가지고 있던 비들은 이후 墓主에 대한 간략한 정보 및 고인의 遺德을 기리는 頌辭가 새겨진 채 墳墓 앞에 세워지게 된다. 이른바 묘비의 출현이다.

이러한 묘비가 언제 출현하였는가는 정확하지 않다. 楊寬은 前漢 刻石 중 <熙孝禹刻石>을 묘비의 선구로 파악하였다.¹⁷⁾ 2行 8字로 구성되어 있는 <포효우각석>은 ‘河平三年八月丁亥/平邑□里熙孝禹’¹⁸⁾라는 내용을 갖고 있다. 즉, 사망한 날짜와 본적, 묘주의 이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묘주의 事跡이라고 할 만한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이후 정형화된 묘비¹⁹⁾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무덤 앞에 세워져 무덤이 누구의 것인지 알려주는 墓表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한편 <포효우각석>은 형태적인 면에서도 후대 묘비와 차이가 있다. 묘비의 형태적인 측면을 주목한 하마다 다마미(濱田瑞美)에 따르면²⁰⁾ 묘비의 외형적 필요요소로는 穿과 量이 있다.²¹⁾ 『封氏聞見記』에 따르면 묘비에 난 구멍[穿]은 장례 시 下棺할 때 관을 묶은 끈을 통과시키는 용도였다.²²⁾ 한편 『隸續』에 의하면 사당[廟] 앞의 비의 구멍은 犧牲을 묶어두는 데 사용하였다.²³⁾ 圓首形 비의 碑首 부분에 존재하는 훈은 관을 내릴 때 관을 묶은 밧줄이 잘 미끄러지거나 이탈하지 않게 하는 기능을 한다.²⁴⁾ 따라서 <포효우각석>의 경우 그 내용과 형태의 상이함 때문에 묘비로 파악하지 않는 연구자들이 많다.

15) 祭之日, 君牽牲, 穆荅君, 卿·大夫序從. 既入廟門, 麗於碑. (『禮記』, 『祭義』, p.1321).

16) 豐碑, 斫大木爲之, 形如石碑, 於槨前後四角樹之, 穿中於間爲鹿盧, 下棺以絆繞(鄭玄, 『禮記注』, 『檀弓下』, p.297)

17) 楊寬, 『中國古代陵寢制度史研究』(上海: 人民, 2003), pp.155~156.

18) 永田英正編, 『漢代石刻集成 圖版·釋文編』(京都: 同朋社, 1994), p.8.

19) 구보조에 요시후미는 묘비를 구성하는 정형화된 요소로써 ①碑額, ②諱, ③字, ④本籍, ⑤家系, ⑥品行, ⑦官歷을 중심으로 하는 履歷, ⑧卒年月日, ⑨享年, ⑩追贈, ⑪葬日 혹은 立碑日, ⑫銘辭를 설정하였다. 窪添慶文, 『墓誌の起源とその定型化』, 『立正史學』 105(2009), p.2.

20) 濱田瑞美, 『漢碑考-かたちとをめぐって』, 『美術史研究』 41(2003).

21) <孔謙碑>의 穿과 量.



22) 天子諸侯葬時下棺之柱, 其上有孔, 以貫絆索, 懸棺而下, 取其安審……古碑上往往有孔, 是貫絆索像 (『封氏聞見記』, 『碑碣』, p.57)

23) 碑之有穿, 在廟則以繫牲, 在穴則以下柩, 漢碑蓋多有之(『隸續』, 『碑式』, p.384上)

24) 其絆繞鹿盧橫而斜過碑頭, 碑頭爲此量, 以限絆使之滑且不致外脫(『山左金石志』, 『泰山都尉孔宙碑』, p.14445下左)

현재 얼마 되지 않는 묘비 관련 연구는 대부분 묘비의 출현을 후한대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釋名』에서 묘비를 ‘신하와 자식이 그 임금과 부친의 공덕을 서술하여 돌 위에 새긴 것’이라고 규정했고, 이러한 규정에 부합하는 묘비는 후한 들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확실히 묘비를 규정하는 형태와 정형화된 내용의 기준-묘주의 성명, 官歷, 享年, 卒年月日 등을 기본으로 하는 序와 묘주를 애도하는 銘에 따른다면 후한 이전으로 묘비의 기원을 소급하는 것은 힘들 것 같다.²⁵⁾

그러나 묘비가 처음부터 묘주의 사적을 기록하고, 그 功業에 대해 송사를 서술하였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보다는 표식으로서 묘표의 의미가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비의 기원으로 많은 이가 주목하고 있는 풍비²⁶⁾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北宋 孫宗鑑의 『東臯雜錄』에 따르면 풍비에서 묘비로 전화하는 과정에서 비의 최초의 형태는 공덕을 서술하는 것보다 표지의 의미가 강했다.²⁷⁾ 이와 관련하여 『周禮』의 기록을 살펴보자. “만일 도로에서 죽은 자가 있다면 매장하고 꾀말(楛)을 세우는 데, [매장한] 날짜를 적는다.”²⁸⁾ 여기서 楛가 표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²⁹⁾ 그런데 이것은 도로에서 죽음을 당했을 때만 세웠던 것은 아닌 것 같다. 『漢書』에서는 이 같을 ‘성명을 적는 것’이라고 하였고,³⁰⁾ 顏師古는 이에 대해 “같은 말뚝이다. 무덤에 세우고 죽은 자의 이름을 적는다”라고 주해하였다.³¹⁾ 따라서 이 같은 무덤을 조성한 후 그 무덤의 표지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서』에는 表가 등장한다. 이 표는 무덤을 만들고 묘주의 이름을 적어 놓는다는 점에서,³²⁾ 같과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요컨대 전한시기에는 무덤을 조영한 후 무덤 앞에 사자의 성명이나 爵, 혹은 지역을 적어 놓은 표지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묘비의 초기 모습일 것으로 생각된다.³³⁾ 따라서 이상과 같은 내용에 따른다면 최초의 묘비

25) 학자들마다 최초의 묘비로 지적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만(범방근은 147년에 건립된 <武班碑>를 최초의 묘비로, 하마다 다마미는 117년에 건립된 <袁安碑>를, 츠카다 야스노부는 143년에 건립된 <北海相景君碑>를 최초의 묘비로 지적하고 있다), 모두 후한시대의 비로부터 묘비의 기원을 찾는 것은 동일하다. 차례로 范邦瑾, 『東漢墓碑溯源』, 『華夏考古』 1991-4, p.98; 濱田瑞美, 앞의 글, p.186; 塚田康信, 『碑の起源と形式の研究 I』, 『福岡教育大學紀要 第5分冊』 28(1978), p.51.

26) 묘비의 기원을 豐碑에서 찾는 대표적인 이로는 淸의 趙翼이 있다. 然則墓道之有碑刻文, 本由於懸窆之豐碑, 而或易以石也(『陔余叢考』, 『碑表』, p.651)

27) 自周衰, 戰國秦漢皆以碑懸棺, 或以木, 或以石, 既葬碑留壙中, 不復出矣. 其後稍書姓名爵里其上, 至後漢, 遂作文字(徐乾學, 『讀禮通考』, 卷98에서 인용, p.114卷-358下右)

28) 若有死於道路者, 則令埋而置楛焉, 書其日月焉(『周禮』, 『秋官·司寇下·蜡氏』, p.972)

29) 鄭玄은 鄭司農의 말을 인용하여 이것이 표식을 위한 말뚝이라고 해석하였다. 鄭司農云, 楛欲令其識取之, 今時揭槨是也(『周禮注』, 『秋官·司寇下·蜡氏』, p.972)

30) 楛著其姓名(『漢書』 卷90, 『酷吏 尹賞傳』, p.3673)

31) 楛, 杙也. 楛於瘞處而書死者名也(『漢書』 卷90, 『酷吏 尹賞傳』, p.3673)

32) 又陽聚土, 樹表其上曰『開章死, 葬此下』(『漢書』 卷44, 『淮南厲王 劉長傳』, p.2141)

는 무덤 표시석이라는 기능을 가지면서 출현하였음을 알 수 있다.³⁴⁾ 이후 무덤 표시석의 기능이 강했던 묘비는 140년대 후반이 되어야 송사를 갖춘 기념비로서 모습을 갖추게 된다.³⁵⁾

140년대 들어 갖춘 정형화된 묘비가 등장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의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간단히 살펴보면, 묘주의 이름과 줄년줄일만이 쓰였던 것에 먼저 묘주의 官歷, 世系, 本籍이 추가되고, 이후 品行과 頌辭가 더해지는 것을 수 있다. 묘주의 관력과 세계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등장하는 대표적인 것으로는 汝南 袁氏 집안의 일련의 묘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袁安碑>, <袁敞碑>, <國三老袁良碑>에는三公이 배출되는 그 집안의 화려한 관력과 舜임금으로부터 시작되어 春秋戰國時期와 漢代에 걸쳐 名門家였던 세계가 서술되어 있다. 이러한 서술이 選舉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러한 요소가 갖춰진 묘비의 등장이 豪族의 자립화와 지방 지배력이 확대되는 安帝時期³⁶⁾에 등장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또한 銘辭를 살펴보면 그것이 묘비 제작자의 유가적 소양을 드러내는 장치임을 알 수 있다. ‘脩仁’, ‘言信行篤’, ‘謙廉’, ‘孝親忠君’ 등의 유가적 용어가 사용된 것은 물론이고, 『論語』·『詩』·『書』 등의 經典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변형시킨 구절들이 다수 등장한

33) 何如月은 豐碑가 한대 묘비로 변화하는 과정 중에 表는 중요한 단계이자 형식이라고 분석하였다. 何如月, 『漢碑文學研究』(北京: 商務印書館, 2010), p.57.

34) 日比野丈夫, 『墓誌の起源について』, 『江上波夫教授古稀記念論集 民族・文化篇』(東京: 山川, 1977), p.183.

35) 後漢代 제작된 몇몇 묘비의 구성 요소를 표로 간략히 작성해 보았다. 아래의 표를 보면 정형화된 묘비는 140년대 후반~150년대 들어와서 출현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시기적으로 桓帝時期에 해당한다.

	① 碑額	② 諱	③ 字	④ 本籍	⑤ 世系	⑥ 品行	⑦ 官歷	⑧ 卒年	⑨ 享年	⑩ 追贈	⑪ 葬日	⑫ 銘辭
廬孝禹刻石(前26)		○		○				○				
萊子侯刻石(16)		○						○				
三老諱字忌日記(52)		○	○		○			○				
調者景君墓表(114)				○				○				○
子游殘碑(115)			○	○	○	○	○	○				
袁安碑(117)		○	○	○			○	○			○	
袁敞碑(117)			○		○		○	○			○	
王孝淵墓碑(128)		○		○	○	○	○	○				○
國三老袁良碑(131)		○	○	○	○		○	○	○			○
陽嘉殘碑(133)						○	○	○			○	
沙南侯獲碑(140)		○	○	○							○	
北海相景君碑(143)	○			○		○	○	○				○
武斑碑(147)	○	○	○		○	○	○	○				○
孔君墓碣(155)	○				○	○	○	○				
鄭固碑(158)	○	○	○		○	○	○	○	○			○
劉修碑(171)		○	○			○	○	○	○			○

36) 東晉次, 『後漢時期の政治と社會』(名古屋: 名古屋大, 1995), p.253.

다. 유학에 정통함이 관리 등용의 한 자격이었던 후한시기³⁷⁾ 死者에 대한 추모의 마음을 드러냄과 동시의 자신들의 학문적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명사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묘비가 정형화되어 가는 과정을 살펴보면 묘비가 곡진한 효성을 드러내는 후장의 결과기보다는 후한시기 선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호족의 성장과 지배력 확대라는 측면에 연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존 立碑에 대한 입장들을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2. 後漢時期 立碑의 원인

후한 들어 활발해진 묘비의 건립은 일반적으로 후장의 결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묘비의 유행을 후장의 경쟁 결과나 지극한 효의 표현으로만 이해한다면 漢碑를 둘러싼 다음의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 우선 묘비가 건립된 기간의 쏠림 현상이다. 현재 남아있는 한비 중 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묘비는 桓帝와 靈帝時期 45년간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어,³⁸⁾ 입비가 단순히 후장의 결과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알려진 것처럼 한대 후장의 문제는 전한시기부터 사회문제로 부각되어 이미 『鹽鐵論』안에서도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다.³⁹⁾ 그러나 이 시기 문제는 사치스러운 부장품과 지나친 분묘의 높이 등으로 묘비문제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묘비가 후장의 결과라면 이미 후장이 사회문제가 된 전한시기 입비행위가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 후한시대의 경우 특히 환·영제 시기에 집중적으로 건립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러한 일련의 사실은 입비가 반드시 후장의 결과만은 아님을 말해준다.

이와 관련하여 생각해 볼 문제는 바로 ‘墓記’, ‘封記’, ‘畫像石題字’, ‘題記’ 등으로 불리는 墓室 안에 안치된 石物들이다. 후한 초부터 등장하는 이들에는 墓主의 이름과 貫籍, 사망일, 장례일, 가족관계, 짧은 頌辭 등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정형화된 묘비의 구성요소와 많은 부분이 겹친다. 그런데, 이들 석물에게서 보이는 특이한 점은 묘지 건축에 대한 관련 정보가 자세히 등장한다는 점이다. 祠堂 혹은 墓闕과 같은 묘지 건축물의 종류, 그 제작자, 소요된 경비, 석공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묘지 건축물을 건설한 주체를 노골적으로 ‘孝子○○○’라고 표현하면서,

37) 遠藤祐子, 『漢代における地方官學の政治的機能』, 『立命館史學』 14(1993), p.29.

38) 황금명의 분석에 따르면 記年이 확인되는 후한 碑刻 160여 점에 중 桓帝時期에 제작된 것이 59건, 靈帝時期에 제작된 것이 76점을 차지하여 절대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黃金明, 『漢魏晉南北朝誄文研究』(北京: 人民大, 2005), p.45.

39) 厚資多藏, 器用如生人……今富者積土成山, 列樹成林, 臺榭連閣, 集觀增樓. 中者祠堂屏閣, 垣闕眾囂(『鹽鐵論』, 『散不足』, p353)

최소 몇 천전에서 최대 10만전이 넘는 소요 경비를 적어 놓은 제기의 기록을 통해⁴⁰⁾ 한 집안에서 행해졌던 곡진한 효성을 나타내는 후장의 표현은 입비가 아닌 묘지 건축물임을 알 수 있다. 요컨대, 후장을 표현하는 도구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충분했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묘지 건축은 후한 말까지 지속적으로 세워진다. 그렇다면 이들에 비해 敘事의 기능이 강화된 묘비의 건립을 단순히 후장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해 묘비가 제기와는 달리 지상에 위치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상에 기념비를 세움으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지극한 효성을 반복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기 때문에 후장이나 효성의 표현물로 적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묘비 이전 이미 지상에 올라온 묘궐이 이미 존재했을 뿐 아니라, 지상의 올라온 초기 묘비의 경우 오히려 묘주의 官歷이나 世系에 대한 자세한 서술이 증가한 한편, 묘비 제작자의 이름이나 비용이 기록되지 않아 기존 제기보다 후장과 효성의 표현으로 더 적합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다음은 더 나아가 입비가 후장의 실제적 표현인가 하는 문제다. 하마다 다마미(濱田瑞美)는 후한시기 입비 비용을 대체로 만 2천전에서 2만전 사이로 추정하였는데, 이것은 당시 소 한 마리 값, 혹은 노비 1인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하였다.⁴¹⁾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대부분 1인에 의해서 부담된 것이 아니라 다수에 의해 분담되었기 때문에 1인의 부담은 수 백전에 해당했을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당시 從僕이 매달 1천 5백전을 벌었던 것을 기준삼는다면 이 가격이 사회적으로 인민을 피폐하게 할 정도의 금액은 아니었다고 하였다.⁴²⁾ 요컨대 당시 후장의 폐해 속에서 본다면 입비행위는 그리 심각한 경제적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시기 입비가 후손들에 의해서 행해지기 보다는 주로 묘주의 門生·故吏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다.⁴³⁾ 이것은 입비 행위를 유교 국교화의 결과로,

40) 대표적으로 建初 8년(83)에 세워진 <肥城縣樂鎮畫像石題記>와 建和 원년(147)에 만들어진 <武氏祠石闕銘>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두 석물은 하나는 지하에, 하나는 지상에 위치했다는 차이와 시대적 격차에도 불구하고 墓主에 대한 정보 없이 제작물과 제작인, 소요경비만이 서술되어 있다. 建初八年八月成, 孝子張文思/哭父而禮, 石直三千, 王次作, 勿敗襲; 建和元年, 太歲在丁亥, 三月庚戌朔四日癸丑, 孝子武始公, 弟綏宗, 景興, 開明, 使石工孟李, 李/弟卯造此闕, 直錢十五萬, 孫宗/作師子, 直四萬, /開明子宣張, 仕/濟陰, 年廿五, 曹府君察舉孝廉, /除敦煌長史, 被病夭沒, 苗秀不/遂, 嗚乎哀哉, 士女痛傷.

41) 王褒의 『僮約』에 따르면 당시 노비 1인의 가격은 대략 만 오천 정도였던 것으로 보인다. 券文曰: 神爵三年正月十五日, 資中男子王子淵, 從成都安志里女子楊惠, 買亡夫時戶下髡奴便了, 決賈萬五千. 奴當從百役使, 不得有二言(『僮約』, p.359上)

42) 濱田瑞美, 『曹操による建安十年立碑の禁令の實相について』, 『東洋美術史論叢』(東京: 雄山閣, 2000), pp.102~103.

43) 漢碑多門生故吏爲之(『隸釋』 卷8, 『慎令劉脩碑, p.96下右); 自後漢以來, 門生故吏多相與立碑頌德

혹은 효성의 지극한 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저하게 한다. 즉 입비가 주로 묘주의 문생·고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당시 입비행위는 한 집안의 장례문화를 넘어 사회적 행위이기에 입비행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것이다.

II. 士大夫의 弔祭 행위와 立碑 활동

후한 묘비의 성행과 관련해서는 이치무라 산지로(市村瓚次郎)⁴⁴⁾이래 연구자들 모두가 큰 차이 없이 후장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묘비를 후장의 결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따라서 建安 10년 曹操가 내린 禁碑令을 薄葬의 조치로만 이해하는 주장에 언뜻 동의하기 어렵다. 이것에 대해 단서를 주는 것은 徐國榮과 劉濤의 연구다. 서국영은 당시 입비행위와 私諡 행위가 함께 유행함을 주목하였다. 그는 입비행위가 사대부사회 안에서 이뤄지고 있던 사시와 같이 명성을 提高하는 행위임을 설명하고자 하였다.⁴⁵⁾ 한편 유도는 조조가 世家 大族의 세력을 와해시키고, 중앙집권제를 수립하기 위해 금비령을 내렸다고 보았다. 요컨대 비가 모종의 지위와 威望의 상징물이기에, 私家에서 세운 비를 제거하여 여론과 민심을 통제하며 사대부가를 압박하였다는 것이다.⁴⁶⁾ 이들 연구는 조조의 금비령을 단순한 후장의 금지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두 연구 모두 아쉽게도 조조 금비령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 소략하여 더 이상의 정보를 얻기는 힘들다.

한대 후장이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이미 文帝의 조서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⁴⁷⁾ 그러나 조서를 통해 薄葬을 명하였지만 사회적으로 후장이 효의 극진한 표현으로 인식되어 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이 되어감에 따라⁴⁸⁾ 후장의 폐해는 오히려 점점 더 커져갔다. 그런데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후장의 내용은 주로 사치스러운 부장품의 문제이거나 거대한 봉분, 그리고 엄청난 규모의 사당들이었다.⁴⁹⁾ 물론 전한의 경우 묘비의 수가 적어 묘비가 후장의 폐해로 거론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후한 말 찬술된 『潛夫論』에서도 후장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며 묘비에 대해 거론하지 않은 것은⁵⁰⁾ 흥미롭다. 따라서 묘비

矣予(『集古錄跋尾』, 『宋文帝神道碑』, p.17869上右)

44) 市村瓚次郎, 『漢代建碑の流行及び其後世の禁制に就いて』, 『書苑』 2-19(1938).

45) 徐國榮, 『漢末私諡和曹操碑禁的文化意蘊』, 『東南文化』 117(1997).

46) 劉濤, 『魏晉南北朝의 禁碑與立碑』, 『故宮博物院院刊』 95(2001).

47) 『史記』 卷10, 『孝文本紀』, pp.433-434.

48) 厚葬重幣者, 則稱以爲孝, 顯名立於世, 光榮著於俗(『鹽鐵論』 『散不足』, p354)

49) 賜金錢·繪絮, 繡被百領. 衣五十篋, 璧珠璣玉衣, 梓宮·便房·黃腸題湊各一具, 椁木外臧梓十五具……發三河卒穿復土, 起冢祠堂, 置園邑三百家, 長丞奉守如舊法……禹既嗣爲博陸侯, 太夫人顯改光時所自造塋制而侈大之. 起三山闕, 築神道, 北臨昭靈, 南出承恩, 盛飾祠室, 輦閣通屬永巷, 而幽良人婢妾守之(『漢書』 卷80 『霍光傳』, pp.2948~2950)

가 후장과 관련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건안 10년 조조가 갑자기 후장 금지와 묘비 건립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며, 묘비는 후장의 폐해로 인식되게 된다. 그 사정을 살펴보자.

한 이후 천하가 장례를 사치스럽게 하여, 石室과 石獸, 碑銘 등을 만드는 자가 많았다. 건안 10년(205) 魏武帝는 천하가 쇠퇴하고 피폐해지자 ①후장을 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리고, 또 묘비를 세우는 것을 금지 하였다. 高貴鄉公 甘露 2년(257)에 大將軍參軍 太原 王倫이 죽자, 그의 형 王俊이 <表德論>을 지어 왕릉이 남긴 미덕을 서술하였는데, 글에서 말하길 “삼가 조정의 법령을 두려워하여 비명을 만들지 않았으니, 이에 그의 행적을 적어 묘의 뒤편에 새기노라”고 하였다. 이는 입비의 금지가 아직 엄중하던 때의 일이다. 이후 다시 禁습이 느슨해졌다.⁵¹⁾

그리고 이러한 입비 금지령은 썬에서도 확인된다.

晉武帝 咸寧 4년(278) 다시 조서를 내려 말하였다. “이 석수와 碑表는 ②사사로이 미덕을 기리는 것이므로 허위를 조장하고 재물을 축내어 백성을 해롭게 함이 이보다 큰 것은 없다. 일체를 금지한다. 금령을 위반하는 자는 비록 사면령이 내리더라도 비명을 무너뜨리도록 하라.”⁵²⁾

위의 기사는 『宋書』 『禮志』의 기록으로, 박장의 일환으로 시작된 입비금지 정책이 위진시기를 거쳐 劉宋까지 지속되었던 사정을 전하고 있다. 확실히 기사 중 ①의 부분을 통해서 입비금지가 후장금지의 일환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②의 내용은 입비금지가 후장금지의 일환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즉 ②에 의한다면 묘비를 세우는 것이 재물을 축내는 것 이전에 ‘사사로이 미덕을 기리는 것’으로, 그 행위가 사회적으로 ‘허위를 조장’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사사로이 인물을 평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으로, 한대 이래 민간에서 행해지던 인물평에 대한 금지임을 알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고대 중국에 있어 인물평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된 것은 아무래도 관리등용과 관련이 있다. 한대 인재등용 방식은 ‘察舉’와 ‘徵辟’으로 말할 수 있는데, 각기 ‘아래로부터 위로’, ‘위로부터 아래로’ 인

50) 或至刻金鏤玉, 櫛梓榱桷, 良田造塋, 黃壤致藏, 多埋珍寶偶人車馬, 造起大冢, 廣種松柏, 廬舍祠堂, 崇侈上僭(『潛夫論』 『浮侈』, p.137)

51) 漢以後, 天下送死奢靡, 多作石室石獸碑銘等物. 建安十年, 魏武帝以天下雕弊, 下令不得厚葬, 又禁立碑. 魏高貴鄉公甘露二年, 大將軍參軍太原王倫卒, 倫兄俊作表德論, 以述倫遺美, 云『祇畏王典, 不得爲銘, 乃撰錄行事, 就刊於墓之陰云爾』. 此則碑禁尙嚴也. 此後復弛替(『宋書』 卷30, 『禮二』, p.407)

52) 晉武帝咸寧四年, 又詔曰:『此石獸碑表, 既私褒美, 興長虛僞, 傷財害人, 莫大於此. 一禁斷之. 其犯者雖會赦令, 皆當毀壞.』(『宋書』 卷30, 『禮二』, p.407)

재를 추천 또는 발굴한다는 방식상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개인에 대한 여론에 근거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인물평이라는 것은 당시 사회적 필요에 의해 자연스럽게 조성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후한 말, 이러한 인물평이 중앙정계와 무관하게 독자성을 갖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黨錮 이후, 재야에 만들어 진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사대부 사회는 황제와 대치적 명성을 가지게 되었고,⁵³⁾ 사대부들은 政界에서 官位를 갖는 것보다 사대부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사대부 사회에서 행해지던 인물평은 어떤 무엇보다도 사회적 권위를 갖게 되었고, 심지어는 郭太 許劭와 같이 인물평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들까지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재야의 인물평은 황제의 권력 밖에서 사회적 기준이 만들어 지는 것을 의미하기에 위협할 수밖에 없었다.

자율적인 사대부들의 활동이 인물평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행동의 지침들을 마련하였다. 새로운 稱謂가 등장하였고, 친족 범위를 넘어서 스승을 비롯한 정치관계가 이미 소멸한 舊君과 舉將에 대한 服喪에 있어서의 常禮를 넘어서는 過禮가 행해졌다.⁵⁴⁾ 그리고 이러한 사대부들의 활동은 ‘당대의 풍속’으로 평가받았으며, 후대에는 ‘雅俗’으로 칭송받게 된다.⁵⁵⁾ 이와 관련하여 이 시기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私諡 행위다. 당시 사대부들은 名士의 장례식의 참석하는 弔祭 활동에 열심이었던 것과 더불어 사적으로 諡號를 추증하였다.⁵⁶⁾ 그런데 ‘시’라는 것이 죽은 자의 생전의 행적에 의해 군주가 내려주는 칭호이기애, 사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후대 桓範도 이를 ‘人主의 권리(人主權柄)’로 표현하고, 한말 사대부 안에서 행해지던 사적인 追諡 행위를 비판하였다.⁵⁷⁾

묘비를 세우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사대부 사회의 한 행위가 되었다. 본래 장사지낸 날과 피장자의 성명을 기록한 단순한 무덤의 표식이었던 묘비는 점차 ‘신하와 자손이 군주와 부친의 공로와 미덕을 추념하여 서술한 것을 표면에 기록’하는 형식으로 변화된다.

53) 渡邊義浩, 『漢魏交替期の社會』, 『歴史學研究』 626(1991), pp.53~54

54) 후한 말 그동안 사라졌었던 舊君이란 칭호가 재등장한 것이나, 舉將의 칭호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을 들 수 있다. 洪承賢, 『後漢末 ‘舊軍’ 개념의 재등장과 魏晉時期 喪服禮·禮學의 효용성을 중심으로』, 『東洋史學研究』 94(2006), pp.76~85를 참조.

55) 當世往往化以爲俗(『後漢書』 卷62, 『荀爽傳』, p.2057); 雅俗所歸, 惟稱許郭(蕭統, 『文選』, 『爲范尚書讓吏部封侯第一表』, p.1736)

56) 初, 穆父卒, 穆與諸儒考依古義, 諡曰貞宣先生. 及穆卒, 蔡邕復與門人共述其體行, 諡爲文忠先生(『後漢書』 卷43, 『朱穆傳』, p.1473); 中平四年, 年八十四, 卒于家. 何進遣使弔祭, 海內赴者三萬餘人, 制衰麻者以百數. 共刊石立碑, 諡爲文範先生(『後漢書』 卷62, 『陳寔傳』, p.2067); 中平二年, 年七十四, 卒於家……於是三府各遣令史奔弔. 大將軍何進移書陳留太守, 累行論諡, 兪曰宜爲貞節先生(『後漢書』 卷81, 『獨行 范冉傳』, p.2690)

57) 且生以爵祿, 榮死以誄諡, 是人主權柄而漢世不禁! 使私稱與王命爭流, 臣子與君上俱用, 善惡無章, 得失無效, 豈不誤哉(桓範, 『世要論·銘誄』, p.389)

즉, 피장자의 평생의 사적과 功德에 대한 송사가 기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후한 말이 되면 대략 비문의 내용은 ①묘주의 이름, ②자, ③貫籍, ④世系, ⑤평생의 사적, ⑥장례 일자, ⑦哀悼와 묘주의 공덕에 대한 頌辭로 정형화되었다. 그리고 비의 背面(碑陰)에 立碑者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 문생과 고리들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입비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행위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를 증명하는 단적인 예가 巫鴻이 거론한 韓韶의 석비일 것이다. 환제시기 泰山의 반란으로 인해 발생한 流民을 縣倉의 곡식으로 진휼했던 한소의 공덕을 찬미하고자 같은 潁川郡의 名士들이었던 李膺, 陳寔, 杜密, 荀淑 등이 석비를 세웠다. 이 석비는 黨錮 이후 일련의 黨人들이 낙향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황제와 대치적 명성을 유지하며, 사대부들만의 자율적 행동 규범을 만들어 가던 상황 속에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⁸⁾

즉 이들은 황제의 조정에서 쫓겨나 있는 상태에서 한소를 기리는 석비를 건립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이 세속의 관위가 아닌 사대부들이 공유한 도덕이나 행동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며, 사대부들이 신봉하는 도덕과 행동은 직위의 차이나, 현실에서의 친밀함에 구애받지 않는 절대적인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그들에게 또 다른 명성을 가져왔음을 덧붙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석비 건립에 기금을 출현한 자들을 弟子, 門生, 門童, 故吏, 故民, 處士 등으로 세심하게 구분하여 碑陰에 새겨 넣었던 孔宙의 석비⁵⁹⁾ 죽은 자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명성을 얻고자 한 자들의 정치적 욕망이 잘 투영되어 있다. 이렇게 문생고리들에 의해 석비가 건립되는 것이 사회적 유행으로 감지되는 것은 환제·영제시기, 요컨대 1·2차 당고가 발생한 때라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당시 사대부들은 황제의 조정 밖에서 명성을 획득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Ⅲ. 禁碑令의 반포와 의미

조조가 건비행위를 금지했던 詔令이 발표된 해는 建安 10년(205)이다. 그럼 건안 10년은 조조의 정치적 성장 과정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해였을까? 건안 10년은 조조가 官度 전투 이후 冀州에 남아있던 袁紹의 큰 아들 袁譚을 주멸하고, 기주를 평정한 해다. 관도전투로부터 기주를 완전히 평정할 때까지 걸린 5년이란 시간이 말해주듯이 원소가 사망한 후에도 원씨집단은 河北 일대를 장악하고 있었다.⁶⁰⁾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당

58) 우홍/김병준 옮김, 『순간과 영원-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서울: 아카넷, 2001), p.519.

59) 門生이 42인, 門童이 1인, 弟子가 10인, 故吏가 8인, 故民이 1인이 새겨져 있다. 高文, 『漢碑集釋』(開封: 河南大, 2008), 『孔宙碑』, pp.251~253을 참조.

60) 金文京, 『中國の歴史 三國志の世界』(東京: 講談社, 2005), p.74.

시 원씨의 세력은 4대에 걸쳐 은덕을 베풀어 천하에 문생과 고리들을 두고 있었던 상태였다.⁶¹⁾

당시 이들 원씨의 문생·고리들은 심정적으로만 연결되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원소집단의 중핵으로써 동탁에 대한 집단행동도 불사했으며,⁶²⁾ 조조와의 대결에서는 무력부대로서 활약하였다.⁶³⁾ 그 뿐만 아니라 천하의 豪傑들 역시 다수가 원소에게 歸附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⁶⁴⁾ 이것은 아마도 그가 三公의 후예기도 했지만, 그 스스로 ‘사대부를 아끼고(愛士)’하고 마음을 기울여 자신을 낮추고 사람을 대했기 때문일 것이다.⁶⁵⁾ 원소가 죽고 난 후에도 원씨의 문생과 고리들의 일부는 원담의 휘하에서, 일부는 袁尙의 휘하에서 從軍하여 조조와 대립하였다. 아마도 이것이 조조가 관도전 이후 기주를 완전히 평정할 때까지 5년이나 소요하게 된 원인일 것이다.

따라서 기주를 평정한 조조에게 원씨의 세력을 와해시키며, 한편으로 자신의 진영으로 흡수하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었을 것이다. 특히 여전히 원씨집단에 대해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이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음의 기사를 살펴보자.

王脩는 당시 樂安에서 식량 운반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원담이 위급하다는 말을 듣고 자신이 인솔하던 병사 및 여러 從事 수십 인을 이끌고 원담에게로 갔다. 高密에 이르러 원담이 사망했다는 말을 듣고, 말에서 내려 낫을 하며 말하였다. “君이 없으니 어디로 돌아간단 말인가?” 곧 조조에게로 가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장례치를 수 있기를 청하였다. 太祖가 왕수의 뜻을 알고자 묵묵히 대답하지 않았다. 왕수가 다시 말하였다. “원씨의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만일 원담의 시신을 거두어 殮을 한 후에 찢겨 죽는 한이 있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태조가 그 뜻을 아름답게 여겨 청을 들어 주었다.⁶⁶⁾

왕수는 원소의 고리였던 인물로 원소가 사망한 후에는 원담을 따랐다. 그런 그는 원담이 사망한 후 목숨을 걸고 원담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노력하였다. 기사에서는 그런 그

61) 袁氏樹恩四世，門世故吏徧於天下，若收豪傑以聚徒衆，英雄因之而起(『三國志·魏書』卷6, 「袁紹傳」, p.190)

62) 諸袁門生又聚董氏之尸，焚灰揚之於路(『後漢書』卷72, 「董卓傳」, p.2332)

63) 時袁紹盛於河朔，而汝南紹之本郡，門生賓客布在諸縣，擁兵拒守(『三國志·魏書』卷26, 「滿寵傳」, p.722)

64) 卓聞紹得關東·乃悉誅紹宗族太傅隗等·當是時，豪俠多附紹，皆思爲之報，州郡蠶起，莫不假其名(『三國志·魏書』卷6, 「袁紹傳」, p.193)

65) 紹有姿貌威容，愛士養名·既累世台司，賓客所歸，加傾心折節，莫不爭赴其庭，士無貴賤，與之抗禮(『後漢書』卷74上, 「袁紹傳」, p.2373)

66) (王)脩時運糧在樂安，聞譚急，將所領兵及諸從事數十人往赴譚·至高密，聞譚死，下馬號哭曰：「無君焉歸？」遂詣太祖，乞收葬譚屍·太祖欲觀脩意，默然不應·脩復曰：「受袁氏厚恩，若得收斂譚屍，然後就戮，無所恨。」太祖嘉其義，聽之(『三國志·魏書』卷11, 「王脩傳」, p.346)

의 마음을 가상히 여겨 요청을 조조가 허락했음을 알려주고 있다. 그러나 조조에게 이러한 원씨 고리들의 행동은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당시 문생과 고리들에 의해 석비가 세워지는 것이 유행이었던 상황에서 석비를 세우며 많은 이들이 참석하는 장례식은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사대부들의 협조가 절실했던 조조는 노골적으로 이를 금지할 수 없었을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후장에 대한 금지가 내려졌다.

(건안) 10년 봄 정월, 조조가 원담을 공격하여 격파하고, 원담을 斬首하고 그의 처자식을 誅殺하자 기주가 평정되었다. 명령을 내려 말하였다. “원씨와 함께 나쁜 일을 한 자도 함께 새롭게 시작하게 하겠다.” 백성들에게 사사로운 복수를 할 수 없게 하였고 후장을 금지하였으며, 모두 법에 따라 처리하였다.⁶⁷⁾

『三國志』에서 유일하게 조조의 후장 금지령을 기록하고 있는 기사다. 이것을 기주를 평정하고 발생할 원씨 장례식이 갖는 정치적 부담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무리일까? 그렇지만은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왕수의 장례 요청을 허가한 것과는 달리 원상의 목이 遼東에서 도착했을 때, 조조는 “三軍 중에서 감히 그를 위해 곡을 하는 자가 있다면 참수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⁶⁸⁾ 이것은 원씨들에 대한 어떠한 감정적, 그리고 정치적 표현도 불허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닐 것이다. 조조의 금비령은 이러한 맥락 하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墓誌의 출현에 대하여

묘비의 금지는 단순한 후장 금지의 일환이 아닌 민간해서 행해지던 인물평의 금지이며, 황제의 권력 밖에서 행해지던 사대부들의 정치 행위에 대한 금지임을 살펴보았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금비령은 서진 왕조에게 계승되었다. 그러나 입비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여전히 존재하여 입비에 관한 기사를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그 중에는 군주의 勅令에 의해 세워진 것이나,⁶⁹⁾ 백성들에 의해 세워진 비도 있지만⁷⁰⁾ 여전히 문생·고리들에 의해

67) 十年春正月, 攻譚, 破之, 斬譚, 誅其妻子, 冀州平. 下令曰: 「其與袁氏同惡者, 與之更始。」令民不得復私讎, 禁厚葬, 皆一之于法(『三國志·魏書』卷1, 「武帝紀」, p.27)

68) 三軍敢有哭之者斬(『三國志·魏書』卷11, 「田疇傳」, p.343)

69) (南陽王 司馬)模感丁邵之德, 敕國人爲邵生立碑(『晉書』卷37, 「宗室 南陽王模傳」, p.1097); 帝哭之甚慟, 詔贈征西將軍, 諡曰壯, 立碑於本郡(『晉書』卷58, 「周訪傳」, p.1582)

70) 襄陽百姓於峴山(羊)祜平生游憩之所建碑立廟, 歲時饗祭焉(『晉書』卷34, 「羊祜傳」, p.1022); 百姓追慕(唐)彬功德, 生爲立碑作頌(『晉書』卷42, 「唐彬傳」, p.1219); 祇乃造沈萊堰, 至今兗豫無水患, 百姓爲立碑頌焉(『晉書』卷47, 「傅祇傳」, p.1331)

세워지는 비도 상당수였던 것으로 보인다.⁷¹⁾ 공공연한 금비령의 위반사례는 조정의 느슨한 태도에서도 기인하였을 것이다.⁷²⁾

금비령하에서도 버젓이 건비를 요청하는 상주에 대해 조정의 허가는 사실상 금비령을 무력화시켰을 것이다. 이러한 금비령의 위반과 건비 요청 사례는 당시 국가에 의한 강제 조치가 있었음에도 민간에서는 꺼지지 않는 건비에 대한 열망이 존재했을 알려준다. 당시 묘비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기에 건비에 대한 열망이 존재하였는가?

그것은 무엇보다 자신의 功業이 영원히 기억되길 바라는 욕망의 투영일 것이다. 아니, 공업의 유무를 떠나 자신의 존재가 영원히 기억되기를 원하는 바람의 발로일 것이다. 이러한 바람은 들의 영구함과 결합하여 “德의 융성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보다 큰 것이 없다”, “재능과 공업을 서술하여 새김으로써 사라지지 않게 한다”, “金石에 새겨 기록하여 영원히 사라지지 않게 한다”⁷³⁾ 등의 기술을 남겼다. 그러나 『禮記』 『祭統』의 다음의 내용은 건비에 대한 또 다른 욕망의 원인을 알려준다.

銘이라는 것은 스스로 이름을 내는 것, 즉 [先祖의 德行을 稱揚하고 자신의 이름을 후세에 알리는 것이니], 자신의 이름을 써서 선조의 功業을 칭양함으로써, 그것을 후세에 밝게 드러내는 것이다……이는 孝子나 孝孫의 마음이고, 오직 賢한 자만이 능히 할 수 있는 것이다. 명이라는 것은 선조의 德善·功烈·勳勞·慶賞·聲名 등 세상에 알려진 것을 논평하고 취하여 祭器에 기록함에 자신의 이름도 더하여서 선조에게 제사하는 것이다……무릇 명이라는 것은 한번 일컬어서 위아래 사람 모두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군자가 명을 보면 그 일컬은 [선조의 덕행을] 아름답게 여기고, 또 일컬은 [후손의 칭양] 행위를 아름답게 여긴다.⁷⁴⁾

『예기』 『제통』의 내용은 결국 묘비를 세우는 행위가 건립자의 이름을 후세에 드러내는

71) (唐)彬初受學於東海閻德, 門徒甚多, 獨目彬有廊廟才. 及彬官成, 而德已卒, 乃爲之立碑(『晉書』卷42, 『唐彬傳』, p.1219); (東)皙辭疾罷歸, 教授門徒. 年四十卒, 元城市里爲之廢業, 門生故人立碑墓側(『晉書』卷51, 『東皙傳』, p.1434); 孟玖扶穎入, 催令殺(陸)雲……門生故吏迎喪葬清河, 修墓立碑, 四時祠祭(『晉書』卷54, 『陸雲傳』, p.1485); (陶)侃遺令葬國南二十里, 故吏刊石立碑畫像於武昌西(『晉書』卷66, 『陶侃傳』, p.1778)

72) 至元帝太興元年, 有司奏: 『故驃騎府主簿故恩營葬舊君顧榮, 求立碑.』詔特聽立. 自是後, 禁又漸頽. 大臣長吏, 人皆私立(『宋書』卷30, 『禮二』, p.407)

73) 차례대로 德之隆者, 莫盛不朽(『隸釋』卷9, 『繁陽令楊君碑』, p.105上右); 敘述才美, 以銘不朽焉(『隸釋』卷10, 『童子逢盛碑』, p.114上右); 銘載金石, 永世不刊(『隸釋』卷7, 『冀州刺史王純碑』, p.80下左)

74) 銘者, 自名也, 自名以稱揚其先祖之美, 而明著之後世者也……此孝子孝孫之心也, 唯賢者能之. 銘者, 論議其先祖之有德善·功烈·勳勞·慶賞·聲名, 列於天下, 而酌之祭器, 自成其名焉, 以祀其先祖者也……夫銘者, 壹稱而上下皆得焉耳矣. 是故君子之觀於銘也, 既美其所稱, 又美其所爲(『禮記』, 『祭統』, p.1362)

행위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선조의 공업을 칭양하는 행위(건비 행위)를 통해 그 건비자는 자신이 효자·효손(혹은 賢者)임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을 통해서만 칭양한 바, 선조의 공업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칭양한 후손의 행위의 아름다움 모두를 알 수 있다 한 것이다. 요컨대 건비에 대한 또 다른 열망은 산자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명성으로부터 기인했음을 알 수 있다.

晉朝 이후에도 사대부들 사이의 명성을 획득하려는 노력은 지속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종종 사실과 부합하지 않아(有乖事實), 그로인해 眞僞가 서로 혼동되어(眞假相蒙) 심지어는 마땅히 덕행을 칭찬받아야 하는 이가 顯貴해지지 못하였다(殆使合美者不貴). 뿐만 아니라 건비에 소용되는 工程과 비용도 묘주의 신분엔 맞지 않아(功費, 又不可稱) 풍속 파괴와 허위가 성행하는 浮華하고 繁瑣한 기풍이 지속되었다(俗敝僞興, 華煩已久).⁷⁵⁾ 그 결과 다시 劉宋 義熙 연간에 입비가 금지되게 되었다.⁷⁶⁾ 그런데, 裴松之에 의해 주도된 입비금지 논의를 살펴보면 이러한 敗俗의 근원 격으로 후한 말 여러 차례 묘비명 쓰고 私諡를 주도했던 蔡邕이 언급되고 있어, 유송시기 입비 금지 역시 조정 밖에서 행해지던 사대부들의 인물평 및 명성 획득 행위에 대한 금지라는 성격이 짙다.

이렇듯 중앙정부는 정부 밖의 일체의 사적 권위를 금지하고자 하였다. 문제는 이로 인해 혈연 안에서 행해지던 입비행위마저도 허가되지 않게 된 것이다. 자연히 묘비를 대신하여 사자를 추도하며, 산자의 정성을 보일 수 있는 대체물이 필요하게 되었다. 바로 墓誌의 성행이다. 묘지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유행의 원인을 금비령에서 찾고 있는 것은 같다.⁷⁷⁾ 묘지를 묘비의 대체물로만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있기는 하지만, 금비령이 묘지의 성행에 역할을 한 것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묘비와 묘지를 비교하면 형태상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차이로는 묘비의 경우 사자에 대한 서술 뿐 아니라 처·자 혹은 그 부모나 조부 등과 같은 가족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 등장한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⁷⁸⁾ 이것은 타인에게 보이기 위한 기념비에서 가족만이 볼 수 있는 기념비로의 성격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가족관계, 혹은 세계에 대한 서술이 묘지에 서술된 이유는 무엇일까? 왜 묘지에는 후한시기 묘비의 가장 큰 특징이라는 銘辭가 사라지고, 가족관계에 대한 서술만이

75) 『宋書』 卷64, 「裴松之傳」, p.1699.

76) 『宋書』, 卷15, 「禮志二」, p.407.

77) 中田勇次郎, 「中國の墓誌」, 『中國墓誌精華』(東京: 中央公論社, 1975), p.11; 日比野丈夫, 앞의 글, p.186; (福原啓郎), 「西晉の墓誌の意義」, 『中國中世の文物』(京都: 京都大, 1993), p.317; 吳煒, 「墓誌銘起源初探」, 『東南文化』 1999-3, p.7; 李士彪, 「漢魏六朝的禁碑與碑文的演變」, 『中國典籍與文化』 1999-4, p.87; . 단 후쿠하라 아키코(福原啓郎)는 墓誌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그 중 소형의 碑 형태를 지닌 B형을 禁碑令에 의해 墓碑의 대체물로 이해하였다.

78) 窪添慶文, 「石に刻された生涯」, 『東洋文化研究』 14(2012), p.586.

남은 것일까? 기존 墓記나 封記, 畫像石題字에서 보였던 후손의 지극한 효성에 대한 기술도 사라졌다. 무조건적인 효의 드러냄이 사회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된 것일까? 한 개인의 효성보다는 그 집안의 世系를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해진 사회가 된 것일까? 정밀한 고찰이 필요하겠지만 세계를 비롯한 처자의 가족관계가 모두 서술된다는 것이 귀족제 사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현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혹 귀족제 사회에 부합하는 가문의 家風과 신분적 內婚制의 약속이 돌에 새겨져 암묵적인 家禮의 한 내용으로 작동한 것은 아닐까? 금비령에 의해 사사로운 입비 행위가 저지되면서 사대부들은 이제 또 다른 기념비를 준비하고 있는 듯하다.

魏晉南北朝時期官員諡法制度研究

戴 卫 红(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

目 次

- 一、魏晉南北朝時期的《諡法》文獻
- 二、魏晉南北朝時期官員諡號的特點
 - (一) 得諡官員身份：從“有爵則有諡”到生前無爵死後也可得諡
 - (二) 得諡官員的官品：魏晉官員五品以上，南朝百官從五品上調至三品，北朝沒有明文規定
 - (三) 官員諡號用字：以單諡爲主；用字以美諡或平諡爲主；採用了《逸周書·諡法》篇中所沒有的諡號用字
 - (四) 魏晉南北朝時期尚書省官員在百官給諡程序中的作用和地位

諡法制度是中国古代礼法制度中的组成部分，它主要包含对一定人物，如帝王、皇后妃嫔、太子公主宗室、百官等死後议定、贈与以及頒布諡号这一系列礼制程序。因为諡号是对死者一生德行的正式评价，关系到死者的毀誉榮辱，也关系到社会对其本人及子孙的看法，故极受社会的重视，所谓“生有名，死有諡。名乃生者之辨，諡乃死者之辨”；“刑賞者治天下之大柄，諡法与刑賞相为表里”。諡法是维护封建等级制度的工具、宣扬封建礼学的手段，因此在中国古代是一门显学，学者们撰写了很多著作，其中，产生时代最早、影响最深、最为经典的文献为《逸周书·諡法》。之後各个朝代关于諡法的著述时有出现，宋、明、清代的諡法著作，蔚为大观。但是，自清末以来，人们几乎停止了对諡法的研究与探讨。

魏晉南北朝时期是諡法制度发展变化的一个重要时期。关于魏晉南北朝时期的諡法制度，学术界暂时还没有专门著作，研究论文主要有六篇¹⁾，涉及到汉末魏晉諡法的源流、南北朝碑刻

¹⁾ 楼劲：《〈玉海〉五四〈艺文部〉所存沈约〈谥例序〉笺解——汉末魏晉几种諡法文献的有关问题》，《文史》2005年第1辑；吴为民：《南北朝碑刻諡号初探》，《忻州师范学院学报》2008年第1期；徐国荣：《汉末私諡和曹操碑禁的文化意蕴》，《东南文化》1997年第3期；朱利民：《“武成”諡号

中谥号用字情况和谥法特点、碑刻中谥号空刻等问题。本文将在前贤研究的基础上，主要对魏晋南北朝时期《谥法》文献以及官员谥法制度的特点进行探讨。

一、魏晋南北朝时期的《谥法》文献

晋五经博士孔晁为《逸周书》作注，并在每一篇后加一“解”字，因此我们现在多看到为《逸周书·谥法解》。魏晋南北朝时期，学者们对《逸周书·谥法》进行了不同程度的注释、推演，从而丰富了谥法的内容和范围，对后世的谥法产生了巨大的影响。这一时期，关于谥法的专门著述有以下八种：

- (一) 魏晋之际荀勗推演增广刘熙《谥法注》。
- (二) 晋朝张靖撰《谥法》两卷。
- (三) 西晋杜预撰《春秋释例·谥法》，被后人称为《春秋谥法》。
- (四) 不知名氏《广谥法》1卷。
- (五) 梁朝沈约的《谥例》10卷。
- (六) 梁朝贺琛的《新谥法》。
- (七) 梁朝裴子野著《附益谥法》1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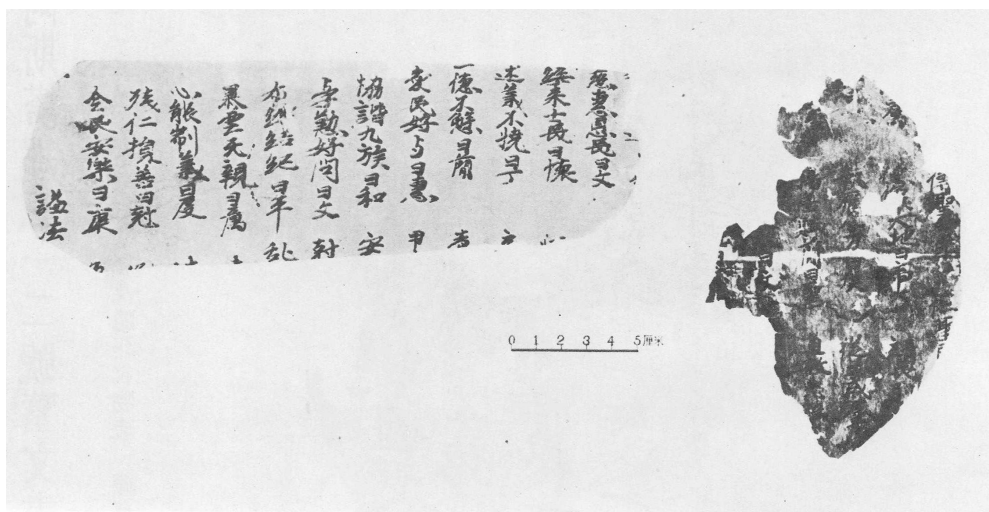
另外，《隋书》卷三三《经籍志二·仪注篇》载：“魏晋谥议十三卷何晏撰……今聚其见存，以为仪注篇。”何晏所撰《魏晋谥议》在《隋书》十志成书之年显庆元年(656)仍存。

正是因为魏晋南北朝时期对谥法的研究，使得实际运用的《谥法》不断地在原有《逸周书·谥法》上有所增损。魏晋南北朝时期《谥法》文献虽然极为丰富，但是从以上的史实中我们可以看到，大部分的著作我们只能得知其名称，具体内容并没有保留下来。而在上世纪新疆吐鲁番阿斯塔那316号墓中，出土了编号为60TAM316：08/2、3和60TAM316：08/4文书残片，从文书的结尾可以看出为《谥法》残本。²⁾整理小组将此文书的时间置于高昌时期之末。这一出土《谥法》残本为研究中国古代谥法制度，尤其是魏晋南北朝时期谥法制度提供了宝贵的资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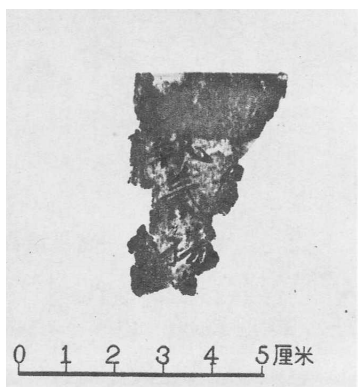
以下是编号为60TAM316：08/2、08/3的图版：

考订》，《唐都学刊》2000年第2期；张鹤泉、苗霖霖：《北魏后宫谥法、赠官制度考略》，《社会科学战线》2010年第9期；徐冲：《从“异刻”现象看北魏后期墓志的“生产过程”》，《复旦大学学报》2011年第2期。

2) 中国文物研究所、新疆维吾尔自治区博物馆、武汉大学历史系编，唐长孺主编：《吐鲁番出土文书》(图文对照本)第一册，北京：文物出版社，1992年，第471页。






另外，在编号为60TAM316：08/4的文书残片上有“执义扬善³⁾□□”字样。



将这份残本《谥法》与《逸周书·谥法》、《史记正义·谥法解》、《白虎通义》卷一《谥》、《续通志》卷一一九《谥略》、蔡邕《独断》卷下《帝谥》、宋代苏洵所定《谥法》、南宋郑樵《通志·谥略》、《续通志》卷一一九《谥略上》等文献相对照，笔者试著对这份高昌时期的《谥法》残本做一个还原：

- 1 □□翼善⁴⁾罔⁵⁾圣曰尧 仁圣盛明曰舜□□
- 2 □□受禅成功曰禹 德像天地曰帝 靖民则法曰黄(皇)□□
- 3 □□化合神者曰皇 执应八方曰侯 从之成群曰君□□
- 4 □□敬宾厚礼曰圣 扬善赋简曰圣 通敏先识□□□□
- 5 经纬天地曰文 □□

³⁾“善”字为王素先生补足，见王素《〈吐鲁番出土文书〉[壹]附录残片考释》，《出土文献研究》第3辑，中华书局，1998年，169页。

- 6  〇
- 7 慈惠恩民曰文 〇
- 8 绥来士民曰怀 〇
- 9 述义不挠曰丁 〇
- 10 一德不懈曰简 〇
- 11 爱民好与曰惠 甲冑有劳曰襄 〇
- 12 协谐九族曰和 安 〇
- 13 学勤好问曰文  〇
- 14 布网结纪曰平  而不损曰灵 〇
- 15 暴壘无亲曰厉 〇
- 16 心能制义曰度 〇
- 17 残仁损善曰克 〇
- 18 合民安乐曰康 〇
- 19 溢法
- 残片4 执义扬善曰怀

在这份残存的《溢法》中，出现清楚的溢字17个，分别为尧、禹、帝、皇、侯、圣、文、怀、丁、简、惠、和、平、厉、度、克、康，另外还有“舜”、“黄(皇)”、“君”、“襄”、“灵”5字可根据现存的溢法文献得到补充。在这22个溢字中，“尧”、“舜”、“君”、“禹”字为现存《逸周书·溢法》所无，根据《续通志·溢略上》所谓“谨案以黄、尧、舜、禹、汤等字为溢，出於汉初诸儒附会，後遂转相师述”，这份《溢法》残本深受汉代溢法文献的影响。

《溢法》残本中共有30条溢解，其中的15条清晰完整。分别是“德像天地曰帝”、“执应八方曰侯”、“扬善赋简曰圣”、“慈惠恩民曰文”、“绥来士民曰怀”、“述义不挠曰丁”、“一德不懈曰简”、“爱民好与曰惠”、“协谐九族曰和”、“学勤好问曰文”、“布网结纪曰平”、“暴壘无亲曰厉”、“心能制义曰度”、“残仁损善曰克”、“会(合)民安乐曰康”。另外11条能根据《逸周书·溢法解》、《独断·帝溢》、《白虎通义·溢》、《史记正义·溢法解》等溢法资料补充，分别为“翼善传圣曰尧”、“仁圣盛明曰舜”、“受禅成功曰禹”、“靖民则法曰黄(皇)”、“化合神者曰皇”、“从之成群曰君”、“敬宾厚礼曰圣”、“经纬天地曰文”、“执义扬善曰怀”、“甲冑有劳曰襄”、“乱而不损曰灵”。还有“通敏先识曰〇”、“安〇”、“克〇”、“曰〇”4条尚不能补足。而“通敏先识曰〇”这一溢字和溢解、“绥来士民曰怀”、“协谐九族曰和”、“残仁损善曰克”3条溢解在现存的溢法文献资料中均无。

正如上文所述，这份《溢法》残本深受汉代溢法文献的影响，那麼这份出土於吐鲁番地区的高昌时期的《溢法》残本来源於何处呢？

魏晉南北朝時期的高昌地區，雖經歷了由前涼、前秦、後涼、段氏北涼、西涼、沮渠氏北涼統治下的郡，到阚氏、張氏、馬氏、麴氏統治下的王國這一長時段的变化，⁴⁾但一直與中原王朝保持了聯系和交流。尤其在北魏正光元年(520年)，“肅宗遣假員外將軍趙義等使於嘉。嘉朝貢不絕。又遣使奉表，自以邊遐，不習典誥，求借五經、諸史，並請國子助教劉燮以為博士，肅宗許之。”⁵⁾《周書》卷五〇《高昌傳》載其“文字亦同華夏，兼用胡書。有毛詩、論語、孝經，置學官弟子，以相教授。”而在吐魯番阿斯塔那三座墓葬中，出土了古寫本經卷，如阿斯塔那313號墓出土的《義熙元年辛卯抄本〈孝經解〉殘卷》，阿斯塔那524號墓出土的《義熙寫本〈毛詩鄭箋〉殘卷》，阿斯塔那169號墓出土的《古寫本〈孝經〉》和《〈論語〉習書》⁶⁾。根據宋曉梅先生的研究，這四件古籍寫本的时代大致集中在麴嘉至麴玄喜執政的幾十年間，大約相當於內地政權北魏武帝至北齊初年。⁷⁾而在这份《溢法》殘本中也出現了在現世文獻中找不到的溢字，如“通敏先識曰□”；還有現存文獻不載的溢解，如“殘仁損善曰克”、“綏來士民曰懷”、“協諧九族曰和”等，這一點也正與魏晉南北朝時期對《溢法》進行增廣、闡釋的特點一致。因此出土於阿斯塔那316號墓中的古抄本《溢法》，既深受漢代溢法文獻的影響，也正是魏晉南北朝時期各家對《溢法》進行增廣、闡釋的產物，它完全有可能是從北朝政權流傳至高昌地區的。

魏晉南北朝時期學者和政府官員對《溢法》進行增廣、闡釋和研究，與這一時期的溢法制度的重大變化密不可分。《通典》卷一〇四《禮六四·凶禮二十六》中關於溢法的議論有6條，而其中“皇后溢及夫人溢議國妃命婦附”、“太子無溢議國君嗣子附”、“諸侯卿大夫溢議”、“君臣同溢議”、“單復溢議”等5條都是有關魏晉南北朝時期溢法實際運用時的討論。由於官員是溢法制度涉及到的最為龐大的一個群體，因此以下主要討論魏晉南北朝時期官員溢法的特點。

二、魏晉南北朝時期官員溢號的特點

兩漢時期基本遵循著“有爵則有溢”的制度，凡封侯者皆有溢，襲封者不管其生前行迹、有無功勞皆有溢。到曹魏時，這種情況發生了一些改變。

(一)得溢官員身份：從“有爵則有溢”到生前無爵死後也可得溢

《通典》卷一〇四《禮六四·凶禮二十六》“諸侯卿大夫溢議”中有劉輔、衛覬、趙咨、荀侯

4) 詳見王素《高昌史稿(統治篇)》，北京：文物出版社，1998年。

5) 《魏書》卷一〇一《高昌傳》，第2245頁。

6) 《吐魯番出土文書》第一冊，第290、137-142、230-232、236頁。

7) 宋曉梅《高昌國——西元五至七世紀絲綢之路上的一个移民小社會》，北京：中國社會科學出版社，2003年，第277頁。宋先生所言“北魏武帝”應是“北魏宣武帝”之誤。

四人议谥的材料。这则材料只见於《通典》，不见於《三国志》等正史。刘辅、卫觐、赵咨、荀侯四人议谥的时间大概在曹魏明帝时期。四人话锋直指诸王侯及袭封者都可赐爵的“旧制”，刘辅主张对得谥官员的秩品进行限定，尚书卫觐则明确提出“袭封者则不赐谥”；尚书赵咨对其进行了补充，认为对“诸袭爵守嗣无殊才异助于国及未冠成人”不应赐谥；黄门侍郎荀侯主张结合官员的爵位和官位来决定是否赐谥。在他们的言论中，强调突出了官员的现实功劳对谥号的影响。赐谥一事经过八座的“议”，最终以荀顗所制定的“通叙五等列侯以上，尝为郡国太守、内史、郡尉、牙门将、骑督以上薨者，皆赐谥”的“体统”作为赐谥与否的原则。根据《通典》卷三六《职官十八·秩品一》所载魏官品，“牙门将、骑督、郡国太守、相、内史，州郡国都尉”为第五品，则荀顗所撰定的赐谥者身份为五等列侯同时官品在第五品以上者。

笔者对《三国志》中曹魏得谥的90位官员的官品进行了统计，其中郭都、郭成、郭满、郭修、卞广、卞远、甄像、甄畅、甄德、甄逸、甄俨等11位追谥的外戚无法得知其官职；任俊生前为曹操时期的长水校尉，魏文帝追录功臣，追谥任俊为成侯；而其余官员的官品确实均在五品以上。曹魏时结合爵位和官职情况来决定赐谥与否，取消了那些仅靠父荫为爵者得谥的权利，对“有爵则有谥”的古制是一种冲击。

另外这还涉及到西晋咸熙元年(264年)晋朝制定新的礼制。上引材料所述“太尉荀顗所撰定体统”，笔者认为也是咸熙元年荀顗等人所定晋朝新礼中的一部分内容；也正是在魏晋禅替之际，荀顗对汉末刘熙的《谥法注》进行了推演增广。“通叙五等列侯以上，尝为郡国太守、内史、郡尉、牙门将、骑督以上薨者，皆赐谥”这一赐谥体统也在西晋流行。

《晋书》卷四五《刘毅传》载太康六年(285年)，曾任尚书左仆射、青州大中正，但并无爵级的刘毅死後，羽林左监、北海王司马宫上疏提议革新无爵者无谥的旧制，参之以现实的功行来决定官员的谥号；并牒刘毅生前的功行，上疏请求晋武帝赐予刘毅谥号。虽然刘毅最终没有获得赠谥，但这一举动开创了为无爵大臣请谥的先河。这件事在《通典》卷一〇四“诸侯卿大夫谥议”中系於东晋元帝大兴三年(320年)。这有可能是在大兴三年君臣进行谥议时，将刘毅赐谥一事旧事重提。因为到东晋时，由於位高权重的大臣多是南渡的北方士族，他们多无世爵，所以要求死後赐谥的呼声也越来越高。《艺文类聚》卷四〇《礼部下·谥》引《晋中兴书》载，晋元帝所定百官无爵者也可给谥，这一的规定对後世影响很大，大体南朝、北朝各政权以至唐以後都沿引了这一规定。⁸⁾

笔者根据《三国志》、《晋书》、《宋书》、《南齐书》、《梁书》、《陈书》、《魏书》、《北齐书》、《周书》、《南史》、《北史》、《隋书》等相关本传记载，以及魏晋南北朝时期的墓志材料，并参考《历代名臣谥法考》、《历代人物谥号封爵索引》，对魏晋南北

⁸⁾ 汪受宽先生对晋朝谥法的争论给予了很高的评价，认为其“既有实践的意义，更有理论的价值”，“它促进了以後学者和统治者从理论和实践两方面去进行更深的探索与改制”，汪受宽《谥法研究》，第29页。

朝各政权百官赐谥的身份作了一个统计。⁹⁾

表一：魏晉南北朝各政权百官赐谥身份表(单位：人)

政权	生前有爵死後有谥者				生前无爵死後有谥者				总人数
	单谥号+爵号	复谥号+爵号	复谥	单谥	复谥	单谥	单谥号+爵号	复谥号+爵号	
曹魏	86	2					2		90
	88				2				
西晋	4		4	78	2	3			91
	86				5				
东晋	1	2	20	58	1	12	1		95
	81				14				
刘宋	29	3	5	14	5	6	18	3	83
	51				32				
南齐	3	1	4	14	1	13	7		43
	22				21				
梁	5	2	41	7	3	22	11	5	96
	55				41				
陈	4		7	27	4	7	13		62
	38				24				
北魏	64	21	60	237	47	105	7	4	545
	382				163				

从上表我们可以看出，魏晉南北朝各政权得谥官员既有生前有爵者，也有生前无爵者。生前有爵的官员得谥者多於生前无爵者，仍然是此期官员谥法的大体趋势。

魏晉之际结合爵位和现实功行(官品在五品及其以上)决定百官谥号的规定，取消了那些仅靠父荫为爵者得谥的权利，对“有爵则有谥”的古制是一种冲击。而两晋南北朝时期得谥官员的身份也发生了变化，不仅生前有爵的官员可以得到谥号，生前无爵的官员死後也能得谥，这是中国古代官员谥法的一个重大变化。

(二)得谥官员的官品：魏晉官员五品以上，南朝百官从五品上调至三品，北朝没有明文规定

⁹⁾ 杨震方、水赉佑编著《历代人物谥号封爵索引》，上海古籍出版社，1996年版。所引用的墓志材料来源于赵超《魏晉南北朝墓志汇编》(天津古籍出版社，1992年，以下简称赵超书)，罗新、叶炜编《新出魏晉南北朝墓志疏证》(中华书局，2005年，以下简称罗、叶书)、赵君平《邙洛碑志三百种》(中华书局，2004年)，赵君平、赵文成《河洛墓刻拾零》(北京图书馆出版社，2007年)、毛远明《汉魏六朝碑刻校注》(线装书局，2007年)。表二、表三统计资料来源类同。

上文讨论了曹魏、西晋得谥官员的身份必须为五等列侯以上、官品在五品以上，那麼其他各政权对得谥百官的官品有无严格的限定？东晋没有明确规定百官给谥的品级。南朝萧梁中大通二年，时任中书侍郎、鸿胪卿，领步兵校尉的裴子野卒，“先是，五等君及侍中以上乃有谥，及子野特以令望见嘉，赐谥贞子”¹⁰⁾，以此推之，南朝百官给谥官品在侍中以上。汪受宽先生据《隋书·百官志中》侍中与吏部尚书等同属第三品，认为“当时百官给谥资格限於三品以上”。¹¹⁾

笔者分别对上表中刘宋、萧梁、陈三朝生前无爵、死後有谥的官员生前的官品进行了统计¹²⁾，其中刘宋时期的32人中，谥为“恭世子”的王狗生前官品为六品的秘书丞，还有4人生前官职为五品的太守¹³⁾，其余的生前官品多为三品、四品；萧梁朝的38人中，除死于侯景之乱、後追谥的尚书右丞江子四(谥为毅子)，戎昭将军、通直散骑侍郎、南津校尉江子一(谥为义子)，东宫直殿主帅江子五(谥为烈子)的官品比较低外，其余官品多在十班以上。陈朝的23人中，云旗将军、司徒左长史袁泌(谥为质)官品为四品，太子中庶子虞荔(谥为德子)官品为四品，云旗将军、西阳武昌二郡太守陆山才(谥为简子)官品为四品，其余官员官品多为三品及以上。以上统计的情况意味著一种可能，即在东晋南朝时，官员得谥者的官品要求从五品上调到三品，上调的时间最迟在梁武帝时期。但即使官方制定了官品的界限，在实际的赐谥过程中，仍会根据现实的情况和需要，对某些官员特赐谥号。

我们也没有看到北朝时期对百官给谥品级的规定，但从当时的正史、墓志中注意到¹⁴⁾，北魏对给谥官员生前官品的规定不是很严格。《魏故假节龙骧将军豫州刺史李简子墓志铭》载李蕤卒时为“大司农少卿，死後赠官假节龙骧将军、豫州刺史，谥曰简。”¹⁵⁾《魏书·公孙表附颖传》载公孙颖“改授太府少卿，又加前将军。神龟二年卒。赠平东将军、营州刺史，谥曰贞。”《魏书·李顺附暉传》载，李暉“迁廷尉少卿、殷州大中正。孝昌二年冬，卒，年五十七。赠平东将军、齐州刺史，谥曰宣。”大司农少卿、太府少卿、廷尉少卿同为六少卿之一，在太和二十三年职令中为正四品上阶。《魏书·李欣附蕴传》载李蕴，“入为员外散骑常侍、尚书右丞、中坚将军，迁左丞。延昌三年卒，赠平远将军、南青州刺史，谥曰敬。”尚书左丞为从四

10) 《南史》卷三三《裴松之附子野传》。

11) 汪受宽《谥法研究》，第123页。

12) 《通典》卷37于“齐官品”下注“未详”，虽然阎步克先生详细勾稽了南齐六十种官职的官品(《品位与职位——秦汉魏晋南北朝官阶制度研究》，中华书局2002年版，第285-296页)，但笔者统计的21人官品很多不在这六十种中，因此未对南齐的情况做详细分析。

13) 分别是会稽太守褚淡之(质子)、吴兴太守刘瑀(刚子)、会稽太守张茂度(恭子)、吴郡太守袁洵(贞子)。

14) 因为孝文帝以前官员的官品不能很好的确定，而孝明帝末期至以後有一些官员的谥号又是追赠的。为了使统计的数目更加有针对性，我们主要选出的是任官在孝文帝时期、而得谥在宣武帝或孝明帝早期的官员。

15) 《魏故假节龙骧将军豫州刺史李简子墓志铭》，见赵超《汉魏南北朝墓志汇编》，天津古籍出版社，1992年，第48页。

品上阶。《魏书·于栗磾附祗传》载於祗，“卒于司徒掾。赠镇远将军、朔州刺史，谥曰悼。”司徒掾，太和二十三年职令中为从五品上阶。《魏书·尉元附静传》载，尉静“世宗时，为尚书左民郎中。卒，赠博陵太守，重赠镇军将军、洛州刺史，谥曰敬。”“尚书郎中”在太和二十三年职令中为正六品下阶。而裴敬宪生前为从七品下阶的太学博士，但死後在永安三年追赠谥曰文。¹⁶⁾以上李蕤、公孙颖、李暉、李蕴、于祗、尉静、裴敬宪七人生前官职或为少卿、尚书左丞、尚书郎、司徒掾、太学博士，官品从正四品上阶到从七品下阶不等，生前无特殊军功，而死後都得到了赠谥。由此看来，北魏官员得谥时，对生前官品要求比较宽松，上到正一品的三公，下到从七品下阶的太学博士死後都可以获得谥号。这反映出北魏追求事功的社会风气以及北魏朝廷注重现实功用，也能从侧面反映出北魏礼法中对谥法的规定并不特别严格。¹⁷⁾北齐生前无爵死後有谥的24人的官品多为正四品下阶以上，而北周11人的官品多在七命及以上。

从以上分析可以看出，东晋没有明确规定百官给谥的品级，南朝百官给谥资格可能经过从五品上调至三品的过程，而北朝也没有明文规定百官给谥的品级，实际的赐谥中，官员生前在职的功劳、德行更大程度地影响著得谥与否及其谥号的好恶。

(三)官员谥号用字：以单谥为主；用字以美谥或平谥为主；采用了《逸周书·谥法》篇中所没有的谥号用字

汪受宽先生曾指出，先秦卿大夫谥号，有单谥、复谥，还有极个别的三字谥，但两汉582例臣谥中，绝大多数都是单谥，只有16人是复谥。三国、两晋、南北朝、隋、唐，臣谥仍一二字兼用。¹⁸⁾这一认识是公允的。吴为民在《南北朝碑刻谥号初探》一文中，以魏晋南北朝碑刻中的谥号为物件，统计出复谥77例，单谥38例，三字谥20例，从而揭示出南北朝谥号以复谥为主。¹⁹⁾但吴文将“康王”、“武公”这样的例子作为复谥、“元懿公”作为三字谥来统计，笔者不能认同。以下将从三个方面来探究魏晋南北朝时期官员的谥号用字。

笔者认为在官员的谥号中，除使用单个谥字的为单谥(如“康”)外，象“康公”这样的单谥字加爵号的也应为单谥；复谥除两个谥字如“文献”外，“文穆公”这样的两个谥字加爵号的也应归类於复谥，而非三字谥。笔者对魏晋南北朝各朝代官员的单、复谥号进行了统计。

¹⁶⁾ 《北史》卷三八《裴骏附敬宪传》。

¹⁷⁾ 承蒙楼劲先生教示，北魏赠谥较宽，似可溯至天兴加谥於二十八帝以来的传统，二十八帝皆部落人物，追尊为帝倒在其次，加以谥号，表明了当时对谥法的重视和加谥法度不严的状况。

¹⁸⁾ 汪受宽：《谥法研究》，上海古籍出版社1995年版，第150页。

¹⁹⁾ 吴为民：《南北朝碑刻谥号初探》，《忻州师范学院学报》2008年第1期，第77-78页。

表二：魏晋南北朝各朝代百官单、复谥号(单位：人)

单、复谥		朝代									
		曹魏	西晋	东晋	刘宋	南齐	梁	陈	北魏	北齐	北周
单谥	单谥		81	70	19	23	19	31	343	25	113
	单谥号+爵号	88	4	2	48	14	26	20	71	3	5
复谥	复谥		6	21	9	5	43	11	107	44	20
	复谥号+爵号	2		2	7	1	5		24	5	1

我们从表一中可以看出，魏晋南北朝官员谥号以单谥为主。然当时的舆论或以复谥为美。东晋时，便因议司空蔡谟谥号为引，发生过单复谥之争，详见《通典》卷一〇四《礼六四·凶礼二十六》“单复谥议”。从这一争议可以折射出当时以复谥为美的社会风气。

曹魏时期，生前有爵死後有谥者的官员中，死後谥号後均系以“王”、“公”、“侯”这一标志爵位的字；而到晋朝，生前有爵官员死後的谥号绝大多数为单纯的“单、复谥”，仅有少数7例在谥号後系以爵号。南北朝各政权中，生前有爵的官员死後的谥号也多数为单纯的“单、复谥”，但是仍有一定比例的官员死後谥号後加上侯爵字。唐朝以後，赐百官谥号一般仅云谥号，而不系侯爵字，只有对“耆老大臣与乡党有德之士”，偶尔赐谥称公。²⁰⁾

虽然生前无爵的官员死後能得到谥号，但《通典》卷一〇四“单复谥议”注引沈约谥法云：“晋大兴三年(320年)，始诏无爵者谥皆称子。”²¹⁾而从上表统计的东晋一朝的资料来看，我们只发现了死于太甯元年(323年)、生前无爵的杜夷谥为“贞子”²²⁾。南朝无爵者的谥号，一般其尾缀以“子”字，多见於史载。其中，刘宋18人，南齐11人，梁21人，陈16人。但是在实际的赐谥过程中，无爵者仍可直接赐谥为单谥，其中刘宋6人，南齐9人、梁12人，陈3人。而北朝无爵称子者，仅见於墓志一例，即上引李蕤²³⁾墓志，虽然墓志正文称李蕤“谥为简”，但其题名为“魏故假节龙骧将军豫州刺史李简子墓志铭”。

另外，在表二中，还有“复谥号+先生”、“复谥号+处士”等例子未纳入统计，这种谥号多赐予隐逸。²⁴⁾“学士年长者，故谓之先生。”²⁵⁾处士，“谓不官于朝而居家者也”²⁶⁾。被赐予这种谥号

20) 《宋会要辑稿》礼五八之九八，第1660页。

21) 谥後称子的历史渊源，我们可以从《春秋》而来。《日知录》卷之四《大夫称子》：“鲁之三家称子，他如臧氏、子服氏、仲叔氏皆以伯、叔称焉，不敢与三家并也。其生也或以伯、仲称之，如赵孟、知伯死，则谥之而後子之，犹国君之死而谥称公也。”[明]顾炎武(著)，黄汝成集释，栾保群、吕宗力校点《日知录集释》，上海古籍出版社2006年版。

22) 《晋书》卷九一《儒林·杜夷传》。

23) 墓志和本传均没有记载李蕤为“子”爵，所以笔者将李蕤归入“生前无爵死後有谥”一类。

24) 汪受宽先生在《谥法研究》第七章“特种人物谥法”“二、隐逸谥法”中已有详细例举，但没有指明唐宗谥为“先生”便是本於此期，因此笔者将此单列一段来说明其渊源。

25) 《孟子·告子下》：“宋牼将之楚，孟子遇于石丘，曰：‘先生将何之？’”赵岐注。

26) 《汉书》卷一三《异姓诸侯王表一》颜师古注，第364页。

的人的共同特点：一是生前没有官职，或朝廷委以官职却拒不就任；二是或为隐逸或为儒士，才学精深、德行高尚、声名卓著，有一定社会舆论影响力，各政权的统治者在他们的谥号用字後加以“先生”、“处士”二字以示尊重。²⁷⁾《通典》卷一〇四“单复谥议”：“大唐之制，太常博士掌凡王公以下拟谥，皆迹其功德而为之褒贬。无爵称子。养德丘园，声实明著，则谥曰先生。”《天圣令·丧葬令》第22条记载了宋代的有关规定：“诸谥……无爵者称子。若蕴德丘园，声实明著，虽无官爵，亦奏锡(赐)谥曰先生。”²⁸⁾从以上分析可以看出，唐宋以来无爵者称子、朝廷赐谥先生的法令规定，实来源於魏晉南北朝时期。

笔者对魏晉南北朝各政权官员谥号用字做了详尽统计，其中单谥用字分别有：丁、元、文、骄、平、成、夷、光、安、祈、孝、壮、武、果、忠、定、宜、荒、胡、威、贞、昭、思、信、哀、宣、庄、恭、桓、烈、刚、理、基、顷、康、章、悼、达、敬、惠、景、愷、慎、方、温、节、倾、靖、义、炀、肃、溘、静、熙、僖、齐、宁、质、德、毅、穆、宪、强、隐、戴、丑、襄、缪、简、严、怀、献、躁、懿、戾、匡、克、明、顺、灵等100个谥字。

复谥用字分别有：元穆、元简、元懿；文正、文成、文景、文孝、文明、文忠、文定、文贞、文昭、文宣、文恭、文烈、文康、文惠、文凯、文节、文靖、文肃、文静、文懿、文穆、文宪、文简、文献；平简；安宪；孝元、孝贞、孝定、孝宣、孝真、孝惠、孝景、孝穆、孝简、孝懿、孝昭、孝烈、孝威、孝靖；壮武、壮肃；武壮、武贞、武烈、武昭、武宣、武恭、武康、武敬；忠成、忠壮、忠武、忠贞、忠烈、忠惠、忠义、忠肃、忠溘、忠穆、忠宪、忠简、忠敬；威壮、威恭、威肃；贞白、贞肃、贞惠、贞节、贞宪、贞简、贞献、贞烈、贞顺、贞靖、贞襄；昭武、昭定、昭景、昭烈；庄惠、庄穆；恭武、恭穆、恭襄、恭文、恭定、恭惠、恭庄；烈懿；康节；敬烈、敬康、敬惠、敬简、敬悼；景烈、景惠、景桓；闵庄；靖节、靖德、靖穆；肃武；溘悼；静恭；穆正；襄威、襄壮；简寂、简肃、简穆、简宪、简懿；献武、献穆；明穆；宣恭、宣景、宣穆、宣简、宣惠、宣懿；清穆；惠文、惠恭；懿穆等131种。

在这些单复谥用字中，美谥、平谥占据绝大多数。从表三可以看出，仅文、武、忠、孝、贞、敬、惠等七种美谥，在魏晉南北朝各政权官员的谥号中，所占比例就不小。整个魏晉南北朝时期的官员谥号都以美谥为主。

27) 另外，北魏东安侯刁冲，为司空记事参军，卒後，“国子博士高凉及范阳卢道侃、卢景裕等复上状陈冲业行，议奏谥曰安宪先生”，详见《魏书》卷八四《儒林·刁冲传》。虽然刁冲死後也是朝廷赐谥为先生，但他生前有爵、有官职，与范平等六人情况不同，所以单列出来。

28) 见天一阁博物馆、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天圣令整理课题组校证：《天一阁藏明抄本天圣令校证附唐令复原研究》，中华书局，2006年，第356页。吴丽娱先生根据《天圣令·丧葬令》第22条、《唐六典》、《通典》相关记载复原了唐代的有关规定：“诸谥……无爵者称子。若蕴德丘园，声实明著，虽无官爵，亦奏锡谥曰先生。”，详见《唐丧葬令复原研究》，同书第691页。

表三：魏晋南北朝官员所获七种美谥比例(单位：人)

美谥	朝代									
	曹魏	两晋	东晋	刘宋	南齐	梁	陈	北魏	北齐	北周
文				1		3		25	6	6
武	1	4	1			2		7	4	3
孝	2	2		1		2	1	6	1	3
忠	1	1	2	3		4	3	3	3	7
贞	11	7	6	4	4	6	2	29	1	7
敬	9		7	3	4	1	2	16		6
惠	1			1		2		23	1	2
总数	25	14	16	13	8	20	8	109	16	34
所占各朝谥号比例	28%	15%	17%	16%	19%	21%	13%	20%	21%	24%

在此时期，官员获恶谥的比例极小。西晋咸宁四年(278年)，太常博士秦秀议太宰、朗陵公何曾谥为“缪丑公”，“帝不从，策谥为孝”²⁹⁾，“时虽不同秀议，而闻者惧焉”³⁰⁾，以此可知，恶谥的舆论影响极大。因此，在官员的谥号中恶谥极少。仅有以下11例：

1. **厉**：曹魏：于禁(厉侯，益寿亭侯)
2. **炀**：梁：王亮(炀子，豫章公)；北魏：长孙道(北平公)
3. **丑**：晋：王恺(山都公)
4. **荒**：刘宋：何劭(荒公，安城公)、颜师伯(荒子，平都子)
5. **缪**：北周：薛善(缪公，博平县公)；
6. **戾**：北周：独孤信³¹⁾
7. **躁**：北周：侯莫陈崇(彭城公，後改谥庄闵)
8. **灵**：北魏：高祐(东光侯)
9. **骄**：梁：萧子显(宁都子)

《逸周书·谥法》篇云“杀戮无辜曰厉”；“好内远礼曰炀，去礼远众曰炀”；“怙威肆行曰丑”；“外内从乱曰荒，好乐怠政曰荒”；“名与实爽曰缪”；“不悔前过曰戾”；“好变动民曰躁”。查以上官员的本传，生前基本上都有与以上谥字相符的德行。

灵为恶谥，《逸周书·谥法》中“灵”有六解，分别为“不勤成名、死而志成、死见神能、乱而不损、好祭鬼怪、极知鬼神”，而《魏书》卷五七《高祐传》载：“高祐太和二十三年卒。太常议谥曰炀侯，诏曰：‘不遵上命曰灵，可谥为灵。’”“不遵上命曰灵”这一对“灵”的解释却是《周书·谥法》中所无。《梁书》卷三五《萧子恪附子显传》：及葬请谥，手诏“恃才傲物，

²⁹⁾ 《晋书》卷三三《何曾传》。

³⁰⁾ 《晋书》卷五〇《秦秀传》。

³¹⁾ 赵超《魏晋南北朝墓志汇编》，第480页。

宜諡曰骄”，“骄”字也不見於其中。除开这两个恶諡外，我们在以上諡号用字上还发现，“光”、“明”、“章”、“順”、“愷”、“慎”、“方”、“信”等字是《逸周书·諡法》篇中所没有的。获得这些諡号的官员分别是：

1. 光：陈：王瑒(光子)、谢嘏(光子)
2. 明：北魏：夏侯道迁(明侯，濮阳侯)、刘昶(宋王)、竇瑗(容城伯)
3. 章：梁：王承(章子)、王规(南昌侯)、徐陵(建昌侯)；北周：申徽(博平侯)
4. 順：北魏：李元茂(始丰侯)、陆清都(广牧子)、尉翊(博陵公)、裴道子(义昌伯)、裴双虎
5. 愷：北周：柳带韦(康成公)
6. 慎：北魏：长孙道(北平公)
7. 方：北周：唐瑾(临淄县伯)
8. 信：北周：杨绍(悦城郡公)

虽然《逸周书·諡法》仍是魏晉南北朝官府议諡或学者论諡的本宗，但“諡法条有限，而应諡者无限”³²⁾，出於现实的需要，对其解释和发挥已成为形势所趋。如王俭在生前“为安西武陵王长史、蜀郡太守。俭惮岷嶮，固以疾辞，因以黜免……承圣三年，世祖追诏曰：‘贤而不伐曰恭，諡恭子。’”³³⁾“恭”在《逸周书·諡法》中有九解，但“贤而不伐曰恭”却不在其列。就连那位作《諡例》十卷的尚书令、侍中、特进、建昌侯沈约的諡号解也与《周书·諡法》中不同。由於沈约生前两次违忤梁武帝的旨意，死後太常议其諡为“文”，而武帝却以其“怀才不尽”諡曰“隐”³⁴⁾。“隐”在《逸周书·諡法》有三解，分别为“隐拂不成”、“不显尸国”、“见美坚长”，而此处解释为“怀才不尽”也可能有本可依。梁武帝手诏赐諡萧子显“恃才傲物，宜諡曰骄”，恐怕也不是梁武帝自己发明的。³⁵⁾

魏晉南北朝时期社会风气虽以复諡为美，但实际评諡过程中官员諡号以单諡为主。諡号用字上绝大多数为美諡或平諡，恶諡极少。由於现实评议的需要，采用了《周书·諡法》篇中所没有的諡号用字，但由於官府和学者对《逸周书·諡法》或注释、或推演、或增补，这些諡号用字仍有本可依。

32) 《通典》卷一〇四《单复諡议》王彪之所言。

33) 《梁书》卷二一《王份附俭传》。

34) 《梁书》卷一三《沈约传》。

35) 汪受宽先生认为，“百官恶諡还有一个特点，就是不少諡字或諡解，是临时编造的。”他举出萧子显的“骄”等例子，并认为梁武帝以“怀才不尽”諡沈约为隐，“此諡的发明权显然应归於梁武帝”(《諡法研究》，第163页)。笔者认为这一点不能肯定。

(四)魏晉南北朝时期尚书省官员在百官给谥程序中的作用和地位

在中国古代，百官给谥的程序基本分为请谥→议谥→定谥→赐谥四个步骤，但每个朝代的程序又有所差别。³⁶⁾魏晉南北朝时期，仍以礼官主导谥法一事，这一点已为学界所公认。但以往的学者却忽略了魏晉南北朝时期尚书省官员在百官给谥程序中的作用和地位，而这一点直接影响了唐代的相关制度。

西汉景帝中元二年，设立大鸿胪掌诸侯王列侯之事。凡诸侯王薨，由大鸿胪负责奏其行迹，代表朝廷参加葬礼，致读诔文赐予谥号。而列侯之薨及诸侯太傅初除之官，则由大鸿胪的属官大行令(行人)参加葬礼，赐予谥号宣读诔文。到东汉时，大鸿胪仍主诸侯王薨後事。西晋时，百官的谥号由太常博士议定。

而在魏晉南朝¹²则议谥实例中可以看到，礼官即太常仍主导著官员的议谥，而尚书省官员确实在百官给谥程序中起到了重要的评议作用。在北魏时期，从郑羲、源怀、甄琛、羊祉死後谥法评议的讨论中，我们可以看到，北魏官员谥号的评议过程中，尤其是在北魏中後期，虽然官员谥号评定的程序为：在官员死後，由死者的子孙或僚属向大鸿胪卿正式提出赐谥号的请求；大鸿胪卿受理这种请求後，要求官员所属郡的大中正提供此人的“行状”；中正将行状移交到司徒府；而後下交太常寺，太常卿、太常博士根据行状评议此人的谥号。尚书省官员好似并没有参与到官员谥号的评定。但在实际的谥号评定过程中，尚书省负责审核行状的真伪，确定行状的记载与考簿的记载一致之後，将行状交与太常寺，太常卿、太常博士根据行状评议此人的谥号；当官员的谥号与其生前考课行迹不一致时，尚书省的官员依照官员生前的考课行迹，对礼官评议的谥号进行驳议，太常寺、司徒府等机构的官员共同参与其中。《北史》卷五十六《魏收附质传》载北齐时期魏质死後，侍中李俊、秘书监常景等三十二人申辞于尚书，为请赠谥。

《隋书》卷七七《隐逸·李士谦传》载开皇八年李士谦卒，“乡人李景伯诣尚书省请先生之谥”。魏质和李士谦二人的事例，可以直接证明北齐、隋朝生前无官职的人请“先生”之谥，是首先诣尚书省，而非鸿胪寺。

唐朝的官员谥号评议过程很大程度上吸取了两晋南北朝的经验，尤其受到北魏的影响。吴丽娱先生根据《天圣令·丧葬令》第22条、《唐六典》、《通典》相关记载复原了唐代的有关规定：“诸谥，王公及职事官三品以上、散官二品以上身亡者，其佐吏录行状申考功，考功责任勘校，下太常寺拟谥讫，覆申考功，於都堂集省内官议定，然後奏闻。赠官同职事。”³⁷⁾凡职事官三品以上散官二品以上官员死後，由佐吏录其行状，申报考功司。考功司隶属於尚书省吏部尚书，设考功郎中一员，考功员外郎一人，主事三人，令史十三人，书令史二十五人，掌

³⁶⁾ 汪受宽：《谥法研究》，上海古籍出版社1995年版，第127页。

³⁷⁾ 吴丽娱先生对这条的复原，详见天一阁博物馆、中国社会科学院历史研究所天圣令整理课题组校证：《天一阁藏明抄本天圣令校证附唐令复原研究》之《唐丧葬令复原研究》，中华书局2006年，第691页。

固四人，负责内外文武官员的考课。考功司依照四善二十七最的标准，每年对应考之官的功过行能进行考核，而定上上、上中、上下、中上、中中、中下、下上、下中、下下九等。史籍保留了唐朝官员的行状，李翱《李文公集》卷一一记录了韩愈、徐申等人的行状。《故正义大夫行尚书吏部侍郎上柱国赐紫金鱼袋赠礼部尚书韩公(愈)行状》：

“曾祖泰皇任曹州司马，祖浚素皇任桂州长史，父仲卿皇任秘书郎赠尚书左仆射。公讳愈，字退之。昌黎某人。……谨具任官事迹如前，请牒考功，下太常定谥。并牒史馆，谨状。”

唐代行状的内容包括官员曾祖、祖父、父亲三代的官职，官员自身的任官经历和在任的政绩。最後以“谨具任官事迹如前，请牒考功，下太常定谥。并牒史馆，谨状”等公文文字结尾。考功司根据官员以往考课的记录，勘查核实行状所言官员的履历功过，然後才能转送太常寺议谥。这一点无疑直接受到北魏的影响。

综上所述，魏晉南北朝时期，学者们对《谥法》进行了不同程度的注释、推演，从而丰富了谥法的内容和范围，对後世的谥法产生了巨大的影响。出土于阿斯塔那316号墓中的古抄本《谥法》残本，既深受汉代谥法文献的影响，也正是魏晉南北朝时期各家对《谥法》进行增广、阐释的产物。魏晉南北朝时期学者对《谥法》进行增广与这一时期的谥法制度的重大变化密不可分。官员是谥法制度涉及的最为庞大的一个群体，魏晉南北朝时期官员的谥法呈现出四个特点：一是得谥官员的身份发生了变化，不仅生前有爵的官员、生前无爵的官员死後也能得谥，这是中国古代官员谥法的一个重大变化。二是得谥官员的官品，东晋没有明确规定，南朝百官给谥资格可能经过从五品上调至三品的过程，而北朝也没有明文规定百官给谥的品级，实际的赐谥中，官员生前在职的功劳、德行更大程度地影响著得谥与否及其谥号的好恶。三是官员谥号用字，以单谥为主；用字以美谥或平谥为主；由於现实评议的需要，采用了《逸周书·谥法》篇中所没有的谥号用字，但由於官府和学者对《逸周书·谥法》或注释、或推演、或增补，这些谥号用字仍有本可依。四是在实际的谥号评定过程中，尚书省官员不仅在请谥环节中负责审核行状的真伪，当官员的谥号与其生前考课行迹不一致时，尚书省依照官员生前的考课行迹，对礼官评议的谥号进行驳议。

唐 前期 北方 羈縻府州의 設置와 變化

채 지 혜(동국대)

目次

- I. 머리말
- II. 北方 羈縻府州의 설치
- III. 北方 都護府의 설치와 제도의 완비
- IV. 기미부주의 위축과 당의 대응
- V. 邊境節度使의 설치와 제도의 재편
- VI. 맺음말

I. 머리말

당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그 북방에는 東突厥이라는 강력한 유목국가가 존재하였다. 太宗 정관 4년(630) 당조는 동돌궐을 멸망시키고 그 땅에 기미부주를 설치한다. 기미부주 제도는 당대에 처음 만들어졌는데,¹⁾ 당조는 그 추장들을 각각 都督, 刺史로 임명하고 그 직책을 세습시켰다. 이후 당은 자신의 세력 안에 포섭된 영역과 주변 민족들을 기미부주로 편제하여 다스린다.

당의 북방에 설치된 기미부주는 주변 정세 변화와 유목 민족의 이동성에 의해 매우 유동적이고 복잡하게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이해하려는 연구가 있다. (1)劉統은 막북 기미부주의 이동을 기준으로 3단계로 나누었다. 1단계는 정관 21년(647)에서 高宗 의봉 3년(678)까지인데, 이 시기 당조가 처음으로 막북에 기미부주를 설치함으로써 막북에 대한 기미통치를 초보적으로 정립한다. 2단계는 고종 조로 원년(679)에서 玄宗 개원 원년(713)까지인데, 제2 동돌궐이 흥기하면서 당의 막북에 대한 기

1) 당의 기미부주 제도는 이민족 사회를 온존시키고 통치하는 羈縻의 전통에 따른 것이지만, 都督府와 州縣을 설치함으로써 그들을 관료제적인 체제에 편입시킨 것이었다(堀民一 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세계』, 동국대학교출판부, 2012, 263쪽 참고; 譚其驤, 『唐代羈縻州述論』, 紀念顧頡剛學術論文集』 下, 1990 참고). 당은 기미부주를 설치하여 기미부주 사이의 세력 균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부족 간의 결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당은 최종적으로 왕조에 위협이 되는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변경의 안정을 확보하고자 하였다(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遊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67쪽 참고).

미 통치가 와해된다. 이 시기 안북도호부와 그 관하의 일부 기미 부락이 이동하다가 隴右道 경내로 들어가는데, 이들 부락은 점차 당조 군대의 일부로 전환된다. 3단계는 현종 개원 2년(714)에서 현종 천보 13재(754)까지이다. 당조는 내부해 온 막북 부락들을 關內道 북부 軍鎮과 邊州都督府에 기미부주로 僑治시키고, 이들에 대해 군사 관리의 기미제도를 시행한다.²⁾ (2)原文靜은 상부 기구의 변천을 기준으로 북방 기미부주의 변화 과정을 크게 2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는 정관 4년(630)에서 中宗 경릉 3년(709)까지인데, 이 시기는 도호부가 기미부주를 통치한 시기로 행정통제가 주를 이루었다. 2단계는睿宗 경운 원년(710) 節度使 제도가 성립되면서 부터인데, 점차 절도사가 기미부주를 통치하게 되면서 군사통제가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³⁾ 다만, 劉統의 연구는 기미부주의 이동을 상세히 고증하여 그 변화 양상을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막북 기미부주에 한정하여 고찰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原文靜은 기미부주 변화를 2단계로만 나누고 있으며 그 자체의 변화에 대해서는 언급이 소략하다.

이 글은 당 전기 북방 지역에 설치된 전체 기미부주와 그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들 기미부주는 설치된 지역이 광범위하고, 설치와 폐지가 반복되는 등 유동성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 변화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그 변화 과정을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은 여전히 유효한 방안이 될 것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그 존재 형태와 운용방식이라는 측면에서 북방 기미부주의 설치와 변화 과정을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통해 당 전기 북방 기미부주의 특징이 보다 명확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II. 北方 羈縻府州의 설치

太宗 정관 4년(630) 당은 동돌궐을 멸망시킨 후 幽州에서 靈州까지의 땅에 돌궐 降戶를 거처시켰는데, 突利可汗이 통솔했던 땅을 나누어 順州, 祐州, 化州, 長州 4도독부를 설치하고, 頡利可汗의 옛 땅을 나누어 定襄, 雲中 두 도독부와 6주를 설치한다. 하지만 뚜렷한 기록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기미부주의 처음 설치 정황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란이 남아 있어⁴⁾ 문제가 된다.

2) 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3), 『新羅史學報』 25, 530~549쪽.

3) 原文靜, 「唐代 羈縻府州 관리체제의 변화 원인 검토」, 『高句麗渤海研究』 44, 299~313쪽.

4) 劉統, 石見清裕, 김호동, 艾沖은 당조가 정관 4년 설치한 기미부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劉統은 당조가 정관 4년 朔方 지역에 운중, 정양 두 도독부를 설치하고, 河北에 순주, 장주, 北開州, 北寧州, 北撫州, 北安州를 설치하였다고 한다(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1), 『新羅史學報』 23, 661~669쪽 참고). (2)石見清裕는 돌궐의 옛 땅 중 운중 같은 요지에는 그 수장을 세워 다스리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를 행하였다가 돌궐 항호에 대한 격론이 끝난 정관 7~8년 무렵에 내지에 4주를 두고 塞外에 정양, 운중 2도독부 하의 6주를 두게 되었다고 한다(石見清

이에 대해 『자치통감』, 『구당서』, 『신당서』를 중심으로 정관 4년 설치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 기미주를 살펴 본 결과⁵⁾ 당시에 당이 順州, 北開州(후에 화주), 北寧州(후에 장주), 北安州, 北撫州(후에 우주)를 설치하였다고 생각된다. 순주는 幽州의 북쪽에 설치되었고,⁶⁾ 북개주와 북녕주는 화주도독부 경내에 설치되었다.⁷⁾ 북무주와 북안주는 관내도 북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⁸⁾ 이 5기미부주가 정관 7~8년에 당의 돌궐 항호 안치에 대한 격론이 마무리되자 定襄, 雲中 두 기미도독부와 6기미주, 장주와 화주 등 4기미주로 재편되었을 것이다. 당조는 돌궐 항호들을 내지로 옮기고 그들로 기미부주를 설치하였다가 원거주지에도 기미부주를 설치한 것이다.⁹⁾

그렇다면 이렇게 설치된 기미부주를 당은 어떠한 방식을 통해 통제하였는가? “[항호의] 부락을 온전하게 하고 그 습성을 유지시면서 [그들로] 텅 빈 땅을 채워 중국의 울타리로 삼는다”¹⁰⁾는 방식에 따라 설치된 기미부주는 일정한 자치성을 갖는 동시에 북방을 수비하는 임무도 가졌다. 아울러 『唐六典』에 이들의 조세 부담과 관련된 조문이 남아 있어 살펴보고자 한다. 『당육전』에는

裕,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汲古書院, 1998, 119쪽 참고). (3)김호동은 내지에 순주, 북개주, 북녕주, 북무주, 북안주가 설치되고 塞外에 豐州가 설치되었다고 한다(金浩東, 『唐의 羈縻支配와 北方 游牧民族의 對應』, 『歷史學報』 137, 139쪽 참고). (4)艾沖은 정관 4년에 운중 정양 두도독부와 북개주, 북녕주, 북안주, 북무주가 설치되었는데, 북개주가 화주로, 북녕주가 장주로, 북무주가 우주로, 북안주가 순주로 재편되었다고 본다(艾沖, 『唐前期東突闕羈縻都督府의 置廢與 因革』, 『中國歷史地理論叢』 2003-6, 136~141쪽 참고).

- 5) 『資治通鑑』 권193, 정관 4년 6월 조, 中華書局, 6079쪽.
- 6) 『舊唐書』 권194상, 突利可汗傳, 中華書局, 5160쪽. 하지만 『구당서』 地理志에서는 순주를 정관 6년에 설치하였는데, 營州 남쪽 五柳城에 寄治하였다고 한다(『구당서』 권39, 지리지2, 河北道, 順州 조, 1520쪽). 이러한 기록들을 통해 순주는 정관 4년 유주 북쪽에 설치되었다가 정관 6년 영주에 교치된 것으로 보인다.
- 7) 당조는 정관 8년 북개주를 화주로 개칭하였는데, 화주가 夏州都督府 경내에 설치되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북개주가 하주도독부 경내에 있었다고 짐작된다(『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夏州都督府 조, 1414쪽 참고). 북녕주에 대해서는 『阿史那忠碑』를 통해 장주로 개칭되었음을 알 수 있다(『石刻史料新編』 2冊, 法仁文化社, 993쪽 참고). 북녕주는 정관 7년 장주로 개칭되었는데, 장주가 하주도독부 경내에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신인 북녕주 역시 하주도독부 경내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파악된다(『구당서』 권38, 지리지1, 關內道, 夏州都督府 조, 1414쪽 참고).
- 8) 북무주는 우주의 전신으로 관내도 북부에 설치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된다(艾沖, 『唐前期東突闕羈縻都督府의 置廢與 因革』, 137~138쪽 참고). 한편, 북무주도독 史善應과 北安州都督 康蘇密은 모두 昭武九姓 粟特人으로 도독직을 제수받기 전에 중앙에서 中郎將직을 맡고 있었다. 두 기미부주의 설치시기, 도독의 출신 등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북안주도 관내도 북부에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된다.
- 9) 譚其驤은 기미부주를 크게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하였는데, 하나는 항복한 자들을 내지로 옮겨 설치한 것(僑蕃州)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거주지에 설치한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譚其驤, 『唐代羈縻州論述』, 『長水粹編』. 河北教育出版社, 2000, 148~151쪽 참고.
- 10) 『자치통감』 권193, 정관 4년 4월 조, 6076쪽.

무릇 내부한 諸國 蕃胡의 경우에도 9등으로 정하였는데, 4등 이상은 上戶, 7등 이상은 次戶, 8등 이하는 下戶로 삼는다. 상호는 丁마다 은전 10文을, 차호는 5문을 세금[稅]으로 내고, 하호는 면제한다. 호적을 올린 지 2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상호는 丁마다 羊 2口를, 차호는 1구를 내고, 하호는 3호가 함께 1구를 낸다. [原注; 양이 없는 곳에서는 白羊의 값에 준하여 경화로 절납한다. 만약 종군하여 출정하면 안장을 지운 말을 스스로 갖추게 하고, 30일 이상을 넘긴 경우에는 그 해의 양의 수납을 면제한다. 무릇 내부한 뒤에 낳은 자식은 백성과 같게 하고 蕃戶로 취급하지 않는다]

라는 기록이 있다.¹¹⁾ 이에 근거하여 많은 학자들이 북방 기미부주의 조세 부담에 대해 긍정하고 있으나, 누가 무엇을 부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¹²⁾ 『신당서』 兵志에서는 정관 10년(636) 10道에 절충부를 두었다고 하며, 『구당서』 지리지와 『太平寰宇記』 기미부주 조에서는 각 기미부주의 戶口 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조가 정관 초에 설치한 기미부주의 호구 수를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 당조는 이를 가지고 기미부주에게 조세를 부담시켰을 것이다. 따라서 『당육전』의 조세 수취 대상에는 북방 기미부주 백성들도 포함되었고, 당조는 이들에게 조세로 羊을 내게 하였다고 보인다.¹³⁾ 하지만 당시 당으로 내부해 온 이민족의 名數를 파악하는 것은 典客署의 임무였고, 戶部는 전각서에서 파악한 명수를 기준으로 기미부주에게 조세를 부담하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당시 기미부주에서는 그 주와 부에 필요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해결하였다고 보인다.¹⁴⁾ 이러한 상황들로 인해 『신당서』 지리지 기미부주 조에서 “[기미부주는] 공부와 관적을 대부분 호부에 올리지 않았다”¹⁵⁾고 언급하게 된 것이다.

11) 『唐六典』 권3, 戶部尙書, 戶部郎中 조, 中華書局, 77쪽.

12) 『당육전』의 조문이 북방 기미부주 백성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보는 학자로는 대표적으로 石見淸裕, 李錦綉 등이 있다. (1)石見淸裕는 은전 부담은 소그드인, 羊 부담은 북방 기미부주 백성에게 적용되었다고 본다(石見淸裕,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164~172쪽 참고). 그리고 (2)李錦綉는 이 조문이 대규모 부락이 그 부락 조직을 보유하며 내부해 온 경우에 적용되었는데, 서역과 같이 화폐를 통용했던 곳에서 왔으면 은전을, 북방 유목민 같이 목축업을 행했던 곳에서 왔으면 2년 은전 부담 후 양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한다(李錦綉, 『唐代財政史稿』 3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182~185쪽 참고).

13) 이 글에서 기미부주의 조세 부담은 당이 기미부주에 대해 가한 통제 중의 하나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다룬 것이므로 더 이상 전문적으로 다루지 않겠다. 이들 기미부주의 조세 부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石見淸裕, 『唐の北方問題と國際秩序』, 148~172쪽; 李錦綉, 『唐代財政史稿』 3冊,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07, 175~204쪽 참고; 樊文禮, 『唐代羈縻府州的類別劃分及其與藩屬國的區別』, 『唐史論叢』 8, 三秦出版社, 2006, 84~89쪽; 王義康, 『唐代“蕃族”賦役制度試探』, 『民族研究』 2004-4, 65~71쪽 등을 참고.

14) 『구당서』 권43, 職官志2, 刑部, 比部郎中 조, “기미주에 보임된 바의 漢官에게는 해당 지역의 물건을 지급한다”(1839쪽). 이를 통해 당조 중앙에서 기미부주에 환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기미부주에서는 조세를 거두어 물자를 확보하고, 이를 파견된 환관에게 봉록으로 지급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거두어진 기미부주의 조세는 주로 그 부와 주를 운영하는 데에 충당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태종 정관 4년(630)에서 20년(646)까지는 기미부주 제도의 창설기라 할 수 있다. 당은 정관 4년에 북방 기미부주를 처음 설치하고, 향호의 추장들로 도독과 자사를 두었으며 이들을 가까운 邊州都督府에 속하게 하였다. 이렇게 당조는 기미부주에게 일정한 자치성을 부여하며 행정 통제를 시작하였는데, 사실 이는 복속된 이민족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더 이상 이들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 아울러 당조는 기미부주에게 북방 변경을 수비하게 하고, 조세를 부담하게 하여 자치성에 제약을 가하였다. 하지만 당조 내부에서는 내지에 교치한 기미부주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어 갔고, 결국 정관 13년 阿社那結社率의 모반 사건이 일어나 이를 계기로 정관 설치된 기미부주 대부분이 폐지된다. 이는 새로운 제도가 창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북방 설연타와 이민족 향호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조가 그 제도를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Ⅲ. 北方 都護府의 설치와 제도의 완비

태종 정관 20년(646) 당이 漠北을 점유하고 있던 薛延陀를 멸망시킨 것을 시작으로 정관 21년(647)에서 고종 영휘(650~655) 초까지 막북, 漠南의 부락들이 당에게 내부해 온다. 이로써 당은 북방 기미부주를 막북까지 확대 설치하게 된다. 아울러 당조는 이때 설치된 기미부주 위에 이들을 통제하는 도호부를 설치하여 기미부주 제도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용되게 하였다.

이 시기에 설치된 燕然, 單于, 瀚海 세 도호부가 어떻게 병존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다. 嚴耕望과 王世麗는 영휘 원년 이후 용삭 3년까지 연연, 선우, 한해 3도호부가 병존하였다¹⁶⁾고 보는 반면 譚其驤, 艾沖, 李宗俊은 세 도호부가 가 병존하지 않았다고 한다.¹⁷⁾ 이에 대해 세 도호부가 함께 사료에 등장하는 점을 우선시하여 영휘 원년 이후 북방에 세 도호부가 존재했다가 용삭 3년(663)에 이르러 운중, 한해 두 도호부로 재편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방에 설치된 도호부는 용삭 3년을 기점으로 두 개의 도호부로 정리되고 그 통할 구역도 막북과 막남 두 방향으로 나뉘게 된다. 선우, 한해 두 도호부를 병합하여 설치한 雲中都護府(후에 선우도호부)는 막남 기미부주를 통제하였고,

15) 『新唐書』 권43下, 地理志7下, 羈縻州 조, 中華書局, 1119쪽.

16) 王世麗, 『安北與單于都護府』, 雲南人民出版社, 2006, 48~55쪽.

17) 譚其驤과 艾沖은 영휘 원년에 나누어 설치한 도호부를 연연, 한해 두 도호부라고 보는 반면 李宗俊은 영휘 원년 설치된 도호부를 선우, 연연 두 도호부라고 본다(李宗俊, 『唐代安北單于二都護府再考』, 『中國史研究』 2009-2; 艾沖, 『唐代安北都護府遷徙考論』, 『陝西師範大學學報』 2001-4 참고).

연연도호부는 회홀로 치소를 옮겨 한해도호부(후에 안북도호부)로 바뀐 후 막북 기미부주를 통제하였다.

『신당서』 回鶻傳(이하 回紇傳)에는 당조가 막북 기미부주를 설치할 때의 정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당시 기미부주 제도의 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신당서』 회홀전에는

[정관 20년] 鐵勒 11부락이 모두 와서 말하길 “…… 천자의 명에 따르길 원하니 당나라 관직 을 내려주십시오”라고 하였다. …… [정관 21년 철록 제부로 6부 7주 등을 설치하고] 모두 그 우두머리를 都督, 刺史, 長史, 司馬로 삼고, …… 燕然都護府를 두어 그들을 통제하게 하였다

라고 적혀 있다.¹⁸⁾ 당조가 그 수장들을 도독, 자사, 장사, 사마로 두었다고 하는데, 장사와 사마는 본래 당의 중앙에서 보내는 관리였다. 『자치통감』에는 정관 21년 철록 제부의 주장들이 입조하여 문인을 두어 표문과 상소문을 작성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했다¹⁹⁾는 기록이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보면 『신당서』 회홀전의 장사와 사마는 당조가 파견한 漢官이 아닌가 의심된다. 회홀은 기미부주가 설치되면서 당의 행정·관료 체제에 편입되는 한편 그들 고유의 관제도 보유하고 있었다.²⁰⁾ 그리고 회홀의 고유 관제 안에도 도독, 장사, 사마가 있었다. 당이 회홀에게 그들 고유의 관제를 갖게 한 것과 『자치통감』의 기록에 근거하여 『신당서』 회홀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당조는 회홀의 도독, 자사, 장사, 사마를 그대로 두도록 허락하는 동시에 당의 관제에 따라 그 수장을 도독, 자사로 삼고 한관으로 장사와 사마를 파견한 것이다. 당조는 그 부락의 습속을 유지하게 하여 기미부주를 보다 쉽게 통치하고자 하였고 이 때문에 그들에게 고유의 관제를 갖는 것을 허락하였다.²¹⁾ 아울러 기미부주에는 한관이 파견되어 보다 직접적으로 당조의 통제를 받게 된다.

앞서 언급한 『자치통감』에서는 정관 21년(647) 철록 제부의 주장들이 貂皮로 租賦를 충당하게 해줄 것을 청했다고 한다. 劉統은 이에 근거하여 막북 기미부주에서도 조세 부담의 의무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단순히 조세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당의 諸州에서는 공물을 납부하였는데, 『당육전』 戶部郎中 員外郎 조에는 關內道에서 북방 돌궐의 조공을 관할한다고 적혀 있다. 아울러 막남을 통제했던 선우도호부에서는 野馬皮로 공물을 충당하였는데, 河北道에서 이를 관장하였다고 한다. 선우도

18) 『신당서』 권217상, 回鶻傳上, 6112쪽.

19) 『자치통감』 권198, 정관 21년 정월 조, 6245쪽.

20) 『신당서』 권 217, 회홀전, 6113쪽.

21) 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2), 『新羅史學報』 24, 409쪽.

호부의 공물 품목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공물은 기미부주-도호부와 변주도독부-‘道’-호부로 운반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정황에 맞추어 『자치통감』의 기록을 살펴본다면, 철록 제부가 조부하였다는 초피는 공물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막북 기미부주는 공물로 초피를 부담하였지만, 중앙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안북도호부 관하 기미부주의 공물은 호부로 운반되지 않고 도호부와 관하 기미부주를 운용하는 비용으로 충당되었을 것이다.

태종 정관 21년(647)에서 고종 의봉 3년(678)까지는 북방 기미부주 제도의 확립이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창설기와 달리 기미부주가 막북에까지 설치되고 북방 기미부주를 통제하기 위해 그 감독 기구로 도호부가 설치된다. 당시 북방 기미부주는 자신들 고유의 관제까지 갖추고 있을 정도로 자치성을 지니고 있었으나, 당조는 기미부주에 한관을 파견하고 그들에게 조세와 공물을 부담하게 하며 보다 직접적인 통제를 가하였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기미부주 제도는 이민족 부락들을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그들을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게 한다는 당의 의도대로 시행되어 갔으며, 이때 마련된 틀은 기미부주 제도 변화상 비교적 장기간 운용된다.

IV. 기미부주의 위축과 당의 대응

고종 조로 원년(679)과 인덕 원년(664) 單于都護府 관하에 있던 동돌궐 항호가 두 차례 반란을 일으켰다.²²⁾ 반란은 당에 의해 진압되었지만, 돌궐 항호의 반란이 연이어 일어났다는 것은 당시 선우도호부에서 이들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 할 것이다.²³⁾ 선우도호부 관하에 있던 돌궐 항호는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영순 원년(682)에 阿史那骨咄祿이 제2동돌궐을 건국하게 된다. 이후 제2동돌궐 세력이 크게 확장되면서 당은 막남과 막북 기미부주를 대거 잃게 된다.

여러 학자들은 제2동돌궐의 건국과 북방 기미부주 설치 범위의 축소를 가지고 이 시기 당의 기미 지배에 대해 다양하게 표현하였다. (1)屈敏一은 “당 기미부주체제의 중심부가 완전히 붕괴하였다”²⁴⁾고 하며, (2)栗原益男은 북방 뿐 아니라 동북방, 서방에서도 이민족의 침략이 빈번히 이루어져 이 시기에 당조의 기미정책이 파탄되었다고 본다.²⁵⁾ (3)劉統

22) 『신당서』 권215상, 돌궐전상, 6042~6043쪽.

23) 당시 선우도호는 親王이 요령하고 있었고, 중앙에서 파견한 長史가 도호부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선우도호부의 실무자인 장사는 항상 기미부주의 정황을 살피고, 항호의 반란과 내분을 막아야했는데, 두 차례의 반란은 당시 선우도호부 장사 蕭嗣業이 아닌 裴行儉에 의해 진압되었다. 연은 돌궐 항호의 반란은 선우도호부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으며, 도호부만으로는 대규모 반란을 진압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24) 堀敏一 저, 『중국과 고대 동아시아 세계』, 279쪽.

은 “당조의 막북 기미통치가 와해되었다”²⁶⁾고 하고, 原文靜은 “돌궐이 빈번하게 당조의 북부 주현을 공격하자 도호부 체제는 완전히 파괴되었다”²⁷⁾고 한다. 그렇다면 제2동돌궐 건국 이후로 북방 기미부주제도는 그대로 무너진 것인가? IV절에서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당조가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당조는 계속하여 제2동돌궐과 吐蕃의 침략을 받았고, 북방과 동북방에서는 이민족의 이반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정세에 맞추어 당은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북방 기미부주를 통제해야만 했다. 당조는 제2동돌궐 세력을 피해 내지로 남하해 온 부락들을 다시 기미부주로 재편하고 변주도독의 관리를 받게 하였다. 무측천 성력 원년(698)에는 思結의 盧山都督府와 蹕林州, 渾의 阜蘭州, 契苾의 榆溪州를 甘州와 涼州에 교치하고 涼州都督府의 통제를 받게 하였다.²⁸⁾ 개원 4년에는 默啜이 사망하고 可汗位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하는데,²⁹⁾ 이를 계기로 제2동돌궐 예하에 있던 여러 부락들이 동돌궐을 이반하고 당으로 내부해 온다. 『全唐文』의 『贈戶部尚書河東公楊君神道碑』에 당이 이들을 어떻게 안치시켰는지에 대한 기록이 적혀 있다. 『전당문』에는

[楊執一이] 다시 涼州都督을 제수받고 右衛將軍가 되었는데, 모두 예전과 같게 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許州刺史로 옮겨지고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單于가 通好하자[款關] 右衛將軍·檢校勝州都督·兼處置降戶使을 제수받았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³⁰⁾ 楊執一은 양주도독이었는데, 최종적으로 右衛將軍·檢校勝州都督·兼處置降戶使가 된다. 먼저 ‘處置降戶使’는 임시직인데, 당조는 양집일을 ‘처치항호사’로 삼고 그를 파견하여 남하해 온 돌궐 항호들을 河曲에 안치시키게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검교승주도독’은 그가 하곡에 안치한 돌궐 항호를 통제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처치항호사’의 파견과 아울러 이 시기의 기미부주 제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押蕃使’의 설치에 대해서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당조는 당시 복잡하게 변해가는 변경 지역의

25) 布目潮瀨·栗原益男 著, 『중국의 역사-수당오대』, 임대희 역, 혜안, 2001, 276쪽.

26) 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3), 536쪽.

27) 原文靜, 『唐代 羈縻府州 관리체제의 변화 원인 검토』, 307쪽.

28) 『신당서』 권43하, 지리지7하, 기미주, 농우도, 燕然都護府 조, 1132쪽. 『신당서』에서는 이들 기미부주가 總章 원년(668)에 涼州都督府에 예속되었다고 하는데, 오기로 추정된다. 목철이 서쪽으로 세력을 확대하며 拓西可汗이라고 칭하고 내부체제를 정비한 성력 원년부터 제2동돌궐의 압박을 받은 부락들이 당조로 내부해오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29) 『자치통감』 권211, 현종 개원 4년 6월 조, 6719쪽; 『구당서』 권194상, 돌궐전상, 5173쪽; 『신당서』 권215상, 돌궐전상, 6049쪽.

30) 『全唐文』 권229, 『贈戶部尚書河東公楊君神道碑』(長說), 中華書局, 233쪽.

외교와 민족 사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임시적이지만 압번사를 두기 시작한다. 『慕容明墓誌銘』을 통해 예종 경운 2년(709) 吐谷渾을 대상으로 하는 ‘押渾副使’가 처음으로 설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 토욕혼은 토번의 침략을 받아 양주로 내부해와서 靈州 등지에 안치되어 있었다. 村井恭子は 『慕容明墓誌銘』에 근거하여 이 시기에 압번사가 처음 두어졌으며, 초기에는 내부해 온 이민족 수장이 압번사가 되었다고 한다.³¹⁾ 이는 당조가 당시 극심하게 동요하고 있던 북방 기미부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민족 수장을 압번사로 두고 그 부락과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게 한 것이라고 생각 된다. 당조는 비록 막북과 막남의 땅을 대거 잃었지만, 여전히 그 북방에는 수많은 기미부주가 존재하고 있었다. ‘처치항호사’와 ‘압훈부사’의 존재는 당조가 使職을 활용하여 이민족 항호를 안치하고, 계속하여 그들에게 행정적 통제를 가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한편 당은 안북, 선우 두 도호부의 위치 등을 조정하면서 계속하여 기미부주를 통제해 갔다. 수공 3년(687)에는 제2동돌궐이 막북을 공략하였는데, 이에 철록 제부가 남하해오자 당은 이들을 관할하던 안북도호부를 隴右道 북동쪽의 同城으로 옮기고,³²⁾ 그 부락들을 관할하게 하였다. 이와 아울러 경룡 2년(708) 이후에는 武官에게 안북도호를 겸임하게 하여 주목된다. 경룡 2년 朔方行軍大總管 長仁愿이 막남의 땅을 수복하여 三受降城을 쌓았는데, 이때 당은 안북도호부를 西受降城으로 옮기고 안북도호를 장인원에게 겸임하게 한다. 또 당은 개원 2년에도 안북도호부를 中受降城으로 옮기며 朔方軍副大總管인 王峻에게 안북도호를 겸임하게 한다. 李大龍은 이에 주목하여 안북도호의 기능이 약화되고 북방을 방비하기 어려워지면서 무관이 기미부주를 관할하는 안북도호를 겸임하게 되었다고 본다.³³⁾ 당조가 돌궐에 방비하기 위해 설치된 군성에 도호부의 치소를 둔 것, 무관이 도호를 겸임하게 된 것은 모두 도호부 관하 기미부주에서 이전보다 군사적 통제를 강하게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고종 조로 원년(679)에서 현종 개원 5년(717)까지는 북방 기미부주제도의 위축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 대외 정세에 따라 북방 기미부주의 설치 범위가 축소되었고, 그 제도가 기존에 완비된 틀에 따라 운용되지 못하면서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당조는 북방 기미부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유연하게 대응하였다. 당조는 ‘처치항호사’, ‘압번사’ 같은 사직을 활용하여 이들을 안치하고 계속하여 기미부주에 대한 행정적 통제를 가하였다. 그러

31) 村井恭子, 『押蕃使之設置について』, 『東洋學報』 84, 2003, 39쪽.

32) 안북도호부의 남천에 대해 劉統은 수공 2년으로, 艾沖, 李大龍, 王世麗 등은 수공 3, 4년경으로 본다(劉統, 『당대 기미부주 연구』(3), 536~537쪽; 艾沖, 『唐代安北都護府遷徙考論』, 106쪽; 李大龍, 『有關唐安北都護府的幾介問題』, 『北方文物』 2004-2 69쪽; 王世麗, 『突厥的叛亂與安北都護府南遷』, 『中國邊疆史地研究』 2006-4, 56쪽).

33) 李大龍, 『有關唐安北都護府的幾介問題』, 『北方文物』 2004-2, 79~80쪽.

나 한편으로는 이민족의 이반과 신속이 반복되자 군성에 도호부의 치소를 두고, 무관에게 도호를 겸관하게 하며 일부 기미부주에 대해 이전 보다 강하게 군사적 통제를 가하였다. 당조의 이러한 노력으로 북방기미부주 제도는 유지될 수 있었다.

V. 邊境節度使의 설치와 제도의 재편

북방 부락들의 이반이 증가하자 당조는 이를 효율적으로 진압하기 위해 軍鎮에 점차 수많은 병사를 주둔시키고 그 책임자로 節度使를 두게 된다. 북방 기미부주가 대거 설치되어 있던 關內道 북부와 河東道 지역에도 당항 기미주인 蘭池州³⁴⁾에서 일어난 康待賓의 난을 계기로 개원 9년(721)과 개원 10년 朔方節度使와 太原以北節度使가 두어진다. 아울러 현종은 북방의 변경절도사를 설치와 비슷한 시기에 조서를 내려 諸道 군성에게 법식에 따라 오랑캐 부락을 관할하게 하였다.³⁵⁾ 이러한 정황들은 개원 9년에 이르면 대부분의 북방 기미부주에 군사적 통제가 강화되었다는 것을 뜻할 것이다.

이시기 당조의 북방 기미부주 통제 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변경절도사의 권한 확대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당조는 藩鎮에 支度使를 두고 재정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하동절도사는 개원 11년(923), 삭방절도사는 개원 14년에 그 직을 겸임하여 재정권을 갖게 된다. 그리고 개원 16년 삭방절도사가 檢校渾部落使를 겸임하면서부터 삭방절도사에게 관내 기미부주를 관할할 수 있는 행정권까지 부여된다. 삭방절도사의 직무와 권한 확대에 대해 李鴻賓은 “개원 14년 關內支度營田使를 시작으로 잇달아 사직을 겸령하면서 그 권한이 강화되었다. 이후 押諸蕃部落使도 겸령하게 되면서 이민족 부락을 직접 예측시키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³⁶⁾고 한다. 그리고 村井恭子は 절도사의 압번사 겸령에 대해 “당 중앙에서 파견한 인물에 대한 압번사 임명과 절도사의 압번사 겸령이 이루어진 시기가 비슷한데, 양자 모두 개원 연간에 일어난 일이다. 이는 현종기에 있어서 기미주에 대한 통치를 강화하는 정책이 세워졌음을 나타내는 것이다”³⁷⁾라고 한다. 즉, 북방 기미부주는 변경절도사 설치 초기에 군사적으로 보다 강하게 통제받았는데, 변경절도사가 군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지니게 되면서 행정적 통제를 받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개원 6년(718) 당조는 蔚州 橫野軍을 山北으로 옮기며 하동 북부 군진에 예속되어 있던 부락들에게 군사를 동원하게 하였다. 이때 내린 제서가 『冊府元龜』에 실려 있는데, 여

34) 蘭池州는 党項 기미주인데, 이때 당항이 吐蕃의 압박으로 隴右道에서 關內道로 옮겨와 이 지역에 있던 6호주의 돌궐 향호를 병합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35) 『冊府元龜』 권992, 外臣府, 備禦5, 개원 9년 4월 조, 11652쪽.

36) 李鴻賓 『唐朝朔方軍研究』, 吉林人民出版社, 2000, 118~123쪽 참고.

37) 村井恭子, 『押蕃使の設置について』, 48쪽 참고.

기에 당시 북방 기미부주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는가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 주목된다. 『책부원구』에는

[개원 6년 2월에 제서를 내려] 拔曳固都督 頡質略에게 기병 3천을 동원하게 하고[出], [그를] 橫野軍[前軍]討擊大使로 삼는다. 同羅都督 比言에게 기병 2천을 동원하게 하고[出], [그를] 橫野後軍討擊大使로 삼는다. 回紇可汗都督 移健頡利發에게 기병 1천을 동원하게 하고[出], [그를] 大武(將)軍左(右)軍討擊大使로 삼는다. 僕固都督 曳勒哥에게 기병 8백을 동원하게 하고[出], [그를] 大武軍右軍討擊大使로 삼는다. [다섯 도독을 토격대사로 삼고, 그들에게] 본 부락의 蕃兵을 거느리게 하였는데, 天兵軍의 절도를 받게 한다.

라고 적혀 있다.³⁸⁾ 이 제서에서 힐질락 등 4명의 이민족 수장은 기미부주의 명칭 대신 부락 도독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들은 무관직을 수여받았다. 당조는 정관 초부터 기미부주의 도독, 자사에게 무관의 諸衛將軍號와 中郎將號를 함께 수여하였는데, 그 도독과 자사는 제위의 장군과 중랑장으로써 직무를 시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에 이르면 내부해 온 부락 수장에게는 도독과 함께 무관으로써의 임무도 중요해진다. 村井恭子は 「慕容曦光墓誌銘」를 근거로 本蕃에서 상당한 실력이었던 모용희광이 개원 18년 故朔方軍節度副使 兼知部落使(渾部落使)가 되었다고 한다.³⁹⁾ 이는 당시에 이미 삭방절도사가 압변사를 겸임하고 있었는데, 당조가 이민족 수장에게 무관직을 수여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부락을 통제하게 한 것이라고 보여 진다.

개원 6년(721)에서 天寶 13재(754)까지는 북방 기미부주 再정립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변경절도사가 여러 사직을 겸령하며 관할 구역 내의 기미부주들을 군사적, 재정적, 행정적으로 통제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변경절도사를 이용하여 당조는 기미부주제도를 재정립한 것이다. 아울러 개원 6년부터는 북방 군진에 속해있던 기미부주 수장들에게 도독, 자사로써의 임무와 함께 무관으로써의 임무도 중요해지게 된다. 이 시기 당조는 행정 통제보다는 군사적 통제에 무게를 싣고 계속하여 기미부주제도를 운용하였다.

VI. 맺음말

당조는 정관 4년(630) 기미부주 제도를 마련하고 이후 이를 통해 이민족 降戶를 통제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북방 기미부주는 “[항호의] 부락을 온전하게 하고 그 습성을 유지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부락 별로 설치되어 일정한 자치성을 지닐 수 있었다.

38) 『책부원구』 권964, 외신부, 비어5, 개원 6년 2월 조, 11651쪽.

39) 村井恭子, 「押蕃使의 設置について」, 36~37쪽 참고.

그 부락의 수장들은 도독과 자사라는 행정 관리가 되어 각각의 기미부주를 통치하는 한편 邊州都督府의 통제를 받았다. 이러한 기미부주 지배 방식은 이민족 향호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정관 20년(647) 이후 漠北과 漠南에 북방 기미부주를 관할하는 전문 기구로 都護府가 설치되고, 막북 기미부주까지 한관이 파견되었으며 그들 부락에게 고유의 제도를 갖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러한 통제 방식을 취하여 당조는 보다 직접적으로 쉽게 기미부주를 통제하였다. 하지만 제2동돌궐이 건국되면서 북방 기미부주 설치범위가 대폭 축소되고 그 제도가 위축되자 당조는 다양한 使職을 설치하고, 武官에게 도호를 겸임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기미부주 제도가 유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개원 6년(718)부터는 일부 이민족 수장들에게 무관직을 더해주었는데, 이들 이민족 수장들은 도독임과 동시에 무관로써의 임무도 지니게 된다. 이후 개원 9년 정식으로 朔方節度使가 설치되고 이듬해에 太原以北節道使가 설치되면서 북방 기미부주는 군사권에 근간을 둔 邊境節度使의 통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점차 변경절도사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기미부주는 절도사에 의해 행정적 통제도 받게 된다.

당조의 북방 기미부주 제도는 대외 정세에 맞추어 끊임없이 변화하였다. 초기 당의 세력이 확장될 때 기미부주제도는 일종의 행정제도로 한동안 안정적으로 운용되었다. 하지만 제2동돌궐이 건국된 후 당조는 이반과 臣屬을 반복하는 향호들에게 물리적 제제를 가해야 했고, 이로 인해 북방 기미부주는 이전 보다 강한 군사적 통제를 받게 된다. 이는 결국 변경 절도사의 통제를 받는 형태로 재정립되었다. 기미부주에 대한 절도사의 통제는 현실적 상황과 이전의 통치 방식에 따라 북방 기미부주제도를 유지해 나가하고자하는 당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唐末·五代시기 福建지역 閩정권의 宗教정책

김 한 신(고려대)

目次

들어가는 말

1. 당말오대시기 民國의 복건지역 경영
2. 唐末·五代시기 福建지역 宗教環境의 변화
3. 閩정권의 宗教政策

맺음말

들어가는 말

중국 역대의 정치세력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여러 다양한 형태의 종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왔다. 그들은 다양한 계층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었던 불교나 도교와 같이 조직화된 종교들뿐만 아니라 민간사회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지닌 토착적인 민간신앙들을 후원함으로써 일반대중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당말과 五代의 전국적인 분열시기에 등장하여 중국 남부지역을 분할하고 있었던 藩鎮割據勢力과 같이 지역적인 정치세력들은 종교에 대한 후원을 통해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우선 번진할거세력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오랜 기간 지역민들의 절대적인 숭배를 받고 있었던 토착적인 민간신앙을 후원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들은 민간신앙의 기존의 토착적인 이미지에 정권의 수호자라는 이미지를 덧붙여서 자신들의 세속적인 통치에 신성성을 부여하고자 노력하였다.¹⁾ 번진할거세력들은 민간신앙의 사원의 건설 및 증축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상징적인 직위를 부여하여 그 신앙을 기존의 陰祀에서부터 正祀로 편입시켜주어 정치권력에 의한 탄압의 위협을 제거해주었다.

한편 번진할거세력들은 토착적인 민간신앙에 대한 후원뿐만 아니라 당시 중국남부에서 일반대중들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고 있었던 조직화된 종교인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당대를 기점으로 해서 중국의 불교도들이 그 영적인 중심을 기존

1) Presenjit Duara, "Superscribing Symbols: The Myth of Guandi, Chinese God of War."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47.4:778~795, 1988.

의 印度에서 벗어나 중국내에서 새롭게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²⁾ 동시 불교자체에는 중국의 토착적인 사상과 이미지가 침투하기 시작하였다.³⁾ 이와 같이 불교는 토착화 되어가면서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폭넓은 신자 층을 확보해나갔다. 비슷한 시기에 도교 또한 과거와 같이 오랜 기간의 고도의 수련을 필요하고 소수의 수행자들 사이에만 비밀리에 전수되던 수행방식에만 국한되지 않고 간단하면서도 대중적인 수행방식들이 보급되면서 일반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이전까지 일반대중들과 거리감이 있었던 도교 내에서 높은 위계를 지니고 있었던 천상계의 신들과 신선들이 일반대중의 숭배대상이 되었고, 토착적인 지역의 신들은 도교의 신으로 포섭되기 시작하였다. 결국 번진할거세력들은 대중화와 토착화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었던 불교와 도교를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그런데 번진할거세력들의 종교에 대한 후원은 그것의 종교로서의 기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종교에 부수된 문화정책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당말 오대시기의 번진할거세력들과 같이 경제적·문화적 선진지역에서 떨어져 있었던 프론티어 지역에 등장한 정치세력에게는 민간사회의 지지를 획득하는 것뿐만 아니라 중원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었던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 또한 시급한 과제였다. 그들은 우선 지역의 경제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수리 및 개간사업을 통한 농업생산력의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고, 그것과 더불어 지역 내 상업 및 주변 지역과의 교역의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한편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수준 높은 문화를 이식함으로써 그 지역의 정치세력들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지도적인 엘리트계층을 양성하고 일반대중들의 의식수준을 제고하여 그들에 대한 통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그런데 낙후된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고, 안정된 정치상황 속에서 상당한 기간에 걸쳐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상대적으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정권이 유지되었던 당말 오대시기 번진할거세력들은 우선 혼란스러운 북부 중원지역에서 남하하는 지식인들을 포섭하면서 지역 내에 학교를 건설하여 지식인계층을 양성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그들은 불교와 도교의 종교적 지도자들을 정권내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거나 대규모 사원을 건립하여 그 지역을 종교의 중심지로서 명성을 높이는 한편 불교와 도교에 수반된 수준 높은 문화가 그 지역에서 번성하기를 기대하였다.

2) Tansen Sen, *Buddhism, Diplomacy, and Trade: The Realignment of Sino-Indian Relations, 600-140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3) Valerie Hansen, "Gods on Walls" in Ebrey, Patricia Buckley, and Gregory, Peter N., ed. *Religion and society in Tang and Sung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1993:75-113.; Steven Teiser, "The Growth of Purgatory" In Ebrey and Gregory, ed., 1993:115-145.

이 글은 중국 남부의 번진할거세력들 중에서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장 낙후된 지역이었던 복건지역에서 성장한 閩國의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閩정권이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여 복건지역을 석권하고 그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주변의 다른 번진할거세력들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는 당말·오대시기 중국 종교환경의 전반적인 변화와 더불어 중국 남부지역을 석권하였던 선종의 번성에 대해서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회정치적 그리고 종교적인 변화 속에서 복건지역의 閩정권의 종교정책은 어떠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1. 당말오대시기 民國의 복건지역 경영

(1) 王潮의 등장과 閩國의 성립

唐代 중기이후 국가의 곡창지대로서 성장하기 시작한 長江 하류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江南지역에 비해 福建지역은 당대 말기까지 중국의 프론티어로서 전체 중국에서 차지하는 인구나 경제적 비중은 매우 미미했었고 문화적으로도 中原의 당 조정에 출사하였던 인물이나 이름 있는 문학자들을 거의 배출하지 못할 정도로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었다.⁴⁾ 그러나 이런 낙후된 지역이 宋代에 들어와 福州나 泉州와 같은 가장 번성한 交易港들을 보유하고 북송대 후반부터는 가장 많은 과거시험 합격자들을 배출하는 지역 중의 하나로서 경제적 문화적 선진지역으로 탈바꿈하게 되었다.⁵⁾ 복건지역의 급속한 발전은 北宋말기부터 본격적으로 관찰되지만, 그러한 방향으로의 전환의 시점으로서 지목되는 사건은 바로 唐末·五代시기의 閩정권의 등장이었다. 閩정권은 893년 王潮가 福州를 함락하면서 독립적인 정권을 수립한 이후 945년 멸망할 때까지 52년간 복건을 통치하면서 적극적으로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하였다.

閩정권이 복주를 다스린 기간은 52년간이었지만, 黃巢의 난으로 唐왕조로부터 파견된 관리들이 패퇴하고 대신 무장자위집단인 陳巖이 879년 반란군을 복건에서 몰아내고 복건 전체의 최대군벌로서 등장하여 독립적인 권한을 지니기 시작한 이래로, 비록 민국의 멸망으로 복주와 대부분의 지역이 남당과 오월의 지배하로 들어갔지만 남부의 천주와 그 일대를 지배한 留從效와 그의 후계자 陳洪進이 978년 송에게 항복할 때까지의 기간을 모두 포함시킨다면, 복건지역은 실질적으로 약 한 세기동안이나 자치적인 통치를 경험하였

4) 李瑾明 「南宋時代 福建讀書人の 科擧應試狀況과 解額」, 역사문화연구, 17. (2002):1-18. p7; 金相範, 「宋代 福州의 祠廟信仰과 地域社會」, 中國史研究 38, 2005. pp.91-126.

5) 李瑾明 「南宋時代福建讀書人の 科擧應試狀況과 解額」

다. 장기간 지속된 자치의 경험 특히 민국에 의한 독립적인 국가의 수립은 복건의 지역 발전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轉機를 마련하였다. 즉 閩國에 의한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문화의 진흥으로 인하여 이제까지 경제적 문화적 낙후지역이었던 복건지역에 풍요로운 문명의 빛이 비취지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閩정권을 건설한 王潮는 복건의 토착민이 아니라 하남성(光州 오늘날의 河南省 固始縣)에서 이주한 인물이었다. 그가 고향을 버리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복건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다른 지역정권의 성립동기와 마찬가지로 황소의 반란의 여파 때문이었다. 그는 지역의 토착호족출신으로 자신의 지역에 들어온 유적 王緒의 세력으로 포섭되었다.⁶⁾ 왕서는 奉國軍節度使 秦宗權의 영향력아래 있었는데 그에게 세금납부를 거부하였다가 공격을 받게 되자, 그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처남 劉行全과 더불어 양민들을 이끌고 남으로 이주하여 긴 여정 끝에 복건 내륙지역인 汀洲와 漳州에 도달하여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다. 王潮 역시 그의 동생들 王審邦 王審知를 이끌고 왕서를 따라 복건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왕서의 군대에 군량이 부족해지자 양민들 중에서 늙거나 병약한 자들을 골라 죽여서 군량을 아끼려고 하였고 이에 왕조의 모친 역시 죽음의 위기에 처해졌다. 비록 왕조의 간곡한 청을 왕서가 받아들여 그의 모친은 살해를 면하였지만, 이즈음부터 왕서는 무자비하고 난폭한 모습을 자주 드러내어 주변의 신망을 잃기 시작하였다. 특히 왕서의 군대가 南安(오늘날의 泉州) 부근에 이르렀을 때, 그는 주변에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인물이 있을 것이라는 卜人의 말을 믿고 주변에 의심스러운 자들을 죄다 잡아 죽였다. 이에 유행전 역시 위협을 느끼고 있었고, 왕조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유행전으로 하여금 왕서에게 반기를 들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유행전은 왕서를 공격하여 그를 잡아 참수하였다. 그러나 유행전은 대장군으로 추대되었음에도 그 자리를 거부하고 왕조에게 양보하였다.

王潮는 주위의 추대로 그 군대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었고, 그의 능력과 성품이 복건 일대에 널리 알려지게 되어 지역민들의 신망을 받게 되었다. 이후 그는 천주주민들의 지원에 힘입어 885년에 난폭함으로 인하여 주민의 신망을 잃고 있었던 천주자사인 廖彦若을 타도하고 천주를 차지하였고 당시 복건의 최대군벌이었던 福州觀察使 陳巖로부터 泉州刺史의 직을 인정받았다.⁷⁾ 그런데 진암이 후사를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왕조를 후계로 지명하였으나 그가 복주에 도달하기 전에 진암의 사위 范暉가 후계자임을 자처하면서 그와 대립하게 되었다.⁸⁾ 범휘는 당시 浙江 紹興지역에 등장한 威勝節度使 董昌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왕조의 군대를 막아보려 하였지만, 893년에 성내의 군량이 떨어지자 성

6) 『新唐書』 卷190.

7) 『資治通鑑』 卷256.

8) 『資治通鑑』 卷258.

을 버리고 달아나다 부하 병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⁹⁾ 이로써 왕조는 결국 변희를 타도하고 복주를 차지하여 명실 공히 복건최대의 군벌로 성장하였다. 그는 이후 당왕조로부터 福建觀察使 와 威武軍節度使의 직을 차례로 수여받았고, 동생 왕심지가 그를 옆에서 보좌하였다.¹⁰⁾ 왕조는 왕심지를 매우 엄격하게 다루었지만 왕심지는 불평을 하지 않았고, 왕조는 897년에 병으로 사망하기 전에 그의 직위를 자신의 아들이 아닌 왕심지에 물려주게 되었다. 왕심지는 당시 천주자사로 재임하고 있었던 자신의 형 王審邽에게 그 직책을 양보하였지만, 왕심규는 그의 제안을 사양하고 천주에 머물렀다. 결국 왕심지는 唐의 昭宗(888~904)으로부터 재가를 받아 威武軍節度使직을 계승하였다.

(2) 王審知的 福建지역 경영과 福建지역의 번영

王審知는 복건지역을 적극적으로 개척하여 강회지역에 버금가는 풍요로운 지역으로 성장시킨 인물로 후세에 開閩王으로 불리면서 추앙받았다. 왕심지가 집권한 897년부터 925년까지의 28년간 복건은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지역으로 변모하였다. 그는 외교적으로 중원의 오대왕조들에게 공손한 태도를 보여 後梁의 太祖 朱全忠으로부터 閩王에 봉해졌고, 이웃한 오월국과는 화평을 유지하였다.¹¹⁾ 그는 우선 후량에 대해서는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해로를 통해 후량의 登州와 萊州로 매년 세공을 바쳤고, 吳越에 대해서는 錢鏐의 아들인 錢元珣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보냄으로써 양국간의 통혼을 통한 동맹관계를 형성하였다. 또한 왕심지는 917년에 당시 廣東지역에서 성장한 南漢의 南海襄王 劉隱의 조카인 劉華를 자신의 아들인 王延鈞(후대에 閩惠宗으로 칭제)과 결혼시켜 남방의 번진할거세력과의 친선관계를 유지하였다.¹²⁾ 비록 吳國의 弘農威王 楊渥(후에 吳景帝로 추존)이 보낸 사신을 참수하면서 吳國과는 적대관계를 유지하였지만,¹³⁾ 중원왕조의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북방의 혼란에 휩싸이지 않고 주위의 번진할거세력들과 친교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영지에서 안정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러한 화평정책으로 대외적인 위협을 제거하면서 우호적인 대외관계를 통한 교류의 활성화를 통해 복건의 경제와 문화의 번영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건국 초기 민국은 주위의 다른 번진할거세력들에 비해서 중앙집권화된 정치형태를 갖추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과 우여곡절을 겪었다. 왕심지의 집권 초기에 민국은 복주와 천주의 두 지역으로 정치적 중심이 나뉘어져 있어서 완전한 형태의 국가를 형성하

9) 『資治通鑑』 卷259.
 10) 『舊五代史』 卷134
 11) 『資治通鑑』 卷267
 12) 『資治通鑑』 卷270
 13) 『資治通鑑』 卷267

지 못하였다.¹⁴⁾ 왕조의 뒤를 이어 복주를 차지한 셋째동생 왕심지와 달리 왕조의 둘째 동생인 왕심규는 천주에 머물고 있었고, 그가 904년 사망한 이후 왕심지의 인가 하에 그의 아들 王延彬이 그의 뒤를 이어 천주를 다스렸다. 왕연빈은 처음 17년 동안에는 福州의 우월한 권위를 인정하면서 천주를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점차 복주에 대해서 독립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920년에 왕연빈은 白鹿과 紫芝를 얻게되는데, 당시 천주의 승려인 浩源이 이것은 그가 왕의 기운이 있다는 조짐이라고 부추기게 되었다.¹⁵⁾ 왕연빈은 浩源의 감언이설에 현혹되어 비밀리에 호연을 비롯한 사절단을 바다를 통해 후량으로 파견하여 그를 복주로부터 독립된 泉州節度使로 봉해줄 것을 요청하도록 하였다. 결국 그의 분명한 독립의 시도는 이를 눈치 챈 왕심지에 의해서 호연과 그의 일행이 사로잡혀 처형당하고 왕연빈은 직위가 삭탈당하고 私邸로 돌아가도록 조치되면서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비록 이후의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이후에도 여전히 왕연빈은 천주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¹⁶⁾ 이는 왕심지의 사망 다음해인 926년 복주에서 왕위계승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자신이 후원하였던 사촌 王延鈞이 정권을 차지함으로써 왕연빈은 천주자사의 직을 공식적으로 회복하였고 930년 사망할 때까지 그 직을 유지하였던 사실에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사후에 얼마 지나지 않은 934년 천주는 복주와 합병되었고 945년 민국이 멸망할 때까지 이러한 통합은 유지되었다. 한편 멸망이후 복주가 오월에게 복속되었던 것과는 달리 천주는 留從效와 陳洪進에의해서 978년 송에게 병합될 때까지 독립된 지위를 유지하였다. 비록 閩國은 그 강역의 북과 남이 하나의 정치체제로서 완전한 화학적 융합을 이루어내지는 못했지만, 전면적인 내전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으로 발전되지 않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王審知는 내정에도 크게 힘써서, 급증하는 인구를¹⁷⁾ 부양할 농경지의 확보를 위해 내

14) Hugh R. Clark은 복주와 천주의 대립을 강조하고 특히 천주의 독립적인 지위를 강조하였다. Clark은 이를 1254(또는 1256년)~1273사이에 신성로마제국에 황제가 선출되지 못했던 시대인 대공위시대(interregnum)와 유사한 시기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So Kee Long은 Clark이 근거한 자료에 대해 전혀 다른 분석을 내려, 천주가 독립적인 지위를 유지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에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Long은 천주가 복건 북부인 복주에 견줄만큼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송대이후의 현상였다고 강조한다. Hugh R. Clark, "Quanzhou (Fujian) during the Tang-Song Interregnum, 879-978." *T'oung Pao* 68 (1982):132-149.; So Kee Long, "Developments in Southern Fukien under the T'ang and the Min."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115.3 (1995):443-451.

15) 初, 閩王審知承製加其從子泉州刺史延彬領平盧節度使. 延彬治泉州十七年, 吏民安之. 會得白鹿及紫芝, 僧浩源以爲王者之符, 延彬由是驕縱, 密遣使浮海入貢, 求爲泉州節度使. 事覺, 審知誅浩源及其黨, 黜延彬歸私第. 『資治通鑑』卷271.

16) Hugh R. Clark, "Quanzhou (Fujian) during the Tang-Song Interregnum, 879-978."

륙지역의 수리사업과 개간사업에 매진하였다. 내륙산지에는 梯田이 등장하고 臨海나 臨江지역에는 海田과 沙洲田등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산지가 많은 복건지역은 宋代 이후의 보다 진일보된 집약적 농법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광범위한 농경지를 확보하기 어려웠고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다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였다. 왕심지는 급증하는 인구를 부양하고 국가재정을 마련하기위해서 농업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중국내 다른 지역 또는 외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따라서 왕심지 정권은 상업에 관련된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항만시설을 정비하고 조선기술을 발전시켜서 각지의 豪商巨賈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당시 북부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상업활동에 우호적이었던 복건지역은 그러한 대상인들에게 매력적인 지역이었다.¹⁸⁾ 비록 복건지역이 농업에 불리한 산지로 주로 이루어져 있지만, 閩江· 晉江· 九龍江· 鄞江과 같은 크고 작은 강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내륙 수상교통을 이용한 상업의 발전에는 오히려 유리한 환경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상업활성화를 위한 閩정권의 대대적인 인프라 정비사업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甘棠港의 건설이었다. 閩정권은 북주를 출발하여 吳越국의 溫州나 寧波를 거쳐 북방의 諸港口들과 동북의 諸國들(渤海 高麗 日本)에 도달하는 교역루트를 보다 활성화하고자 하였는데, 당시 복건에서는 북주에서 절강성 溫州까지의 장거리를 안정적으로 운영할만한 항해기술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그 중간지점에 중간 기착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905년 야심차게 甘棠港을 건설하였다.¹⁹⁾ 지리적으로 북방의 여러 항구들과 남중국해 사이의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지형적으로 천혜의 항구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복건지역은 한대시기부터 남방 제국들과의 교역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북으로는 강희지역과의 교류도 활발하였다.²⁰⁾ 따라서 왕씨 일가가 북주와 천주를 장악한 이후 독립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 교역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즉 민국은 동남제국들로부터의 교역품들을 협소한 중국 동남부 시장을 벗어나 보다 광범위한 소비시장을 보유한 북방의 항구들과 동북의 제국들과 교역하고자 하였다. 민간의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감당항의 착공 당시 천연의 항구였던 黃崎港에는 항구로 들어오는 수로에 거석이 놓여있어서 배의 원활한 운항을 방해하고 있었고, 이 거석의 제거가 항구의 건설의 가장 큰 난관이 되고 있었다. 그런데

17) 인구의 증가는 예를 들어 인구가 최대로 증가하였던 북주의 경우 814년 19,455호였던 것이 980년에는 94,475호로 거의 다섯배가 증가하였다. 姚政志, 『南宋福州民間信仰的發展』 碩士論文, 臺灣國立政治大學, (2004) p. 15.

18) 李瑾明 「南宋時代 福建民的 海上貿易活動과 그 性格」 역사문화연구, 14. (2001): 143-170.

19) 『新五代史』 卷68.

20) 《後漢書》 卷53 과 《後漢書》 卷61 에 중국 고대 복건지역의 다양한 무역거래 물품들의 목록이 수록되어 있다.

어느 날 왕심지의 꿈속에 金甲神이 나타나 자신을 吳安王이라 칭하였다. 왕심지는 꿈에서 꾀 다음 判官 劉山甫를 파견하여 그에게 제사지내도록 하니 갑자기 폭풍과 번개가 치면서 물속에서 물고기도 아니고 용도 아닌 물체가 나타났다. 삼일동안 폭풍과 번개가 치고 난후 그 곳에는 항구가 건설되어 있었다.²¹⁾ 전설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듯이 이러한 난공사를 감수하면서까지 감당항의 건설을 추진하였던 것은 그 만큼 교역의 확대에 대한 왕심지의 의지가 확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왕심지의 노력 덕분에 복주는 국제무역과 국내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민국의 재정을 부유하게 해주었다.

민국시기 복주지역의 경제적 발전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는 대체로 일치된 의견을 보여주고 있지만, 복건의 남부인 천주지역의 상업경제의 발전에 대해서는 그 시점에 관해 학자들의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보여진다. 본래 쿠와바라 지츠조(桑原隲藏)의 고전적인 연구 이래로 9세기 중반에 천주가 중국 해외 교역의 가장 번성한 무역항의 하나로 성장하였다고 관습적으로 인식되어 왔다.²²⁾ 특히 이러한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압바스왕조의 지리학자인 이븐 쿠르다지바(Ibn Khordadbeh)(850~911)가 그의 지리서인 『제도로 및 제왕국지(Kitabu'l Masalik wa'l Mamalik)』에서 언급한 중국의 네 곳의 주요 무역항들이 交州, 廣州, 揚州와 더불어 泉州를 가리킨다고 추정하여 9세기 말에 천주가 무역항으로서 크게 번성하였다고 설명한다. 그 외에도 오대시기 南漢의 건국자 劉隱(873~911)의 조부인 당말의 巨商 劉安仁이 천주를 근거로 남해무역에서 巨富가 되었다는 『五國故事』 기록도 또한 송대 이전 泉州의 번영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인용되었다.²³⁾ 그러나 쿠르다지바가 지칭한 “Djanfou”라는 명칭이 바로 천주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중국 동남부의 다른 무역항을 지칭하는지는 아직 불명확하며, 劉安仁의 활약의 경우에도 그가 泉州에 근거지를 두었다는 다른 기록들이 존재하지 않아서 아직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비록 당대에 泉州를 비롯한 복건의 남부지역은 북부 福州지역에 육박할 정도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고 수리와 개간사업이 이루어져서 농경지가 확대되고 있었음은 분명하지만 泉州가 복주에 버금가는 번성하는 항구였는지는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하겠다.²⁴⁾ 결국 당말 오대시기 민국이 위치하였던 복건지역 전체의 경제적·정치적 중심지는 왕심지가 통치하고 있었던 福州였고, 다만 천주를 비롯한 복건 남부지역 또한 이 시기에 인구의 증

21) 『太平廣記』卷313 神23.

22) 桑原隲藏, 『東西交通史論叢』弘文堂書房、1933年, pp.415-521.

23) Hugh R. Clark, *Community, Trade, and Networks: Southern Fujian Province from the Third to the Thirteenth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91): pp. 32-36.

24) Long은 천주를 비롯한 복건 남부지역에 복주의 경우처럼 집중적으로 도시화가 진행되고 경제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하는 것은 유종효와 진홍진이 다스리던 시기부터였다고 설명한다. So Kee Long, “Developments in Southern Fukien under the T'ang and the Min.”

가와 농업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발전의 가속도가 붙고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고 하겠다.

오대시기 복건지역은 중원의 왕조들과 같은 위협적인 외부세력으로부터 지형적으로 고립 차단된 안전한 환경과 위정자들의 현명하고 안정적인 국정운영 속에서 경제적 문화적으로는 북부의 북주가 전체지역을 선도하고 천주와 같은 남부지역이 점차 그 발전과정을 따라가는 구도로 급속한 지역발전을 이루어 낼 수 있었다. 또한 비록 閩國시기에는 주로 연해지역에 한정되었지만, 활발한 교역을 통해 외부의 문화를 개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자신들의 토착적인 문화와 접목시켜서 독특한 복건의 문화를 발전시켰다. 宋代 이후 더욱 발전된 복건의 문화는 중국 남방문화의 한 축으로 성장하였고, 그 특유의 외부지향적인 지역적 특성은 특히 민간신앙에 있어서는 토착의 媽祖信仰(天后信仰)이 중국남부 전체와 대만 그리고 동남아 일대의 화교문화권으로 전파되는데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2. 唐末·五代시기 福建지역 宗教環境의 변화

(1) 唐末·五代시기의 佛敎와 道敎의 대중화

당말 오대시기 종교 변천에 있어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분명 불교의 대중적 인기의 확산일 것이다. 불교는 기원후 1세기에 중국으로 전래된 이래 황제들과 귀족들과 같은 지배계급으로부터의 지지를 획득하면서 발전해왔다. 그러나 불교의 눈에 띄는 성장은 北魏 太武帝(재위 423~52)와 唐 武宗(재위 841~46) 시대에 도교 지도자들에 의해 주도된 종교적 탄압을 촉발시켰고 北周 武帝(재위 543~78)와 後周 世宗(954~59) 시기에 행해진 국가에 의한 사원 재산의 몰수를 초래하였다.²⁵⁾ 이러한 소위 “三武一宗의 法亂”은 중국 역사상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또한 가장 엄혹한 국가의 종교탄압의 사례였다. 비록 불교에 대한 탄압이 중단되면 늘 그렇듯이 지배 계급의 불교에 대한 후원은 회복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중기에 이르러 중국 불교의 무게중심은 북방에서 남방으로 그리고 지배계급에서 일반 대중으로 옮겨가고 있었다. 이제껏 불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후원 세력이었던 귀족계급이 안록산 반란이후의 정치적 혼란기 와중에 붕괴되었던 반면에, 중국 남부지역의 경제적 발전은 불교에 대한 후원에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맡게 될 새로운 서민 계급의 등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이전까지 唐 朝廷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天台宗, 律宗, 法相宗, 華嚴宗 그리고 眞言宗과 같은 불교 종파에 대한 후원은 줄어들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다.

불교는 북부 중국에서는 정부의 후원이 위축되었던 것과는 달리, 남부 중국에서는 그

25) Kenneth Ch'en. "The Economic Background of the Hui-ch'ang Suppression of Buddhism."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19 (1956): 67-105.

지역에서 성장한 오, 남당, 그리고 오월과 같은 정치세력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특히 禪佛敎는 8세기 말에서 10세기까지 남부 중국에서 극성기를 맞이하였다. 중국의 禪宗은 開祖 보리달마(菩提達磨)에 의해 6세기 초 남북조시대에 전해졌다. 보리달마에 관해 전승된 이야기들은 후대에 선종이 득세하면서 선종의 권위를 세우고자 종단을 상징하는 인물로 추존하려고 여러 가지로 꾸며낸 전설이 대부분이고 그에 대한 동시기의 기록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²⁶⁾ 그는 현학적인 철학체계에 사로잡혀 불교 본래의 깨달음과는 괴리되어 있었던 남북조시대의 불교에서 벗어나 모든 인간이 내면에 본래 불타(佛性)가 있다고 믿고 수행을 이용해 자기 내면에 있는 본래 불타를 발견하여(見性) 열반에 도달(成佛)할 수 있다는 설법을 통해 모든 사회계층으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또한 선종은 靜慮와 坐禪으로 內觀과 內省하여 佛性を 찾고 설교나 문자에 의하지 않고(不立文字) 불타의 마음(佛心)을 중생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는(以心轉心) 것을 그 특징으로 하였다.

보리달마 사후 그의 법통은 제2조 慧可(487~593), 제3조 僧璨(?~606), 제4조 道信(580~651), 제5조 弘忍(601~674)을 거쳐 神秀(?~706)의 北宗禪과 홍인의 뒤를 이어 제6조가 되는 慧能(638~713)의 南宗禪으로 나뉘어졌는데, 특히 남종선은 唐代 중기 이후 점차 번영하였다. 북종선이 『楞伽經』을 근거로 단계적 깨달음[漸悟]을 주장하는 데 반하여, 남종선은 『金剛經』을 근거로 행동적이고 즉각적인 깨달음[頓悟]을 주장한다. 이러한 사상의 줄기는 후에 臨濟宗·滄仰宗·曹洞宗·雲門宗·法眼宗의 五家와 후에 임제종에서 갈라진 黃龍慧南(1002~1069)의 黃龍派와 楊岐方會의 楊岐派의 두 파를 더하여 ‘五家七宗’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五家七宗’의 득세는 북송대 중기 이후에 가서야 확정적으로 되고 唐代에 까지 소급해서 적용할 수는 없었다. 즉 당대에서 북송초기까지 이들 오가칠종 이외에도 더 많은 계통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²⁷⁾ 선불교는 여러 유명한 선불교 승려들의 대중적인 활동 덕에 향촌 사회에서 그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선불교 특유의 수행 중심의 접근법으로 인하여, 도시에서 보조금을 받아 수행을 해오던 다른 종파의 승려들과는 달리 선불교 승려들은 농촌 사회에서 자급자족의 삶을 유지하였다.²⁸⁾ 선불교 승려들의 단순한 수행 방식 또한 일반대중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이었다. 參禪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복잡한 의식이나 秘傳의 지식 없이도 높은 수준의 종교적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선불교의 수행은 중국 사회의 모든 계

26) John McRae, *Seeing Through Zen: Encounter, Transformation, and Genealogy in Chinese Chan Buddhism*. Berkeley, Los Angeles, Lond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3.

27) Jinhua Jia, *The Hongzhou School of Chan Buddhism in Eight- through Tenth-Centur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2006.

28) 柳田聖山, 『初期禪宗史書の研究』法藏館, 1967.

층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었고, 선불교는 진정한 의미에서 최초의 생활불교로서 모든 계층의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었다.

선불교의 유행과 더불어, 염불을 암송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아미타 붓다에 의해 구제되어 西方淨土에 往生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淨土宗運動 또한 당대부터 일반 대중들 사이에 급속도로 보급되었다. 그 淨土宗의 가르침은 북위시대의 曇鸞(476~542)에 의해서 주창되었고, 그 교리와 종교적 관념은 그 뒤에 당대의 道綽(562~645)과 善導(613~681)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 이와 같이 간단한 형태의 정토종 예배 방식은 일반 대중들의 종교적 영역으로의 접근성을 혁신적으로 향상시켰다.²⁹⁾ 정토종은 독립적인 불교 종파를 형성하지 않았지만 대신에 지역 사회에 직접적으로 뿌리내린 사적인 신앙결사조직들을 출현시켰다. 선종, 화엄종, 천태종과 같은 다른 불교 교파들 또한 향촌 지역사회에서 교세를 확대시키기위해서 정토종을 그들의 교리 속에 적극적으로 흡수시켰다. 교파에 상관없이 불교 신자들 사이에 정토종이 성공적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에, 아미타 붓다에 의해서 구제된다는 믿음과 서방정토에서 왕생하고자 하는 욕망은 중국 불교의 가장 일반적인 특징이 되었다.³⁰⁾

붓다나 보살에 의해 구제된다는 믿음은 중국 전역에서 민간 불교의 지배적인 특징이 되었다. 예를 들어 일반 대중 신자들은 현세에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중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현세에 남았던 자비의 보살로서 정토종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觀世音菩薩이나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들을 구원하는 地藏菩薩 그리고 阿彌陀經과 妙法蓮華經과 같은 불경에서 먼 미래에 나타나 불교신자들을 지상낙원으로 안내해 줄 것이라고 예언된 彌勒菩薩과 같은 다양한 불교의 신적인 존재들을 열성적으로 숭배하였다. 이러한 믿음은 급속도로 변화하는 정치적 경제적 환경 속에서 그들의 정신적 육체적 운명에 대해 더욱더 염려하게 되었던 당시의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전파되었다.

지역 공동체에서 불교 숭배의 확산은 중국 남부에 성립된 번진할거세력들의 불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신흥 정치세력들은 불교의 후원자로서의 자신의 이미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역 내에서 불교의 새로운 성지를 창조하고자 하였다. 즉 번진할거세력들은 阿彌陀佛이나 觀音과 같은 민간에서 숭배되는 불교 신들을 모신 불교 사원들의 건설을 재정적으로 후원하였다.³¹⁾ 더 나아가 그들은 정권의 평판을

29) Robert H. Sharf, "On Pure Land Buddhism and Ch'an/Pure Land Syncretism in Medieval China." *T'oung Pao* 88 (2002): 282-331. p.283.

30) Robert H. Sharf, "On Pure Land Buddhism and Ch'an/Pure Land Syncretism in Medieval China." p. 301.

31) 예를 들어 吳越政權은 杭州에 上天竺講寺와 같이 유명한 觀音의 성지를 건설하였고, 그 곳은 전국각지에서부터 관음의 숭배자들을 끌어들었고 관음신앙의 가장 중요한 순례지가 되었다.

높이기 위해서 전국각지로부터 순례객들을 그 성지로 끌어들였다. 결국 귀족계층으로부터의 후원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중들 사이에서 선불교, 정토종 그리고 보살숭배의 확산으로 인하여 불교는 중국 남부에서 새로운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불교 성지의 內地化 즉 중국불교의 토착화는 중국내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라는 변수 이외에도 당시 중국을 둘러싼 주변의 국제적 환경의 변화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 당대 초반까지 중국의 불교신자들은 불교적 세계관에 있어서 자신들이 변경에 속한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일종의 변경 콤플렉스를 지니고 있었다.³²⁾ 그러나 8세기에서 9세기에 이르러 인도에서 불교가 쇠퇴함과 동시에 중국인들의 인도 승려들이나 인도의 原典들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었던 반면에 중국내의 불교사상이 고도로 발전하면서 중국인들은 중국내에 불교의 순례지 즉 불교 聖地들을 건설하기 시작하였다.³³⁾ 이러한 현상은 중국과 인도 양국 사이의 교류의 내용에서도 확인될 수 있는데, 이전까지 종교적 교류가 주류를 이루었던 것이 8세기 이후부터는 상업적 교류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중국 불교의 토착화는 중국 불교의 대중화를 위한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게 되었다.

불교와 마찬가지로 道教 또한 唐代 末期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겪는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神仙이 되거나 不老不死를 추구하는 비밀스러운 道家의 지식들이 이전에는 장기간의 수련을 받은 소수의 종교적 전문가들에게만 전승되다가 이때부터는 신비적인 요소들이 제거된 형태로 공개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後漢代부터 內丹과 外丹이라고 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 영생을 추구하는 도교의 수련방식이 지배적인 방식이 되면서 영생을 추구하는 도사들은 공통적으로 이 두 방식들을 수련하였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황제들과 귀족들의 호응을 받아 왔던 外丹을 통한 육체적인 영생에 대한 추구는 점차 그 지배적인 영향력을 상실하였던³⁴⁾ 반면에, 氣功이나 養生과 같이 신체적 수련에 중점을 두었던 內丹은 당말과 오대 시기에 점차 인기를 얻기 시작하였다.³⁵⁾ 게다가 구체적인 경전들의 분류의 측면에 있어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불확실성이 남아있었음에도, 외단과 내단 사이의 구분은 점차 분명해졌다.³⁶⁾

32) Tansen Sen, *Buddhism, Diplomacy, and Trade: The Realignment of Sino-Indian Relations, 600-140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3.

33) 중국 불교의 4대 성지라고 일컬어지는 五臺山(文殊菩薩), 九華山(地藏菩薩), 普陀山(觀世音菩薩), 峨嵋山(普賢菩薩)은 唐代에 명성을 얻어 건설되기 시작하였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불교신자들이 순례하는 성지로 성장하였다.

34) 외단 위주의 수련법에 따르면, 金丹이라고 불리는 묘약을 복용함으로써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35) Isabelle Robinet, *Taoism: Growth of a Religion*. Translated by Phyllis Brooks. Stanford, Californi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pp.215~228.; 李遠國, 『道教氣功養生學』四川省社會科學院出版社. 1988. pp.218~221.

따라서 당대 초반기에 저명한 도교 이론가들은 내단의 이론을 더욱 정교하게 완성했다. 저명한 의사였던 孫思邈(581~682)은 그의 유명한 의료 지침서인 千金要方에서 내단 위주의 치료법들을 편찬하였다.³⁷⁾ 안록산 반란으로 국가와 귀족계급으로부터의 지원을 상실한 이후에, 도교 지도자들은 보다 실용적인 도교 수행방법을 보급함으로써 새롭게 등장하는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들을 찾기 시작하였다. 後蜀 조정에서 재상으로 복무하였던 저명한 도사 彭曉(?~955)는 고전적인 도교 연구서인 『周易參同契』에 대한 자신의 해설서인 『周易參同契通眞義序』에서 內丹의 개념들을 설명하였다.³⁸⁾ 팽효의 동시대인인 譚峭(880~905)는 그의 널리 유명한 저서인 『化書』에서 내단의 철학적 기반을 확립하였다. 담초는 내단 수련의 현실적인 방법들에 대해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수련방법들을 자연세계에 대한 관찰이나 인식론적 사고 그리고 사회적 문제들과 같이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하였다.³⁹⁾ 南唐 최후의 군주 李煜(재위:961~975)은 높은 명성을 지닌 담초를 초빙하고자 큰 노력을 기울였고, 담초의 『化書』는 남당의 재상 宋齊丘(887~959)의 후원덕분에 최초로 출간되었다.⁴⁰⁾ 마지막으로 陳搏(872~989)은 易經으로부터 유래된 유교적 관념들을 이용해서 내단의 이론적 기초를 완성하였다. 진단과 같은 도교 이론가들은 도교로 개종하기 이전에 과거시험이 준비생으로서 유교 경전들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유교의 철학적 담론들을 이용하여 유가로부터 기이하고 비논리적이라고 비판받아왔던 도교의 신화적 요소를 제거하고자 노력하였다.⁴¹⁾ 게다가 내단의 발전은 주문과 부적을 사용한 퇴마의례 뿐만 아니라 內丹에도 크게 중점을 두었던 神霄雷法의 확립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였다.

결국, 당말과 오대시기 동안, 불교와 도교는 그 조직체계와 교리에 있어서 중요한 변천을 겪었고, 이러한 종교적 변천은 일반 대중들이 용이하게 영적인 각성을 얻고 신의 도

36) Kristofer Schipper and Fanciscus Verellen, ed.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4. p.377.

37) Kristofer Schipper and Fanciscus Verellen, ed.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p. 1276; Isabelle Robinet, *Taoism: Growth of a Religion*. p.205.

38) 『周易參同契』는 중국 동한(東漢) 때 위백양(魏伯陽)(126~167)의 저서이다. 초기 도교(道敎)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역경』의 형식을 빌려 서술한 이 책은 內丹과 外丹을 方技(方術)로 삼아 계통적으로 煉丹神仙의 이론을 논술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한 연구는 彭曉의 저서 이외에도, 南宋시기 朱熹의 『周易參同契考異』 1권과 南宋 俞琰의 『周易參同契發揮』 3권 등이 있다. Kristofer Schipper and Fanciscus Verellen, ed. *The Taoist Canon: A Historical Companion to the Daozang*. p. 170.

39) Poul Anderson. "Huashu 化書 Book of Transformation" In *The Encyclopedia of Taoism*, Fabrizio Pregadio, ed., Routledge, 2007. pp. 517-518.

40) 何劍明, 『南唐國道術與唐宋之交的道敎術變』 江蘇省教育科學研究院 (社會科學版) 2008.

41) 북송시기에는 반대로 진단의 이론이 道學派 유교의 이론적 토대의 완성에 큰 공헌을 하였다. 진단에 의해 창조된 無極圖는 유명한 도학파 철학자 周敦頤(1017~1073)의 주요 업적인 太極圖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강조하는 새로운 움직임과 전통의 등장을 낳았다. 따라서 조직화된 종교의 이러한 대중화는 중세 중국 종교문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다.

(2) 중국 남부 禪宗의 번성

弘忍의 뒤를 이은 중국 禪宗의 제6조 慧能에 의해 형성된 南宗禪은 이후 懷讓(677~744)에게 전승되었다. 그는 714년 湖南省 南岳의 般若寺 관음당으로 들어가 30년 동안 크게 教化를 펴며 독자적인 禪風을 떨쳤다. 그의 法系는 南岳下라고 불렸는데, 같은 혜능의 문하인 靑原行思(671~740)의 법계인 靑原下의 禪風과 더불어 中唐이후 선종에서 가장 융성한 두 교파가 되었다. 회양의 제자로서 그의 法統를 이어받은 이가 바로 馬祖道一(709~788)禪師이고 후일 臨濟宗과 滄仰宗의 종파로 발전하였다. 그는 709년 四川省의 漢州에서 태어났으며, 19세 때 출가하였다. 그런데 마조도일이 회양의 법통을 계승한 제자라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지만, 회양과 혜능 사이의 계승관계는 불명확하다. 즉 華嚴宗의 제5祖인 宗密(780~840)과 같은 동시대의 선종에 대한 비판자들은 원래 회양은 혜능의 법을 정통으로 잇지 않고 홀로 수행하였을 뿐이며 법을 펴지도 않았고, 도일이 회양의 가르침을 전파함으로써 비로소 하나의 새로운 종문의 원류를 이루었다라고 지적하였다.⁴²⁾ 따라서 그들의 지적에 의하면 이러한 계승관계는 아마도 마조도일을 선종의 정통 법통 즉 혜능을 계승한 인물로 만들기 위한 후대의 조작일 가능성이 있다.⁴³⁾ 회양과 마조가 새로운 종단을 건설한 것인지 아니면 남종선의 법통을 계승한 것인지는 불분명하지만, 그의 禪風은 중국 남부 일대를 석권하였다. 그가 江西省 洪州(南昌)의 開元寺를 중심으로 교화하였기 때문에, 그 일파를 洪州宗이라고도 한다. 도일은 ‘평상시의 마음이 곧 佛道이다(平常心是道)’라는 가르침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서 禪을 실천하는 새로운 선종을 확립하였다.

洪州宗은 모든 것을 佛性の 전체작용으로 본다. 곧 마음의 작용을 일으키고, 생각을 움직이며, 손가락을 움직여 하는 일이 모두 불성의 전체작용이고 따라서 평상시의 마음이 곧 道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시 이처럼 일체의 선악 행위를 불성의 전체작용으로 보는 것은 수행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⁴⁴⁾ 즉 洪州宗에서는 모든 행동들-그것이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은 모두 불성의 표현이라고 설명하였기 때문

42) Peter N. Gregory, *Tsung-mi and the Sinification of Buddhism*,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43) John McRae, *Seeing Through Zen: Encounter, Transformation, and Genealogy in Chinese Chan Buddhism*. p. 82.

44) Peter N. Gregory, *Inquiry into the Origin of Humanity: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sung-mi's Yüan jen lun with a Modern Commenta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5.

에 비판자들에게 이는 정신적인 개발이나 도덕적 수련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비취졌다. 즉 동시대인들에게 홍주종의 가르침은 모든 도덕적 구분을 제거하고 불성의 표현으로서 모든 행위들을 인정하는 매우 위험한 도덕과괴론으로 여겨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주종은 禪의 실천을 강조하고 삶의 모든 형태가 있는 그대로 부처의 세계로 바뀌어야 한다는 일반대중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가르침을 펼쳤고, 평상심이 도(道)이다, 마음이 불(佛)이다 등, 평이한 중국어에 의한 설법을 한 까닭에 마조 당시에는 湖南省의 石頭希遷(700~790)과 더불어 ‘江湖二甘露門’이라 불리웠으며, 그의 뒤를 이어 백장과 황벽·임제로 이어지는 중국 선종의 최대 종파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마조도일의 제자인 百丈懷海(749~814)는 福建省 福州사람으로서 大·小乘의 계율을 절충하여 최초로 禪院의 규칙인 淸規를 제정하였다. 그가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一日不作, 一日不食)라고 규정한 이래로 그 규정은 백장이후 중국 선종교단에서 오랫동안 노동생활의 근본정신으로 널리 계승되고 있으며, 선사들의 일상생활의 의무로 되었다. 당시 중국의 유교나 도교 그리고 爲政者들이 불교인들이 耕作하지 않고 먹고 지내며, 베를 짜지도 않고 옷입고 다닌다고 비난하는데 대해 불교의 입장에서 정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바로 백장회해의 청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백장의 청구 제정은 세간에서 불교의 不耕不織에 대해 쏟아지는 비난을 突破하고, 출가 사문의 耕織을 천하에 널리 선전하여 자급자족의 경제생활을 하는 불교 교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정의 제정을 통해서 홍주종은 당시 선종에서 安史의 反亂이후의 비상시국과 軍糧費를 마련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香水錢이라는 출가 수수료를 받게 되면서 수많은 재산가들이 노역과 병역과 세금의 면제를 받기 위해 가짜 승려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제공한 선종 전체에 대한 세간의 비판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⁴⁵⁾ 이후에 會昌廢佛(845~847)과 같은 불교에 대한 과멸적인 파괴가 자행되었을 때에도, 자급자족적인 선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선종 특히 洪州宗은 다른 종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피해만을 입었고 곧바로 교단을 재건할 수 있었다.⁴⁶⁾

洪州宗의 번성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 덕분에 가능하였다. 우선 시기적으로 그리고 지

45) 神會(686~760)는 혜능의 제자로서 洛陽에서 선법을 펼치고 있었는데,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나자 단도승(壇度僧)을 두고 향수전(香水錢)을 거두어 관군에게 공급했다. 후일 숙종(肅宗)이 신회를 위해서 낙양에 하택사(荷澤寺)를 세워주었고, 그리하여 후대에 그는 하택종(荷澤宗)의 개조로 여겨진다. “十四年, 范陽安祿山舉兵內向。兩京板蕩, 駕幸巴蜀。副元帥郭子儀, 率兵平殄。然於飛輓索然, 用右僕射裴冕權策, 大府各置戒壇度僧, 僧稅緡, 謂之香水錢, 聚是以助軍須。” 『宋高僧傳』 권9. 『唐成都府淨衆寺神會傳』.

46) Yifa, *The Origins of Buddhist Monastic Codes in China: An Annotated Translation and Study of the Chanyuan Qinggui*.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4.

리적으로 洪州宗은 안록산의 반란이라고 하는 파괴적인 전쟁이 장안과 낙양에 집중되어 그 지역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기존의 교단들이 급속도로 위축되었던 것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전란의 피해가 적었던 지역에서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었기 때문에 전란의 와중에도 종단을 유지할 수 있었고 전란이 끝난 후에는 급속도로 그 교세를 확장할 수 있었다. 또한 홍주종은 洪州刺史이자 御史大夫와 江西觀察使를 겸임하고 있었던 路嗣恭(712~782)이라든지 洪州刺史 겸 江西團練觀察使였던 鮑防(722?~790?)과 같이 당시 홍주를 관할하고 있었던 유력한 관료들의 후원을 얻을 수 있었다. 특히 鮑防의 경우에는 덕종시기에 전국에 흩어진 승려들을 모두 僧籍에 기재된 자신의 본래 소속지로 돌아가게끔 하는 중앙조정의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道一禪師를 四川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그를 비호하였다.⁴⁷⁾ 결국 이와 같이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유리한 환경 속에서 洪州宗은 강서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남부 전체에 널리 확산되었고 이후 정치적 혼란으로 인해 불교 전체가 침체에 빠져있었던 북부를 대신하여 중국 남부가 禪宗의 중심지이자 불교 전체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3. 閩정권의 宗教政策

唐末·五代 王審知 정권은 복건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과 더불어 종교를 통한 정치적 정당성의 확립에 큰 관심을 표현하고 있었다. 우선 당시 중국 남부지역에서 크게 번성하고 있었고 복건 지역민들이 열광적으로 숭배하고 있었던 불교 특히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선종에 대한 후원은 복주와 천주 사이의 경쟁관계로 인하여 더욱 가열되었고, 이로 인해서 복주와 천주를 중심으로 한 복건지역은 중국 남방불교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한편 당말 오대시기 복주지역에서 지역정권의 후원을 받는 공식적인 민간신앙은 그 전체적인 숫자는 상당하였지만 后土·張王·觀音과 같이 상당히 넓은 지역을 포괄하는 광역의 신들(regional deities)은 아직 등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구의 희소성과 교통의 장애로 인한 지역적 고립이 해소되는 송대 이후에 이르러서야 마조신앙과 같은 광역의 신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송대 이후 복건지역 민간신앙의 급격한 팽창은 바로 당말 오대시기 왕씨정권에 의한 지역개발과 그로인한 인구의 증가에서 기인하였고, 또한 그들에 의한 토착적인 민간신앙에 대한 후원은 이후 그 민간신앙들이 송대 이후에도 국가적 후원을 받아 번성하게 되는 밑바탕이 되었다.

(1) 선종에 대한 후원

47) “建中中, 有詔僧如所隸, 將歸舊壤. 元戎鮑公密留不遣.” 『宋高僧傳』 권10. 『唐洪州開元寺道一傳』

閩정권은 당말 오대시기 중국 남부를 분할하고 있었던 번진할거세력 가운데에서도 가장 적극적으로 禪宗을 후원하였다. 당대 저명한 禪師였던 馬祖道一(709-88)에 의해 처음 복건지역의 建州에 소개된 이래로 당말에 이르러서는 福州지역에서도 크게 성행하였던 선종에 대해서 閩정권은 사원의 건설과 저명한 禪僧의 초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중국 남부에서 활약한 여러 유명한 禪師들 중에서도 특히 雪峯義存(822-908)은 민정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다.⁴⁸⁾ 그는 福建省 泉州 출신으로서 12세에 蒲田 玉潤寺에 출가하고, 여러 지역을 편력하다가 德山宣鑑(780-865)에게 師事하여 그의 禪法을 이어받았다. 870년에 복건성 福州 象骨峰에 들어가 작은 절을 지으니 僖宗이 ‘應天雪峰寺’라는 편액을 하사였다. 그는 雪峰寺에서 정진을 거듭하던 중 891년 雪峰寺를 나와 장기간의 중생 교화를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는 華北과 浙江지역을 순회하였는데 당시 吳國을 건설한 楊行密의 후원을 받기도 하면서 끊임없는 전쟁의 와중에 살생의 죄를 지은 많은 군인들에게 法雨를 내려 그들의 죄를 씻어내 주고, 禪寺에서 법회를 열어 전쟁으로 고통 받는 중생들의 마음을 치유하였다. 이러한 설법여행은 그의 명성을 드높였고, 그가 894년 복건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는 이전과 같이 단순히 존경받는 禪僧을 넘어서 선법을 복건지역 전체에 전파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 國師와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가 복건에 돌아왔을 때는 왕조가 복건지역을 막 석권하고 있었던 시기였고, 그의 복귀는 아마도 당시 혼란을 수습하고 지역 내에 안정을 회복해야하는 입장에 있었던 왕조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⁴⁹⁾ 『宋高僧傳』이나 설봉의존의 묘비명에 실려있는 설봉의존의 轉記에 의하면, 왕심지의 아들 王延翰이 처음 설봉 선사를 위한 禪寺를 세웠고, 그 곳에서 왕심지는 설봉 선사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 그가 설법을 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주었다. 또한 왕심지는 이후에도 설봉의존의 禪寺를 위해서 건물을 증축하고, 탕화나 종을 설치하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이밖에도 그는 그 곳의 승려나 신도들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물자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하여 왕심지의 시기에 불교 특히 선종이 복건지역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이와 같이 왕심지는 특히 설봉의존 선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의 설봉선사에 대한 존경심은 설봉 선사가 병이 들자 그는 御醫를 보내어 그를 치료하도록 하였던 고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그는 설봉의존을 자신의 불교 부흥정책의 초석으로 삼아 그와 같은 유명한 禪僧들을 불러들여 후원하고 禪寺를 건설하고, 또한 불교경전들을 출간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실행하였다. 그 결과 복건지역은 남방 禪宗의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⁴⁸⁾ Albert Welter. *Monks, Rulers, and Literati: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han Buddhism*.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⁴⁹⁾ Albert Welter. *Monks, Rulers, and Literati: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han Buddhism*. pp. 94-101.

한편 북건지역의 禪宗은 福州과 泉州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도 더욱 발전하게 되었다. 王潮의 사후 셋째 동생인 王審知가 福建觀察使와 威武軍節度使의 직을 계승하였지만 福州을 중심으로 하는 王審知정권의 통치권은 초기에 북건지역 전체를 아우르지는 못하였고 특히 泉州일대는 王潮의 둘째 동생인 王審邦와 그의 뒤를 이어 아들인 王延彬이 통치하면서 북주와 경쟁의식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王延彬은 북주와의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종교에 있어서 왕심지와 마찬가지로 禪宗을 후원하였다. 王審知의 대대적인 禪宗사원의 건설에 대항하여 泉州의 王延彬은 長慶慧稜과 같은 저명한 禪僧을 초빙하여 천주를 북주에 버금가는 북건의 종교적 중심지로 성장시키고자 하였다.⁵⁰⁾ 즉 그는 906년 雪峰義存(821~908) 禪師의 제자인 長慶慧稜 禪師을 초빙하여 천주에 새롭게 건축한 昭慶院의 주지를 맡도록 하였다. 비록 천주를 북주와 같은 선종의 중심지로 만들려는 왕연빈의 시도는 결국 그가 천주자사의 직에서 물러나면서 무산되었지만, 그와 같이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의 안정적인 통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禪寺를 건설하고 선승들을 초빙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지역간의 경쟁 또한 선종이 福建지역에서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閩정권은 禪宗에 대한 후원을 통해 단순히 특정 종파의 번성뿐만 아니라 북건지역의 전반적인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당시 문화적으로 낙후지역이었던 북건지역은 당말의 혼란기에 급증한 이주민들에 의한 중원문명의 유입과 더불어 선종의 번성 특히 사원과 승려의 증가에 따라 지역 내에서 수준 높은 문화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었다. 특히 왕심지는 설봉의존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인 玄沙師備(835~908)를 극진히 대접하였는데, 현사사비 선사를 북주의 安國寺에 머물게 하면서 그 곳을 禪法을 가르치는 도량으로 삼아서 왕심지를 비롯한 민정권의 관료들에게 禪法을 전수하도록 하였다.⁵¹⁾ 왕심지는 안국사를 자주 찾아 현사사비 선사와 선불교식의 대화를 나누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현사사비는 그의 스승 설봉의존과 더불어 민정권이 북건지역에 불교사상에 기반 한 통치를 구현하는데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쳤다. 이러한 禪師들에 대한 후원과 더불어 왕심지는 자신은 한미한 출신이었고 비교적 어린 나이에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학식과 덕망으로 널리 알려진 유교적 지식인 원로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후원하여 민국 내에서 젊은 지식인들을 양성하고 민정권의 통치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자 하였다. 결국 민정권의 선종에 대한 후원은 불교에 대한 종교적 차원의 후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통치사상을 구축하고 국가를 이끌어 나갈 엘리트층을 육성한다는 국가 정책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50) Hugh R. Clark, "Quanzhou (Fujian) during the Tang-Song Interregnum, 879-978."

51) Albert Welter. *Monks, Rulers, and Literati: The Political Ascendancy of Chan Buddhism.*

(2) 민간신앙에 대한 후원

閩정권을 건설한 王氏집안은 복건의 토착세력이 아닌 光州(오늘날의 河南省 固始縣) 출신의 이주민으로서 기존의 토착세력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어 종교에 대한 후원을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하였다. 그들은 불교나 도교와 같은 조직화된 종교들 뿐만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민간신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다. 특히 민간신앙의 경우 복건지역의 토착적인 민간신들에 閩정권의 후원은 집중되었다. 閩정권은 閩粵王(鄒無諸)과 같이 복건지역의 역사적인 인물로서 후대에 신격화된 인물들에 대한 신앙들에 대해서 대대적인 사원의 건설과 더불어 華北의 五代왕조를 통한 封號의 하사를 추진하였다.

민정권의 민간신앙에 대한 후원은 우선 정치적 경제적 중심지였던 福州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당대부터 이주민들의 증가로 시작되었고 왕심지에 의해서 본격화 되었던 복주의 개발은 동남해안지에서 시작되어 점차 서북 산간지대로 층차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지방지들의 기록에 따르면 민간신앙 사묘의 건설 역시 동남 해안의 閩縣, 侯官, 懷安 등지에서는 송대이전에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에 내륙에 위치한 古田, 永福, 閩清 등지에서는 송대이후에 집중적으로 건설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⁵²⁾ 즉 지역적 개발과 민간사묘의 건설의 진행방향이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시기에 건설된 사묘들의 신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오대시기까지 복주지역의 토착적인 민간신이 압도적이었고 송대 이후부터 외래신들이 본격적으로 유입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 또한 복주지역과 외부와의 교통망의 확충과 외래의 이주민들의 유입이 당말 오대시기에 시작되어 송대이후부터 본격화되었기 때문이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다음으로 민간신앙의 사묘들의 건설 시기 역시 당말 오대시기가 일종의 획기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지들의 기록에 따르면 비록 송대이후의 급격한 발전에는 못미치지만 당말 오대시기의 약 한세기 동안에 건립된 민간신앙의 사묘의 수는 그 이전에 건립된 사묘들의 수를 능가한다.⁵³⁾

따라서 이러한 지방지 자료들을 통해 우리는 당말오대시기 왕심지정권에 의해 이루어졌던 지역개발과 그로인한 전반적인 복주지역의 발전은 토착적인 민간신앙의 발전을 초래하여 그 민간신들에 대한 사묘의 건설을 촉진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왕심지 정권 자체가 이러한 민간신앙에 대한 후원에도 힘써서 당말 오대시기에 민국에 의해서 민간신들에게 수여된 봉호하사의 건수는 북송대의 건수를 능가할 정도였다.⁵⁴⁾ 스스로 칭제를

52) 姚政志, 『南宋福州民間信仰的發展』 碩士論文, 臺灣國立政治大學, 2004.

53) 姚政志, 『南宋福州民間信仰的發展』. pp. 25-26.

54) 楊俊峰, 『五代南方王國的封神運動』 漢學研究 28.2, 2010: 327-362. pp. 343-344.

하지 않았던 왕심지는 특히 지역의 유력인사들이 숭배하고 있었던 민간신앙에 대한 봉호의 하사를 공식적으로 중원의 오대왕조로부터 받아냄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다. 예를 들어 907에 왕심지는 후량에 상주문을 올렸는데, 그는 복주 閩縣에 있는 玷琦里古廟가 사람들의 기도마다 영험을 드러내어, 鄉閭의 父老들이 모두 陳情하여 封號를 하사해주길 갈망한다고 상주하였다.⁵⁵⁾

복주지역의 민간신들의 종류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자연신이나 영물신 종교신과 그리고 인물신들이 모두 존재하였다. 그중에서도 생존시에 지역민들에게 큰 공헌을 하였던 영웅적인 인물로서 사후에 신이한 영험을 드러내어 신으로 추앙받게 되었던 인물신의 부류에 속하는 민간신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압도적으로 많았다.⁵⁶⁾ 그러나 당대까지 국가가 봉호를 내리는 경우는 거의 악진해독이나 풍우뢰신과 같은 자연물의 민간신들이나 인물신 중에서는 역대제왕의 경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당대까지 국가의 봉호의 하사를 비롯한 전반적인 신계에 대한 정책이 고전적인 의례경전의 규정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복주의 왕심지가 오대왕조를 통해서 주로 봉호의 하사를 추진하는 대상은 대부분 민간사회의 지지를 얻고 있었던 토착적인 영웅 인물신들이었다. 지방지의 기록에 따르면, 왕심지가 봉호의 하사를 추진하였던 토착적인 영웅 인물신들로는 閩越王(郢)·白馬三郎(민월왕의 자)·陳巖·劉行全과 같이 실제로 복주지역에 생존하였고 영웅적인 일화를 남겼던 인물들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⁷⁾ 왕심지는 중원의 왕조들과 달리 고전적인 의례경전의 규정에서 자유로웠고 그의 봉호하사의 이유가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숭배를 받고 있었던 인물들에 대해 집중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이다.

비록 복주지역을 비롯한 복건 전지역의 민간신앙의 발전은 남송대이후에 압도적으로 나타나지만,⁵⁸⁾ 그러한 발전의 전단계로서 당말 오대시기 복주지역의 민간신앙의 발전은 그 이전시기와는 구별될 정도로 분명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특히 왕심지에 의한 지역개발과 이주민들의 증가는 토착의 민간신앙들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고, 왕심지는 이러한 복주지역 민간신앙의 발전에 호응하여 봉호의 하사를 추진하여 후원하였다.

맺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閩정권의 종교정책은 우선 그들의 선불교에 대한 후원에서

55) 『冊府元龜』 卷193. p.2330.

56) 姚政志, 『南宋福州民間信仰的發展』. pp. 37~38.

57) 『淳熙三山志』 卷8

58) 金相範, 『宋代 福州의 祠廟信仰과 地域社會』 『中國史研究』 38, 2005. pp.91-126.

그 특징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선불교는 六祖 慧能禪師가 南宗禪을 창설한 이래로 중국 남방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고, 민간에서 번성하고 있었던 淨土思想과 더불어 唐末이래 宋代에 걸쳐 중국 불교의 가장 중요한 두 흐름으로 발전하게 된다. 閩정권은 당시 일반대중의 숭배를 받고 있었던 禪宗에 대한 후원을 통해 복건지역을 불교의 중심지로 발전시켰고, 선종의 수준 높은 문화의 수용을 통한 지역문화수준의 향상이라는 여러 이득을 거둘 수 있었다. 한편 閩정권의 경우 복건 지역의 토착세력이 아닌 외부에서 이주해 들어온 세력에 의해 건설되었고, 그들의 종교정책은 정권의 이미지를 토착화시키는 것에 중점이 두어졌다. 따라서 閩정권은 여러 토착적인 신앙에 대해 후원하면서 특히 복건의 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하여 일반대중으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들로서 후대에 신격화된 민간신들을 숭배하는 신앙을 중점적으로 후원함으로써 자신들 또한 그 신들과 같이 복건지역의 開拓者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였다.⁵⁹⁾

결국 당말·오대시기 복건지역과 같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송대이후 중국의 선진지역으로 발전하는 토대를 완성하였던 閩정권은 당시 중국 남부를 중심으로 대중화와 토착화를 통해 일반대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었던 선종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고 토착화된 정권의 이미지를 확립하기 위해서 기존의 토착적인 민간신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하였던 것이다. 그들의 성공적인 종교정책으로 閩정권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받았고, 그들의 종교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은 복건지역의 종교적 환경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59) 송대의 상황 즉 송대 복주지역의 민간신앙의 발전양상과 국가권력과의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金相範, 『宋代 福州의 祠廟信仰과 地域社會』, 中國史研究 38, 2005. pp.91-126.을 참조할 것.

남송시기 위조지폐 연구

정 일 교(경기대)

目次

- I. 서론
- II. 남송시기 위조지폐 발행 현황
- III. 남송시기 위조지폐 발행의 원인
- IV. 남송시기 위조지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 V. 맺음말

I. 서론

송대는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시기였다. 상품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화폐의 수요가 증가를 하였고 이는 이전 왕조와 비교하여 화폐의 주조, 발행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다. 동전의 경우 북송시기 초기에는 歲鑄額이 7萬貫이었지만 熙寧 7년(1704)부터 元豐 8년(1085)까지 세주액이 450만貫 이었다¹⁾. 북송시기에 주조된 동전의 누적 액은 2억여貫 이상 이었다. 또한 중국 역사상 최초로 紙幣가 등장한 시기이다. 지폐의 등장은 北宋 仁宗 天聖元年(1023)에 益州에 交子務를 설치하면서 시작 되었다²⁾. 하지만 宋朝에서 지폐를 발행하기 이전에 四川 지역의 부호들이 약속 어음의 형식으로 먼저 지폐를 발행하였다. 이것을 정부가 발행권을 회수하면서 官交子로 탈바꿈하고 정식적인 정부에서 발행하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지폐인 交子가 등장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어찌 보면 사천의 부호들이 발행하기 시작한 私交子를 偽造紙幣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송대의 위조지폐는 交子, 會子, 錢引 등 모든 지폐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송시기보다는 남송 시기가 지폐의 종류나 발행량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송대의 위조지폐는 남송이 북송보다도 더욱 심각한 상황이었다. 남송시기에 지폐의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위조지폐의 수량도 증가하였다. 위조지폐의 발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송 조정에서도 위조지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시행하였지만 위조지폐문제는 송대에 해결

1) 정일교, 『남송시기화폐 발행 현황과 그 특징』, 『동양사연구 제122집』, 동양사학회, 2012년 3월, p139 <표1>.

2) 『宋史』, 권181 『食貨志下三·會子』.

되지 않은 문제 중에 하나였다.

위조지폐 문제는 북송시기에 교자가 발행되던 시기부터 시작되어 仁宗 慶歷 7년(1047)에 이미 위조지폐문제가 심각해지기 시작하였다. 위조지폐의 수단도 점점 더 다양해지는데 위조지폐에 참여하는 인원도 적게는 두세 명에서 많게는 수십 명까지 참여하는 경우도 있었다. 송 정부는 위조지폐를 만든 사람들을 엄한 법률로 다스리고 이와 더불어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폐 인쇄 기술을 이전보다 복잡하게 하였으며 지폐를 발행하는데 참여하는 관원과 工匠의 봉록을 인상해 주는 등의 정책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위조지폐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고 화폐의 가치가 상승을 하면 바로 위조지폐가 시장에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송대 화폐에 관하여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있었다.³⁾ 이 연구 성과들은 대부분 銅錢, 鐵錢 등과 같은 金屬貨幣 그리고 교자, 회자 등과 같은 지폐 위주의 연구 성과들이었다. 어찌 보면 정부에서 발행하는 정식 화폐에 관해서만 연구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전의 위조 화폐에 관한 연구 성과가 중국 학계에서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행하는 화폐와 비교하여서는 그 성과가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그 중에서도 위조 화폐에 관한 연구 성과는 주로 금속화폐에 관한 것이었고 지폐의 위조에 관한 연구 성과는 극히 적은 것이 사실이다⁴⁾.

3) 중국 학계에서는 이미 송대 화폐에 대한 대표적인 저서를 소개하면 汪 聖鐸의 『兩宋貨幣史』는 송대 화폐에 관한 사료를 풍부하게 사용하였고 이와 동시에 수많은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송대 동전, 철전, 지폐, 금은과 유가증권 등 송대 화폐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하고 심도있게 분석하다. 이외에도 송대의 화폐와 관련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이론 분석과 견해를 보여 주고 있다. 高 聰明은 『宋代貨幣與貨幣流通研究』에서 송대 화폐의 구조에만 치중되었던 그 간의 송대 화폐 연구에서 벗어나 구조량 뿐만이 아니고 이 화폐들이 어떻게 유통 되었고 각 지역의 화폐들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찰 하였다. 劉森은 『中國鐵錢』에서 중국 화폐사에서 가장 중요한 화폐였던 동전에 치우쳤던 연구를 철전의 영역까지 넓힘으로써 화폐사 연구의 범위를 확장 시켰다. 그리고 그는 『宋金紙幣史』를 통해 화폐사의 연구 영역을 확장 하였고 지폐의 관리, 발행, 지폐이론까지 다방면으로 송대의 지폐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잘 알려지지 않았던 金朝등의 지폐에 대하여도 심도 있게 연구하였다.

연구 논문으로는 우선 남송시기 지폐에 관한 繆明楊, 『南宋紙幣發行準備金述略』, 『經濟科學』, 1995년, 杜文玉, 王克西, 『會子的界分與數額』, 『中國錢幣論文集』, 1992년, 賈大泉, 『宋代的紙幣發行和紙幣理論』, 『社會科學研究』, 1996-1등이 있고, 금속 화폐와 관련된 논문으로는 巴家雲, 『宋代四川專行鐵錢的研究』, 『中國錢幣』, 1994년, 劉森, 『南宋銅錢監述略』, 『中國錢幣』, 1993년, 邱思達, 『宋代的鐵錢監和鐵錢』, 『中國錢幣』, 1988-2 이 대표적이며 이들 논문들은 남송시기를 대표하는 지폐와 금속 화폐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분석하였다. 이외에도 高聰明的 『南宋貨幣流通的特點』, 『中國經濟史研究』, 1995-3은 남송시기 화폐의 구조 발행뿐만이 아니고 그 유통까지 연구 영역을 넓혀 남송시기 화폐사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모두 송대의 화폐에 대하여 소개했고, 송대의 화폐위조에 대하여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4) 송대 위조지폐에 관한 연구 성과는 단행본으로 鄭瑾의 『中國古代偽幣研究』, 浙江大學出版社, 2008. 있고 연구 논문으로는 陸梅珍의 『關於宋代偽造紙幣的問題』, 『浙江大學學報』, 2000, 周斌의 『兩宋紙幣的偽造及治理』, 『中國錢幣』, 1994, 『論兩宋紙幣的偽造問題』, 『四川文物』, 1994. 등이 있

본고에서는 남송시기에 여러 종류의 지폐가 대량으로 발행 유통되었고 이 과정에서 위조지폐가 성행하게 된 원인과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남송시기 지폐 제도에서의 문제점과 위조지폐가 남송 정부와 백성에게 끼친 영향에 대하여 서술하고자 한다.

II. 남송시기 위조지폐 발행 현황

1. 위조현황

송대의 위조지폐 문제는 북송시기 교자가 발행되던 때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교자는 민간에서 시작해서 官으로 넘어가는데 민간에서 官으로 발행권이 이전되는 과정 중에 민간에서 발행한 교자에 대한 소송이 자주 일어났다. 게다가 위조 문제가 발생 하여 송 정부에서 發行權을 회수한 것이었다.⁵⁾ 어떻게 보면 북송시기에 지폐가 발행하기 시작 하면서 위조의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이에 북송 정부는 교자의 발행권을 회수하고 天聖元年(1023)에 교자무를 설치하고 교자의 위조를 법으로 금하였다.⁶⁾

북송 인종 慶歷 7년(1047)에 보면 교자의 위조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당시의 轉運使가 교자의 위조 문제에 대하여 “위조하는 犯法者가 너무 많아서 사용하지 말고 廢하여 한다”⁷⁾ 라고 말하고 있다. 교자는 徽宗 大觀元年(1107)에 전인으로 바꾸어 다시 발행을 하게 되는데 위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 교자의 위조 문제가 교자를 錢引으로 이름을 바꾸어 사천 지역에서 발행한 원인 중에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남송시기에 여러 종류의 지폐들이 발행 되었고 교자 또한 남송 시기에 임안에 교자무를 설치하고 다시 발행되었다⁸⁾. 남송 초 紹興年間에 교자를 다시 발행하였는데 교자를 발행하자 위조지폐의 문제가 심각해졌고 이 문제에 대하여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에 대한 上書 또한 많았다. 『皇宋中興兩朝聖政』에 보면 이에 대한 기사가 있는데, 紹興 4년(1134)년에 “지금 교자를 논할 때 이득이 두 가지고 손해 네 가지이다. 그 두 번째 손해는 위조가 많아서 소송이 날로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⁹⁾, 그리고 “數寸의 종이

는데 송대의 화폐사 연구 성과와 비교해 보면 송대 위조지폐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위조지폐에 대한 사료가 제한 적이어서 필자도 본고를 쓰는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5) 『宋朝事實』 卷15.

6) 『宋史』 卷181, 『食貨志下三·會子』.

7) 『五朝名臣言行錄』 卷9 『孫甫』.

8)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卷16 『東南會子』.

9) 『皇宋中興兩朝聖政』 卷19.

에 어찌 위조하려고 하는 자가 없을까?”¹⁰⁾ 등과 같이 교자의 위조에 대하여 걱정하였고, 刑部侍郎 胡交修 또한 교자의 의조 문제에 대하여 상서에서 위조하는 자가 날로 많아져 죄를 짓는 자가 많다고 언급하고 있다¹¹⁾.

남송 建炎年間に 사천宣撫使가 전인을 위조한 사건이 발행하였는데, “宣司에서 위조된 전인 30만을 얻고 죄인이 50이었다.”¹²⁾ 이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위조지폐를 대량으로 조직적으로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당시에 지폐를 위조하는 범법자들이 모두 조직적으로 대량의 지폐를 위조한 것은 아니다. 적을 경우에는 두세 명, 많을 경우에는 수십 명이 위조지폐에 참여하였다. 그 예로 淳熙 7년(1180)년에 婺州에서 開字匠 蔣輝와 黃念五가 회자를 위조하다 발각된 사건이다¹³⁾. 앞에서 建炎年間の 전인을 위조사건과 비교하면 위조에 참여한 인원이 매우 적고 관리가 직접 관여했음을 알 수가 있다.

회자의 위조는 孝宗, 寧宗, 理宗 시기에 빈번이 발생하였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휘와 황년오의 사건도 효종 시기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장휘가 臺州로 유배를 갔고 당시 대주의 知州로 있던 唐仲友가 장휘를 집으로 불러 회자를 위조하라고 위협하자 결국 당중우를 도와 회자를 위조하게 되었다. 자세한 사건의 전말은 아래와 같다.

輝가 말하길 이후부터 이득이 없어지고 보기 좋지 않을까 걱정이다. 仲友가 말하길: 너는 나의 일에 관여하지 말라, 내가 만약에 나의 말대로 따르지 않으면 너를 감옥에 넣고 죽일 것이다. 너는 軍에 소속되었으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輝가 겁을 먹고 그렇게 하였다. ……장휘가 당중우를 위해 회자의 액면가를 一貫文省으로 하여 두 번에 걸쳐 350道를 위조했다. 淳熙9년 정월에서 6월까지 다시 약 20차례에 걸쳐 모두 2600여道를 인하였다. 이일을 朱熹가 彈劾하였고 장휘는 紹興府로 압송되어 조사를 받았다. ¹⁴⁾

즉, 知州였던 당중우가 위조지폐 사건으로 유배와 있던 장휘를 겁박하여 회자를 위조하였는데 이 사실을 주희가 알고 당중우를 탄핵했던 사건이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남송시기에 지폐를 위조하는 범법행위는 관리도 포함되어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또한 淳熙12년(1185) 洪邁가 婺州에서 臨安으로 돌아온 후 회자의 위조에 관한 일들을 우연히 알고 이를 孝宗에게 아뢰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0) 『皇宋中興兩朝聖政』 卷19.

11)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卷16 「東南會子」.

12) 『宋史』 卷374 「趙開傳」.

13)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19 「奏狀·按唐仲友第四狀」.

14) 『晦庵先生朱文公文集』 卷19 「奏狀·按唐仲友第六狀」.

淳熙12년에 洪邁가 婺州에서 臨安으로 들어와 臨安人이 걸어놓은 소첩을 보니 750錢을 회자 1楮로 바꾸어 준다고 하여 들어가서 말하고 여럿을 바꾸었다. 황제는 “이일은 경만이 아는 것이 아니다, 짐이 회자의 문제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한지 십년이 다되었다. 예전에 廢하였으나 다시 생겨나고 위조하는 곳이 있었다. 15)

위의 사료를 보면 당시 임안에서 회자의 위조는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길거리에 소첩을 붙일 정도로 만연해 있었다. 이 뿐만이 아니고 홍매는 『夷堅志』에서 회자의 위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 淳熙13년(1186)에 王元卿叔端이 太平州 黃池鎮을 지나면서 회자의 위조에 대하여 본 것을 기록하였다.¹⁶⁾

『宋會要輯稿』에 보면 嘉定年間 회자의 위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래에 지폐 위조가 날로 심하여 丁卯에 舊弊를 연이어 발행하여 새로 유통을 시켰는데 蜀道에서 楮를 이를 몰래 바꾸어 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는 천자의 권한을 훔쳐서 印文을 私鑄하는 것이었다. 一界의 楮의 숫자가 적으면 수년간 유통되었고, 水火¹⁷⁾로 소비되었으며 파손으로 소비되고 먼 지방으로 가서 界를 넘겨 바꾸지 않아 소모되었으며 또한 그 흠을 알지 못하였다. 界가 滿이 되면 회수하였는데 그 수가 항상 많았고 이는 곧 위조한 지폐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¹⁸⁾

위 사료를 보면 남송시기의 위조지폐가 남송 시기 지폐의 특징인 지역적 割據성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있고 구폐와 신폐를 교환할 때 구폐가 신폐보다 많아 이 양만큼 위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북송과 남송 시기의 위조지폐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절에서는 위조지폐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2. 남송 시기 지폐 위조 방법

남송시기에 위조지폐가 성행하였다는 것은 위에 살펴보았다. 민간뿐만이 아니고 관리도 위조지폐 제조에 참여를 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지폐를 위조 하였는지 알아 봐

15) 『容齋三筆』 『官會折閱』.

16) 『夷堅志』 戊集卷4 『黃池牛』.

17) 水火(水火不到錢): 水火 또는 수화불도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남송 시기에 지폐가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는 과정에서 훼손된 지폐를 말한다. 물에 젖었거나 불에 탄 지폐라 해서 수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다. 초기에는 수화전을 정부에서 일정 가격을 치르고 회수를 하였지만 후에 아무런 보상도 없이 이를 회수 하였다.

18) 『宋會要輯稿』 2之145 『刑法』.

야 할 것이다.

위조지폐 방법은 대략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째, 지폐를 인쇄하는 판을 위조 하는 것이다. 송대의 지폐는 보통 동판에 인쇄하는 것이 일반 적이다. 바로 이 동판을 만들어서 지폐를 위조하는 것이다. 동판을 위조하는 것은 일단 투자 자본이 많이 필요로 하는 위조 방법이고, 가장 완벽하게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이다. 하지만 자금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방법은 동판을 제조하는 것보다는 목판을 만들어서 지폐를 위조하였다. 그 예로는 위에서 언급했던 당중우가 장휘를 시켜 회자를 위조한 사건이다.

당시에 梨木板 一片을 輝에게 주고 10일 동안 조각하였다.…… 12월 중순에 金婆婆가 藤나무 상자에서 보관하던 會子紙 200道와 土朱靛靑棕墨등의 재료를 휘에게 주고 회자 200道를 위조하였다.¹⁹⁾

위의 사료를 보면 梨木에 회자 인쇄판을 조각하고 회자에 사용하는 종이까지 미리 준비해 두었다가 회자를 위조하였고 또한, 치밀한 준비를 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두 번째 방법은 會底²⁰⁾를 관원이나 지폐 발행에 종사하는 사람을 통해 구입하는 방법이다. 회저를 몰래 사들이고 관인을 위조하여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으로 소자본을 투자해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 회저를 이용해 회자를 위조한 사례는 『宋會要輯稿』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근래에 지폐의 위조가 날로 심해지고 있고 丁卯에 舊 지폐를 綴補 방법으로 위조하여 신지폐로 만드는 경우도 있고 축도에서 몰래 바꾸어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고 가난한 백성이 천자의 권한을 도둑질 하여 사사로이 印文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²¹⁾

위 사료에서 印文을 만드는 것은 회저를 사들이고 官印을 위조하여 위조지폐를 발행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淳祐 元年(1241)에 理宗은 회저의 불법 유통을 금하는 법령을 내리는데 이를 보아도 당시에 회저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이를 통해 회자를 위조는 방법이 만연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세 번째는 舊幣의 유통 기한을 위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남송시기의 지폐는 정해진 유통 기한이 있어서 새로운 지폐를 발행하면 구폐와 新幣를 교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구폐를 회수하게 되고 구폐는 화폐로서의 가치를 상실하는 것이다. 하지만 구폐와 신

19) 『朱文公文集』 卷19 「按唐仲友第四狀」.

20) 會底는 회자를 인쇄하고 아직 관인이 찍히지 않아 발행하지 않은 회자를 말한다.

21) 『宋會要輯稿』 2之145 「刑法」.

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구폐의 유통기한 즉, 회자로 말하면 계를 위조하여 정부에 반납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방법이다. 戴埴이 『鼠璞』에서 이에 대하여 “14, 15 兩界의 舊가 손실이 많았고 자주 교환을 해서 封樁庫에 많이 있었는데 이를 폐기하지 않고 다시 사용하였다.”²²⁾ 라고 하였는데, 구폐를 폐기하지 않고 신폐로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

이상으로 남송시기의 위조지폐 현황과 위조지폐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위조지폐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였고, 또한 정교해 짐에 따라 정부에 큰 손실을 안겨 주었다.

그럼 지금부터 남송시기에 위조지폐가 성행하게 된 원인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Ⅲ. 남송시기 위조지폐 발행의 원인

위조지폐 문제는 비단 송대에만 발생했던 문제는 아니다. 화폐 주조하는 원료의 가치가 화폐의 액면가 보다 낮을 경우 위조가 성행하게 된다. 송대의 화폐의 위조는 지폐뿐만이 아니고 금속화폐도 私鑄錢이라 하여 금속화폐의 위조가 성행하였다. 하지만 송대 지폐의 위조가 성행하였던 가장 큰 원인은 적은 자본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남송 시기 지폐 위조의 원인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鈔法 상의 원인이 있다. 송대의 초법에는 불합리한 부분이 존재를 하고 있었다. 특히 구전과 신전을 교환할 때 일대일 교환이 아니었고 紙墨費 또는 貫頭錢 이라고 불리 우는 수수료를 요구 하였다²³⁾. 관두전이라 불리는 수수료는 북송시기에는 30文 이었고 남송 紹興年間에는 64文까지 요구를 하였다. 어찌 보면 이는 구전과 신전이 같은 가격으로 교환 되는 것이 아니고 신전이 더 비싸게 교환이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구전을 신전으로 위조하여 유통 시키면 관두전 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구전과 신전을 교환할 경우의 불편함 또한 위조지폐의 성행의 한 원인으로 작용을 하였다. 남송의 회자는 임안에 行在會子務를 설치하고 회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회자의 界가 滿하여 교환을 할 경우에 교통과 시간적 제약 때문에 교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회자무를 찾아 직접 교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싼 가격으로 舊會子를 판매를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악용하여 구회자를 싼 가격에 사들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嘉定 元年(1208)년에 사천에서 90界 전인을 교환할 때 이미 교환 기간이 다되어

22) 『鼠璞』 卷上 「楮券源流」.

23)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卷16 「錢引兌監界」.

서 어쩔 수 없이 시장에 싼 값에 전인을 매각한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사천의 모든 주에서 總領所까지 먼 경우는 수천수백리가 되어서 이미 기한이 다되었고 受給하는 기간이었는데 관리가 다시 농간을 부려 상인들도 어쩔 수 없었고 백성이 모두 분노하였으며 1리울 100에 팔았다.”²⁴⁾ 이 기사를 보면 전인 1道를 100文에 판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는 당시 시장 가격의 1/4에 해당하는 가격이었다. 이렇듯 초법상의 문제로 인해 위조지폐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다.

두 번째로는 초법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와 관리의 확고한 의지가 부족하였다. 이미 언급했듯이 송대의 지폐는 界가 바뀌면 구폐와 신폐를 교환을 하는 제도였다. 이제도는 또한 구폐와 신폐를 교환하는 과정에서 관리가 위조지폐를 구별해 낼 수 있는 제도였다. 하지만 이제도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위조지폐가 성행하는 또 하나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예를 들면 嘉定 5년(1212)에 第6界 湖會가 발행되었고 第7界 호회는 26년 후에 발행 되었고, 嘉定 14년(1221)년과 嘉定 17년(1224)에 각각 30만과 200만貫의 호회를 발행하여 손상된 회자와 교환해 주었다. 이 경우에는 호회의 每界의 유통기한이 지켜지지 않았다. 또 다른 경우는 지폐를 발행하면서 유통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인데 구폐와 신폐가 함께 유통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의 경우와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관리들이 위조지폐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위조지폐 문제이다. 관리들이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과정에서 신구화폐를 교환하는 초법을 이용해서 신폐로 세금을 거둔 후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구폐와 바꾸어 구폐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법이다. 이는 관리가 신구화폐의 가격 차이를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예가 이미 언급했던 唐仲友 탄핵 사건이다.

셋째는 송대의 지폐의 모양이 비교적 단순하였다는 점이다. 우선 북송시기의 교자의 형태는 모두 같은 종이를 사용하여 인쇄를 하였고 屋木人物을 교자에 새겼다²⁵⁾. 이외에도 鋪戶의 押字가 있고 暗號 등을 교자에 새겨 넣었으며 교자에 교자라고 직접 써넣지는 않았으며 액면가도 빈 공간으로 남겨 두었다. 이는 사교자를 발행할 때는 어음의 개념으로 발행 하여서 교자를 사용할 때 필요한 액수를 적어 넣었던 것이다. 大觀年間に 교자를 전인으로 바꾸었는데 전인을 발행 할 때는 다양한 색으로 인쇄를 하였고 매장 전인마다 六顆를 새겨 넣었고 화문을 넣어 每界 마다 다른 모양으로 발행을 하였다. 교자와 비교하여 조금 복잡하고 세련된 모양을 갖게 되었다.

남송에 회자는 전인과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처음으로 발행된 교자보다는 조금 복잡한 모양으로 발행되었다. 회자는 회자에 회자라는 글자가 들어가고 발행기관, 액면가 등이 모두 기입된 상태로 발행되어서 교자보다는 위조하기가 어려워졌다. 이를 통해서 남송

24) 『文獻通考』卷9『錢幣考二·會』子.

25) 『宋朝事實』卷15『財用』.

정부도 회자의 위조를 막기 위해 노력을 했음을 알 수가 있다.



(교자)



(회자)

이상으로 남송시기 위조지폐가 성행한 원인에 대하여 알아보았고 다음으로 위조지폐에 대한 남송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IV. 남송시기 위조지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위조지폐가 날로 성행하자 북송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남송 정부는 위조지폐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을 하였다. 이들 정책 중에는 刑律을 다시 제정하거나 지폐의 발행에 참여하는 관원의 봉록을 인상하고 지폐를 정밀하게 제작하여 발행하는 등 다양하였다.

첫 번째로 위조지폐에 관한 여러 가지 刑律을 제정하였다. 기본이 되는 것은 위조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리고 신고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형률제도는 북송 교자를 발행하면서부터 시작하였는데 熙寧元年(1068)년의 기사를 보면 “官文書を 위조하는 모든 자는 2,000리 유배를 보낸다.”²⁶⁾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자의 官印을 위조할 경우에도 이 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한 『宋朝事實』에 “만약 민간에서

26) 『宋刑律』 卷25 「偽造律」.

위조를 하면 신고하도록 허락하고 小錢 500貫을 지급하고 위조한 범인은 銅錢界에 따라 처벌한다.”²⁷⁾라고 하여 교자 위조에 대해 처벌과 신고할 경우 상금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 이 두 기사는 교자 발행 초기에 형률로서 교자의 위조에 대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교자 발행 초기에는 교자의 위조가 그리 심각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樞密使 文彦博이 교자를 위조하면 絞刑에 처하자고 상서를 통해 건의하고 있다²⁸⁾.

남송시기에는 위조지폐 범에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 斬刑에 처하고 신고자에게는 더욱 많은 상금을 주도록 정하였다. 紹興 32년(1162)의 규정을 보면 “偽造會子法을 정하였는데 죄지은 자는 참형하고 賞錢이 千貫이고 원하지 않는 자는 進義校尉를 주었다. 만약에 자수하는 자가 있으면 죄를 면해주고 상을 주었고 원하면 官을 주도록 하였다.”²⁹⁾ 이 기사를 보면 교자 위조범이 이전 보다 그 처벌이 엄격하고 상금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이는 북송시기 보다 남송시기가 지폐의 위조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는 근거이다. 남송시기의 회자법은 이후 더욱 강화되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乾道 6년(1170)년에 먼저 賞을 주고 후에 죄를 묻는다고 하였으며³⁰⁾, 淳熙 13년(1186)에는 재범자에 대하여 印文이 완벽하지 않아도 법률에 따라 처벌한다고 하고 있으며³¹⁾, 嘉定 16년(1223)에는 관료들이 회자위조에 대하여 더욱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건의하였고³²⁾, 淳祐 10년(1250)에는 위조를 신고하지 않으면 連坐로 다스린다고 하였다³³⁾.

지폐위조에 대한 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엄격해지고 신고자에 대한 상은 많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남송시기에 위조지폐가 날로 성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지폐를 정밀하게 제작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지폐의 위조를 힘들게 함으로써 위조지폐를 근절하고자한 정책이다. 지폐 제작에 사용되는 종이를 일반 종으로 사용하면 그만큼 재정을 아낄 수 있지만 위조하기 쉬워지고 반대로 좋은 질의 종이를 사용하면 자본이 많이 들지만 위조하는데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위조지폐를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정책이다. 紹興年間に 회자를 발행할 때 사용하는 종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당시에 회자의 종이는 徽·池의 종이를 사용하였고 成都에서 만들었으며 또 임안에서 만들었다.” 이 기사를 보면 회자에 사용되는 종이는 특정지역인 휘·지에서 생산되는

27) 『宋朝事實』 卷15 『財用』.

28) 『宋史』 卷201 『刑法三』.

29) 『宋史』 卷18 『食貨志下三·會子』.

30) 『皇宋中興兩朝聖政』 卷49.

31)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卷16 『東南會子』.

32) 『宋會要輯稿』 4之145 『刑法』.

33) 『續文獻通考』 卷7 『錢幣考一·會子』.

종이만을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淳祐3년(1243) 관료들이 회자를 인쇄할 때 좀 더 정밀하게 하자고 건의 하였다.³⁴⁾

세 번째는 지폐를 발행하는 官員과 官廳에 대한 관리 강화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정책이 잘 실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실행하는 관청과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송 정부도 알고 있었기에 지폐를 관리 감독하는 관청과 관원에 대하여 관리를 강화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북송시기에 교자무를 설치하여 교자를 관리하였고 남송시기에는 회자무를 설치하여 전문적으로 회자를 관리 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폐를 발행하는 工匠의 대우를 개선하였는데, 우선 工匠의 봉록을 인상에 줌으로써 공장이 부정부패하는 것을 막고자 하였다³⁵⁾. 이와 더불어 구·신회자를 교환할 때 관리가 회자를 감별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위조지폐를 판별하였던 것이다. 乾道 4년(1168)의 규정을 보면 관리가 회자를 교환할 때 1貫의 위조 회자를 발견하면 회자를 바꾸려는 자에게서 3貫을 벌금으로 받는 다라고 하고 만약 위조지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성명을 명기하고 상을 준다고 하고 있다³⁶⁾. 이는 위조지폐를 신회자로 교환하려 올 경우 모두 위조지폐 범으로 보지 않고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참형이 아닌 벌금으로 대신하고 있으며 감별 작업을 잘한 관리에게는 상을 주어 감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자를 교환할 시기가 되면 內外兩場을 설치하여 관리들이 회자를 감정하였는데 이를 보면 남송 정부는 회자의 감별을 위해 많은 인력과 재력을 투자했음을 알 수가 있고 당시에 회자의 위조가 심각하였음 또한 알 수가 있다.

이상으로 남송시기 위조지폐에 대한 남송 조정의 대응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형율과 관리의 감독관리, 공장에 대한 처우개선, 지폐의 정밀한 발행 등이 대표적이었다. 이는 곧, 남송 시기에 위조지폐가 매우 성행하였음을 알 수가 있는 근거들이다.

V. 맺음말

중국 역사상 송대에 지폐가 처음 등장하게 된 원인은 송대의 상품경제가 발달하였고 이 과정에서 화폐의 필요성이 강조 되면서 금속 화폐만으로는 당시의 시장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로 인해 최초의 지폐인 교자를 발행하였다. 교자를 발행하면서 위조지폐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역사에서 지폐가 등장하기 이전의 왕조에서는 금속화폐를 사용하였고 금속화폐는 위조를 하는데 비교적 많은 자본이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34) 『宋史』 卷181 『食貨志三·會子』.

35) 『蒙齋集』 卷7 『論會子札子』.

36) 『文獻通考』 卷9 『錢幣考二·會子』.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 지폐의 위조가 성행하였다.

북송시기에는 교자를 사용하였고 남송시기에는 여러 종류의 지폐가 발행 유통 되었다. 당연히 남송이 북송보다 위조지폐가 더욱 성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위조지폐가 시장에서 많이 유통 된다는 것은 정부로서도 큰 부담인 동시에 손해였다. 송대의 지폐는 기본적으로 界를 정해 만기가 되면 신·구전을 교환하는 방식인데 교환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구전을 신전과 교환을 하게 되면 정부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송대의 위조지폐 방법은 인쇄판을 위조, 界와 액면가를 위조, 會底를 관리로부터 사들여 위조하는 등의 방법이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지폐를 위조하는 것은 鈔法상의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고 신·구전 교환의 불편함 그리고 지폐를 단순하게 발행하였기 때문에 위조지폐가 성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송 정부에서도 위조지폐를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위조법을 제정하여 형률에 근거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 하였으나 지폐의 위조가 근절 되지 않자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게 법을 시행하였다. 또한 지폐를 제작 기술을 향상 시켜 이전보다 정밀하게 발행 하였고, 지폐의 발행을 담당하는 관리나 공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 하였으며 이들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처우를 개선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로도 지폐의 위조를 막을 수는 없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지폐 발행에 관한 초기의 초법이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 문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界의 규착이나 발행량에 대한 규정이 지켜 지지 않았다. 남송 端平年間에 회사의 발행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界도 3년 1계에서 6년, 9년으로 증가하는데 이 과정에서 신·구전이 함께 유통되었고 발행량이 너무 많아 큰 혼란을 야기 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남송시기의 위조지폐 성행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다. 지폐의 발행과 유통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신중한 자세를 취했어야 하지만 재정상의 문제로 인해 지폐를 남발하고 가장 중요한 관리 감독에 소홀 했던 것이다. 물론 남송 정부가 지폐를 발행만 하고 유통에 대하여 수수방관한 것은 아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을 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지폐의 남발이 이미 정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초과 하였던 것이다. 이로 인한 문제는 정부뿐만이 아니고 민간에도 큰 악영향을 주었다. 민간에서 위조된 지폐를 판별하지 못하고 사용하다 換界 때 신폐와 교환하는 과정에서 관리에게 발각되어 벌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 남송시기 위조지폐 문제는 官·民 모두에게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였지만 적은 자본으로 큰 이익을 취할 수 있어 남송이 멸망 할 때까지 위조지폐는 근절되지 않았다.

송대 최저생계비 연구

조복현(경희대)

目次

1. 서문
2. 식료품비
3. 의복 소비와 지출
4. 주거비용
5. 송대의 최저 생계비

1. 서문

사전적인 의미로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한다.¹⁾ 하지만 천여 년 전의 세계를 보면 유럽에서는 과거 로마에서 데나리우스와 아스를 기본 단위로 하는 은화와 청동주화를 사용하였던 이후에 중세의 오랜 기간 동안 금화와 은화만 사용하고 액면 가격이 낮은 화폐가 주조되지 않음으로서 상류층이나 부유한 상인 이외에는 화폐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로마적인 전통이 남아 있던 비잔틴제국에서는 청동주화가 주조되기는 하였지만 역시 화폐의 사용 범위가 일반인들에게 미치기는 어려웠다고 보기에 최저생계비를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는 달리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진시황 이후로 역대 왕조에서 계속해서 동그란 모양에 네모난 구멍이 있는 액면 가치가 낮은 청동주화를 주조하였고, 인접한 국가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한국과 일본 베트남 등의 국가에서 청동 주화가 주조되기도 하였다. 특히 중국에서는 송대에 이르르면 청동주화가 대량으로 주조되면서 일반 백성들도 화폐를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하지만 과거 송대에는 현재에 한국에서 최저생계비를 산출하는 품목들 가운데 많은 것들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 고찰하고자 하는 최저생계비

1) 현재 한국에서는 정부에서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벌여 주거비·식료품비·광열수도비·교통통신비·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 372개 필수 품목을 뽑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할 경우 모두 얼마가 필요한지를 따져 최저생계비를 산출한다. 그 결과 2011년에 4인 가족 기준 최저생계비는 143만 9,413원이었고, 2012년에는 149만 5,550원으로 책정되었다.

란 단지 음식을 먹고 의복을 착용하는 등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송대에는 인구가 비교적 빠르게 증가하여 송 태종(太宗) 태평흥국(太平興國) 원년(976년)에 전체 호구 수는 686만 호였는데 영종 치평(治平) 원년(1064년)에는 1291만 호로 증가하여 88%가 증가하였다. 인구 증가와 함께 경작지의 면적도 증가하고, 농기구를 개량하고, 수리시설도 정비하여 농업생산량이 증가하게 되었다. 수공업방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어서 많은 수공업자들이 농업생산에서 벗어나 전문적으로 수공업제품을 생산하였는데 이 시기에 발달한 대표적인 수공업 분야는 광업과 제련업, 방직업, 도자기 제조업, 제지업, 제염업 등이 있다.

송왕조 또한 생산을 독려하고,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역대왕조에서 전통적으로 시행하던 중농역상 정책도 일부 수정하였는데 이는 송대에 상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송대에 상세 수입은 토지세보다 많아져서 국가 재정수입의 중요한 원천이 되었다.

그렇다면 송대의 사람들의 구체적인 생활상은 어떠하였을까? 대체적으로 송대는 농업 경제를 위주로 하는 남경여직의 경제체제라고 표현하지만 실제로 송대인들의 생활자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와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송대의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한 가정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하여 서술해 보고자 한다.

2. 식료품비

식료품비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품목의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19세기 중반에 독일의 통계학자인 엥겔에 의하여 총가계의 지출액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엥겔지수라고 한다. 그리고 저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고소득 가계일수록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는데 이를 엥겔의 법칙이라고 한다.²⁾

식료품은 최저생계비를 구성하는 품목 가운데 하나이고, 미곡은 역시 여러 식료품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송대 사회는 여전히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이기에 농민은 농사를 지어서 자신과 가족이 먹을 양식을 제외하고 잉여생산물을 판매하여 기타 생활비를 충당하여야 했고, 토지에서 이탈하여 상품성 양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도시 거

2) 엥겔지수가 0.5 이상이면 후진국, 0.3~0.5면 개발도상국, 0.3 이하이면 선진국이라고 한다. 즉 전체 생활비 가운데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후진국이라는 의미이다. 한국은 2012년에 소득하위 20%인 1분위의 엥겔지수는 20.79%이고, 상위 20%의 5분위의 엥겔지수는 11.59%인 것으로 밝혀졌다.

주자들에게는 미곡 가격이 소비 생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생활비를 미곡으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양식의 소비라는 것이 개인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하루에 섭취하는 미곡의 양이 매우 많고 그 차이도 매우 크다. 중국학자 정민생은 송대의 문헌 기록들을 통하여 1인당 양식 소비량이 하루에 1승에서부터 3승까지 매우 다양하다고 하였는데 아무리 많은 쌀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3승을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는 곧 식료품비 혹은 더 나아가 생활비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하루에 1승을 소비한다고 하더라도 송대의 한 되는 592g으로 현재 한국인의 1인당 미곡 소비량이 200g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적은 양이 아니다. 만일 2승 혹은 3승이라고 하면 매일 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소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와 같이 기록한 이유는 첫째 과거에는 달리 영양분을 섭취할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미곡의 소비량을 현대인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았고, 둘째로 많은 기록들이 쌀이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이는 “음식을 먹는데” 혹은 “먹고 사는데”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부식이나 연료비까지 포함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면 송대의 한 가정에서 하루에 어느 정도의 양식을 소비하였을까? 남송 후기에 嚴州에 사는 方逢辰의 시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부부, 아들과 며느리와 손자, 남자 종과 여자 종, 모두 합해서 아홉 식구인데 한 사람이 하루에 두 되씩을 먹고, 차와 소금과 간장과 야채 및 뽕감 등으로 모두 합해서 하루에 쌀 2~3말을 소비하는데 거기다 10중 7·8은 관청에다 납부한다”³⁾고 하였다.

4세가 함께 생활하는 이 가정에는 2명의 종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중등 혹은 그 이상의 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인과 어린 아이를 합해서 9명이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사람이 2승의 미곡을 소비하고, 기타 연료와 부식과 조미료 등을 포함한 하루 생활비가 양식으로 2~3말이라고 하였다. 미곡과는 달리 부식을 포함한 기타 생활비는 일정하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게 때문에 그 편차가 큰 편이지만 대체적으로 하루 생활비 2~3말 가운데 아홉 식구가 평균 9되를 주식으로 먹고 남는 11~21되의 미곡이 부식을 포함한 생활비로 보아야 할 것이다.

송대의 문헌에는 당시 1인당 하루 미곡 소비량이 다양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많은 학자들은 하루에 1되에서 1되 반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일부의 학자들은 두 되 정도의 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는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 구입비를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측면에서 송대에 빈민 구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송대에는 대외적으로

3) 方逢辰, 『蛟峰文集』 卷6 『田父吟』, “父母夫妻子婦孫, 一奴一婢成九口. 一口日啖米二升, 茗齏醢醬菜與薪. 共來日費二三斗, 尚有輸官七八分.”

거란족의 요나라나 서하와 대치하는 상황에서 민란이 자주 발생하였고, 송정부에서는 이러한 빈민을 방치할 경우에 국가의 안전이 위태롭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서 군인들을 징발하여 치안을 유지하거나 비교적 강력한 빈민구제 정책을 시행하였고 이는 최저 생활비를 이해하기에 좋은 자료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종 희녕2년(1069)에 개봉에 큰 눈이 내려 빈곤한 백성들이 일어 죽게 되자 신종은 조서를 내려 “등록된 빈민들 가운데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루에 20전을 주라고 명령하였다.”⁴⁾ 哲宗 元祐2년(1087)에 範祖禹가 개봉에 있을 때 상소문을 올려서 “굶주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에 10전의 비용으로 되나 흙(10분의 1되)의 쌀을 얻을 수 있다면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⁵⁾ 전자의 20문은 식품의 구입을 포함한 생활비로 보이고, 후자의 10문은 기타의 생활필수품을 제외한 양식 구입비만을 의미하는 것이다. 북송 신종과 철종 시기는 물가가 비교적 안정된 시기이고, 쌀이 한 말에 70문에서 100문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양식 구입비용으로만 10문 혹은 생필품 구입비용을 포함한 20문이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송대에는 전국적으로 居養院이라는 빈민구제시설을 설치하였다. 거양원은 북송 중기 이후로 기근이 빈발하여 많은 유민들이 발생하여 때에 따라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기까지 하면서 각지에서 자주 민란이 발생하자 철종 元符元年(1098)에 淮東路에 처음 설치하여 鰥寡孤獨 가운데 생존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양식과 돈을 지급하고, 병이 있는 자는 의약품을 지급한 이래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급한 양식과 현금을 통해서 당시의 최저 생계비를 유추할 수 있는데, 徽宗 宣和2年(1120)에 조서를 내려 빈민들을 거양원에 안치하게 하고 매일 쌀 한 되와 “현금 10文省을 지급하고 11월부터 정월까지는 쌀값 구입비용으로 5문성을 주는데 어린 아이에게는 절반을 주도록 하였다.”⁶⁾ 또 다른 예로 항주에 설치된 거양원에서는 이보다 많은 “사람마다 매일 쌀 두 되와 동전 20문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⁷⁾ 송정부에서 거양원에 수용된 빈민들에게 지급했던 매일 1인당 한 되 혹은 2되의 쌀은 양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10문과 겨울철의 난방비 혹은 20문의 현금은 양식 구입을 제외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가능한 금액으로서 당시의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된다.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의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물자를 지급한 또 다른 예

4) 『司馬光日記校注』卷1『熙寧二年閏十一月丁巳』, “令籍貧民不能自存者, 日給錢二十.”

5) 『范太史集』卷14『上哲宗乞不限人數收養貧民』, “饑窮之人, 日得十錢之費, 升合之米, 則不死矣.”

6) 『宋史』卷178『食貨志上六』, “應居養人日給粳米或粟米一升, 錢十文省, 十一月至正月加柴炭, 五文省, 小兒減半.”

7) 楊時, 『龜山集』卷12『餘杭所聞』, “人給米二升, 錢二十.”

를 보면 남송 고종 紹興13年(1143)에 조정에서 밥을 먹을 수 없는 죄수들을 위해서 관청에서 현금을 지급하는데 “臨安府는 하루에 20문, 다른 지역은 15문을 지급하도록 하였다.”⁸⁾ 남송이 건립되고 사직의 명맥을 유지하기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소흥화의가 성립되고 점차적으로 안정을 되찾아가는 시기로서 지방의 15문과 수도 입안부에서의 20문은 굶어죽지 않을 정도의 최소한의 양식만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이다.

또 다른 예로 남송 중기인 孝宗 때에 淮南 지방에 재난이 발생하자 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를 통하여 이재민들을 구휼하는데 “남자 한 명에게 하루에 쌀 다섯 되와 150문을 주면 한 사람이 하루에 2되를 먹고 50문의 돈을 쓴다고 하면 그 나머지는 열악하기는 하지만 2·3명이 배부를 수가 있으니 그들이 어찌하여 근심하면서 따르지 않겠는가? 한 집에서 두 사람이 부역하면 곧 6·7명의 가족이 굶어죽는 일을 면하게 된다.”⁹⁾고 하거나 이보다 조금 뒤인 寧宗 때에 이와 비슷한 재난이 발생하자 “조서를 내려 한 사람에 매일 쌀 두 되와 20문을 지급하라”¹⁰⁾는 기록을 보면 일반적인 청년 남자가 하루에 쌀 두 되를 먹고 20문에서 50문의 돈이 있으면 하루를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송 멸망 직전인 理宗 寶祐6年(1258)에 建康府에 實濟局을 설립하여 유량자들을 수용하고 한 사람에게 매일 쌀 여섯 말과 소금과 야채 구입비용 15관과 땀감 비용을 5관을 지급하였다. 여기서 지급한 여섯 말의 쌀은 30일로 나누면 하루에 두 되이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모두 지폐인데 이는 당시에 17계 회자로서 1관의 가치는 동전으로 56문에 불과하였다.¹¹⁾ 따라서 이 지폐의 가치를 하루로 환산하면 소금과 야채 등 부식 구입비용은 하루에 28문과 취사용 연료 구입비용은 9문 정도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 사람이 먹는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 되에서 두 되 정도의 쌀 이외에 부식과 취사용 연료 구입비용으로 북송대에는 10문에서 20문, 남송대에는 20문에서 50문 정도의 동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도시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고 상품성 양식을 구입해서 생활해야 한다면 쌀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북송 초기와 남송 말기는 300년 이상의 차이가 있고, 그 사이에 물가는 매우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상품성 양식을 구입하는 비용은 시기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래에서는 도시 거주민들의 양식 구입비용에 대해서 서술해 보도록 하겠다.

도시에서 거주하며 생활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았다. 예를 들면 북송대의 수도인 개봉

8) 『宋史』 卷200 『刑法志二』, “臨安日支錢二十文, 外路十五文.”

9) 『江湖長翁集』 卷24 『與奉使袁大著論救荒書』, “一夫日與米五升, 錢百五十. 人食二升, 用錢五十, 其餘劣可飽二三口, 彼何患不樂從. 一家二人從役, 則六七口免塗殍矣.”

10) 『梨齋集』 卷14 『秘閣修撰黃公行狀』, “朝旨人日給米二升, 錢二十.”

11) 『景定建康志』 卷23 『廬院』, 『開慶四明續志』 卷7 『樓店務地』

은 북송 초기에 178,632호, 북송 중기에 235,599호, 북송 말기에 261,117호로¹²⁾ 중국학자 周寶珠는 기존의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개봉성 안에 13만 7천호에 1호당 평균 인구를 7명으로 계산하여 대략 100만여 명이 있고 여기에 황실과 군인 및 승려와 도사 등 여러 계층을 합산하여 최고 150만 명 정도에 최소한 100만 명은 초과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³⁾

이러한 도시 거주민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토지에서 이탈하여 황실귀족이나 관료들에게 고용되어 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적어도 10만 명 이상의 禁軍들이 개봉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또한 개봉에는 2만 명 이상의 종교인과 다수의 기생이나 빈민계층이 사회의 하층부를 형성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이러한 다양한 계층들은 많은 수의 물품을 시장의 공급에 의지하여 생활하면서 전국시대 이후로 완만하게 발전하고 있는 화폐경제와 상품경제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었다.

남송의 수도인 杭州에서 다른 방법으로 미곡을 공급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상인들이 공급하는 양식에 의존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략 16~17만 명에 이르고,¹⁴⁾ 이들이 하루에 한 사람이 두 되를 소비하면 하루에 3200석에서 3400석이 필요하고 1년이면 대략 120만석의 쌀이 필요하였다. 朱熹도 “京師에서 하루에 14.5만 석의 미곡이 필요하다고 하여”¹⁵⁾ 연간 174만 석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록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항주 한 곳에서만 연간 100만 석 이상의 미곡이 필요하였다.

이외에 많은 중소 도시에서도 성 안에 거주하는 많은 백성들이 상인들에 의해서 공급되는 상품성 양식에 의존해서 생활하였다. 예를 들면 建康府에서는 “하루에 쌀 2천여 석을 먹는데 백성들이 대개 비축해 놓은 것이 없어서 전부 상인들의 판매에 의지한다. 상인의 배가 희소하면 가격이 곧 상승한다. 가격을 억제하면 미곡이 오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면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¹⁶⁾고 하였는데 만일 교통이 불편하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공급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상인들의 농단을 부리는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만일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면 가격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게 된다.

송대의 대체적인 쌀값의 변동 상황을 보면, 먼저 송초부터 眞宗代까지 대략 60여 년 동안은 물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여 쌀 한 말에 30문 정도였는데,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뭄과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나, 민란이나 전란과 같은 커다란 사건이 있을 경우에는 그

12) 梁方仲, 『中國歷代戶口·田地·田賦統計』, 1993, 上海人民出版社, 表35, 37, 38.

13) 周寶珠, 『宋代東京研究』, 1999, 河南大學出版社, 323~324쪽.

14) 『癸辛雜識續集』 卷上 『杭城食米』, “杭城除有米之家, 仰糴而食, 凡十六七萬人, 人以二升計之, 非三四千石不可以支一日之用.”

15) 『朱熹集』 卷94 『敷文閣直學士李公墓誌銘』, “京師月須米十四萬五千石.”

16) 『景定建康志』 卷23 『諸倉·平止倉』, “日食米二千餘石 民無蓋藏 全仰客販 客舟稀少 價即踴貴 抑之則米不來 聽之則民難食.”

지역의 쌀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仁宗代부터 英宗代까지는 전쟁과 자연재해 등으로 미가가 급등하는데 초기에는 저렴하면 한 말에 10문에서 30문정도일 경우도 있고, 급등하면 60문에서 70문 정도인데 1040년대 이후로는 100문을 초과하는 경우도 많았다. 神宗代부터 哲宗代까지는 여전히 재해나 군사적인 문제가 상존하여 쌀값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어서 대략 70문에서 100문 사이에 있었다. 북송 말기인 徽宗代에는 통치계급의 부패와 화폐가치의 하락 및 전쟁 등의 원인으로 미가가 급등하는데 가격은 평균적으로 한 말에 200~300문에 정도이고 급등하면 수천문이 이르기도 하였다.

남송이 건국되고 高宗 初期에는 전쟁의 영향이 남아 있어서 흉년이라고 해도 쌀값이 한 말에 300에서 500문, 흉작이 되면 500에서 1관 정도이고, 2,000관 이상인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정국이 점차로 안정되고 사회경제적 상황도 안정되면서 孝宗代까지 대략 50년 동안은 흉년이나 기근도 다른 시기에 비해 별로 없이 200문 정도에서 안정을 이루었다. 이후로 쌀값은 천천히 상승하여 光宗 이후에는 한 말에 300문에서 400문 정도가 일상적인 가격이었다. 물론 남송 멸망 직전에는 거의 모든 왕조가 그러하듯이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물가가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였고 쌀값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쌀값의 변동 추이를 보면 송대에 도시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의 양식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북송 신종대에 개봉에서 5명의 가족이 생활하면 한 사람이 2되 정도의 쌀을 소비하면 하루에 한 말이 필요한데 한 말의 가격은 70문에서 100문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2관 100문에서 3관, 1년이면 25.2관에서 36관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비슷하게 남송 효종대에 항주에서 5인 가족이 같은 양의 양식을 소비하며 생활한다면 당시에는 한 말의 가격이 대략 200문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6관, 1년이면 72관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3. 의복 소비와 지출

의복을 제작하는 재료로서의 옷감은 소비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다. 현대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의복은 수백만 원짜리 가족의류부터 수천 원짜리 저렴한 의복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큰 차이가 있듯이 의복은 그 품질과 가격에 대단히 큰 차이가 있다. 송대에 황실의 귀족이나 고관 및 대지주와 대상인들은 고급 옷감으로 만든 의복을 입었던 반면에 농민과 사졸들은 麻衣나 褐布와 같이 품질이 좋지 않고 가격이 저렴한 옷만을 입을 수 있었으며, 어떤 농민은 자신이 스스로 제작한 것을 사용할 뿐 품질이 매우 조악한 물품마저 구매할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다. 따라서 각 계층의 사람들은 각자의 경제력에 따라서

다양한 옷감을 선택하여 입는 문제를 해결하였다.

송대에는 목화가 오대시기에 이미 현재의 해남도에서 재배되다가 송대에 이르면 재배 지역이 점차 북쪽으로 확대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남방의 일부 지역에서만 재배되었다. 그 외에 布가 있는데 가격이 명주의 절반에서 3분의 1정도로서 빈곤한 계층에서 애용하였다.

송대의 의복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품목은 絹이었다. 명주는 원래 糸와 帛의 합성어인데 帛은 ‘세밀하고 작은’ 혹은 ‘작고 정교한’이라는 의미로 가지고 있고, 따라서 絹은 ‘작고 정교한 사직품’이라는 의미로서 광택을 띄면서 촉감이 매우 부드러운 특성이 있다. 명주는 의복을 제작하는 중요한 재료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과거에는 화폐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하였듯이 화폐의 보조기능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중국의 위진남북조시대와 같은 혼란기에는 화폐의 교환 가치가 크게 하락하고 화폐제도가 문란해졌을 때, 명주는 동전보다 더욱 큰 가치의 척도가 되었다.

비록 송대 이후로 명주는 더 이상 교환의 매개체로서 작용하지 못했지만 당대부터 이미 명주는 관리들이 경제 범죄를 범했을 때 화폐의 가치가 일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액수를 명주로 계산하여 양형의 표준으로 삼았다. 송대에 때로는 동전의 액수로 부정부패의 액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以絹定罪” 혹은 “計贓絹價”의 방법을 사용하여 형량을 판결할 때 주로 명주로 몇 필인가 환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하면 명주는 의복을 제작하는 재료로서 뿐만 아니라 당시의 물가를 나타내는 표준의 하나이기도 한 중요한 상품이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헐벗지 않고 옷을 입기 위해서는 얼마의 돈을 필요로 하는가? 이 문제는 양식보다 더욱 복잡하다. 양식은 부유하건 빈곤하건 대체적으로 쌀이나 국수와 같이 양식을 소비하는 점은 같지만 의복의 경우 송대에는 특히 사치 풍조가 강하여 부유한 계층은 대부분이 명주로 옷을 만들어 입지 않고 綾이나 羅 혹은 綺와 같은 고급 소재로 만든 의복을 착용하였고, 빈곤한 계층은 명주를 구입할 경제력도 없어서 마의나 갈포로 대신하였기 때문이다. 중간 정도의 명주를 가지고 1인당 옷감의 소비량을 보면, 명주 한 필은 4丈이고 1장은 10尺으로서 한 필은 13.3m인데, 송대의 많은 문헌 기록들이 소박하게 생활할 때 한 사람이 1필의 옷감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중국학자 漆俠는 1인당 겨울옷 한 벌과 여름옷 두 벌을 만들고, 겨울옷은 5년에 두 번 여름옷은 매년 바꾼다고 한다면 5명의 가족이 1년에 평균 3~4필의 마가 필요하다고 하여¹⁷⁾ 1인당 최소한의 옷감 소비량은 1년에 한 필 이내로 보았고, 한국에서는 전통 한복의 경우에 성인 남성의 저고리는 14척, 바지는 15~16척이 필요하고, 여성 7폭치마는

17) 漆俠, 『宋代經濟史』, 上海人民出版社, 1987, 378쪽.

17.5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여 남녀 공통으로 바지와 저고리 혹은 치마를 만들 경우 한 필에서 조금 남는다고 하였다.¹⁸⁾ 양자 모두 기본적으로 옷을 한 벌 만들 경우에 한 필이 조금 안 되는 양으로 명주 한 필이면 기본적으로 의복을 갖추어 입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명주 한필의 가격은 어느 정도였을까? 명주 가격 역시 쌀값과 마찬가지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대단히 큰 차이를 보이지만 단순화시켜서 대체적인 가격을 보면 북송 초기에 한 필의 가격이 대체적으로 1관 정도인데 중간에 약간의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면서 북송 말기에 이르면 한 필에 2관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고 여전히 1관 정도를 유지한 지방도 있어서 가격 상승이 대단히 완만하다. 그런데 이것은 관부에서 규정한 가격이고, 실제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만을 가지고 추이를 살펴보면, 약간의 기복은 있지만 분명하게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북송 말기에 이르면 북송 초기보다 2배 정도 상승하였다.

남송이 건국된 직후에 명주의 일반적인 가격은 한 필에 2관 정도였는데 금(여진)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국가의 재정이 극도로 곤란해지고 가렴주구가 심해지면서 심지어는 한 필에 8관에서 10관에 이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고종 소흥9년(1139)에 금국과 “紹興和議”가 체결되면서 명주 가격은 천천히 하락하여 효종(1162~1189) 통치 후반기에 이르면 3관에서 5관에 이르렀고, 그 이후에는 대체적으로 이 가격을 유지하였다.

한편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송대에 경제 범위를 범했을 때 그 액수를 명주로 계산하여 형량을 정한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돈의 가치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항상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을 삼기 위해서 부정하게 획득한 명주의 양으로 죄의 경중을 가린 것이다. 이때 정부에서는 물가 상승에 따라 조정한 명주의 가격을 조정한 액수와 시기를 보면 당시의 명주 가격이 잘 반영되어 있다. 그 액수를 보면 북송 초기에 한 필에 1관에서 북송 말기에 1500문으로 조정하였고,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건국된 1127년에 2관으로 조정한 후 6년 뒤에는 3관으로 조정하여 당시의 물가상승률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효종대인 1170년에 4관으로 조정하였다.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남송대에는 지폐가 많이 발행되었는데 초기에는 비교적 잘 운용되었지만 후기에는 지나치게 남발되었기 때문에 남송 후기에는 지폐의 가치가 급격하게 하락하였다. 그런데 이때에 많은 물품의 가격이 지폐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동전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지 않으면 남송 후기에는 인플레이션이 대단히 심한 사회로 인식될 수 있다. 물론 물가의 상승 폭이 크기는 했지만 지폐로 표기된 금액을 동전으로 환산해 보면서 기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

18) 朴宣映, 『傳統韓服構成學』, 修學社, 2001年, 102, 117, 208쪽.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송대의 명주 가격은 북송 초기에 1관에서 남송 후기에 4관 정도였다. 그렇다면 송대의 사람들이 의복을 착용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쌀값과 비교하여 산출할 수 있다. 만일 1가구 5인 가족이 한 사람당 1년에 한 필의 명주를 소비한다고 하면 북송대에는 대체적으로 5관에서 10관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였고, 남송대에는 20관에서 40관의 비용이 필요하였다.

하지만 이는 명주로 계산하였을 때의 비용이고, 부유한 계층은 이보다 고급 소재의 옷감을 사용하여 더욱 많은 비용이 필요하였고, 빈곤한 계층은 이보다 저렴한 소재를 사용하여 위의 가격보다는 적은 비용을 소비하였을 것이다.

4. 주거비용

과거에 중국에서 빈곤한 사람들이 기근을 만나서 죽을 때 가장 많은 원인은 굶주림과 추위이다. 따라서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옷을 입는 것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양식과 옷감은 지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하고 만일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가격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소비계층을 생활하기 어렵게 하였다.

하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은 한번 건축하면 장기간 별도의 비용이 필요 없이 생활할 수 있다. 특히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스스로 건축한 농촌의 주택은 건축 자체에도 많은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 따라서 양식과 옷감의 생산과 소비 등에 관한 문제는 많이 연구되었던 점에 반하여 주택의 가격 혹은 주거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하지만 많은 재산을 보유하지 못한 도시 거주민들에게 주택 문제는 과거에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우리가 흔히 송대를 위진남북조시대나 당대의 문벌귀족사회와 대비하여 서민사회 혹은 사대부 문화라고 한다. 송대 이전에는 士인과 庶인으로 나뉘어 사인은 官人으로서 대대로 관직에 나가고 봉록을 받으면서 그 신분을 유지하였다. 물론 송대에도 조부나 부친에 의지해서 蔭補의 방법으로 관직에 나갈 수는 있지만, 이렇게 관직에 나간 사람은 다시 음보를 할 수 있는 고위 관직으로 승급할 수 없도록 제도화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없다면 아무리 높은 관직에 나간 사람도 손자에 이르면 다시 서민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빈곤한 서민의 자식으로 태어나 어려서 많은 고생을 했어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과거에 합격하여 당당하게 관직에 나아간 사람들이 송대에는 대단히 많다.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정계에 진출하여 송대의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정상적인 경우 3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과거 합격자들 가운데 만일 부유한 가

문 출신이라고 한다면 본래 지방에 거주하던 사람이라도 수도인 개봉이나 항주에 집 한 채 정도 마련하는 것은 가능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송대에 관원들에 대한 봉록제도를 살펴보면 고급관원에게는 매우 많지만 하급관원에게는 매우 적어서 미관말직의 관원은 근근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라는 上厚下薄의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한미한 가문 출신으로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이 만일 수도 개봉이나 항주에 발령받아서 근무하게 된다면 저렴해도 수백 관에서 수천 관, 호화주택의 경우 수십만 관에 달하는 집을 구입할 경제력이 없다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그렇다면 당장 타인의 주택을 임대해서 생활해야 하는데 송대의 개봉이나 항주와 같은 대도시에는 상공업관련 종사자나 상공업 보조기구 종사자 혹은 파산 농민 등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두텁게 세입자 계층을 형성하여 주택임대료도 무시할 수 없는 가격이었다. 송대에 많은 젊은 과거 합격자들이 과거 합격 초기에 중앙의 관직을 기피하고 지방 근무를 희망했던 것은 이러한 경제적인 이유도 존재했던 것이다. 특히 송대에는 지방에서의 임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관에게는 職田이라는 토지를 주고 이 토지를 소작인에게 경작하게 하고 획득한 소작료를 지방관의 수입으로 삼게 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송대에 주택의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일까? 주택은 가격은 양식이나 피복류와는 달리 그 가격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다만 부유한 계층은 기와집에서 살고, 빈곤한 사람은 장막과 같은 허술한 집을 짓고 생활하는데, 동일한 기와집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건축자재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송대 주택 가격의 동향을 보면, 북송대의 일반적인 물가는 비교적 저렴하다가 점차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데 주택의 가격은 북송 초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이전 오대 십국 시대의 혼란기를 마치고 사람들이 새롭게 도시에 많이 정착하면서 건축자재의 가격이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도시의 건설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면서 그 가격도 점차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휘종대에 이르면 호화주택 건축이 증가하고 주택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북송이 멸망하고 남송이 건국될 무렵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착지를 떠나 유랑하면서 양식과 피복류 가격은 급상승하는데 반해 주택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하였다. 특히 남송 건국 초기에는 전란의 와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과 토지를 상실하여 전국적으로 비교적 저가의 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점은 남쪽으로 이주해 온 귀족들 까지도 예외는 아니어서 북송말기처럼 호화로운 주택에 거주하는 것은 힘들었다. 그러나 남송 중기 이후로는 朱熹가 향촌에서 주택을 건축할 때 100관을 소비했다거나 賈似道の 집은 건축비가 100만 관에 이르렀다는 기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저가 주택의 건축비용은 서민들의 주택 가격을 잘 반영하는데 북송대에는 방 한 칸의 건축 비용이 대략 3관 정도이고 가장 비싸도 5~7관을 초과하지 않았다. 남송대에 방 한 칸의 건축비는 많은 문헌 기록들이 10관에서 15관의 현금과 약간의 미곡이 지출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호화주택과 서민용 주택의 중간 정도의 성격을 가지는 건축물의 가격은 학교나 서원의 건축 비용을 통해서 일면을 고찰할 수 있다. 북송대에 서원이나 학교의 건축 비용은 10관에서 25관 정도가 소모되었고, 남송대에는 이보다 대략적으로 2~3배 정도 상승하였다. 100만 관 이상의 호화주택을 건설한 관한 기록은 송대 전체에서 네 차례 보이는데 모두 경제적으로는 호경기라는 공통점이 있다.

송대에는 양식이나 의복류와는 달리 통치권의 차원에서 주택문제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빈곤한 계층은 대단히 열악하기는 하지만 비바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하급의 주택을 건설하여 생활하면 되었고, 부유한 계층은 그들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때로는 호화로운 주택에서 생활하였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임대해서 축재하는 일도 있기는 하지만 국가에서는 법령을 통해서 이를 규제하였다.

5. 송대의 최저 생계비

송대의 여러 계층의 가정경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정이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입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중국학자 칠협(漆俠)은 북송시기에 한 농촌에서 1가구 5인 가족이 성인 3명과 미성년 2명으로 구성되어 소와 농기구를 보유하고 재생산을 하면서 지출하는 내역에 대해서 분석한 바가 있다. 그 중요한 내용을 보면

① 양식은 성인이 하루에 두 되, 미성년은 한 되로 계산하면 하루 8되, 한 달이면 2.4석, 1년이면 총 28.8석의 양식이 필요하다.

② 송대의 소금은 한 말이 다섯 근으로 일가족이 조리하는데 연간 세 말, 양잠용 소금이 한 말 등 총 네 말 정도가 필요한데 이를 양식으로 환산하면 1.2석 정도의 쌀이 필요하다.

③ 의복은 만일 재료를 구입해서 만들어 입는다고 가정하고, 1인당 여름옷 두 벌, 겨울옷 한 벌을 가지고 입는다고 하고, 겨울옷은 5년에 한 번, 여름옷은 매년 바꾸어 입는다면 일가족이 1년 평균 3~4필의 마가 필요하고, 이는 3~4석의 양식과 같다.

④ 소가 땅을 깊이 갈지 않으면 수확량이 매우 감소하기 때문에 송대에는 소가 매우 중요한 재산의 한 항목이었다. 그런데 이 소를 한 마리 사육하려면 1년에 적어도 곡식으로 환산하여 3~4석의 양식이 필요하다.¹⁹⁾

만일 이와 같다면 송대의 농민들은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36석에서 38석의 양식은 수확해야만 했다. 그러면 이 정도의 양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가? 토지의 면적을 이야기할 때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토지의 면적을 나타낼 때 畝라는 단위를 사용한다. 1무의 면적은 각 시대별로 다른데 송대의 1무는 567m²로서 명대의 580m²와²⁰⁾ 큰 차이가 없지만 현재의 667m²와는 약 100m²의 차이가 있다.

중국에서 농업기술은 시대에 따라서 개진되었다고는 하지만 송대에 이르기까지는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현대와 비교하여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니다. 송대에 1무당 생산량은 최고 5~6석에 이르는 곳도 있고,²¹⁾ 동남지방의 비옥한 지역에서는 2~3석이 되는 곳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석 정도이고 척박한 지역에서는 1석 혹은 그 이하인 곳도 있다.

그렇다면 송대에 농촌에서는 1가구 다섯 식구가 40무 정도의 토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여 1무당 1석의 양식을 수확하거나, 1무당 생산량이 2석 정도가 되는 비옥한 토지라면 20무 정도를 보유하면서 평년작 이상을 수확하면 굶거나 헐벗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다. 만일 위와 같이 적당한 양의 토지를 보유하지 못한 경우라면 주인과 소작인이 대등하게 분배하는 對分制라는 전제하에 두 배의 토지를 경작해서 절반은 지주에게 소작료를 납부하고 절반의 수확량으로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는데 사용해야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농민들은 농사를 지어 그 수확량을 스스로 소비하고 남은 잉여농산품을 판매하여 가정의 기타 지출에 충당하는데, 도시에서 상품성 양식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사람들은 만일 쌀 한 말의 가격이 100문 정도가 되는 북송 중·후기라고 하면 1석에 1관씩 계산해서 연간 36관에서 38관으로 매월 3관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할 것이고, 쌀 한 말에 200문 정도가 되는 남송 초기라고 하면 72관에서 76관으로 매월 6관 정도가 필요하며, 다시 쌀 한 말에 400문까지 상승하는 남송 후기라면 144관에서 152관으로서 한 달에 12관 정도의 현금을 최저 생계비로 지출해야 했다.

여기에 도시에서는 자신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거주비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지만 자신의 주택을 보유하지 못한 계층도 상당히 많았다. 송대에는 상당히 많은 도시 거주민들이 자신의 주책을 보유하지 못하고 세입자 계층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세입자 계층은 농촌에서의 최저 생계비에 다시 임대료를 더하면 도시에서의 최저 생계비가 산출

19) 漆俠, 『앞 책』 377~378쪽.

20) 斯波義信 著/方鍵·何忠禮 공역, 『宋代江南經濟史研究』, 江蘇人民出版社, 2001年, 145쪽.

21) 『耻堂存稿』 卷5 『寧國府勸農文』, “上田一畝收五六石 故諺曰蘇湖熟天下足.”

될 것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송대의 사람들이 도시나 농촌에서 1가구 다섯 식구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쌀 3석이나 그에 해당하는 현금이 있어야 했다. 이는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액수이고, 매월 수입이 여기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먹는 문제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극빈층이 되는 것이다.

蒙元제국기 다루가치 任用과 轉任

조 원(한양대)

目次

1. 머리말
2. 蒙元시기 다루가치 入仕 경로의 다양화
3. 入仕유형별 다루가치 遷轉 양상
4. 맺음말

1. 머리말

징기스칸의 유산을 계승한 후계자들은 유목적인 제도를 기반으로 정복지역의 통치 체제를 차용하여 제국의 행정 체제를 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세기 이상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를 구가했다. 세계제국으로서 몽골제국이 존립할 수 있었던 것은 유라시아 대륙 전역을 망라하는 제국적 규모의 통치 체제가 구축되었기 때문이며, 무엇보다 체제를 운용하고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던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투입되었기에 가능했다. 그 중에서 다루가치들은 유라시아의 각 정복 지역에 파견되어 상이한 문화와 사회 경제적 배경을 지닌 지역들을 다스렸던 이들로서 몽골의 제국통치 체제가 존속하는데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자들이다.

몽골제국 초기부터 다루가치들은 대칸을 대신하여 정복지역을 감독하는 監官의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지방통치에 직접 참여하는 管民長官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 다루가치들은 서로 다른 민족의 정복자와 피정복자, 중앙과 지방 사이를 연결하는 매개자였으며 대칸에게는 수족과 같은 존재였다. 몽골제국 초기부터 대칸은 몽골의 정복전쟁에서 탁월한 전공을 세운 자들을 민족을 불문하고 발탁하여 다루가치로 임명했으며, 자손 대대로 직위를 세습하게 함으로써 특권적 지위를 보장했다.

쿠빌라이가 대칸의 지위에 오르면서, 이란, 러시아, 중앙아시아 각 지역에서 몽골 칸들의 울루스 체제가 형성되어갔고, 칸들은 각지에서 통치 질서를 확립해나갔다. 漢地에서 쿠빌라이는 유목적 통치체도의 바탕 위에 중원의 행정 관료체제를 도입하여 중앙집권적인 통치 질서를 마련했다. 지방통치에 있어 대칸의 직접지배가 구체화되면서 다루가치

제도는 관료행정체제와 결합되어 운용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대칸은 정북지역의 지방행정을 감독하면서 지역민들을 치리할 수 있는 다루가치들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했다. 새로운 통치환경에서 요구되었던 다루가치들은 어떠한 자들이었을까? 본고에서는 蒙元시기 다루가치들의 선발경로와 轉任 상황을 분석하여, 원대 다루가치 선발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고 다루가치들의 위상을 규명하고자 한다.

다루가치에 관한 연구는 다루가치가 파견된 官署와 그 職任을 중심으로 다루가치 제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연구¹⁾와 몽골제국 지방행정 제도의 맥락에서 다루가치의 역할과 성격을 규명하고자 한 연구²⁾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 가운데, 札奇斯欽과 Endicott-West가 각각 지면을 할애하여 다루가치 出身과 任命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札奇斯欽은 몽골제국 초기 戰功을 통해 다루가치를 선발하던 전통이 쿠빌라이의 시기 이후 지방행정체제의 정비과정에서 변화되어 갔음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양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³⁾ Endicott-West는 그녀의 연구에서 元代 蔭敍를 통한 다루가치의 선발에 관하여 상세히 논의했다. 아울러 軍功, 케식 등 여타 경로를 통해 다루가치가 선발되었다고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다루가치 선발의 다양한 경로들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⁴⁾ 이외에 다루가치 집단 자체에 주목하여 다루가치의 선발과정 등을 검토함으로써 제국 내에서 그 위상을 밝히는 연구는 전무한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蒙元시기 지방통치체제에 편입되어 몽골 제국통치의 한 축을 담당했던 다루가치 집단에 주목하여 그들이 어떠한 入仕경로를 통해 선발됐고, 任滿후 어떠한 지위에까지 올랐는지를 검토함으로써 蒙元시기 다루가치들의 위상 변화와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 1) 丹羽友三郎, 『達魯花赤に關する一考察』, 『三重法經』 5(1956); 原山仁子, 『元朝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史窗』 29(1971); 札奇斯欽, 『說元史中的達魯花赤』, 『蒙古史論總(上)』(台北: 學海出版社, 1980); 潘修人, 『元代達魯花赤的職掌及爲政述論』, 『內蒙古社會科學』(1993-6); 趙秉崑, 『達魯花赤考述』, 『北方文物』(1995-4).
 - 2) 青山公亮, 『元朝の地方行政機構に關する一考察特に路府・州縣の達魯花赤に就いて』, 『臺北大學文政學部史學科研究年報』 6(1940); 愛宕松男, 『東洋史論文集』第四卷 『元朝史』(東京:三一書房, 1988); 楊培桂, 『元代地方政府』(台北: 浩瀚出版社, 1975); Elizabeth Endicott-West, *Mongolian Rule in Chin: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張金銑, 『元代地方行政制度研究』(河北: 安徽大學出版社, 2001), 37-39; 李治安, 『行省制度研究』, (天津: 南開大學出版社, 2005), pp.371-389; Denise Aigle, "Iran Under Mongol Domination: The effectiveness and failings of a dual administrative system," *Bulletin d'études orientales*, vol. 57 (2006-2007); 原山仁子, 『元朝の達魯花赤について』, 『史窗』 29(1971).
 - 3) 札奇斯欽, 위의 글, pp.594-602.
 - 4) Elizabeth Endicott-West, 위의 책, pp.65-75.

2. 蒙元시기 다루가치 入仕 경로의 다양화

至元 원년(1264) 원정부는 행정 관료의 銓選 전반을 포괄하는 條格을 반포했다.⁵⁾ 이러한 변화 가운데 다루가치 제도는 중원의 지방행정 체제와 결합되어 존속되었으며, 다루가치 관원의 선발과 관리 방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됐다.⁶⁾ 행정 관료 체제가 확립되면서, 管民다루가치의 역할은 지방행정 감독자에서 지방행정의 실질적 참여자로서 구체화되어 갔고, 다루가치에게 문서행정 능력이 요구되기도 했다. 이러한 몽골 통치의 사회적 조건의 변화는 다루가치 선발의 入仕경로에 영향을 주었고, 다루가치 선발방식은 몽골제국 초기 이래로 다루가치 선발의 주요 경로였던 軍功, 세습, 케식으로부터 다양해졌다. 『元史』와 원대 문집들의 다루가치 관련 기사들을 검토한 결과, 다루가치들의 선발 경로는 크게 軍功, 세습, 케식, 蔭敍, 吏員, 進士와 國子生으로 나눌 수 있다. 이 가운데 軍功, 세습, 케식은 몽골제국 전 시기에 나타난 다루가치 선발의 주요 경로였으며, 蔭敍, 吏員, 進士와 國子生은 몽골의 한지 통치가 안정화된 이후에 채택된 入仕 경로였다. 본고에서는 원대 다루가치 入仕 경로를 크게 軍功, 세습, 케식, 蔭敍, 吏員, 進士와 國子生의 여섯 범주로 나누어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蒙元시기 다루가치 임용방식에 관하여 논의하겠다.

1) 軍功

몽골제국 건립에 있어서 군사적인 역량을 중시한 몽골 대칸들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들에게 포상하고, 그에 상응하는 관직을 하사했다. 그 과정에서 功積이 뛰어난 자들이 다루가치에 임명되어 정복지역 감시와 安撫의 책임을 맡았다. 쿠빌라이는 즉위 직후, 아릭부케 세력과 격전을 치루고 한인 세후의 반란에 부딪혔으며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 투입되었던 무장 가운데 軍功을 세운 자들은 민족을 불문하고 다루가치로 임명했다. 이후 南宋 정복전쟁에 참전하여 戰功을 세운 무장들 가운데에서도 상당수가 강남 각 지역 官府의 다루가치직에 임명되었는데, 이들은 무장으로서 관할 지역을 鎮守하며 지역 세력을 감시하는 管軍 다루가치의 성격을 지녔다.⁷⁾ 대표적인 예로 張懋은 승상 바얀을 따라 남

5) 『元史』 卷5 『世祖紀二』p.98, “省并州縣, 定官吏員數, 分品從官職, 給俸祿, 頒公田, 計月日以考殿最”

6) 쿠빌라이 재위 초기, 지방 행정 제도의 정비와 管民다루가치의 지방 행정 체제 편입에 관해서는, 졸고, 『元 前期 達魯花赤의 제도화와 그 위상의 변화』, 『동아시아문화연구』(2012) 참조.

7) 至元16년(1279)년 남송 정복전쟁이 끝날 때까지, 몽골군이 점령한 성에 安撫司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신속히 파견하여 정복지역을 진압하게 하였다. 형세가 안정된 후에 원 조정은 安撫司를 폐지하고 路總管府를 설치하여 강남지역의 民政을 담당하게 했다.

송 정벌 전쟁에 참전하였고 수륙전에서 활약하여 송을 멸망시키는데 큰 공을 세웠다. 승상이 쿠빌라이에게 그의 공을 보고했고 至元 13년(1276) 대칸은 그를 泗州安撫司達魯花赤에 임명하였다.⁸⁾ 남송정벌에서 활약하였던 몽골인 察罕 역시 같은 해 中書省의 명으로 절강성에 소재한 瑞安縣 다루가치에 임명됐고, 정복전쟁에서 編籍지를 이탈한 십여 만 호를 이주시켜 관할했다.⁹⁾ 같은 해 臨安과 楊州를 정복하는데 큰공을 세웠던 킵차크 출신의 完者都는 남송 지역이 평정된 후 入朝하였다. 쿠빌라이는 그의 공적을 치하하여 “바타르”라는 이름을 하사하고, 高郵軍의 다루가치에 임명했다.¹⁰⁾ 이렇듯 남송 정벌에 공을 세웠던, 몽골, 색목, 한인 武將들은 강남 지역의 다루가치들에 임명되어 강남지역의 사회를 군사·정치적으로 안정시키는 역량으로서 활용되었다.

원 중기 이후 漢地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軍功을 통해 임명된 다루가치의 수는 급감했으며, 이들은 몽골제국의 다루가치들을 선발하는 주요 경로가 되지 못했다. 그러나 몽골제국 초기 軍功을 통해 다루가치직에 임명되었던 자들이 세습을 통해 그 지위를 보전하여 공신 무장귀족으로서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듯이, 원대 武將출신 다루가치들은 그 특권적 지위를 향유했으며, 세습 혹은 蔭敘를 통해 지위를 보전했다. 軍功을 통해 다루가치에 임용된 자들의 특수한 지위에 관해서는 이들의 轉任상황을 검토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2) 세습

몽골제국 초기 이래로 다루가치직이 유목적 전통에 따라 세습되었으며, 이를 통해 몽골제국 내에서 군사귀족 가문이 형성되었다.¹¹⁾ 그 대표적인 예로 몽골제국 초기 다루가치를 역임했던 耶律阿海 가문이 있다. 징기스칸을 따라 호레즘 정벌에 나섰던 耶律阿海는 西征이 완료된 후 사마르칸트 다루가치에 임명되어 정복지역에 남았다. 그 직위는 아들 耶律綿思哥에게 세습되었고, 오랜 기간 사마르칸트에서 임직하였고, 오고타이 시기에 中都路也可達魯花赤직을 맡았다. 그 직위는 다시 아들 耶律買哥에게 세습되었다. 이렇듯 일부 다루가치직들은 몇 대에 걸쳐 대대로 세습되었다.

쿠빌라이는 재위에 오른 뒤 한인 저항 세력을 약화시키고 대칸의 권위를 강화였다. 그 과정에서 몽골제국의 공신 자제들이 父職을 세습하여 다루가치의 지위에 올랐다. 그 가운데 몽골제국의 대표적인 공신 가문인 木華黎와 赤老溫의 가계에서 다루가치들이 출현

8) 『元史』 卷152 『張懋傳』, p.3599.

9) 『元史』 卷153 『哈八兒禿傳』, p.3039.

10) 『元史』 卷132 『完者都傳』, p.3193.

11) 몽골제국 시기 대표적인 공신 가문에 관해서, 蕭啓慶, 『元代四大蒙古家族』 『內北國而外中國』(北京: 中華書局, 2007), pp.509-578.

하였고 그 직위가 세습되었다. 木華黎의 동생 帶孫의 후예인 塔塔兒台는 아릭부케와의 전투에 참전했던 자로, 至元 원년(1264) 세습을 통해 산둥성 東平路다루가치로 임명되었다. 그 직위는 장자 只必에게 계승됐고, 그가 후사를 남기지 않고 사망하여 塔塔兒台的 차자인 禿不申의 자손이 그 직위를 세습했다.¹²⁾ 愛魯는 구육과 몽케시기 大名路 다루가치였던 탕구트 출신의 명장 昔里鈐部の 아들이자 부직을 세습하여 쿠빌라이 초기 大名路 다루가치의 직위에 올랐다.¹³⁾ 몽골 정복 전쟁에서 활약했던 무장들의 후예들은 원대 대칸의 직속령인 腹里를 중심으로 다루가치로 임명되어 원초 대칸의 세력기반을 공고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至元 4년(1267) 쿠빌라이가 다루가치 蔭敘 규정을 제정한 이후 管民다루가치의 자체가 父職을 이어받는 지위 보전의 방식이 蔭叙로 전환되었다. 그에 따라 다루가치 세습 규정은 管軍, 管軍民, 管匠다루가치에게 제한적으로 적용됐다. 원 중후기 세습을 통해 다루가치가 된 사례는 管軍 계통의 萬戶府다루가치의 몇 사례에서만 나타난다.¹⁴⁾ 이러한 변화는 원대 관료 행정체제가 정비되고 管民다루가치 관료 행정체제와 결합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管民다루가치가 管軍다루가치와 다른 관리 체계에 소속되었음을 반영한다. 아울러 管軍다루가치가 몽골제국 내에서 여전히 특권적 지위를 유지했던 반면, 管民다루가치는 그 지위를 점차 상실해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3) 케식

대칸의 친위부대이자 일상생활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했던 케식은 몽골제국에서 특수한 지위를 누렸다. 그들은 대칸이 신임하는 몽골, 색목인, 한인 관료·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었고, 대칸을 보좌하여 政事에 참여했으며, 일부는 몽골제국 정계의 핵심부로 진출하기도 했다. 쿠빌라이 시기에도 케식은 대칸의 궁정에서 대칸을 보좌하다가 명을 받아 중앙 혹은 지방의 주요 관직에 배속되는 경우가 잦았으며 일반 官員에 비해 승진 속도도 빠른 편이었다. 그 가운데에는 다루가치로서 지방에 파견되는 사례가 발견되며, 일정 기간의 임기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二品 이상의 최고위 관직에 오르기도 했다. 대표적인 몇 사례들을 검토해보면, 위구르인 昔班은 쿠빌라이 潛邸시기에 비세치 장을 맡았고, 中統 元년(1260)에 眞定路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 후에 戶部尙書, 宗正府 자르구치를 역임한 후, 카이두 반란 때 공을 세워 中書右丞이 되었고, 翰林承旨로 致仕했다.¹⁵⁾ 서하인 立

12) 『元史』 卷118 『木華黎傳』, p.2943.

13) 『元史』 卷122 『昔里鈐部傳』, p.3012.

14) 『元史』 卷132 『昂吉兒傳』, p.3028; 『元史』 卷132 『哈刺歹傳』, p.3217 ; 『元史』 卷135 『脫因納傳』, p.3287참조.

15) 『元史』 卷134 『昔班傳』, p.3246.

智理威는 東宮 비서치로서 문서를 관리하는 케식인데, 至元 18년(1281) 쿠빌라이가 蜀지역을 평정하고 그 지역민을 安撫하고자 近臣가운데 立智理威를 발탁하여 嘉定路다루가치로 임명하였다. 후에 그는 刑部尙書로서 중앙관직에 진출하였고, 大德 10년(1306) 湖廣行省左丞으로 致仕했다.¹⁶⁾

다루가치의 入仕경로로서 케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었지만, 원대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路, 州의 상급 다루가치로 충원되었다. 이들 가운데 임기가 만료된 후 중앙으로 복귀하여 정계의 요직을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 順帝 至元 6년(1340), “케식 관을 뽑아 路, 府, [州], 縣다루가치로 삼도록 하라.”는 조령이 내려졌다. 이 조령이 내려진 구체적인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원 후기 정국이 불안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관계가 느슨해진 상황 하에 케식들을 다루가치로 파견함으로써 지방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회복·유지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판단된다.

4) 蔭敍

蔭敍는 원대 관료제도가 정비되는 과정에서 管民官의 주요 入仕경로가 되었다. 至元 4년(1267) 원정부는 一品부터 七品까지 관원들의 음서규정에 관해 명시한 “品官子孫蔭敍格”을 반포하였다.¹⁷⁾ 이어 至元 7년(1270) 원 조정에서는 다루가치 자제에 대한 음서규정을 제정하여 “達魯花赤弟男承蔭”규정을 반포했고, 그 이후 두 차례 관련 규정을 보완·개정하여 실시했다

남송을 평정한 이후 원 정부에서는 강남지역 다루가치들을 대상으로 북방 漢地의 다루가치들과 차등을 둔 음서 규정인 “達魯花赤弟男承蔭”를 반포했다.¹⁸⁾ 그 연유는 강남 다루가치 가운데 腹里다루가치의 경력·출신에 못 미치는 자들이 다수라는 것이었다. 大德 4년(1300)에 반포한 음서 규정은 다루가치 자제와 일반 管民官 자제에 차등을 두었던 기존 음서 규정을 개정한 것이었다. 이 규정에서는 管民다루가치들이 管民官과 동일한 음서 규정을 적용하게 하고, 색목인 子弟는 한인들보다 한 등급 위의 官品에 해당하는 다루가치직에 임명되도록 규정했다. 또한 예외 조항으로서 몽골인 가운데 대칸이 잘 알고 있는 자이거나, 공신 귀족 가문 출신[根脚深重]자는 대칸이 임의로 (官品을) 결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¹⁹⁾ 至元 전기의 官員 음서 규정과 비교하여 볼 때 管民다루가치들은 특

16) 『元史』卷120 『立智理威傳』, p.2958.

17) 원대 음서제도에 관해서 Elizabeth Endicott-West, *Hereditary Privilege in the Yuan Dynasty*, *Journal of Turkish Studies* 9(1985); 梁慧, 『元代官制中的世襲和蔭敍』(西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2009)

18) 『通制條格』卷6 『選舉·蔭例』(北京:中華書局,2001), pp.266-267.

19) 『通制條格』卷6 『選舉·蔭例』, pp.268-269.

수한 지위를 상실하고 일반적인 管民官의 지위로 전락해 갔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출신이 분명한 몽골인 다루가치들에 대한 특권적인 지위를 예외조항으로서 보장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몽골제국 시기의 대규모 정복 전쟁이 끝나고 軍功에 의한 다루가치 임명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蔭敍는 다루가치의 주요 入仕 경로가 되었다. 쿠빌라이 시기 지방 통치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路, 府, 州, 縣, 錄事司의 각급 지방 관부에 파견되는 다루가치의 수가 증가했다. 남송정벌 이후 南宋의 지방관부가 원의 지방행정 체제에 편입되면서 다루가치의 수가 최소한 1000여 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²⁰⁾ 이러한 상황에서 다루가치 子弟 畝서규정은 급증했던 縣과 錄事司의 하급 관부에 다루가치들을 충원하기 위한 현실적인 고려에서 마련된 것이었다.

5) 吏員

몽원제국 시기 중앙으로는 中書省, 아래로는 縣과 錄事司에 이르기까지 각급 행정 관부와 감찰기구에 吏員이 분포했다. 이들 가운데 吏員 출신으로서 官界로 진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점에서 원대 吏員의 지위가 여타 중원 왕조에 비해 높았던 것으로 평가된다. 吏員의 지위와 그에 따른 대우는 그가 소속해 있던 관부의 品級에 따라 결정되었으며, 소속 관부의 급이 높을수록, 고위 관원으로 出職할 수 있었다.²¹⁾

몽골인, 색목인 吏員출신자 가운데 다루가치로 入仕하는 사례도 종종 발견된다. 대표적인 예로서, 몽골인 禿忽赤는 모국어인 몽골어 이외에도 타국의 언어가 능한 자였다. 유가 경전과 吏文에도 탁월하여, 江西省通事와 樞密行院의 行院通事로 발탁되어 근무하다가, 至元 29년(1292) 興國路 通山縣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²²⁾ 또한 위구르인 亦都忽立은 中書省에서 몽골譯史로 발탁되었고, 여러 언어에 능통하고 근면 성실하며 재상의 신임을 얻었다. 이후 몽골이 濟지역을 점령하는데 공을 세우는 등 경력을 쌓아 完州다루가치로 임명되었다.²³⁾ 이외에 至正 원년(1341) 陝西行省 掾史였던 색목인 波羅라는 인물이 浦江縣

20) 至元 29년 남방과 북방 管民官府수와 다루가치수 비교(『元史』卷8 『地理志』, 李治安, 薛磊主編, 『中國行政區劃通史·元史卷』(上海:復旦大學出版社,2009)참조)

地域	路(괄호안은上路의 數)	府	州	縣	錄事司	民職다루가치
北方	39(2)	20	134	435	23	653
南方	136(39)	25	180	641	74	1095

여기에서 北方은 腹里、遼陽行省、陝西行省、甘肅行省을 포함하고, 南方은 河南行省、江浙行省、江西行省、湖廣行省、四川行省、雲南行省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이는 다루가치의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편의상 구분한 것이다.

21) 許凡, 『論元代的吏員出職制度』, 『歷史研究』(1984-6), p.50.

22) 吳澄, 『故奉義大夫安定州達魯花赤禿忽赤墓表』, 『吳文正集』 卷35, 『文人文集珍本總刊』 3, (臺北:新文豐出版公司, 1985), p.580.

다루가치로 발탁된 사례도 있다.²⁴⁾

이들은 주로 중앙과 지방의 상위 官府에서 근무하며 탁월한 언어능력과 문서행정 처리 능력을 갖춘 인물들로서 재상을 비롯하여 원 정부의 고위 관료들에게 신임을 얻어 다루가치로 추천 혹은 선발되었다. 이는 지방행정의 최고결정권자였던 다루가치들에게 管民 행정에 있어서 문서행정력과 언어소통능력이 요구되었음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사례들이다. 원대 吏員이 다루가치가 된 사례는 비율적으로 많지 않으나, 원대 다루가치 入仕경로의 하나로서 몽골 통치집단의 실용성과 개방성을 엿볼 수 있다.

6) 進士, 國子生

원 후기 進士와 國子生 출신자들은 원 후기 새로운 다루가치 집단을 형성했다. 몽골이 중원을 통치한 이래로 중원 왕조의 관료 행정체제를 차용하여 실시했지만, 행정 관료를 선발하는 과거제는 장기간 실시하지 않았고 공신귀족 세력 혹은 그 자제들을 관원으로 등용하거나, 吏員들을 관원으로 발탁했다. 몽골의 중원통치가 안정화되고 행정적 치리에 있어 문서행정력이 요구되면서, 仁宗 아유르바르와다 시기 과거제가 회복되었고, 國子學의 규모 역시 확대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원 중기부터 進士와 國子生 출신자들이 다루가치로 충원되기 시작했다. 『元史』와 『元統元年進士錄』에는 進士 출신으로 다루가치가 된 자들의 기록이 남아 있다. 이를 몇 사례 중심으로 살펴보면, 위구르인 善著는 泰定4年(1327) 進士及第하여 淮安路 錄事司다루가치로 임명되었다. 回回人 羅馬丹은 元統元年(1333) 進士及第하여 溫州路 錄事司다루가치에 임명되었으며, 같은 해 위구르인 鐸護倫은 袁州路 錄事司다루가치에 임명됐고, 몽골인 月魯不花는 台州路 錄事司다루가치로 임명됐다. 月魯不花는 원대 理學者였던 韓性으로부터 漢文을 배웠으며 당대 몽골인 출신 詩人으로 이름을 남겼던 인물이다.

이상의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원 중후기에 과거를 통해 다루가치에 임용된 자들은 대부분 색목인과 소수의 몽골인들이었으며, 進士及第하여 初任官으로 최하위 관부인 正八品の 錄事司 다루가치에 임명됐다.

쿠빌라이는 중앙에 國子監을 세워 문화적 소양을 가진 國子生들을 양성했는데, 원 관료 자제들이 다수를 점했다. 國子生들은 歲貢을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고, 科擧制 실시 이후 科擧를 통해 官職에 나아갔다. 몽골인들은 從六品の 官職에 진출하고, 색목인은 正七品の 官職에 올랐으며, 한인과 남인은 從七品の 관직에 진출했다. 科擧출신보다 높은 官

23) 劉埜, 『中大夫延平路宣相杏林公墓志銘』, 『水雲村稿』 卷8, 『全元文』 10(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9), p.428.

24) 柳貫, 『浦江縣官題名序』, 『待制集』 卷17, 『全元文』 25, (南京: 江蘇古籍出版社, 1999), p.156.

품에 배속되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그 수는 매우 적었다. 國子生 출신으로 다루가치가 된 예를 살펴보면, 몽골인 潮海는 國子生 출신으로 靖安縣다루가치에 임명됐고, 서하인 師安兒는 江州彭澤縣다루가치로 임명됐다. 이외에도 國子監伴讀生²⁵⁾ 출신으로 다루가치로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 國子生伴讀제도 三品 이상의 관원이 백성들 가운데 준수한 자를 천거하여 國子生을 도와 伴讀하게 한 제도로서, 몽골인 國子生들의 학습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董炳은 몽골어를 구사할 줄 아는 한인이었는데 통역 실력이 뛰어나 몽골 國子伴讀生이 되었고, 후에 濟陽縣다루가치에 임명되었다.²⁶⁾

3. 入仕유형별 다루가치 遷轉 양상

몽골제국 초기 다루가치들은 軍功을 통해 선발되어 대개 자손 대대로 그 지위를 세습하며 특권적인 지위를 누렸다. 그러나 몽원제국 시기 다루가치가 관료 행정체제에 편입되면서 다루가치 선발방식에 변화가 생겼고, 원 조정의 다루가치 관리 방식과 그 지위에 변화가 발생했다. 다루가치는 파견되는 관부의 品級에 따라 正三品부터 正八品으로 등급이 나뉘었고 그 官品에 따라 俸祿을 비롯하여 상이한 지위를 누렸다.²⁷⁾

원대 임기가 만료된 다루가치들은 원대 관원들의 銓注와 동일한 방식으로 고과 심사를 받고 승진 및 좌천 여부가 결정됐다. 원대 관원들의 銓注는 中書省 혹은 吏部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常選”이라 했고, 대간이 직접 관원을 선발하는 것을 “別里哥選”이라 했다. 常選에 대하여 살펴보면, 從七品이하의 관원은 吏部에서 관할했고, 正七品이상은 中書省에서 관할했으며, 三品이상 官員의 인사는 中書省에서 (서류를) 올리면, 대간이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²⁸⁾ 다루가치들의 인사관리도 官員 銓注방식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路다루가치의 경우에는 대간이 직접 인사에 관여했다. 예외적으로 南方의 변경지역으로 파견되는 다루가치들의 인사관리는 조정에서 파견한 특사와 소속 行省의 협조 하에 이루어졌다.

원대 다루가치들은 임기가 만료되면 원칙적으로 상급기구와 감찰기구에서 考課²⁹⁾과 解

25) 至元 29년(1292)에는 國子伴讀生도 歲貢의형식으로 令史 혹은 府州教授로 임명되는 규정이 마련되었다. 王建軍, 『元代國子監研究』(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002), p.158.참조.

26) 劉敏中, 『奉議大夫規運所提點董君墓銘』, 『中庵集』 卷8, 『北京圖書館古籍珍本叢刊』 92, (北京:書目文獻出版社, 1998), p.336.

27) 達魯花赤職田(單位:頃)(『元典章』 卷15 『祿廩』

品級	正三	從三	正四	從四	正五	從五	從六	正七	從七	正八
官府名	上路	下路	散府	上州	中州	下州	上縣	中縣	下縣	象事司
職田數	16	14	12	10	8	6	4	4	4	3

28) 『元史』 卷83 『選舉志三』, p.2064.

29) 고과에서는 “戶口의 증가, 田野의 개척, 詞訟의 간소화, 盜賊의 평정, 賦役의 균분”의 다섯 항목

由³⁰⁾에 의거하여 고과를 평가하고 吏部 혹은 中書省에 보고했다. 보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루가치의 승진과 좌천을 결정하는 銓注가 이루어졌다. 다루가치 轉任의 구체적 정황은 파악할 수는 없으나, 크게 두 유형으로 분류해 본다면, 하나는 다루가치로 入仕한 후 다루가치직에서 遷轉하다가 致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다루가치와 다른 관직을 오가며 경력을 쌓아 진급하는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이들의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과성적이었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출신배경과 入仕방식에 따른 初任官品이 크게 작용했다. 이하에서는 入仕유형별로 다루가치 遷轉 양상을 검토하여, 원대 전반기에 나타난 다루가치의 위상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겠다.

1) 軍功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원대 다루가치들 가운데 특권적 지위를 향유한 자들은 軍功을 세운 무장출신들이었다. 이들은 대부분 쿠빌라이 집권시기인 원 前期에 임명된 자들로서 다루가치들 가운데 官品이 가장 높은 三品の 路다루가치에 임명되었고, 遷轉 과정에서도 대개 그 品級을 유지하여 三品官으로 致仕했다. 몇 사례를 통해 이를 확인해보면 張懋는 至元 13년 남송정벌 과정에서 功을 세워 泗州安撫司다루가치(正三品)에 임명됐고, 至元 14년, 同知淮西道宣尉司事(從三品)를 거쳐, 至元 16년, 吉州路總官(從三品)로 致仕했다. 카를룩 출신의 沙全은 至元 12년 功을 세워 華亭軍民達魯花赤(正三品)에 임명되었고, 이후 松江萬戶府다루가치(三品)를 거쳐 隆興萬戶府다루가치(三品)로 致仕했다. 이외에도, 색목인이나 몽골인 가운데에는 軍功출신으로 二品の 고위 官職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남송 정벌에 참전하였던 킵차인 完者都拔都是 三品の 高郵路다루가치에 임명되었고, 이후 從二品 江西等處行樞密院副使, 兼廣東宣慰使로 致仕했다. 軍功으로 다루가치가 된 경우 전쟁에서의 功積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戰時의 특수한 상황이 함께 고려되어 높은 官品の 다루가치에 임용되었다.

2) 케식 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몽골제국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렸던 케식 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상황을 살펴보겠다. 몽원제국 시기에도 케식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행정 관료 조직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집단이었다. 蕭啓慶이 지적한 바대로, 케식은 몽골제국 내에서 고위 관직에 오를 수 있는

을 기준으로 삼아 평가했다. 『元史』 卷82 『選舉志二』, p.2038.

30) 解由에는 다루가치의 개인 신상이 기록되었다. 그 내용으로 나이, 민족, 호적, 신분, 언어능력, 入仕경위, 경력 등이 기록되었으며, 특히 경력에는 재위 기간, 재임기간 중의 업적, 녹봉 지급 내역, 과실 여부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 『通制條格』 卷6 『選舉·解由』, pp.294-295; 『通制條格』 卷16 『田令·司農事例』, p.470 참조.

첩경이자, 몽골제국 공신 귀족사회의 특권을 유지하는 특권계급의 요새였다.³¹⁾ 케식 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상황을 보면,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三品の 路다루가치로 임명되는 경우와 初任으로 五品에서 七品 사이의 다루가치직으로 入仕하는 경우이다. 전자의 경우 三品の 路다루가치를 역임한 후 一, 二品の 중앙 요직으로 진출한 경우가 적지 않게 발견되지만, 후자의 경우 원대 官員 遷轉 규정에 따라 승진하여 대개 三品에서 致仕했다. 원대 제도에서는 관원 선발과 遷轉에 관하여 “七品으로부터는 법을 따라 三品에까지 오를 수 있으며, (이후로는) 같은 品級내에서 이동한다. 二品이상의 직위는 特旨를 통해 선발한다.”³²⁾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케식 출신으로 路다루가치에 입사한 자들은 대간의 特旨에 따라 정계의 고위관직에 발탁되었던 셈이다.

전자의 예들을 살펴보면, 케식 출신으로서 台州路다루가치로 임명되었고 四川等處行平章政事에서 致仕한 帖木兒不花, 八番宣撫司다루가치 출신으로 中書右丞相의 지위에 오른 別兒怯不花, 大都路達魯花赤로서 中書右丞相으로 致仕한 馬札兒台, 眞定路다루가치에 入仕하여 中書右丞의 지위에서 致仕했던 昔班 등이 있다. 후자의 대표적인 예로는 몽케 시기 비세치를 담당했고, 至元 6년(1269) 安南國다루가치로 파견되었던 張庭珍이 있다. 그는 남송정벌 과정에서 공을 세워 襄陽總管, 兼府尹을 거쳐 四品の 郢, 復二州達魯花赤에 임명됐다. 이후 三品の 平江路다루가치를 거쳐 三品の 大司農卿직에 올랐다가 路總官의 신분으로 致仕했다.³³⁾

이상의 사례와 같이 軍功, 케식 출신으로서 다루가치가 된 자들은 몽골제국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며, 정부로부터 경제적·사회적인 신분적 보장을 받고 특권적 지위를 누렸다. 반면에 蔭敍, 進士, 國子生, 吏員출신자들은 대개 初任으로 縣, 錄事司의 七, 八品の 다루가치직에 임명되어 고위관직에까지는 오르지 못했다.

3) 蔭敍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蔭敍 출신 다루가치들의 轉任은 원대 官員의 升進규정을 따라 진행되었다. 至元 19년(1282) 원 조정에서는 “江淮致仕身故官員蔭敍” 규정을 반포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蔭子는 정상적인 국가의 升進규정에 따라 升進하고, 그 가운데 청렴하고 성실하며 재주가 뛰어난 자(廉慎才干者)는 일반적인 升進규정을 초월할 수 있으며 대간의“特恩”으로 발탁된 자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³⁴⁾ 원대 蔭敍 출신 다루가치들 대개 初任으로 縣, 錄事司의 下品 다루가치에 임용이 되었고, 지방 하급 관부의 다루가치 직

31) 蕭啓慶, 위의 책, p.220.

32) 『通制條格』卷6『選舉·蔭例』, p.266.

33) 『元史』卷165『張庭珍傳』, p.3919.

34) 『通制條格』卷6『選舉·蔭例』, p.266.

내에서 轉任을 하다가 致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료의 부족으로 정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관련 사료들 가운데 蔭敍 출신자들이 지방 관원으로서 활약했거나 고위 관직에 오른 사례도 거의 보이지 않는데, 이는 원대 蔭敍 제도 실시 배경도 관계가 깊다. 蔭敍는 世襲처럼 몽골 혹은 색목인 공신귀족 가문의 특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도입된 제도이기보다 원 초기 지방통치의 강화와 남송 정벌전쟁을 통해 급증한 지방관부에 파견할 인력을 확보하는 현실적인 고려가 반영된 제도였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로 고위직에 오른 경우도 있다. 몽골인 脫脫는 蔭敍를 통해 昌平, 寧陵, 穰, 吳縣의 다루가치를 차례로 역임하고, 大都路兵馬都指揮使와 大宗正府郎中の 직위를 거쳐, 至正 원년(1341) 一品의 翰林學士承旨에서 致仕했다. 그가 정계 요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개인적 업적 뿐 아니라, 그의 부친이 河南江北等行省 平章政事를 역임했던 고위 관료였다는 사실과도 무관하지 않다.

4) 進士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원 중기 科擧가 실시되면서, 문학적 소양을 갖춘 進士 출신의 다루가치가 새로운 집단으로 대두되었다. 원대 進士 출신이 오를 수 있는 최고위 관직은 從一品부터 正八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편이었다. 進士의 遷轉은 크게 세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內任에서만 遷轉을 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內任과 外任을 오가며 관직을 맡는 경우이고, 세 번째는 外任官내에서만 遷轉하는 경우로서 인원이 많고, 승진 속도가 매우 느린 편이었다.³⁵⁾ 進士 출신 다루가치는 이 가운데서 두 번째와 세 번째에 경우에 속하는데, 먼저 進士 출신으로 다루가치가 된 자들 가운데 세 번째 유형이 다수 발견된다. 대표적인 사례로서, 楔朝吾는 進士及第후 技江縣다루가치직을 맡았고, 이후 循州 同知직에서 致仕했다. 逸里古思는 紹興路錄事司다루가치에 任職하였고 江浙行樞密院 判官에서 임기를 마쳤다. 善著는 初任으로 淮安路 錄事司다루가치에 임명되었고, 이후 恐昌總帥府 經歷에서 致仕했다. 이상의 사례들은 모두 進士로 入仕하여 五, 六品官에 오른 다루가치들로서 이전 중원왕조의 進士及第자들에 비하여 정계 요직에까지는 진출하지 못했다.

특수한 경우로서 두 번째 유형과 같이 內任과 外任을 오가다가 고위관직에 오른 사례도 있다. 몽골인 月魯不花는 元統 원년에 進士及第하여 正八品の 台州路 錄事司 다루가치직에 임명되었고, 이후 內任官과 外任官직을 오가며 遷轉하였다가, 從三品 保定路다루가치, 正三品 大都路다루가치를 역임했고, 正二品の 江南行御史台中丞, 散階로는 從一品에까지 올랐다.³⁶⁾

³⁵⁾ 桂栖鵬, 『元代進士仕宦研究』 『元史論叢』 6(1996), pp. 72-73.

³⁶⁾ 『元史』 卷145 『月魯不花傳』 p.3448-3451.

5) 吏員출신 다루가치의 轉任

吏員출신으로 고위 관직에 오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었다. 원대 吏職은 과거제가 실시되지 않는 상황에서 漢人들이 관직으로 나아가는 첩경이었다. 吏員은 官品이 없으나,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官衙의 品級에 따라 그들이 진출할 수 있는 관직의 品階가 결정되었다. 예를 들어, 路總官府, 廉訪司의 吏員은 임기가 만료된 후 九品官으로 진출했고, 宣慰司 吏員은 八品, 九品에 임용될 수 있었으며, 行省 吏員은 六, 七品官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한편 中書省 吏員은 최고로 六品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³⁷⁾ 쿠빌라이는 吏員들의 관계 진출에 제한을 두어 四品에까지만 오를 수 있다는 규정을 반포했다. 仁宗 아유르바르다와 시기에는 이를 從七品으로 강등했다가, 泰定帝 예순테무르 시기에는 원래의 官品으로 복원했다.³⁸⁾

원대 다루가치들 가운데 吏員출신자들은 대개 通事를 역임했던 몽골인 혹은 색목인이었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江西行省 通事를 역임했던 몽골인 禿忽赤은 至元 29년에 從七品 興國路 通山縣 다루가치를 역임했다. 이후 湖廣行省 通事に 복귀되었다가 江浙行省副都鎮撫로 出職하였고, 다시 中書省 通事の 지위에 올랐다가 正七品の 吉州路判官을 역임한 후, 正五品 安定州 다루가치직에서 致仕했다.³⁹⁾ 이외에 위구르인 暗都刺는 中書左司令史, 戶部令史, 宗王府令史, 中西右司掾의 吏職을 거쳐 從七品の 中都留守司都事직으로 관직에 진출하였고, 正六品の 大都路警巡院 다루가치직에서 致仕했다.⁴⁰⁾ 이상의 사례에서도 확인되 듯 吏員에서 出職한 다루가치들은 대개 五, 六品에 해당하는 관직까지 올랐다.

吏員출신으로 다루가치를 역임하고 三品の 관직에 오른 특수한 사례도 있다. 몽골인 暗都刺는 經史에 통달하고, 다양한 언어 구사에 능했던 자로서, 그의 조부는 남송 정벌에 공을 세워 冀寧路 다루가치를 역임했던 자였다. 그는 成宗 테무르 시기에 翰林院의 문서를 담당하는 자를릭치를 역임했고, 正五品の 翰林待制로 관직에 진출했으며, 이어서 從五品の 遼州 다루가치에 임명됐고, 正三品 襄陽路 다루가치를 거쳐 益都路總官에서 致仕했다.⁴¹⁾ 吏員 遷轉의 일반적인 규정을 뛰어넘는 官品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원 정부의 중앙정부에서 通事를 담당했던 특수한 경력과 더불어 공신관료의 자제라는 신분적 배경이 함께 작용했다고 보여진다.

37) 許凡, 『元代吏制研究』(北京: 勞動人事出版社, 1987), pp. 13-38.

38) 『元史』 卷27 『泰定帝一』, p.642; 『元史』 卷25 『仁宗二』, p. 566.

39) 吳澄, 『故奉義大夫安定州達魯花赤禿忽赤墓表』, 『吳文正集』, p.580.

40) 許有壬, 『西域使者哈只哈心碑』, 『至正集』 卷53, 『元人文集珍本叢刊』 7, p.251.

41) 『元史』 卷192 『良吏傳』, p.4364.

4. 맺음말

다루가치는 몽골제국 초기 몽골의 정복전쟁이 정복지역에 대한 통치로 전환해 가는 과정에서 출현했다. 정복전쟁에 참여하여 戰功을 세운 이민족 수장, 귀족, 상인 출신들이 다루가치에 임명되어 몽골제국 건설의 역량으로 활용되었으며, 그 직위는 대대로 세습되어 특권적 지위를 보전했다. 이외에도 대칸의 케식이었던 자들이 다루가치에 임명되어 대칸과 피정복지역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들은 정복지역의 치리자로서 鎮守, 管民行政을 담당하며 몽골제국에서 특수한 신분적 지위를 누렸다.

쿠빌라이 집권 이래로, 몽골제국의 각 지역에서 통치가 더욱 공고해졌다. 특히 대칸 울루스가 소재한 漢地에서는 방대한 행정 관료체제를 건립하였고, 다루가치들은 그 직임에 따라 管民職, 管軍職, 管軍民職, 管匠職 등으로 세분화되어 갔다. 그 가운데 民職다루가치들은 지방행정체제에 편입되어 지방행정 관부의 감독자이자 지방행정의 참여자로서의 이중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다루가치가 路, 府, 州, 縣, 錄事司의 각급 행정 관부에 파견되면서, 몽골의 지방통치에 요구되는 다루가치의 수가 증가했고, 더욱이 남송을 정벌한 후 강남지역에 파견되는 다루가치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 결과 管民官의 주요 入仕경로로 마련되었던 蔭敍가 다루가치 자제에게도 적용되어, 至元 연간에 다수의 다루가치 자제들이 말단 官府인 縣, 錄事司에 충원됐다. 몽골의 漢地 통치가 안정되면서, 지방통치에 있어서 문서행정 능력이 요구되었고, 그러한 현실적 요구에 따라 仁宗시기부터 科擧制가 실시되어 문화적 소양을 갖춘 관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 일부 進士及第한 자들 가운데 다루가치로 임명되는 자들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들은 대부분 색목 관료 자제들로서, 縣, 錄事司 다루가치로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했으며 그 가운데 소수의 몽골인들도 있었다. 이와 함께 國子生출신이 다루가치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역시 縣, 錄事司의 말단 관부 다루가치직에서 관직을 시작했다. 한편, 정부기구의 通事, 譯史, 掾史의 吏員 출신으로 다루가치에 임명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원 중후기 나타난 것으로서, 軍功이 더 이상 다루가치의 入仕경로가 되지 못하고, 지방통치에 있어 문서행정력과 문화적 소양이 요구되면서 나타난 변화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세습은 管軍계통의 武職 다루가치들과 匠人들을 관리하는 管匠다루가치들에게서는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원대 管民다루가치들은 관료행정체제에 편입되면서 다루가치의 계서화와 행정관민관화 특징이 나타났다. 다루가치의 계서화에 관해 살펴보면, 다루가치들은 路의 三品으로부터 錄事司의 八品에 이르기까지 소속 관부에 따라 官品이 달랐고, 그에 따라 俸錄과 爵秩도 달라졌다. 그 가운데 상위의 다루가치들은 여전히 조정에서 비중을 차지하며 고위 관직

에 올랐으나, 하위 관품 다루가치들은 전반적인 지위가 하락하였고 몽골지방행정 체제 내에서 행정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 전자로는 軍功을 통해 입사하거나, 케식 출신의 경우로서 대개 初任으로 三品の 路다루가치에 올랐다. 이들 가운데에는 대칸에게 발탁되어 중앙 정계의 요직에 오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 통해 蒙元시기 일부 케식과 武將 출신의 다루가치들은 대칸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몽골제국 내에서 여전히 특권적 지위를 향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 蔭敍, 進士, 國子生 출신들은 初任官品이 七品 혹은 八品으로서 정상적인 官員의 遷轉 원칙에 따라 비교적 느린 속도로 진급을 하고, 五品 혹은 六品관으로 致仕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들 가운데 縣과 錄事司 다루가치로 재직하는 동안 지방장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관민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사례도 발견되는데, 이에 관해서는 향후 지방행정에 있어서 다루가치의 직업에 관한 연구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다.

蔭敍, 進士, 吏員 출신 가운데 정상적인 遷轉 원칙을 뛰어넘어 진급하는 소수의 사례들도 발견되는데, 이는 몽골 혹은 색목인 공신귀족의 후예라는 출신 배경을 갖거나 중앙정부에서의 通事 역임과 같은 특수한 경력을 소유하는 경우였다.

宋·遼·金 및 高麗帝王生日考¹⁾

김 성 규(전북대)

目次

머리말

1. 각국 제왕의 생일

1) 송 황제의 생일

2) 遼·金 황제의 생일

3) 고려 국왕의 생일

2. 節日의 명칭과 ‘改期受賀’의 유행

1) 節日의 명칭에서 보는 모방과 회피

2) 동아시아에서 ‘改期受賀’의 유행과 高麗

머리말

중국에서 황제의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이 唐朝에서 시작된 이래로 五代를 거쳐 宋代가 되면 특히 성행하게 된다. 송대에 이르러 황제의 生辰은 正旦과 함께 왕조의 최대 명절을 구성한다. 또한 이 관습은 인근의 요, 금 왕조는 물론 고려에서도 유행하였다. 특히 송과 요·금 왕조는 생신사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새로운 형태의 외교 방식을 개시하였고,²⁾ 여기에 그들과 관계가 깊었던 고려 및 서하의 사절을 동석시킴으로써, ‘生辰使의 교환’은 동아시아 외교사에서 새로운 영역으로 등장·정착하였다. 생신을 축하하는 자리에 외국사를 동석시킴으로써 군주의 왕권을 고양시키려한 것은 당시의 왕조에 공통된 사항이었다.

이를 반영해 10~13세기의 동아시아 각국의 문헌에는 생신사의 파견과 도착을 알리는 기록이 수없이 눈에 띈다. 송-요의 외교 관계를 집대성한 聶崇岐와 傅樂煥의 交聘表들,³⁾ 송-금의 주요 교류를 표로 정리한 역대 정사에서 유일한 『金史』의 ‘交聘表’,⁴⁾ 그리고 고

1) 본 발표문에서는 지면 제약으로 관련 ‘표’와 ‘맺음말’을 생략하였다.

2) 김성규, 『契丹의 ‘國母’와 宋의 ‘皇太后’-賀慶使의 교환으로 보는 宋·遼의 外交史』, 近刊

3) 聶崇岐, 『宋遼交聘考』附 ‘生辰國信使副表’, 『宋史叢考 下』, 華世出版社, 1986; 傅樂煥, 『宋遼聘使表稿』附 ‘宋遼聘使表’, 『遼史叢考』, 中華書局, 1984.

려와 중국 왕조간의 관계를 『高麗史』에서 추출한 김위현의 ‘史料集’⁵⁾등을 통해 보더라도 생신사의 왕래는 내용상 가장 많은 교류의 일부를 이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이 문제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는 결코 많지 않았다. 各國 帝王의 생일이 언제인가, 하는 간단한 문제에서부터 그 節日(기념일)의 명칭을 둘러싼 문제, 또는 그 축하를 위해 해당국과 인근 왕조 사이에서 어떠한 원칙과 절차를 통해 사절을 주고받았는지 등에 이르기까지, 해명할 부분이 적지 않다. 후자와 관련해서는 부락환이 이미 지적한 일부의 내용(후술)이 선구적인 의의를 갖지만, 해명을 요하는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에 비해 전자의 두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문제라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당시의 동아시아에서의 사절단의 왕래를 이해할 때 기준점을 제시하는 사항이므로 이를 확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상의 문제를 송-요, 혹은 송-금처럼 1대1의 관계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의 고려 등의 왕조를 함께 포함하는 다각적 관찰을 통해 동아시아에서 제왕의 생일을 둘러싼 특징들을 폭넓게 검토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이 때, 고려를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분석의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단순한 의미만이 아니라, 중국사 내부의 문제만으로 시야를 고정시킬 때는 알기 어려운 점들이 고려의 입장을 도입시킴으로써 해결의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려의 역사에서 일대 외교 현안을 이룬 생신사 파견의 내용과 의의도 중국사와의 결부를 통해 비로소 그 진상이 파악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사상 군주의 ‘생일’은 儀禮와 같은 각 왕조의 내부적 측면을 별도로 규명해야 할 점이 있지만,⁶⁾ 본고에서는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는 외교 문제의 측면에서 검토할 것이다.

아울러 당시의 동아시아에서 ‘생신사’를 통한 외교의 범위 안에는 서하가 포함되고 있었지만, 서하의 경우는 사료적 제한으로 각 군주의 생일명을 비롯해 그 운영 원칙을 알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라 본고에서는 이를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고려 또한 북방 왕조(요·금)의 압력으로 송과의 관계가 약화되면서 ‘생신사’ 외교에서 점차 탈락되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

4) 『金史』 권60 表2, 交聘表上, 同書권61 表3, 交聘表中, 同書권62 表4, 交聘表下.

5) 金渭顯 編著, 『高麗史中中韓關係史料彙編』上·下, 食貨出版社,

6) 이와 관련해서는 김성규, 『契丹의 國信使가 宋의 황제를 알현하는 儀禮』, 『歷史學報』 213, 2012; 김성규, 『宋의 國信使가 契丹의 황제 · 황태후를 알현하는 儀禮』, 『東洋史學研究』 120, 2012 참조.

1. 각국 제왕의 생일

1) 송 황제의 생일

史上 처음으로 玄宗이 자신의 생일(8월5일)을 ‘千秋節’(20년 뒤에 天長節로 개칭)이라 칭해 국가 경축일(公休日)로 삼은 이래, 唐에서는 황제 탄신일에 대한 축하가 연중행사로 자리 잡았다.⁷⁾ 다만 이 단계에서는 모든 황제가 아직 자신의 생일에 고유한 명칭을 갖고 있지 않았고, 그 축하 행사도 체계화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五代가 되면 周濬이 有司의 청으로 자신의 생일(10월2일)을 大明節로 삼은 이후 역대 황제의 생일에 고유 명칭을 부여하는 사례가 당보다 더 많이 보인다.⁸⁾ 하지만 여기서도 예를 들어 후당의 莊宗처럼 비중 있는 황제의 節日이 보이지 않는 등, 예외도 있다. 突闕系 沙陀族 출신인 후당은 그 정권 초기에 중원 왕조와 같은 관념이 아직 확립되지 않은 듯하다.⁹⁾

모든 황제가 자신의 생일에 특정한 節日 명칭을 갖게 된 것은 송대에 이르러서이다.¹⁰⁾ 그에 따라 축하의 방식도 체계화되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비는 ‘上壽’라는 개념과 황제의 誕辰日을 뜻하는 ‘聖節’이라는 단어도 이전에는 보이지 않고 송대에 처음으로 빈출한다. 특히 황제(황태후 포함)를 대상으로 하는 ‘上壽儀’가 정비되어 嘉禮의 한 항목(『송사』 권112 嘉禮3 聖節)을 차지하는 등, 황제의 권위를 치장하는 상징체계로서의 의의는 송대에 비로소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는 ‘上壽儀’는 물론, 해당 황제의 탄신일과 節日의 명칭 등 기초적인 검토가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를 정리하여 후술하는 논의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7) 이상에 대해서는 池田濬, 『天長節管見』, 『東アジアの文化交流史』, 吉川弘文館, 2002.

8) 일부 불명확한 부분이 있지만, 필자의 추정을 포함해 『舊五代史』에 의해 확인되는 五代 군주의 생일로는 後梁 태조의 생일(909년10월癸未)인 大明節(권3, 梁書3, 開平元年5월辛巳), 후량 末帝의 생일(9월12일)인 明聖節(권8 梁書9, 乾化3년3월), 後唐 明宗의 생일(9월9일)인 應聖節(권36 唐書12 天成元年6월己丑), 후량 末帝의 생일(정월23일)인 千春節(권46 唐書22 清泰元年10월), 後晉 高祖의 생일(2월28일)인 天和節(권76 晉書2 天福元年12월庚子), 後晉 少帝의 생일(6월27일)인 啓聖節(권81 晉書7 天福8년4월己巳), 後漢 高祖의 생일(2월4일)인 聖壽節(권100 漢書2 天福12년8월庚戌), 後漢 隱帝의 생일(3월9일)인 嘉慶節(권101 漢書3 乾祐元年12월辛卯), 後周 태조의 생일(7월28일)인 永壽節(권111 周書2 廣順元年6월甲午) 등이 있다.

9) 북방민족에서 시간 관념의 취약성에 대해서는 曹顯征, 『遼宋交聘制度研究』, 中央民族大學博士學位論文, 2006 참조.

10) 『日知錄』 권13 生日에는 “生日之禮, 古人所無, ……逮唐宋以後, 自天子至于庶人, 無不崇節.”고 있어, 생일을 축하하는 관습이 당·송 시기에 비로소 유행하였고, 그 이전에는 없었음을 지적한다.

송 황제의 생일은 『송사』의 本紀와 同書 권112 ‘嘉禮3 聖節’ 항목을 참조하면 대부분 쉽게 파악이 가능하다. 그것을 정리한 <표43>에 의하면 송조에서는 태조 조광윤이 자신의 생일(2월16일)을 長春節로 정한 이래 남송의 瀛國公(恭帝)에 이르기까지 16帝가 모두 그 기념일의 日字와 명칭을 지정한 것을 알 수 있다. 황제들은 대부분이 즉위 當月 중에 (태조, 인종, 광종, 瀛國公), 아니면 늦어도 1개월(신종, 고종, 녕종) 내지 2개월(철종, 효종, 도종) 사이에 節日을 정하고, 가장 늦은 예로 태종은 즉위 7개월 뒤에 자신의 공식 생일을 선포하였다. 또한 이것은 대부분 先帝의 葬事를 치르기 전의 일에 해당한다. 태조를 암살하고 즉위한 의심을 받는 太宗만이 태조 장례 후에 생일을 제정한 것은 예외이다.¹¹⁾ 이처럼 송조가 황제의 절일을 서둘러 제정한 것은 점차 궁중 행사로서의 비중이 커진 이외에, 특히 축하사 교환을 위해 요나 금의 인근 국가에 그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²⁾

다만 寧宗의 생일은 유독 특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그것을 전하는 3종의 기록이 모두 일자를 달리하기 때문이다. 즉 『송사』 권37 본기37 寧宗1에는 그가 “乾道4년(1168) 10월丙午(18)에 王邸에서 태어났다”고 하지만, 同書 권112 嘉禮3 聖節에는 “10월19일(丁未)을 天祐節로 삼았다”고 하여 하루 늦은 기록으로 되어 있고, 다시 『建炎以來朝野雜記』 甲集1 上德에는 “乾道4년 10월20일(戊申)에 恭王府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다시 하루 더 늦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녕종의 생일 일자는 다른 종류의 사료를 통해 유추할 필요가 있지만, 그것은 대부분이 金使에 의한 축하와 관련된 내용이며, 그 때의 축하 일자는 거의 모두 17일로 되어있다. 18~20일보다 오히려 하루 앞선 이 날자는 金使가 송조에 도착한 사실 혹은 그들이 별도로 생일을 축하한 것을 적은 것으로, 녕종의 생일 일자 그 자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필자는 이 때문에 즉위한(1194년) 직후의 녕종이 주희의 칭을 받아들여 신하들의 賀表를 물리친 사실이 있는 10월丙午 즉 19일을¹³⁾ 그의 생일로 추정할 뿐이다.

그런데 철종과 고종의 경우는 실제의 출생일과 그 기념일(節日)이 정확히는 대응하지 않는 사실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철종은 원래 12월7일 생이나 이날이 마침 僖祖(태조 조광윤의 高祖)의 忌日이라 그 節日을 하루 늦추어 12월8일로 삼은 것이 그 예이다.¹⁴⁾

11) 휘종, 흠종, 고종, 효종, 광종 등은 讓位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역시 예외에 속한다. 이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표43>에서 인용한 典據를 참조.

12) 『金史』에는 “有司에 敕하기를 宋, 高麗, 夏에 移報하여 天壽節을 九月一日에 來賀하게 했다”(권 9 본기9 大定29년6월乙卯)고 보인다. 후술 참조. 『高麗史』에는 요-고려 간에 이 같은 내용이 간혹 보인다.

13) 『宋史』 권37 本紀37 紹熙5년10월丙午에 “復以朱熹奏請, 卻瑞慶節賀表.”고 있다.

14) 『송사』 권112 嘉禮3 聖節에 “哲宗即位, ……宰臣請以十二月八日爲興龍節. 哲宗本七日生, 以避僖祖忌, 故後一日”이라 있고, 『宋會要』禮57 誕聖節에도 거의 동문이 보인다.

고종도 실제의 출생일은 1107년 5월20일(乙巳)이지만, 군신들의 주청으로 그 익일(21일)을 天申節로 삼은 것이다. 특히 고종은 20일 밤에 출생한 것이 확인되며,¹⁵⁾ 아마도 이 때문에 그 다음 날을 절일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은 녕종의 생일도 18일 밤이었다는 설명이 있고,¹⁶⁾ 따라서 필자가 추정한 것처럼 19일이 그의 절일(天祐節=瑞慶節)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고종의 예처럼 하루를 늦춘 것일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앞서 소개한 녕종의 생일을 전하는 기사 중 『송사』본기37이 “乾道4년10월丙午(18)에 王邸에서 태어났다”고 한 반면, 同書 권112 聖節이 “10월19일(丁未)을 天祐節로 삼았다”고 한 것은 실은 전자는 출생일을, 후자는 그 節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는 같은 서술 방식은 아니다. 이를 포함시킨다면 송조에서는 출생 시점이 先祖의 忌日이거나 늦은 밤일 경우는 기념일을 바꾼 예가 3례 존재하는 셈이다.

그 밖에 송조에서는 원인이 분명치는 않으나 절일의 명칭을 변경한 사례가 2건 보인다. 태종이 乾明節에서 壽寧節로, 그리고 녕종이 天祐節을 瑞慶節로 각각 변경한 것이 그것이다. 또한 송에서는 황제 뿐 아니라 황태후에 대해서도 그 탄신일을 공식적으로 지정해 축하하는 사례가 있었다. 모두 4건이 발견되며, 이 중 특히 진종의 황후인 章獻太后 劉氏의 長寧節(정월8일), 그리고 영종의 황후인 宣仁太后 高氏의 坤成節(7월16일)이 유명하고, 그 밖에 壽慶節(5월16일)과 壽崇節(미상)이 있다.¹⁷⁾ 송조에서의 황태후의 생일 기념은 후술하는 遼의 그것에 대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遼·金 황제의 생일

遼의 황제 생일에 관련해서는 이미 傅樂煥의 자세한 고증이 있다. <표2>는 부락환의 연구를 기초로 필자의 필요에 따라 약간의 가필을 보태 새로 만든 것이다. 『송사』와 달리 『요사』에서는 황제의 생일을 그의 해당 본기에 적지 않고, 先帝의 本紀에서 皇子로 태어났을 때의 시점에 기록하고 있다.

태조 야율아보기의 출생에 대해서는 그 연도만이 전해질 뿐 월일은 알 수 없고, 節日을 만들었다는 사실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건국 초창의 분망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次子 태종이 天授節을 제정한 것이 요에서는 생일을 국경일로 정한 첫 사례이다. 부친의 遺志를 이어 몽고리아 일대에 경역을 넓힌 태종은 後晋에게 연운16주를 얻었을 뿐 아니라(936년), 이윽고 後晋을 멸망시켜 중원의 패자를 지향하였다. 즉위 약 2년 뒤

15) 『建炎以來朝野雜記』甲集 권1 上德에 “高宗,……徽宗第九子, 母曰韋太后, 大觀元年五月二十夜生於宮中, 以其日爲天申節.”고 있다.

16) 『宋會要』禮49 尊號13에 “乾道四年戊子歲十月十八日夜分, 生於恭王府.其日爲瑞慶節.”고 있다.

17) 송대 황태후 생일에 대해서는 『宋史』嘉禮3 聖節과 『宋會要』禮57 誕聖節 등을 참조.

(928년)에 그가 중원 왕조의 방식에 입각해 자신의 생일을 節日로 제정한 것은, 그의 말년에 국호를 ‘大遼’로 고치고 연호도 ‘大同’이라 改元한 것과 호응하는 당시 거란의 氣概를 반영한다. 또 태종의 節日 제정은 시기적으로 五代王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宋朝에 선행한다는 점도 이후의 송조와의 경쟁 관계를 이해할 때 참고가 될 것이다. 天授節에 태종은 국내의 群臣만이 아니라 諸國使로부터도 축하를 받아 세계의 중심을 표방하였다.¹⁸⁾

하지만 태종을 이은 世宗과 穆宗 시기는 정치적 혼란으로 遼史에서 ‘中衰期’로 평가된다. 19) 이 시기에 황제의 節日이 보이지 않은 것도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요에서 황제 생일의 節日 지정이 확립된 것은 景宗 이후이다. 이 시기는 아직 政情에 불안한 요소를 남겼지만, 한편으로 新銳 宋의 침공을 고량하에서 격파하는 등 그 국력은 뚜렷이 회복세를 보였고, 이후 성종, 흥종, 도종기를 통해 요는 전성기를 맞이한다. 이를 반영해 요에서도 황제의 절일이 송조처럼 황제의 즉위와 함께 제정되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고 보인다.

그 결과 요는 송조와 생신사를 정기적으로 교환한다는 중국사상 최초의 외교 관계를 맺게 되었다. 976년부터 시작된 이 관계는 3년간 이어진 후, 대립과 충돌로 인한 공백기를 거쳐 ‘전연의 맹’(1004년)의 결과 1005년부터 재재되어 이후 한 해도 거르지 않을뿐더러, 금, 고려 등의 왕조에도 영향을 주었다.

金代에는 황제 생일의 節日 제정이 일찍부터 확립되었다. 과연 태조(阿骨打) 만큼은 그럴 겨를이 없었던 모양이지만, 이후의 역대 황제들은 末帝인 哀帝를 빼고 모두가 節日을 갖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금은 특히 요를 의식해 그 國制를 모방한 점이 많았던 관계로, 황제의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할 필요도 이미 학습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금 황제의 생일에 대해서는 종래 정리된 설명이 없으므로 이를 필자가 시도한 것이 <표3>이다. 다만 그 생년월일은 太祖, 章宗 그리고 哀宗의 것만이 『金史』의 本紀에서 확인되고,²⁰⁾ 다른 것들은 그 연도만이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 경우는 同書 권60~62의 ‘交聘表上·中·下’에 의해 송, 서하, 고려의 축하사가 ‘來賀’했다는 날로 그 생일을 추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3국의 외국사들은 일부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이 <표3>의 ‘연월일

18) 『遼史』本紀3 태종 天顯3년에 “天授節, 上御五鸞殿受羣臣及諸國使賀.”고 보이고, 同書 本紀4 會同7년10월

壬戌에도, “天授節, 諸國進賀, 惟晉不至.”고 있다.

19) 聶崇岐, 『宋史叢考』(華世出版社, 1986), 283쪽; 島田正郎, 『契丹國』(東方書店, 1993), 18쪽 참조.

20) “太祖…諱旻, 本諱阿骨打, 世祖第二子也. …咸雍四年戊申, 七月一日, 太祖生.”(本紀2 太祖), “諱璟, 小字麻達葛, 顯宗嫡子也. …大定八年, 世宗幸金蓮川, 秋七月丙戌, 次冰井, 上生. 翌日, 世宗幸東宮.”(本紀9 章宗), “哀宗諱守緒, 初諱守禮, 又諱寧甲速, 宣宗第三子. …承安三年八月二十三日生於翼邸, 仁聖無子, 養爲己子.”(本紀17 哀宗)로 보인다.

(추정)에 ‘來賀’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그 생일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기서 海陵王의 節日에 대해서는 特記할 점이 있다. 종래 中國史 측에서는 그의 節日에 대한 명칭이 오래 동안 未詳인 채로 남아 있었고, 『金史』에서도 유독 그 명칭만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표3> 과 같이 그의 節日이 龍興節이라는 사실은 『高麗史』를 통해 쉽게 확인되며, 이는 필자가 본문을 통해 공식적으로 처음 확인한 셈이 된다. 후술하는 것처럼 고려는 금의 황제 절일에 거의 매년 축하사를 파견하였고, 그 중 해릉왕 재위 중인 1150년에서 1157년 사이에 모두 7회 龍興節을 위한 사자가 파견된 것이 확인된다.²¹⁾ 『金史』는 물론 중국사에서 ‘興龍節’이라는 이름이 소멸된 것은 그가 최대의 폭군으로 평가된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추측되지만, 그의 사라진 생일명이 『高麗史』를 통해 재확인된다는 점은 당시의 중국사 혹은 한국사가 단순히 1국사의 범주 안에서 처리될 수 없는 점이 있음을 잘 보여준다.

3) 고려 국왕의 생일

고려 국왕의 생일도 종래 그다지 주의를 끄는 주제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 國史학계에서 專論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 국왕의 출생 시일 역시 의외로 『高麗史』와 『高麗史節要』에서 간단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그 검토를 위해 <표> 로 정리해 두었다.

이를 통해 고려도 중국 왕조처럼 국왕의 생일이 거의 모두 절일로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高麗史』에는 成宗원년(982년) 6월에 이르러 성종이 자신의 생일을 千春節로 정한 것이 고려에서 ‘節日之名’의 시작이라고 하였다.²²⁾ 이는 물론 동시대의 송이나 요보다는 늦은 것이며 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던 성종에게 군주의 생일을 국경일로 만드는 것 또한 수용할만한 사항이었을 것이다. ‘聖上節日’이라 칭해진 국왕의 탄생일은 이후 元正, 冬至, 八關會와 함께 4대 節日로 자리 잡았다.²³⁾ 아울러 고려에서는 權臣 李資謙이 자신의 생일을 ‘仁壽節’로 삼으려다 金富軾으로부터 “아직 人臣으로서 節을 칭하는 者가 있음을 듣지 못했다.”고 한 반대에 부딪힌 일화가 보이는 점은 흥미롭다.²⁴⁾

성종 이후 충렬왕대까지 거의 모든 왕이 자신의 생일을 절일로 제정하였지만, 몇 가지 예외가 보인다. 먼저 현종의 경우 절일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자신이 이를 사양했기 때

21) 『高麗史』 권17 世家17 毅宗4년에서 同書 권18 世家18 毅宗11년 사이의 기사 참조.

22) 同書 권3 세가3 成宗元年6월조에 “以王生日爲千春節, 節日之名, 始此.”고 있다.

23) 金庠基, 『新編 高麗時代史』,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6, p.798

24) 『高麗史』 권98 列傳11 諸臣 金富軾에 “昇中欲號資謙生日爲仁壽節, 富軾言, 生日稱節, 自古所無. 唐玄宗時, 始稱皇帝生日, 爲千秋節, 未聞人臣有稱節者. 平章事 金若溫曰, 侍郎議善.”고 있다. 김부식의 지적에 따르면 당시의 고려에서도 황제의 생일을 ‘節’이라 칭한 것이 唐의 玄宗의 ‘千秋節’부터였다는 것이 周知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이였다. 당시는 거란의 침략이 이어진 苦難의 시기에 해당하며, 현종은 그 속에서 자중하여 자신의 생일 축하를 피하였다.²⁵⁾

한편 즉위 직후 사망한 順宗은 절일을 제정할 겨를이 없었을 수 있다. 하지만 宣宗을 거쳐 현종과 숙종대에도 그 節日名이 연이어 보이지 않는다. 재위 기간이 짧았던 현종도에 초부터 그것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숙종의 경우는 생일 축하 행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²⁶⁾, 그 절일명 또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元宗 역시 절일명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아들(충렬왕)의 생일조차 ‘壽元節’로 제정된 차에²⁷⁾ 본인의 절일명이 없던 것은 이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충렬왕을 마지막으로 『高麗史』에서는 이후 왕들의 절일명이 더 이상 확인되지 않는다. 이것이 단순한 기록의 부재가 아닌 이상, 忠宣王부터는 이전과 달리 절일(명)을 특별히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거기에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충렬왕은 고려가 몽골의 사실상의 ‘屬邦’으로 전락하는 출발기에 있는 시점으로, 官制가 그 지위에 맞추어 격하되는 속에서 諸種의 호칭 역시 바뀌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실은 『高麗史』 권67 志21 禮9 嘉禮 忠烈王33년(1307) 6월丙午에,

壽元天聖節이 僭擬한 것 같아 고쳐서 이를 誕日이라 칭하였다.

고 보여, 이때부터 종전의 ‘天聖節’이라는 용어도 사용이 중지되어 단순히 ‘誕日’로 칭하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는 節日名의 폐지를 말하며 <표43> 처럼 忠宣王 이후 고려왕에게 그것이 보이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高麗史』의 凡例에

대저 宗을 칭하고, 陛下·太后·太子·節日·制·詔를 칭하는 類는 비록 僭踰하지만 지금은 당시에 칭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적어 그 實을 보존한다.

고 한 잘 알려진 기술처럼, 고려에서는 ‘節日’이 제정·축하되어 왔던 것이나, 충렬왕 말년에 ‘節日’을 칭하는 관례는 기본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 이미 인용

25) 『高麗史』 권4 世家4 顯宗3년6월癸丑 참조.

26) 『高麗史』 권11 世家11 肅宗元年 2월甲子 참조.

27) 『高麗史』 권25 世家25 元宗2년 정월癸亥朔에, “放朝賀. 以太子生日爲壽元節.”고 있다. 그 밖에 고려에서는 睿宗이 그 太子의 생일을 ‘永貞節’로 정하고, 또 太后에 대해서도 그 생일을 ‘至元節’로 제정하는 등의 예가 보인다. 『高麗史』 권67 志21 禮9 嘉禮 睿宗10년10월庚子에, “禮司請以太子生日爲永貞節, 令宮官僚屬進賀, 兩界·三京·八牧·三都護府上箋, 以爲恒式.”고 있고, 同書 권88 列傳1 后妃에 “睿宗即位, 尊爲王太后, 殿曰天和, 府曰崇明, 生辰曰至元節. 三年正月, 冊曰, “臣聞, 冊后之制, 歷代相因. 稱皇太者, 秦漢之通規, 以子貴者,…”고 보인다.

한 김부식의 “아직 人臣으로서 節을 칭하는 者가 있음을 듣지 못했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있어 보인다. 이에 따르면 고려가 成宗 이후 ‘節日’을 제정한 것은 고려가 중국의 ‘人臣(臣下國)’이 아님을 역설하지만, 충렬왕의 節日 폐지 이후는 ‘人臣’이 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충렬왕 이후 고려 국왕의 중국 체류 등이 길어진 점도 節日 행사를 중지하는 효과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²⁸⁾

한편 고려에서도 국왕 생일의 절일 제정은 비교적 신속히 이루어졌다. 毅宗의 예가 즉위 翫月로 가장 빠르며, 熙宗은 4개월 뒤, 인종은 5개월 뒤에 그것을 제정한 반면, 나머지는 즉위 다음 해(해당 국왕 元年), 특히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이나, 그에 임박해 절일을 公定한 것을 <표4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文宗만 제정 시기가 보이지 않을 뿐이다.

여기서 눈에 띄는 한 가지는 국왕의 절일 명칭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成宗, 德宗, 仁宗, 熙宗이 그 예에 해당하며, 이는 전체 15례에서 약1/4에 달한다.²⁹⁾ 그런데 성종과 덕종은 그 改名이 즉위년이 아닌 明年의 일로 비교적 시차가 있지만, 인종과 희종의 경우는 즉위년 중에 이미 제정한 것을 다시 바꾼 사례에 속한다. <표43>에 의하면 인종은 4월에 즉위한 후, 그 시기를 알 수 없으나 절일을 安貞節로 한 뒤 다시 同年 9월에 慶龍節로 개명한 것이고, 熙宗도 1월에 즉위해 그 절일을 壽祺節로 삼은 뒤, 동년 5월에 壽成節로 고친 것을 알 수 있다. 이 즉위 5개월 만에 절일명을 변경한 두 사례는 즉위 익년에 비로소 절일을 제정한 다른 예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異例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이 절일 변경이 잦은 이유는 분명치 않지만, 한 가지 주의되는 것은 충렬왕의 예이다. 이미 지적한 것처럼 충렬왕은 절일명을 가진 고려 최후의 왕으로 그것은 ‘壽元節’이지만, 실은 그는 太子 때부터 조정으로부터 자신의 생일을 축하 받고 있었고, 그 절일의 이름이 ‘壽元節’이었다.³⁰⁾ 이 예로부터 인종과 희종의 경우도 태자 때부터 安貞節과 壽祺節이라는 고유한 절일을 갖고 있다가, 각기 왕으로 즉위한 후 종래의 이름을 바꾸어 慶龍節과 壽成節로 고쳤을 가능성을 추정해볼 뿐이다.

2. 節日의 명칭과 ‘改期受賀’의 유행

이상의 기초적 작업을 토대로, 본장에서는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 군주의 생일 문제와 관련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고찰할 것이다. 특히 당시 군주의 생일이 각국의

28) 桑野英治, 『高麗末期の儀禮と國際環境』, 『久留米大學文學部紀要(國際文化學科)』 21, 2004.

29) 이러한 예는 요과 금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宋朝에서 2례(太宗과 寧宗)가 보일 뿐이다.

30) 『高麗史』 권25 세가25 원종2년 정월癸亥朔에 “放朝賀. 以太子生日, 爲壽元節”이라 보인다.

교류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계기였다는 관점에서, 그 명칭과 축하의 방법(시기)에 관한 문제를 송·요·금 및 고려 4왕조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정리·검토하는 것이 주된 과제이다.

1) 節日의 명칭에서 보는 모방과 회피

절일 제정이 일반화됨에 따라 각 왕조는 그 명칭의 選定에 신중했다. 그것들이 모두 상서롭고 축원에 가득 찬 吉稱이 되어야 함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송, 요, 금 및 고려 왕조에서 사용된 총 50개 가까운 절일의 명칭을 음미해볼 때, 거기에는 각 왕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듯한 경향이 포착된다. 또한 절일의 명칭은 중국 왕조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 오던 ‘年號’의 명칭과도 일정한 관련이 있어 보인다. 연호 역시 吉稱으로 지배자의 입장에서 부여한 願望과 의미는 절일의 명칭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먼저 송은 절일 명칭 선정에서 4국 중 가장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였다. 이때는 무엇보다 그 명칭이 기존 왕조에 先例가 있는지의 여부를 고려했을 것이며, 그 결과 송에서는 唐과 五代의 절일과 중복된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미 지적한대로 당~오대에 절일 자체가 아직 많지 않았지만, 송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복 회피를 위해 先代의 사례를 파악했을 것으로 보인다. <표1>에 두 차례 보이는 절일명의 개정 사례는 바로 이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즉 송의 태종이 자신의 절일을 乾明節로 정했다가 얼마 후 壽寧節로 고친 것은 ‘乾明’이 北齊의 연호인 것을 뒤에 발견했기 때문이며, 寧宗이 天祐節을 瑞慶節로 개정한 것도 처음에는 그것이 당의 昭宗과 後梁 태조의 연호로 사용된 것을 확인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仁宗의 乾元節이 당 숙종의 연호로 약 2년간(758-760)사용된 것과 중복되는 점은 유일한 예외이다. 이것이 송조의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묵인한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부주의라면 太宗代처럼 그 명칭을 개정했을 것이나 그러한 동향이 없는 것은 후자의 가능성을 좀 더 크게 한다. 이는 송조가 절일명을 제정하는 데에 기존의 절일은 물론 가능한 기존 연호와의 중복도 피하려 한 것을 말지만,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신중한 송조도 수 없이 많은 기존 연호와의 완전한 중복 회피를 처음부터 이루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池田溫은 중국 왕조에서 연호의 중복 회피 현상이 특히 송이 건국되는 10세기 후반 이후 현저했고, 宋의 帝王들도 先例가 없는 연호를 세우려는 의식을 갖고 있었다, 고 설명한다.³¹⁾ 즉 그는 중국에서 사용된 연호의 왕조 간의 답습 비율이 의외로 높아 30%에 나 달하는 것을 확인하면서도(총 982개 중 單用된 것이 526개, 중복 사용은 160중 456

31) 池田溫, 『東亞年號管見』, 『東方學』 82, 1991

개), 한편으로는 그 답습률이 송대 이후에 저감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³²⁾ 연호의 중복을 기피했다면 절일명의 중복도 당연히 꺼렸을 것이고, 따라서 양자는 같은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요와 금에서는 송에서 강했던 명칭 중복의 회피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했음이 주목된다. 송과 달리 요의 절일명에는 특히 중원의 五代 왕조가 이미 사용한 명칭과 겹치는 예가 보인다. 즉 필자가 그 개략을 정리한 <표5>와 비교하면, 요 황제의 永壽節(興宗)과 天淸節(景宗)은 각각 後周의 태조와 세종의 절일명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전자는 951년에 후주의 태조가 제정한 뒤 꼭 80년이 지난 시점(1031년)에 다시 제정되었고, 후자는 후주 세종이 제정한 해(954년)로부터 불과 18년 뒤의 일이다.³³⁾ 이러한 움직임이 단순한 우연인지, 아니면 의식적인 계승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전자라면 遼朝가 절일명 제정에서 중원 왕조의 先例를 깊이 따지지 않은 것이 되고, 후자라면 태왕조의 절일명칭이 중복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이 된다. 다만 후주의 태조와 세종이 비록 名君이라 하지만, 요와 대립했다는 점에서 볼 때 필자는 전자에 무게를 두고 싶다.

遼朝에서 이상의 두 예를 뺀 나머지의 절일명도 대부분이 前代의 연호를 답습한 것으로 확인된다. 太宗의 ‘天授節’의 ‘天授’는 당 측천무후 시기의 연호이며, 道宗의 天安節의 ‘天安’은 북위의 연호이며, 天祚帝의 天興節의 ‘天興’도 역시 북위의 연호였다. 절일명을 가진 요의 황제 6인 중 기존의 절일명 또는 연호명과 직접 중복되지 않는 것은 聖宗의 千齡節뿐이다.³⁴⁾

한편 금에서는 연호의 명칭을 절일명으로 借用한 예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서는 長壽를 의미하는 ‘萬’字에 태어난 계절을 결합한 萬春節과 萬秋節(長春節도 그 연장선의 것), 그리고 역시 장수를 기원하는 萬壽節과 天壽節처럼 비교적 단순하고 직접적인 용어가 주를 이룬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金朝가 天淸節(太宗), 天壽節(章宗), 長春節(宣宗) 등의 절일명을 그대로 사용한 점에서는 이 왕조 역시 태왕조의 절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 거리낌 없는 자세가 요와 다르지 않음을 반영한다. 天淸節은 이미 지적한 대로 후주의 세종이 처음 사용한 것을 요의 景宗이 계승한 것이었으나 금에서 태종이 다시 답습했기 때문이다. 요가 금에게 적대 관계였다는 점과 금에서 사용한 최초의 절일이 요와 후주에서 이미 사용된 것임을 고려할 때 그것은 더욱 그렇다. 만일 금이 前代의 사

32) 위와 같음.

33) 이상에 대해서는 『舊五代史』 권114 周書5 世宗1 顯德元年7월壬辰, 同書권111 周書2 太祖2 廣順元年6월甲午, 『遼史』 권18 본기18 興宗 景福元年閏10月辛亥, 同書권8 본기8 景宗 保寧1년 등을 참조.

34) 그밖에도 요에서는 應天太后的 절일 명칭인 永寧節이 후한과 서진에서 사용된 연호이고, 齊天太后的 順天節도 唐 中宗의 황후의 존호에 해당한다. 또 요 法天太后的 應聖節은 후당 明宗의 그것과 이름이 동일하다.

정을 몰랐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욱더 금조의 단면을 드러내는 부분이 될 것이다. 여기에 후주의 恭帝가 사용한 天壽節과 송의 태조가 사용한 長春節까지 금에서는 모두 7개가 존재한 절일명 중에서 3개가 前代 또는 인근의 왕조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명칭을 답습한 꼴이 된다.

이상의 검토를 통해 요와 금에서는 중원 왕조에서 이미 사용된 절일명이나 연호명과 중복되는 것이 많고, 거기에는 의식적인 承襲이라는 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대범한 북방민족의 기질을 반영하는 일면으로 보인다. 완전한 同字가 아니더라도 그 중에 포함된 單字 중에도 중원 왕조의 영향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렇다면 이것은 앞에서 소개한 池田溫이 10세기 중반 이후 중원왕조에서 나타난 경향과 똑같이 “선례가 있는 연호를 피하려는 의식이 거란의 조정에서도 지배적이었다고 보인다”고 한 지적³⁵⁾과는 상반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려에서도 이상과 같은 모방과 회피의 양면이 병존한다. 먼저 고려 최초의 절일명은 成宗의 千春節이지만, 이것이 얼마 후 千秋節로 바뀐 것은 일단 千春節이 후당 末帝의 절일과 겹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표43〉). 그러나 개정된 명칭인 千秋節도 당 현종의 것이었음을 생각할 때, 고려에서는 비록 이것이 중복임을 알았어도 당 현종의 聲望에 비추어 처음부터 개의치 않고 襲用했을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成宗은 12월생으로 절기가 겨울이며, 따라서 봄이나 가을과 모두 관계가 없음에도 ‘千春’과 ‘千秋’를 쓴 것은 이미 검토한 金의 경우와 대비된다. 고려에서는 ‘千春’이나 ‘千秋’를 긴 세월이라는 쪽에 비중을 두어 사용한 반면, 금에서는 이를 특히 황제의 출생 계절에 맞추어 사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고려의 두 번째 절일인 穆宗의 長寧節은 宋 眞宗의 황후인 章獻太后 劉氏의 長寧節(정월8일)과 중복된다. 하지만 시간 관계에서 볼 때 이 이름은 고려에서 먼저 사용한 것이며, 따라서 중복 회피를 지향하는 송에서도 고려의 절일명까지는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두 예를 빼면 고려의 절일명이 중국 왕조의 그것과 겹치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고려도 절일 제정에서 중국 및 북방 왕조의 사례를 염두에 두었을 것이다. 대신에 고려의 그 밖의 절일명은 상당수가 중국 왕조의 연호와 중복된다. 19개(개명된 4례를 포함)의 절일명 중 德宗의 仁壽節(隋 文帝)과 應天節(당 中宗 존호), 睿宗의 威寧節(西晉 武帝), 毅宗의 河清節(北齊 武成帝), 明宗의 乾興節(宋 眞宗), 康宗의 光天節(十國 前蜀의 高祖, 南漢 殤帝) 등 6례가 그것이다. 그 밖에 宣宗의 天元節(북주 宣帝의 尊號)과 熙宗의 壽成節(송 효종 황후의 존호)도 중국에서 이미 사용된 전례가 있는 명칭이다. 이것이 고려의 의

³⁵⁾ 池田溫 앞의 논문 및 『遼史』 권88 耶律資忠傳 참조.

식적인 답습인지 여부는 분명치 않지만, 중국이건 고려이건 연호와 절일을 합쳐 총 약 1000개가 넘는 명칭을 모두 피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佳稱을 만들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2) 동아시아에서 ‘改期受賀’의 유행과 高麗

(1) 북방 민족에서 ‘改期受賀’의 유래와 전통

이미 강조한 것처럼 帝王의 생일은 동아시아 각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공식 외교관계가 있는 국가 간에는 그 축하사를 교환하는 것이 常例였다. 그런데 필자는 이와 관련한 사료를 접하면서 이를테면 어떤 帝王의 실 생일이 3월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왕조로부터의 축하사 來訪이 12월인 것처럼, 제왕의 실제 생일과 외국 축하사의 방문 시기에 큰 시차가 존재함을 수 없이 발견하고 의아해 했다.

실은 이는 契丹史 전문가인 傅樂煥에 의해 일찍 문제시되어, 그 역시 오랜 동안 의문을 품어오다가 그 힌트를 金代의 사료에서 찾아, 결국 그것이 金 왕조의 판단으로 인한 의도적 변경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부락환은 이러한 관례가 遼에서도 존재함을 詳論하고, 金의 ‘改期受賀’는 遼의 전통을 따른 것이라고 하였다.³⁶⁾

부락환의 선구적 지적을 기초로, 최근에는 金史 연구자 李輝에 의해 金의 ‘改期受賀’의 실태에 대해서도 그 대강이 파악되었다. 그는 金에서의 ‘改期受賀’는 적어도 熙宗과 章宗代에는 확실히 존재하여, 전자는 생일 기념일을 7월7일에서 1월17일로, 후자는 7월27일에서 9월1일로 옮겼고, 그 이유를 전자는 희종의 부친(景宗, 태조의 제2자)의 忌日을 피하기 위해서, 후자는 雨期를 피해 外國使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중요한 사실로서, 희종대의 ‘改期受賀’가 1월로 이동한 것은 生辰을 正旦과 이어지게 함으로써 沿途의 供應과 在京 체류 동안의 招待 등을 한번만 준비하여, ‘兩番’의 번거로움을 면하도록 한 배려 때문이라는 것도 확인되었다. 중원 왕조와 고려에서도 물론이었지만 특히 북방 민족에게 사절의 응접은 큰 부담이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요·금 왕조의 ‘改期受賀’는 그들의 시간관념이 엄격하지 않았던 특성과 관련이 있었다.³⁷⁾

부락환과 이휘의 연구로 파악된 遼·金代 ‘改期受賀’의 관행은 당시 동아시아의 외교 실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일면을 제공하였다. 다만 부락환과 이휘는 이 문제를 고찰하는 방법으로 각각 『遼史』와 『金史』를 기본 사료로 이용하였고, 또 그 분석의 대상을 요·송과 금·송의 관계로 고정하였기 때문에 해당 문제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즉 당시의 요와 금왕조에 대한 생일 축하사로는 宋의 사절만이 아니라

36) 부락환, 앞의 논문.

37) 이휘, 앞의 논문.

고려도 항시 참여하고 있었고, 따라서 그러한 고려사질의 동향을 동시에 검토해야 ‘改期受賀’의 真相에 더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절에서는 그 관계를 정리한 <표> (본문 말미의 <附表1> 과 <附表2>)를 토대로, 고려사의 동향에 주의하면서 부락환과 이휘가 언급하지 않거나 미진한 ‘改期受賀’의 내용을 보강하고자 한다.

(2) 고려를 포함시켜 본 ‘改期受賀’의 實際

① 요의 ‘改期受賀’

부락환은 자신의 결론을 정리한 <표6> 과 같이 요에서는 興宗, 道宗 그리고 天祚帝 시기에 ‘改期受賀’가 존재하였고, 반면 聖宗代에는 그것이 없었다고 본다. 12월생인 聖宗은 生日이 정월의 賀正使를 맞는 시기와 근접한 이유로 時日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부락환은 이해한다. <부표1>의 ‘宋使’欄은 부락환이 『遼史』에서 적출한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것으로, 宋使는 실제로 대부분이 12월에 거란 조정에 도착(또는 遼帝에 慶賀)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表 중의 9~11월 사이에 宋使가 도착(또는 慶賀)했다³⁸⁾는 일부 사례는 부락환의 지적대로 『遼史』의 誤記가 틀림없고, 이들도 12월 중에 도착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부락환은 언급하지 않지만 송에서 聖宗의 생일을 위한 축하사를 대부분 9월에 임명한 사실도 그것을 반증한다.³⁹⁾ 여기에 高麗에서도 聖宗의 생신 축하사를 11월 중순을 전후해 파견⁴⁰⁾하고 있음이 同表에 의해 확인된다. 이는 고려사의 도착 시점인 12월이 대략 요 성종의 생일 즈음임을 반증한다. 이로써 요에서는 외국사를 포함시킨 성종의 축하의식이 12월27일에 먼저 치러진 다음, 해가 바뀐 첫날에 별도로(혹은 동시에) 파견되어 온 正旦使에 의한 賀正의식이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어지는 興宗은 요에서 ‘改期受賀’를 한 첫 황제로, 그 실태는 <부표1>의 사례를 통해 확인된다. 부락환은 그 ‘改期受賀’의 시점을 ‘?’를 남긴 형태로 ‘정월’로 추정하였다 (<표6>). 宋使의 도착을 전하는 사례들이 12월에서 明年 정월에 걸쳐 있기 때문이다. 고려 측에서도 永壽節과 정단을 축하하는 사절이 11월 하순 ~ 월말 무렵에 파견되었기 때문에 그 도착 시점이 宋使와 비슷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改期受賀’의 시점이 부락환의 추정처럼 반드시 정월인지는 분명치 않고, 聖宗처럼 전년의 12월 말로 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보인다. 하지만 어느 쪽이라 해도 요에서는 이로써 축

38) 『遼史』는 요 황제의 생신 축하를 위해 찾아온 송, 고려, 서하 등 사신들의 來訪을 알리는 기사를 대부분을 ‘(某日)에來賀했다’고 적고 있으나, 이것이 해당 외국사의 ‘도착일’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축하일’인지 명료하지는 않다.

39) 『續自治通鑑長編』의 해당 부분 참조.

40) 고려 측의 요·금에 대한 사신 파견 사실은 『高麗史』에 가장 충실히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하게도 ‘파견일’만을 적을 뿐 상대국의 정확한 도착일은 알 수 없다.

하사를 응대할 인원을 두 번 差役하지 않기 위한 遼朝 본래의 목적은 달성한 셈이 된다.

道宗 시기가 되고나면 『遼史』에 宋使의 도착일(또는 축하일)을 전하는 기사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이 때문에 부락환은 宋人의 文集 등에 보이는 일정 등을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그 ‘改期受賀’일을 ‘12월7일’로 추정하였다.⁴¹⁾ 이 문제 역시 고려 측의 동향을 참고로 접근하면 高麗使는 1096~1100년에는 대부분이 10월말에 파견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들은 부락환의 추정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된다. 그러나 계속해서 〈부표1〉에 따르면 시기가 더 앞선 1057~1095년에 파견된 고려의 축하사들은 2월, 4월, 5월, 11월, 12월 등에 파견되어, 그 시기가 일정하지 않을뿐더러 축하일인 ‘12월7일’과 시차가 상당히 커서 모두 이례적인 것에 속한다. 이들은 비정상적인 시기에 파견된 까닭에 사료에도 남은 것이겠지만, 이들 사례는 고려의 생신 축하사 중에 ‘改期受賀’日和 다른 시기에 요를 찾아온 자들도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

天祚帝의 ‘改期受賀’일에 대해서도 부락환은 12월로 추정하며, 이것이 틀리지 않음은 역시 〈부표1〉에 보이는 고려사의 파견 시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예외는 보이지 않지만, 대부분이 10월 하순 경에 파견되었고 따라서 12월 중에 도착한 것이 된다.

② 金の ‘改期受賀’

金에서 이어진 ‘改期受賀’의 정황은 요에 비해 비교적 분명하다. 『요사』는 외국 축하사가 도착 한 시일을 聖宗과 興宗 시기의 宋使에 한정해 전할 뿐, 道宗과 天祚帝 시기의 宋使와 高麗使 전부에 대해서는 도착 기일을 적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는 『續自治通鑑長編』이나 『高麗史』에 보이는 해당 사절의 파견 시기를 통해 추정해야 한다. 그러나 때번의 使行은 일정이 다를 수 있어 정확한 도착일의 추정이 불가능에 가깝고, 실제로 성종과 흥종 시기에 나타난 宋使의 도착(혹은 축하)일도 제각각이다. 뿐만 아니라 『요사』의 기일(도착 혹은 축하일)은 ‘來賀’를 한 시점으로 이 날에 上壽(賀禮)가 행해진 것이라고 하면 이는 생일 축하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았을 가능성마저 생각하게 한다. 나아가 宋使와 高麗使의 도착이 遼帝의 생일이 있는 月中임은 이미 확인한 바이지만, ‘來賀’의 시점이 반드시 그와 同日이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즉 이것은 양국의 사절이 遼帝에 대한 賀禮를 날을 달리해 거행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함을 말한다. 거란 측의 禮書에는 宋使가 고려 등 기타 외국사와 한꺼번에 하례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고, ‘同日’ 여부까지는 몰라도 적어도 국가별로 시차를 두고 하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송 측의 禮에서도 같으며, 송과 거란은 상대방 사절로부터의 하례를 격이 다른 기타 외국사와 동일 장소에서 受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⁴²⁾

41) 부락환, 앞의 논문.

42) 『遼史』 권51 禮志4와 『宋史』 권119 禮22 등을 참조.

이에 비해 금의 ‘改期受賀’는 방식이 사뭇 달랐다. 먼저 태종의 天淸節은 금의 국제 관계가 안착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 처음부터 송, 고려, 서하의 3국 사절이 모두 참석하는 형식이 아니었다. 서하가 처음부터 축하사를 파견한 이후 고려가 얼마 후 동참하였고, 송은 금과의 紹興和議(皇統講和)가 성립된 직후인 1243년부터 축하사를 보냈다 <부표2>. 이미 이휘가 지적했고, 또 <부표2>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천청절은 10월15일에 거행되었지만, 태종의 實生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改期受賀’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희종의 중반 이후 드디어 송의 사절도 참여함으로써 송, 고려, 서하의 3국 사자가 金帝의 생일에 동시에 모였다. <부표2>는 『金史』에서만 유일하게 실려 있는 『交聘表』의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그에 따르면 송, 고려, 서하로부터의 사절은 다소 변동은 보이지만 대부분 같은 날에 金 황제의 생일을 축하한 것을 알 수 있다. 『交聘表』는 이들에 대해 대부분 “(某日)賀……節”이라고 기재한다. 熙宗이 부친의 忌日을 피하기 위해 절일을 7월7일에서 1월17일로 옮긴 것은 전술한대로 이지만, 예를 들어 3국 중 高麗는 그에 맞추어 11월 하순 경에 사절을 파견한 예가 가장 많고(<부표2>), 따라서 明年의 희종 생일 전에 도착해, 1월17일에는 송·서하의 사절과 함께 하례한 것이 된다. 이는 이미 검토한 요의 축하 방식과 다른 것이며, 『金史』의 禮志에도 외국사의 생일 축하 방식은 송, 고려, 서하가 同日에 같은 장소에 동참한 것을 전제로 전개된 것이 확인된다. 이 점은 金이 ‘臣下國’으로까지 지위가 실추된 송을 포함한 고려, 서하의 3국 사절을 동시에 참가시키는 형식의 하례를 받음으로써, 遼보다 한층 자존감을 과시한 것으로 생각된다.⁴³⁾

이어지는 해릉왕대의 양상도 前代와 많이 다르지 않음을 <부표2>는 설명한다. 다만 해릉왕의 실생일을 알 수 없어 1월16일의 受賀가 ‘改期’인지는 불분명하며, 이휘는 이에 대한 추정을 보류하였지만, 필자는 그 시일이 희종대와 거의 같이 元旦에서 멀지 않은 점 등에서 ‘개기수하’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싶다. 아울러 해릉왕의 節日名(龍興節)이 중국 측 기록에는 보이지 않고, 『高麗史』에서만 확인되는 점은 필자가 앞서 지적한 바와 같다.

名君 世宗의 萬春節(3월1일) 역시 출생일일 不明으로 ‘改期’ 여부는 정확하지 않다. 송과의 충돌로 인한 초기 3년을 제외하면 세종 재위 중에도 3국으로부터의 축하사는 어김 없이 찾아와 3월1일에 축하 의식이 거행된 것을 알 수 있다. 3월1일은 賀正에서 시기가 멀고 현재로서는 다른 이유를 확인하지 못하는 이상 ‘개기수하’로는 보이지 않는다.

이에 반해 章宗이 생일(7월27일)을 9월1일로 ‘개기수하’한 것은 이미 설명한 대로이다. 『金史』에는 “有司에 敕하기를 宋, 高麗, 夏에 移報하여 天壽節을 九月一日에 來賀하게 했다”(권9 분기9 大定29년6월乙卯)고 보여, 장종 즉위년에 天壽節의 일자를 인근 3국에 공

⁴³⁾ 『金史』 권38 禮11 『外國使入見儀』참조.

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金朝는 새 황제가 즉위할 때마다 필요에 따라 節日을 改期하거나 아니면 생일 그대로 확정해 이를 송, 고려, 서하에 통지한 것이다. 반대로 송 등의 3국은 그러한 금의 요구에 맞추어 축하사를 파견한 것이며, 이는 금과의 ‘주종관계’의 일면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그런데 『金史』에는 『交聘表』이외에 『本紀』에도 외국 生辰使에 대한 기록이 보이는데, 거기에는 생신사의 축하 시점이 다르게 되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즉 〈부표2〉의 ‘章宗’ 부분에서 인용한 『본기』인용문에는 모두 天壽節(9월1일)에 ‘來賀’했다고 보이는 것에 대해, 『교빙표』쪽에서는 예외도 있지만 대부분 그보다 2~4일 빠른 8월27~29일 사이에 ‘賀’했다고 되어 있다. 『교빙표』는 3국 사절의 金 조정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외국사는 절일 전 3일 전후에는 金의 국도에 도착해야 했다고 보인다. 〈부표2〉에는 그러한 예가 世宗代에도 2례가 존재한다.

또한 장종 시기에는 1208년(泰和8)에 유일하게 10월에 하례가 행해졌는데, 이는 관련 사료로 “詔하여 天壽節을 十月十五日로 옮겼다.”(『금사』 권12 본기12 泰和8년5월癸亥)고 보여, 특별히 ‘改期受賀’를 한차례 더 한 결과였음을 알 수 있다. 재위 마지막 해의 조치로 그 배경이 분명하지는 않지만, 특기할 만한 사례에 속한다.

衛紹王 이후 외국으로부터의 축하사가 급감해 송, 고려, 서하의 3국을 망라한 축하사가 회동하지 못한 것은 금의 정치 혼란과 몽골의 도전 등 국세 부진의 현상을 반영한 것임을 말할 나위 없다.

③ 고려에서의 ‘改期受賀’

‘개기수하’가 고려에서도 존재한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이 관습이 요·금에서 먼저 유행한 것이므로 적어도 그 영향을 받은 것임은 분명하다. 다만 ‘개기수하’는 이미 검토한 것처럼 접대의 번거로움을 경감하기 위한 이유가 크고, 따라서 그 시점을 正日에서 멀지 않게 옮기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먼저 외국사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고려에서는 본래 금으로부터 賀正使는 찾아오지 않는 상태였으므로 금과 같은 필요성은 적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문제는 고려가 그 밖에 있었을 모종의 필요에 의해 요·금 측에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파견자의 입장에 있던 요·금이 生辰使를 자신들의 편의 등으로 고려에 요청해 실현되었을 것이다.

요에서 고려에 파견된 생신사는 『高麗史』에 본격적으로는 1023년부터 나타나 1116년까지 모두 73회가 보인다.⁴⁴⁾ 이 사이 정치적 관계 등으로 中絶도 있었지만 요는 고려에 거의 유일한 정기 사절로 생신사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 중 顯宗代(1009-1031년 재

44) 成宗 사망 직후 그의 千秋節을 위해 파견된 사절과 그 이후 先王의 생신사가 2회 더 보인다.

위)에는 1023년 이후 1029년까지 7년 연속 파견되어 왔고, 이들은 모두 7월의 朔日에 ‘來賀生辰’했다⁴⁵⁾하고 현종의 실생일이 7월이므로 ‘개기수하’에 해당하지 않는다. 靖宗 시기(1034-46년 재위)는 요와의 대립이 지난 1039년부터 1045년까지 7회 연속 파견되어 왔고, 이도 모두 靖宗의 생일이 있는 7월 중의 ‘來賀生辰’이었다.⁴⁶⁾ 이어서 재위 기간이 길었던 文宗 시기(1046-1083년 재위)도 1048년에서 1082년까지 사이에 1054년과 1062년의 예외를 빼고 33회나 파견되어 왔고, 이 역시 모두 12월초에 ‘來賀生辰’하여 그 실생일과 同月 중의 일이었다.⁴⁷⁾ 다시 宣宗 시기(1083-1094년 재위)에도 1085년에서부터 1093년까지 9회 ‘來賀生辰’한 것이 모두 9월의 일로 그의 생신 달과 일치한다.⁴⁸⁾

이상과 달리 숙종 시대(1095-1105년 재위)에만 왕의 실생일이 있는 달과 遼使의 ‘來賀生辰’의 달이 일치하지 않는다. 즉 1098년부터 1104년까지 7회 연속되는 요의 생신사는 모두 12월 중에 고려를 방문하여 숙종의 생일인 7월과 거리가 멀다.⁴⁹⁾ 이는 고려가 요와 관계를 갖는 마지막 시기인 예종대(1105-1122년 재위)의 사례⁵⁰⁾를 포함해 생각해도, 전체 사례에서 유일한 예외에 속한다. 왜 이 시기에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 사정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이것이 북방 왕조에서 유행하던 ‘개기수하’가 고려에서도 이미 요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실례임은 틀림없다.

요와의 관계에서는 ‘예외’에 가까웠던 고려의 ‘개기수하’는 금과의 관계 속에서 본격화되고 일반화되어 갔다. 즉 고려에서 금과 상대한 仁宗에서 熙宗에 이르는 시기 동안에는 金の 축하사가 모두 실생일이 아닌 달(月)에 찾아왔다. 금 말기에 해당하는 康宗과 高宗

45) 『高麗史』의 1023년7월癸亥朔, 1024년7월丙戌朔, 1025년7월辛巳朔, 1026년7월甲辰朔, 1027년7월己亥朔, 1028년7월乙未(2일), 1029년7월戊午朔조를 참조, 아울러 1031년7월미상 조에는 “契丹賀先王生辰使耶律溫德·趙象玄來.”라고 보인다.

46) 『高麗史』의 1039년7월미상, 1040년7월미상, 1041년7월辛酉(14일), 1042년7월乙卯(14일), 1043년7월丁卯(2일), 1044년7월癸酉(14일), 1045년7월丁酉(14일)조 등을 참조.

47) 『高麗史』의 1048년11월己未(25), 1049년12월己未朔, 1050년12월甲申朔, 1051년12월戊寅朔, 1052년12월壬申朔, 1053년12월丙申朔, 1055년12월12월甲寅朔, 1056년12월戊申朔, 1057년12월癸卯朔, 1058년12월丁酉朔, 1059년12월辛酉朔, 1060년12월丙辰朔, 1061년12월庚辰朔, 1063년12월戊辰朔, 1064년12월壬辰朔, 1065년12월丙戌朔, 1066년12월辛巳朔, 1067년12월乙巳朔, 1068년12월己亥朔, 1069년12월癸亥朔, 1070년12월丁巳朔, 1071년12월辛亥朔, 1072년12월乙亥朔, 1073년12월庚午朔, 1074년12월甲子朔, 1075년12월戊子朔, 1076년12월癸未朔, 1077년12월丁丑朔, 1078년12월辛丑朔, 1079년12월乙未朔, 1080년12월己未朔, 1081년12월癸丑朔, 1082년12월丁未朔 등.

48) 『高麗史』의 1085년9월미상, 1086년9월甲子(9일), 1087년9월戊午(9일), 1088년10월丁丑(5일), 1089년9월乙亥(8일), 1090년9월辛未(10일), 1091년9월癸巳(8일), 1092년9월乙酉(5일), 1093년9월壬午(7일) 등.

49) 『高麗史』의 1098년12월丙戌(12일), 1099년12월壬寅(5일), 1100년12월癸巳朔, 1101년12월丙午(20일), 1102년12월癸丑(3일), 1103년12월戊申(3일), 1104년12월丙辰(17일) 등.

50) 『高麗史』의 1107년정월庚寅(3일), 1108년정월甲寅(3일), 1109년정월戊申(3일), 1110년정월壬寅(3일), 1111년정월戊辰(5일), 1112년정월辛酉(3일), 1113년정월乙卯(2일), 1114년정월庚辰(3일), 1115년정월丙子(5일), 1116년정월戊辰(3일) 등 참조.

대에 축하사의 파견은 더 이상 없었지만, 그에 선행하는 시기에 ‘개기수하’가 일관된 것은 특기할만하다.

금은 1127년에 처음으로 고려에 생신사를 보낸 이래 1211년까지 85년간 약 72회 파견하였다. 이것은 요가 94년간 73회를 보낸 것과 비교해 거의 비슷한 빈도이다. 仁宗 시기(1122-1146년 재위)에는 양국이 국교를 맺은 직후(1127년)부터 인종 말년까지 2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생신사가 방문하였다. 그런데 이때의 ‘來賀’ 시점은 인종의 실생일인 10월이 아니라 모두가 해를 넘긴 정월, 그것도 정월7일로 거의 통일되어⁵¹⁾ 있음이 『高麗史』에서 확인된다. 고려는 금과의 관계에서 초기부터 ‘개기수하’로 임한 것이며, 또 그것은 元과 멀지 않은 시점이었다.

毅宗代(1146-1170년)에도 즉위 익년부터 1169년까지 21회가 확인되어, 前代에 이어 금의 생신사 파견이 변함없이 이어졌다. 1161년과 1162년에 기록이 보이지 않는 것은 금 측에서 발생한 정변으로 인한 것이었다. 또 이때의 金使는 대부분 11월17일에 ‘來賀’하고 있으므로⁵²⁾ 역시 ‘개기수하’(의종의 실생일은 4월)임을 알 수 있고, 그 시점은 전회와 달리 연말 가까운 것이었다.

다시 明宗代(1170-1197년 재위)에는 1174년을 初回로 1175년, 1184년, 1185년⁵³⁾의 3회 缺回를 빼고 1197년까지 총 21회 파견되었다. 이때도 金使의 ‘來賀’는 ‘개기수하’에 따른 것으로 명종의 생일이 10월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1월17일에 도착하였다.

고려에서 常例화된 ‘개기수하’는 神宗(1197-1204년 재위)이 즉위해도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때는 그 실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정황이 『高麗史』에 전한다.

金이 禮部侍郎劉公憲을 보내와 生辰을 축하했다. 威成節은 본디 7월이나, 前朝의 大定甲午年例에 의해 十二月初一日을 節로 삼으니, 마침내 常例가 되었다.(同書 권21 神宗3년(1200)년11월辛巳(29))

이것은 金이 처음으로 파견한 神宗 생신사의 도착과 관련해 그 생일인 威成節을 7월에서 12월1일로 바꾸어 치르게 되었다는 것을 特記한 것이다. 이때의 金使의 도착에 대해서는 사전에 양국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 틀림없고, 이와 관련해 사료에는 金이 고려의 明宗에 첫 생신사를 보내기 2년 전(1172년)에는 명종의 생일이 언제인지를 문의하는 내

51) 1135년의 金使단 정월壬子(8)에 ‘來賀’하였다고 『高麗史』에 보인다.

52) 의종 후기에는 14, 15, 16, 22일 등의 예가 1회 정도씩 보이며, 1156년11乙酉(17)의 경우는 단지 ‘來’로만 되어 있으나 이것이 생신사의 파견임을 정황상 틀림없고, 또 1161년의 경우는 金에서 고려 생신사를 임명한 것이 『金史』에서 확인까지 되지만 『高麗史』에 보이지 않는 것은 결국 도착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53) 1184년과 1185년의 缺回는 喪中이던 고려의 상황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용이 보인다.⁵⁴⁾ 따라서 이것은 금 측이 명종의 실생일을 확인한 후에 고려와 협상하여 ‘개기수하’의 날을 정한 것을 추정시키며, 지금 인용한 『高麗史』는 神宗代에도 그 방식에 따라 ‘개기수하’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文中의 ‘大定甲午年’은 금 世宗의 大定14년으로서 1174년에 해당하며, 이는 신종대에도 그 예와 같이 ‘개기수하’를 하되 그 시점까지 ‘1월17일’로 따라한 것은 아니며, 결과적으로는 12월1일로 정해졌다고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신종대에 4회 연속 금의 생신사가 찾아온 뒤, 熙宗代(1204-1211)에도 거의 연속해서 ‘來賀’ 기사가 보인다. 이 시기는 전대와 달리 명료한 기사가 비교적 적으나 필자는 6회로 추정하지만,⁵⁵⁾ 그 후 康宗과 高宗 시기에는 기사가 일체 보이지 않게 된다.

54) 『高麗史』 권19 본기19 明宗 2年12월壬寅에 “金移牒, 問王生日”이라 있다.

55) 『高麗史』에 金의 생신사 도착이 명확한 것은 1208년11월甲寅(18) 조가 처음이나, 『金史』본기에는 1205년과 1207년10월에 고려에 보이는 생일사가 임명된 것이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들이 그대로 고려에 도착했을 가능성을 고려했다. 또한 『高麗史』에는 1209년11월과 1210년11월壬寅(6)에 도착한 金使에 대해 ‘來’로만 설명하나 이는 당연히 생일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明 天啓年間の 陵工과 殿工 비용 조달

서 인 범(동국대)

目次

- I. 머리말
- II. 慶陵 조영과 三殿 등의 건립
- III. 營建비용의 財源 조달

I. 머리말

泰昌帝(재위 1620)는 鴻臚寺丞 李可灼이 권한 紅丸을 복용한 후 재위에 오른 지 겨우 29일 만에 갑자기 사망하였다. 뒤를 이어 장자 天啓帝(재위 1621~1627)가 즉위하여 7년간 재위하였다. 황제는 유모 客氏를 奉聖夫人으로 봉하고 그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던 魏忠賢을 司禮監 太監에 임명하였다.

위충현은 특무기관인 東廠을 장악하고 자신을 지지하는 관료들로 閹黨을 형성하여 東林黨을 탄압하였다. 정치의 부패는 인민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궁핍한 지경에 놓여있던 농민들이 각지에서 봉기하여 抗租를 표방하였다. 정치적 소란과 더불어 북에서는 여진족이 遼東지역을 침입하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천계 원년(1621)에 누르하치가 瀋陽과 遼陽을 점령하였다. 한편 운남, 귀주 등 서남지역에서는 소수민족의 반란이 빈발하게 발생하였다.¹⁾

경제·군사·사회 모순이 첨예화되어가는 시기에 누르하치의 침입을 막기 위해 요동지역에 공급된 이른바 遼餉(新餉으로도 칭한다)의 재원 마련은 명조가 풀어야 할 커다란 문제였다. 명조가 매년 新餉 명목으로 거두어들인 액수는 485만 냥으로, 만력 47년(1619)부터 천계 3년(1622)까지 5년간 지출된 액수는 2,000여 만 냥에 달한다.²⁾

명조는 이렇듯이 급격한 군비 증가로 인해 物力이 바닥났다. 따라서 명조는 재원을 조달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창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 중요한 항목 중 하나는 만력

1) 천계제를 개관한 저서로 徐凱, 『天啓帝』, 吉林文史出版社, 1996 및 林金樹·高壽仙, 『天啓皇帝大傳』, 遼寧教育出版社, 1993)을 참조.

2) 『국곽』 권85, 천계 3년 7월 신묘조.

46년(1618)부터 실시한 田賦의 加派였다. 물론 그 대상은 민인이었다.³⁾ 加派 외에도 명조는 權稅와 行鹽 및 여러 항목의 雜稅를 거두어들였다. 그리고 필자가 이전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해 왔던 捐納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명조의 祖法이라 할 수 있는 原額主義방침에서 이탈함으로써 세수는 부단히 가중되었다.⁴⁾

定額 이외에 증가된 稅糧으로 고통 받던 민인들은 설상가상으로 강남 지역의 홍수, 산둥 지역의 한해 등의 재해가 연속됨에 따라 正賦를 체납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재정적 위기 속에서 천계제의 大婚 준비, 皇子의 탄생, 貴妃 范氏의 慧妃 책봉, 만력제의 妃인 順妃의 附葬, 황제 外家の 塋銀, 三王 즉, 瑞王·惠王·桂王 분봉지 부임과 저택 건립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다. 아울러 태창제의 능묘인 慶陵의 조영과 만력 24년(1596)에 화재로 소실된 三殿, 즉 皇極殿·中極殿·建極殿의 건립 공사가 시작되어 재정에 압박을 가하였다. 陵工과 殿工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⁵⁾

잘 알다시피, 중국 역대 왕조의 재정사 연구 중에서도 명조의 재정사 분야는 앞으로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다. 특히 명 말에 해당하는 萬曆연간(1573~1620)과 崇禎연간(1628~1644) 재정에 대해서는 三餉, 즉 遼餉·剿餉·練餉에 관심을 갖고 분석을 시도하고 있으나⁶⁾ 필자가 살펴 본 바, 그 중간에 개재된 천계 연간의 재정 연구는 많지 않다.

천계 연간의 재정문제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려면 遼餉과 剿餉의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초항의 경우는 소수민족사 및 지역사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고에서 이러한 문제를 전부 해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우선은 陵工과 殿工에 초점을 맞춰 재정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시기의 재정 상황과 그 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료가 당시 호부상서를 지낸 李起元⁷⁾의 『計部奏疏』⁸⁾이다. 남경 호부상서에서 북경 호부상서로 옮

-
- 3) 谷井俊仁 著, 沈玉慧 譯, 『明清兩朝財政法規之特徵: 以民欠和虧空爲中心』, 『明代研究』 12, 2009.
- 4) 黃仁宇, 『Taxation and Governmental Finance in Sixteenth Century Ming China』,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4. 이를 阿風 등이 『十六世紀明代中國之財政與稅收』(台北, 2001)로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 5) 김홍길은 宮殿修建의 경위부터 분석을 시작하여 修建의 정치과정, 수건의 담당 관청, 수건의 기술자 집단, 宮殿 修建의 재정, 호부와 공부의 마찰, 物料의 조달, 노동력의 투입, 목재의 조달 시스템, 채목 재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김홍길, 『明末北京의 宮殿修建と木材調達』, 박사학위논문, 일본 大阪大學, 2001 참조.
- 6) 林美玲은 천계 연간에 이르러서도 계속해서 丁糧의 優免 등 9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雜項·鹽課·關稅의 가과는 증가하였고, 이를 遼餉 혹은 新餉이라고 정의하였다. 林美玲, 『晚明遼餉研究』, 福建人民出版社, 2007 및 朱樹謙, 『明末의 三餉加派及其危害』, 『揚州大學稅務學院學報』 8-4, 2003.
- 7) 이기원은 직례 南和縣 출신으로 가정 38년(1559)에 출생하였고, 만력 10년(1582)에 鄉試에 합격하여 舉人이 되었다. 이윽고 만력 14년(1586)에 진사가 되어 하남 原武縣 지현에 임명되었다. 하남포정사를 역임하였고, 천계 초에 總督陝西三邊軍務兼理糧餉, 병부좌시랑 겸 도찰원우첨도어사, 남경병부상서·호부상서를 역임하다 천계 6년(1626) 7월에 죽었다. 『명사』에 그의 열전은 없고, 다만 『南和縣志』 권9, 『인물』에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을 뿐이다.

긴 이기원은 북경 호부가 남경 호부보다 10배나 어렵고 번거로운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이 난제를 이기원은 어떻게 타개하려고 하였는가를 통해 명조 재정사의 일면을 추출하고자 한다.

II. 慶陵 조영과 三殿 등의 건립

재정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표 1>에 보이는 것처럼 궁전의 수복 혹은 신축 공사가 시행되었다. 본 장에서는 천계 연간에 대표적인 공사였던 경릉의 조영과 삼전의 건립 과정을 살펴보자.

<표 1> 천계연간의 營建 사업 概況

연도		신축	被災	修復	비고
연호	월				
태창 1	8			皇極門, 定陵 隧道	
	10		噦鸞宮		
천계 1	1			慶陵	
	윤2			定陵 隧道 成	
			昭和殿		文廟
2	10	嘉樂殿 玄宮			『日下舊聞考』 권36 『명 희종실록』
3	7		南京 大內 左離宮		
	11			경릉 享殿 成	
4		*嘉豫殿	六科廊		『明宮史』
5	2	弘政門, 宣治門		三殿	
	9			황극문 成	
	10			朝日壇	『명 희종실록』
6	5		朝天宮 王恭廠		『國權』 권87 『명사』 권306
	8			長陵 등	
	9			황극전 成	
	11		武英殿 西油漆	孝陵	
7	3			重修 隆德殿	
	4			隆德殿 成. 惠府	
	5			中極殿 陞梁	『명 희종실록』
	8			獻陵, 三殿 成	

* 전거: 單士元·王璧文 編, 『明代建築大事年表』, 북경, 1937.

8) 본고에서 인용한 『계부주소』는 2007년 姜亞沙·經莉·陳湛綺 등이 主編하여 全國圖書館文獻縮微復制中心에서 영인한 판본을 사용하였다.

1. 慶陵 조영

태창 원년(1620)년 9월, 태창제가 죽자 능묘인 慶陵 공사가 이듬해 정월에 개시되었다. 능의 조영과 규모는 본래 융경제의 능인 昭陵과 비교하려고 하였는데, 大學士 劉一燾이 慶陵의 형세를 살펴보고는 홍희제의 능인 獻陵을 참작할 것을 제안하였다. 工部左侍郎 王永先은 昭陵圖說을 바치고는 陵殿 공정의 財用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內臣에게 칙서를 내려 궁궐 일체의 傳造를 모두 중지하고 면제할 것을 청하였다. 湖廣道御史 方震孺도 大工은 잠시 정지하고 공사에 종사하는 夫役이나 慶陵의 수리, 城河의 준설은 工部尚書 王佐에게 책임을 맡길 것을 상주하였다. 어사 王大年은 大工 재정의 허비 폐해 단속을 위해 工料의 여부, 기간·출납 등을 조사하여 허위를 단속할 것을 말하였다. 더 중요한 일은 황제는 민인의 간난을 생각하여 검소함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營建을 늦출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병부에 칙서를 내려 大營軍 1만 5,000명을 각 廠에 나누어 보내 陵殿을 돕자고 청하였다. 어사에 발탁된 蔣允儀는 정치가 소용돌이 치고 재이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황제가 대신과 상의하지 않고 내리는 조서는 정지시켜야 하며, 궁중 태감들의 練兵도 과할 것을 상언하였다. 또 東南의 杼柚이 이미 비었고, 누차에 걸친 가과, 金吾衛의 임용 남발, 분수에 맞지 않은 襲封을 지적하였으나 황제는 듣지 않았다.

홍희제의 獻陵 이후 능 건립 시의 규모와 제도는 規制는 儉約하였으나, 가정제의 永陵 건설 때부터 사치스러워졌다. 천계 2년(1622), 공부상서 姚思仁은 만력제의 정릉 조영에 800여 만 냥이 들었으나 당시는 재용이 풍부하였음을 상기시키고, 지금은 재정도 소진되고 민인도 궁핍한 상태라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帑金 150만 냥을 청하였다. 그는 慶陵의 規制를 昭陵과 같게 하고는 아주 적은 액수라도 허위로 보고하여 수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또 만력 32년(1604)부터 천계 3년(1623) 정월까지 낭비한 錢糧이 몇 십만 냥에 이른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토목공사에 필요한 工匠의 수와 工匠이 만든 물건은 무엇인지, 夫役이 운반하고 있는 재료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기록하게 하였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庫銀·帑銀·事例開納·外解의 독촉을 통해 공사를 마치는 방안을 제시하여 천계 제로부터 허락을 얻어냈다.

工部尚書 鍾羽正은 陵工 비용 조달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즉, 각 省直의 체납을 독촉할 것, 鋪商의 부채가 많으니 방안을 마련할 것, 事例는 단지 공부 소속의 宮殿·陵寢 등의 역을 담당하는 營繕司와 織造 등의 일을 맡은 都水司의 開納例銀만 시행하여 전적으로 공정을 관리할 것, 내외 각 아문의 捐助를 희망하는 자는 공부에 보내 특별 승진시킬 것, 공부 四司, 즉 營繕·虞衡都水·屯田四清吏司에 축적한 것은 모두 陵工에 사용할 것, 별도 항목의 年例로 급하지 않은 수요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할 것

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에 대해 천계제는 논의한 후 시행하라고 명하였다.

이렇듯이 능묘 조영에 대한 조정의 의견이 분분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감행되어 천계 5년 정월에 드디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工費는 70여 만 냥이 소요되었다. 당초에 경릉의 玄宮 규모가 조금 커서 태상제의 郭皇后인 孝元太后와 王황후인 孝和太后를 합장하였는데 이 능묘가 완공되자 孝純 劉太后도 합장하였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자 戶部는 慶陵의 地價를 지급해 줄 것을 청하였다. 農民의 援納事例銀 12,199여 냥을 涿州·昌平州에 나누어 주고 그곳에서 地戶에게 지급하여 수령하도록 논의하였다.

2. 三殿 건립

천계 연간 중 가장 큰 공사는 三殿의 수복이었다. 가정 36년(1557) 奉天殿 등의 三殿에 화재가 발생하였다. 2년 뒤에 공사가 시작되어 가정 41년(1562)에 완성되자 봉천전을 皇極殿으로, 華蓋殿을 中極殿으로, 謹身殿을 建極殿으로 바꾸었다. 『春明夢餘錄』 권6, 「宮闕」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만력 24년 3월에 乾清宮·坤寧宮이 불타 25년 2월에 중건하였다. 이 해 6월 19일에 三殿이 불탔다. 천계 5년 2월 공사를 시작하여 (천계) 7년 8월 1일(2일)에 이르러 공사가 완료되었다.

만력 25년(1596)에 화재로 불탄 삼전의 공사가 천계 5년(1625) 2월에 시작되어 2년 6개월 기간이 소요된 끝에 완성되었다.

공사에 투입된 인원은 남직례 소속의 壽州入衛 班軍이었다. 공부는 殿工에 급히 필요한 物料에 商稅가 지체되자 稅를 면제하여 상인들에게 공사에 협력하도록 요청하였다. 황제는 호부에 지시하여 일체의 內外關津門禁에 行文하여 殿工 物料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사례에 비추어 면세하도록 조치하였다.

삼전에 사용된 목재는 절강 衢州府 開化縣 雲霧山 등지에서 채목하였다. 南京工部尙書 沈傲蚡는 殿工에 사용되는 목재가 부족하자 은 5만 냥을 존류시켜 안휘 蕪湖에 보내 공부 督木主事 許觀吉에 행문하여 鷹平木, 즉 鷹架·平頭杉木 등을 구매할 것, 蘆課錢糧은 본래 남경공부의 額銀이니 군함에 충당하지 말고 대공에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湖廣布政使는 木政銀 67여 만 냥을 축적하고 있었다. 이 지역에서는 가파를 통해 木政銀 등을 보충하고 있었다.⁹⁾ 工部는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湖廣의 採辦하는 大木은 木政銀 67

⁹⁾ 『계부주소』 권10, 「謹題爲督餉事竣謹按湖廣加派完欠遵例分別勸徵以足軍需事」.

만 냥이 있음을 상기시키고, 開銷를 제외한 應追, 應補銀 등 함께 37만 2,442여 냥을 신속히 징수하여 보낼 것을 아뢰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호광에 자문을 보내도 이행하지 않자, 吏部都察院으로 하여금 각 州縣의 老成으로 木政을 지체하는 자는 考滿의 불허, 陞遷의 정지시키라고 하였다. 撫按을 질책하고, 엄히 藩司를 감독하여 기한을 정해 강제로 보내도록 하는데, 재차 늦어지는 자는 성명을 탄핵할 것을 청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삼전의 건립비용은 얼마나 들었을까? 천계 6년(1626) 황극전 공정이 80~90%에 달했을 때, 王永光은 공사를 정지하고 형벌을 완화하자고 상주하였다. 천계제는 공사에 사용한 은은 단지 150만 냥으로, 민인을 성가시게 하지도 않았으며, 건물이 사치스럽거나 장대하고 화려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황제는 공사에 1/10稅를 시행하여 온전하지 못한 목재와 흠이 있는 석재를 사용하였으며, 存留物料를 아껴 반을 남겨서 二殿을 건립하였다고 변해하였다. 당시 外解 100여 만 냥도 아직 경사에 보내오지 않았지만, 內帑 100만 냥이 남아 있어 督徵을 과하고, 摻括을 정지하고, 분담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교하였다. 그러자 吏部尙書 王紹徽는 正殿이 완성되었고, 兩殿도 곧 완공되는데 外解 100여 만 냥, 皇考가 발한 내탕 100만 냥은 그 액수를 미리 헤아리기가 어렵다며 織造·瓷器 등의 비용을 삭감해 대공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春明夢餘錄』에는 대공에 사용된 은이 595만 7,519여 냥이라고 하였으나, 『명 희종실록』권87, 천계 7년 8월 己酉條에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다.

工部는 상주하기를, 三殿의 大工 공사는 천계 5년 23일에 시작하여 천계 7년 8월 2일에 이르러 완공을 알렸습니다. 錢糧을 總算하면 領狀을 지급하여 준 것이 함께 578만 135냥 8錢 3分 8釐 2毫 2絲 8忽 6微입니다. 應找者(부족한 것을 보충)는 함께 30만 133兩 8錢 9分 4釐 7毫 5微이고, 透支者(이식, 혹은 초과 수입 액)수는 13만 749냥 9錢 4分 4釐 2毫 2絲이고, 外兌者는 함께 13만 9153냥 3錢 8分 1釐 6毫 9絲로, 소비한 은은 함께 595만 7519냥 7錢 6分 8釐 4毫 1絲 6忽 1微입니다. 비록 前朝의 冊籍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이번 공사는) 공력은 배였지만 비용은 절약하여 이와 같은 적은 없었습니다.

즉, 삼전의 축조 비용으로 595여 만 냥이 소비되었다.

Ⅲ. 營建비용의 財源 조달

명조의 궁궐 조영 시, 대표적인 재원은 料價銀이다. 이 항목은 명 중기 이후 上供物料가 은납화 된 이후 里甲이 그 대신에 납부한 것을 工料 혹은 料價라 불렀다. 이 외에 柴

炭等料銀·事故官軍折糧銀·匠價·葦課·軍器折色銀을 전용하고, 開納事例를 시행하였다. 가정 35년(1556)에 정해진 요가는 정액은 매년 50만 냥이었다. 그러나 표2에 보이는 것처럼, 경릉이나 삼전 등의 영건 비용으로 加派·雜項·鹽課·關稅·鼓鑄·搜括·捐助·贓罰·연납 등 다양한 명목의 재원이 조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 三殿 工費 조달

년대		납부자	항목	액수(냥)	비고	
연호	월					
천계5	3	兵部尙書 趙彥 都督 鄭養性	班軍折價銀 捐資	119,800		
	4	大學士 顧秉謙	捐俸	200		
	6	各 宮監			140,000	
		巡按直隸御史 潘雲翼 刑科給事中 霍維華	捐俸薪, 搜存 摻括巡青節存銀	5,000 50,000		助餉, 助工
	7	武清侯 李誠銘			30,000	
		甘肅巡撫 李若星	摻括		2,809	
	8	巡撫河南都御史 程紹	節省銀		6,300	上奏
		南京吏科給事中 郭如闇	後湖歷年節省銀		4,000	上奏
	9	魯王	捐祿			
	9	徐州	摻括		40,000	摻括 80,000
	10	淮商	見齋引銀		42,500	
	천계5	11	各 藩府			
			福王		10,000	
			唐王	進助工	10,000	
			潞王		3,000	
			襄王		2,000	
			韓王		1,000	
		德昌王		1,500		
		鎮江府	摻括海防銀		33,000	見貯海防銀 100,000
		寧安大長公主嫡男 李承恩	裁扣見年子粒銀		3,070	
			班軍銀		110,000	督催
12	贛州府	入官銀		30,000	摻括庫貯官銀	
	徐州	庫軍便銀		40,000		
	蘆商抵課		新開引價銀		9,880	합계 23,700
			帶鹽銀		605	
			浮課應追銀		13,180	
巡撫福建 朱欽相	每年減丁廩銀		2,201			
천계6	1	宗藩文武	助工銀	831,457	順天府府尹 沈演 疏	
		福建 潘司西庫	備用銀	300,000		

	3	追論 原任御史 方震孺	贓銀	415 2,250 5,190 6,541	
	4	原任南京操江右僉都御史 熊明	贓銀	1,200	
		各 王府			
		秦王		10,000	
		周王	助工銀	11,500	
		晉王		4,000	
		鄭王		2,000	
		寧化王		2,000	
		秦王 子 存機		5,000	
		顧大章	贓銀	17,500 10,365	追完 未完
		鎮撫司 周宗建	招贓	5,200	
		繆昌期		1,000	
		官旗 王道行	本犯及生支等項銀	1,420	
	5	南京工部右侍郎 盧大中	那借	35,000	顏料等銀
		陝西巡撫 喬應甲	各項犯官銀 書院變價銀	55,600 1,300	
	6	兩淮巡鹽御史 陸世科	每引量增銀八分	79,614	天啓六年爲始
	윤6	禮部	摻括歷年助賞庫銀	2,600	
		漕運總督 蘇茂相	募兵挖河及康丕揚魯保 剩下列銀,	300,033 800,000	盡行摻括
		追罪撫 陶朗先	贓銀	23,416	
		太監 劉文耀	查覈兩淮運司錢糧 鹽運司貯庫銀	1,500,000 200,000	未解銀 1,300,000
		追過原任御史 方大任	贓銀	1,152	
		工部	催解福建存積銀兩	200,000	
	7	工部	河道見貯庫銀	163,500	見貯庫銀 327,000(取 1/2)
	8	丘志充王家棟獄	贓銀	9,130	鎮撫司
	9	太監 胡良輔	鹽運司銀 揚州府操餉銀及蘇州鳳 陽二府馬價銀	200,000 100,000	
		薊遼總督 閻鳴泰	薊鎮鑄錢利息	7,128	천계 5년 8월~춘계 6년 9월
	10	江西 南昌府 等	毀書院田土變價銀	3,017	
		復追左光斗	贓銀	3,460	湊足二萬之數
	11	削南京巡視鳳陽倉糧御史 梁克順	贓罰銀	600	天啓五年. 邊工

		耿如杞	追銀	6,300	
		靈鷲古刹	寺田變價	250畝	兵部主事詹以晉의 鄉
	12	三邊總督 王之采	延綏寧夏固原三鎮所扣 旗鼓中軍銀兩		
		천계제	光祿寺貯庫銀	60,000	那借
천계7	1	原任兩淮巡鹽御史 徐縉芳	贓銀	44,376	徐縉芳與舉人張汾 27,000 追完 12,140
	2	追過吳養春	贓銀	11,000	
		鄭一誠	代認贓銀 所領本銀 估變本犯產業銀兩	230,769 70,000	
		拘獲吳敏儒	查出天津資產	10,900	程夢庚贓銀 136,000 吳養春贓銀 600,000
	3	原任貴川總督張我續	捐貲	5,000	
		南直浙江撫按	事例銀兩	68,200	南直納附事例銀 共足十萬
			海防錢糧 見貯 續收	113,000 15,400	三吳長江盜賊
	4	王之寀	贓銀	8,000	
		江西巡按 曹谷	變賣書院田土房價銀	350	
	5	華殿中書 徐溶	捐資	1,000	
7	犯人顧汝翼	贓銀	3,500	鎮撫司奏	
	南京各衙門 太僕寺	柴薪銀 附解柴薪銀	7,512 4,980		

1. 摻括

수괄이란 과세 대상을 수색하여 남김없이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¹⁰⁾ 그런데 이 수괄은 과세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각종 세량을 찾아내 모으는 것을 의미한다. 권12, 천계 원년 7월 계해조에,

召起大學士 葉向高가 상주하기를, 內帑이 부족하면 前詔에서 나열한 것처럼 上供物料를 헤아려 折價를 행하고 일이 안정되면 옛날로 복귀합니다. 또 별도의 항목에서 摻括하면 됩니다.

라고 보여, 상공 물료의 부족을 보충하는 방안으로 折價와 摻括이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¹⁰⁾ 박원호 외 옮김, 『명사식화지 역주』, 소명출판사, 2008.

수 있다.

殿工이 시작된 천계 5년(1625) 호부상서 이기원은 군향이 부족하자 科臣 張士升, 臺臣 李嵩 등의 논의를 널리 채택하였다. 그들이 내세운 방안 중 하나가 바로 摻括로, 撫按·監司로부터 각 府·州·縣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贖罪·加耗·修理鋪陳·皂役工食·衙門公費 중 수괄할 것은 수괄하고, 삭감할 것은 삭감하여 이를 합해 군향에 사용하자는 것이었다. 곧이어 南京文武 및 省直의 內外諸臣이 각 捐俸·摻括로 대공을 돕는 비용을 진상하였다. 병부상서 趙彥은 班軍折價銀 11만 9,800여 냡을, 형과급사중 곽유화는 巡靑¹¹⁾ 節存銀 5만 냡을 수색해 내서 공사를 도왔다.

수괄 대상과 지역도 다양하다. 남북 요충지인 徐州에서는 성을 수축하는데 수괄한 은 8만 냡 중, 4만 냡을 存留시키고 나머지 4만 냡은 조공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鎮江府가 현재 축적된 海防銀¹²⁾ 10여 만 냡 중에 3만 3,000여 냡만을 보내오자, 나머지 액수인 6만 7,000냥도 전부 摻括하여 大工을 돕도록 하였다. 천계 4년 호부는 黔餉이 부족하자, 應天府 항목 하에 남겨둔 해방은 5만 냡을 黔省에 보낸 적이 있다. 그 대신에 應天부에서 새로이 거두는 4년분 가과 5만 냡을 남겨 5만을 보충하는 방안이 마련되었다. 이후에도 搜括한 해방은 10만 3,000냥을 大工의 비용으로 사용하였다.¹³⁾

호부상서 이기원이 庫貯官銀을 摻括할 것을 청하자, 천계제는 대공의 긴급을 이유로 허락하였다. 강서 贛州府 入官銀 3만 냡, 강소 徐州庫軍便銀 4만 냡은 모두 이듬해 3월까지를 기한으로 모두 진상하게 하고, 南贛巡撫賞功銀 중 오랫동안 축적하여 아직 사용하지 않은 은냥 및 각 省直의 庫에 축적한 無礙官銀¹⁴⁾은 모두 해당 撫按으로 하여금 조사해 이듬해 말까지 완납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 塩運司는 매년 募兵銀 6,000냥, 挖河銀 6,000냥을 거두어 庫에는 대략 20여 만 냡이 축적되어 있었다. 또 塩院 康丕揚이 재임 중에 1文도 취하지 않은 매년 加派銀이 1만 냡씩 대략 20여 만 냡이 있었다. 또, 죽은 태감 魯保가 남긴 餘銀이 매년 4만 냡으로 대략 40여 만 냡 있었다. 前院이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餘剩銀이 대략 80여 만 냡이 있었다. 이에 漕運總督 蘇茂相은 摻括하여 助工할 銀 30만 33냥을 진상하였다. 그런데 천계제는 募兵銀·挖河銀 및 전 어사 康丕揚과 태감 魯保의 剩餘銀이 80여 만 냡에 달함에도 단지 이 금액만 보냈다면 나머지 액수도 모두 摻括하여 大工을 돕도록 명하였다.

11) 『대명회전』 권210, 도찰원2. 巡靑은 宣德 9년(1434) 監察御史 1명을 선발하여 각처의 거두어들인 草를 순시하고, 1명은 象牛羊等房의 錢糧을 제독하고, 1명은 給事中, 錦衣衛官등과 함께 官軍의 騎操馬匹을 순시하였다.

12) 가정 38년(1559) 應天부 소속에 처음으로 해방은을 가과하였다. 만력 『응천부지』 권3, 「郡紀」하.

13) 『계부주소』 권9, 「謹題爲遵旨摻括見存海防銀兩盡數起解以仰助大工事」.

14) 만력 27년(1599) 천하의 無礙官銀을 보내도록 하였다. 무릇 사방의 錢穀은 모두 定額이 있다. 無礙라고 하는 것은 經費의 羨餘를 가리킨다. 『명사』 권216, 「馮琦열전」.

천계 7년 각 省直이 상주한 摻括·捐助 은냥으로 아직 상환되지 않은 액수는 50여 만 냡을 밑돌지 않았다. 이 해 工部는 서면으로 摻括·捐俸 항목의 銀兩으로 거두어 보존하고 있는 액수, 방출한 뒤 저축하고 있는 數目을 보고하였다. 그에 의하면 천계 6년에 거두어들인 각 항목의 助工銀은 220만 2,376여 냡, 金은 213냥에 달했다.

2. 황실과 관료의 捐助

표2에서 알 수 있듯이 전공 비용의 한 항목으로 捐貲·捐俸·捐祿·捐資의 용어가 눈에 들어온다. 그 대상도 文武·宗藩, 구체적으로는 諸王·都督·대학사·총독·中書舍人 등이다. 천계 이전에도 백관의 급여로 公費 마련을 꾀한 적이 있었다. 嘉靖 20년(1541) 九廟가 훼손되었을 때, 만력 12년(1584) 大峪에 壽宮 공사를 시작할 때 시도했었으나 황제가 불허하였다. 그런데 삼전의 화재로 群僚들이 또 다시 捐俸으로 助工하기를 청하였다. 각 衙門의 公疏나 각 官의 私疏로 捐俸의 일을 아뢰자 만력제는 이를 허락하였다.¹⁵⁾

천계 2년 各藩이 군향을 도왔다. 이 당시 諸王은 적게는 1,000냥, 많게는 1만 여 냡을 지원하였다. 唐府의 捐助 액수가 가장 많아 황제는 豎坊조치를 취했다. 秦王의 아들 存機 등이 銀 5,000냥을 진상하였다. 秦藩은 中尉를 세습 받고는 분수에 넘게 王爵을 엿보았다. 그 아들이 30세가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하자 은을 진상하여 대공을 도왔다. 예부가 이를 보고하자 천계제는 그를 奉國中尉에 봉하고 훈가를 선발하도록 일렀다.

兩門·三殿의 工程에 비용이 많이 들자, 공부는 內帑도 궁핍하고 搜括도 다 한 상황에서 諸王·公主 및 司禮監等 衙門의 각 監局·司庫 掌印, 管事牌子 및 內外私家, 閑住 太監 등 官이 함께 助工銀 합계 40만 냡을 바쳤다. 명조는 이들 외에도 각 왕부와 관료들에게도 捐助를 권하였다. 『명 회중실록』 권61, 천계 5년 7월 기사조에 다음과 같이 보인다.

禮科給事中 李恒茂가 上言하기를, 大工 鼎建의 經費가 浩繁하니 中外文武諸臣은 한 명도 捐助에 급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天下의 諸王府는 정이 진실하고 간절하여, 황족은 공무를 우선으로 여기는 일을 도외시하기 어려워 在京 在外衙門에 비추어 일체 捐助하십시오. 상은 각 王府에 역량을 헤아려 행하라고 명하였다.

왕부만이 아니라 중앙과 지방 관료들도 응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그 사례를 보면, 郎中 區龍禎, 員外郎 王若之, 主事 錢天錫 등 84員은 三殿이 개시되자 천계 5년 4월 1일을 시작으로 각 俸銀 1년 치를 공제하여 공부로 보내겠다고 하였다. 천계제는

15) 『만력야획편』 『捐俸助工』. 捐助가 군향 정책의 일환으로 등장하게 된 것은 만력 47년 巡撫遼東 僉都御史 周永春이 발의하면서 부터이다.

捐俸 은냥은 호부가 공부에 移忝하여 일체 조사해 거두어들이라고 답하였다.¹⁶⁾ 이듬해 督察工程 崔呈秀는 각 官의 捐俸 錢을 상주하여 황제의 허락을 받았다. 兵部尙書 王永光是 崔呈秀의 助工 상소를 복주하고 각 省의 缺官紫薪銀兩을 독촉할 것을 청하였다. 황제는 각 撫按에 行문하여 기한에 맞춰 이 은냥을 신속히 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三殿이 완성되면 비용을 관료들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捐助 規程을 보면, 在京은 尙書以下, 在外는 州·縣 正官以上에게 모두 俸薪 1년 치를 납입하게 하면서, 庶吉士·敎職 및 行人·京衛의 指揮·千戶·百戶는 제외시켰다.

南京文武 및 省直의 內外諸臣이 각 捐俸·摻括로 대공을 돕는 비용을 진상하였다. 이 당시 南京戶部尙書 畢自嚴은 南京 大小各官이 모두 俸薪銀 1년 치를 바쳐 助工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였다. 즉 現任은 공제하여 존류시켜 축적하여 보내고, 南京으로 진출한 자는 新銜에 비추어 차감하며, 北으로 진출한 자는 호부에 이자하여 즉시 공제한다. 외직으로 진출한 자는 공제할 만하다. 新任은 액수에 비추어 보고하고, 만약 訃報의 喪을 고하면 잠시 立案하여 상기를 마치고 관직에 기용하는 날까지를 기다려 액수에 비추어 차감하여 捐助하게 한다. 만약 卹職하여 돌려보내거나 사망할 경우는 즉시 면제시키고 前件을 조사하여 보고한다. 절강청리사 郎中 康爾韞, 員外郎 張志芳, 주사 張抑之, 司務廳 司務 陳開泰 등 17員은 각 20냥씩을 준비하여 대공을 도왔다. 천계 6년, 宗藩文武 助工銀은 83만 1,457냥에 달했다.

천계 7년, 京·省의 연조·수관은 기한을 정해 217만 8,400여 냥을 경사로 보내도록 조치하였다.¹⁷⁾

* Ⅲ장 3) 鹽課의 증세 4) 鼓鑄의 시행 5) 贓罰銀, Ⅳ. 연납의 실시 Ⅴ. 考成法을 통한 관료의 압박 Ⅵ. 공부와 호부의 알력 Ⅶ. 맺음말 부분은 아직 논고를 다 정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드립니다.

16) 『계부주소』 권10, 『謹題爲捐俸助功事』.

17) 『국각』 권88, 천계 7년 4월 갑자조. 누르하치의 침입으로 수관, 연조 등으로 거두어들인 액수는 175만 냥에 달했다. 『度支奏議』 권10, 『新餉司』.

清末 龔自珍의 經學思想과 社會改革論

— 경전해석에 드러난 ‘史’觀을 중심으로 —

김형열(동의대)

目次

- I. 머리말
- II. 皖派 考證學 학풍의 계승과 “漢宋兼采”論
- III. 公羊學 經典解釋에서의 ‘史’觀과 社會改革論
- IV. 맺음말

I. 머리말

龔自珍(1792-1841)은 청대 후기의 학자로 浙江省 仁和 사람이다. 다른 이름은 鞏祚, 字는 璣人, 號는 定盦이며 道光 연간의 저명한 사상가이자 경학가이며 문학가였다. 段玉裁의 외손자였던 그는 段玉裁로부터 고증학을 배웠으나 어려서부터 經世에 뜻을 품었고 詩作을 좋아하였다. 그의 학풍은 처음에 章學誠의 ‘六經皆史說’에 영향을 받고 이어 劉逢祿으로부터 ‘公羊學’을 배웠으며, 나이 들어서에는 江沅에게서 天台宗의 교의를 배웠다. 만년에 佛學에 심취한 것은 모친상을 당하고 난 이후의 심리적 타격과 고위 관직으로 진출하지 못한 정치적 좌절로부터 심신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비록 만년에 불교사상에 기울기는 하였지만 그의 사상은 수미일관하게 개혁적이고 실천적인 經世致用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魏源(1793-1858)과 함께 청조의 통치가 극성시기를 거쳐 급격히 쇠퇴의 길로 접어드는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청조의 衰世가 만연되고 있음을 예리하게 인식하고 사회의 위기를 구출하자고 큰소리로 외쳤다. 公羊學과 經世思想을 무기로 암흑사회의 현실을 비판하고, 사회의 변혁과 개조를 이루고자 한 것이었다. 그의 經世論은 당시 정치적, 사회적으로 만연된 부패를 지적하고 청조 사회의 개혁을 주장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었으며 청말의 사회와 혁신론자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이 논문은 공양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공자진이 실제로는 古文經學을 가학으로 전수받으면서 그로부터 학문 방법을 발전시켜 그의 今古文 절충의 經學思想을 이루게 되는 과

정을 밝히고자 하는 글이다. 그와 함께 그의 사회개혁사상의 경학적 기초가 무엇인지 파악하면서 그 주된 요소로서 그의 ‘史’觀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청말 개혁 사상가로서 많은 사회비판론과 사회개혁론을 쏟아 낸 공자진이 개혁사상을 형성하게 된 이론적 지주를 알아보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II장에서는 乾嘉 考證學의 皖派가 어떠한 학문 경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러한 학문 전통이 가학으로서 공자진에게 전수되어 결국 ‘한송겸채’론을 주장하게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III장에서는 공자진이 공양학을 수용하게 되면서 공양학 이론에 따라 경전을 해석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정립해 가는가 하는 것을 탐색해 보자 한다.

II. 皖派 考證學 학풍의 계승과 “漢宋兼采”論

1. 清代 考證學과 皖派의 학문경향

梁啓超는 清代 학술사조의 특징을 “復古”로 설명하였다. 즉 宋明理學에 대한 반발로서 마치 서구의 “문예부흥”과 같은 학술·문화적 경향이 나타나 고전에 대한 탐구가 중시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술운동의 초기 계몽파로서 顧炎武, 胡渭, 閻若璩를 그 대표인물로, 또 전성시기의 정통파로서 惠棟, 戴震, 段玉裁, 王念孫, 王引之를 그 대표인물로 지적하였다. 그는 계몽파와 정통파의 차이점에 대해 “첫째, 계몽파는 宋學에 대해 맹렬히 공격하기도 하였지만 그 일부를 그대로 因襲하였던 데 반해 정통파는 자신의 굳건한 아성을 쌓으며 宋學에 대해 議論을 벌이지 않았다. 둘째, 계몽파는 經을 통한 致用의 관념을 유지하여 經世의 임무를 즐겨 말했던 데 반해 정통파는 考證을 위한 考證과 經學을 위한 經學에 힘썼다.”고 논급하였다.¹⁾ 이는 일견 청대 초기와 중기 학술사조의 성격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한 듯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금문학과 疑古의 시각에서 청 중엽 정통 考證學의 단순 復古的 고문경학 학풍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그는 閻若璩가 『“僞”古文尙書』를 공격한 것이나 후대에 劉逢祿과 魏源이 각각 『春秋左氏傳』과 『詩毛氏傳』를 의심하여 고증을 가한 것을 예로 들면서 疑古 학풍에 동의를 보내는 한편, 乾嘉 考證學이 許慎과 鄭玄을 숭상하며 후한 고문경학의 학문방법을 따르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다.²⁾

하지만 復古와 疑古 모두 清代 학자들의 학술활동에 있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학문방법이었으며, 당시 지식인들은 각기 漢代의 경학에서 현재와 미래를 위

1) 梁啓超, 『清代學術概論』, 東方出版社, 1996, pp.4-5.

2) 梁啓超, 위의 책, p.6.

한 학문적, 사상적 무기를 찾고자 하고 있었다. 이것은 양계초가 청대 정통 考證學에서 탈피한 새로운 분파로서 “공양학과”를 제시하는 가운데 그 학문을 가장 잘 전수한 학자로 소개한 龔自珍이 실은 乾嘉 考證學 학풍의 세례를 받은 고문경학자로서의 학문적 연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청대 考證學은 청 정권의 강압책과 유화책 속에서 생성되고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청조에 협력을 희망하지 않았던 한족 지식인 顧炎武, 黃宗羲 등에 의해 經史學의 일부로 시작되었으나, 그 후 考證學은 經世學으로서의 의미를 상실한 채 민간학문으로서 발전하면서 학문연구에 종사하는 학자들은 대부분 관위가 낮았고 심지어 종신토록 관직에 오르지 못하기도 하였다. 考證學 연구자의 낮은 사회적 지위는 종종 그들의 사상 경향에 영향을 주었다. 이들은 국가에서 공인한 程朱理學과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혹은 통치 집단 또는 관료체제에 대한 급진적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청대 考證學은 宋學과는 학술적 경향을 달리 하면서 표면적, 형식적으로는 漢學을 계승·발전시킨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漢學의 기치 아래 형성된 청대 특유의 학술사조이자 사상 계몽운동이라고 할 수 있었다.³⁾

乾隆 이후 惠棟과 戴震 등의 유학자들은 漢學의 大宗이 되어 宋人の 詮釋을 폐기하고 漢學의 기치를 표방하여 고증학 사조가 크게 발전하였다. 주지하듯이 乾嘉 시기의 고증학파는 그 학풍에 따라 吳派와 皖派로 나뉜다. 惠棟을 시조로 하는 吳派는 오롯이 經을 연구하는 순수 학문의 길을 걸어갔던 데 비해 戴震을 대표로 하는 皖派는 實務的 경향이 짙었고 현실 문제를 연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皖派”와 “吳派”의 각 파에 속하는 학자들이라 하더라도 관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았고 家學 또는 師生 관계로 학문이 전수되는 가운데 한 사람의 사상적 경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면서 학술 내용이 복잡해지고 심화되었으며 많은 저술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해 皮錫瑞는 “經學의 부흥시기(經學復盛時代)”⁴⁾라고 표현하였다.

吳派의 학맥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三惠라 불리는 惠周惕⁵⁾, 惠士奇⁶⁾, 惠棟⁷⁾은 3대

3) 陳銘, 『龔自珍綜論』, 瀛江出版社, 1991, p.31.

4) 皮錫瑞 著, 李鴻鎮 譯, 『中國經學史』, 형설출판사, 1995, 제10장 經學 復盛時代(清代).

5) 字는 元龍, 清 吳縣人이다. 康熙 시기의 進士로 庶吉士에 선발되었고, 密雲의 知縣을 지내다가 관직에서 죽었다. 저서에 『易傳』, 『春秋三禮問』, 『詩說』, 『研溪詩文集』 등이 있다.

6) 字는 天牧, 晚號는 半農居士이다. 康熙 시기의 進士로 庶吉士에 선발, 編修에 제수되었고, 廣東 學政을 지내었다. 처음에는 經, 史를 兼治하였으나 만년에는 經學에 깊었다. 저서에 『易說』, 『春秋說』, 『禮說』, 『交食舉隅』, 『琴笛理數考』, 『紅豆齋小草』, 『詠史樂府』, 『歸耕集』, 『人海集』 등이 있다. 『易說』에서는 漢易을 중시하여 魏의 王弼이 허상의 학설을 창도하였다고 배척하였다. 『春秋說』에서는 左氏, 公羊, 穀梁의 三傳을 중시하여야 한다고 논하였다. 『左傳』이 없었다면 『春秋』에 적힌 240년 역사의 내용을 알 수 없고 公羊家, 穀梁家는 孔門 70제자가 전한 大義를 존속시킨 것이므로 폐지할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禮說』에서는 후한의 鄭玄이 경서에 주

동안 경을 전수하였다. 惠棟의 조부인 惠周惕은 漢代의 경학을 중시하여 家學을 일으켰으며, 부친인 惠士奇는 經書 傳注의 眞僞와 是非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옛날에 가까운 傳注를 후세의 것보다 중시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의 경학을 묵수하는 학을 명확하게 하였다. 惠棟의 학문적 조예는 더욱 깊어 조부, 부친의 학문을 집대성하여 청조 吳派 漢學의 대표자가 되었다. 혜동은 특히 易學에 정통하여 『易漢學』, 『易例』, 『周易述』 등 易에 관한 저술을 남겼다. 혜동의 문하생으로는 王昶, 江聲, 余肅客, 王鳴盛, 錢大昕 등이 유명하다. 그 중 전대훈은 학문의 규모가 극히 광대하여 經史를 비롯하여 金石, 地理, 算學, 詩賦 등에 능하였는데 특히 역사학에 밝아 元史를 정리하였을 뿐 아니라 역사 記事에 관해 광범위한 고증을 가한 『二十二史考異』를 저술하였다.⁸⁾

皖派의 대표인물인 戴震⁹⁾은 經傳 연구에 관해 상당한 식견이 있었으며 曆算, 聲韻에도 능통하였다. 그는 經學 연구의 첫걸음으로 小學으로서의 언어학을 가장 중시하였으며 문자, 언어의 분석을 거치지 않는 경학을 허망하다고 보았다. 戴震은 經을 공부함에 먼저 字義를 고찰한 다음에 文理에 통하게 된다는 학문 수행의 절차와 더불어 학문에 있어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는 志學의 마음가짐도 설하였다. 그는 宋學을 버리고 오로지 漢學을 취한다는 학파적인 전제에 서는 일이 드물었으며 오히려 고증이라는 객관적인 학문 방법론을 극도로 존중하였다. 이 점이 대진이 혜동과 다른 부분이라 할 수 있다.¹⁰⁾ 戴震은 江永¹¹⁾을 師事하여 그 학이 江永으로부터 얻은 바가 많았다. 江永은 “古今에 박통하고 『三禮』에 깊었으며 比勘을 잘하였고 步算, 鐘律, 聲韻에 더욱 정통”하였다. 江永은 주자를 존경하여 『朱子近思錄』을 주석하였고, 그가 지은 『禮經綱目』도 또한 주자의 『儀禮經傳通解』에 근본을 둔 것이었다. 하지만 주자의 설을 그대로 묵수한 것이 아니라 “群經을 참고하고 條理를 통찰하여 비단 異同을 세웠을 뿐 아니라 실로 그 미치지 못한 바를 보

석을 가한 것은 모두 옛 讀法에 따른 것이므로 올바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7) 字는 定宇, 號는 松崖, 惠士奇의 차남으로 淸 吳縣人이다. 『周易述』, 『易漢學』, 『明堂大道錄』, 『古文尙書考』, 『春秋左傳補注』, 『九經古義』 등을 저술하였다. 이 중 『周易述』, 『易漢學』, 『易例』와 같은 저작들은 易의 遺說을 찾아 闡明한 것이다. 특히 『周易述』같은 것은 30년을 걸려 완성한 고심작으로 荀爽과 虞翻 등 한대 선비의 역설에 기초하여 스스로 『易經』의 주된 뜻을 요약하여 주를 달며 그 설을 풀이하여 疏를 만든 것인데 王弼 이후의 현학적 해석은 채택하지 않았다. 『古文尙書考』에서는 閻若璩의 위작설을 확인하였고 『九經古義』에서는 經書 전반에 걸쳐 서술하였다.

8) 金谷治 외 著, 趙宗憲을 譯, 『중국사상사』, 이론과 실천, 1993, pp.315-317.

9) 字는 東原, 淸 休寧人이다. 저술로는 『東原集』, 『聲韻考』, 『聲類表』, 『方言疏證』, 『校水經註』, 『毛鄭詩考正』, 『考工記圖』, 『孟子字義疏證』, 『儀禮正誤』, 『爾雅文字考』 등이 있다.

10) 金谷治, 앞의 책, p.318.

11) 字는 慎修, 淸 婺源人으로 康熙 시기의 諸生이다. 저서에 『周禮疑義舉要』, 『禮記訓義擇言』, 『深衣考誤』, 『禮書綱目』, 『律呂闡微』, 『春秋地理考實』, 『讀書隨筆』, 『古韻標準』, 『四聲切韻考』, 『音學辨微』 등이 있다.

충”¹²⁾하였다. 이에 異說과 자료를 널리 수집하는 것은 江永 이후 그 門下의 전통이 되었다. 段玉裁¹³⁾는 대진에게 수학하여 文字, 音韻, 訓詁 등 小學에 정통하였다. 『六書音韻表』, 『古文尙書撰異』, 『毛詩故訓傳』등을 저술한 외에 심혈을 기울여 『說文解字注』(전30권)를 지었다. 이 책은 文字의 本義를 말한 후한 許慎의 『說文解字』에 관한 정밀한 고증으로 1700년대의 걸작이라 일컬어진다.¹⁴⁾

段玉裁는 龔自珍의 외조부였다. 즉 공자진의 부친 龔麗正이 단옥재의 제자이자 사위였던 것이다. 따라서 공자진이 古文經學인 考證學의 사상을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이러한 家學 연원이 있었다. 또한 공자진은 어릴 때 외조부 단옥재를 통해 考證學을 학습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단옥재의 스승이었던 戴震의 學으로부터 일정한 학문적, 사상적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단옥재는 小學 연구에 매진하였으므로 理學 사상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논술한 저작이 없었다. 이 때문에 후대의 학자들은 늘 段玉裁에서 王念孫, 王引之 등에 이르기까지 考證學派를 비평하여, 前舉한 梁啓超처럼 이들의 학술을 “考證을 위한 考證,” “학문을 위한 학문”이라 비난하였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단옥재는 결코 학문의 ‘致用’적 측면을 무시하고자 하지 않았다. 단옥재는 朱子の 『小學』에 발문을 지어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어떤 이는 漢代 사람들이 小學을 六書라고 하였고 朱子가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더욱 이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말에는 각기 마땅함이 있는 법, 漢代人의 小學은 六藝의 하나이고 朱子의 小學은 蒙養의 온전한 功인 것이다.”¹⁵⁾ 단옥재의 학문 경향이 경세치용을 지향했다고 하는 점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는 외손인 공자진이 23세에 당시 전제제도의 폐단을 지적하고 이상적인 君臣關係를 제시하며 서술한 『明良論』 4편에 대해 다음과 평가한 것이었다. “四論이 모두 옛날의 처방이나 지금의 병에 들어맞으니 어찌 새로운 처방을 별도로 짓겠는가! 늙었도다. 이 재주를 보고 죽어도 나는 한이 없겠구나!”¹⁶⁾ 그는 외손의 글이 당시의 정치제도에 비판적인 것을 칭찬하고 현실 정치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희망하였던 것이다.

12) 皮錫瑞, 앞의 책, p.204, 周予同 注 12).

13) 字는 若膺, 號는 懋堂, 清 金壇人이다. 乾隆 시기의 舉人으로 벼슬은 巫山縣 知縣이었다. 저서에 『說文解字注』, 『六書音韻表』, 『周禮漢讀考』, 『儀禮漢讀考』, 『古文尙書撰異』, 『經韻樓集』등이 있다.

14) 金谷治, 앞의 책, p.319.

15) 段玉裁, 『經韻樓集』 卷8, 『朴陵尹師所賜朱子小學恭跋』(皮錫瑞, 앞의 책, p.245에서 재인용) “或謂 漢人言小學爲六書, 非朱子所云, 此言尤悖, 夫言各有當, 漢人之小學, 一藝也; 朱子之小學, 蒙養之全功也.”

16) 『明良論四』, 『龔自珍全集』(이하 『全集』으로 略함), 上海古籍出版社, 1999, p.36. “四論皆古方也, 而中今病, 豈別制一新方哉! 耄矣, 猶見此才而死, 吾不恨矣!”

2. 龔自珍의 “漢宋兼采”論

공자진은 皖派 考證學의 학풍 속에서 성장하였다. 12세 때 단옥재로부터 『許氏說文部目』을 전수받고 학습하면서 “경전의 뜻을 통해 문자학의 내용을 풍부하게 하고, 문자학에서 經義를 이끌어 내는”¹⁷⁾ 학문 방법을 익히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家學 연원은 공자진으로 하여금 乾嘉 고증학에 대해 깊은 깨달음을 얻게 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공자진은 小學에 뜻을 두는 “抱小”의 논의를 갖게 되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학문의 일은 구함에는 수고로워야 하고 얻음에는 독창적이어야 하며 증명함에는 넓어야 하고 해설함에는 까다로워야 한다. (또) 감히 迂遠하거나 繁瑣함에 빠져서는 안 된다. 구함에 수고롭지 않은 즉 粗雜하고, 얻음에 독창적이지 않은 즉 베끼게 되며(剽), 증명함에 넓지 않은 즉 신뢰할 수 없고, 해설함에 까다롭지 않은 즉 오롯이 다할 수(忠) 없다. 迂遠하거나 繁瑣함에 빠져서도 안 된다. 그 爲人은 淳古함이 극에 달하면 朴拙의 경지에 이르러, 朴拙이 극에 달하면 退讓의 경지에 이르러, 退讓이 극에 달하면 思慮의 경지에 이르러, 思慮가 극에 달하면 完密의 경지에 이르러, 完密이 극에 달하면 無所苟의 경지에 이르러, 無所苟가 극에 달하면 精微의 경지에 이른다. 小學의 일은 仁, 愛, 孝, 弟를 행하는 것과 一以貫之하다. 무릇 天命의 오묘함(奧), 大道의 임무(任), 窮理盡性の 도모(謀), 高明廣大의 쓰임(用)에 대해 (나는) 들어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날(異日)을 기다린다고 말한다. 또는, 나는 잠시 이를 整齊하고 잠시 이를 떠안아 후일을 기다린다고 말한다.¹⁸⁾

공자진은 이 글에서 학문하는 자가 “중신토록 小學을 연구하는 것”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크게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小學의 문자학과 언어학을 유가의 최고 도덕규범인 “仁, 愛, 孝, 弟”와 동등한 반열에 두면서 考證學이 결코 理學에 뒤지는 학문이 아님을 설파하였다. 그는 이를 통해 宋學에서 말하는 天命, 大道, 性理를 구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사회이상과 고증학을 연계시키면서 고증학의 실무적 성격과 사유방식의 실천성이 宋學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한 연결고리임을 밝히고자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그는 먼저 樸學이라 불리는 고증학의 순수성과 “朴拙”함이 치밀하게 전개되면 그 退讓, 思慮, 完密, 無所苟를 통해 精微에 이르게 된다는 고증학의 학문풍격과 특징을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송학의 형이상학적 관념철학에 대해 고증학자가 이러한 學力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옛 것을 整齊하고 典籍을 고증하며 뒷사람을 철학적 완성을 도모하겠다는 것을 정확히 밝혔다. 공자진이 보기에 訓詁가 밝혀진 후에 經義가 밝혀지는 것이며, 현묘하고 사변적인 형이상학의 공허한 經義는 본래 經學의 正道가 아니었던 것이다.¹⁹⁾

17) 『定盦先生年譜』, 『全集』, p.594. “是爲以經說字, 以字說經之始.”

18) 『抱小』, 『全集』, pp.93-94.

19) 路新生, 『中國近三百年疑古思潮研究』, 上海人民出版社, 2001, p.370.

공자진은 家學으로 고문경학을 접한 이래로 古今의 官制, 目錄學, 歷史學, 地理學, 金石學, 版本學 등 할 것 없이 古代 典章, 制度, 名物에 관한 考證學은 모두 섭렵하고 평생도록 그 학문 방법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의 시대상황에 직면하면서 본인의 시간과 정력을 經典의 문자 고증에만 쏟아 부을 수 없었다. 즉 시대 비판과 사회 개혁이라는 절박한 經世 임무가 자신에 주어져 있음을 인식하고, 고대 유가경전의 정리와 해석에서 더 나아가 時務에 적합한 政論의 형성을 위한 학문 분야에 치중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분은 공자진과 정통 고증학과 사이의 뚜렷한 구분이라 할 수 있었고 경전에 대한 고증학적 분석은 후일 계몽사상가로서 현실 문제를 다루기 위한 밑바탕으로서 작용하였다.

한편 공자진이 乾嘉 考證學 학술 경향 중에서 皖派의 학문 전통을 계승하였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 “尊德性”, “道問學” 논쟁이라 할 수 있다. 그는 吳派 계열에서도 反宋學的 門戶 편견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심한 학자였던 江藩이 청대의 漢學 학통을 정리한 『國朝漢學師承記』를 저술하자 그 책에 대한 序를 쓰는 한편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청대의 고증학 학풍이 단순히 漢學을 복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였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孔門의 道는 尊德性, 道問學의 二大端이 있을 뿐이다. 二端의 처음은 서로 다르지 않고 서로 이용하며 귀속을 같이 하고자 하였다. 그 시초를 인식하는 동시에 그 귀속을 총괄하는 이는 1대에 몇 사람 안 되거나 몇 代에 1인이며, 그 나머지는 世運을 헤아려 본을 뜬다. 청조에 들어와 儒術은 博學하니 그 運은 실로 道問學이다. …… 감히 묻건대 問學이 尊德性보다 우월한가? 아니다. 이는 文飾(文)만 있고 실질(質)이 없는 것이며 순차 발생하는 것만 따라서 치우치고 끊어지려 함이다. 성인의 도는 制度名物을 표면으로 삼고 窮理 盡性을 내용으로 삼으며 實事訓詁를 발자취(跡)로 하고 知來藏往을 정신(神)으로 삼는다.²⁰⁾

공자진은 이 글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말하고 있다. 청대 고증학의 “儒術”은 비록 날로 博學해져 가지만 점차 “道問學”에 치우쳐 “尊德性”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尊德性”을 무시한 채 “道問學”만을 추구할 수 없는 이유는 “學”만 있지 “用”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가 말하는 制度名物은 考證學(漢學)의 내용이고 窮理盡性は 宋學의 목표라 할 수 있었다. 儒學이 추구해온 “道問學”과 “尊德性”은 송대 이래로 ‘格物致知’와 ‘卽物窮理’로 정리되어 유학을 구성하는 필수불가결한 내용요소가 되었다. 그런데 청조에 들어선 이래로 점차 ‘格物’에만 치중하고 있으니 다시금 實事訓詁(格物)을 통해 知來藏往(致知)으로 나아가자는 제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그는 江藩에게 보낸 편지에서 책 제

20) 『江子屏所著書序』, 『全集』, p.193.

목을 『國朝漢學師承記』에서 『國朝經學師承記』로 개명하자는 주장을 하며 다음과 같이 그 이유를 밝혔다.

本朝에는 本朝 나름의 학문이 있어서 漢學과는 다르다. 漢人이 단서를 연 데에 더욱 심오함을 추가한 바 있으며 漢人들이 다루지 못했던 분야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漢學이라 일컫는 데에는 심히 동의하지 않는 바이다. …… 漢人이 어찌 일찍이 性道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 宋人이 어찌 일찍이 名物訓詁를 얘기하지 않았는가? …… 國初의 학문과 乾隆 초 이래의 학문은 같지 않다. 국초의 학자들은 漢學 門戶만을 표방하지는 않았으므로 大旨에 구별이 없다.²¹⁾

이는 청초의 經學이 ‘漢宋兼采’의 방도를 취하며 漢學과 宋學에 절충적이었던 데에 공정을 표하는 반면 乾隆 이래로 漢學의 기치만 높이 세우고 있는 풍조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학문 경향은 청초 이래의 ‘漢宋兼采’論을 지속, 발전시키는 한편, 漢學에 힘쓰면서도 宋學을 배척하지 않았던 皖派의 학풍을 계승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²²⁾ 즉 “江永, 戴震, 段玉裁의 學은 宋儒를 배척하지 않았으며” 宋代人의 經學 학설이 비록 古義에 맞지 않음을 고증하기는 했지만 宋儒의 學行과 宋學의 이념에 대해서는 긍정했던 것이다.²³⁾ 다만 여기에서, 이 시기 공자진이 考證學을 배척했다거나²⁴⁾, 義理學(尊德性)의 입장에서 考證學(道問學)을 절충하려 했다는 의견²⁵⁾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江子屏所箸書序』과 『與江子屏牋』를 저술한 1817년 당시 그가 접하였던 義理學은 宋明理學으로 그가 아직 新義理學으로서의 公羊學을 받아들이기 전이었다. 고문경학의 가학 전통의 세례를 받은 그가 考證學(漢學)을 배척하거나 아니면 義理學(宋學)을 더 우월한 것으로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글의 내용을 분석해 보아도 ‘尊德性’과 같은 내면적, 경제적 요소가 결여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이지 ‘道問學’에 해당하는 고증학을 배척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즉 그는 한학적 요소인 制度名物, 實事訓詁와 송학적 요소인 窮理盡性, 知來藏往을 대등한 위치로 병렬시킴으로써 종래의 ‘漢宋兼采’論을 다시 계승하고 전개, 발전시키자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는 5년 후인 1822년에 쓴 『陳碩甫所著書序』에서 여전히 小學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즉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21) 『與江子屏牋』, 『全集』, p.347.

22) 路新生, 앞의 책, p.372.

23) 皮錫瑞, 앞의 책, p.245.

24) 배진나, 『龔自珍의 經世思想 研究 - 經·史·勢의 相互關係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pp.8-11.

25) 侯外廬, 『中國思想通史』제5권, pp.680-682(조병한, 『龔自珍 經世思想의 ‘史’와 公羊學 - 章學誠의 史學과 관련하여 -』, 『東義史學』제2집, 1985, p.31에서 재인용).

후일 小學은 廢해지고 오로지 大學만이 남아 學童이 학교에 들어가서 배우는 것은 천하를 다스리는 道가 아니면 窮理盡性 幽遠之言이다. 六書九數는 늙어 죽도록 들어본 바가 없게 된다. 학문은 마땅히 精하고 鉅한 데에 진력해야 한다고 한다. 무릇 小學家は 학문하기에 족하지 못하다 하고 소학을 하면 細儒로 여긴다. 이에 군자가 우려하는 것은 上達해도 그 근본이 없음과 그 어려움을 피하여 바르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끝내 物之命을 궁구히 할 수 없는 것이다.²⁶⁾

이 글에서 공자진은 小學으로부터 시작하여 大學으로 합해지는 풍조가 漢代 이후 사라졌다가 清代에 다시 흥성해진 원인이 “君子가 上達함에 그 根本이 없음을 두려워” 하는데 있다고 논파하였다. 이는 “上達”이 반드시 “下學”으로부터 시작하여 正途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공자진은 考證學이 수십 년의 공을 쌓아 처음으로 하나의 학술 사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고 논증하고 그 학문연마의 고되고 힘들음을 설파했다. 그가 보기에 고증학자가 이러한 수고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구하는 것은 고증학이 유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즉 고증학의 용도는 우매한 선비를 위해 그 방도를 알려주고 經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단서를 찾아주는 데 있었던 것이다.²⁷⁾ 따라서 공자진은 평생 동안 자신이 考證學 傳人임을 자랑으로 여기며, 자신의 아들 또한 考證學의 전통을 계승하기를 희망하였다. 晩年에 지은 『己亥雜詩』를 통해 볼 때, 龔自珍은 자신이 고증학에서 성취 못한 것을 교훈으로 삼아 아들을 교육하였던 것이다.²⁸⁾

考證學은 공자진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皖派의 학문 전통은 가학을 통해 공자진에게 전해져 이후의 학문 연구와 사상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공자진은 今文學者이기 이전에 古文學者였으며 今古文學을 절충하는 그의 학문 경향은 乾嘉 고증학의 세례를 받고 있던 당시에도 漢學과 宋學의 방법과 대의를 함께 추구하던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公羊學 經典解釋에서의 ‘史’觀과 社會改革論

1. 公羊學의 수용과 경전해석에의 적용

龔自珍이 公羊學을 그의 新義理學으로 받아들여 연구하게 된 것은 28세 되던 1819년 (嘉慶 24) 恩科會試에 낙제한 후 북경에서 常州 公羊學派인 劉逢祿의 문하에 들어가 『公

26) 『陳碩甫所著書序』, 『全集』, p.195.

27) 路新生, 앞의 책, p.371.

28) 『己亥雜詩』303수, 『全集』, p.537. “마음 속 높은 학문 사용하기 두렵지만, 樸學을 잇는 것이 封侯에 비할쏘냐. 五經에 爛熟함이 일상사처럼 되더라도, 늙은 아버지처럼 九流(百家)에 심취하진 말기를.(儉腹高談我用憂, 肯肩樸學勝封侯. 五經爛熟家常飯, 莫似而翁啜九流)”

羊春秋』를 배우면서부터였다.²⁹⁾ 당시 『明良論』(1814), 『乙丙之際箸議』(1815-1816)를 통해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개혁의 뜻을 품고 있던 龔自珍에게 經世學이자 실천적 개혁론의 이론적 기반이 되는 공양학은 새로운 학문적 돌파구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이 시기가 常州學派와의 첫 만남도 아니고³⁰⁾ 공양학 개념에 대한 첫 접촉도 아니었지만³¹⁾ 劉逢祿의 해석³²⁾에서 드러난 광범위한 암시에 흥이 돋우어진 龔自珍은 『公羊春秋』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며 그 주요 개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³³⁾ 그리고 龔自珍이 1823년과 1825년에 『五經大義終始論』과 『古史鈎沈論』을 각각 완성시켰을 때 공양학의 개념을 경전의 해석에 적용하게 되었음이 비로소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었다.

공자진은 공양학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劉逢祿의 해석을 통해 何休의 三科九旨說³⁴⁾을 수용하였다. 유봉록은 공양학의 삼과·구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1) ‘存三統(通三統)’의 科에 ‘故宋(商)’·‘新周’·‘據魯(當新王)’의 旨가 있고, (2) ‘張三世’의 科에 ‘所傳聞의 世’·‘所聞의 世’·‘所見의 世’라는 세 시대의 旨가 있는데, 세 시대마다 각기 ‘撥亂始治’·‘進升平’·‘見治太平’의 뜻이 있고 또한 ‘三世異辭’의 뜻으로 각 시대마다 ‘殺其恩’·‘痛其禍’·‘微其辭’라는 뜻이 있다. (3) ‘異內外’의 科에 ‘內其國’·‘外諸夏’·‘內諸夏外夷狄’의 旨가 있다. “存三統(通三統)”의 지침은 왕통 계승론에 그치지 않고 三代 정통왕조(夏·商·周)의 제도를 검용하여 새 왕조의 개혁에 상호 참조한다는 뜻도 있었

29) 『定齋先生年譜』, 『全集』, p.603.

30) 臧庸, 顧汝明, 孫星衍, 惲敬, 趙懷玉과 같은 상주 학자들은 段玉裁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형성하여 소주에 있는 段玉裁의 거처를 자주 찾았으며 阮元이 절강성 순무로 재임하는 동안 항주로 초빙되어 학문활동을 펼쳤다. 龔自珍은 10세가 될 때까지(1792-1802) 살았던 항주에서 이들을 접할 수 있었으며 1812년에서 1815년 사이에는 소주에 있는 段玉裁의 집에서 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Judith Anne Whitbeck, The Historical Vision of Kung Tzu-Chen(1792-1841),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h.D. dissertation, 1980, p.20, 74)

31) 1815년에서 1816년 사이에 쓰여진 『乙丙之際箸議』에서는 이미 공양학의 三世說을 빌려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다.(乙丙之際箸議第九, 『全集』, pp.6-7)

32) 劉逢祿에게 있어 공양춘추학은 성인 공자의 경세학으로서 성인의 도를 배워 행하고 그 발자취를 계승하고자 하는 학문이었다. 劉逢祿에 의하면 그러한 성인의 도는 五經에 완비되어 있고 그 가운데에서도 『春秋』가 바로 오경 이해의 열쇠였다. 따라서 오경의 개별화된 고증으로 경학의 분해를 촉진한 고문경학의 연구법에 비해 劉逢祿의 금문경학은 春秋學의 義理를 중심으로 오경의 통합적 이해를 추구하였다. 이처럼 劉逢祿의 공양학은 주자학 쇠퇴 이후 새로운 정치의 의리학의 원형을 구성하고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현실적 경세의식과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었다.(劉逢祿, 『春秋公羊釋例序』, 『劉禮部集』, 卷3, 22a-23a.)

33) 龔自珍은 劉逢祿을 만나 그로부터 공양학에 심취하게 된 심정을 다음과 같이 시로 읊었다. “昨日 劉禮部(劉逢祿)를 상봉하니 高言大句가 더할 수 없이 유쾌하다. 君을 따라 虫魚學(고증학)을 태워 없애며, 즐겨 東京(낙양) 賣餅家(공양학자)가 되리라.”(『雜詩, 己卯自春徂夏, 在京師作, 得十有四首』, 『全集』, p.441)

34) 何休의 三科九旨는 故宋·新周·以春秋當新王之 存三統(通三統), 所見異辭·所聞異辭·所傳聞異辭의 張三世, 內其國而外諸夏·內諸夏而外夷狄·夷狄進至于爵의 異內外(風內外)를 말한다.(『十三經注疏』 6冊(京都: 中文出版社, 1971), 4778쪽)

다. “張三世”의 지침은 동란을 다스려 평화를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태평의 실현을 지향한다는 뜻이며, “三世異辭”의 지침은 “春秋筆法”을 지적한 것으로 삼세의 시기에 따라 초기에는 直書, 당대에는 微詞를 쓴다는 것이다. “異內外”의 지침은 天子가 “대내의 근본 문제를 존중한다.”는 이념으로서 천자의 內政에는 爵祿 수여, 관리의 임면, 반적 토벌, 복수, 行權, 禪讓 같은 義理가 있다.³⁵⁾ 龔自珍은 이러한 공양학의 삼과·구지 중에서 특히 ‘三世’에 치중하였는데 이는 청 중엽 이래 공양학의 중점이 ‘內外’와 ‘三統’에 있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선구적이라 할 수 있었고 또한 그의 經世 史論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었다. 즉 龔自珍은 『五經大義終始答問八』에서

문건대, 禮運의 文은 上古를 據亂으로 삼아 쓰여 졌고, 中古를 升平으로 삼았다. 春秋의 當興王일 것 같으면, 首尾 겨우 240년인데 무엇 때문에 三世를 갖추었는가? 답하노니 고금을 통틀어 三世라 할 수 있다. 春秋의 首尾도 역시 三世이다. 大槩가 甲子를 만드니, 一日도 역시 그것을 쓰며, 一歲도 역시 그것을 쓰며, 一章(76년)一節(19년)도 역시 그것을 쓴다.³⁶⁾

라고 하여 문답식의 형태를 빌어 三世를 긍정하였다. 또 『五經大義終始答問九』에서는

문건대, 무엇이 순전한 太平의 書인가? 답하노니 禮는 古經을 節文해 보면 상세하다. 賓에 대해서는 더욱 상세하다. 무릇 賓師는 八政 중 최후의 것이다. 土禮 17篇은, 순전한 太平의 말이다.³⁷⁾

고 하여 『五經大義終始答問八』과 더불어 據亂→升平→太平이라는 변화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공양학의 삼세설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의 삼세설은 『乙丙之際箸議』를 쓸 때인 1816년과는 그 순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乙丙之際箸議 第九』에서는 시대의 구분과 衰世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春秋』에 깊은 이해를 가진 이가 史에 대해 논하는 것을 들어보니, 書契 이래 시대(世)에는 3등이 있으니 3세 모두가 그 才를 보고 구별한 것이다. 才의 차등에 따라 治世가 그 한 시대요, 亂世가 또 한 시대이며, 衰世가 별도로 한 시대를 차지한다. 衰世는 文飾, 名

35) 劉逢祿, 『春秋論』下, 『劉禮部集』卷3, 19b-20b.

36) 問: 禮運之文, 以上古爲據亂而作, 以中古爲升平, 若春秋之當興王, 首尾才二百四十年, 何以具三世? 答: 通古今可以爲三世, 春秋首尾, 亦爲三世. 大槩作甲子, 一日亦用之, 一歲亦用之, 一章一節亦用之.(『五經大義終始答問八』, 『全集』, p.48)

37) 問: 孰爲純太平之書? 答: 禮古經之於節文也詳, 尤詳於賓. 夫賓師, 八政之最後者也. 土禮十七篇, 純太平之言也.(『五經大義終始答問九』, 『全集』, p.48)

稱, 聲音, 笑貌가 治世와 비슷하다. 黑白이 섞여 五色이 버러지게 된 것이 치세의 太素와 유사하고, 宮音과 羽音이 희미해 五聲이 무너진 것이 치세의 淆聲과 유사하며, 도로는 황폐하고 밭두둑 경계의 구분이 없는 것이 치세의 蕩平과 유사하고, 人心이 어지러워져 잘못을 말하지 않음이 치세의 不議와 유사하다.³⁸⁾

여기서 공자진은 ‘才’의 차이에 따라 세상을 治世, 亂世로 구분하고 별도로 衰世를 두어 治世와 亂世의 중간에 위치한 시대로 정의하였다. 그가 생각하기에 衰世란 사회의 모습이 治世와 닮아 있으나 실제로는 亂世의 징조를 담고 있는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볼 때 공양학을 받아들이기 전 공자진이 생각한 三世는 治世(太平)→衰世(升平)→亂世(據亂)의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었고 그것이 공자진이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이기도 하였다. 즉 쇠세는 치세의 모습이 남아 있는 듯이 보여서 아직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지만 실상은 난세의 모습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서둘러 쇠세에 드러난 사회문제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난세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경고를 담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서 공양학을 접하고 난 뒤의 三世는 공양학의 張三世를 따라 據亂→升平→太平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니 이는 어지러운 현 시점에서 개혁을 통하여 太平世에 이를 수 있다는 적극적 개혁의지와 실천적 정치론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³⁹⁾

龔自珍은 劉逢祿을 통해 수용한 공양학의 주요 개념들을 사용하여 경전을 해석하였지만 그의 학설을 묵수하지 않고 자신의 역사변화의식에 따라 금문경학을 개조하고 과거 經學의 傳注를 초월한 독자적인 절충적 今古文學을 전개하였다.⁴⁰⁾ 먼저 龔自珍은 참위설을 배격하여 전한 금문경학의 京房『易』, 劉向『尚書』의『洪範』, 班固『漢書』의『五行志』를 비난했으며,⁴¹⁾ 今文·古文經이 모두 공자의 眞傳으로서 해석상의 차이만 있다고 하여⁴²⁾ 段玉裁의 小學에 기초한 今文經·古文經 절충의 논리를 펴 나갔다. 또한 六經이 공자 이전부터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하여⁴³⁾ 공자의 “述而不作”의 정신을 강조하는 동시에 육경을 ‘周史의 宗子’⁴⁴⁾라 하여 史書로 간주하는 태도(六經皆史論)는 육경은 모두 ‘공자의 手定’이라는 정통 공양학자의 견해와는 정면으로 대립되는 고문경학가적인 견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龔自珍은 『詩』, 『禮』, 『春秋』, 『易』, 『書』등이 모두 불완전하기는 하

38) 『乙丙之際箸議 第九』, 『全集』, p.6.

39) 김형열, 「공자진 후기 사회사상의 성격과 언론활동」, 『역사와 경계』 83집, 2012, pp.254-255.

40) 陳恒富, 「龔自珍與今文經學」(『浙江學刊』第2期, 1983), 復印報刊資料 中國現代史, 1983. 5, pp.40-41.

41) 『與陳博士箋』, 『全集』, p.346.

42) 『大誓答問第二十四』, 『全集』, p.75.

43) 『六經正名』, 『全集』, p.36.

44) 『古史鈎沈論二』, 『全集』, p.21.

지만 古史가 보존했던 문헌을 자료로 하여 공자가 刪定한 저작임을 주장함으로써⁴⁵⁾ 금문 경학적 성격이 공존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문과 금문을 절충하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한 龔自珍으로서의 公羊氏와 何休, 나아가 그에게 직접 학문을 전수한 劉逢祿의 說에서까지 자신의 견해와 부합되지 않은 점을 과감히 지적할 수 있었다. 또한 龔自珍은 하휴의 삼세설을 『春秋』이외의 經, 즉 『書』의 洪範八政에도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함으로써⁴⁶⁾ 결국 공양학을 경전전반의 해석에 적용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전반의 통일적 법칙으로까지 확대코자 하였으며, 이는 그의 사회개혁론의 이론적 지주가 되었다.

2. 龔自珍의 역사인식과 사회개혁론

공자진은 공양학의 張三世를 받아들여 삼세설을 전개하게 되면서 변화와 순환을 중시하는 역사인식을 형성하였다. 그는 역사가 據亂, 升平, 太平의 三世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였다.⁴⁷⁾ 3단계의 역사 발전법칙은 世界와 만물이 계속하여 변화한다는 인식에도 적용되었다. 즉 그는 “天道는 10년이면 小變이고, 백년이면 大變이다.”⁴⁸⁾, “天運 10년에 小變하고, 人事도 역시 그러하다”⁴⁹⁾고 말하며 천도와 천운의 변화에 따라 人事 또한 이에 상응하여 변화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인식은 경전에 대한 해석 속에서 만물 운행의 원리를 파악하는 데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즉 공자진은 『春秋決事比答問第五』에서 『春秋』를 지은 원인을 해석하던 중 ‘天下必變의 常理’를 도출해 냄으로써 『公羊春秋』에서 전개하는 변화의 세계관을 받아들이게 되었음을 볼 수 있다.

春秋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십에 팔구는 人倫의 변화에 대해 적은 것이다. 크구나, 변함이어! 父子가 변하지 않으며 慈孝를 탐구할 수 없다; 君臣이 변하지 않으면 忠孝의 종류를 밝혀내지 못한다.; 夫婦가 변하지 않으면 閨門의 덕을 말할 수 없다. 精義가 절묘하면 致用이다; 사물을 비교하고 같은 종류를 연이으면 그 錯綜을 높일 수 있다.⁵⁰⁾

45) 『古史鉤沈論二』, 『全集』, p.23.

46) 『五經大義終始答問一』, 『全集』, p.46.

47) 『五經大義終始論』, 『全集』, pp.41-46.

48) “天道十年而小變, 百年而大變”(『擬上今方言表』, 『全集』, p.308)

49) “天運十年而小變, 人事亦然.”(『在禮曹日與堂上官論事書』, 『全集』, p.327)

50) “春秋何以作? 十八九爲人倫之變而作. 大哉變乎! 父子不變, 無以窮慈孝之隱; 君臣不變, 無以窮忠孝之類; 夫婦不變, 無以發閨門之德. 精義入神, 以致用也; 比物連類, 貴錯綜也.”(『春秋決事比答問第五』, 『全集』, 63쪽)

『公羊春秋』를 관통하고 있는 중심개념인 변화(變)는 공자진의 개혁사상을 이루는 핵심 부분으로, 그는 세상과 人事가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제도와 정책의 실시 또한 이에 상응하여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1822년과 1823년 사이에 지은 『壬癸之際胎觀』중에 드러났는데, 공자진은 반복하여 凝固, 膠結, 不變이 국가의 파괴와 가정의 쇠망을 가져올 것이라 주장하였다.⁵¹⁾

공자진의 역사관을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인식은 순환론이었다. 자신이 받아들인 3단계의 역사발전 원칙에서의 순환·발전은 각 단계의 시대와 사물에 있어서도 그대로 체현되고 있음을 공자진은 인지하였다. 즉 그는 1823년에서 1824년 사이에 지은 『壬癸之際胎觀』에서 “만물의 수는 총괄해서 셋이다. 처음은 가운데 것과 다르고, 가운데 것은 끝과 다르며, 끝은 처음과 다르지 않다. 한 통의 박은 세 번 변하고, 한 알의 대추도 세 번 변하며, 하나의 대추씨도 또한 세 번 변한다.”⁵²⁾고 하여 순환적 인식론의 형성이 三世의 역사발전론에 기인한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공양학에서의 역사순환론은 공자진의 개혁사상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공자진은 공양학의 삼세설을 연구하는 중 董仲舒의 三統 순환론을 받아들여 역사를 해석하였다. 하지만 동중서가 說한 “改制의 名만 있고 易道の 實은 없는” 역사 순환에 대해서는 반대하였다. 즉 그가 처했던 시대는 곧 난세로 치달을 급박한 상황이었고 모든 典章과 制度, 人心과 禮樂이 붕괴될 위기에 봉착해 있었기에 法(道)의 개혁에 따른 역사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그가 1829년 內閣中書라 하는 微官에 재직하면서도 大學士에게 행정개혁을 건의하는 글 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어릴 때 歷代史書 및 國情掌故를 읽었는데, 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法은 고치지 않은 것이 없고, 勢는 쌓이지 않음이 없으며, 事例는 변천하지 않음이 없었고 風氣는 옮겨 바뀌지 않음이 없었다.⁵³⁾

따라서 공자진은 法の 改正과 事例의 變遷, 風氣의 移易을 위해 공양학의 三世說을 宗旨로 하여 그 외에 史書를 섭렵하며 자신의 역사관을 정립하였고, 변화와 순환을 중심으로 하는 그의 역사 인식은 사회개혁사상을 통해 표현되었다.

먼저 공자진은 그의 순환적, 발전적 역사관을 전개하며 古今 史實의 기록(實錄)이자 그

51) “大兵大札，起于肉食，大亡大哀，起于莞篲。大薄蝕，大崩竭，起于膠固。”(『壬癸之際胎觀』, 『全集』, 16쪽)

52) “万物之數括于三：初異中，中異終，終不異初。一匏三變，一棗三變，一棗核亦三變。”(『壬癸之際胎觀第五』, 『全集』, pp.16-17)

53) “少讀歷代史書及國情掌故，自古及今，法無不改，勢無不積，事例無不變遷，風氣無不移易。”(『上大學士書』, 『全集』, p.319)

러한 史實의 인지와 분석, 적용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한 ‘史’의 의미를 치밀하게 고증하고 쇄세사회를 개혁할 주체로서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역사를 차용하여 時政을 議論하는 글인 『古史鉤沉論』과 역사 기록의 중요성과 그 방법을 담은 글인 『尊史』를 저술하여 그의 독특한 ‘史’論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그는 『古史鉤沉論二』(‘尊史二’라고도 칭함)에서 史籍의 작용을 크게 긍정했다.

周代에는 世官 중 큰 직위가 史였다. 史 이외에는 언어가 없었고 문자가 없었으며 人倫 德目이 없었다. 史가 존재함으로써 周가 존재했고 史가 망함으로써 周도 망했다.⁵⁴⁾

공자진은 여기서 “六經이란 것은 周史의 宗子”라고 했는데 이러한 議論은 章學誠의 “六經皆史說”과 같은 것이었다. ‘史’가 존중받아야 하는 이유는 ‘史’가 ‘史官’이며 역사의 기재자이기 때문이었다. 『六經正名答問一』에서 그는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육경이 있었다. 공자가 태어나서 하나의 경도 짓지 않았다.”⁵⁵⁾고 함으로써 오히려 공양학의 기본 이론을 무시한 채 經을 傳의 위에 자리매김함으로써⁵⁶⁾ 經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史의 권위를 높였다. 또한 그는 經의 위치에 해당하는 史의 기록은 엄밀하고 정밀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기록 방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요구하였다. 史의 범위는 萬象을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史의 “善入”과 “善出”이 중요하였다.

天下山川의 형세, 人心風氣, 토지의 適宜性, 姓의 계보, 국가 祖宗의 습, 아래로 胥吏의 직분에까지 그 禮, 兵, 獄, 政, 掌故, 文章, 인물의 賢否에 관해 말하는 것이, 집안 일 말하는 것과 같다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善入) 할만하다. …… 禮, 兵, 獄, 政, 掌故, 文章, 인물의 賢否에 관해 말하는 것이, 배우가 堂下에서 부르짖고 춤추며 노래하여 哀樂이 천만 가닥인데 堂上의 관람자가 엄숙히 앉아서 바라보고 지시하는 것과 같다면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善出) 할 만하다.⁵⁷⁾

공자진 尊史의 論에 있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역사상 발생한 史實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史에 들어갈 수 없으면 史實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며 이는 實錄이 아니다. “나갈 수 있다”는 것은 史實에 대해 엄격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시로 변화하고 喜怒哀樂의 內情이 만연하는 史實에 대해 모두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취한다면 그 史實의 배후를 관통하는 ‘道’를 꿰뚫어 볼 수 없게 되고 만다. 史에

54) “周之世官大者史. 史之外无有語言焉; 史之外无有文字焉; 史之外无人倫品目焉. 史存而周存, 史亡而周亡.”(『古史鉤沉論二』, 『全集』, p.21)

55) “仲尼未生, 已有六經, 仲尼之生, 不作一經”(『六經正名答問一』, 『全集』, p.39)

56) 조병한, 앞의 글, p.45.

57) 『尊史』, 『全集』, p.81

대한 엄밀한 고증과 함께 그것을 아우르는 일관된 ‘道’를 찾아야 한다는 공자진의 “尊史”論은 엄밀한 고증이라는 학문 방법을 요구하는 小學 연구의 전통으로부터 계승된 것이며 그와 더불어 史의 ‘道’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것은 ‘漢宋兼采’의 학문 태도가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자진의 “尊史”論과 “抱小”論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다. 즉 ‘入乎史’, ‘知史考史’가 “道問學”이라면 “出乎史, 入乎道”는 “尊德性”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尊史”가 결국 “明道” 즉 經世致用으로 귀결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변화와 순환을 중시하는 역사관과 더불어 古今의 시대상황과 정세에 엄밀한 고증과 분석을 가해야 한다는 ‘史’論이 결합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사회비판과 사회개혁론이었다. 공자진의 현실적 사회비판은 먼저 청조의 지식인 탄압에 대한 정치적 시각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옛날 천하를 제패한 씨족으로 개국한 황제(稱祖之廟)는 그 힘은 강하고 그 뜻은 굳세며 그 총명이 뛰어나고 그 재물은 많아, 천하의 선비를 원수로 삼고 사람의 廉을 빼앗고 즐겨 호령하며 사람의 恥를 빼앗아서 자기의 한 몸을 높였으니, 한 사람은 강하였으나 만인을 유약하게 만듦으로써 그의 힘이 강하고 굳세게 하는데 편하게 하였다.⁵⁸⁾

清朝의 전제통치 아래에서 황제 1인은 강하였으나 만인(萬夫)은 유약하게 만들었다. 만인을 유약하게 만들어야만 한 사람을 강하게 만들 수 있었다. 전제통치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또한 지식인(士)의 사상을 마비시키고 복종하게 만들어야 했다. 지식인의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원수로 만들어 끊임없이 경계하고 비하시켜야 했으니 결국 지식인은 엄격한 통제 아래에서 그들의 廉과 恥를 내어 놓고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했다. 이처럼 청조의 한족 지식인에 대한 고압적 정책 하에서 공자진이 본 것은 ‘衰世’가 드리워진 생기 없는 모습이었다. 그럼 이러한 衰世 社會를 개혁할 방안을 역사 속에서 찾으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 공자진이 보기에, 먼저 깨끗하고 절개가 있는 ‘士’가 나와 개혁을 주장해야 하는데, 그러한 ‘士’가 되기 위해서는 史를 알고 史를 고찰해야 했다.(知史考史) 史를 알게 되면 ‘賓’이 되는 것이니 역사적으로 賓의 지위는 동등하지 못했지만 그 史를 알고 經史를 편찬하였기에 外臣이지만 賓으로서 존중받았고, 또한 황제가 신하를 賓으로 대우해 줄 때 비로소 태평세에 들어서는 것이었다. 따라서 공자진은 또한 『賓賓』이라 이름 붙여진 『古史鉤沈論四』에서 인재 즉 신하를 손님(賓)으로 대우하는 새로운 군신관계 정립의 필요성을 역사적으로 고찰하였다.

⁵⁸⁾ 『古史鉤沉論一』, 『全集』, p.20.

옛날 開國의 시기에 異姓이 따라붙지 못해 據亂이 일어났다. 그러므로 外臣은 天位를 공유할 수 없었다. 人主는 겨를이 없었고, 賓은 의심과 꺼림을 피해야만 했다. 이 때문에 箕子는 아침에 武王에게 書를 주고 저녁에 동쪽 바다 밖에서 다시 떨어져 일어났다. 世를 바꿔 升平이 오고 또 世를 바꿔 太平이 올 것이니, (이렇게 되면) 賓은 또한 나아가 人主의 恤족과 동등해 질 것이다.⁵⁹⁾

공자진은 여기서 “賓”의 지위와 대우가 據亂, 升平, 太平의 삼세에 걸쳐 같지 않았음을 해석하는⁶⁰⁾ 한편 異姓, 外臣인 賓이 人主의 恤족과 동등해 질 때 비로소 태평세에 이른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결국 태평세를 이루기 위한 개혁의 주체가 賓 즉 士가 되는 것이며, 인주와 동등해 지기 위해 賓은 人主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삼가는 한편 人主의 억압을 받거나 눈치를 봐서는 안 되었다.

燕私(왕의 親族私宴)의 놀이에는 따르지 않고, 宮庫의 재물에 관여하지 않으며, 세속적 은혜에는 참견하지 않고, 同姓의 옥사는 심문하지 않으며, 북면하여 군주를 섬기되 질책하며 돌아다니는 일은 행하지 않고, 재난과 모욕을 막아내되 사사로운 원한으로 죽음을 무릅쓰지 않는다. 그러한 연유로 나아가서는 禮에 맞게 하고 물러나서는 道에 맞게 하며 자손은 길이 儒에 맞게 하고 學은 史에 맞게 한다.⁶¹⁾

여기에서 보면 賓의 직무는 봉사이지 시중드는 것이 아니며, 군신관계는 서로를 예우에 맞게 대접하는 것이지 절대적이고 혹독한 상하 예속관계가 아니었다. 공자진에 따르면 賓은 떳떳하게 자기의 할 일을 다 하고 본분을 지키되 비굴하지도 않고 대항하지도 않으면서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펴 나감으로써 통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인재를 일컫는 것이었다.⁶²⁾ 따라서 공자진은 걸출한 인재를 등용하여 그에 맞는 대우를 통해서 창조 사회의 개혁에 매진토록 하는 것이 태평세로 향하는 주요 통로이며 역으로 말해서 군주와 신하가 동등한 지위에 올라서게 되는 시기가 바로 太平世라고 생각하였다.

이처럼 공자진은 그의 역사관과 ‘史’論을 통해 ‘士’가 ‘史’로서의 가치를 높여 禮와 道를 지켜나가는 것이 쇠세 사회를 바로잡을 방안임을 제시하였고 臣이 ‘賓’으로 대우받게 될 때 비로소 太平世에 이르게 된다는 역사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59) 古者開國之年, 異姓未附, 據亂而作, 故外臣之未可以共天位也, 在人主則不暇, 在賓則當避疑忌. 是故箕子朝授武王書, 而夕投袂於東海之外, 易世而升平矣, 又易世而太平矣, 賓且進而與人主之骨肉齒.(『古史鈎沈論四』, 『全集』, p.27)

60) 李明洙, 『清代 龔自珍에 의한 公羊思想의 展開推移』, 『東洋哲學研究』 14집, 1994, pp.340-341.

61) 『古史鈎沈論四』, 『全集』, 27쪽.

62) 김중원, 『龔自珍의 社會思想 初探』, 『釜山史學』 35집, 1998, pp.340-341.

IV. 맺음말

龔自珍은 어려서부터 외조부인 段玉裁의 영향을 받으며 古文經學의 소양을 쌓았다. 뿐만 아니라 段玉裁와 친분관계에 있던 常州의 학자들과도 교왕하면서 今古文 절충의 家學 전통을 어느 정도 이어받고 있었다. 小學으로서의 考證學은 공자진의 사상 형성에 중요한 작용을 하였고 다양한 영향을 주었다. 특히 皖派의 학문 전통은 가학을 통해 공자진에게 전해져 이후의 학문 연구와 사상 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었다. 공자진은 今文學者이기 이전에 古文學者였으며 今古文學을 절충하는 그의 학문 경향은 乾嘉 고증학의 세례를 받고 있던 당시에도 漢學과 宋學의 방법과 대의를 함께 추구하던 태도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비교적 초기부터 經世致用에 뜻을 두면서 사회비판사상을 키워나가던 龔自珍에게 공양학 이론은 經典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이끌어 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세계관과 사회관에 큰 변화를 가져다주었다. 따라서 그는 경전해석에 드러난 역사관과 ‘史’에 대한 인식을 통해 衰世 사회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혁을 주장할 이론적 무기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공자진은 공양학의 張三世를 받아들여 三世說을 전개하게 되면서 변화와 순환을 중시하는 역사관을 형성하였다. 그는 역사가 據亂, 升平, 太平의 三世를 거듭하면서 끊임없이 순환, 반복하며 앞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변화(變)는 공자진의 개혁사상을 이루는 핵심부분으로, 그는 세상과 人事가 부단히 변화하고 있는 만큼 정치제도와 정책의 실시 또한 이에 상응하여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공자진의 역사관을 관통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인식은 순환론이었다. 자신이 받아들인 3단계의 역사발전 원칙에서의 순환·발전은 각 단계의 시대와 사물에 있어서도 그대로 체현되고 있음을 공자진은 인지하였다. 따라서 공자진은 그의 역사관과 ‘史’論을 통해 ‘士’가 ‘史’로서의 가치를 높여 禮와 道를 지켜나가는 것이 衰世 사회를 바로잡을 방안임을 제시하였고 臣이 ‘賓’으로 대우받게 될 때 비로소 太平世에 이르게 된다는 역사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龔自珍에게 있어서 공양학은 순수 經學의 차원을 벗어나 經世와의 연장선상에서 일종의 목적론으로서 흡수, 이용되었다. 이처럼 공양학은 龔自珍에게 있어 포괄적 經世學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공양학이라는 사상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후에 제시된 대담한 개혁론이 개진될 수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공자진의 經世思想의 형성에 있어서 공양학의 이론 요소가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를 통해 역사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역사의 발전을 위해 현재 사회의 병폐를 개혁해야겠다는 지식 인의 사명 인식에도 일정한 작용을 하였음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홍타이지 시기 對蒙정책과 ‘外藩’ 개념의 형성

이 선 애(고려대)

目次

서론

1. 군령을 통한 법적 지배

2. 호구조사와 旗 편제

3. 이번원 설립과 ‘외번’(tulergi golo) 개념의 형성

결론

서론

청조는 만주족이 세운 다민족 국가이며 중국사상 최대 판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사학계의 주목을 받아왔다.¹⁾ 청의 前身인 건주여진은 동북 지역의 작은 부락에서 시작해 중원을 차지하고 몽골과 티벳, 신강을 아우르는 제국으로 성장했다. 청대 ‘번부’는 청이 제

1) 소수의 만주족이 지배층인 청이 어떻게 중원뿐 아니라 몽골·티벳·신강을 아우르는 제국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대체로 기존에 주류를 이루었던 ‘한화이론’과 만주족의 정체성 문제에 주목한 ‘신청사’학파로 나눌 수 있다. 한화이론은 소수의 만주족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면서 한족문화를 흡수해 서서히 정체성을 잃고 한족에 동화되었다는 주장이다. 대표적인 한화이론 학자로는 Mary Wright와 何炳棣가 있다. Mary Wright, *The Last Stand of Chinese Conservatism: The T'ung-Chih Restoration, 1862-187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57; Ho Ping'ti, "The Significance of the Ch'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26, No. 2 (Feb., 1967); "In Defense of Sinicization: A Rebuttal of Evelyn Rawski's "Reenvisioning the Qing"",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57, no.1(Feb.,1998). 최근에 Pei Huang이 한화론적 입장에서 신청사적 관점을 비판했다. Pei Huang, *Reorienting the Manchus: A Study of Sinicization 1583-1795*, Cornell University, 2011. 신청사학파는 청조의 이민족 정권으로서의 특색을 강조하고 만주족 정체성 문제에 천착해 ‘한화이론’을 비판했다. 대표적인 학자로 Mark Elliott, Pamela Crossley, Evelyn Rawski 등을 꼽을 수 있다. Mark C. Elliott,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1 (이훈·김선민 역,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Pamela K. Crossley, *Orphe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Press, 1990;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of California Press, 2002; Evelyn Rawski,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 (구범진 역, 『최후의 황제들』, 까치, 2010).

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지리적·개념적으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본래 ‘藩’(혹은 番)이라는 용어는 중화주의적 천하질서에서 천자가 거한 중원을 둘러싼 분봉 제후와 변방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先秦시대에 천자가 동성·이성제후들에게 분봉하던 중번제도는 秦漢시대 지방분권적이던 정치형태가 중앙집권체제로 변화하면서 분봉의 대상이 동성·이성제후에서 이민족 통치자에게로 옮겨갔다. 천자가 거한 중앙 직할지의 외연에 위치한 ‘번’은 계속 밖으로 확대되어 非한족 지역을 포함하게 되었고 이 지역의 수장들은 藩臣으로서 천자와 군신예속관계를 맺었다. 이러한 전통적 천하질서에서 파생된 ‘藩部’라는 어휘는 청대에 들어서 청의 통치를 받는 변방의 非한족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가리키는 일종의 정치적 개념으로 발전되었다.²⁾ 이것은 조공체제의 틀에 편입되어 있지만 독립된 국가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속국과도 다른 개념이었다. 이 양자를 한데 묶어 ‘번속’으로 통칭하고 동일시하는 의견도 있지만 청조가 정책적으로 번부와 속국을 분리해 대응했다는 점은 분명하다. 청조가 몽골·티벳·신장 등을 번부로 조선·유구·안남 등의 속국과 분리시켜 이번원을 신설해 관할하게 했다는 것이 그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³⁾ 선진 시대에 형성된 중번사상이 계속해서 확대 발전된 것이 말해주듯 중원왕조의 주변 민족·국가에 대한 인식은 계속 변화했으며 이는 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⁴⁾

청대에 들어서 ‘번부’가 정치적인 함의를 갖게 된 것처럼 ‘외번’이라는 용어도 청대에 들어서 빈번하게 사용되기 시작했다. 張雙智의 분석에 따르면 청대 외번은 藩國, 屬國, 藩服, 藩部 등으로도 불렸으며 그 사용 범위가 가장 광범위했다. 이 외번은 다시 內屬外藩과 境外外藩으로 나뉘며 내속외번은 이번원에 예속된 몽골·티벳·청해 등을, 경외외번은 조선·류큐·南掌 등 이른바 속국을 가리켰다.⁵⁾ 그러나 이런 용어들이 가리키는 의미와 범위도 시기에 따라 변화했다.

몽골은 『清史稿』 『列傳』 藩部 편에서 마지막 西藏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을 차지하고

2) 張永江, 『清代藩部研究-以政治變遷爲中心』, 黑龍江教育出版社, 2001, 1쪽.

3) Mark Mancall은 조공체계에서 유교적 사상체계를 공유하는 농경국가인 조선·안남 등 동아시아·동남아시아 초승달지역과 유라시아 유목민이 거주하는 서북 초승달지역을 구분하였다. 이들은 청대에 각각 이번원과 예부가 나누어 관리했다는 점에서도 구분된다.(Mark Mancall, “The Ch’ing Tribute System: An Interpretive Essay”,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Harvard Univ.Press, 1970). 최정연, 『理藩院考(上)』, 『東亞文化』 20집(1982), 133쪽.

4) 김선민은 청의 조선에 대한 인식을 『明史』와 『清史稿』에서 조선을 설명한 방식을 검토해 고찰했다. 중국적 세계질서 즉 조공관계의 충실한 일원으로 꼽히는 조선에 대한 청의 인식이 시기에 따라 ‘외국’에서 ‘속국’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추적해 청과 조선의 관계가 고정된 실체가 아닌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존재였음을 밝혔다. 김선민, 『‘外國’과 ‘屬國’의 사이』, 『사림』 제41호(2012).

5) 張雙智, 『清朝外藩體制內的朝覲年班與朝貢制度』, 『清史研究』, 2010년 제3기.

있을 만큼 청대 번부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청대 사료에서 ‘外藩蒙古’는 일종의 고유명사처럼 사용되었다.⁶⁾ 몽골은 청이 입관하기 전 건주여진 시기부터 입관 후 청이 제국으로 성장하기까지 청 정권의 안녕과 제국 발전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건주여진 시기부터 만주족은 주변 몽골과 연합과 전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세력을 확대했고 어느 정도 몽골 세력을 제어할 수 있게 되면서 비로소 명에 대한 공격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다. 누르하치가 주변 여진세력을 병합하고 몽골 부족들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동맹세력을 구축해 가는 과정, 그리고 홍타이지가 몽골과의 연합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몽골 부족들을 제압해나간 과정은 바로 건주여진-후금-청으로 이어지는 국가발전 단계와 궤를 같이한다.

청대 번부는 18세기 중엽에 완성된 것이지만 그 형성의 단초는 입관 전 후금시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⁷⁾ 홍타이지 통치 시기에 형성된 만몽관계는 입관 후 청의 몽골 통치의 원형이 되었다. 홍타이지가 차하르와 명에 대한 원정을 진행하면서 몽골 각부에 내린 군령과 금령의 흔적을 청대 『理藩院則例』나 『蒙古律例』 등 몽골 각 부에 대한 법령에서 찾을 수 있으며 천총 연간부터 몽골 각부에 시행한 호구조사와 기 편성 그리고 회맹 등은 청대 盟旗제도의 원형이 된다. 또한 청대 몽골 관련 업무 전담 기구로 기능했던 몽고아문-이번원이 홍타이지 시기에 설립되었고 몽골 각부를 외번(tulergi golo)으로 칭하게 되었다는 것은 누르하치 시기부터 맺어왔던 평등적이고 불안정했던 몽골 각부와의 관계가 제도화·체계화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이유로 홍타이지가 추진한 몽골 각부에 대한 정책과 제도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했다. 시마다 마사오가 청대 몽골관련 법률을 검토하면서 홍타이지 시기 몽골 각부에 내린 군령을 다룬 바 있으며 쿠스노키 요시미치가 이를 상세하게 분석해 홍타이지가 군령반포를 통해 몽골 각부에 영향력을 확대해간 과정을 검토했다.⁸⁾ 타야마 시게루는 청이 몽골 지역에 실시한 맹기제도와 자사크旗제도를 고찰하면서 홍타이지 시기 추진된 몽골 지역 기 설치와 니루 편제를 검토했다.⁹⁾ 達力扎布와 郭成康, 오카 히로키 등도 청대 맹기제도 형성 문제를 검토하면서 송덕 원년 몽골 각부에 후금관원을 파견해 기와 니루를 편제하고 팔기관직인 니루장긴을 임명한 사실에 주목했다.¹⁰⁾

6) 『清史稿』 권518 『列傳』305 ‘藩部一’부터 권524 『列傳』311 ‘藩部七’까지가 모두 내외몽골·청해 지역 몽골에 관한 내용이다.
 7) 구범진, 『清的 朝鮮使行人選과 ‘大清帝國體制’』, 『인문논총』제59집(2008), 26쪽.
 8) 島田正郎, 『清朝蒙古例の研究』, 創文社, 1982;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9) 田山茂 著, 潘世憲 譯, 『清代蒙古社會制度』, 商務印書館, 1987(田山茂, 『清代に於けるの蒙古社會制度』(1954) 중역본).
 10) 達力扎布, 『清初內扎薩克旗的建立問題』; 『清初對蒙古右翼三萬戶的政策及其背景』; 『清初“外藩蒙古十三旗”雜考』, 『明清蒙古史論稿』, 民族出版社, 2003; 郭成康, 『皇太極對漠南蒙古的統治』, 『中央

청대 번부를 관리한 중앙기구인 이번원이 홍타이지 치세에 설립되었다는 점도 이 시기 만몽관계가 체계화·제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번원에 관한 연구는 주로 제도사적 측면이나 청의 제국적 성격에 초점을 맞춰 식민지 통치기구로서 다루어졌는데 설립 초기보다 중앙기구로서 체제가 완비되어간 입관 후 시기에 연구의 관심이 치중되었다.¹¹⁾ 이는 몽고아문-이번원 설립 초기 활동에 대한 사료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원이 설립되기까지의 배경과 설립 초기의 활동은 입관 후 이번원의 역할과 청대 번부 통치의 특징을 규명하는데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다. 따라서 이번원이 설립되기까지 홍타이지 시기 대몽정책과 이 업무를 담당할 인물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런 문제를 보충하고자 한다. 몽고아문-이번원 설립 자체의 문제와 더불어 몽고아문이 이번원으로 개칭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包文漢은 이번원의 만주어 명칭이 ‘外省’(tulergi golo)을 다스리는 아문이고 몽골어 명칭은 외부몽골의 정무를 처리하는 아문이라는 점에서 몽골 부족은 청에게 ‘內’가 아닌 ‘外’에 속했다고 했다.¹²⁾ 그러나 홍타이지의 입장에서 몽골 각부가 후금 한이 직접 통치하는 내부 영역은 아니었지만 변경 밖 다른 나라(jasei tulergi encugurun)도 아니었다. 원래 만주어로 ‘바깥 지역’을 의미한 tulergi golo가 이 시기에 후금에 귀부한 몽골 각부를 범칭하는 정치적인 함의를 갖게 되었다는 것은 당시 몽골 각부에 대한 후금-청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 이런 점에서 최정연의 다음과 같은 지적은 의미가 있다. 그는 이번원이 설립될 무렵 ‘번’에 상응하는 만주어휘가 존재하지 않았고 外路를 의미하는 tulergi golo에서 golo는 원대 행정단위인 路를 만주어가 차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번부는 邊外의 省으로 지칭되어 청대 자국의 일부로 간주되었고 이는 조공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tulergi gurun)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것으로 몽골은 tulergi gurun에서 복속 이후 tulergi golo의 범주로 전이한 것이었다.¹³⁾

본고에서는 우선 홍타이지 시기 몽골과의 관계 확립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과 정책에 대해 간략히 검토하고 몽고아문 설립과 이번원으로서의 개칭 문제에 주목해 몽골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홍타이지가 내몽골 각부에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동몽골의 강호인 코르친부와와의 관계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정립하는 것이 선결과제

民族學院學報』1987년 제5기; 岡洋樹, 『清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研究』, 東方書店, 2007; 楠木賢道, 위의 책.

11) Chia Ning, *The Li-fan Yuan in the Early Ch'ing Dynasty*, The Johns Hopkins Univ. 1992(Ph.D.); 趙雲田, 『清代蒙古政教制度』, 中華書局, 1989; 『清代治理邊陲的樞紐-理藩院』, 新疆人民出版社, 1995; David Faquhar, *The Qing Administration of Mongolia up to the Nineteenth Century*, Harvard University, 1960. Nicola Di Cosmo는 청대 내륙아시아 지배와 중국내지 지배의 차이점을 분석했다. Nicola Di Cosmo, “Qing Colonial Administration in Inner Asia”, *The International History Review*, XX.2, June 1998.

12) 包文漢, 『清代“藩部”一詞考釋』, 『清史研究』, 2000년 제4기, 101쪽.

13) 최정연, 앞의 글, 136쪽.

였다. 그리고 차하르와 명에 대한 원정 과정에서 몽골 각부 수장과 군사에게 군령을 선포하고 적용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었다. 이러한 조치는 戰時에 한정되지 않고 점차 몽골 각부에 후금 관원을 파견해 본격적으로 호구를 조사하고 旗를 편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본고에서는 몽골에 대한 군령·법령 선포와 아울러 이 시기에 추진된 내몽골 각부에 대한 호구조사와 기 설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홍타이지 시기에 실시된 호구 조사와 기 편제 그리고 회맹은 청대 對몽고 정책의 핵심제도로 평가받는 맹기제도의 원형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몽골 각부의 편제는 몽골 수장들의 속민에 대한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졌지만 후금 한이 몽골 수장들의 속민을 조사하고 그들의 권리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후금 한의 몽골 수장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은 홍타이지 시기 만몽관계가 이전 시기보다 한층 제도화·체계화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몽고어문 설립과 이번원으로서의 개칭 문제에 주목해 홍타이지 시기 몽골에 대한 인식변화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번원(理藩院,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이라는 새로운 명칭에서 ‘외번’으로 번역되는 *tulergi golo*가 당시 만주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滿文老檔(*tongki fuka sindaha hergen i dangse*)』¹⁴⁾, 『舊滿洲檔(*tongki fuka akū hergen i dangse*)』(天聰9年),¹⁵⁾ 『內國史院檔』(天聰8年)¹⁶⁾ 등 만문사료에서의 용례를 검토해 그 의미 변화를 추적하고자 한다. *monggo jurgan*(몽고어문)에서 ‘몽고’라는 어휘가 원래 만주어로 바깥 지역(外路)을 의미하던 ‘*tulergi golo*’라는 어휘로 대체되어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이번원)으로 바뀐 것은 홍타이지 시기 몽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인식 변화는 홍타이지 치세에 대몽 정책이 제도화되고 몽골 각부에 대한 영향력이 강화된 결과이다. *tulergi golo*가 천총 말·송덕 연간부터 주로 몽고 諸王을 수식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착안해 몽고어문의 이번원으로서의 개칭이 몽골에 대한 후금의 인식변화와 관계가 있으며 나아가 이는 청대 외번 개념으로 발전된 출발점이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1. 군령을 통한 법적 지배

누르하치는 가장 강력한 적대세력인 차하르부 립단 한과의 전면전을 피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홍타이지가 후금 한으로 즉위할 무렵 립단 한의 공격에 직면한

14) 『滿文老檔』은 이미 일본에서 전사와 번역 작업이 진행되어 『滿文老檔』 7冊으로 완성되었다. 『滿文老檔』 7冊, 東洋文庫, 1955~1963년.

15) 神田信夫 등 역주, 『舊滿洲檔 天聰9年』, 東洋文庫, 1972.

16) 楠木賢道 등 역주, 『內國史院檔 天聰8年』, 東洋文庫, 2009.

몽골 세력들이 속속 후금과 동맹을 맺었다. 천총원년(1627)에 아오한·나이만 등의 차하르 속부 주장들과 바린·자루트 등 내칼카가 후금에 투항했고 립단 한의 압박을 받고 있던 카라친부도 천총2년(1628) 8월에 후금과 동맹을 맺었다.¹⁷⁾ 이렇게 어느 정도 연합군 세력이 갖춰지자 다음 달인 9월에 홍타이지는 차하르부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다. 홍타이지의 명에 따라 코르친·카라친·아오한·나이만·칼카 주장들이 이끄는 군대가 합류지점으로 모였지만 코르친부 우익 주장 오오바는 별도로 행동하다 귀환해버렸다. 오오바의 이런 행동은 후금 한의 동원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홍타이지의 권위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따라서 이 사건은 홍타이지가 동몽골의 강호 코르친부를 제압해야할 필요성을 느낀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고도 할 수 있다.¹⁸⁾ 이 일은 그 해(천총2년) 12월 1일 홍타이지가 오오바에게 그의 죄상을 힐난하는 장문의 서신을 보내고 오오바가 다음 해 1월 초에 심양으로 가서 홍타이지를 만나 모든 죄상을 인정하고 속죄를 약속함으로써 일단락되었다.¹⁹⁾ 오오바가 수세에 몰리게 된 원인은 무엇보다도 차하르 립단 한의 위협에 의해 만몽연합군이 결성된 상황에서 코르친부만 고립될 경우 주장인 오오바의 지위마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²⁰⁾ 이와 같이 홍타이지가 오오바에 대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된 데에는 차하르를 공동의 적으로 결성된 후금-몽골 세력의 동맹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홍타이지가 차하르부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결성된 반립단 만몽동맹은 홍타이지가 몽골 각부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우위를 장악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를 제공했다. 홍타이지는 군사를 동원하기 위해 몽골 각 부에 군 동원 지침을 내리고 몽골 병사들에게 후금군과 마찬가지로 군령을 내려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했다. 천총3년(1629) 1월에 홍타이지는 코르친, 아오한, 나이만, 칼카, 카라친 5부에 칙유를 내려 후금의 제도에 따르라고 했다.²¹⁾ 뒤이어 3월에는 코르친에게 차하르와 명에 대한 전쟁과 관련한 규정들을

17) 『滿文老檔』(東洋文庫, 1959) 태종천총7, 천총원년 7월 6일, 91쪽; 『滿文老檔』 태종천총10, 천총2년 8월 3일條, 138-139쪽.

18) 코르친부의 주장 오오바가 홍타이지의 동원령을 무시한 이유에 대해 김성수는 립단 한이 서진하면서 더 이상 코르친에 위협이 되지 않자 동부에서 패권을 장악하고자 했던 오오바는 곧 내칼카의 지배권을 두고 후금과 다투는 입장이 되었고 후금이 주도한 차하르 원정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라 분석했다. 金成修, 『17世紀初 滿蒙 關係와 內陸 아시아』, 『中國史研究』 제82집, 2013. 쿠스노키 요시미치는 이 일화가 코르친과 후금의 동맹관계에 대한 오오바와 홍타이지의 인식 차이를 보여준다고 했다. 즉 코르친 주장 오오바는 후금과의 동맹관계를 주종관계로 인식하지 않은 반면 홍타이지는 코르친과의 관계를 주종관계로 정립하려 했다는 것이다. 楠木賢道, 『清初對モンゴル政策史の研究』, 汲古書院, 2009, 117-118쪽.

19) 『清太宗實錄』 권5, 天聰3年 正月 庚申, 壬戌條.

20) 노기식, 『홍타이지의 반립단 滿蒙聯盟 확대와 이용』 『中國學論叢』 제13집, 189-190쪽; 김성수, 앞의 글, 87-79쪽 참조.

21) 『清太宗實錄』 권5, 天聰3年 正月 辛未條, “上頒勅諭於科爾沁敖漢奈曼喀爾喀喇沁五部落令悉遵我朝制度.”

정해 보냈고 이 서신은 다른 몽골 부족에게도 전달되었다.²²⁾ 이 금령에는 차하르와 명을 원정할 때 참전해야 하는 몽골 수장들의 나이와 인원, 불참하거나 제 때 합류하지 못했을 때 벌금으로 내야하는 가축의 수 등을 제시했다. 차하르에 대한 원정과 명에 대한 원정을 구분하여 차등을 두었는데 명을 원정할 때의 규정이 더욱 엄격했다. 그리고 몽골 수장들이 범인에 대한 벌금 징수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명시했다. 요컨대 이 규정은 만몽연합군 출정 때에는 홍타이지가 군수 통수권과 몽골 수장과 병사에 대한 처벌권 까지 가지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원정 시에 적용되는 군법이지만 이는 후금의 한이 만몽연합세력의 맹주로서의 지위를 영유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때는 홍타이지와 코르친부 오오바와의 갈등이 홍타이지에게 유리한 쪽으로 마무리 된 시점으로 이를 계기로 코르친부뿐만 아니라 몽골 각부에 대한 후금의 영향력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천총3년(1629)의 이 금령은 천총5년(1631) 코르친 외에 아루 코르친, 도르벤 케우케드, 웡니우트, 모오밍안 등 소위 아루(Aru) 몽골 각부가 소집된 회맹에서 다시 확인되었다. 천총5년의 회맹에서 정해진 금령은 천총3년의 금령을 일부 포함하면서 내용이 좀 더 보강되었다. 이 금령은 “수려 한을 필두로 투시예투 한, 순 두렁, 달라이 추후르, 생게 호쇼치, 大小 타이지들이 모두 의논하여 정한 법도”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었다.²³⁾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죄를 지은 타이지들이 자삭 타이지들(jasak i taijisa)의 말을 듣지 않으면 수려 한에게 고한다”는 대목이다. ‘jasak i taijisa’는 몽골어로 ‘jasay-un noyad’와 상응하는데 한문사료에서는 ‘執政員勒’ 혹은 ‘管事員勒’으로 번역되었다. 이 자삭 노안은 각부의 몽골 수장층 중에서도 독립적인 호쇼²⁴⁾를 이루고 이를 통솔하는 지위를 가진 유력자를 의미한다. 이 새로 추가된 규정은 자삭 노안이 죄를 범한 몽골 수장을 처벌할 때 후금 한의 권위를 빌어 처리하도록 했다. 이는 후금의 한이 자삭 노안을 통해 각 몽골 수장들을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보다 분명하게 피력한 것이다.

천총5년 회맹에서 추가된 조항 중에는 일종의 속지주의적 법적용에 관한 내용과 함께 속인주의적 원칙도 포함하고 있다. 만주인이 몽골부에서 죄를 범하면 몽골의 법도대로,

22) “Hong Taiji consults the Naḡun Qorčīn on the laws of military expeditions”, Nicola Di Cosmo and Dalizhabu Bao, *Manchu-Mongol relations on the eve of the Qing conquest*, pp.66-69, 재인용.

23) 『滿文老檔』 태종천총37, 천총5년 4월 12일조, 504-508쪽. 여기에서 수려 한은 홍타이지, 투시예투 한은 코르친부 수장 오오바를 말하며, 순 두렁은 웡니우트부, 달라이 추후르는 아루 코르친부, 생게 호쇼치는 도르벤 케우케드부의 수장이다.

24) 호쇼는 만주어로 gūsa, 한문으로 旗로 번역된다. 호쇼 혹은 호순(xoshūn)은 유목 집단인 아일이 연합해 형성된 몽골 부족의 지연적 단위인 오툽에서 형성된 부대를 의미한다. 각 오툽의 병사는 호시군(xoshigun) 혹은 호순이라는 부대를 형성했고 오툽과 호순은 때로 서로 혼용되어 사용되었다. Б.Я.ВЛАДИМИРЦОВ 저, 주체혁 역, 『몽골사회제도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0, 224-225쪽 참조.

몽골인이 만주 지역에서 죄를 범하면 만주의 법도대로 처벌한다는 규정은 속지주의적 원칙을 의미한다. 한편 양국 사이 중간에서 벌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들 각각의 법도대로 처리한다고 하여 속인주의적 법적용을 명시했다. 이는 만주와 몽골 중간 지대에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는 사건 당사자가 몽골인인 경우 그 수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천총5년의 금령이 차하르 원정 중에 이루어진 회맹에서 정해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조항은 내몽골 수장이 병사를 이끌고 후금군에 합류한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이다.²⁵⁾ 몽골인들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몽골 수장에게 관습법에 기반 한 재량권을 인정한 데 비해 원정에 참가한 경우에는 홍타이지가 정한 군령에 따르게 한 것은 홍타이지가 군법을 어긴 몽골 수장 및 병사를 치죄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천총6년(1632) 4월에 출정한 차하르부 공격에서도 홍타이지는 몽골 동맹군에게 군령을 선포했는데 이를 어기고 항복한 몽골인의 물건을 빼앗은 나이만부의 병사 도도와 바이사이를 처형했다.²⁶⁾ 이와 같이 홍타이지는 후금군에게 내린 군령을 몽골 연맹군에게도 똑같이 적용함으로써 자신의 명을 몽골 수장과 병사에게 관철시켰다.

원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무렵 립단 한이 청해로 이동하고 오오바가 사망함으로써 강력한 경쟁상대가 사라지자 홍타이지는 군령이 아닌 법령의 형태로 후금의 법을 몽골 각부에 전달하기 시작했다. 『清太宗實錄』에 천총7년(1633) 8월과 10월에 아시다르한 등을 코르친과 몽골 각부에 보내 흙정법령을 선포했다는 기록이 있다.²⁷⁾ 『청실록』에는 흙정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법령의 형식이나 성격 면에서 원정 때 반포한 군령과 원정이 마무리된 이후 반포한 법령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원정 때에는 원정에 참가한 각 몽골 수장들과 함께 논의하는 형태로 군령을 정했던 것에 비해 이때에는 홍타이지가 정한 법령을 그대로 각 몽골부에 전달·선포하는 일방적인 방식을 취했다. 또 원정하는 과정에서 반포한 군령은 합류지점과 날짜 준수, 원정 중 일어날 수 있는 혼란과 범죄를 예방하는 차원의 규정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원정이 끝난 이후에는 전쟁과는 무관한 사회질서와 관련된 법령이 추가되었다. 이것은 다음 해인 천총8년(1634) 정월 元旦朝賀를 위해 후금에 온 각 몽골수장들에게 홍타이지가 내린 諭를 통해 드러난다.²⁸⁾ 이 금령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25) 楠木賢道, 앞의 책, 130쪽.

26) 『滿文老檔』태종천총 52, 천총6년 4월 28일조, 756-758쪽.

27) 『清太宗實錄』天聰7년 8월 癸酉條“遣國舅阿什達爾漢等頒欽定法律於科爾沁國土謝圖濟農”; 10월 壬戌條“遣國舅阿什達爾漢塔布囊達雅齊等往外藩蒙古諸國宣布欽定法令.”

28)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날(초 3일) 황상이 외번 각 몽고 貝勒을 불러 모아 말하길 ‘너희 몽고 제 부락은 여전히 법제가 미비하고 누습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여러 貝勒들과 약속해 정하길 무릇 貝勒이 남편이 있는 부인을 빼앗아 다른 자에게 주는 경우 벌로 말 50필, 낙타 5마리를 취하며 그 부인을 받아들인 자에게는 七九의 수를 벌해 원래 남편에게 준다. 무릇 남편이 있는 여자와 간음하여 다른 貝勒에게 데려가면 남자와 부인을 모두 죽이고 그 처자와 생축을

하나는 부녀자의 간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사회적 규범과 관련된 문제이고 다른 부분은 몽골 각부의 갑옷·투구·纛의 표준을 정하는 군사적 문제이다. 이는 홍타이지가 몽골 각부의 소위 ‘陋習’을 개혁하고 군사적 문제까지 후금의 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의도가 실제로 얼마나 관철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원정 때 반포했던 군령에서 더 나아가 몽골의 사회규범에도 간섭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홍타이지의 주도적인 입지가 더욱 공고해졌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갈주 서터르(Galju seter)의 이반 사건이다. 천총8년(1634) 5월 코르친부의 갈주 서터르와 하이라이, 부안다이, 버굴라이, 서불라이 등의 귀족들이 술론을 점령해 공납(alban)을 받겠다고 휘하 무리를 이끌고 북쪽으로 이반한 사건이 일어났다.²⁹⁾ 홍타이지는 갈주 서터르에 대한 처벌권을 코르친부 수장들에게 위임했지만 ‘반역한 자는 반드시 죽인다’는 금령을 상기시켜 홍타이지의 뜻을 은연중에 알렸다. 결국 바다리를 위시한 코르친 수장들은 갈주 서터르 무리를 모두 체포해 처형하고 속민을 몰수했다.³⁰⁾ 처형한 쪽이나 처형당한 쪽 모두 같은 혈통의 일족들이었으므로 코르친부 수장층 일족이 일으킨 사건을 홍타이지의 명에 의해 자신들의 손으로 처결한 셈이었다. 이 사건은 홍타이지와 몽골 수장층의 관계가 법령을 반포하고 이를 수행하는 관계로 변화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관계는 홍타이지가 원정 중 몽골 수장들을 모아놓고 정해진 유목지를 벗어나 유목한 도르벤 케우케드部 수장 두렁의 자제들에 대한 처벌을 의논하라고 내린 지시에서도 드러난다. 홍타이지의 지시에 몽골수장들은 죄를 지은 수장들에 대한 처벌을 의논하고 이를 홍타이지에게 보고해 허락을 구했다.³¹⁾ 홍타이지는 정해진 법령을 어긴 몽골 수장에 대해 다른 몽골 수장들이 의논해 사건을 심리하고 처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자신이 행사했다.

누르하치 시기 후금과 몽골 각부는 비교적 평등한 위치에서 맹약의 형식을 통해 연맹을 맺었다. 이때에는 출정 때 후금 한의 명령을 공동의 군령으로 한다는 내용의 약속은

모두 원래 남편에게 준다. 만약 貝勒이 잡아 보내지 않을 경우 말 50필, 낙타 5마리를 벌한다. 鎧甲·綿甲과 말의 꼬리에 牌印이 없거나 투구의 끈, 纛의 끈과 폭이 우리나라의 제도를 따르지 않은 경우 모두 죄에 처한다.”(『清太宗實錄』天聰8年 正月 庚寅朝. 楠木賢道·加藤直人·中見立夫·細谷良夫·松村潤 역주, 『內國史院檔 天聰8年』(東洋文庫, 2009), 12-13쪽). 『청태종실록』과 『내국사원당』의 기록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예컨대 마지막 문장의 경우 『청태종실록』에서는 ‘不遵我國制度者俱罪之’로 되어 있으나 『내국사원당』만문에는 ‘me(n)ingge be alhūdame dasarakūci weile(우리의 것을 모방해 따르지 않으면 죄이다)’라고 되어있어 한문사료는 ‘我國制度’를 강조한 것을 알 수 있다.

29) 『內國史院檔 天聰8年』 5월 23일, 158-159쪽.

30) 『內國史院檔 天聰8年』 6월 21일, 179쪽.

31) 『內國史院檔 天聰8年』 6월 24일, 182-183쪽.

없었다. 그러나 홍타이지 시기에 들어서 차하르부의 속부인 나이만·아오한 등이 후금에 투항했고 립단 한의 서진으로 위협에 직면한 카라친부 등이 적극적으로 동맹을 제의해왔다. 따라서 이 시기 후금은 어느 정도 유리한 위치에서 몽골 각부와 동맹을 맺을 수 있었다. 만몽연합군의 출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연합군 맹주로서 후금의 입지가 강화되었고 후금 한의 군령 반포를 통해 몽골 수장들에 대한 통제가 시도되었다. 전시 상황에서의 군령이기 때문에 주로 군사동원에 관한 규약이 주를 이루었지만 차츰 몽골 수장 및 속민의 범법행위에 대한 처벌, 몽골 사회의 규범, 유목지에 대한 규정 등이 첨가되었다. 그리고 몽골 수장의 위법행위를 다른 몽골 수장들이 심리하게 하고 이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후금 한이 보유함으로써 몽골 수장들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했다.

2. 호구조사와 旗 편제

홍타이지가 즉위한 후 차하르에 대한 전면전이 추진되면서 동맹관계에 있는 몽골 각부의 군사동원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군사동원을 위해 이들에 대한 호구조사와 니루 편제가 진행되었다. 요컨대 후금에 투항했지만 유목지에 남아 예전의 생활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는 부족들 그리고 코르친과 같이 동맹관계에 있는 유력 부족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몽골 각부의 호구를 조사하고 이들 간의 유목지 경계를 획정하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누르하치 시기 후금에 투항한 우루트부의 밍안 타이지는 50家を 1니루로 편제하라는 홍타이지의 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기가 철폐되었다. 이것은 차하르 원정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천총6년(1632)의 일로 이때에 시범적으로 후금에 투항한 몽골부족에 대한 편제가 추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밍안은 자신이 포로로 잡은 장정들을 은닉하기 위해 속민을 편제하라는 홍타이지의 명을 어겼다. 후금에 투항한 몽골수장에게 후금 한의 명령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은 홍타이지에게 심각한 도전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리고 홍타이지에게는 립단 한의 위협이 완화된 시점에서 기존의 몽골부족들에 대한 정책을 쇄신하고 통제를 강화할 계기가 필요했다. 이 때문에 홍타이지는 자신의 명을 거역한 몽골 수장의 기를 철폐하는 중대 조치를 내렸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는 일종의 경고조치로 이 외에 투항한 몽골 수장들은 예전대로 부족민들과의 통속관계를 유지했다.

차하르부 원정 과정에서 내몽골에서의 우위를 확립한 홍타이지는 본격적인 명 공격에 앞서 몽골 각부에 대한 호구 조사와 조직적인 편제에 박차를 가했다. 천총8년(1634) 10월 22일에 송코르 지역에서 몽골 각부의 회맹이 열렸는데 후금에서 파견한 아시다르한

낙추와 다야치 타부낭이 참석하고 그 결과를 홍타이지에게 보고했다.³²⁾ 이 회맹에 팔기 몽고 어전들과 아오한, 나이만, 바린, 옹니우트, 도르벤 케우케드, 우라트, 카라친, 투메드부의 수장들이 참가해 각 부 및 팔기몽고와의 유목 교계지를 확정하고 호구의 수를 보고했으며 죄를 지은 몽골 수장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때에는 유목지를 나누고 호구를 분배했을 뿐 장정을 니루와 기로 편제한 것은 아니었다. 이 회맹에서 목지를 획정한 것은 천총6년 이래 대규모의 아루 몽골 부락민이 귀부해 와서 그들의 유목지를 안배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³³⁾ 후금에 새로 투항한 몽골 부족들이 경계를 넘어 방목하다가 차하르부에게 약탈당한 사건이 발생한 것도 원인이 되었다.³⁴⁾ 이 회맹의 주요 목적은 후금에 투항한 각 몽골 부족의 유목지를 안배하는 일이었고 획정 기준이 호구의 수였으므로 각부의 호구를 조사했던 것이다. 유목지를 정하면서 경계를 넘어 유목하는 경우 도발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명시해 몽골 각 부족의 이동성을 제한했다.³⁵⁾

몽골 부족에 대한 호구조사와 더불어 니루·기의 편제에 관한 가장 이른 기록은 『舊滿洲檔』과 『太宗實錄』에 보이는 천총9년(1635) 2월에 있었던 카라친·투메드 장정 편심에 관한 것이다.³⁶⁾ 이 때 편제 방법은 內外카라친·투메드의 장정 수를 조사해 카라친부의 타부낭 구르스힘을 구사어전으로 하는 1기와 투메드부의 옴부 추후르 그리고 경걸과 삼바를 공동 구사어전으로 하는 2개의 기를 건립하고 나머지 장정은 팔기만주의 舊몽고로 합치는 방식이었다. 여기에서 구르스힘과 옴부 추후르, 경걸과 삼바가 이끄는 3개의 몽고기는 각 수장들이 가지고 있던 기존의 권리를 인정해준 것이므로 외번몽고기라 할 수 있다. 외번몽고기란 천명 연간에 투항한 우루트와 바유티부 그리고 천총 원년에 투항한 나이만·아오한 수장들처럼 속민에 대한 권리를 그대로 인정받고 독립된 기로 존재한 것을 의미한다. 사료에서 언급한 내·외 카라친 중 外카라친은 新카라친이라고도 하며 천총 후기에 투항해 팔기만주에 편입되지 않은 자들로 그 수가 비교적 많아 이번 편심의 주요 대상이 되었다. 內카라친은 ‘舊카라친’이라고도 하며 비교적 일찍 귀부해 팔기만주에 편입되었던 부류이다. 이번 조치는 이들을 새로 형성된 카라친 1기·투메드 2기 총 3개의 외번몽고기와 팔기 내 舊몽고기로 편입시킨 것이었다. ‘舊몽고’는 비교적 일찍 팔기만주에 편입된 몽고로 舊카라친 이외에 몽골 각부에서 온 자들로 구성되었다. 요컨대 이 카라친·투메드 장정 편심은 비교적 일찍 후금으로 귀순한 카라친부 출신 장정과 후금에 복속했지만 자신들의 유목지에 있던 카라친부 장정들을 통합적으로 조사해 팔기몽고와 3

32) 『內國史院檔 天聰8年』, 349-356쪽; 『清太宗實錄』 권21, 天聰8년 11월 壬戌條.

33) 達力扎布, 앞의 글, 261쪽.

34) 『滿文老檔』 태종천총52, 천총 6년 4월, 748-749쪽.

35) 『內國史院檔 天聰8年』 6월, 183쪽; 『內國史院檔 天聰8年』 11월, 351쪽.

36) 『舊滿洲檔』天聰9年(東洋文庫 역주본), pp.56-61; 『清太宗實錄』, 天聰9년 2월 丁亥條.

개의 외번몽고기로 재편한 조치이다. 그런데 이 기록에서도 각 기를 관할하는 구사어전 휘하 장정의 수만 열거했을 뿐 니루로 나누거나 팔기 관원 임명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것이 당시 카라친 몽골을 니루라는 기층 단위까지 편제하지 못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히 기록이 누락된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본격적으로 후금에 복속한 몽골 각부의 호구를 조사하고 니루를 편제한 것은 승덕 원년(1636)의 일이다. 이 해 10월에 아시다르한 낙추와 다야치 타부낭을 나이만·아오한·바린·자루트·모오밍안·웅니우트·우라트부에 파견해 50家を 1개 니루로 편성하고 각 기마다 甲數를 조사했다. 그리고 11월에 히퍼 박시와 니칸을 코르친 회맹에 파견해 호구를 조사하고 니루와 기를 편성하는 한편 제반 업무를 코르친 수장들과 함께 의논하게 했다. 만문사료에는 나이만부 등의 회맹에 파견되었던 아시다르한과 다야치가 보고한 니루·기 편성에 관한 내용과 코르친부에 파견되었던 히퍼와 니칸이 보고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었다.³⁷⁾ 이 기록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후금이 몽골 각부를 니루 단위로 조직한 최초의 기록이기 때문이다. 천총 8년과 9년에는 유목지를 확정하고 旗 단위로 편제한 것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승덕 원년의 편제에서는 50家を 1니루로 조직하고 장진(janggin)을 임명해 그의 감독 하에 두었다. 이 체제가 팔기 만주 조직과 유사하기 때문에 몽골 각부의 기층사회를 만주식으로 조직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³⁸⁾

천총 연간부터 후금이 몽골 각부의 호구를 조사하고 니루 혹은 기로 편제한 사실은 청대 맹기제도의 핵심인 자사크기 설립의 효시로 추정된다.³⁹⁾ 맹기제도는 청 조정이 몽골 각부에 실시한 군사·행정제도로써 각부를 佐領(니루, 숄) 旗(구사, 호쇼)-盟(출간) 단위로 조직해 몽골의 사회조직을 재편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자사크’(jasak, jasax)란 각 기(호쇼)를 관할하는 수장을 의미하는데 그가 관할하는 기를 자사크旗라고 했다. 청조는 세습 혹은 임명되는 자사크를 통해 몽골 각부를 통제했다. 따라서 자사크기를 설치한 최초 연대를 특정 하는 것은 몽골 각부에 대한 만주의 영향력이 언제부터 미쳤는지를 상징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그러나 사료에는 몽골 지역에 처음으로 旗(호쇼)를 건립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작을 천총8년, 9년 그리고 승덕원년 심지어 천명 연간으로 추정하기도 한다.⁴⁰⁾

37) 『滿文老檔』 태종승덕34, 승덕원년 11월 초6일조, 1389-1404쪽; 『滿文老檔』 태종승덕35, 승덕원년 11월, 1405-1412쪽. 『清太宗實錄』(乾隆纂本)권31, 승덕원년 10월 丁亥條와 승덕원년 11월 丙午條에 관련기록이 있지만 구체적인 수목은 생략되었다.

38) 達力扎布, 『清初內扎薩克旗的建立問題』, 『明清蒙古史論稿』, 261쪽; 郭成康, 『皇太極對漠南蒙古的統治』, 『中央民族學院學報』, 1987년 제5기, 4쪽.

39) 達力扎布, 앞의 글.

40) 達力扎布, 앞의 글, 260쪽. 타야마 시게루(田山茂)는 旗의 설립 조건으로 유목지 경계 확정, 호구 분배, 호구 편심(군제단위인 니루를 편제), 長官의 임명(管事貝勒 혹은 扎薩克貝勒), 旗의 명명 등을 제시했다. 그리고 유목지 확정과 호구 분배·편심은 일부 지역에서 천명6-7년

오카 히로키는 청초 자사크기 제도에 대한 기존 연구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천총9년(1635) 카라친 장정 편심과 송덕 원년 호구편심에 대한 만문기록을 분석했다.⁴¹⁾ 그는 우선 청초 사료에서 執政貝勒(doro jafaha beise)·管旗貝勒(gūsa ejelehe beise)으로 불리는 자사크의 용례와 旗(구사, 호쇼)라는 말의 용례를 추출해 양자의 관계를 고찰했다. 그에 따르면 몽골 각부가 후금에 복속하기 이전에 이미 후금 측으로부터 ‘執政(doro jafaha)’ 혹은 ‘管旗’(gūsa ejelehe)라는 수석이 붙은 칭호로 불린 수장들이 존재했으며 이들은 만몽 동맹관계 구축과 通貢에서 동족을 대표하는 유력자였다. 이들은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分枝집단의 분립원리에 따라 존재했으므로 분립한 분지의 수만큼 존재했고 각부 분지의 분립 상황에 의해 그 수가 다양했다. 송덕 원년에 있었던 니루 편성에서 기준으로 삼은 것도 바로 몽골 수장들의 분지관계였다.⁴²⁾ 구사 혹은 호쇼라는 조직도 후금에 의한 편제 이전 시기부터 존재했으므로 홍타이지 시기에 이루어진 호구조사·기 편제에 의해 몽골 각부의 수장층과 속민의 관계가 해체되거나 사회조직이 재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후금과 공동으로 군사행동을 할 때부터 ‘자사크’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몽골 수장들 중에서 선발된 이들은 군사 동원과 戰時 질서유지·금령에 대한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임무를 맡았다. 자사크의 직무 수행은 후금 한의 권위에 의해 보장 받았는데 이런 모습은 이후 청대 자사크기 수장으로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나마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⁴³⁾

이러한 오카 히로키의 분석은 청대 몽골 통치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대해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청은 귀속한 몽골 각부에 대해 만주식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 몽골 사회를 완전히 재편한 것이 아니라 몽골 재래의 사회구조를 기반으로 재조직했다. 청 황제는 책봉·朝覲年班·수렵·혼인 등을 통해 몽골 수장층의 권위를 인정하고 긴밀한 관계를 맺어 이들을 매개로한 지배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한편 임시적이고 군사적이었던 기(호쇼) 체제가 청의 관할 하에서 항상적이고 행정적인 성격으로 변해갔으며 기존 몽골 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니루(슌) 단위 편제와 관할 관원의 임명은 몽골 사회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몽골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를 유지하면서도 기층사회에 변화를 가져온 청대 몽골 통치 제도의 원형을 홍타이지가 몽골 각부에 대해 추진한 정책

(1621-1622)부터 천총6년(1632) 사이에 시행되었으나 천총8년(1634) 10월의 유목지 획정과 송덕 원년 9, 10월에 시행된 호구편심이 규모면에서 최대이며 이전 시기와는 다른 획기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田山茂, 앞의 책, 76쪽.

41) 岡洋樹, 『清代モンゴル盟旗制度の研究』, 東方書店, 2007, 23-74쪽.

42) 岡洋樹, 앞의 책, 46-59쪽.

43) 岡洋樹, 앞의 책, 60-61쪽; 『만주의 몽골 지배: 어떻게 성공적인 지배가 가능했는가?』, “중앙유라시아 역사상 정복과 민족이동, 문명의 만남”(서울대 중앙유라시아학회 국제학술대회, 2010.12.3.) 참조.

에서 찾아볼 수 있다.

3. 이번원 설립과 ‘외번’(tulergi golo) 개념의 형성

앞서 살펴보았듯이 홍타이지 시기에 들어서 후금과 몽골 각부의 관계는 후금 한의 몽골 각부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고 이들에 대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질적으로 변화했다. 후금의 중앙관서에 몽골과 관련된 사무를 전담하는 기구인 몽고아문(monggo jurgan 혹은 monggo yamun)이 설립된 것은 이와 같은 변화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몽고아문의 설립 시기에 대해서는 천총10년(1636) 2월로 추정하기도 하고 천총8년(1634) 5월에는 이미 설립되었다는 견해도 있다.⁴⁴⁾ 몽고아문의 정확한 설립연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원인은 승덕 원년 이전 기록들에 간간히 몽고아문, 몽고부 등의 이름이 등장할 뿐 그 역할과 활동에 대한 기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국사원당』 천총8년 5월 기사에 몽고아문의 관리가 언급되었고 이후 등장한 사료 내용이 승덕 원년 6월 니칸[尼勘]을 몽고아문을 개칭한 이번원 승정으로 임명했다는 것이므로 몽고아문은 천총8년(1634)에 설립되었을 가능성이 높다.⁴⁵⁾

몽고아문이 설립되기 전에 몽골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인물들은 주로 박시(巴克什, baksi)들이었다. 이들은 문서업무를 담당한 사람들로 이중에서도 몽골어에 능통한 해서여진과 몽골 출신들이 후금과 몽골 각부의 문서왕래 업무를 담당했다.⁴⁶⁾ 홍타이지가 한으로 등극한 후 이 박시들 외에 여허 출신인 아시다르한[阿什達爾漢]이 중용되었다. 아시다르한은 여허 수장 긴타이시 일족 형제의 아들로 홍타이지의 생모인 孝慈高皇后的 族弟가 되므로 홍타이지에게 國舅(nakcu)라고 불렸다. 여허 귀족들은 누르하치와의 혼인관계로 인해 후한 대접을 받았고 그들의 조상은 몽골인이라고 전해지는 만큼 몽골의 사회문화에 익숙했고 몽골어에 능통한 자도 존재했다. 홍타이지가 생모의 동족들을 통해 몽골과 접

44) 趙雲田의 경우 『清史稿』와 『清太宗實錄』, 『滿文老檔』의 기록을 근거로 천총 10년(1636) 2월 즉 승덕 원년 2월에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내국사원당』과 『청태종실록』 천총8년(1634) 5월조에 ‘몽고아문의 관리’가 언급된 내용이 있는 것을 근거로 Chia Ning과 包文漢·達力扎布 등 다수의 학자들은 몽고아문이 천총8년(1634) 5월에는 이미 설립되어 운영된 것으로 보았다. 이 기록의 만문원문은 ‘ere bederebure de ocibe, karacin i cooha tucibure de ocibe, monggoi jurgan i niyalma akū ohode ojarahū’이다. 즉 ‘이들(귀순한 온 사람들)을 후퇴시킬 때에도, 카라친의 군대를 내보낼 때에도 몽고아문의 사람이 없으면 안된다.’ (『內國史院檔 天聰8年』 천총8년 5월, 155쪽). 『내국사원만문당』의 기록은 『청태종실록』 권18, 천총8년 5월 초 기록에도 보인다.

45) 『內國史院檔 天聰8年』 천총8년 5월, 155쪽; 『滿文老檔』 태종승덕17 승덕원년 6월, 1127-1128쪽.

46) 후금시기 몽골관련 사무를 전담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村上信明, 『清朝前期における理藩院の人員構成』, 『滿族史研究』 4, 2005 참조.

축한 것은 경쟁 버일러들을 제치고 몽골과의 관계를 자신이 장악하려는 의도로도 해석될 수 있다. 또 여허 귀족들은 몽골과 밀접한 혼인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몽골수장들을 상대하기에 적합했다. 아시다르한과 함께 몽골 관련 업무를 담당한 인물은 승덕 원년(1636) 6월 몽고아문 승정으로 임명된 니칸으로 그는 박시의 한 사람이자 홍타이지의 侍衛이기도 했다. 『만문노당』에 니칸과 함께 다야치 타부낭[達雅齊 塔布囊]도 몽고아문 승정으로 기록되었는데 이 시기 몽고아문에는 다수의 승정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⁴⁷⁾ 승덕2년 7월 다야치 타부낭의 뒤를 이어 몽고아문 승정으로 취임한 것은 서령[塞冷]으로 그는 몽골 차하르 한의 종실이였다.⁴⁸⁾ 이와 같이 몽고아문의 주요 관리들은 주로 해서여진 출신들 특히 홍타이지의 외가가 되는 부족인 여허 출신이거나 보르지기트씨 계통의 몽골 명문가 출신이었다.

천총 연간부터 아시다르한과 니칸, 다야치 타부낭 등은 소위 몽골 전문가로서 후금의 對몽골 정책을 수행했고 몽고아문 설립 후에는 공식 관원의 신분으로 후금과 몽골을 오가며 업무를 수행했다. 이들의 주요 임무는 후금 한과 몽골 각부 수장 사이의 서신을 전달하는 일과 원정을 추진할 때 몽골 각부의 군사를 동원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총8년(1634) 10월 홍타이지는 아시다르한과 다야치를 몽골의 회맹에 파견해 유목지를 획분하고 호구의 수를 조사했으며 위법을 저지른 몽골 귀족에 대한 처결에 관여했다.⁴⁹⁾ 이러한 임무는 단순한 사신의 역할에서 벗어나 몽골 각부의 내부 사정에 개입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후금 한의 몽골 각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의미한다. 몽고아문의 설립시기를 천총8년 5월 이전으로 추정한다면 천총8년 10월에 아시다르한 등이 회맹에 참여한 일은 몽고아문의 관원으로서 수행한 업무였을 것이다.

홍타이지는 승덕3년(1638) 6월에 몽고아문을 理藩院으로 개칭하고 도찰원, 육부와 함께 八衙門 체제를 정비했다.⁵⁰⁾ 이번원은 한문식 명칭으로서, 만주어로는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 즉 ‘*tulergi golo*(바깥 지역, 外路)’를 다스리는 부서라는 뜻이다. 몽골어로는 *γadaγadu mongγul-un törö-yi jasaqci jabudal-un jamun* 즉 外몽골의 정무를 처리하는 아문이라고 명명되었다. 여기에서 外몽골을 뜻하는 몽골어 ‘*γadaγadu mongγul*’과 外路(바깥 지역)를 뜻하는 만주어 ‘*tulergi golo*’ 그리고 한어식 어휘인 ‘外藩’이 대응하고 있다. 이번원은 습관적으로 건륭 시기까지 ‘*monggo jurgan*’이라고 불리거나 몽골 왕공들에게는 대아문(*amba jurgan*)이란 뜻의 몽골어 ‘예케 야문’으로 불렸지만 이 새로 고쳐진 명칭은 공식적으로 청말까지 사용되었다.⁵¹⁾ 그러나 이번원의 만주·몽골·한어식 명칭이 가진 함

47) 『滿文老檔』 태종승덕31, 승덕원년 10월, 1335쪽.

48) 『清太宗實錄』 권51, 승덕5년 4월 丙子條에 서령이 차하르 한의 친족이라는 기록이 있다.

49) 『內國史院檔 天聰8年』 11월조, 349-356쪽. 『清太宗實錄』 권21, 천총8년 11월 壬戌條.

50) 『清太宗實錄』 권42, 승덕3년 6월 庚申條.

의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張雙智는 ‘외번’개념의 변화에 대해 고대에는 외번이 경성 바깥의 번봉이나 州縣重鎮을 의미하다가 중원왕조의 영향력이 확대함에 따라 주변 조공국 까지 일컫게 되었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청대의 외번, 번부는 몽골·티벳·신강을 칭할 때 사용되었고 속국·번속·번국은 외국을 칭할 때 사용되었으며 러시아·영국·일본 등의 국가에 대해서는 臣服의 의미를 담은 번부·번속·속국의 명칭을 피하고 대부분 외번이라 칭했다. 따라서 이론상 외번은 내지 이외의 非한족 지역과 외국을 의미하는 범위가 가장 넓은 중요한 정치적인 지리개념이다.⁵²⁾ 그러나 李保文은 만·한·몽문으로 된 『欽定理藩院則例』와 『大清會典』의 용례를 비교해 외번은 청조가 자사크를 봉한 내·외자사크 몽고지역을 의미하며 ‘외번몽고’는 하나의 독립적인 고유명사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했다.⁵³⁾ 즉 외번의 의미를 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몽골 각부를 지칭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와 같이 중국적 천하질서에서의 ‘외번’과 만·몽문 사료비교를 통해 추적한 외몽고 혹은 외번몽고의 의미는 다르며 또 시기에 따라서도 그 의미가 변화했다.

包文漢은 청대 ‘번부’개념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추적하면서 청대 ‘번’ 혹은 ‘외번’의 의미가 이전 중원왕조와는 조금 다르게 사용되었다고 지적했다.⁵⁴⁾ 그에 따르면 중원왕조에서는 ‘藩’을 ‘番’과 일치시켜 중원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이민족을 통칭했지만 청은 이와 달리 시기별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청 초기에는 주로 몽골 부족을 가리킬 때 藩 혹은 外藩을 사용하고 서남 지역 감숙·청해 일대 민족에게는 番을 칭했다. 건륭·가경 연간 이후에 들어서야 청의 영역에 속한 각 부족을 藩이라 칭하고 국외에는 일반적으로 속국·외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이와 같이 청대에는 번의 의미가 시기와 지리적 확대에 따라 변화했고 또 內와 外의 범위도 달라졌다. 이렇게 청대에 사용된 외번의 개념은 중원왕조에서 사용되어 온 번의 개념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으며 시기에 따른 정치적인 상황에 의해 확대되고 다시 내외로 구분되었다.

중국적 천하질서와 관련된 ‘외번’의 개념이 흥타이지 시기에 이미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입관 후 청이 영역을 확대하고 한족의 문화사상에 익숙해진 이후 사용된 ‘외번’ 혹은 ‘번부’의 개념과 흥타이지 시기 이번원으로 개칭하면서 사용된 ‘tulergi golo’의 개념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양자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해도 기존에 ‘몽고’라고 지칭하던 것을 ‘tulergi golo’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은 이 용어가 몽골 각부를 의미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이 ‘외번’과 일치되어갔다는 사실은 송덕

51) 李保文, 『“內外蒙古”稱謂的由來及其演變』(『蒙古史研究』제9집에 실린 몽고문 논문 중역본).

52) 張雙智, 앞의 글.

53) 李保文, 앞의 글.

54) 包文漢, 『清代“藩部”一詞考釋』, 『清史研究』, 2000년 11월 제4기.

원년을 전후로 한 몽골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반영한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한문본에서 외번과 대응되는 만주어 *tulergi golo*라는 어휘가 애초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으며 언제부터 몽골 각부를 범칭하게 되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누르하치 시기와 홍타이지 즉위 후 천총 초기까지 *tulergi golo*는 말 그대로 外路 즉 바깥 지역을 의미했다. 『만문노당』 태조 누르하치 시기의 기록에서 보이는 *tulergi golo*의 용례는 두 건이다. 하나는 각 外路(*tulergi golo golo*)에서 곡식이 없는 지역의 한인에게 東京 등지 창고의 곡식을 내어 팔라는 내용으로 여기에서 *tulergi golo*는 몽골과는 특별한 관련 없이 단지 중심에서 벗어난 바깥 지역의 의미로 사용되었다.⁵⁵⁾ 또 다른 하나는 조선에서 일어난 李适의 난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 *tulergi golo*는 조선의 새로운 국왕이 있는 수도 한성에서 멀리 떨어진 곳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인조는 반정공신인 이괄을 여진족 방어에 힘쓰라며 평안도 영변에 부도원수로 파견했는데 만문사료에서는 이 일에 대해 ‘바깥 지역의 총병관으로 파견했다’고 기록했다.⁵⁶⁾ 즉 여기에서의 *tulergi golo*는 경사와 멀리 떨어진 바깥 지역인 것이다. 누르하치 시기 사료에서 보이는 *tulergi golo*의 용례는 모두 중심지역 혹은 내지에서 떨어진 바깥 지역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바깥 지역’은 중심지에서 멀긴 하지만 정권의 세력이 미치는 영역 내이며 외국의 영역은 아니다. 이런 용례는 홍타이지 즉위 후 초기 기록에서도 보인다.⁵⁷⁾ 이 기록은 도망친 조선인 포로를 반환할 것을 조선에 요구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tulergi golo*는 몽골과는 관련이 없는 일반적 의미에서의 ‘바깥 지역’을 의미한다. 이렇게 천총 초기까지 *tulergi golo*는 말

55) 『滿文老檔』 태조59, 천명8년 9월, 866쪽, “beise hendume, tulergi golo golo i jeku akū ba i nikasa de dung ging, hai jeo, yoo jeo, g'ai jeo i ts'ang ni jeku be tucibufi uncambi, amba sin i emu sin de emu yan menggun gaimbi, usin yangsame tuciburakū ojarahū, jeku udafī gamara sidende jeku bisire niyalma juwen sinda, udaha jeku be gamafi toodakini, jušen nikan i jeku bisire hafasa, meni meni teisu teisu ba i jeku akū nikasa de unca.”(버일러들이 말하길 “外諸路(*tulergi golo golo*)에서 곡식이 없는 지역의 한인들에게 東京, 海州, 耀州, 蓋州 창고의 곡식을 내어 팔고 大柵으로 1승에 1량 은을 받는다. 밭을 경작해 내놓지 못할까 염려되니 곡식을 사서 가져갈 때까지 곡식이 있는 자가 빌려주어라. (한인은) 구매한 곡식을 가져가 상환하라. 유선·한인 중 곡식을 가진 관인들은 각자의 지역의 곡식이 없는 한인들에게 팔라.”).

56) 『滿文老檔』 태조64, 천명10년 정월초, 955쪽, “tere be ice han, ini jakade biburakū tulergi golo de dzung bing guwan obufi unggire jakade, lii g'o, han i baru korsofi, mini ama han ming liyan i emgi hebdefi, ice han i baru cooha dosifi, andala ilan ba i cooha be gumu gidaha.”(그(이괄)를 새 왕이 그가 있는 쪽에 남겨두지 않고 바깥 지역(*tulergi golo*)에 총병관으로 삼아 보냈으므로 이괄은 왕에게 원한을 품고 (나의) 아버지 韓明璉과 함께 상의해 새 왕을 향해 군대를 진격해 도중에 세 곳의 군대를 모두 격퇴했다).

57) 『滿文老檔』 태종천총8, 천총원년 12월, 113쪽, “meni cooha bederehe inenggi ci, ukaka niyalmai ton, haha juwe tanggū uyunju ninggun, hehe nadan tanggū gūsin sunja, ere neneme baicaha ton, jai tulergi goloi geren ukanju be amala baicafi unggire.” (우리 군대가 철수한 날부터 도망간 사람의 수는 남자 296명, 여자 735명인데 이것은 예전에 조사한 수이다. 다시 外路(*tulergi golo*)의 다수의 도망자를 나중에 조사해 보내겠다).

그대로 ‘바깥 지역’ 즉 外路를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었으며 일정 영역(예컨대 나라 *gurun*) 내에서 중심에서 벗어난 외부 지역을 의미했다.

그런데 천총 10년을 기점으로 *tulergi golo*가 ‘*geren monggo i beise*’(여러 몽골 수장들)를 관용적으로 수식해 사용되는 횡수가 증가한다. 이러한 용례는 천총10년 정월 元旦朝賀禮부터 홍타이지가 대청국을 선포하고 책봉례를 거행한 시점인 4월 사이부터 빈번하게 등장한다.⁵⁸⁾ 송덕 연간 이후 만문사료에도 이와 같은 용례가 다수 등장하는데 주로 후금에 귀부한 내몽골 각부를 총칭할 때 사용되었다. 천총10년 이전에도 몽골 각부를 가리켜 간간히 ‘*tulergi babai monggo i beise*’, ‘*tulergi monggoso*’라는 표현이 등장하지만 ‘*tulergi golo*’라는 용어가 몽골 각부를 총칭하여 쓰인 경우는 없었다. 그러나 천총 10년 이후에는 각부 몽골수장을 수식하거나 이번원을 지칭할 때 *tulergi golo*가 사용되었다. 누르하치 시기와 홍타이지 초기에는 몽골 각부를 아울러 지칭하는 특별한 용어가 없었지만 천총10년 즉 송덕 원년을 기점으로 *tulergi golo*가 몽골 각부의 범칭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이다.

만문사료에서의 용례를 살펴본 결과 *tulergi golo*의 일반적 의미는 중심지에서 떨어진 바깥 지역을 의미하며 또 비록 외지이지만 정권의 세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지역을 가리킬 때 사용되었다. 이 용어가 천총10년, 대청국(Daicing *gurun*)이 선포되는 송덕원년을 기점으로 몽골 수장들을 지칭할 때 관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이 시기 내몽골 각부에 대한 후금의 인식 변화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즉 누르하치 시기까지 후금 외부의 *gurun*(國, 國人)으로서 독립적 집단을 이루고 후금과 대등한 관계에 있던 내몽골 부족들이 홍타이지 시기 특히 송덕 원년 이후에는 후금-청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들어왔고 이러한 청과 몽골 관계의 변화를 *tulergi golo*라는 용어로 표현한 것이다. 특히 *tulergi golo*가 외국이 아닌 정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한다면 이 시기에 내몽골 각부를 후금 정권의 관할권으로 인지했다고도 할 수 있다. *tulergi golo*는 ‘外路’, ‘外地’라는 일반적 의미에서 송덕 원년을 기점으로 후금 정권의 영향력이 미치는 몽골각부를 가리키는 정치적 의미를 함유하게 되었다.

조선과 명 같은 인접국에 대해서는 변경 밖이라는 의미의 ‘*jasei tulergi*’를 사용했다는 점에서도 후금과 몽골의 특수한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jase*’는 변경, 변경으로 번역되는데 주로 나라 사이의 변경을 지칭했다. 특히 명과의 관계에서는 요동변장을 의미했다. 『만문노당』에서 *jasei tulergi*가 가장 빈번하게 등장한 것은 누르하치가 명에 대한 전쟁을 선포할 때 언급한 七大恨에서 명이 누르하치의 조부와 부친을 죽이고 여허를 도와준 일에 관한 기록이다.⁵⁹⁾ 이 일은 이후에도 “니칸이 변경 바깥의 여허를 도왔다”는 표현으로

58) 『滿文老檔』 태종송덕 1, 천총10년 정월; 태종송덕 7, 천총10년 4월; 『滿文老檔』 태종송덕 9, 송덕원년 4월 1012쪽; 『滿文老檔』 태종송덕 9 송덕원년 4월 1015쪽 등 기록에 *tulergi golo*가 몽골 각부를 범칭하고 있다.

기록되었다. 여기에서 여허와 후금은 명에게 변경 밖 다른 나라(jasei tulergi encu gurun) 임이 강조되었다. 즉 후금과 다른 여진 부족들 간의 문제는 그들 영역 안의 문제이므로 명과 같이 변경으로 구분되는 다른 나라가 관여할 일이 아님을 강조한 것이다. David Farquhar는 『滿洲實錄』 등에서 하다·여허 등의 여진 부족들을 모두 나라 혹은 국민을 의미하는 gurun이라고 불러 대등한 입장에서 서술하다가 나중에 누르하치가 이들을 병합하게 되자 부족을 의미하는 aiman이나 tatan 혹은 지역·지방(路)을 의미하는 golo 등의 용어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⁶⁰⁾ 마찬가지로 몽골 각부를 가리킬 때 tulergi golo를 사용하게 된 것은 후금이 이들을 변경 밖 다른 나라와는 구분하여 인식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홍타이지가 승덕3년(1638) 몽고아문을 이번원으로 개칭한 것은 이러한 인식변화와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Chia Ning은 홍타이지가 몽고아문을 이번원으로 개칭한 것은 이 기구의 업무 범위가 몽골을 초월해 보다 확대된 다양한 민족을 포함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주장했다.⁶¹⁾ 그러나 당시 홍타이지가 청 제국의 영역적 확대를 예견하고 몽고아문을 이번원으로 개칭했다는 것은 결과론적 해석이다. monggo jurgan을 ‘外路(외번)를 다스리는 아문’이라는 뜻의 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으로 바꾼 것은 청 정권의 영향권 아래로 들어온 몽골 각부를 ‘다스린다(dasambi)’라는 의미를 강조한 것이다. 이는 내몽골에 대한 영향력이 이전보다 강화된 데 대한 홍타이지의 자신감과 보다 직접적으로 몽골 각부를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차하르와 명을 상대로 한 전쟁과정에서 내몽골 각부에 대해 후금 한의 우위를 확립하고 이들에 대해 이전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시도한 단계에서 몽골 각부를 범칭하는 용어로 tulergi golo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용어는 이후에 ‘외번’으로 한역되고 고착화되었다. 당시 만주인들이 몽골 각부를 지칭할 때 tulergi golo를 사용하면서 중국적 천하질서에서의 藩 개념을 염두에 두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홍타이지 치세에 몽골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변화했으며 이것이 중국적 천하질서사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해도 적어도 이후 청대 ‘외번’ 개념의 초보적 의식이 형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이런 ‘외번’의 초보적 관념은 이후 중국적 천하질서라는 사상체계의 외피를 쓰고 청 영역의 확장에 따라 개념적·지리적으로 확대·발전해갔다.

59) 『滿文老檔』태조6, 천명3년 4월 13일조, 86-89쪽. 七大恨 중 첫 번째가 “공연히 변경 바깥의 일에(jasei tulergi weile de) 간섭해 나의 아버지와 조부를 니간(한인, 明)이 죽였다”는 것이고 명의 군대가 변경을 나와 여허를 도와주었다는 것이 두 번째 원한으로 열거되었다.

60) David M. Farquhar, “Origins of the Manchu’s Mongolian policy” (John King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70), p.200.

61) Chia Ning,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and Renovation of the Manchu dynasty Lifanyuan and Libu in the Qing Empire building”(Workshop “Administrative and Colonial PRactices in Qing Ruled China: Lifanyuan and Libu Revisited”).

결론

누르하치의 뒤를 이어 아이신 구룬(aisin gurun, 金國)의 한(han)으로 추대된 홍타이지는 여덟 명의 버일러가 국정을 공동 통치하는 소위 ‘八家公治’의 체제에서 독단적인 권력 행사가 불가능했다. 홍타이지가 명의 제도를 모방해 중앙기구를 정비하고 종실 이외의 만주·한인과 몽골인 관료를 등용한 것은 다른 버일러들을 견제하고 자신에게로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되었다.⁶²⁾ 그러나 각기 旗(gūsa)를 장악하고 있는 강력한 버일러들이 여전히 존재했고 그들로 구성된 의정회의를 통해 국정이 결정되는 체제는 비교적 공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홍타이지가 대내적으로 권력을 장악해 가는 과정에는 對차하르·明 전투와 몽골 각부와와의 관계정립이라는 대외적 요소가 중요하게 작용했다. 그리고 이 시기에 만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여 이전과 다른 단계로 진입했다.

누르하치 통치 시기에 후금은 내칼카·코르친부 등 몽골 세력과 반목과 협력을 반복하여 관계가 불안정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었다. 당시 후금의 역량은 몽골 각부에 대해 압도적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 명의 후원을 받고 있는 차하르의 립단 한이 건재했고 동부 몽골의 강호 코르친부와와의 관계도 우호적이었지만 공고한 단계는 아니었다. 이 시기 누르하치가 취한 몽골 각부에 대한 정책은 최대한 많은 동맹세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으므로 이들의 관계는 대체적으로 평등적 연합관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다져놓은 기반 위에서 몽골과의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기 시작했다.

홍타이지가 후금 한으로 즉위한 이후 후금으로 귀부해온 몽골 부족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해졌다. 또 차하르와 명을 공동의 적으로 하는 만몽연합세력이 구축되면서 몽골군을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후금 한의 군령을 몽골 수장과 병사에게 적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만몽연합군에 참여한 몽골 수장들 중에서 유력한 자들이 ‘자사크’로서 후금 한의 군령을 기타 몽골 수장들과 군사들에게 적용·통제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승덕 원년에는 몽골 각부에 후금 관원을 파견해 몽골 부족민들을 니루 단위로 조직하고 니루 장진을 임명함으로써 몽골 기층조직을 제도적으로 재편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이때의 편제는 기존 몽골 수장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과 속민의 관계를 해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몽골 사회조직 자체를 재편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등장한 ‘자사크’는 이후 청대에 한 旗를 관장하는 관직으로 제도화되었고 기존 몽골 수장들의 속민

62) 劉小萌, 『滿族從部落到國家的發展』,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06(第3版), 245-266쪽(유소맹 저, 이훈, 이선애, 김선민 역, 『여진부락에서 만주국가로』, 푸른역사, 2013, 394-424쪽).

에 대한 권한을 그대로 인정하는 몽골 각부에 대한 지배 방식은 ‘因俗而治’로 대변되는 청대 몽골 통치의 기본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따라서 홍타이지 시기 특히 천총 말에서 숭덕 원년을 기점으로 만몽관계는 이전 시기보다 한층 제도화·체계화 되었으며 이 시기에 시도된 제도적 장치들이 이후 청대 몽골 통치의 윤곽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홍타이지 치세에 질적으로 변화된 만몽관계는 몽고아문-이번원의 설립으로 가시화되었다. 홍타이지는 몽고아문(monggo jurgan)을 ‘이번원’(tulergi golo be dasara jurgan)으로 전격 개칭했는데 만주어 명칭으로 보면 tulergi golo(外路)가 monggo(몽고)를 대체했으며 만·몽·한어 명칭에서 각기 tulergi golo와 ‘외몽고’, ‘外藩’이 대응되었다. 원래 tulergi golo는 중앙에서 떨어진 바깥 지역을 의미하지만 변경 밖의 다른 나라와도 구분된다. 즉 중앙에서 떨어져 있으나 후금의 세력 범위 내의 영역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만문사료에서 천총 10년 이후 몽골 각부를 범칭할 때 관용적으로 tulergi golo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후금에 복속한 몽골 각부를 변경 밖 다른 나라가 아닌 후금의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로 인식했음을 반영한다. 이제 몽골은 중심에 거한 후금의 汗-청 황제를 울타리처럼 둘러싼 ‘내부가 된 외부 세력’이 된 것이다. 이것은 이후 외번으로 한역되어 고착되었으며 처음에 몽골 각부를 지칭하던 외번은 중국적 천하질서의 사상체계가 수용되고 청의 영역이 확장됨에 따라 이념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계속 확대되었다.

清 중기 總理事務王大臣 체제와 정국운영

송 미 령(전북대)

目次

- I. 머리말
- II. 輔政과 총리사무왕대신
- III. 遺詔와 총리사무왕대신 체제
- IV. 맺음말

I. 머리말

康熙帝가 사망하던 날 베이징에 있었던 예수회 선교사 마테오 리파(Matteo Ripa, 1682~1745)는, “예사롭지 않은 웅성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즉시 문을 잠그게 했는데, 황제가 죽었거나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았다”¹⁾며 당시의 긴장된 정황을 묘사하였다.康熙 61년(1722) 11월 14일(陰曆, 이하 동일)에 雍正帝는 버일러(Belie, 貝勒) 인스(Yūn sy, 允禩)·皇13子 인상(Yūn siyang, 允祥)·大學士 마치(Maci, 馬齊)·尙書 롱커도(Longkedo, 隆科多)에게 總理事務를 지시하였다. 이 날은 康熙帝가 사망한 그 다음날이었다.²⁾ 이들은 이때부터 史料에서 總理事務王大臣³⁾이라는 명칭으로 등장하였고, 27개월 동안 존속하다가 雍正 3년(1725) 2월 14일에 해산되었다. 이런 긴박하고 긴장된 분위기는 雍正帝가 사망한 날에도 비슷했을 것이다.⁴⁾ 雍正 13년 8월 23일에 雍正帝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莊親王 인루(Yūn lu, 允祿)·果親王 인리(Yūn li, 允禮)·오르타이(Ortai, 鄂爾泰)·張廷玉 등이 총

1) Matteo Ripa, *Memoirs of Father Ripa*, New york, Wiley & Putnam, 132-133쪽

2) 『大清世宗憲皇帝實錄』 卷1, 康熙 61년 11월 乙未條.(北京: 中華書局, 1986, 『大清世宗憲皇帝實錄』은 『世宗實錄』으로 약칭하며, 『大清聖祖仁皇帝實錄』과 『大清高宗純皇帝實錄』도 각각 『聖祖實錄』과 『高宗實錄』으로 약칭을 사용한다)

3) 이 總理事務王大臣을 滿文으로는 uheri baita icihiyara(總理事務) wang ambasa(王大臣)라고 표기하는데, 이는 雍正 원년 2월 2일에 沖安 등이 陵寢儀禮에 관한 奏摺를 상주한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른 견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uheri baita icihiyara(總理事務) hafan i Jurgan i aliha amban(吏部尙書)라고 연결하여 사용한다. (『宮中檔雍正朝奏摺』 28집(滿文諭摺第1輯), 臺北, 國立故宮博物院, 1977, 38쪽, 50쪽 참조).

4) 圓明園에서 사망한 雍正帝를 紫禁城으로 이송한 후 果親王 인리에게 황성의 자물쇠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내렸다(『高宗實錄』 卷1, 雍正 13년 8월 戊子條).

리사무왕대신으로 임명되어 같은 기간 활동하였다.⁵⁾

18세기 전반에 새로운 군주가 즉위하여 총리사무왕대신을 임명하였고, 그것이 27개월 간 존속한 것은 하나의 한시적인 體制를 형성한 것이다. 이 총리사무왕대신 체제가 가동되었던 시기는 한명의 군주가 신체적·정치적 생명을 잃은 후 새로운 군주가 정치적 생명력을 얻는 시간이었다. 나라의 정치적 안정과 밀접하게 연결된 이러한 시기에 옹정제와 건륭제가 구성한 한시적인 조직을 살펴보는 것은 즉위 초 정국운영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 총리사무왕대신에 대한 연구는 두 가지로 나뉘 볼 수 있다. 하나는 그 조직에 대해서 옹정제와 건륭제의 즉위를 언급하면서 간단하게 그 구성과 해체를 다루는 것이다.⁶⁾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청의 주요 정치기구인 軍機處와 관련된 것으로, 총리사무왕대신이 활동했던 大喪기간 동안 옹정제와 건륭제 모두 內廷기구의 통합과 확대를 시도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군기처의 업무범위가 옹정연간(1722~1735)에 비해 건륭연간(1735~1795)에 확대된 과정을 고찰한 연구이다.⁷⁾ 이렇게 총리사무왕대신을 처리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大喪기간과 연결하여 그 구성과 해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대체로 喪中이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주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새로 즉위한 군주가 총리사무왕대신을 구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총리사무왕대신이 喪中인 군주가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돕기 위한 조직이라면, 그 구성원들의 성격을 살펴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옹정제와 건륭제 즉위 초에 총리사무왕대신으로 임명된 이들과 새로 즉위한 군주와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이 글은 먼저 옹정제와 건륭제가 즉위한 후, 총리사무왕대신을 조직하게 되는 정치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는 그 이유가 옹정제나 건륭제의 통치초반의 상황과 연결되는 부분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새로 즉위한 군주의 상황이 총리사무왕대신의 구성과 정국운영에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옹

5) 『清史稿』卷10, 『高宗本紀』1. 이때 옹정제의 遺命을 받들어 이들 4명을 輔政으로 임명하였고, 이후 그 명칭이 총리사무왕대신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임.

6) 이 총리사무왕대신은 임시적·한시적 성격이 강하여 정치제도사 연구서에서도 비중있게 다루지 않는다. 白新良, 『清代中樞決策研究』, 遼寧人民出版社, 2002; 高翔, 『康雍乾三帝統治思想研究』,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5; 郭成康等, 『乾隆皇帝全傳』, 北京, 學苑出版社, 1994; 唐文基·羅慶泗, 『乾隆傳』, 北京, 人民出版社, 1994; 戴逸, 『乾隆帝及其時代』, 北京, 中國人民大學出版社, 1992; 白新良, 『乾隆傳』, 遼寧教育出版社, 1990; 梁希哲, 『雍正帝』, 長春, 吉林文史出版社, 1993; 楊珍, 『清朝皇位繼承制度』, 北京, 學苑出版社, 2001; 馮爾康, 『雍正傳』, 北京, 人民出版社, 1985. 총리사무왕대신에 대해서는 옹정제와 건륭제의 생애를 다룬 연구서에서 즉위 직후 황제의 보좌기구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다.

7) Bartlett, Beatrice S., *Monarchs and Ministers: The Grand Council in Mid-Ch'ing China, 1723-1820*,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呂釗, 『清代軍機處的設立及其性質』, 『歷史教學』1963-3.

정제와 건륭제의 즉위 초 3년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II. 輔政과 총리사무왕대신

새로운 군주가 즉위한 후 總理事務王大臣을 임명한 사례는 청의 역사에서 雍正帝와 乾隆帝 때만 보인다. 이렇게 옹정제와 건륭제가 구성한 총리사무왕대신 체제와 관련하여 떠오르는 의문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18세기 전반 군주가 교체되는 시기에만 등장했던 총리사무왕대신은 청의 역사에서 돌발적인 조직인가하는 것이다. 둘째, 여러 연구자들이 언급한 것처럼 총리사무왕대신 체제가 大喪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연결되었고, 황제를 대신해서 일을 처리하였다고 하는데, 정치상황상 그것이 가능한 일인지이다. 이 章에서는 이러한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리사무왕대신 체제의 前例가 될 수 있는 것을 찾아 그 연계를 살펴보고, 喪中の 군주는 실제로 언제부터 정치적 활동을 하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전통의 계승여부

총리사무왕대신체제가 즉위한지 얼마 안 되는 군주를 위한 것이라면 그와 유사한 것으로 攝政이나 輔政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실제로 17세기에 順治帝와 강희제가 즉위하였을 때 청 조정에는 새 군주의 통치를 ‘보좌’하는 이들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섭정과 보정체제가 누르하치(Nurhaci, 努爾哈赤)가 자신의 사후에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을 지시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언급하기도 한다.⁸⁾ 순치제 즉위 당시를 보면, 崇德 8년(1643)에 홍타이지(Hongtaiji, 皇太極)가 사망한 후 청 조정은 大權의 향배를 놓고 심각한 갈등 양상을 보였다. 6세의 풀린(Fulin, 福臨)을 새로운 군주로 결정하였고, 유력한 帝位 계승 후보였던 도르곤(Dorgon, 多爾袞)과 그의 사촌인 지르갈랑(Jirgalang, 濟爾哈朗)이 섭정을 하는 것으로 그 갈등은 봉합되었다.⁹⁾ 두 명의 親王이 군주를 보좌하는 역할을 한 것이다. 그리고, 순치 18년(1661)에 천연두에 걸린 順治帝가 사경을 헤매면서 만주인으로 구성된 대신들의 회의에서는 8세의 셋째 아들을 다음 황제로 결정하였다. 그리고는 오보이(Oboi, 鰲拜), 숙사하(Suksaha, 蘇克薩哈), 어빌룬(Ebilun, 遏必隆), 소니(Soni, 索尼) 등 4명의 輔政大臣을 두었다.

8) 臧廷秋, 「論清代順康時期親王輔政體制的形成」, 『歷史教學』 529, 2007 참조. Bartlett도 홍타이지가 한(Han, 汗)의 지위를 계승하였지만 다이산 등이 보좌한 체제가 옹정제와 건륭제의 총리사무왕대신으로 이어졌다는 의견이다(Bartlett, 1991, 140-141쪽).

9) 李鴻彬, 「清初傑出的女政治家-孝莊文皇后」, 『滿族研究』, 1998.2, 48-49쪽; 이블린 S. 로스키(저)·구범진(역), 『최후의 황제들』, 까치, 2010, 136-137쪽.

이렇듯 순치제와 강희제 모두 攝政과 輔政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들이 새 군주를 ‘보좌’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였을까? 섭정이 된 도르곤은 八旗의 여러 왕들과 버일러들의 회의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각 部 大臣들의 보고를 받겠다는 선언을 하였다.¹⁰⁾ 이것은 군주가 아닌 도르곤을 중심으로 청의 정치와 행정이 재편되는 시작점이었다. 이후에 도르곤은 순치제의 즉위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호거(Hooge, 豪格)를 압박하고 견제하는 등 순치연간 초의 정치는 그가 주도하였고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였다. 이렇듯 순치제는 군주가 되는 과정에서부터 入關을 한 이후까지 청의 정치구조 속에서 존재감을 확보하지 못한 채 철저히 소외된 상황이었다. 그런데 順治 7년(1650) 12월 9일에 도르곤이 사망하면서 상황이 급변하였고, 순치제가 親政을 시작하면서 정치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이어지는 강희제 때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 輔政體制는 이론적으로는 太皇太后, 어린 황제, 4명의 대신들이 집단으로 통치하는 방식으로, 4명의 보정대신들이 함께 상의하여 태후에게 결정을 奏請하고, 어린 황제와 보정대신들이 공동으로 정무를 처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국정 사무는 보정대신들의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었고, 다른 관료들은 황제에게 직접 상소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들 보정대신들이 ‘輔臣稱旨’의 명의로 국정을 운영하면서 실제로 황제권력을 대행한 것이었다.¹¹⁾

이처럼 순치제와 강희제가 즉위하였을 때 조직되었던 섭정과 보정체제는 어린 황제를 압도하는 권력을 가진 구조였다.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이라면 강희제 즉위 초기의 보정체제에는 친왕이 없다는 점이다. 종실의 친왕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점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전개되는 듯하며, 이는 군주의 권력을 제한하는 이들을 배제해가는 방향인 것이다. 그렇다면 옹정제나 건륭제는 그 당시 권력이 크지 않고 ‘보좌’라는 명분에도 충실할 수 있는 議政大臣들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총리사무왕대신이 존속했던 기간 동안 의정대신들과 일을 처리한 것이 옹정연간에는 6건, 건륭연간에는 3건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총리사무왕대신들과 함께 처리하도록 한 것이 각각 2건, 1건씩 있었다. 일의 건수도 적은 편이지만, 의정대신들에게 처리를 지시한 것은 靑海 台吉 책봉, 군량, 변방 수비책, 馬政에 대한 것이었다.¹²⁾ 청초 이래 계속해서 그 권한이 축소되어 이 시기에는 큰 영향력을 갖지 못한 의정대신들을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단순히 명분만 갖는 조직을 원했던 것은 아니었다.

10) 『世祖實錄』 卷2, 崇德 8年 12月 乙亥條; 『世祖實錄』 卷3, 順治 元年 正月 己亥條.

11) 孟昭信, 『康熙大帝全傳』, 吉林文史出版社, 1987, 1-36쪽; 姚念慈, 『康熙初年四大臣輔政芻議』, 『清初政治史探微』, 遼寧民族出版社, 2008, 459-466쪽(← 『清史論叢』, 2007)

12) 관련된 내용은 『世宗實錄』 卷2, 康熙 61년 12월 戊辰條; 『世宗實錄』 卷3, 雍正 원년 정월 壬辰條; 『世宗實錄』 卷10, 雍正 원년 8월 庚午條; 『世宗實錄』 卷15, 雍正 2년 정월 辛丑條; 『世宗實錄』 卷17, 雍正 2년 3월 丙申條; 『高宗實錄』 卷31, 乾隆 원년 11월하 辛亥條; 『高宗實錄』 卷55, 乾隆 원년 10월하 庚戌條; 『高宗實錄』 卷70, 乾隆 3년 6월상 丙申條 참조.

옹정제는 즉위하면서 2명의 친왕을 총리사무왕으로 임명하였고, 건륭제 즉위 초에도 친왕 2명이 임명되었다. 이들의 임명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보정체제를 계승하여 실현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옹정제와 건륭제가 성년이 되어서 군주가 된 점, 그 구성에 옹정제와 건륭제의 의지가 반영된 점(이에 대해서는 후술할 것임) 등 차이점을 보이므로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 大喪과 군주의 정치 활동

일반적으로 총리사무왕대신은 大喪기간과 연결하여 27개월간 존속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乾隆 원년(1736) 10월 25일에 총리사무왕대신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해체할 것을 건의하였다. 옹정제가 사망한 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이었다. 이때 건륭제는, 瀋邸에서 45년간 생활하면서 民情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깊었던 옹정제도 27개월간 그 체제를 유지하였으므로 자신도 그 기간을 유지하겠다¹³⁾는 뜻을 전했다. 이를 통해서 총리사무왕대신의 활동기간은 군주의 의지를 반영해서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과 옹정제의 사례가 건륭연간에 규범이 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옹정제와 건륭제는 大喪기간 동안 정치적 행보가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대신할 기구가 필요했던 것인가? 강희제가 사망했을 당시 옹정제의 움직임은 보자. 옹정제는 강희제 사망 직후 皇7子 인요(Yün io, 允祐)에게 暢春園을 지키게 하고, 皇12子 인토(Yün too, 允禩)에게는 먼저 紫禁城으로 돌아가서 几筵을 설치하게 하였으며, 皇16子 인루에게는 자금성 호위를 맡겼다.¹⁴⁾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이지만, 필요한 지시를 통해서 군주 교체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처리한 것이고, 자금성으로 돌아와서는 喪禮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였다.

강희 61년(1722) 12월 3일에 강희제의 棺을 자금성의 乾清宮에서 景山の 壽皇殿으로 옮겼는데, 옹정제는 이후 한 달 동안 매일 수황전에서 세 차례 제사를 지냈다.¹⁵⁾ 이때에 옹정제는 총리사무왕대신을 통해서 강희제의 장례, 팔기, 虧空, 錢糧에 대한 일들을 처리하였고, 총리사무왕대신과 6부의 각 부서, 의정대신들이 논의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즉, 총리사무왕대신을 통해서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지시하고 처리한 것이다.

그렇다면, 喪禮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옹정제는 27개월이 지난 후에야 정치적인 활동이 가능하였던 것일까? 강희제의 遺詔에서는 27일 후에 상복을 벗을 것을 언급하였지만, 옹정제는 3년 동안 계속 상복을 입을 것이며 滿漢大臣 모두 자신의 뜻을 따를 것을

13) 『高宗實錄』 卷29 乾隆 원년 10월하 乙酉條.

14) 『世宗實錄』 卷1, 康熙 61년 11월 甲午條.

15) 『世宗實錄』 卷1, 康熙 61년 11월 丁酉條; 『世宗實錄』 卷2, 康熙 61년 12월 甲寅條; 『清史稿』 卷92, 『凶禮』 1, 皇帝尚儀.

강조하였다. 그리고 청의 옛 제도는 100일이 지나면 상복을 벗는 것이 常例이나 3년 상복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거듭 언급하였다.¹⁶⁾ 그러나 실제로는 27일 후 상복을 벗었다.¹⁷⁾ 그리고, 『宮中檔雍正朝奏摺』이나 『雍正朝滿文硃批奏摺全譯』(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黃山書社, 1999)을 보면 강희 61년 12월부터 옹정제가 奏摺에 硃批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옹정원년(1723) 4월 강희제의 관을 옮겨서 景陵에 안치하였다. 이때 총리사무왕대신은 옹정제에게 御門聽政할 것을 요청하였고, 옹정제는 잠시 사양하다가 수용하였으며, 경릉에 안치한 후에는 剃髮도 하였다.¹⁸⁾ 여기에서 어문청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순치제때에도 시행되었으나, 제도화된 것은 강희연간이었다. 강희 6년(1667) 7월에 강희제는 親政의례를 마친 후 乾清門에서 聽政하는 것을 시작으로 통치기간 내내 거의 매일 어문청정을 실시하였다. 이에 대해서 강희제가 처음 어문청정을 했을 때 오보이가 여전히 실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¹⁹⁾ 하지만, 어문청정에는 領侍衛內大臣, 內大臣과 大學士, 內閣學士, 部院의 尚書, 侍郎, 左都御使 등이 함께 자리하는 공개적인 정치 활동이며, 직접 정치를 운영한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행사로서 그것이 갖는 의미는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世宗實錄』에서 총리사무왕대신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면, 옹정원년(1723) 4월 이후 기사 숫자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한 달에 7~9건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2~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후 총리사무왕대신의 명칭만 존재한 것이니, 이것으로 총리사무왕대신은 사실상 喪中の 군주를 보좌한다는 기능은 상실한 것이다.

건륭제는 언제부터 공식적인 행사에 참여했나? 옹정 13년(1735) 11월 24일에 건륭제는 元扈에 진행되는 제사에 직접 가야 하는데, 이것이 의례에 맞는지를 총리사무왕대신에게 자문하였고, 그들은 옹정제가 사망한지 100일이 지났으므로 가능하다는 의견을 냈다.²⁰⁾ 이보다 앞서 옹정 13년 9월 17일에 총리사무왕대신들은 100일이 지난 후에는 상복을 벗고 剃髮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보고를 했고,²¹⁾ 이후로도 剃髮과 어문청정을 요청하였

16) 『世宗實錄』 卷1, 康熙 61년 11월 己亥條, 壬寅條

17) 『世宗實錄』 卷2, 康熙 61년 12월 庚申條

18) 『世宗實錄』 卷6, 雍正 원년 4월 戊午條, 庚申條. 그 전에도 총리사무왕대신 등이 옹정제의 御門聽政을 여러 차례 간청하였는데, 그 근거는 100일이 지났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옹정제는 계속 거절하다가 이때에서야 허락하였다. 그리고, 만주족의 풍습에 따르면 帝后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뜻으로 사망 후 100일까지는 剃髮을 하지 않았다.

19) 어문청정에 대해서는 王薇, 『御門聽政與康熙之治』, 『南開學報』, 2003-1; 蘇亮, 『康熙帝御門聽政簡論』, 『安徽文學』, 2011-5 참조.

20) 『高宗實錄』 卷6, 雍正 13년 11월상 丙申條.

21) 『高宗實錄』 卷3, 雍正 13년 9월하 癸丑條

으나 건륭제는 옹정제의 관이 雍和宮에 있다는 이유로 다음 기회로 논의를 미루었다.²²⁾ 그러나, 건륭제는 옹정제가 사망한지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어문청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옹정제로부터 받은 책임이 커서 국가의 업무를 便殿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굳이 어문청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다.²³⁾ 그리고, 건륭제가 실제로 어문청정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은 건륭 원년 11월 3일로 옹정제가 사망한지 1년도 넘긴 시점이었다.²⁴⁾

이 때문에 건륭제가 공식적으로 정치활동에 복귀하였다는 기준을 어문청정으로 삼기에는 다소 애매한 점이 있다. 건륭제는 관료들이 업무에 복귀할 것을 요청하자 옹정제는 처리할 일이 많아서 喪中에 업무에 복귀하였지만, 자신은 차마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였다. 하지만 신하들은 27일이 지난 후인 옹정 13년(1735) 9월 15일 이후에는 일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고, 건륭제도 이를 허락하였다.²⁵⁾ 즉, 어문청정을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정치활동을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정리하면, 건륭제가 어문청정을 하기까지 옹정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냈으나 그렇다고 해서 정부를 처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3년상이라고는 하지만 27일이나 100일이 지난 후에는 군주의 정치활동에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리사무왕대신이 존속했던 27개월 중에서 약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새로운 군주로서 정치활동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군주의 의지로 존속기간을 조절할 수 있는 총리사무왕대신은 어떤 이유에서 3년 동안이나 존속하였을까?

22) 『高宗實錄』 卷7, 雍正 13년 11월하 己未條; 옹정제의 棺은 건륭 2년(1737) 3월 땅에 묻힐 때까지 雍和宮에 있었다. 황제의 관은 49겹의 옷칠을 한 후 황금도료를 입히는데 날씨가 추우면 관을 몇 년동안 地上에 두는 일도 있다고 한다(에블린 로스키, 2010, 355-356쪽). 그런데, 겨울에 사망한 강희제의 관은 이듬해 4월에 안치한 사례에 비취볼 때 이에 대한 규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때 관련된 자료들을 보면, 옹정제는 景陵에 강희제의 관을 안치할 때 직접 가겠다고 했지만, 총리사무왕대신을 비롯한 관료들은 宋과 明의 의례를 찾아봤지만, 새로 즉위한 군주가 직접 가는 사례는 없었다면서 옹정제의 시도를 반대하였다(『雍正朝漢文諭旨匯編』 1(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廣西師範大學出版社, 1999), 雍正 원년 정월 22일 20쪽; 『宮中檔雍正朝奏摺』 28집, 雍正 원년 2월 2일 38쪽).

23) 『高宗實錄』 卷8, 雍正 13년 12월상 壬申條.

24) 『高宗實錄』 卷30, 乾隆 원년 11월상 壬辰條. 건륭제는 11월 5일부터 어문청정을 시작하며 5일마다 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그 전에도 신하들은 건륭제에게 어문청정을 요청하였으나 계속해서 그 시기를 미루었다. 관련된 내용은 『高宗實錄』 卷8, 雍正 13년 12월상 壬申條 참조.

25) 『欽定大清會典事例』 卷459, 禮部170, 喪禮4, 『世宗憲皇帝儀』 1 199쪽(崑岡 等編, 『欽定大清會典事例』,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99).

Ⅲ. 遺詔와 총리사무왕대신 체제

雍正帝와 乾隆帝는 각각 45세와 24세의 나이로 군주가 되었기에 사실상 輔政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는 3년 상이라고 하지만 두 황제는 실제로 27일 이후에는 업무에 복귀하였고, 100일이 지난 후에는 공식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었다. 이러한 상황인데 옹정제와 건륭제가 27개월간 총리사무왕대신을 유지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장에서는 그 이전시대와 연결되는 부분에서부터 이유를 모색하고자 한다.

1. 정치적 영향력 확대

옹정제가 왜 총리사무왕대신을 조직하고 유지하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선 강희제의 遺詔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희제의 유조는 군주가 천하를 통치하는 要目, 자신의 長壽와 史冊에 뛰어난 이름을 언급한 부분, 즉위 이래 천하를 위해 전심전력을 다했음을 강조한 내용, 청이 천하를 얻은 정당성을 언급한 것, 자신의 학식·능력·정치적 업적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아래 인용한 부분으로, 강희제 遺詔의 원래 내용이라고 하는 강희 57년(1718)의 上諭에는 없는 내용이다.²⁶⁾

太祖 황제의 아들인 禮親王 다이산과 饒餘王 아바타이의 자손들도 모두 평안하게 살고 있다. 朕이 죽은 후에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보전하면 朕도 또한 편안하게 죽을 것이다. 넷째 아들 雍親王 인전은 인품이 고귀하고 신중한 것이 朕을 많이 닮아, 반드시 大統을 이을 수 있으니 짐을 이어서 帝位에 올라 황제가 되게 하라.²⁷⁾

강희 57년의 上諭와 遺詔의 차이점은 구체적인 계승권자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점과 다이산(Daišan, 代善)과 아바타이(Abatay, 阿巴泰)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습心’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주지하듯이 다이산은 홍타이지 즉위 초에 아민(Amin, 阿敏), 망골타이(Manggūltai, 莽古爾泰) 등과 함께 공동으로 통치를 하였던 암바(Amba, 大) 버일러 중 하나였다. 그는 누루하치의 둘째아들로 후계자 지목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홍타이지 시기에 유력한 세력이었고, 이후 순치제의 즉위 과정에도 개입하였다. 홍타이지가 사망하자 다이

²⁶⁾ 강희제의 遺詔는 강희 57년에 皇子, 大學士, 九卿 등을 모아 놓고 上諭를 내렸다(『皇帝의最後一道命令』(陳熙遠, 『臺大歷史學報』 33, 2004)와 『강희제』(조너선 스펜스(저)·이준갑(역), 이산, 2001)에서는 강희 56년의 上諭와 강희제의 遺詔를 분석하였다).

²⁷⁾ 『聖祖實錄』 卷300, 康熙 61年 11月 甲午條.

산은 홍타이지의 장자 호거의 즉위를 지지하였고, 누르하치의 열네 번째 아들인 도르곤을 추대하려는 세력과 침예하게 대립하였다. 그리고 아바타이는 누르하치의 일곱째 아들로, 홍타이지가 즉위하면서 버일러가 되었으나, 그의 통치시기에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던 인물이다.²⁸⁾

遺詔는 황제의 명의로 천하에 전달되는 마지막 명령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조는 황제가 임종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²⁹⁾ 유조는 사망한 황제의 명의로 반포되지만, 새로운 군주가 命을 이어 즉위하였으니 그가 정치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군주의 자리에서 국가를 운영한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앞에서 인용한 유조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은 강희제 이후 즉, 미래와 관련된 것이다. 계승권자에 대한 부분은 옹정제의 즉위로 실현되었으니, 남은 것은 ‘너희들이 마음을 합하여 보전하면’이라는 부분인데,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또 이것은 단순한 상투적인 표현이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내용을 옹정제가 즉위하던 날 반포한 조서의 “朕에게는 형제와 조카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직 관계가 친밀하고 화목하길 생각”하고 “짐은 (강희제의) 정치적 기초를 3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바꾸지 않을 것”³⁰⁾이라 강조한 점과 연결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옹정 원년(1723) 2월 10일에는 옹정제가 자신의 형제들에 대한 처벌과 임용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형제들이 군주인 자신에게 충성하고 협조해야 하는 것이 본분이라는 언급을 하였다.³¹⁾ 뿐만 아니라 6개월이 지난 옹정 원년 8월 17일에도 같은 맥락의 언급을 하였다.³²⁾ 이러한 내용들을 연결해서 보면, 마음을 합해야 하는 이들은 바로 옹정제의 ‘형제’들이며, 나아가 이것은 옹정제가 즉위 초 중점을 두는 명분과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옹정제를 둘러싼 계위의 정당성, 그가 형제와 宗室을 다루는 태도에 대한 소문 등이 집약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曾靜사건이었다.³³⁾ 曾靜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옹정제는 자신과 강희제와의 관계와 형제들이 얼마나 분별없이 행동을 했는지를 설명하였다.³⁴⁾ 이렇듯

28) 『清史稿』 卷 316, 『阿巴泰傳』 참조.

29) 陳熙遠, 『皇帝的最後一道命令』, 『臺大歷史學報』 33, 2004, 166-175쪽.

30) 『世宗實錄』 卷1, 康熙 61年 11月 辛丑條; 『雍正朝漢文諭旨匯編』 1, 雍正 원년 2월 10일 31-34쪽.

31) 『世宗實錄』 卷4, 雍正 원년 2월 庚申條. 이때 옹정제는 允祉의 그 일파인 陳夢雷를 사형에 처했다. 그러면서도 강희제의 통치방침을 바꾸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할 것이니 협조하라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32) 『雍正起居注冊』 1(北京, 中華書局, 1993), 옹정 원년 8월 17일 83쪽

33) 『大義覺迷錄』에서 초점을 맞춰 언급하는 부분은 만주인의 중국 통치가 정당하다는 것과 관련된 華夷觀이나 反清思想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曾靜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옹정제가 일일이 답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의 즉위와 형제들과의 관계가 여전히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는 사안이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34) 『大義覺迷錄』에 수록된 내용들은 민두기, 『大義覺迷錄에 대하여』, 『진단학보』 25, 1964; 조너선

즉위조서, 옹정 원년의 언급, 『大義覺迷錄』에 기재된 내용들에서 옹정제는 ‘정당한 계위’와 ‘통합’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강희제의 유조 내용과 이어져 있다.

강희제의 유조, 옹정제의 즉위조서, 이후의 상유들에서 일관되게 언급된 내용들과 총리사무왕대신의 임명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먼저, 총리사무왕대신 인스, 인상, 마치, 룡커도 4명의 면면을 살펴보자. 우선 인스(1681~1726)는 강희제의 여덟째 아들로 강희연간에 內務府의 일을 맡았으며, 옹정제가 즉위하면서 총리사무를 지시받은 후 廉親王에 책봉되었다. 그는 옹정 초에 理藩院尙書, 辦理工部事務 등의 일을 맡았다. 그러나, 옹정 4년(1726)에 종실의 족보에서 제명되었고 宗人府에 구금되었으며, 그때 논의된 그의 죄상은 40가지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 해 구금 중에 사망하였다. 또다른 친왕인 인상(1686~1730)은 강희제의 열세번째 아들로 옹정제가 즉위한 후 怡親王에 책봉되었고, 總理戶部三庫를 명받았다. 옹정 원년부터 戶部를 관리하는 직책을 맡았다.³⁵⁾

마치(1652~1739)는 富察氏로 滿洲鑲黃旗 출신이며 강희연간에 山西巡撫, 左都御史, 兵部尙書, 戶部尙書, 大學士 등을 역임하였다. 그런데, 옹정제 즉위 때 총리사무대신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대학사 職을 수행한 것 외에는 관직 상에 별다른 특징이 보이지 않고, 封爵에만 변화가 있었다. 즉, 옹정제 즉위 초에 一等阿達哈哈番이 되었고, 그 조부의 一等阿思哈尼哈番을 계승하게 하였으며, 이후 二等伯으로 작위를 올려주었고, 太子太保를 더해 주었다.³⁶⁾ 룡커도(?~1728)는 滿洲鑲黃旗 출신으로 孝懿仁皇后 佟佳氏의 동생이고 佟國維의 아들이다. 그는 옹정제가 즉위하면서 총리사무대신이 되었으며, 一等公을 세습하고 이부상서가 되었다. 하지만, 옹정 3년(1725)에 권력을 남용하고 온갖 일들을 속이고 숨겼다는 이유로 太保에서 파면되었다. 이때 결탁했다고 알려진 이들은 아링가(Alingga, 阿靈阿)·揆紱였다. 그리고는 옹정 5년(1727)에 16개에 달하는 죄상이 밝혀졌고 사형만 면하고 금고당했고, 그 이듬해 사망하였다.³⁷⁾

이상에서 이들의 경력을 살펴봤지만, 이것만으로는 총리사무왕대신으로 발탁된 배경을 찾기 어렵다. 이를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강희 47년(1707)까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그 해 9월에 강희제는 황태자인 인령(Yünreng, 允礽)을 폐위하였다. 이때 황장자, 황13자 인상이 언급되었으며, 황8자 인스도 구금되었다. 이때 佟國維는 황위계승자를 빨리 정해야 한다는 상소를 하였고, 이에 강희제는 만한대신들을 창춘원에 불러 황태자로 적합한 인물을 논의하게 하였다. 이때 분위기를 주도한 것은 만주인 아링가, 鄂倫岱, 揆紱와 한인 王鴻緒였고, 이에 같은 의견을 가진 이들로는 佟國維와 마치가

스펜스(저)·이준갑(역), 『반역의 책』, 이산, 2004 참조.

35) 『清史稿』 卷220, 『允祥傳』; 『世宗實錄』, 卷94, 雍正 8年 5月 甲戌條

36) 『清史稿』 卷287, 『馬齊傳』참조

37) 『清史稿』 卷295, 『隆科多傳』참조

있었다. 강희제는 마치에게 논의에 개입하지 말라고 했으나, 아링가 등이 몰래 여러 대신들에 ‘八’字를 보여줌으로써 여러 대신들이 인스[皇8子]의 이름을 올렸다. 강희제는 인령의 복위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그들의 의견이 수용되지 않은 채 일단락되었다. 그러나 그 다음해 강희제는 여러 대신들을 불러서 인스를 천거한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자 관료들은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이에 강희제는 그것은 倭國維와 마치의 의도였다고 단언하였다.³⁸⁾

그리고, 강희 48년(1708)에 룡커도는 인스와의 연계로 강희제의 질책을 받았다. 그런데 강희말년에 그는 이번원상서와 步軍統領, 九門提督을 역임하면서 베이징 성 내외의 군사력을 관장하는 위치를 담당하고, 강희 61년(1722) 11월에 고명대신이 된 점으로 미루어 강희 48년 이후 룡커도가 인스와 결별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⁹⁾

이처럼 공교롭게도 총리사무왕대신 4명 모두 강희 47~48년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총리사무왕대신들 중 인상을 제외하고는 모두 인스와 연결되는 인물들이다. 룡커도는 강희 48년 이후에 인스를 지지하던 입장에서 돌아섰다고 추정되지만, 그가 옹정 3년(1725)에 파면되었을 때 연루되었던 인물들은 아링가와 揆敘로 모두 인스의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옹정제에게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는 이들을 총리사무왕대신으로 임명한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희 48년에 인스를 황태자로 정할 것을 주장한 이들을 보자. 아링가는 누르하치 시대 五大臣⁴⁰⁾ 중 한사람인 어이두(Eidu, 額亦都)의 손자이고, 강희제가 즉위할 때 임명된 4명의 보정대신 중 한사람인 어빌룬의 일곱째 아들이다. 그리고 강희제의 妃인 孝昭皇后가 그의 누이이다. 鄂倫岱는 강희제의 외삼촌인 倭國綱의 아들이고, 揆敘는 누르하치의 아들인 아지거(Ajige, 阿濟格)의 사위이며 三藩의 난과 타이완 평정에 공을 세웠던 명주(Mingju, 明珠)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마치에 대해서 강희제는 한인 관료들이 心服할 수 있는 만주인⁴¹⁾이라는 평가를 할 정도로 영향력을 갖춘 인물이었다. 또한 이들은 모두 正黃旗와 鑲黃旗 소속이었다.⁴²⁾ 따라서 당시에 인스를 지지한 이들은 강희제의 외가, 공신, 상삼기에 해당하는 인물들이었다. 게다가

38) 『聖祖實錄』 卷235, 康熙 47년 11월 丙戌條, 戊子條; 『聖祖實錄』 卷236, 康熙 48년 정월 癸巳條, 甲午條; 『清史稿』 卷287, 『馬齊傳』 참조. 이때 마치는 강희제의 질책을 받아 구금되었으나, 강희 49년(1709)에는 러시아와의 교역을 처리하면서 정계에 복귀하였고, 강희 55년(1715)에는 대학사가 되었다.

39) 楊珍, 2002, 270쪽

40) 五大臣은 어이두, 피웅돈(Fiongdon, 費英東), 호호리(Hohori, 何和禮), 안피양구(Anfiyanggū, 安費揚古), 후르한(Hürhan, 扈爾漢)을 가리킨다. 이들 가운데 몇몇은 혼인을 통해서 누르하치와 동맹을 맺었다.

41) 『聖祖實錄』 卷268, 康熙 55년 5월 辛酉條.

42) 倭國維, 마치, 아링가, 鄂倫岱는 양황기 소속이었고, 揆敘는 정황기 소속이었다.

가 인스는 황자들 중에서 지지 세력이 있었는데, 인탕(yūn tang, 允禳), 인티(yūn ti, 允禩) 등은 인스를 스승과 같이 여겨 그의 의견을 따랐다⁴³⁾고 한다.

이렇듯 인스의 정치적 네트워크가 종실, 만주귀족까지 널리 뻗어 있는 현실에서 옹정제가 제위 경쟁자였던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사람’이 필요했던 것이다. 인상은 강희 47년 인령이 폐위되면서 그 일에 연루되어 禁錮처분을 받았는데, 같이 처벌받은 황자들이 두 달 뒤에 원래의 위상을 회복한 반면에 그는 강희제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⁴⁴⁾ 따라서 강희 후반부에 그는 정치적 생명을 잃은 상태였고,⁴⁵⁾ 그 점은 인적 네트워크가 약한 옹정제에게는 자신의 측근으로 적합한 인물로 보였을 것이다. 또한 옹정제의 신임을 받고 성장한 오르타이, 田文鏡, 李衛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면, 그의 정치인맥이 즉위 초에 빈약하였다는 점을 짐작할 수 있다.⁴⁶⁾

강희제의 유조, 즉위조서, 여러 차례의 上諭를 통해서 강조했던 것들은 ‘통합’과 ‘정당성’이었다. 따라서 그것이 계속해서 지켜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총리사무왕대신 체제였던 것이다. 실제로 옹정제는 이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티(yūnti, 允禩), 允祉에 대한 숙청을 진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강희제 유조에서부터 시작된 ‘통합’, ‘합심’이라는 명분을 계속 강조하면서 이들을 제한하고 배제하였으므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시작된 작업을 마무리하기까지 필요한 시간이 27개월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상주되는 모든 문서를 4명의 대신에게 보내 처리하며, 황제가 내리는 諭旨도 그들을 통한다는 언급을 하였지만,⁴⁷⁾ 총리사무왕대신들의 업무는 황제의 장례 의식, 靑海 쪽에서의 군사적인 활동, 팔기에 관련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서도 강희제의 장례 절차에 대한 일이 가장 많았다. 그 외의 업무는 내각을 통해서 처리하였다.⁴⁸⁾

2. 개혁의 명분 확보

雍正帝는 사망하기 전날인 雍正 13년(1735년) 8월 22일에 莊親王 인루·果親王 인리·오

43) 『雍正朝起居注冊』 1, 雍正 2년 4월 11일 211쪽; 『世宗實錄』 卷18, 雍正 2年 四月 辛亥條

44) 인상에 대해서는 吳玉清, 『雍正與怡親王允祥』, 『清史研究』, 1993-1; 徐雪梅, 『論康雍政治鬭爭漩渦中的允祥』, 『北方文物』 88, 2006-2; 程新曉, 『論允祥在康雍兩朝的不同境況及原因』, 『洛陽理工學院學學報(社會科學版)』, 25-4, 2010 참조.

45) 옹정제도 인상이 인령(황태자)의 일에 연루되어 강희제의 미움을 받았다는 언급을 하였다(『雍正朝起居注冊』 1, 雍正 원년 11월 25일 139-140쪽).

46) 『옹정제』(미야자키 이치사다(저)·차혜원(역), 이산, 2001)에서는 이들 세 명을 ‘총독 삼인방’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47) 『世宗實錄』 卷1, 康熙 61년 11월 乙未條.

48) Bartlett, 1991, 31-35쪽.

르타이·張廷玉을 ‘輔政’으로 삼았다.⁴⁹⁾ 옹정제는 사망하기 전날까지 회의를 하고 문서를 작성⁵⁰⁾하였다고 하니 이들 4명을 보정으로 임명한 것은 건륭제가 아닌 옹정제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런데, 건륭제는 “皇考의 遺旨를 받들어 네 사람을 輔政으로 삼는다”며 새 군주로서 임명절차를 밟았다.⁵¹⁾ 그리고 이들 4명은 보정의 명칭은 감당할 수 없으니 전례에 따라 총리사무로 칭하겠다는 건의를 했고, 건륭제가 이를 수용하였다.⁵²⁾ 이를 통해서 이들 4명의 조합은 건륭제가 직접 임명한 것은 아니었으나, 총리사무왕대신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그들을 그대로 유임시킨 데에는 그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도 큰 무리를 없을 것이다.

건륭제가 총리사무왕대신체제를 받아들이고, 옹정제가 보정으로 지명한 이들을 그대로 수용한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옹정제의 遺詔 내용부터 보자.

朕은 아침저녁으로 근심하고 애쓰며, 오직 聖祖의 마음을 본받아 마음으로 삼고, 聖祖의 정치를 본받아 정치를 하였다. 寬嚴의 사용은 때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人情이 각박하고, 관리들이 私利私慾으로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반성하고 개선할 줄 몰라, 어쩔 수 없이 처벌하여 이후에 삼가도록 한 것이다. … 만약 이전의 예는 관대한테 朕이 엄하게 바꾼 것은 人心과 風俗을 정돈하려는 것으로 잠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고, 그 폐단을 제거한 후에는 옛 규정을 회복하려는 것이 朕의 원래 뜻이었다.⁵³⁾

13년간의 엄격하고 가혹한 통치는 목적이 아니었으며 현실에 맞게 적용하다보니 엄격해졌다는 옹정제의 자기반성을 담고 있다. 건륭제는 옹정 13년 9월 3일에 즉위식을 거행하였는데, 즉위조서에서는 통치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으나, 恩赦를 위한 항목 26개를 나열하였다.⁵⁴⁾ 그 해 10월 9일에 諸王과 대신들에게 “천하를 다스리는 道는 그 中庸을 얻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관대함은 바로잡아 엄하게 해야 하고, 엄격함은 그것을 다스려서 관대해야 한다. 朕은 皇考의 가르침을 명심하여 강함과 유연함이 서로 보완하게 하는 정치를 하고자 한다”⁵⁵⁾는 건륭제의 언급은 옹정제의 명의로 반포된 유조와 연결되어 있다.

49) 옹정 13년(1735) 8월 23일 雍正帝가 사망하고, 8월 27일에 雍正帝의 遺詔를 반포하였으며, 9월 3일 天地祖宗에게 제사를 지낸 후 乾隆帝는 황제로 등극하였다. 관련 자료는 『世宗實錄』 卷159, 雍正 13년 8월 戊子條; 『高宗實錄』 卷1, 雍正 13년 8월 乙丑條 참조.

50) 馮爾康, 1985, 540-549쪽; 마크 엘리엇(저)·양휘웅(역), 『건륭제』, 천지인, 2011, 24-25쪽.

51) 『澄懷主人自訂年譜』 卷3, 54쪽(北京, 中華書局, 1991)

52) 『澄懷主人自訂年譜』 卷3, 55쪽. 4명이 명칭변경을 요청한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年譜의 내용을 보면, 옹정13년 8월 26일부터 9월 2일 안에 상주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3) 『世宗實錄』 卷159, 雍正 13년 8월 己丑條

54) 『高宗實錄』 卷2, 雍正 13년 9월상 己亥條.

55) 『高宗實錄』 卷4, 雍正 13년 10월 甲戌條.

이러한 통치방향을 천명한 건륭제가 총리사무왕대신으로 임명한 인루, 인리, 오르타이, 張廷玉에 대해서 살펴보면, 장친왕 인루는 강희제의 16번째 아들로 강희 말년에는 內務府의 일을 담당하였다. 옹정제 재위기간 중에는 正藍旗漢軍都統, 鑲白旗滿洲都統, 正黃旗滿洲都統 등을 역임하였고, 건륭제 때 총리사무왕이 되어 工部의 일을 겸하였다. 건륭 3년(1736)에는 이번원상서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인리는 강희제의 17번째 아들로 옹정원년(1723)에는 이번원의 일을 관리하였다. 옹정 6년(1728)에 친왕으로 책봉되었고 이후 工部와 戶部三庫를 관리하였는데, 이 일은 옹정제의 신임이 두터웠던 인상이 맡았던 일이었다. 건륭제 때에는 총리사무왕이 되어 형부의 일을 담당하였다.⁵⁶⁾

그리고, 오르타이(1677~1745)는 滿洲鑲藍旗 출신으로 옹정원년(1723)에 江蘇布政使로 발탁되었고, 廣西巡撫와 雲貴總督을 역임하면서 승진가도를 달리게 되는데 雲南과 貴州에서의 改土歸流를 공격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는 옹정연간에 대학사와 軍機大臣으로 활약하였고 임종시 顧命대신 중 한사람이었다. 그리고, 건륭제때 총리사무대신을 맡았다. 張廷玉(1672~1755)은 옹정연간에 吏部尚書, 軍機大臣, 大學士 등을 역임하였고, 옹정제 임종시 오르타이와 함께 顧命을 하였다. 건륭제때에도 대학사와 軍機大臣의 일을 하였다.⁵⁷⁾

옹정제의 유조부터 시작된 옹정제 시대에 대한 반성, 4명의 총리사무왕대신들은 건륭제의 즉위 초 3년 동안을 규정하는 요소들이다. 즉, 옹정제의 명의를 빌어 과거를 정리하고 앞으로 지향할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옹정제의 통치기간에 실행되었던 것을 개혁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나아가 그것을 추진할 사람들도 ‘적절하게’ 선택한 것이었다. 특히, 張廷玉과 오르타이는 옹정 8년(1730)에 雍正帝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정무를 제대로 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傳位에 대한 密旨를 받았을 정도로 옹정제가 신임하던 이들이었다.⁵⁸⁾ 이렇게 건륭제는 즉위 초 명분을 쌓고 옹정제의 親臣들과 함께 옹정제 때 구급하였던 중실의 인물을 석방하고, 축출하였던 중실 사람들을 다시 玉牒에 기재하도록 하였다. 그 중에는 개와 돼지로 개명되었던 이들도 포함되었다. 그리고 『대의각미록』은 금서가 되었고, 年羹堯 사건에 연루되어 관직을 박탈당했던 이들을 복직시켰다.

정치적 영향력과 관련하여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인물들은 친왕들이 아니라 張廷玉과 오르타이였다.⁵⁹⁾ 시간이 지난 후에 건륭제도 “滿洲人은 오르타이에게 의지하고, 漢人

56) 인루와 인리에 대한 내용은 『清史稿』 卷219, 『莊親王允祿』, 卷220 『果親王允禮』 참조.

57) 오르타이와 장팅위에 대한 내용은 『清史稿』 卷288, 『鄂爾泰』, 『張廷玉』 참조.

58) 『澄懷主人自訂年譜』 卷2, 33-34쪽. 이 때 雍正帝는 건강이 악화되어 모든 정무를 張廷玉·馬爾賽·蔣廷錫에게 맡겼는데, 密旨를 내릴 때는 張廷玉만이 황제를 알현할 수 있었다.

59) Bartlett도 당시에 친왕들은 중앙정부 내에서 영향력이 약화되었는데, 이는 강희제와 옹정제의 통치시기를 지나면서 八旗, 議政王大臣會議 등에서 위상을 상실해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Bartlett, 1991, 144-145쪽).

은 張廷玉에게 의지”하면서 그들이 관원의 임용과 탄핵에 개입⁶⁰⁾한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는 건륭제는 즉위 첫날부터, 즉시 명령을 내려 部院大臣과 戰線의 장군들을 움직이는 등⁶¹⁾ 사실 의욕적으로 정무를 시작하였지만 황제가 즉위 직후 모든 행정 업무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당시 건륭제의 조정에 오르타이나 張廷玉과 연결고리를 갖는 인물들이 다수 포진하였고, 그들이 정치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건륭제가 즉위 이후 그들을 총리사무대신으로 임명하여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인적망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세력을 성장시킬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⁶²⁾ 옹정제가 사망하고 총리사무왕대신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 이전과 차이점이 있다면, 辦理喪儀王大臣이라는 존재들이다. 履郡王 인토, 和親王 弘晝, 納穆圖, 海望, 徐本, 傅鼐, 普泰, 楊汝毅 등이 그 일을 맡았다. 또한 辦理泰陵事務를 맡은 이들도 있었다.⁶³⁾

IV. 맺음말

이상에서 옹정제와 건륭제의 즉위 초 3년 동안 구성되었던 총리사무왕대신 조직이 만들어진 이유를 당시의 정치적 상황과 연결시켜 살펴보았다. 이것은 순치제와 강희제가 즉위할 때 구성되었던 보정체제와 외형적으로는 유사해 보인다. 하지만, 옹정제와 건륭제는 이미 성년의 군주들이었다는 점, 그리고 군주가 주도적으로 필요한 인물들을 총리사무왕대신으로 임명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옹정제와 건륭제는 즉위 직후부터 활발하게 정치활동을 하였다. 따라서 喪中이라 정치적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군주를 대신해서 문서를 처리하는 조직이라기보다 ‘先帝의 명의’로 반포된 遺詔, 그것과 연결되는 즉위 초 정치 상황에서 새로운 군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정치적 상황을 만들기 위한 기반으로써 기능을 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즉위 당시 이미 성년이었던 옹정제와 건륭제가 총리사무왕대신을 임명하여 그들을 통한 정치 활동을 한 이유는 그들이 즉위하면서 강조했던 개념들과 연결되어 있다. 옹정제는 종실의 통합이라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총리사무왕대신이 존재하는 27개월 동안 지난 시대를 정리하였다. 그리고, 건륭제는 즉위 후 변화와 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혁을 추진하였는데, 옹정제가 했던 일을 수정하는 방식은 옹정제의

60) 『乾隆朝上諭檔』 第1冊, 乾隆 5年 4月 4日; 『高宗實錄』 卷 114, 乾隆 5年 4月 甲戌條.

61) 臺北故宮博物院 所藏, 『邊備夷情檔』, 第一本, 乾隆 2年 9月 初9日, 總理王大臣奏(莊吉發, 『故宮檔案述要』, 故宮博物院, 1983, 125쪽에서 재인용); 『高宗實錄』 卷6, 雍正 13년 11월 辛丑條.

62) 이에 대해서는 송미령, 『건륭초 구세력 배제와 군기처 정비』, 『명청사연구』 18, 2003 참조

63) 『高宗實錄』 卷1, 雍正 13년 8월 己丑條; 『高宗實錄』 卷2, 雍正 13년 9월상 癸卯條, 丁未條; 『高宗實錄』 卷 26, 乾隆원년 9월상 乙未條; 『高宗實錄』 卷28, 乾隆원년 10월상 己巳條.

사람들이 바꾸도록 한 것이다.

군주로 즉위하면서 정치적 생명은 얻었으나 강한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사람들이 자리를 잡아갈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였다. 이 부분이 외형상으로는 보정이나 섭정체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지만 실제 그 운영에서는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이다. 이것은 총리사무왕대신들을 언급할 때 옹정제는 ‘皇考가 신임하는 이들로 朕을 보좌’⁶⁴⁾하는 이들로, 건륭제는 그들의 ‘현명함에 의지하여’ 통치한다⁶⁵⁾고 한 점도 같은 맥락이다.

64) 『世宗實錄』 卷20 雍正 2년 5월 甲寅條.

65) 『高宗實錄』 卷29, 乾隆 원년 10월하 乙酉條.

19세기 전반 常關 稅收의 缺損과 物流 路線의 變化

— 淮安關과 滸墅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상 훈(서울대)

目次

서론

I. 清代 常關制度 運營의 特徵

II. 淮安關·滸墅關의 세수 결손 현상

III. 상인의 ‘繞越’과 물류 노선의 변화

IV. 淸朝의 대응과 그 한계

결론

서론

19세기 전반기(嘉·道年間)는 淸朝가 소위 ‘성세의 번영’을 구가하던 18세기와 대조적으로 쇠퇴 양상이 표출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세수 감소 및 재정 악화 현상은 당시 쇠퇴 국면의 중요한 단면이었다. 그 가운데에서도 關稅 감소와 이로부터 비롯된 각 常關의 세수 결손 현상은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당시 경제 상황과 관련된 것으로서 주목받아 왔다.

기존 연구에서는 운송 과정에 있는 상품과 선박에 대한 세금이었던 관세를 景氣指標로 간주하였고, 19세기 전반기(구체적으로는 道光年間)의 관세 감소 현상을 당시 경기침체가 있었음을 드러내는 사례로 주목하였다. 여기서 관세 규모는 기본적으로 通關 物流量과 세율의 곱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기존 연구에서는 一般 物流量과 통관 물류량의 비례 관계를 전제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의 비례 관계는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일반 물류량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으로 인해 통관 물류량이 변하였거나, 혹은 그 역도 가능하다. 만약 일반 물류량과 통관 물류량이 비례 관계에 있다는 전제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기존 연구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해질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가·도 연간 淮安關과 滸墅關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을 검토하고자 한다. 회안관과 호서관은 당시 전국의 상관 중 세수 감소 및 이로 인한 세수 결손 현상이 가장 두드러졌던 곳으로서,¹⁾ 도광 연간의 경기침체를 주장하는 연구에서 주목한 사례이기도 하였다. 게다가 이 두 상관은 당시 경제적 비중이 큰 지역인 江蘇省에 위치한 大關으로서 그 상징성과 함께 세수 규모로도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본고에서 다루는 문제를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I. 清代 常關制度 運營의 特徵

1. 常關 稅額의 관리

청조는 주요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여 通關하는 상인을 대상으로 貨稅와 船料를 징수하였다. 관세의 특성상 그 규모 변동이 심하였기 때문에, 淸初에는 일정량의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正額制’가 시행되었다. ‘정액제’는 각 상관의 책임자가 일 년을 단위로 하는 關期가 차면 할당된 정액을 중앙으로 報解하는 규정이었다.

그러나 雍正 年間에는 정액을 초과하는 세수가 中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상관 책임자가 징수한 세금을 모두 중앙으로 보해하도록 하는 ‘盡收盡解制’가 시행되었다. ‘진수진해제’는 전년보다 당년의 세수가 높아야 하는 ‘上年比較制’와 함께 시행되었기 때문에, 상관에서 상인을 苛索하는 현상을 확대시켰다.

따라서 중포 방지와 가색 방지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노력과 결부되어 제도 변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가경 4년부터는 ‘盈餘定額制’가 시행되었고, 이는 실질적으로 청 말까지 지속되었다. ‘영여정액제’는 정액을 초과하는 영여를 평년 규모를 참고하여 정한 뒤 이를 정액과 합산하여 새로운 세수 기준으로 삼은 제도였다. 그러나 그 성격상 중포 방지에 대한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었다.

2. 常關의 課稅 對象과 상품 운송로

한편 각 상관의 과세 대상은 중앙에 의해 설정되어 있었다. 상관에서는 기본적으로 관할 범위인 ‘關內’로 진입하거나, 혹은 ‘관내’로부터 외부로 진출하는 상인에 대해 화세와 선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관내’에서 교역하는 상인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장거리 교역 상인에 대한 중복 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몇몇 상품은 특정 상관에서만 화세

1) 예컨대 세수 규모로 따지면 회안관과 호서관보다 大關이라고 할 수 있는 粵海關, 九江關에서는 세수 감소와 이로 인한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粵海關의 경우 가·도 연간에 오히려 세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九江關의 경우 특정 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정액 이상의 세수 규모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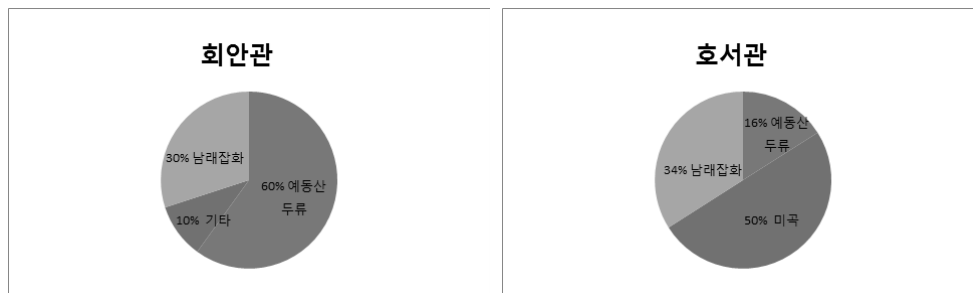
를 징수할 수 있었다.²⁾ 따라서 각 상관에서는 통관하는 모든 상인에 대해 화세와 선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규정 과세 대상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상관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상인은 법정 운송로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청조는 법정 운송로에만 상관을 설치해도 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 즉 법정 운송로는 청조가 적은 행정력으로도 일정액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다.

이렇듯 상관제도는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계를 구축한 것이었다. 따라서 현실의 물류 노선이 설정된 물류 노선에 부합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 변화할 경우 관세 감소 현상이 야기될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이 상관제도에 내포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II. 淮安關 · 澹墅關의 세수 결손 현상

1. 淮安關 · 澹墅關의 세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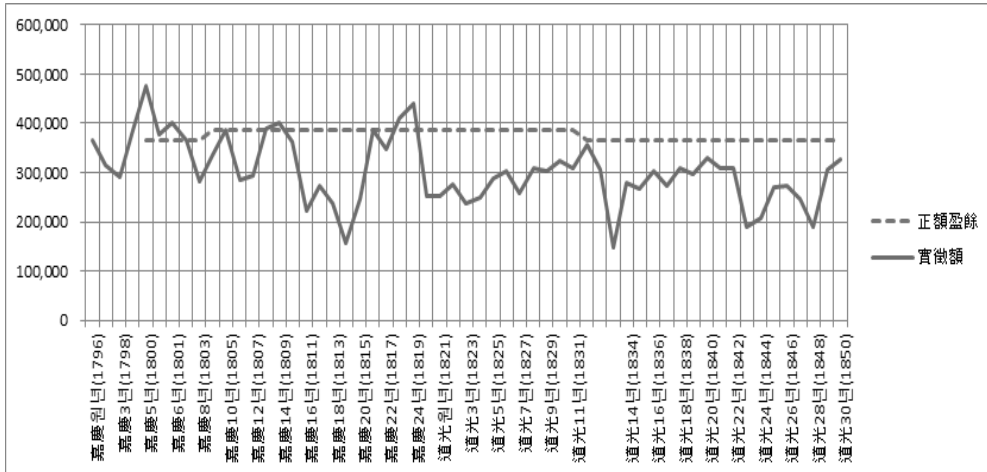


이러한 상관제도의 특성상 각 상관의 세수 내용에는 차이가 있었다. 회안관의 경우 하남과 산둥에서 생산되어 대운하를 통해 江南으로 운반되는 豫東産 豆類에 대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이였다. 호서관에서는 사천과 호남 등지에서 생산되어 강남으로 운반되는 米穀에 대한 과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였고, 예동산 두류에 대한 과세는 약 16%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강남에서 생산되어 대운하를 통해 북방의 각 성으로 운반되는 ‘南來雜貨’에 대한 과세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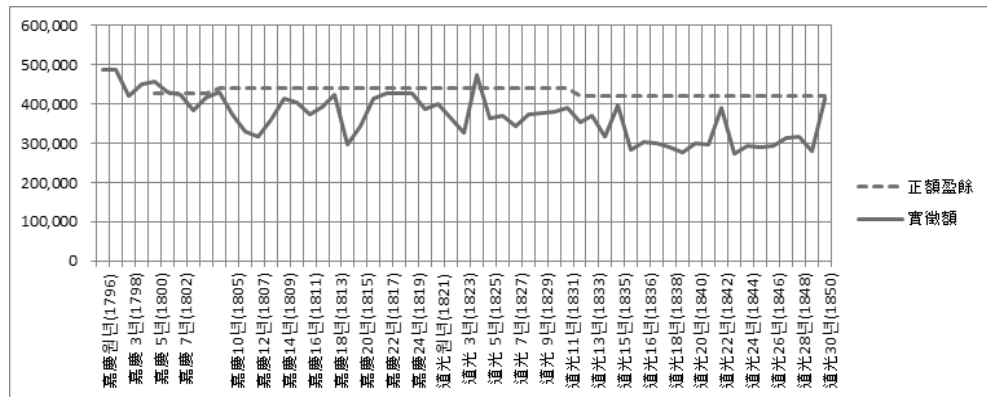
2) 중복 징수 방지를 위해 특정 상관에서만 징수할 수 있었던 貨稅와 달리 船料는 모든 상관에서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화세에 비해 선료는 그 세율이 매우 낮았다. 예컨대 淮安關의 稅則에 따르면, 적재량 1,000石인 선박이 豆餅을 滿載하고 통과할 경우 화세 50냥, 선료 3냥 5전을 징수하였다.

2. 嘉慶·道光 年間の 세수 결손 현상

淮安關의 稅收(단위:銀兩)



滄墅關의 稅收(단위:銀兩)



회안관의 경우 주로 예동산 두류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차가 줄어들거나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기능 이상으로 인해 교역에 나서는 상인 수가 줄어들었던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호서관의 경우 주로 川楚産 米穀의 생산지와 소비지 간 가격차가 줄어들거나 대운하의 기능 이상 혹은 정체 현상으로 인해 교역에 나서는 상인 수가 감소하였던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보고되었다. 다만 이 외에도 호서관에서는 미곡의 판매 가격이 강남보다 높은 지역으로 가는 米商이 생겼던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으로 보고되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상인의 입장에서 상품 교역 동기는 이윤에 비례하므로, 이윤이 많을수록 일반 물류량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다. 상인의 이윤은 최대한 단순화하여 살펴보자면 다

음과 같다.

$$\text{이윤} = \text{판매 가격} - \text{구매 가격} - \text{운송비} - \text{세금 부담}$$

상관의 책임자나 독무의 회안관과 호서관 세수 결손 원인 보고를 이 공식을 통하여 살펴본다면, 통상적으로 일반 물류량 감소에 따른 통관 물류량 감소가 그 원인으로 지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Ⅲ. 상인의 ‘繞越’과 물류 노선의 변화

1. ‘繞越’과 淮安關의 세수 결손

가경 20년(1815)을 전후로 하여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 원인 중 하나로 ‘요월’이 보고되는 사례가 빈번해졌다. ‘요월’은 상인이 법정 운송로를 이탈하여 교역하는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일종의 탈세 행위이다. 한편 상관의 책임자는 ‘요월’을 단속할 의무가 있었으며 만약 단속하지 못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요월’에 대한 보고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므로 ‘요월’이 보고되기 시작하였다는 것은, 한편으로 ‘요월’이 숨길 수 없을 만큼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

회안관의 중요 과세 대상인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으로 운반되는 현상이 이 시기에 이르러 확산된 것은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과 관련이 있었다. 이는 상인의 입장에서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 이용 시 운송비 부담이 커진 것을 의미하며, 이로 인해 상인이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던 것이다. 특히 상인이 비법정 운송로 중에서도 海路를 이용할 경우 운송비뿐만 아니라 세금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게다가 당시 해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제반 조건이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해로를 이용하는 상인의 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도광 연간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으로 운반되었던 것이 회안관 세수 결손의 결정적 요인이었음은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예동산 두류를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으로 운반하는 상인이 지나가는 주요 길목에 위치한 江海關과 鳳陽關에서는 회안관과 호서관과는 달리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도광 5년(1825) 당시 蘇州織造 延隆은 근래 예동산 두류가 대부분 해로를 통해 운반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게다가 도광 연간 蘇州府의 黃豆와 大豆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있었던 사례를 고려한다면, 결국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대규모로 운반되었기 때문에 회안관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미곡 운송의 변화와 澣墅關의 세수 결손

한편 호서관에서는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운반된 상황뿐만 아니라 외부의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상황도 세수 결손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호서관의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천초산 미곡에 대한 과세였다. 그러나 천초산 미곡은 생산지와 소비지 간의 가격차 변동으로 인해 강남이 아닌 지역으로 운반되는 경우가 많았다. 게다가 일부 상인은 천초산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어야 비로소 貨稅를 징수할 수 있는 과세 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이용하였다. 이들은 호서관의 ‘관외’에 해당하는 지역에 미곡을 운반하여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도 강남에 미곡을 가져와서 판매할 수 있었다.

예동산 두류가 비법정 운송로를 통해 강남으로 운반되거나 미곡이 호서관의 ‘관내’까지 운반되지 않았던 사례는, 모두 청조가 설정한 물류 노선에 벗어났다고 할 수 있다. 즉 회안관과 호서관의 사례는,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그 위에 과세 체계를 구축하였던 상관제도에서 현실의 물류 노선 변화가 관세 감소 현상을 야기하였음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IV. 清朝의 대응과 그 한계

1. ‘除弊六條’와 ‘分賠章程’의 개정

그렇다면 청조가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 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조 측에서 물류 노선의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던 이상,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세수 보전이 가능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도광제는 회안관과 호서관에서 징수 행정을 담당한 家丁과 胥役의 不正으로 인해 통관하는 상인 수가 감소한 것이 세수 결손의 원인이라고 간주하였다. 상인의 입장에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여 이윤이 감소한 것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교역에 나서는 상인 수 감소, 즉 일반 물류량이 줄어들어 세수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안된 ‘除弊六條’는 상관의 책임자로 하여금 가정과 서역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상인의 세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조치였다. 그러나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인 구호에 그친 조치였기 때문에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만 세수 결손에 대한 상관 책임자의 배상 규정을 합리화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의 배상 책임을 경감시키는 조치가 취해졌다. 이는 세수 결손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야기될 수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방지하고, 또한 현실에 맞게 배상 책임도 경감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 海路의 제한적 개방

그러나 통관 물류량 감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로 인해 비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는 상인의 수가 증가했던 것이다. 상인에게는 법정 운송로인 대운하의 빈번한 단절이 운송비 증가를 의미하였다. 따라서 청조는 법정 운송로 변경, 혹은 확대를 시행하여 상인의 운송비를 절감해 줄 필요가 있었다. 실제 도광 5년 호서관에서 기존의 과세 대상인 ‘남래잡화’를 해로를 통해 운송할 수 있도록 허가한 사례가 있었다. 다만 이는 대운하의 기능이 회복되면 舊例로 돌아갈 것을 전제로 한 임시적인 조치였다. 또한 예동산 두류를 포함한 ‘北貨南銷’의 경우 처음부터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

청조 측에서 법정 운송로의 변경, 혹은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법정 운송로를 설치한 목적과 관련이 있었다. 상인이 법정 운송로를 이용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청조는 모든 물류 노선에 상관을 설치하지 않아도 일정액의 관세를 징수할 수 있었다. 만약 법정 운송로를 변경한다면 상관의 증설과 같은 행정력 확장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청조의 재정 사정에서 행정력 확장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는 곤란한 것이었다. 게다가 징세 행정에 있어서 청조의 ‘작은 정부’ 선호 경향은 행정력 확장을 제한하는 배경이 되었다. 따라서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적은 인원으로라도 일정액의 관세를 확보할 수 있는 상관제도의 틀을 유지하려 하였던 것이다.

결론

요컨대, 가·도 연간 회안관과 호서관의 지속적인 세수 결손 현상은 일반 물류량 감소보다는 물류 노선의 변화에 의한 통관 물류량 감소로 인해 초래되었으며, 현실의 물류 노선이 변화하여 설정된 물류 노선과 괴리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조가 기존 상관제도의 틀을 고수하였던 상황이 그 배경에 있었다. 결국 가·도 연간의 관세 감소 현상은 경기 침체에 의한 세원 감소가 아닌 청조의 세원 포착 능력 감소로부터 비롯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만약 이러한 물류 노선의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상관제도가 개편되고 징세 행정력 확장이 이뤄졌다면 세수는 증가했을까? 가·도 연간 이후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본고의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례의 확인이 가능하다. 咸豐 年間에 태평천국을 진압하기 위한 군비 마련의 목적으로 창설된 釐金은 관세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상품 통과세였다. 강소성의 경우 이금 규모가 300만 냥에 달하여 기존의 관세 120만 냥에 비해 훨씬

켰는데, 이는 태평천국의 와중에 큰 피해를 입었던 강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다면 언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다.

이는 일반 물류량의 증가보다는 이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통관 물류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특정한 물류 노선을 설정하고 과세 체계를 구축하였던 상관제도와는 달리, 이금제도에서는 실질적으로 모든 물류 노선에 釐卡을 설치하고 세금을 징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이금의 사례는, 가·도 연간의 회안관과 호서관의 세수 결손 현상이 일반 물류량의 감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제도 개선과 행정력 확장을 통해 현실의 물류 노선 변화에 대응할 경우, 세수의 증가를 실현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본고의 결론이 설득력이 있다면, 관세 규모를 경기지표로서 간주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개한 기존의 논의는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세 감소 현상을 주요 근거로 하여 전개하였던 ‘도광 연간의 경기 침체설’과 함께 19세기 전반 중국 사회의 변화상을 ‘銀貴錢賤現象’과 관련하여 논의할 경우, 중국의 내부 구조를 더욱 세밀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아시아사』에서 중국근대사 내용구성방향

권 소 연(이화여대)

目次

1. 지역사 이론과 동아시아사
 2. 지역사와 '중심'의 문제
 3.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중국의 동아인식
- 맺음말

동아시아사는 지역사이다. 세계사와 한국사의 중간단계에 위치하여 양자의 이해를 돕는 조력자의 역할을 부여받았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된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는 앞으로 정립해 나아갈 그 정체성과 관점의 정립여부에 따라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세계사의 한 지부로 완성성을 가져야하겠지만 지금 현재의 동아시아사의 현주소는 그 '정체성이 이것이다'라고 정의하기 모호한 상태이다. 지정학적인 범위가 그렇고 지역사로서 갖는 성격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사』 과목은 한·중·일·베트남을 포함한 공간과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의 시간을 아우르며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서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얽힌 역사는 전통시대에서 발견되는 공통점과 근대적 질서에서 볼 수 있는 역사경험의 성격이 매우 다르다. 전통시기에는 동아시아의 지역의 특징이 비교적 잘 나타난다. 흔히 알고 있는 '유교·한자·조공체제·불교'등으로 형성된 중화질서의 세계가 평화롭게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근대시기에 들어서 이러한 전통적인 지역질서는 자취를 감추고 탈근대 시기에는 오히려 동아시아 지역에 속해있는 나라들이 저마다 지역의 중심이 되고자 원하는 지경에 이른다. 현재는 일본과 중국이 각각 우경화와 제국화를 기치로 서로의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미묘한 관계의 이웃국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동아시아 범주에 포함된 나라들은 각자의 자국 중심주의를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체 형성을 원한다. 과연 동아시아에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그를 뒷받침하는 지역사적 기반을 정립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동아시아 지역의 통합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상호 모순적인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지역 혹은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제시된 민족과 국가의 이익을 넘어서는 요구이

며, 다른 한편으로는 ‘민족 국가’를 더욱 크고 자기 보호 기능을 가진 공동체로 편입시키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지역주의는 지역의 자주성을 통해 전 지구적인 패권에 대항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으며, 그 자체가 ‘신제국’의 주도 아래 놓인 전 지구적인 시장 관계의 산물이기도 하다.¹⁾ 이처럼 근대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체로서의 동아시아에서 정체된 동아시아, 해방으로서의 동아시아를 거쳐 변혁의 동아시아 단계에 이르렀다. 동아시아가 거쳐 온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은 주변에 대한 개방과 폐쇄를 되풀이 하면서 발전해온 것이며, 이러한 과정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동아시아사』의 내용구성에 일정 부분 반영되어 있다.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세계사 속의 동아시아사인지 혹은 자국사의 연장선으로서의 동아시아사임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역사서술체제에서 자국사-지역사-세계사의 구조가 기존의 자국사-세계사(서양사-동양사)의 모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했기 때문이다. 국사가 과거의 실재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서술 모델²⁾이듯이 동아시아사 역시 하나의 역사서술 모델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어떠한 과거의 사실을 선택하여 동아시아사라는 범주에 묶느냐는 것이다. 근래의 한국학계 분위기를 살펴보면, 동아시아사는 첫째 한국사의 확장으로서의 동아시아사,³⁾ 둘째 국사의 경계를 넘어서는 동아시아사, 마지막으로 앞의 두 가지를 접합시킨 자아 확충으로서의 동아시아사⁴⁾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은 ‘한국사의 확장으로서 동아시아사’이다. 이는 동아시아사의 논의가 한국사의 지나친 민족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발현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을 보면 세계사의 ‘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도 그 성립의 중요성을 찾아야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바로 ‘중심주의’이다. 이 중심주의는 기존의 역사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유럽중심주의’, ‘중국 중심주의’의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세계사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고 그 극복과 해결을 위해 많은 담론이 생성되었던 유럽중심주의에 대한 대안은 수많은 연구와 대안 찾기에 의해(상호교류, 전지구사, 반구사 등등) 적어도 그 극복의 첫 발걸음을 내딛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중국 중심주의에 대한 해결책은 서양사 위주의 연구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았다.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지점에서 지역의 틀로 사고하는 법을 배울 수 있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여 동아

1) 김경일, 『제국의 시대와 동아시아 연대』(창비, 2011. 8), pp. 27-55.

2) 김기봉, 「탈근대에서 국사와 동아시아사」, 『역사학보』 196집, 2006 p. 311.

3) 송상헌,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서 동아시아사 담론의 문제」(『역사교육』 84집, 2002); 박원호,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재론」(『한국사학보』 제34호, 2009); 박상수, 「한국발 ‘동아시아론’의 인식론 검토-동아시아 연구, ‘초국가적 공간’으로부터 접근하자」(『아세아연구』 제53권, 2010) 등이 있다.

4)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역사학보』 196집).

시아 속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그들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될 것이며 또한 이러한 동아시아사의 개설은 한국사 서술에도 변혁을 줄 것으로 보인다⁵⁾라는 기대감을 갖게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계사 체제하의 동양사, 그 속에서의 중국 중심에 대한 해결책을 동아시아사의 중국에 대한 서술에서 얻을 수 있을까? 이를 위해서 『동아시아사』에서 중국문제를 다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들을 생각해보았다.

먼저 세계사 이론과의 연계하여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의 존립조건을 검토해보았다. 둘째, 상호연관 또는 비교사의 관점 하에서 동아시아를 이해할 때 중국의 동아시아인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셋째,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해서 중국사는 어떻게 서술되어야하는지 그 방향성을 검토해보았다. 중국을 중심으로 했던 전근대의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인정을 뒤로하고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지역질서가 붕괴된 후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주의, 국민국가주의 시대를 거쳐 지역세계의 형성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에 의거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해 보는 것이다. 이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줄 수 있을 때 우리의 새로운 『동아시아사』는 진정한 의미의 ‘동아시아사’로서 존립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1. 지역사 이론과 동아시아사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서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많다. 특히 세계사의 계열성에 따른 이론적 근거, 관점의 타당성, 내용구성과 방법론의 확립 등은 아직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에 세계사 계열성에 입각하여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가 성립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려 한다.

‘동아시아론’은 지구화와 문명의 실체에 대한 기술인 동시에 그 변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구상이다.⁶⁾ 라는 말처럼 동아시아론의 생성은 세계사 이론의 한 지부인 지역사 생성담론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동아시아사’가 단순히 한·중·일 삼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결합된 역사가 되어서는 안된다. 세계사 속에서 그 동안 주변으로 몰려 간과되어 왔던 동아시아의 역사에 관한 재평가, 내부적 성찰을 통해 앞으로 전개될 세계사에서 ‘위계적’ 질서의 수행자가 아닌 ‘수평적’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적 정체성’을 지닌 역사개념이어야 한다. 때문에 서구의 세계사 이론과 그 이론 속에서 동아시아 개념을 도출해

5) 안병우, 『동아시아사의 의미』,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2009 p.9.

6) 장인성, 『한국의 동아시아론과 동아시아 정체성』(『세계정치』 제26집 제2호, 2006), p. 4.

낸 논의 과정을 검토하여 성립의 근거를 찾아보았다.

현재 세계사학계의 세계사서술 경향은 국가 범위 심지어 지역 범위를 넘어서 큰 틀로서의 세계사를 서술하고자 하며 또한 동시대의 가장 중요한 현상들을 설명하기에는 부적합해 보이는 ‘국가 중심의 역사 서술’도 극복하려 하고 있다. 과거의 세계사 서술에서 주류를 이루었던 ‘서구 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은 이제 역사연구자들에게는 무시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 ‘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학계의 움직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구사’의 분야이다.⁷⁾ 지구사의 범주로서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지역적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성’, ‘서구 중심주의와 근대성을 뛰어넘기 위한 방법론’ 부분에서 보이는 ‘특정 주제와 관련하여 개인이나 지역을 같은 연구 차원에서 비교하고, 역사적 특징을 검토하는’ 공간적 방법론이다. 주로 초지역적 주제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는데 지역범주를 넘어 상호관련성을 중시하는 점이 지역사를 표방하는 동아시아사의 이론적인 바탕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범주에 속하는 연구 주제는 ‘교역이나 이주’ 같은 지역적 내지 전 지구적 상호 작용과 발전 과정에 주목하는 것이다. 비교적 이해하기 쉬운 이러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의 지역 간의 이해를 시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지역과 다른 지역들 간의 관계성을 다루는 間지역적 역사, 지구사를 통해 세계사와 소통하기 위한 것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가면 세계사의 틀 속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사로서의 존재가 성립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포함된 복잡한 정치상황과 역사이해상황을 파악하기에는 광범위한 이론틀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련을 중심으로 지역을 비교하고 역사적 성격을 검토하는 방법론은 현재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동아시아사의 취지와 부합하기 때문에 지구사의 지역연구 이론틀을 보완·수정하여 동아시아사가 세계사에 이르는 이론적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유력한 후보라고 여겨진다.

사실 세계사 이론에서도 지구사에 대한 논의는 아직 담론의 수준이어서 역사학의 한 분야, 교과 교육학으로서 역사 교육의 학문적 근간으로 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

7) 지구사는 첫째 인류의 존재 조건으로서의 지구성, 둘째 역사 단위로서의 지구, 셋째 지구적 혹은 지역적 상호 연관성 및 상호 의존성, 넷째 역사 행위자의 지구적·지역적 층위 혹은 의미, 마지막으로 서구 중심주의와 근대성을 뛰어넘기를 범주로 하여 이를 위한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Global History는 1989년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부르스 매즈리쉬(Bruce Mazlish) 교수를 중심으로 모인 연구 집단에서 『글로벌 히스토리의 개념화(Conceptualizing Global History)』의 발간을 통해 시작되었다. 기존의 세계사에 대응하여 ‘지역연구(Area Studies)’의 장을 넘어서 지구와의 연계적 관심에 주목하고, 종적인 것이 아닌 횡적인 동시발생성(Synchronicity)에 주목하여 전통적인 세계사로부터의 전환을 모색하기 위한 개념, 방법, 증거, 사례들을 실체화 하였다. 글로벌 히스토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원수, 『글로벌히스토리와 역사들의 지평을 넘어서』, 『서양사론』 92, 2007, pp.277-286; 조지형, 『지구사의 미래와 역사의 재개념화』, 『역사학보』 200, 2007, pp. 202-210. 이후 조지형(a)을 참고하였다.

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중심과 주변을 연결시키는 지역사는 어느 특정한 지역이 세계적 규모로 경험한 시간을 이해하고 거기에서 학습된 지배적인 ‘사실’들이 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또한 거기에는 다른 지역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는 양 방향적인 지역사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의 특징을 지닌 ‘지역’을 구분하는 것,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역사적 특징들을 분류하는 과정을 통해 한 지역을 하나의 공통된 경험을 가진 역사 지역으로 설정하고, 이 지역의 경험에서 무엇을 추출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이 이론의 근간이므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이 이론틀에 적용시켜 세계사와 연결되는 지역사의 입지를 확인해본다면 ‘동아시아사’가 하나의 역사단위로 성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트랜스내셔널 역사’이론을 또 하나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트랜스내셔널 역사란, 현 세계사 또는 근대성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민족과 국경(국민국가)을 초월한 역사를 말한다. 트랜스내셔널 역사는 횡단 국가적, 초 국가적, 통 국가적, 초 국적적, 전 지구적 共治(governance)로 해석되며 국제 또는 국가 간 또는 다국적 상황을 넘어서는 새로운 현실을 표상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만들어졌다. 그것은 국가적인 상황을 넘어서거나 횡단하고자 하지만 국가적인 상황 자체를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국가가 역사존립의 실체적인 기반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⁸⁾ 따라서 현재 동아시아사의 범주가 자국사를 기반으로 한 지역사라고 한다면 국가적 실체를 기반으로 하는 트랜스내셔널 역사의 지역 설정과 동아시아사의 지역설정이 부합한다고 할 수 있겠다. 자국사가 포함된 아시아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우리가 표방하는 ‘동아시아사’의 정의라면, 이러한 개념을 차용하여 한국, 나아가 동아시아의 근대 경험을 트랜스내셔널한 문제 상황으로 파악하는 것이 근대 경험을 새롭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이론 외에 또 ‘차이의 역사학’⁹⁾이 있다. 이 이론의 중심논점은 ‘차이’를 강조한다는 것이다. 다양한 지역의 역사는 하나의 선에 놓인 역사가 아니라 각각 다른 공간 속에서 경험한 시간들의 역사라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각각의 지역적 경험들은 ‘차이’일 뿐 상하 우위 관계일 수 없다. 이러한 내용은 ‘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줄 뿐만 아니라, ‘차이’를 견지하고 또는 ‘다름’을 인식하고 자국의 이익만

8) 윤해동,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의 가능성』(『역사학보』 제200집, 2008), pp. 35-37. 이 글에서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지향은 식민지를 경험한 역사, 혹은 역으로 식민지를 보유한, 제국주의 지배의 경험을 가진 역사를 해명하는 데에 가장 적절한 인식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보완점 때문에 트랜스내셔널 역사는 ‘방법론적 민족주의(Methodological Nationalism)’라 불리기도 한다.

9) 차이의 역사학에 대해서는, 김택현, 『제국주의, 역사주의, ‘차이의 역사(학)’』, 한국서양사학회 엮음,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푸른역사, 2011), pp. 281-291.

이 아닌 전체 지역을 위한 역사를 지향하기 때문에,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 성립의 근간을 세우는 데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적 차이를 ‘상하우위’가 아닌 ‘다름과 차이’로만 받아들이고, 공통의 경험을 인류 역사의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미래를 주도해 나갈 중요한 소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의 그러한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사’는 어떤 면에서 ‘차이의 역사학’의 이론적 근간을 공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예를 든 세 가지의 이론은 각각 세계사 이론의 지부와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의 방안으로 고안된 이론들이다. 최근 역사학 논의 중에서 주변부가 중심부를 대체하는 경향성이 두드러지는데 이 이론들은 모두 이러한 경향성에 영향을 받았다. 또한 현 역사학계의 추세인 ‘지역주의(Regionalism)’와도 그 맥이 닿아있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사’가 바탕을 둘 수 있는 이론적인 틀은 많은 것이지만 세계사와 지역사라는 연결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사가 하나의 역사단위로서, 하나의 학문단위로서 근거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지해보고자 하였다.

2. 지역사와 ‘중심’의 문제

앞 장에서 ‘동아시아사’의 성립근거를 논의하였을 때, 각 이론들이 중시한 것이 상호연관, 비교사의 관점에서 각 지역의 역사적 경험을 상하우위가 아닌 차이와 다름으로 지역을 이해하자는 것이었다. 이는 한국의 동아시아 담론에서 제시된 ‘중심-주변’, ‘중심-소중심-주변’의 관점과도 일맥상통한다.¹⁰⁾ 어떤 지역을 재창조·재위치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역사인식에 매겨진 지역의 순위를 세밀히 해부해내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역사인식이론에서 말하는 탈중심(de-center), 중심으로의 복귀(re-center), 또 다른 객관적인 중심(ex-center)¹¹⁾ 이 되는 과정이다. 사실 이는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왜냐하면 ‘객관적 중심으로서(이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의 객관성’ 또한 주관이 개입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제하에 지역사를 이해하려는 관점은 ‘참조’ 혹은 ‘기준’의 틀로서 지속적으로 시도되어야 한다.

10)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과 성찰』(『역사학보』 196, 2008): 『동북아 새롭게 읽기 - 동아시아학으로 가는길』(『동북아리뷰 콘텐츠』 제4집 1호, 2012.4). 등 참조.

11) 이 용어(de-center, re-center, ex-center)는 Janet Lippman Abu-Lughod의 글에서 차용해왔다. Janet Lippman Abu-Lughod, ‘The World-System Perspective in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History’, *History and Theory*, 34-2, 1995, p. 95. Janet은 역사적인 사건을 설명 할 때, 여러 가지 관점에서 한 사건을 보아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점으로 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논점의 중심에서 나와 가장 밖에서(제 3자의) 논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I was trying to de-center accounts, to view them ex-centrally.) p. 95.

동아시아사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재해석의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중국’에 관한 것이다. 전근대의 동아시아사 서술에서 중화질서가 부각되는 문제와는 달리, 근대 이후 시기의 중국사의 내용선정에 있어 중화질서의 붕괴와 더불어 중국서술의 실종 또한 주의하여야만 한다. 근대 이후의 중국은 기존의 중화질서의 해체를 겪었으나 세계체제로의 편입을 거부하고 일본 중심의 대동아 공영권에 속하는 것도 거부하였다. 근대시기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 지역의 중심의 위치에서 밀려났으나 소중심도 주변도 아닌 기존의 중심의 지위를 되찾기 위한 오랜 투쟁의 시간을 갖는다. 그러나 이 시기에 해당하는 중국 서술이 근대시기 서술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근대시기의 동아시아는 중화질서에서 세계질서로 그 역사무대가 이동된다. 그러한 이동의 매개는 사실 일본이라기 보다는 중국을 통해서 이뤄졌다. 세계체제의 모든 부분이 중국을 거쳐 일본 혹은 한국 그 밖의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전달되었고 새로운 체제를 받아들여 변화된 동아시아 각국의 문물, 제도도 중국의 중화질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기존의 동양사에서나 동아시아사에서도 근대시기의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주지 못한다. 매개자로서의 역할이 드러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기간의 중국내부의 변화상황은 아예 무시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사의 근대기간에 대한 서술이 일본과 한국을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는 중국 중심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소외와 무시에 가깝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비교와 연관’ 혹은 ‘상호연관성’ 혹은 ‘중심-주변’의 관점을 틀로 하여 기존의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를 해체시켜 ‘중국’을 재해석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중국을 이해하고 서술하는 것이 가능해지면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를 세계사와 연계하는 매개고리도 확보될 것이다.¹²⁾

우리나라 역사교육에서 논의되어 온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사 구성의 폐해는 중국 일국사의 내용만을 소상하게 그리고 너무나 많은 비중을 두면서 서술되어 왔다는 것이다. 脫근대의 역사 이론에 입각해 본다면 기존의 역사 서술이 구성한 역사 이야기를 해체하여 재구성해야 한다. 때문에 현재의 ‘동아시아사’에서는 중국에게 기타 동아시아 지역범위의 다른 나라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고 서로 연관된 사실을 중심으로 한 역사서술을 시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에게 기타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기 이전에 ‘중국 중심’이라는 용어의 의미를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 중심’이라는 하는 것이 동아시아사를 서술할 때 중국의 비중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가? 혹은 동아시아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와 동일시되어 서술되는 것을 의미하는가? 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근대이후의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지위를 일본에

12) 이희옥, 『동북공정의 정치적 논란에 비판적 해석』(『동아연구』 53집, 2007), p. 40;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동북아역사재단』, 2010, p. 62.

게 넘겨주었다. 근대이후의 동아시아의 역사는 전근대 역사에서 그래왔듯이 중국만을 중심으로 하여 구성될 수 없었다. 동아시아의 각 나라들이 모두 세계역사 속에서 함께 각자의 역할을 담당했다. 전근대 시기의 ‘중화질서’가 사라지고 ‘세계질서’가 그를 대체했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실체, 특히 근대 중국의 실체에 대한 검토는 생략한 채, 기존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따라서 중국 중심을 고려할 때, 중심과 주변의 논리에 의해 혹은 서구 중심주의에 대항하는 존재 가치로서 중국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서구 중심주의적 세계사와 그 대척점의 또 하나의 아시아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을 설정하고 동아시아 세계의 부정할 수 없는 대국으로서의 중국의 모습이 곧 동아시아의 모습인양 이야기되어 왔던 것이다.¹³⁾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인식해 왔던 중국 혹은 ‘상상해 왔던 중국’은 동질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동아시아 세계의 지역질서에 포함된 중국이 아닌, 서구의 필요에 의해 재해석된 중국이었던 것이다. 서구 중심주의 속에 그려진 중국은 과거 역사 속의 중국이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의 전설 속에서 일반적으로 인식된, 근대 국민국가주의자들의 이미지 만들기를 통해서 나타난 중국이다. 이 중국은 서양사의 주변으로서 동양의 모습을 간직한 낙후된 중국의 정체성이 부여된 실체였다.¹⁴⁾ 현재 중국학계에서는 ‘주변’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드러낸다. 그들은 중심에 대한 ‘주변’이 아닌 ‘지역화’가 더욱 적합한 용어임을 주장하기도 한다.¹⁵⁾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사실 ‘중

13) 유용태는 한중일 교과서에서 세계사가 자본주의를 향해 일체화하는 지향성을 띠면서 아시아의 다원성(서아시아, 남아시아, 동아시아, 내륙아시아의 독자성)을 부정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유용태, 『동아시아의 의미: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동아시아 교원연수교재』, 동북아역사재단. 2009) p.19.

14) 김기봉, 『동아시아사의 가능성과 불가능성』, 『역사학보』 제186집, 2005), p. 268-269. 이 글에서는 이러한 유럽인의 인식을 통해 나타난 중국, 또는 아시아상에 대해 ‘주어진 동아시아’란 표현을 쓰면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동아시아와 주어진 동아시아에 대한 철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박승우, 『동아시아 지역주의 담론과 오리엔탈리즘』, 『동아연구』 제54집, 2008), pp.34-43.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담론 속에 들어 있는 오리엔탈리즘에 관해 언급하면서 ‘자아 오리엔탈리즘’, ‘역 오리엔탈리즘’ 속에 보여지는 서구가 만든 오리엔탈리즘을 통해 동양 혹은 동아시아에 대한 사고의 틀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완전히 내면화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내면화된 오리엔탈리즘이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서구에 대한 우월감속에서 가장 잘 드러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론의 틀이 얼마나 강력하게 현대 우리의 사고체계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다.

15) 중국학자인 뚜웨이밍(杜維明)은 그의 책 『문명들의 대화』에서 현재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중심-주변’에 대해 언급하면서, ‘주변’이라는 단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였다. 그는 지역 세계를 중심과 주변으로 나누어 보는 것은 모순이며 대등한 역사 주체로서 동아시아와 중국을 논하자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주변은 ‘지방화’ 또는 ‘지역화’를 의미하므로, 누군가에 의해 부여된 ‘중심’에 대한 ‘주변’의 역사를 논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이다. 그는 지방 의식이 세계적인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의 절대 다수는 서양의 것이었다고 주장한다. 그에 의하면 지방 의식의 세계적인 의미는 지역적인 지식이 보편성을 부여받으면서 그 의미를 확대해 세계적으로 고착시킨 것이다. 또한 뚜웨이밍에 의하면, 지금은 이러한 세계성을 부여받은 지식에 이의를 제

국 중심'이라는 용어 또한 엄밀히 말하자면 기존의 학계가 비판해 온 '중국 중심'과는 전혀 다른 실체이다. 중국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이상하게도 일반적인 인문학 연구 분야에서보다 역사 교육 분야에서 도드라진다. 이는 세계사 교과서의 지식 체계 구성(서양사-동양사의 이분법적 구조)에 따른 영향에서 말미암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중국은 서구 중심주의의 필요성에 의해 선택된 중국사 내용을 선별해서 배우고, 그것을 통해 형성된 중국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다. 특히 근대 시기의 서술은 서양열강과의 접촉이 서술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에 그 상황이 더욱 심각하였다.

공동의 역사로서 동아시아사를 파악하려 할 때 필요한 것은 각각의 나라들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각 국가에서 미처 드러나지 않았던 그 지역만의 특징, 각국사로 연구할 때는 알 수 없었던, 그동안 보지 못하고 간과하고 있었던 것들을 드러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동아시아사'를 과목화하고 지역사적 관점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전의 세계사 체제하의 동양사가 중국 중심이거나 또는 각국사의 총합이었거나 한 것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동아시아사 구성을 위해 각국의 연관을 어디까지 다루어야 할 것인지가 다음의 과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무조건 중국사 중심에서만 벗어나는 것이 대안인가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볼 때, 근대시기 이후에는 '중국 중심'의 문체는 자연해소된 것처럼 보인다. 동아시아사 서술에 있어 중국사의 내용이 너무나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상호연관과 비교에 의해 중국 중심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일본이라는 제국이 새로운 중심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근대시기에 제일 먼저 근대성을 쟁취하고 서구의 입장으로 동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이 되고자 하였다. 근대 시기의 동아시아사에서 일본이 중심이 되어 동아시아의 지역사회가 서술되는 것은 앞에서 지적하였던 서구의 필요성에 의해 설정된 또 다른 아시아의 중심의 연장과 다를 바 없다. 다른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세계의 역사무대에 타의로 진입하여 그 역사시간을 극복하려 노력하거나 혹은 저항하거나 했던 중국의 모습을 제대로 그려내지 못한 것이다. 중국은 하루아침에 '중심'에서 '주변'으로 하락하였고 그 실체가 무엇인지 철저히 소외되고 말았다. 상호연관과 비교의 역사서술에서 부각시키고자 한 것이 '한국사'가 아닐까하는 오해마저 불러일으키는 부분이다.¹⁶⁾ 또한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신설 배경과

기하는 과정으로서 지역성의 다양화에 주목하여야 하는 시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확대·발전시킬 때 중요한 것은, '하나의 중심'을 찾거나 대체하는 것—이는 중국식의 '대일통(大一統)'에서 발전시킨 개념이다—이 우선이며, 기존의 중심 문화에 대한 반성적 사유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뚜웨이밍 지음, 김태성 옮김, 『문명들의 대화-동아시아 문명은 세계에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가』(휴머니스트, 2006). p. 169.

16) “동아시아문화 속의 중국”(서울:2012.11.2.—11.3) 토론에서 홍석률·함동주·유용태·백영서의 논의에서 발췌. (『동아시아 문화 속의 중국』, 동북아역사재단, 2012), pp.279-287.

관련된 것으로 한·중·일의 역사 분쟁을 의식해 한·중·일 삼국의 균등한 역사가 ‘동아시아사’이어야 한다는 논의가 중국 중심의 해결책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인가?¹⁷⁾ 이는 중국은 ‘세계와 중국’의 범주에서 만큼 ‘동아시아와 중국’의 범주에 포함되기에는 비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해도 너무나 갑작스런 역전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때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의 개념과 범주, 내용, 구성 체계 속에서 근대의 중국을 재해석, 재정립하는 것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어려운 작업이 아닐 수 없으며 우리나라 동아시아사에서 중국에 대한 공정한 관심과 서술이 이뤄질 수 있는지는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¹⁸⁾

3. 동아시아의 정체성과 중국의 동아인식

동아시아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목표는 동아시아 지역의 정체성의 성립 일 것이다. 그것은 동아시아인으로서 역사인식¹⁹⁾을 어떻게 파악하고 그것을 정형화할 것이냐의 문제이다. 사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로 통합된 동아시아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최대한 범주로 잡을 수 있는 것들 상호 간의 연관성을 고려한 서술이다. 사실 지역적인 범주조차 확정되지 않은 지금의 상황에서 동아시아를 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동아시아라는 공동체에 대한 서로의 인식조차 합일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아시아사를 서술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동아시아의 범위와 정체성, 그리고 그 공동체 구성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 객관적

17) 정연,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동북아역사논총』 제19집, 2008.3); 유용태, 『근대중국의 민족인식과 내면화된 제국성』(『동북아역사논총』 23호, 2009); 하세봉, 『동아시아 역사상, 그 구축의 방식과 윤곽』(『역사학보』 제200집, 2008); 백영서,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역사학보』 제196집, 2007); 황지숙, 『‘동아시아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휴머니스트, 2008) 참조. 지역사 차원에서 동아시아사의 재구성과 미래를 위한 동아시아사의 재구성에 대한 논의들로 참조하였다.

18) 유용태는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에서 연관과 비교의 관점에 따라, 근대시기에 연관사로 파악될 만한 예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다. 아편전쟁과 동아시아 각국의 개항 사이의 상호관련, 아편전쟁 직후 중국인의 항영투쟁과 태평천국운동이 구미세력의 일본침략을 지연/저지하는 효과를 초래한 것, 조선의 멸망이 신해혁명을 촉발시키고 신해혁명이 조선과 베트남에 공화주의를 확산시킨 것, 중국 국공내전 및 한국전쟁과 동아시아 냉전과의 상호연관 등등의 예이다. 이러한 주제 하에서는 한·중·일이 공유한 동아시아 지역사의 특징이 잘 드러난다.

19)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 인식에 대해서는 최근에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한일관계사학회가 펴낸 책에 의하면, “‘인식’이란 역사적인 집단 체형의 소산으로서의 이미지가 누적되면서 하나의 정형화된 관념으로 정착된다. 이러한 관념 내지 신념 체계가 ‘인식’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것이며 교육에 의해 전승된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가변적이긴 하지만 쉽게 바뀌지 않는다.”고 정의되고 있다[한일관계사학회 편, 『한일양국의 상호인식』(국학자료원, 1998), p. 4.

으로 동아시아의 범주는 아시아사적 내용의 합리적인 선정을 위하여, 아시아를 5개 지역으로 분류할 경우, 동아시아는 지리적으로 파밀고원(Pamir Plat)의 동쪽을 말하며, 인종적으로는 몽골 인종의 거주 지역, 문화적으로는 동아시아 문화권을 뜻한다. 그러나 지역을 세분하면 중국 본토와 그 주변의 티벳, 신장, 몽골, 만주 지역을 포함하고, 인접국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하며, 역사적으로 地理的 구분에서 동남아시아에 속한 베트남까지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는 한·중·일을 의미하지만 그 범위가 유동적일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하여 중화문화권(유교나 한자를 중심으로 한 고대의 문화권)에 속하는 베트남, 싱가포르, 대만 등을 주제사안에 따라 포함시키기도 한다. ‘동아시아사’과목의 경우에는 한·중·일·베트남이 고정적으로 포함된다. 이렇듯 다양한 사람들이 속한 동아시아 지역사의 이야기는 어떻게 구성되어야 하는가. 그리고 동아시아사에서 중국은 같은 동아시아의 일원인 한국·일본과 무엇을 공유하였으며 무엇이 고유의 특색이라 할 수 있는가? 중국이 동아시아 각국과 공유한 역사적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근대 중국의 정체성을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그런데 문제점은 과연 중국인이 동아시아 상호연관의 역사적 경험을 인식하고 있는가에 있다. 중국인이 중국역사를 통해 그 정체성을 확립한 것처럼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중국인의 역사성은 동아시아 상호연관의 경험을 통해 형성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기존의 동아시아사 논의에서 바로 밝혀진다. 서로에 대한 상호 인식의 입장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동아시아사를 원하는 반면, 중국은 이제야 걸음마를 띠고 있는 형국이다. 물론 동아시아를 원하는 한국과 일본도 그 바라는 지향성에는 차이가 크다. 그러나 한국, 일본과는 다르게 중국은 ‘동아시아 인식’에 대해 관심이 적다. 동아시아론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한국의 인문학자는 “중국인 속에 아시아는 없다!”고 언급하였다.²⁰⁾ 이 한 문장으로 파악할 수 있듯이 중국은 대국의 이미지와 자국의 강대국화에 비해 주변국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 동아시아 역사에 관한 관심이 한국과 일본에서 급격하게 대두되고 나서 중국에서도 일정한 정도로 동아시아 역사가 지식계와 민중들의 중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다.

가령 재미 역사학자인 왕후이(汪暉)는 그의 대표 저작인 『아시아는 세계다(亞洲視野:中國歷史的敘述)』에서 민족사의 틀에서 지역사의 틀로의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지역’이란 무엇이고, ‘지방’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또 ‘아시아’ 혹은 ‘아시아적 시야’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해 전반적인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²¹⁾ 그의 대표적인 이

20) 백영서, 『중국에 아시아는 있는가? — 한국인의 시각 《在中國有亞韓國人的視覺》』(『東方文化』 2004年 第4期;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제국을 넘어 동아시아 공동체로』(『思想』 제3기, 창비, 2009).

21) 汪暉, 『亞洲視野..中國歷史的敘述』(Oxford, 2010), “引言:”新亞洲想像“的背景條件, p.1.

론은 ‘트랜스 시스템 사회(Trans-systemic society)’²²⁾라는 개념이다. 이것은 전 지구화 시대에 지역의 혼합성·유동성·다양성과 중국의 역사 서술, 나아가 중국과 지역·사회·국가의 전통적인 범주를 뛰어넘으려는 움직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는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표명한 초기단계에서는 중화의 질서, 구체적으로 조공질서를 바탕으로 한 평화적인 동아시아 지역문화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최근에 그는 대국으로서 중국의 입지를 견지하며 이러한 트랜스 시스템 사회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기저에는 전근대의 중국처럼 근대의 낙후성을 견디고 부상한 현대 중국의 힘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는 것이다. 트랜스 시스템 사회란 전근대에 중화질서로 세상을 아울렀던 중국의 자부심을 현대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또 다른 중국의 학자인 거자오광(葛兆光) 푸단(復旦)대학 역사학 교수는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을 주제로 한 한국학자들과의 토론회에서, 첫째 ‘동아시아와 중국’, 둘째 학술과 정치와 정체성, 셋째 세계사·각국의 역사·지역사 등의 영역 문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국내외 학계에서는 근대 세계와 아시아 역사의 변화로 말미암아 서로 관련되어 있으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세계사, 지역사 연구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사이 유행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역사학의 이론 역시 ‘민족국가’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을 고취하고 있기 때문에, 학계에서는 ‘아시아사’나 ‘세계사’에 대한 흥미가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하면서, 2000년 이후 중국의 정치·문화·경제가 국제 환경 안에서 변화하게 되자, 이런 문제들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고 피력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²³⁾

중국의 대표적인 두 학자의 지역질서에 대한 관심의 전제는 중국이 동아시아의 구심점임을 전제로 한 것에 주의해야 한다. 중국은 전근대시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중화문명 자체가 아시아를 대표한다고 여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구분의 문제이다. 중국은 오랫동안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겨왔고 대외 관계의 기본 역시 문화적 혈연주의에 근간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명확한 지역 구분의 개념이 없었다. 둘째, 근대 중국이 당면한 문제는 강력한 중국의 건설이지 지역 공동체의 구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셋째, 지리적인 원인으로 중국과 한국, 일본이 달랐기 때문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중국과 통하지 않으면 세계와 연결되기 힘든 지리적 조건을 지녔다.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본과 한국은 강한 동아시아 의식과 유대감을 갖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은 달랐

22) 트랜스시스템 사회는 서로 다른 문명, 종교, 종족 집단 및 기타 시스템을 포함하는 인간 공동체이거나 사회연결망이다. 이는 민족 공동체와는 다른 관점으로 각종 사회를 서술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다원 사회라는 개념과도 다르다. 이것은 각 시스템이 상호 침투하고 사회 연결망을 구성하는 특징을 더욱 강조한다.

23) 거자오광(葛兆光), 『‘중국’의 역사적 형성과 그 정체성의 문제점』, 『중국 문명의 다원성과 보편성』, 2012년 제 14회 석학연속강좌, 한국학술협의회, 2012.11, pp. 7-17.

다. 중국의 인접 국가는 대략 20여 개 국에 이른다. 따라서 동아시아라고 범주화 한 일본과 한국에 대해서만 강한 운명 공동체 의식을 느끼기엔 다름이 존재했다. 또한 세계 식민주의 체제 속에서도 일본과 한국은 각각의 식민지 지배, 피지배 경향을 갖고 있다. 때문에 동아시아 관계는 줄곧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주요 관심사였다. 그러나 중국은 오랫동안 제국주의 열강과 대립하여 분쟁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국가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세계열강들과 대면할 수밖에 없었다. 그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의 하나인 일본의 식민지였던 한국이나, 중국을 자신들의 식민지로 운영하고자 노력한 일본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박엔 할 수 없다. 중국은 세계와 직접 대면하려고 한 나라였기 때문에, 각각의 이유로 동아시아에만 속하고 싶었던 다른 두 나라와는 다른 경험을 가졌다. 게다가 일본은 근대 이후 중국에 가장 심각한 상처를 준 나라였다. 이의 역사적 경험은 아직까지 중국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존재하고 있으며, 그러한 이유로 인해 일본과의 공동체 형성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²⁴⁾ 때문에 중국에서 동아시아론을 수립하는 데는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

동아시아학의 선구자인 일본의 동아시아학은 그들의 식민지 대륙 침략의 일환으로 성립된 것이었다.²⁵⁾ 때문에 이 중국과 일본의 동아시아학은 모두 다 현재가 요구하는 새로운 동아시아학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현재의 세계 인식과도 맞지 않는다.

중국에서의 ‘동아시아론의 합리성’에 대한 관심은 앞의 두 중국학자의 예로써 알 수 있듯이, 최근에 와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사실의 관점으로 볼 때, 동아시아라는 것은 더 이상 상상의 공간이 아닌 실제의 공간임을 자각했기 때문이고 둘째 현실에 비추어 미래를 진단해볼 때, 동아시아의 발전을 위해서는(특히 경제적인 측면) 시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동아시아론’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의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구와의 대립 속에서 형성된 중국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 중국 역사의 내재적인 발전과 아시아 고유의 가치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표명한다.

중국의 동아시아 학자들은 세계화와 더불어 다가온 지역화의 흐름에도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자본주의의 확산과 더불어 지역권이 다시 주목을 받게 된 현실을 자각하여 ‘신자유주의’의 사조에 입각한 동아시아의 발전에 힘쓰고 있는 것이다. 부평(步平) 교수는, “경제 글로벌화라는 배경 속에서 동아시아 지역은 모두 동아시아의 자아를 찾고 있으며, 동아시아 주변 세계의 국제화와 지역 협력의 빠른 발걸음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 정부와 국민들은 강한 긴박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였다.²⁶⁾ 현재 중국의 학계에는 국경

24) 고성빈, 『한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담론’: 상호연관성과 쟁점의 비교 및 평가』(『국제지역연구』 제 16권, 제3호), pp. 31-67참조.

25) 임상우, 앞의 논문, pp. 30-32.

26) 부평(步平), 『동아시아의 아이덴티티와 역사 인식의 국경 넘기』, 『동북아역사재단과 동아시아

과 네트워크 연계가 강화되면서 지역 특징과 지역 의식에 대한 각성이 나타나고 있고, 서양사학계에서는 ‘세계 체제 학파’가, 동양사학계에서는 ‘아시아 의식’과 ‘동아시아 의식’의 각성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동아시아 각성을 통해 나타난 ‘세계화’, ‘지역화’에 대한 하나의 예가 바로 동아시아 지역 범위 확정의 문제였다. 그 첫 번째는 베트남에 관한 것이다. 흔히 동아시아 3국이라 함은 중국, 일본, 한국을 일컫는데, 문명의 공통성이라는 점에서 ‘베트남’을 포함시키느냐의 논의가 있었다. 서구 역사학계에서는 자신들의 식민지 경영과 관련하여 베트남의 역사를 동아시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식민주의 사관에 입각한 지역 구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어떤 문화적인 동질성, 상호 연관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자신들의 식민 역사와 연결된 부분만을 고려하여 범주화한 것이기 때문이다.

중국사학계에서는 역사 시기에 있어서 비교적 근대에 이르러서야 베트남과 일본, 한국의 교류가 있었고, 그것도 중국의 중개를 통해서만 한정되었을 뿐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다. 따라서 중국, 일본, 한국이 갖고 있는 문명적인 공통성을 베트남에서 찾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인들이 고려한 것은 바로 ‘중국’ 자신의 문제이다. 그들은 과연 중국을 동아시아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역과 문화를 최대한 고려한다 할지라도, 중국의 동쪽 부분만이 동아시아에 해당하며, 서남부의 티벳(西藏)과 신장(新疆) 부근은 서아시아권에 가깝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측은, 동아시아는 마땅히 한국과 일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따라서 중국이 ‘동아시아’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 유효하기도 하고 유효하지 않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한국에서 활발하게 제기되는 ‘동아시아론’에 대해서도 한국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강조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동아시아사’를 구성할 때 중국인들이 지니고 있는 그러한 견해를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중국인의 동아시아사 인식은 최근의 저작들에서 명백히 드러난다. 중국에서 최근에 서술된 대부분의 동아시아사 저술들의 초점은 동아시아의 경제적 성장에 맞춰져 있다. 세계사에서의 경제적인 성공은 - 산업 혁명기의 서구가 그것으로 인한 富를 통해 세계무대의 헤게모니를 장악했듯이- 세계무대에서 동아시아의 영향력 즉, 중국의 영향력을

연구포럼이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9. 11.; 중국과 일본은 왜 공동 역사연구를 하려 하는가 《中日爲何要共同進行歷史》(신화네트워크, 2007); 『동아시아 지역은 미래지향적인 역사인식을 수립할 수 있는가 《東亞地區能否建立面向未來的歷史認識》』, 『中國圖書評論』, 2007.11

넓혀주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영향력은 서구의 성공적인 미래에 대한 회의와 반성 그와 동시에 그 동안 등한시해왔던 동아시아 국가들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중국의 역사학계에서도 이러한 경향에 부합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저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동아시아 국가들은 각각의 주목할 만한 공헌과 독특하고 다양한 동아시아 문명들을 만들어내었다’라든가 ‘현재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하였지만, 그러나 아직도 “역사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동아시아는 무엇인가?” “무엇이 동아시아인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최근 양권(楊軍)과 장나이허(張乃和) 교수에 의해 『東亞史』²⁷⁾가 집필되었다. 이 『東亞史』의 체제 구성과 거기에 반영된 역사의식을 검토해보면, 현재 중국이 동아시아에 대해 지니고 있는 역사 인식을 확인해볼 수 있으며 이는 우리 『동아시아사』의 내용구성에 있어 중국의 역사인식을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중국학자들이 저술한 『東亞史』는 일단 중국이 동아시아사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는 ‘표식’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어떤 역사적 시각을 갖고 ‘동아시아사’를 인식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앞에서 검토하였듯이 중국은 원래 ‘동아시아란 곧 중화문명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중화주의’, ‘화이질서’가 그들의 기본적인 역사관이었기 때문에, ‘동아시아’에 대한 그들의 인식은 미미하였고, 주변국들을 ‘자신들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 정도로 생각해왔을 뿐이었다.

『東亞史』에서는 동아시아사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는 동아시아 지역의 민족과 국가의 역사이다. 동아시아 사람들의 역사이다. 서방의 세력이 동아시아에서 횡행하던 시기엔 진정한 동아시아라는 것이 있었을까? 일본 제국주의가 세력을 확장하던 시대에도 진정한 동아시아라는 것은 없었다. 최근 10여 년 긴밀한 연합을 이뤄 상호 연동의 구역 합체가 진실로 확연히 나타났다. 현재 동아시아를 논하자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 그것은 하루아침에 생긴 조건이 아니라 꾸준히 형성되어진 것이다. 오랫동안 밀접하게 왕래하고 상호 활동을 해온 뒤 나온 필연적인 결과이다.²⁸⁾

이러한 규정 외에도 책 전반에서 파악할 수 있는 동아시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동아’ 지역 범위의 신개념을 제시하였다. 베트남 지역을 포함시킬 것이냐, 배제시킬 것이냐의 논의를 제시하면서 지리적인 정체성은 없으나 문화적 연관성은 있으니 포함과

27) 楊軍, 張乃和 主編, 『從史前至20世紀末 東亞史』(長春出版社, 2006); 羅茲, 墨襄 著, 『亞洲史』(海南出版社, 2006)(3版).

28) 楊軍, 張乃和, 앞의 책, pp. 7-11.

배제에 대해 더욱 숙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문화영역 이외의 베트남의 전반을 동아시아와 연결시켜주는 근거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논의하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의 지역범위를 문화적인 범주임을 확인시키고 전근대의 중화문화권의 연장을 계속 지켜나가겠다는 의도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둘째, ‘동아’라는 지리적 신개념, ‘동아는 지리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 말인가?’에 다음과 같이 답하고 있다. 중국 대륙과 해도 및 동북아와 동남아를 포괄하는 15개국, 즉 중국, 조선, 한국, 일본, 몽골,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러시아 지구까지 포함된 다양한 논의들을 소개하고 있다. 중국학계도 동아의 범위에 대해 광의로 이해한 ‘동아’와, 협의로 이해한 ‘동아’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일치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 중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동아시아사 지역설정논의와 매우 다르다. 광의와 협의의 동아시아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이 정의하는 ‘동아시아’는 우리의 동아시아에서 설정한 ‘동북아시아’의 범위와는 다른 중국을 아우르는 전반적인 동아시아 지역임을 알 수 있다.

셋째, 『동아사』 이전에는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저술이 없었고 그 이유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서방학자들이 서술한 ‘극동사’ 또는 ‘동양사’라는 것이 있었는데, 서방학자들의 책은 지리적인 공통성과 특수성이 있는 지역을 배열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동아’라는 개념에 대한 이해 역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중국은 지역사와 각국사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며, 지역사의 기본은 각국사이며 그 각국사를 더욱 발전시킨 형태가 지역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와 아울러 『동아사』를 바탕으로 중국학자들의 동아시아사 시기 구분에 대한 인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동아사』는 ‘동아’를 하나의 서술의 주체로 보고 동아 지역의 5천 년 역사를 지역 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음과 같이 7시기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다. 즉 ① 早期 동아 세계, ② 지역 구조의 형성 시기, ③ 각 민족과 각 구역의 발전 시기, ④ 조공 체제 시기, ⑤ 조약 체제 시기, ⑥ 냉전 시기, ⑦ 냉전 이후 시기가 그것이다. 또한 지리적인 차이를 서술 방향에 참고하면서 광범한 동아 지역의 지역 구분도 7개로 나뉜다. 즉 황하 유역, 장강 유역, 몽골 초원, 靑藏 고원, 무산남북, 동북아와 緣邊 지역이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 구분과 지역 구분에 입각해 동북아 지역의 구조는 부단한 발전과 변화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²⁹⁾ 이러한 시기구분으로 미루어보면, 중국이 인식한 동아사는 중국 중심의 동아사의 색채가 강함을 알 수 있다.

²⁹⁾ 楊軍, 張乃和, 앞의 책, pp. 9-11; 이 밖에, 쉰거, 『동아시아 시각의 인식론적 의의』, (『아세아연구』 제52권, 1호, 2009); 천광성, 『세계화와 탈제국, ‘방법으로서의 아시아’』, (『아세아연구』 제52권 1호, 2009) 등의 글에서 세계사 연구영역에서 영향받은 중국의 동아시아 시각 및 그 문제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들은 별도의 주제로 설정해서 다룰 계획이다.

이제 중국의 지역사 인식에 대한 수준은 우리나라 학자들의 주장에 매우 근접해있다. 동아시아 국가의 기원에 대해 농경 국가의 모델과 유목 국가의(몽골)의 모델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 점이 중국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라 하겠다.³⁰⁾ 유목국가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동아시아 범위설정에서 제외되어있지만 중국이 다민족국가를 근현대의 국가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최근의 세계사 이론을 충분히 수용하여 동아시아와 세계가 서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세계사와의 연계와 유래 통해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의 위치를 다시금 점검하고 있다.³¹⁾ 이는 최근 세계 경제가 밀접하게 돌아가는 시대에서 동아시아와 세계 간의 밀접한 상호 관계를 밝히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부여되었기 때문임이 일차적인 원인이겠지만 학문적인 계열성을 따라 그 완성도를 갖추고자 하는 의도도 반영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동아시아사 인식은 동아시아를 구성하고 정보를 선택하는 데 차이를 만들어낸다. 근대화라는 개념을 예로 들면, 중국에서는 그것을 역사상의 혁명으로 인식하고 있고, 일본에서는 維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식민지의 경험으로 인식한다는 차이이다. 결국 역사 인식의 범주로서 동아시아사를 구성하는 모든 내용요소들에 대해 어떠한 관점에서 접근할 것인가가 중요하며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인식이 동일할 순 없지만 중국의 그것은 한·일의 그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전근대, 근현대에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감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동아시아 역사인식 또한 지배적인 관점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농후하다.³²⁾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엔 아직은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어야 가능할 것인데, 현재 세계경제상황하의 중국이 우리가 원하는 동아시아 인식에 근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맺음말

이상의 논의로 볼 때, ‘동아시아사’가 표방하는 상호관련성의 지역사 서술에 있어서 논

30) 이는 중국의 자국사 인식에 있어 ‘청’으로 환원된 ‘몽골’의 문제에 관한 숙고에서 나온 듯하다. 또한 그것은 동아시아 지역범위 설정에 있어서도 매우 중대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몽고, 유목 문화 등의 주제와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인식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발표되었다: 차혜원, 『유동적 역사 공간-근세 동아시아로의 접근』(『역사비평』 제79호, 2007).

31) 중국의 역사교육과 동아시아 인식에 관한 정리는 오병수, 『中·西』에 가린 동아시아-중국 중등 학교 역사교육과 동아시아 인식』(『동북아 역사논총』 19호, 2008)을 참조할 것.

32) 중국내에 내재되어있는 ‘제국성’, 또는 세계와 동아시아질서에 대처하는 이중적인 질서에 대해서는 유용태,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한중인문학연구』 37집, 2012)를 참조할 것.

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중심’의 문제 그리고 중국의 동아인식의 문제이다. 고병익에 따르면 “동아시아사 구성요소로서 ‘중국사’는 하나의 이웃나라 역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 동아시아 지역전체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사는 상호비교의 대상으로도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³³⁾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사의 구성요소인 ‘중국’은 그 자체가 중요구성 요소의 하나일 뿐 ‘중심’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중국사를 국가사로 볼 것인지 또는 그 자체를 하나의 지역사로 볼 것인지에 대한 고려까지 논의되는 상황에서 상호연관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인 관계의 동아시아를 세우기 위해서는 중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의 번영을 꿈꾸고 있는지, 역사 갈등의 완화를 위한 동아시아사 인식을 원하는 대상인지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중국 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의 동아시아에 대한 관점의 상이점을 어떻게 해결하고 상호 협력과 이해의 동아시아사를 만들 것인지 부단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역사를 표방한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로서의 한국사’에 그칠지도 모른다.

우리 역사학계에서는 기존의 세계사 서술에서 나타났던 지나친 중국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있지만,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동아시아의 근대시기에는 중국의 실체가 없다. 따라서 중심도 없었다. 먼저 근대시기의 중국에 대한 상호연관에 근거한 역사서술을 보완해야 하며 나아가 전근대의 동아시아를 묶어주는 매개로서 거론되는 요소들인 ‘조공 체제, 한자, 율령, 유교’들 같은 동아시아적 문화요소들이 가진 중국적 연결고리를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과 연관된 비중국적인 ‘주변’적 요소들을 발굴하여 현대에 접목시켜 동아시아사의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해결방법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서구의 근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근대를 이해하는 열쇠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되어야 한다. 즉 관계의 형성, 가치관과 신앙, 관습, 제도, 언어, 행사, 가정의 역할 등에서 동아시아적인 내용요소를 발굴해내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의 정치적 잣대 혹은 정치적 관계, 경제적 이해를 위주로 한 내용요소를 넘어서 동아시아의 역사적 시간 속에서 진정한 동아시아의 정체성을 발굴해 낼 때, 우리가 원하는 상호협력과 이해의 동아시아사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 3국은 정치·경제적으로는 긴밀한 상호 연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역사 인식이나 역사 교육의 측면으로는 오히려 갈등의 요소들이 증폭되고 있다. 때문에 동아시아 3국의 역사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서 구성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그러나 자국과 동아시아를 분리하지 않고 그것을 연계시켜 연구할 때 자국사 근간의 동아시아학 서술과 구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나친 자국사와의 연계는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

33) 유용태,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과 구성 - 동양사 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 『역사교육』 107, 2008. p.128. 고병익의 동아시아사 인식 중에서.

으로 ‘세계사의 계열성에 따른 동아시아사’를 위해 세계사 이론과의 연계적인 연구도 그 단계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하나의 세계 체제로서의 동아시아’가 동아시아 지역 내의 내재적 연결을 발견해내고 그것을 실마리로 오늘날의 세계 구도를 그려낼 수 있을 때 단순히 동아시아 3국의 역사 갈등 해소와 평화유지를 위한 작금의 동아시아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만 · 조선의 ‘식민지근대’의 격차

— 경찰 부문의 비교를 통하여 —

문 명 기(국민대)

目次

1. 서론: 식민지권력, 萬能과 無能 사이
2. 식민지 경찰제도 형성사
3. 경찰력의 규모와 공권력의 집행능력
4. 경찰보조기구와 지역사회
5. 결론 - ‘식민지근대’의 격차와 그 함의

1. 서론: 식민지권력, 萬能과 無能 사이

본고는 대만과 조선에서의 경찰제도의 존재양태와 경찰의 지역사회와의 관련 및 침투 능력을 비교·검토함으로써 두 지역의 ‘식민지 근대(성)’의 형성 정도를 가늠해보는 것을 기본적인 목적으로 한다. 1945년 이래 일본제국의 개별 식민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꽤 축적되었고, 이들 연구는 식민지시대 조선과 대만의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식민사관의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학술적으로 내재적 발전론 및 (이와 논리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식민지수탈론의 형태로 일단의 결실을 맺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학문적·현실적 반동으로서 식민지에서의 근대(성)의 성립을 새롭게 조명하려는 시도 역시 활발하게 전개되어 식민지근대화론으로서 등장했다. 나아가 1990년대 후반부터는 식민지수탈론과 식민지근대화론이 공통적으로 ‘근대성’ 자체는 기본적으로 긍정해왔다는 비판에 기초하여, 근대(문명) 자체에 대한 본원적 비판으로서 식민지근대론이¹⁾ 대두하여 ‘근대성’이 한국사회, 나아가 동아시아사회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해왔다.

식민지시대의 역사상을 끊임없이 수정·보완·대체하려는 학술적 노력의 과정에서 새

1) 식민지근대론과 식민지근대성론을 구분하는 논자도 없지 않으나, 본 계획서에서는 양자를 구분하지 않고 ‘식민지근대론’으로 부르기로 한다.

로운 자료의 발굴과 검토, 새로운 연구영역의 설정 등을 통해 식민지시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더욱 정교해지고 풍성해진 것도 사실이다. 예컨대 과거에는 ‘절대악’으로서 분석의 필요성조차 느끼지 못했던 조선총독부의 관료집단이나 이들에 의한 각종 정책이 ‘이성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었고, 식민지 조선과 대만에서의 ‘근대성’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소재로서 경찰, 학교, 병원, 공장, 감옥 등이 주목받으면서 식민지시대에 대한 우리의 총체적인 인식에 일정한 변화가 초래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식민지근대’의 성립을 확인하려는 노력은 또 하나의 학술적 편향을 낳은 것처럼 보인다. 즉 (식민지근대화론에서는 ‘개발권력’, 식민지근대론에서는 ‘식민국가’로 각각 부르는) 식민지권력의 ‘국가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라는 혐의가 그것이다. 좀 더 부연하자면, 화폐·금융·법률을 포함한 근대적 제도의 이식과 각종 산업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조선총독부의 역할을 중시(식민지근대화론)한다든가, 식민지권력이 창출한 각종 ‘규율권력’의 실제 작동 범위를 과대평가(식민지근대론)하는 등, 전체적으로 식민지권력을 ‘강한 국가’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의가 없어 보이는 것이다.²⁾

그러나 근대(성)과는 무관했던 ‘민중세계’의 두터운 존재³⁾, 식민지시대 전체에 걸쳐 80% 이상이 농촌을 근거로 생활했다는 사실⁴⁾, 일제 초기의 농업생산성이 (통계의 오류 등으로 인해) 과도하게 평가되어 왔다는 점⁵⁾, 조선 농촌에서의 근대 의료기관 이용도가 대단히 낮았다는 사실⁶⁾, 총독부의 행정적 침투를 가능케 해주는 총독부 관료의 숫자가 (대만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훨씬 적었던 점⁷⁾, 한밭이라는 농촌사회의 위기에 직면하여 총독부와 지방당국은 ‘문명화의 사명’과 배치되는 徙市 祈雨祭(=‘미신’)에 의존하고자 하는 식민지 농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 결과적으로 ‘문명에의 여행’을 감수함으로써 식민지권력의 한계지점을 스스로 노정했다는 지적⁸⁾, 화폐 관련 도량형의 근대적 개혁에도 불구하고

2)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런 점에서는 식민지수탈론 역시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즉 논리적으로 보았을 때 ‘수탈’이 실제로 광범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선총독부의 ‘고도의 수탈능력’을 전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3) 이 점에 관해서는 趙景達, 『植民地期朝鮮の知識人と民衆 - 植民地近代性論批判』, 有志舎, 2008, 9-32쪽 참조.

4) 堀和生, 『朝鮮工業化の史的分析』, 有斐閣, 1995, 110-112쪽은 1925~1940년의 도시 인구가 7%에서 20%로 증가한 것으로 보았다.

5) 허수열, 『일제 초기 조선의 농업 - 식민지근대화론의 농업개발론을 비판한다』, 한길사, 2011, 13-31쪽.

6) 마쓰모토 다케노리 지음, 윤해동 옮김, 『조선 농촌의 식민지근대 경험』, 논형, 2011, 85-90쪽 및 박윤재, 『조선총독부의 지방 의료정책과 의료 소비』, 『역사문제연구』 21, 2009, 169-172쪽.

7) 문명기, 『근대 일본 식민지 통치모델의 전이와 그 의미 - ‘대만모델’의 관동주·조선에의 적용 시도와 변용』, 『중국근현대사연구』 53집, 2012, 211-212쪽.

8) 조형근, 『시장 이전 기우제(사시) 풍습과 식민권력의 한계지점』, 『사회와역사』 20집, 2008, 208쪽.

하고 농촌지역에서는 심지어 1940년대까지 전통적 쉼법에 의존했다는 지적⁹⁾ 등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근대성의 성립 또는 ‘遍在性’을 의심케 한다.

이렇게 한편에서는 근대성의 성립과 그 ‘遍在’를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근대성의 성립을 의심하거나 ‘偏在’한 것에 불과함을 강조하는 상이한 연구경향이 공존하는 현재의 상황은, 결국 식민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가 ‘무엇을 할 수 있었고 무엇을 할 수 없었는가?’를 보다 면밀히 추적해야 할 학문적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전술한 상이한 연구경향이 상호 대립·병존하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식민지사 연구가 조선 또는 대만 등의 특정한 개별 식민지에 대해서만 주목한 나머지 자국의 식민지 경험을 보다 객관화시켜 줄 비교의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연구상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비교연구일 것이다. 특히 식민제국 일본의 대표적 식민지인 대만과 조선을 비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식민지시대 조선의 ‘식민지 근대’의 존재양태를 보다 입체적이고 균형감 있게 이해하는 것이 본고가 지향하는 바이다.

이러한 비교연구는 개별 식민지에 대한 고립적인 연구만으로는 포착하기 힘든 여러 측면을 드러내는 데 유용하다고 판단된다. 현재까지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식민지 경찰을 주제로 한 연구 중에서 대만과 조선을 함께 시야에 넣은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우선 식민지조선의 경찰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식민지 경찰기구의 비대함과 행정경찰의 영역의 광범함, 그리고 식민지사회로의 억압적이고 효율적인 침투의 측면을 강조한 연구,¹⁰⁾ 그리고 식민지 이전 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식민지화 이후 국가형벌권의 과잉성장이라는 관점에서 근대 이후 권력(주로 取締의 주체인 경찰)에 의해 단죄되는 새로운 위법 행위에 초점을 맞춘 연구 등이 있지만,¹¹⁾ 이들 연구는 주로 전근대 조선사회와의 대비(즉 通時的 比較)를 통해 식민지 이후 경찰을 포함한 억압기구의 폭압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共時的 比較를 통해 당시 식민지 조선 공권력의 폭압성이나 규율화의 정도를 세밀하게 도출해내지는 못하고 있다.

반면 조선사회가 경찰이 요구한 규율을 얼마나 자율적으로 추종해갔는지를 추구한 연구, 즉 규율권력의 내면화라는 관점에서 일제하 경찰에 대한 공포·경멸의 이미지의 공존은 일제의 식민통치 능력의 한계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일제하 경찰 제도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풍조라는 부정적 유산을 한국사회에 남겼다고 본 연구,¹²⁾ 그

9) 이용기, 「식민지기 민중의 쉼법과 ‘자율적’ 생활세계 - 생활문서의 화폐기록을 통하여」, 『역사문제연구』 23호, 2010, 124-126쪽.

10) 김민철, 「식민지통치와 경찰」, 『역사비평』 26, 1994, 208-209쪽 및 219-220쪽.

11) 이종민, 「1910년대 경성 주민들의 ‘죄’와 ‘벌’ - 경범죄 통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7호, 2000, 95-97쪽 및 125-127쪽.

12) 이상의, 「일제하 조선경찰의 특징과 그 이미지」, 『역사교육』 115집, 2010, 194-196쪽.

리고 조선 경찰의 지방으로의 영역 확장 문제나 식민지 경찰의 민족구성 및 순사의 자질 등을 면밀히 추적한 후, 마땅히 계몽되고 습득되어야 할 근대의 규율마저도 식민지 민중들은 거부했고, 이는 근대의 규율이 강제되었지만 내면화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본 연구¹³⁾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경찰력에 의한 ‘규율화’, 특히 ‘내면화’ 여부에 대한 실증적 접근을 통해 조선의 ‘식민지 근대’의 성립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조선의 사례를 객관화할 비교의 대상을 가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타 연구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¹⁴⁾

한편 식민지 대만 경찰에 관한 연구도 적지 않게 제출되었고,¹⁵⁾ 경찰과 保甲(경찰보조기구)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연구가 눈에 띈다.¹⁶⁾ 특히 식민지 대만의 경찰제도를 총합적으로 다룬 연구가 최근 발표되었는데, 이 연구는 대만 경찰제도의 연혁과 보갑과의 관계 및 각종 부문경찰(고등경찰·경제경찰 등) 등을 다루고 있고, 대만의 경찰제도를 일본 내지 및 조선·만주국 등의 그것과 비교하고 있어 흥미롭다.¹⁷⁾ 하지만 제시된 통계도 『臺灣總督府統計書』(이하 『통계서』로 줄임)나 『朝鮮總督府統計年報』(이하 『통계연보』로 줄임) 등의 일차자료를 정리한 결과가 아닌데다 특별한 논점이 부재해 단순한 비교에 그치고 있는 점이 아쉽다.

-
- 13) 장신, 「경찰제도의 확립과 식민지 국가권력의 일상 침투」,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일제의 식민지배와 일상생활』, 혜안, 2004, 582-584쪽.
- 14) 일본학계도 식민지 조선의 경찰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편인데, 식민지 조선경찰에 대한 총합적 연구로는 松田利彦, 『日本の植民地支配と警察 - 1905~1945年』, 校倉書房, 2009가 대표적이며, 愼蒼宇, 『植民地朝鮮の警察と民衆世界, 1894-1919 - ‘近代’と‘傳統’をめぐる政治文化』, 有志舎, 2008은 18세기 말 이래 조선사회의 전통적인 ‘德治의 警察支配’라는 정치문화가 민중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中央集權的 日本型 治安體制로 대체됨으로써 조선 민중의 저항을 불러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 15) 주로 석사학위논문의 형태로 제출되었다. 예컨대 李崇禧, 「日本時代臺灣警察制度之研究」,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6; 李文藝, 「日據時期臺灣의 警察與警察政治」, 廈門大學 碩士學位論文, 2004; 李崇禧, 「日本時代臺灣警察制度之研究」, 國立臺灣大學 法律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6; 陳煒欣, 「日治時期臺灣‘高等警察’之研究, 1919-1945」, 國立成功大學 歷史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98; 蔡易達, 「臺灣總督府基層統治組織之研究 - 保甲制與警察」, 臺灣中國文化大學 歷史研究所 碩士學位論文, 1988 및 李幸眞, 「日治初期臺灣警政的創建與警察的召訓, 1898-1906」, 國立臺灣大學 歷史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2009 등이 그것이다. 국내에서는 손준식, 「일제 식민지하 대만 경찰제도의 변천과 그 역할」, 『중국근현대사연구』 47집, 2010 및 손준식, 「일제 식민통치에 대한 대만인의 반응과 경찰 이미지」, 『역사문화연구』 37집, 2010가 대표적이다. 다만 이들 연구 역시 비교사적 시각은 결여되어 있다.
- 16) 王學新, 『日治時期臺灣保甲制度之研究』(總督府檔案專題研究一), 國史館臺灣文獻館, 2009; 洪秋芬, 「臺灣保甲和‘生活改善’運動, 1937-1945」, 『思與言』 29권4기, 1991; 洪秋芬, 「日據初期臺灣의 保甲制度, 1895~1903」,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21집, 1992; 洪秋芬, 「日據初期葫蘆墩區保甲實施的情形及保正角色的探討」, 『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集刊』 34집, 2000 등이 그것이다.
- 17) 李理, 『日據臺灣時期警察制度研究』, 海峽學術出版社, 2007의 제9장(臺灣與朝鮮·滿洲警察制度的對比, 309-333쪽)이 식민지 조선 경찰제도와와의 비교를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하여 본고는 아래의 몇 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 우선 ① 식민지 대만과 조선의 경찰 문제를 함께 시야에 넣음으로써 두 식민지 경찰제도와 운영실태를 선명하게 비교하고자 한다. 아울러 ② 조선의 ‘식민지 근대’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식민지 대만이라는 참조대상을 개입시킴으로써 조선의 ‘식민지 근대’를 보다 상대화해 볼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식민지 경찰제도 형성사

본장은 기왕의 연구에 의거해 개별 식민지의 경찰제도 형성의 역사를 짚어보되, 경찰이 식민지행정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차이에 유의하고자 한다. 즉 대만에서는 민정 장관 고토 심페이(後藤新平)의 강력한 주장의 결과¹⁸⁾ 20廳 체제에서廳 아래 행정단위인 支廳의 장을 모두 警部가 담임하도록¹⁹⁾ 함으로써 지방행정과 경찰행정이 일체화될 수 있었다.²⁰⁾

반면 조선에서는 헌병경찰시대에서 보통경찰시대(1920년대)로 이행하면서 1910년대에 비해 인력과 규모 면에서 급속한 팽창을 이루었고, 또 ‘조장업무’의 형태로 일반 행정사무에도 광범하게 참여함으로써 일견 식민지 민중과의 일상적 접촉이 형식적으로는 가능해졌지만, 대만에서처럼 지방행정기구의 長을 경찰이 담당함으로써 지방행정=경찰행정이 되는 수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때문에 대만·조선 공히 ‘助長行政’으로 불린 경찰의 일반행정에의 참여·분담의 양상은 사뭇 달랐다.

3. 경찰력의 규모와 공권력의 집행능력

본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경찰력의 규모와 밀도의 문제를 살펴본다. 우선 경찰력의 규모를 보자.

18) 『警察機關の擴張に關し後藤民政長官の接衝』, 臺灣總督府 編,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102쪽.

19) 규정상으로는 支廳長은 屬·警部 및 技手が 담당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지청장에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경찰이 임명됨으로써 사실상 행정관할과 경찰관할이 일치되는 결과를 낳았다(『支廳制度に關する變遷』, 臺灣總督府 編,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521쪽).

20) 이렇게 일반행정 사무를 사실상 경찰인력이 담당함으로써 대만총독부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 즉 각종 항일무장운동의 진압으로 인해 과도하게 팽창한 경찰인력을 일반행정에 재배치함으로써 경찰인력의 과다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일반행정에의 경찰인력의 투입을 통해 일반행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李理, 『日據臺灣時期警察制度研究』, 海峽學術出版社, 2007, 75쪽).

<표 1> 대만과 조선의 경찰인력 및 경찰 1인당 담당인구

연도	대만		조선			
	경찰인력	경찰 1인당 담당인구	경찰 인력	보통경찰업무 에 종사한 헌병	합계	경찰 1인당 담당인구
1905	4,817	648				
1906	4,976	634				
1907	5,693	560				
1908	5,735	560				
1909	5,674 ²¹⁾	573				
1910	6,616	499	5,694	2,019	7,713	2,010
1911	7,201	468	6,007	7,749	13,756	1,140
1912	6,922	496	5,397	7,769	13,166	1,206
1913	8,047	435	5,736	7,958	13,654	1,175
1914	7,671 ²²⁾	463	5,661	7,971	13,632	1,195
1915	7,142	500	5,572	7,929	13,501	1,222
1916	7,103	506	5,621	8,041	13,662	1,225
1917	7,535	484	5,435	8,132	13,567	1,248
1918	7,535 ²³⁾	487	5,402	7,978	13,380	1,281
1919	7,587	490	15,392		15,392	1,126
1920	7,412	507	18,376		18,376	954
1921	8,196	468	20,750		20,750	855
1922	7,712	496	20,771		20,771	867
1923	7,712	505	20,647		20,647	885
1924	7,371	537	18,458		18,458	1,004
1925	7,391	550	18,458		18,458	1,018
1926	7,403	561	18,462		18,462	1,034
1927	7,408	585	18,462		18,462	1,049
1928	7,582	585	18,670		18,670	1,052
1929	7,658	594	18,811		18,811	1,059
1930	7,763	603	18,811		18,811	1,075
1931	7,934	605	18,769		18,769	1,093
1932	7,958	619	19,328		19,328	1,079
1933	8,058	628	19,328		19,328	1,097
1934	8,035	647	19,326		19,326	1,115
1935	8,096	657	19,409		19,409	1,128
1936	8,122	671	19,724		19,724	1,129
1937	7,412	757	20,642		20,642	1,092
1938	7,726	744	21,782		21,782	1,047

※ 조선의 경찰인력은 경무총장 이하 경무부장·경무관·경시·경부·경부보·순사·순사보를 대상으로 한 것이고, 대만의 경찰인력 역시 경시 이하 경부·경부보·순사·순사보를 대상으로 한 것(경무총장·경무부장·경무관은 대만에는 없었음)이다. 조선·대만 공히 警手는 통계에서 제외했고, 대만의 경우 번인(원주민) 경비에 활용된 경찰 보조 인력인 隘勇도 제외하여 통계의 공평을 기하고자 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경찰 업무의 일부를 분담했고, 인원도 적은 경우 수 백 명에서 많은 경우 4,000명 이상에 달한 隘勇을 경찰인력에 포함시킬 경우 대만의 경찰인력은 대폭 증가하게 된다는 점은 지적해두어야겠다.

※※ 조선 부분의 통계는 松田利彦, 『日本の植民地支配と警察 - 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24-25쪽의 <表1: 保護國期および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警察官數の推移(1904-44年)>을 그대로 이용했고, 대만 부분의 통계는 경찰 인력은 『통계서』(各年版)의 <警察官署及警察官吏>, 인구 수치는 溝口敏行·梅村又次 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256쪽의 <第23表: 臺灣·朝鮮の人口>를 이용했다. 또한 경찰 인력의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예컨대 1914년)에는 臺灣總督府警務局 編, 吳密察 解題,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南天書局影印本, 1995의 제7장(警察關係定員逐年異動)을 이용했다. 경찰 1인당 담당인구는, 대만 총인구를 해당연도의 경찰인력 수로 나눈 결과이며, 소수점 이하는 사사오입에 따랐다.

<표 1>에 의해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은, 경찰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대만이 조선에 비해 훨씬 촘촘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1913년의 경우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대만은 435명인데 반해 조선은 1,175명으로 거의 1/3 수준이고, 그 격차가 줄어든 1930년대에도 대만 쪽이 여전히 약 1/2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찰력 배치에 있어서의 ‘밀도’의 차이는 공권력 집행능력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차이를 드러낼 개연성이 높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조선에 비해 치안질서가 훨씬 잘 유지된 것으로 평가되는 대만에서 오히려 범죄즉결처분 건수는 연도별로 적게는 3배, 많게는 10배 가까이 많다. 필자가 보기에 이는 대만 민중이 조선 민중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감시의 눈’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경찰에 의한 감시와 처벌이 대만에서 훨씬 더 일상적으로 진행되었고, 따라서 근대적 규율의 세례를 대만 민중이 훨씬 더 강하게, 더 지속적으로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
- 21) 明治42年, 즉 1909년부터 대만 경찰인원에 관한 통계는 ‘普通警察官吏’와 ‘蕃務警察官吏’로 분리되어 집계되고 있다. 예컨대 1909년의 경우 보통경찰관리가 4,309명, 번무경찰관리가 1,365명으로 되어 있고, 1910년에도 ‘경무소속’ 경찰관리가 4,416명, ‘번무소속’ 경찰관리가 2,200명으로 되어 있다. 역으로 1909년 이전의 통계는 경무와 번무를 구분하지 않고 합산한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서는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보통경찰관리와 번무경찰관리를 합산하고, 이를 대만 전체 인구로 나누어 경찰 1인당 담당인구를 산출했다.
- 22) 해당 연도의 『통계서』에 제시된 경찰인력은 5,608명이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 같다. 우선, 1909년부터 1914년 이전의 경찰인력 통계는 警務所屬과 蕃務所屬을 분리하고 있는 데 반해, 1914년부터는 번무소속 경찰인력을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1910년부터 1914년까지 실시한 <五年理蕃計劃>이 종료됨에 따라 理蕃費事業 역시 종료된 후 警務所屬과 蕃務所屬의 구별이 <訓令第139號>(1914년 8월)에 의해 폐지된 결과일 것이다(『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758쪽). 하지만 1914년 전후의 경찰인력이 7,000~8,0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생변 토벌에 뒤이은 후속사업은 여전히 대규모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5,608명이라는 수치는 불합리해 보인다. 때문에 필자는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759-760쪽에 제시된 1914년의 定員 6,807명과 定員外配置 864명을 합한 7,671명이 실제에 가깝다고 판단해 이 수치를 사용했다.
- 23) 1918년의 경찰인력 통계는 전년도의 통계수치와 한 항목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그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다.

<표 2> 대만·조선 犯罪即決處分 건수²⁴⁾

연도	대만		조선	
	범죄즉결 처분 ²⁵⁾ 건수	인구 1,000명당 처분 건수 ²⁶⁾	범죄즉결 처분 건수	인구 1,000명당 처분 건수
1904 ²⁷⁾	28,391	13.48	-	
1905	37,954	12.15	-	
1911 ²⁸⁾	40,171	12.17	12,099	0.78
1913	43,940	12.55	29,827	1.86
1915	40,146	11.25	41,236	2.50
1918	43,921 ²⁹⁾	11.97	71,279	4.16
1920	38,095	10.14	46,955	2.68
1923	46,419	11.67	64,628	3.54
1925	73,230	17.66	83,214	4.43
1928	104,912	23.64	83,596	4.26
1930	130,360	27.86	82,953	4.10
1933	163,399	32.29	89,529	4.22
1935	175,174	32.95	99,950	4.57
1938	104,912	18.26	101,677	4.46

※ 『통계서』의 경우, 범죄즉결에 해당하는 범주는 크게 ‘刑法’과 ‘行政諸規則 違反’ 및 ‘其他 拘留·料科’로 되어 있는데, 行政諸規則 위반 및 기타 구류·과료는 『통계연보』의 ‘刑法’ 및 ‘特別法犯’과 내용상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통계연보』의 경우에는 ‘特別法犯’을 구성하는 개별 항목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는 반면(예컨대 神社寺院規則, 醫生規則, 鹽類取締規則, 警察犯處罰規則, 代書業取締規則, 畜犬取締規則, 屠場規則, 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 등), 『통계서』의 행정제규칙 위반 및 기타 구류·과료에 대해서는 개별 항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표에 제시된 ‘건수’는, 대만·조선 공히 ‘受理’ 건수가 아닌 ‘處理’ 건수, 그 중에서도 ‘未濟’를 제외한 ‘既濟’ 사건의 수치를 정리한 것이다.

- 24) 경찰 권력의 식민지사회로의 간섭·침투의 정도를 아는 척도로서 범죄즉결을 선택한 이유는, 형사재판을 필요로 하는 重罪의 경우에는 전통사회에서도 처벌된 반면, 즉결처분에 해당하는 사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전통시대에는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가 식민지화된 이후 규제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경찰 권력에 의한 일상생활의 ‘규율’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이종민, 「1910년대 경성 주민들의 ‘죄’와 ‘벌’ - 경범죄 통계를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17호, 2000 참조). 또한 『통계서』와 『통계연보』 공히 <犯罪即決受理及處理件數>나 <犯罪即決處斷件數>의 항목으로 일관되게 통계를 잡고 있기 때문에 자료의 일관성과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도 즉결처분 항목을 분석사례로 삼게 되었다.
- 25) 『통계서』에는 ‘處理’, 『통계연보』에는 ‘處斷’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를 모두 ‘處分’으로 표기한다. 또한, 『통계서』와 『통계연보』에 刑法의 적용을 받는 즉결처분의 경우(구체적으로는 賭博과 傷害), 형법의 적용대상이긴 하지만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즉결처분 판결을 받고 있고, 또한 범죄의 성격상 ‘風俗教化’의 대상이기도 하므로 통계에 포함시켜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 26) 明治38~41(1905~1908)년분 『통계서』에는 ‘人口1萬人付犯罪者數’라는 통계가 제시되어 있어 흥미롭지만, 범죄자의 정의도 제시되어 있지 않고 4년 동안은 제외하고는 통계를 잡고 있지 않으며, 『통계연보』에 상응하는 통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참고로 연도별 수치를 보면, 明治38년은 34.51명, 39년 40.51명, 40년 51.96명, 41년 45.98명으로 되어 있다.
- 27) 『통계서』에서 범죄즉결건수를 통계로 잡기 시작한 것은 1904년부터이고, 『통계연보』의 경우는 1910년부터이다.
- 28) 다른 표에서는 1910년을 제시한 반면 본 표에서는 1911년을 제시한 것은, 1910년의 조선 쪽의 범죄즉결 처리 건수가 4,000여 건으로 대단히 적어 통계상의 공평성을 기하기 위해 1911년의

이러한 필자의 주장을 간접적으로나마 뒷받침해주는 자료가 대만 · 조선의 민족별 경찰 인력의 비율이다.

<표 3> 조선의 경찰인력 - 민족별 인원 및 비율

연도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		합계		조선인 경찰력의 비율(B/A+B)(%)
	日	鮮	日	鮮	日	鮮	日	鮮	日(A)	鮮(B)	
1921	40	14	369	140	718	268	11,028	8,160	12,155	8,582	41.38
1922	41	14	377	140	730	268	11,028	8,160	12,176	8,582	41.34
1923	40	14	369	105	718	200	11,028	8,160	12,155	8,479	41.09
1924	37	11	333	95	611	170	10,131	7,057	11,112	7,333	39.75
1925	37	11	333	95	611	170	10,131	7,057	11,112	7,333	39.75
1926	41	11	333	95	611	170	10,131	7,057	11,116	7,333	39.75
1927	41	11	333	95	611	170	10,131	7,057	11,116	7,333	39.75
1928	41	11	333	95	624	170	10,296	7,087	11,294	7,363	39.47
1929	49	11	340	95	650	170	10,346	7,137	11,385	7,413	39.44
1930	49	11	340	95	650	170	10,346	7,137	11,385	7,413	39.44
1931	49	11	332	88	603	156	9,604	7,913	10,588	8,168	43.64
1932	48	9	338	86	604	154	10,163	7,913	11,153	8,162	42.26
1933	48	9	338	86	604	154	10,163	7,913	11,153	8,162	42.26
1934	48	9	339	87	605	155	10,144	7,926	11,136	8,177	42.34
1935	48	9	339	87	605	155	10,227	7,926	11,219	8,177	42.16
1936	50	9	347	87	641	155	10,411	8,011	11,449	8,262	41.92
1937	60	8	370	89	688	157	11,030	8,227	12,148	8,481	41.11
1938	62	9	388	89	738	157	11,784	8,542	12,972	8,797	40.41
1939	65	9	412	86	791	136	12,980	8,572	14,248	8,803	38.19
1940	73	9	465	85	894	136	13,178	8,414	14,610	8,644	37.17

※ 본 표는 松田利彦, 『日本の植民地支配と警察 - 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24-25쪽의 <表1: 保護國期および植民地期朝鮮における警察官數の推移(1904~44年)>을 이용하되, 경무총장과 경무부장·경무관 항목(절대 다수가 일본인)은 생략했으며, 비교의 편의를 위해 보통경찰제도로 이행(됨과 동시에 대만에서 순사보가 폐지)된 후인 1921년부터 1940년까지의 통계만을 제시했다. 또한 본 표의 합계 및 조선인 경찰력의 비율은 필자 계산에 따른 것이다.

<표 3>과 <표 4>에 나타나듯이, 식민지 조선과 대만의 전체 경찰인력 중 조선인 경찰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에서 43% 사이인 반면,³⁰⁾ 대만인 경찰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30년대에도 대체로 14~15% 선에 머무르고 있다.³¹⁾ 물론 대만 측의 통계자료가

수치를 제시한 것이다.

29) 大正7(1918)년의 해당 통계는 大正6년의 통계로 대체되어 있는데, 그 원인은 불명.

30) 村上勝彦·富田晶紫·橋谷弘·並木眞人, 『植民地朝鮮社會經濟統計の研究』, 『東京經大學會誌』 136집, 1984, 68-75쪽도 1919년 이후 조선인 경찰의 비율이 대체로 40% 전후임을 밝히고 있다.

31) 李理, 전제서, 319쪽에는 순사에 한해 일본인과 대만인의 수치가 지역별로 세분화된 표가 제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전체 순사는 5,971명, 이 중 대만인 순사는 1,926명으로 대만인 순사가 대략 32.26%를 차지하고 있어 1930년대와의 수치와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경

완전치 못해 관련 자료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현재로서는 전면적인 비교가 불가능하지만,³²⁾ 대만의 경찰인력 구성에서 일본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으므로 <표 4>에 제시된 수치는 대체적인 경향을 반영한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³³⁾

<표 4> 대만의 경찰인력 - 민족별 인원 및 비율

연도	경시		경부		경부보		순사 ³⁴⁾		합계		대만인 경찰력의 비율(B/A+B)(%)
	日	臺	日	臺	日	臺	日	臺	日(A)	臺(B)	
1931	22	-	233	-	241	2	6,654	1,318	7,150	1,320	15.58
1934	24	-	247	-	248	2	5,922	1,279	7,306	1,281	14.92

※ 『통계서』에는 민족별 경찰인력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를 비롯한 다른 자료에도 민족별 경찰인력을 시계열적으로 제시한 통계수치는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때문에 본 표의 1931년도 분은 臺灣總督府 警務局, 『臺灣の警察』, 1932, 43-49쪽의 <警察職員出身地別人員>(昭和六年末)을 이용했고, 1934년도 분은 H生, 『臺灣への旅(二)』, 『自啓』 89호, 朝鮮警察協會京畿道支部, 1935.05.01., 31-32쪽에 제시된 수치에 의거했다.

이렇게 두 식민지에서의 민족별 구성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는 것에는 몇 가지 원인이 작용했다. 우선 상대적으로 훨씬 큰 인구나 규모를 보이는 조선의 경찰인력을 일본인만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고, 더욱 중요하게는 조선총독부가 운용할 수 있는 경찰비에 한계가 있어서 일본인 순사 채용에도 일정한 한계가 존재했다는 점이다. 예컨대 일본인 순사의 급여가 대체로 조선인 순사 2명의 급여에 해당했기 때문에³⁵⁾ 상대적으로 더 강한 재정압박에 시달린 조선총독부로서는 늘어나는 경찰력 증대의 압력과 제한된 재정 사이의 고민의 결과, 조선인 경찰인력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크다.³⁶⁾ 그렇다면 이러한 민족별 경찰인력 구성의 차이는 식민지사회의 일상생활 규제에

시·경부·경부보 인원이 1934년과 같고, 1934년과 마찬가지로 이들 직위를 일본인이 독점했다고 가정한다면, 일본인 경찰은 총 6,490명이 되고, 대만인 경찰 비율은 29.68%가 된다. 1940년대에 대만인 경찰인력의 비중이 어느 정도 늘어난 것만은 분명한 듯하다.

32) 『통계연보』가 경찰인력에 대해 통치초기부터 내지인과 조선인으로 구분하고 있는 데 반해, 『통계서』는 식민지시기 전 기간에 걸쳐 내지인과 대만인 구별을 행하지 않았다. 이 점은, 적어도 대만의 경찰인력을 내지인과 대만인으로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했음을 잘 말해주는 것 아닐까.

33) 李理, 320-321쪽 등.

34) 대만에서 巡査補는 1920년까지 존속하다가 해당 연도에 소멸되었다(李幸眞, 『日治初期臺灣警政의 創建與警察의 召訓, 1898-1906』, 國立臺灣大學 歷史學研究所 碩士學位論文, 2009, 55쪽).

35) 1940년 말 현재 일본인 순사는 최저 59원, 최고 121원 가량을 급여로 수령한 반면, 조선인 순사는 최저 37원, 최고 62원을 수령하고 있었다(이상의, 『일제하 조선경찰의 특징과 그 이미지』, 『역사교육』 115집, 2010, 173쪽).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이는 식민지조선에서 식민지화 이전에 존재했던 전통적 경찰상, 즉 ‘德治的 警察支配’를 온존시켰을 가능성을 상정하게 한다. 식민지화 이전에 경찰 또는 그와 유사한 존재가 거의 없었던 대만과 달리³⁷⁾ 18세기 이래 捕盜廳을 비롯해 나름의 독자적인 경찰기구 운영의 역사를 가진 조선에서는 경찰과 관련한 독자적인 정치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다. 즉 유교이념에 기초하여 풍속문란을 통제하는 지향을 가지면서도 실제로는 무력에 의한 통제를 가능한 피하고 文治的 教導를 축으로 한, 따라서 민중의 제반 생활습관에 대해 관용적이었던 ‘덕치적 경찰지배’의 정치문화는, 賄賂에 의한 단속효과 저하라는 측면도 가지고 있었지만 대체로 賭博·巫覡 등에 대해서 눈에 띄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묵인해왔다.³⁸⁾ 이러한 전통적 경찰문화는 식민지화되면서 점차 과잉한 무력탄압과 민중의 일상생활을 과도하게 통제·감시하려고 하는 ‘위로부터의’ 중앙집권적 日本型 치안체제로 변모하게 된다.³⁹⁾

하지만 조선사회가 식민지화되었다고 해서 전통적 경찰상이 일거에 퇴색하고 일본형 치안체제에 걸맞는 경찰상이 급속히 성립했다고 볼 수 있을까. 조선인 순사의 비율이 중요해지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선인 순사의 학업정도를 보면, 대체로 보통학교가 최종학력이거나 무학 및 전통적 교육시설에서 교육받은 이들이 대다수를 구성하고 있다.⁴⁰⁾ 이는 뒤집어 말하면 조선인 순사는 상대적으로 ‘덕치적 경찰지배’라는 傳統的 警察觀에 친연성을 가지는 존재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대민 접촉이 가장 광범하고 활발한 순사 계층의 경우 일본인 순사와 조선인 순사의 비율이 거의 1:1에 가까웠다는 사실은, 이들이 전통적 관습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했을 가능성도 그만큼 높았음을 말해주는 것 아닐까.

요컨대 극복해야 할 전통적 경찰지배의 경험 자체가 얇은 데다, 압도적 다수가 일본인 순사로 구성되어 있어 전통으로부터의 ‘결별’과 일본형 경찰체제의 식민지 기층사회로의 침투가 상대적으로 용이했던 대만의 사례와 달리, 식민지 조선에서는 일본형 치안체제를 민중의 일상생활의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체현할 터인 순사집단 내부의 ‘이질성’으로 인해 식민지 기층사회로의 침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36) 1910년대 본국 정부의 재정압박, 그리고 역시 본국정부의 재정난으로 인해 1924년부터 실시된 행·재정 정리 등 조선총독부는 지속적으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었다(장신, 전계논문, 561쪽).

37) 『臺灣總督府警察沿革誌』(一), 843-849쪽.

38) 愼蒼宇, 전계서, 328-334쪽.

39) 愼蒼宇, 전계서, 335-336쪽.

40) 장신, 전계논문, 572-574쪽.

4. 경찰보조기구와 지역사회

전술한 식민지 대만·조선의 경찰력의 ‘밀도’의 차이는 경찰보조기구의 운영 면에서도 관건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주지하듯이 식민지 대만에서는 청대 대만부터 존재하던 전통적인 ‘자치적’ 치안보조 조직인 保甲을 1900년대 초반부터 제도화하여 운영했고, 대체로 1910년 이전에 사실상 대만 전체 민중이 보갑으로 조직된 것으로 보인다.⁴¹⁾ 이들은 전술한 대만 경찰의 ‘조장행정’이 지역사회의 기층에까지 실질적으로 침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⁴²⁾

<표 5> 대만 경찰보조기구 및 인력의 편제

연도	保數	보갑 인원(A) ⁴³⁾	壯丁團數	壯丁(B)	A+B	편제율(% ⁴⁴⁾)
1910 ⁴⁵⁾	4,869	2,434,500	941	35,883	2,470,183	79.6
1915	4,944	2,472,000	977	37,712	2,509,712	75.3
1920	5,114	2,557,000	949	41,470	2,598,470	74.4
1925	5,161	2,580,500	941	42,346	2,622,846	70.0
1930	5,216	2,608,000	945	42,144	2,650,144	61.0
1935	5,472	2,736,000	981	39,768	2,775,768	56.1
1940	5,812	2,906,000	1,059	49,316	2,955,316	52.5
1942 ⁴⁶⁾	6,168	3,084,000	1,117	62,605	3,146,605	52.9

※ 保數와 壯丁團數 및 壯丁은 『통계서』(各年版)의 <警察官署及警察官吏/附保甲及壯丁團>에 의거했다.

- 41) 예컨대 중일전쟁 직전인 1936년 대만 전체 保數는 5,536개, 壯丁團數는 999개이며, 壯丁團에 편제된 壯丁은 39,957명이었다(『통계서』(昭和11年)). 1保는 대개 100戶로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해당연도 대만 인구는 5,451,863명, 945,115戶였으므로, 1호당 인구는 약 5.77명이 된다. 따라서 553,600호를 5.77로 곱하면 당시 보갑에 편제된 인원을 3,194,272명이 되고, 여기에 장정 39,957명을 더하면 3,234,229명이 된다. 이는 해당연도 대만 총인구 약 5,451,863명의 59.3%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원주민 인구 약 10만 명과 보갑 편제의 제외 대상인 내지인 282,000명을 제외하면 대만 한인의 60% 이상이 보갑에 편제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 42) 洪秋芬, 『臺灣保甲和‘生活改善’運動, 1937-1945』, 『思與言』 29권4기, 1991, 116쪽.
- 43) 보갑인원은, 1保=100戶, 1戶=5名으로 간주해 계산한 값이다. 따라서 보갑인원은 保數 × 500으로 계산하였다. 1904년 1월 民政長官 通知에 따르면, 5戶~15戶의 규모로 1甲을 구성하고, 1保는 5甲~10甲의 범위 내에서 조직하게 되어 있다(李理, 『日據臺灣時期警察制度研究』, 海峽學術出版社, 2007, 97쪽). 또한 식민지시대 대만의 戶別 인원을 보면, 대체로 1戶는 5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컨대 1923년의 경우 1호당 5.42명(총인구 = 3,976,098명, 총호수 = 733,597호)이고, 1936년의 경우 대만 인구는 5,451,863명, 호수는 945,115호였으므로, 1호당 인구는 약 5.77명이 된다(호수와 인구는 溝口敏行·梅村又次 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256쪽의 <第23表: 臺灣·朝鮮の人口>를 이용함). 따라서 1호를 5명으로 계산한 값은 다소 보수적인 수치이지만, 1보가 대체로 100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하면 양자의 증감 부분이 서로 상쇄될 것으로 판단된다.
- 44) 편제율은, 경찰보조인력(A+B)를 대만 총인구로 나눈 값의 백분율이다. 단 내지인과 원주민(高砂

이렇게 보갑제도가 철저하고도 효율적으로 운영된 배경으로서는 연좌법의 철저한 시행, (특히 황민화시기의) 감시의 ‘내면화’ 및 경찰과 보갑의 긴밀한 결합 등이 지적되지만,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것은 경찰에 의한 보갑의 감시가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인데,⁴⁷⁾ 이러한 경찰에 의한 보갑의 철저한 감시는 전술한 촘촘한 경찰력의 배치를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의 대만 식민통치를 총괄할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성공적인 경찰정치’이지만, 경찰정치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바로 보갑제도의 성공인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⁴⁸⁾ 대만총독부 관련자들이 경찰을 ‘보갑의 아버지’라고 부른 것은 그저 수사법만은 아니었던 것이다.⁴⁹⁾

식민지 조선에서도 1920년대 들어 일본 내지의 동향에 발맞추어 ‘민중의 경찰화’가 추진된 바 있다. 대체로 行政洞里를 기준으로 1戶에서 1명씩 차출해 조직한 보안조합·안전조합·자경단 등을 통칭하는 ‘경찰협력단체’의 조직이 시도되어, 1923년 8월까지 약 12,000조, 139만 여 명이 경찰협력단체로서 조직되었지만,⁵⁰⁾ 대개는 “지도가 곤란한 데다 自衛心이 결여되어 유명무실로 끝나는 결과”를 낳았다.⁵¹⁾ 달리 말하면 대만의 보갑제도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경찰과 민중의 ‘일체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역으로 경찰과 민중의 괴리를 부각시키는 결과가 된 셈이다.⁵²⁾

族)은 보갑 편제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이들은 제외했다. 이 때, 원주민은 대체로 89,000명에서 150,000 명 사이(溝口敏行·梅村又次 編, 『舊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207쪽)였으므로 편의상 10만 명으로 계산하고, 일본인 인구는 『통계서』에 제시된 연도별 일본인 인구를 적용했다.

45) 대만에서 보갑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대만 내 무장항일운동이 진압된 것으로 평가되는 1903년부터지만, 『통계서』가 보갑 및 장정단 통계를 잡기 시작한 것은 1910년부터이다.

46) 1942(昭和17)년도분이 마지막 『통계서』이다.

47) 王學新, 『日治時期臺灣保甲制度之研究』(總督府檔案專題研究一), 國史館臺灣文獻館, 2009, 51-60쪽.

48) “경찰은 保甲을 장악함으로써 경찰력이 행정의 기층까지 침투할 수 있었다. 요컨대 대만의 통치를 말할 때에는 경찰을 빼놓을 수 없고, 대만의 경찰을 말할 때에는 대만의 보갑을 빼놓을 수 없다.”(鹽見俊二, 『日據時代臺灣之警察與經濟』, 臺灣銀行 經濟研究室 編, 『臺灣經濟史初集』(臺灣研究叢刊第25種), 1954, 146-147쪽).

49) 王學新, 『日治時期臺灣保甲制度之研究』(總督府檔案專題研究一), 國史館臺灣文獻館, 2009, 66쪽.

50) 이는 1923년 조선 총인구 18,265,757명의 약 7.6%에 해당한다. 반면 같은 해 대만에서 보갑 조직은 保數 5,154개, 壯丁團 團數 961개로 기록되어 있다(『통계서』(大正12年), 218쪽). 대개 1保는 100戶로 구성되므로, 보갑조직에 편입된 호수는 515,400戶이고, 이를 1호당 5.42명(총인구 = 3,976,098명, 총호수 = 733,597호)으로 계산하면 대략 2,793,468명이 보갑조직에 편제된 셈이다. 여기에 장정단에 편제된 장정 43,879명을 더하면 경찰보조기구에 편제된 총 인원은 2,837,347명이다. 이는 1923년 대만 총인구 3,976,098명의 71.4%에 달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보갑 조직에서 제외되는 원주민 인구 약 10만 명과 내지인 인구 181,120명을 제외하면 거의 80%에 달하는 대만 한인이 보갑조직에 편제된 셈이다.

51) 松田利彦, 『日本の植民地支配と警察 - 1905~1945年』, 校倉書房, 2009, 480-485쪽.

52) 1915년부터 1921년까지 民政長官(1915년 중에 總務長官으로 명칭 변경)으로 근무한 下村宏은

5. 결론 - ‘식민지근대’의 격차와 그 함의

식민제국 일본의 대표적인 식민지 대만과 조선에서의 경찰력의 규모와 운영 실태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식민지에 있어서의 ‘식민지 근대’의 완성도에는 흡사할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함을 부분적이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 필자의 이제까지의 관찰은, 식민지 조선에서의 ‘식민지 근대’의 성립을 쉽게 논단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 아닐까. 이를 달리 표현하면 ‘근대의 지체’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터인데,⁵³⁾ 조선에서의 식민지 근대는 단순히 지체되었거나, 혹은 규율이 강제되었으나 내면화되지 못했거나의 문제⁵⁴⁾ 이전에, 근대적 가치가 내면화 또는 강제될 만한 ‘훈련의 장’ 자체가 결핍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요컨대 식민지근대화를 강조하건 식민지근대(성)를 강조하건, 아니면 식민지수탈을 강조하건, ‘식민지 근대’의 성립 여부를 판가름할 구조적 조건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

조선을 시찰한 후 조선의 제도 중 내무와 경찰이 순조롭게 협조하지 못한 주된 원인은 경찰과 보갑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鷲巢敦哉, 『臺灣警察四十年史話』, 中島利郎·吉原丈司 編, 『鷲巢敦哉著作集』(II), 綠蔭書房, 2000, 133쪽).

53) 장신, 전계논문, 583-584쪽.

54) 전우용, 「서평: 한국근대사 연구의 새로운 틀, 그 새로움의 한계」, 『역사비평』 43호, 416-420쪽.

1880년대 北洋水師와 朝淸關係

조 세 현(부경대)

目次

- I. 머리말
- II. 북양수사의 성립과 조선 문제의 개입
- III. 첫 번째 대외 군사행동: 임오군란
- IV. 북양수사와 조선해방
- V. 두 번째 대외 군사행동: 갑신정변
- VI. 북양함대의 발전과 조선을 둘러싼 해양 분쟁
- VII. 맺음말

I. 머리말

1880년대가 조청관계에서 획기적인 시대라는 사실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청조가 전통적 책봉조공관계에서 이탈해 조선정치에 적극적으로 간섭한 시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오군란이 발생했을 때 직접 군사적 개입을 한 사건은 명 청대의 조청관계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행동이었다. 그 후에도 이런 정책은 계속되어 혹자는 청의 조선정책이 전통방식에서 이탈해 유사 제국주의적 형태로 전환했다고 이해한다. 실제로 1880년대 초반부터 청일전쟁이 일어나기 전까지 조선에서의 청의 우위는 계속되었다. 한중관계사에서 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는 매우 풍부하다. 하지만 청의 조선에 대한 적극적인 간섭정책이 가능하게 만든 배경에 주목한 논문은 별로 없다. 이 글은 1880년대 북양수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조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에는 북양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한다. 여기서 북양해군이 아니라 북양수사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1888년 북양함대가 정식으로 근대해군이 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의미에서 전통적인 外海水師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이다.¹⁾ 발표문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열강과의

1) 海軍이라는 용어는 水師와 비슷한 말이어서 광둥수사나 북양해군은 실제로는 광둥함대나 북양함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엄격한 의미에서 해군은 수사와 달리 근대화가 어느 정도 완성된 부대를 가리킨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근대적 함대란 의미에서 해군은 단지 북양 한 곳에서만 사용된다. 1888년 이후 북양함대가 成軍을 이룬 후 공식문건에는 더 이상 北洋水師라고 부르지

통상조약체결, 임오군란,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 갑신정변, 거문도사건 등에 나타난 북양수사의 역할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II. 북양수사의 성립과 조선 문제의 개입

1. ‘超勇’과 ‘揚威’

1879년 이홍장은 영국에서 구입한 포선 6척을 모아 소규모 함대를 만들고 북양수사의 규모를 확대하였다. 하지만 바로 그 해 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유구를 병탄하자, 청조는 자신들의 현재 능력으로는 먼 바다를 건너 유구문제에 개입할 수 없음을 절감하였다. 이에 따라 원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대형함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이즈음 남양을 담당하던 심보정이 사망하자 해군건설의 대권이 북양의 이홍장에게 넘어갔다. 이홍장은 해방 전략에서 해상으로 나아가 적선과 직접 대응할 생각을 드러냈는데, 특히 일본과 해전에서의 승리를 염두에 두었다. 그 후 북양수사는 항구 방어용 포정 말고 먼 바다에서 작전을 펼 수 있는 순양함과 철갑선에 관심이 옮겨졌다.

해관총세무사 하트(R. Hart)는 청조에 영국 암스토롱 조선소에서 만든 순양함을 추천하면서 이 군함은 철갑선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배라고 선전하였다.²⁾ 이에 이홍장은 독일주재공사 李鳳苞에게 두 척의 순양함을 구매하도록 했으며, 얼마 후 영국 측과 순양함 구매를 정식계약하고 이름을 超勇과 揚威라고 명명하였다. 바로 이 두 척의 순양함이 1880년대 조선에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출현했던 대표적인 군함이었다. 기존의 포선이 대해작전을 펼 수 없었던 것에 비해 초용과 양위는 연해를 벗어날 수 있었다. 순양함 초용과 양위가 북양에 오자 곧이어 해상훈련을 실시했는데, 당시 가장 선진적인 군함이 근대 조청관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만하다.³⁾

초용과 양위와 더불어 조선에 자주 출동했던 또 다른 군함으로는 중국산 威遠과 鎮海 등이 있다. 청의 관리가 조선으로 건너가 열강과의 조약을 도울 때나, 임오군란 등 여러 사건들이 발발했을 때에도 위원호나 진해호의 모습을 만날 수 있다.

북양수사는 영국에서 구매한 초용 양위와 같은 순양함, 그 전에 구매한 6척의 항구방어용 포선, 그리고 북주선정국 등에서 만든 조강 미운 진해 위원 태안 등 5척을 합쳐 모두 13척의 함선으로 점차 체계적인 외해수사의 모습을 갖추어 나갔다. 1881년 12월 이홍

양고 北洋海軍이라고만 부른다(姜鳴, 『龍旗飄揚的艦隊-中國近代海軍興衰史』(三聯書店, 2002년), p.276).

2) 吳汝綸編, 『李文忠公(鴻章)全集』奏稿(卷35)(文海出版社, 1984년), p.29.

3) 陳悅, 『北洋海軍艦船志』(山東畫報出版社, 2009년), p.41.

장이 정여창에게 북양수사의 책임을 맡기면서 ‘北洋水師’라는 명칭이 정식으로 관방문서에서 나타나는데, 여기서 북양이란 직례 산둥 봉천의 3성을 포괄한다. 1880년대 청이 해군력을 강화하면서 대일본정책을 타협책에서 강경책으로 바꾸기 시작하였다.

2. 열강과의 통상조약 체결

1880년대 청은 조선을 보호하여 만주지역의 안전을 유지한다는 새로운 외교 전략과 변화하는 동북아 정세에 따라 조선과의 공문서 연락체계를 기존의 예부관할에서 이홍장 및 주일공사가 직접 조선 문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총리아문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이에 따라 이홍장은 조선 사무를 처리하는 실질적인 책임자가 되었다. 이홍장은 주일공사 何如璋과 상의하여 조선이 일본의 독점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계산아래 각국에게 조선 문호를 개방할 것을 결정하였다.⁴⁾ 이홍장의 지시에 따라 북양수사 제독 정여창이 인솔아래 병선에 北洋營務處 道員 馬建忠을 태워 조선에 가서 조미조약을 체결하는 것을 도와주도록 했다. 이에 1882년 5월 7일 정여창은 군함 초용 양위 진해 3척에 마건충을 싣고 연대를 떠나 조선으로 향하였다. 조미회담 과정 중 진해호가 보고서를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가 회담의 상황을 알렸다. 당시 조선과 청 사이에 아직까지 전신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소식이 오고갔다.⁵⁾ 하지만 바닷길로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조선과 청 사이를 오갈 수 있다는 사실은 과거 육로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은 것에 비하면 혁명적인 변화였다.

조선에 파견된 마건충은 조미통상조약의 교섭과정에 관여하고 조선 측 대표의 조약문 기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마건충이 입회한 가운데 1882년 5월 22일(고종 19년 4월 6일) 조선과 미국의 전권대표 슈펠트(R. W. Shufeldt)가 제물포에서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조인하였다. 『강화도조약』(1876년) 당시 이홍장이 우회적이고 제한적인 간섭정책으로 조선정부와 전통적 조공관계와 근대적 조약관계의 공존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면, 『조미조약』(1882년)은 그의 적극적인 주선아래 조공관계와 조약관계의 상호보완 및 공존을 추구한 것이다.⁶⁾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T. F. Wade)는 조미조약의 성립소식을 듣고 이홍장에게 이와 유사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북양대신의 도움을 받아 영국 동아시아함대 해군제독 윌리스(G. O. Willes)는 군함 2척을 이끌고 제물포로 가서 조선과 조약 문제를 논의하였다.⁷⁾ 조선에 대한 영국의 최대 관심은 러시아의 남하

4) 姜鳴, 앞의 책, p.112.

5) 姜鳴編著,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1860-1911)』(三聯書店, 1994년), 92쪽. 1882년 5월 31일에도 揚威호가 보고서를 가지고 연대로 돌아갔다가 6월 4일 다시 조선으로 돌아 왔다.

6) 권혁수,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백산자료원, 2000년), p.90.

7) 『高宗實錄』, 고종 19년 4월 11일(『한국해양사 자료집』(제4권-근현대편)(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정책이 장차 자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부였다. 6월 6일 조선과 영국은 『조영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⁸⁾ 조미·조영조약이 마무리되자 정여창과 마건충은 군함을 이끌고 중국으로 귀환하였다.⁹⁾

1882년 6월 중순 독일 특명전권대사 브란트(M. A. S. von Brandt)가 2척의 배를 이끌고 인천 월미도에 도착하여 조약을 맺고자 했다. 독일 역시 조미조약 체결소식을 듣고 북양대신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¹⁰⁾ 조선과 독일 간 통상을 담판하는데 조선국왕이 자문을 요청하자 정여창과 마건충은 다시 북양수사의 위원호를 이끌고 조선에 왔다. 곧이어 순양함 초용과 양위 2척도 인천에 도착하였다. 며칠간 논의 끝에 6월 30일 조선과 독일은 『조독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정여창 마건충은 다시 군함을 이끌고 중국으로 귀환하여 열강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마무리하였다.¹¹⁾

정리하자면, 순양함 초용과 양위는 근대 조청관계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군함이다. 이 군함들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에는 포함과 순양함의 기능을 겸비한 최신키 군함으로 연해를 벗어나 대해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882년 5월에서 6월 사이 정여창은 이홍장의 명을 받아 마건충과 함께 북양수사의 초용과 양위 등 군함을 인솔해 조선으로 가서 조선과 미국 영국 독일이 통상조약을 맺는데 ‘협조’하였다. 이런 조선 문제의 적극적 개입은 북양수사가 초용이나 양위와 같은 먼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신형군함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Ⅲ. 첫 번째 대외 군사행동: 임오군란

청조가 임오군란에 관한 보고를 처음 받은 것은 조선에 아직까지 청의 대표부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한 일주일 후인 8월 1일 및 2일자 주일공사 黎庶昌의 전보에 의해서였다.¹²⁾ 이 때 이홍장은 모친상으로 말미암아 고향인 합비에 머물고 있었으며, 직례총독 겸 북양대신은 張樹聲이 서리를 맡고 있었다. 임오군란은 장수성이 단숨에 두각을 나타내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8월 2일 장수성이 병선을 파견해 반란 책임

2004년), p.391).

8) 조영조약은 조미조약과 달리 영국에서 비준에 이르지 못하고 파기되었다. 영국은 얼마 후 조선에게 몇 가지 불리한 내용이 추가된 새로운 『조영수호통상조약』(1883년 11월 26일)을 체결하였다.

9)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1860-1911)』, p.93.

10) 『高宗實錄』, 고종 19년 5월 7일(『한국해양사 자료집』(4), p.392).

11)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1860-1911)』, p.93.

12) 『總署收署北洋大臣張樹聲函-附件 1, 2』(1882년 8월 2일, 光緒 8년 6월 19일)(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編, 『清季中日韓關係史料』(中央研究院近代史研究所, 1972년), p.734).

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총리아문에 보내자, 8월 6일 총리아문은 장수성에게 즉각 병선을 조선에 파견하도록 했다.¹³⁾ 다음 날 그는 수륙 양군을 조선에 보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남양대신과 상의하도록 하고, 초상국의 운선으로 육군을 실어 신속하게 이동하도록 했다. 또한 정여창과 마건충이 수시로 상의하여 일을 재빨리 처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天津海關道 周馥에게 명하여 중국에 파견 온 조선관원 金允植 魚允中을 불러 조선정세를 이해하도록 했다.

정여창은 등주에 도착해서 산둥군무를 주지하던 廣東水師提督 吳長慶과 조선 문제를 협의하였다. 오경장은 최측근 막료인 張鷟과 함께 천진에 가서 장수성과 조선출동계획을 세웠는데, 이들 대책의 핵심은 신속하게 군란을 진압하는 것이었다. 오경장 부대는 연대 부근에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군사출동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었다.¹⁴⁾ 한편 8월 9일 마건충은 정여창이 인솔하는 군함 위원 초용 양위 3척에 동승해 연대에서 조선으로 향해 다음 날 인천에 도착하였다. 마건충은 정여창에게 일본 측의 정보와 어윤중의 정보에 기초해 단시간 내에 반란의 우두머리인 대원군을 체포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정여창은 주변 상황을 고찰한 후 위원호 편으로 천진으로 돌아와 장수성에게 대책을 보고하였다.

1882년 8월 15일 정여창이 장수성의 명을 받아 위원호를 타고 천진에서 등주로 가서 오장경부대와 동행하였다. 초용과 양위는 인천에서 일본군과의 충돌을 피해 남양부 마산포(인천에서 27킬로 남쪽에 위치한 남양만의 포구)로 이동하여 정박하였다. 마산포는 청수사가 인천과 더불어 자주 이용한 항구로, 특별히 이곳은 청군만이 주로 사용한 전략적 요충지였다. 8월 20일 오경장과 정여창이 인솔하는 경군 6영 3,000명이 위원과 초상국 소속 日新 鎮東 拱北 泰安 등 5척의 배에 나누어 타고 마산포로 와서 초용 양위와 합류하였다. 이 가운데 초상국의 진동호와 일신호 등은 병사를 실었고, 태안호에는 식량과 무기를 실었다. 이 무렵 이홍장은 고향에서 천진으로 돌아와 수륙 각 군의 상황을 점검하였다. 8월 26일 오경장 정여창 마건충 원세개 등은 한성에 진입하여 군란의 이유를 물어 대원군을 전격 체포하고 정여창의 호송아래 비 오는 밤 120 리를 행군해 다음 날 새벽 마산포에 도착하였다. 정여창은 곧바로 등영주호에 대원군을 태워 천진으로 압송하였다.¹⁵⁾ 청은 조선 측에 북양수사를 통솔하는 정제독이 잠시 대원군과 함께 바다를 건널 것이라고 알렸다. 그 후 황제의 명령으로 대원군을 직례 보정부에 안치하고 귀국을 허락하지 않았다.

13) 「總署發署北洋大臣張樹聲函」(1882년 8월 6일, 光緒 8년 6월 23일)(『淸季中日韓關係史料』, p.753).

14) 姜鳴, 앞의 책, p.114.

15) 馬建忠, 『東行三錄』, 68쪽.

당시 초용과 양위 두 척의 순양함은 조선연해를 순항하며 일본해군을 견제하였다. 이 두 척 군함의 주포는 일본해군의 주력인 이등 철갑함 扶桑의 장갑을 뚫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청조는 임오군란을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 신식군함의 가치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¹⁶⁾ 군란을 평정한 후 9월 4일 정여창은 각 함선을 이끌고 귀국길에 올라 연대를 거쳐 천진에 도착하였다. 하지만 오경장 부대는 잠시 조선에 남아 사태가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청조는 군란을 진압하는데 북양수사가 신속하게 행동한 것에 대해 크게 만족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홍장과 장수성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노고를 치하했다. 특히 정여창을 直隸天津鎮總兵으로 임명해 사실상 북양수사의 책임자가 되었다.¹⁷⁾

정리하자면, 열강과의 통상조약 체결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조선에서 임오군란(1882년 7월 23일)이 발발하자 청은 즉각 정여창 마건충의 인솔아래 위원 초용 양위 등 3척을 천진에서 인천으로 파견해 일본군함을 견제하였다. 곧이어 북양수사는 오경장제독이 인솔하는 선박에 태워 육군을 조선에 보내 한성으로 진입하였다. 정여창과 오장경은 군란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체포해 신속하게 천진으로 압송하였다. 북양함대가 추진한 이번 군사작전은 신식군함을 중심으로 편제가 바뀐 후 처음 실행한 대외군사행동으로 증기선의 신속한 기동력을 충분히 보여주었다. 이 사건은 한중관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전통적 책봉조공체제를 포기하고 직접적인 군사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IV. 북양수사와 조선해방

1.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의 제7관

임오군란 이후 조선에 군대를 주둔시킨 청은 정치적 군사적 압력을 가하면서 합법적으로 종속관계를 공고히 하고자 조선과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년 10월 4일(광서 8년/고종 19년 8월 23일), 이하 「무역장정」으로 약칭)을 체결하였다. 「무역장정」에 포함된 규정은 상대국 개항장에 각기 상무관을 주둔시킨다는 것과 중국이 조선에서 치외법권을 갖는다는 것, 청 상인이 한성에 거주하면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 청 상선의 조선 개항장 출입이나 호혜적인 근해어업을 허용한다는 것, 식량 및 용수 공급을 위한 어선의 해안정박을 허용한다는 것 등 종속국에게 시혜를 베푼다면 한편으로 청의 특권을 명문화한 것이다. 그런데 이 장정의 제7관 중에 해군수사와 관련한 내용도 담고 있어

16) 陳悅, 『北洋海軍艦船志』, 앞의 책, pp.48-49.

17) 姜鳴, 앞의 책, p.115.

주목할 만하다. 제7관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7관

두 나라의 역참 도로는 이전부터 책문을 경과했으므로 이 육로로 오가는 데 매우 부담스러웠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지금 바다에 관한 금령이 해제되었으니 자체의 편의에 따라 뱃길로 왕래하는 것을 승인한다. 오늘 조선에서는 군사용 운선이나 상업용 운선이 없으므로 조선 국왕은 북양대신에게 제기해 잠정적으로 초상국의 운선을 달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내왕하도록 하며, 조선 정부에서는 배의 마모금으로 약간의 금액을 덧붙이도록 한다.

이 밖에 중국의 군함이 조선의 바다 기슭에 와서 순행하는 동시에 각 지방의 항구에 정박해 방어를 도울 때 지방 관청에서 공급하던 것을 일체 취소한다. 식량을 사는 것과 운행비용은 모두 군함이 자체로 마련하며, 해당 군함의 병선관리관(管駕官) 이하 사람들은 조선 지방관과 평등한 예의로 상대하며, 함장은 성원들이 해안으로 올라가는 것을 엄격히 단속해 조금이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사건을 일으키는 일이 없도록 한다.¹⁸⁾

『무역장정』 제7관은 먼저 청과 조선 간에 오랜 시간 지속되었던 해금정책의 폐기를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초상국 운선의 정기항로 개설을 통해 양국 간 왕래를 언급하고 있다. 다음 단락에서는 청 군함 파견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청이 부담하며 수병이 조선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것을 금지하는 등 우호적으로 기술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청 병선의 조선연해 및 항구 자유왕래권, 청의 조선해방 담당, 청 병선관리관의 인천파견 등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¹⁹⁾ 첫째, 청 병선의 조선연해 및 항구 자유왕래권과 관련해, 청은 자국의 군함을 조선의 연해와 어떤 항구에서나 항해 정박할 수 있는 병선조항을 조선에 요구하였다. 당시 구미열강이 약소국에 대해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침략적 성격의 이런 병선조항을 청도 열강이나 일본보다 앞서 조선에 적용하였다. 이런 군함의 자유왕래권은 오래지 않아 열강들에 의해 균점되었다. 둘째, 청의 조선해방 담당과 관련해, 운선 한 척조차 없던 조선은 북양수사의 군사적 보호 아래서 점진적 근대화를 시도하였다. 결과적으로 자국의 해방을 방기하면서 조선은 북양수사의 최전선이 되었다. 셋째, 청 병선관리관의 인천파견과 관련해, 인천에 대한 청의 지속적인 관심은 그곳이 전략적인 요충지이기 때문이었다. 해군장교의 인천주둔은 곧 인천에서 청 군함의 장기간 체류를 인정하는 병선의 정박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1885년 8월 인천에 북양수사의 병선과 병선관리관이 파견되었는데, 관리관의 임무는 주로 물품 구입과 병사들의 소요 방지에 있었으

18) 『朝淸商民水陸貿易章程』(최덕수 외 지음,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열린책들, 2010년), p.116).

19) 김정기, 『兵船章程의 強行(1882.2)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24호, 1979년, pp.63-65.

며 지방관과 동등한 지위를 갖는 특권은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인천에 주재한 청군의 규모는 분명하지 않으나 적어도 1894년까지 유지된 듯싶다. 이처럼 『무역장정』 제7권의 군사조항은 청일양국 군대의 공동철수 후 한반도에서 중국의 힘의 공백을 메워주는 핵심이 되었다.

1880년대 조선은 증기기관과 신식무기로 무장한 한 척의 군함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군력이 너무나 미약하였다. 그래서 정부 일각에서는 조선의 해양방위를 아예 청에 위탁하고, 청이 조선해방을 대신하는 기간을 활용해서 국가경제를 부흥시킨 후 서양과 같은 신식함대를 편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최소의 비용으로 해방체제를 구축하는 이른바 북양수사의 우산 속으로 들어가는 정책을 취한 것이다.²⁰⁾

청 역시 조선해방을 담당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조선의 해방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 실제로 1880년대 인천과 마산포에 출입한 군함수는 청이 일본을 대략 4, 5배 수준으로 압도하였다. 상선이 경우 일본이 청을 압도한 것과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마산포는 앞서 언급했듯이 청 군함만이 정박하는 미개항항구로 인천 못지않게 조선 진출의 거점이었다. 청은 태안 진해 조강 등을 인천과 마산포에 정기적으로 파견한 듯하다. 이 군함들은 모두 북양함대 소속으로 100마력 내외의 운송선이나 포선이었다. 그 외에 다양한 북양수사 병선들이 수시로 조선의 바다를 순행했는데, 남양수사의 배도 드물게나마 나타난다.²¹⁾

2. 『朝鮮善後事宜』(6조)

임오군란 시기 翰林院 侍讀 張佩綸이 東征策을 상주한 적이 있었다. 당시 동정책은 이 기회에 군대를 파견하여 임오군란을 진압한 다음 일본에도 원정군을 보내어 유구를 다시 빼앗고 일본을 응징하자는 내용이었다.²²⁾ 이것은 조선을 암묵적으로 중국의 속방으로 만들자는 것이었다. 장파륜의 동정책에 대해 이홍장은 해군이 아직 준비되지 않아 바다건너 원정하는 것은 좋은 계책이 아니라고 평가한 바 있었다.

장파륜은 1882년 10월 29일에 다시 『朝鮮善後事宜』를 썼는데, 理商政, 預兵權, 救倭約, 購師船, 防奉天, 爭永興 등 6개 항목이었다.²³⁾ 이에 대해 이홍장은 11월 15일에 올린 상주문을 통하여 장파륜이 제기한 『조선선후사의』(6조)를 하나하나 논평하였다. 그 논의의 폭과 깊이로 보아 임오군란 이후 조선 문제 및 조청관계에 대한 이홍장의 기본인식과 정

20) 장학근, 『구한말 해안방위책』, 『사학지』 19호, 1985년, p.105.

21) 김정기, 앞의 논문, p.80.

22) 『總署收上諭』(1882년 9월 28일, 光緒 8년 8월 17일)(『清季中日韓關係史料』, p.565).

23) 『157. 右庶子張佩綸奏星象主兵請修德講武摺』(1882년 10월 29일, 光緒 8년 9월 18일), 『清光緒朝中日交涉史料』(권4)(臺北, 文海出版社, 1963년), pp.28-29.

책방향을 잘 보여준다.²⁴⁾ 장패륜의 주장과 이홍장의 견해를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理商政: 장패륜은 청에서 고위관리를 조선통상대신으로 파견하여 조선의 외교와 통상관계를 총괄하면서 주둔군에 대한 군량 공급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과거에 이미 주일공사 하여장이 총리아문에 글을 올려 조선에 주찰판사대신을 파견해 내치와 외교를 주지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었다면서, 이번 장패륜의 주장처럼 조선으로 직접 통상대신을 파견하는 것은 조청 양국 간의 전통적 책봉조공관계 및 서양 각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조청 양국의 전통적인 관계의 기본 틀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둘째, 預兵權: 장패륜은 일본이 교관이나 무기를 통해 조선 국방에 관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양총을 대신 구매해 조선의 병권을 장악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중국이 군사교관을 파견하고 대신 무기를 구매해주는 것은 이미 조선 측의 요청에 따라 진행 중인 일이라고 했다. 오경장 군대를 통해 군사훈련은 물론 대포 소총 탄약 등을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救倭(日)約: 장패륜은 『제물포조약』에서 약속한 일본에 대한 배상금 50만원에 대해 청에서 임오군란의 배상금을 빌려주어 조선의 재정곤란을 방지할 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공사관의 호위 병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이미 조선에 초상국을 통해 차관 50만량을 제공하여 재정난을 해소하도록 지원했고, 200명 남짓한 서울주둔 일본군 병력은 위협적이지 않으며, 다음 해 봄 오장경의 경군을 철수할 때에도 일부 부대는 잔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의 3개 항목에서 이홍장은 조선의 내정외교문제를 청조가 지나치게 관여할 경우 전통적 책봉조공관계와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에게도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넷째, 購師船: 장패륜은 조선에 대한 군사전략을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을 폈다. 그는 여기서 “육군이 왕도(王都)를 수호함은 해군이 해구(海口)를 보호함만 같지 못합니다.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신속하게 거액을 모아 쾌선(순양함) 2-3척을 건조하고, 북양에서 장령을 먼저 파견하며, 중국 해안의 장정을 초모하여 병사로 삼고 인천에 주둔시키면 적들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²⁵⁾라고 하였다. 비용이 들더라도 신식군함 2-3척을 구입하여 북양에 파견하여 인천항에 상주시키고 수사 일부를 주둔시켜 조선과의 연락을 도모하자는 것은 기존의 군사전략에서 크게 나아간 것이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비록 경비문제가 있지만 군함을 영국이나 독일에서 구입하거나 국내에서 만들어 장차 북양수사가 조선의 해안까지 수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무렵 이홍장은 유럽에서 철갑선의 주둔

²⁴⁾ 권혁수,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 pp.111-112; 구선희, 『韓國近代 對淸政策史 研究』, (해안, 1999년), pp.78-83. 참고.

²⁵⁾ 『朝鮮善后事宜』 제4조(購師船).

제조를 추진하고 있었다.

다섯째, 防奉天: 장패륜은 봉천일대는 청조의 발상지로 방위를 강화해야 하는데, 조선은 날이 갈수록 사건이 많아질 것을 보았다. 따라서 성경장군 휘하 주방팔기의 병력을 회군에 귀속시켜 통합지휘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기존의 지휘체계를 조정하자는 요구는 현실적 문제를 고려해 반대하였다. 『조선선후사의』(6조) 가운데 특히 제5조 ‘방봉천’ 항목은 이홍장의 조선정책의 핵심을 담고 있는 대목이 나타난 주목할 만하다.

“(이홍장이 말하길) 당(唐)부터 명(明)까지 조선에 일이 있으면 항상 요심(遼沈)에서 병력을 보낸 것은 바다로부터 건너가는 병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오늘날 동서양의 운선이 발전하여 하루에 천리를 갑니다. 조선의 형세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어서 수사가 더욱 적당합니다. 운선은 연대(煙臺)에서 조선의 한강 입구까지 하루 밤이면 도달할 수 있고, 천진 대고(大沽)에서도 사흘이 걸리지 않습니다. 만약 요심에서 육로로 조선 왕성까지 가려면 반드시 20여일이 소요되어 종종 일에 늦습니다. 조선을 방어하려면 반드시 병선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변통입니다.”(제5조 防奉天)²⁶⁾

위와 같이 이홍장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조선의 지리적 여건상 청의 육군보다는 해군실력을 강화하는 것이 조선을 방어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장패륜의 북양육군에 의한 한성지배보다는 북양수사에 의한 인천지배가 유리하다는 앞의 제안에 대해 이홍장도 조선을 보호하기 위해선 반드시 수사가 필요한 것은 시대의 흐름 라면서 그의 주장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이 사실은 해군의 해제와 동시에 조청관계의 기본적인 군사전략의 중요한 변화를 보여준다. 장차 조선이 군제를 정비하여 스스로를 돌보고, 북양수사가 철갑선과 순양함을 구매해 배치한다면 조선 주변 바다의 안전은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爭永興: 장패륜은 조선은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탐을 내는데, 특히 조선 북부의 영흥만은 블라디보스토크와 달리 추운 겨울에도 바다가 얼지 않는 전략상 요지라고 하였다. 따라서 그는 러시아의 남침방지를 위해 영흥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러시아인들이 부동항을 탐내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국제정세를 보면 러시아가 영흥만을 무력 점령할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왜냐하면 영흥 주변의 원산항은 이미 통상항구로 여러 나라가 무역을 하므로 러시아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미 甯大激이 국경지역에서 병력으로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다고 했다.²⁷⁾

26) 『朝鮮善后事宜』 제5조(防奉天).

27) 『議復張佩綸條陳六事折』(1882년 11월 15일, 光緒 8년 10월 5일), 『奏稿』(권45)(『李鴻章全集』(時代文藝出版社, 1998년), pp.1755-1760).

이홍장은 청의 기존 군사력으로는 일본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장담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비록 청의 외해수사 규모가 일본과 수적으로 비슷한지 몰라도 군함의 성능이나 수병의 훈련정도에서 떨어진다고 보았다. 그는 조선을 넘어 동아시아에서 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선 북양수사의 근대해군으로의 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이런 내용들은 당시 이홍장의 북양수사를 중심으로 새로운 조청관계를 만들겠다는 정책구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정리하자면, 조청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하던 청은 본토방어를 위해 조선의 해방권을 장악해야한다는 조선연해 방위론을 내세웠다. 해군과 관련한 청의 입장은 『무역장정』의 제7판과 장패륜이 건의한 『조선선후사의』(6조)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무역장정』에서 청이 획득한 해군관련 조항은 조선연해의 해방을 담당하는 권한과 인천에서 해군병선을 관리하는 권한이었다. 청의 병선이 조선연해를 경비하다가 필요시 조선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대외적으로 열강의 도발을 막고 대내적으로는 해적의 준동을 억제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당시 장패륜은 『조선선후사의』(6조)를 통해 조선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는 육군에서 해군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군함 2-3척을 새로 만들어 인천에 파견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이홍장은 장패륜의 건의에 동조하며 산둥과 인천을 눈과 코의 관계로 비유하면서 인천을 북양수사의 전진기지로 파악하고 군사적으로 장악하려 했다. 그는 장차 북양수사의 군함으로 조선을 방어하는 새로운 조청관계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V. 두 번째 대외 군사행동: 갑신정변

1884년 6월 會辦大臣 오대징은 이홍장과 함께 여순 연대 위해위 등 북양함대의 주요 해군기지 및 부대를 시찰하면서 프랑스 해군의 공격가능성에 대비하였다. 청프 간에 전운이 감돌자 이홍장은 북양에서는 초용과 양위 두 척만을 징발할 수 있다면서 나머지 함선은 소형이고 부실해서 적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초용과 양위는 남양수사의 5척의 함선과 상해에 머물며 대만으로 출동을 준비하였다. 이즈음 12월 4일 한성에서 갑신정변이 발생하였다. 갑신정변이 발생해 급진개화파인 金玉均 등이 우정국 개국 경축행사 때 閔泳翊 등을 살해하고 왕궁을 점령했으며, 다음 날 새로운 내각을 만들었다. 하지만 우의정 沈舜澤이 청군통령 오조유에게 도움을 청하자, 청군은 원세개의 통솔아래 왕궁에 진입해 일본군을 축출하였다.

그런데 이홍장과 총리아문은 사건발발 5일이 지난 12월 9일에야 갑신정변의 소식을 보고받았다. 이에 이홍장은 총리아문에 보낸 두 통의 전보에서 정변으로 인한 조선사태가 청불전쟁보다 더 심각하므로 조속히 군함을 출동시켜 일본의 침략음모를 저지하는 한

편 고위관원을 파견하여 직접 조사 처리하자고 건의했다.²⁸⁾ 다음 날 태안호가 조선에서 돌아와 청일 간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고 소식을 전했다. 이에 이홍장은 대만을 원조하기 위해 보낸 7척의 배를 돌려 정변을 진압하도록 요청하였다. 당장에 모두 움직일 수 없으므로 우선 북양소속 초용과 양위 2척을 돌아오도록 하고, 정여창이 군함을 인솔해 조선으로 가도록 명하여 오조유와 함께 적을 상대하도록 했다.

1884년 12월 20일 밤 정여창의 인솔아래 초용 양위 위원 3척의 배에 방정상이 인솔한 경군 1개 영이 여순에서 조선으로 출발해 22일 마산포에 도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이 도착했을 때 정변은 이미 평정되어 있었다. 정여창은 40여명의 병력을 인솔하고 한성으로 출발해 오조유 원세개 등에게 이홍장의 지시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는 조선국왕과 각국 공사들을 만난 후 한성을 떠나 군함으로 돌아왔다. 당시 갑신정변과 청불전쟁은 서로 맞물려 전개되고 있었다. 1885년 2월 이홍장이 총리아문을 통해 오대징에게 전보를 보내 프랑스 군함이 북양을 범할 수 있으니 초용 양위 위원 등으로 바다를 순시하고 여순으로 돌아와 방어하도록 했다. 이에 초용호가 여순으로 돌아오고 곧이어 鎮邊호도 돌아왔다. 그리고 오대징이 康濟호를 타고, 병사들은 利運호와 普濟호를 타고 중국으로 귀국하였다.

1885년 7월 이홍장은 총리아문과 상의해 조선에서 청군과 일본군이 철군한 후, 정여창이 2척의 군함을 인천에 파견해 달마다 교체하며 바다를 순항하며 적선의 동정을 살피겠다고 하였다. 실제로 이홍장은 청군철수 직후 인천항에 북양함대의 군함 3척을 순환배치함으로써 사실상 인천을 북양수사의 전진기지로 만들었고, 또한 조선의 해방권과 제해권을 장악하였다.²⁹⁾ 그리고 청군병력을 압록강 부근의 조청 국경지역에 집중 배치시킨 것도 청군철수에 따른 군사적 공백현상을 메우기 위한 전략적 조치였다.³⁰⁾ 이홍장은 육군을 철수시키더라도 군함을 교대로 인천에 정박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전략을 썼다. 이처럼 갑신정변 후 청은 조선에 대한 기본전략을 북양육군에서 북양수사로 바뀐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이 육군 중심에서 해군 중심으로 전략을 수정한 까닭은 한반도 내 청일 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봉천의 육군이 육로로 한성에 이르는 시간은 20여일이 소요되는데 비해, 산해관의 해군이 황해를 건너 인천까지 이르는 시간은 겨우 12-13시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었다.³¹⁾ 청이 황해의 통제권을 장악하자 상대적으로 일본의 영향력은 감소하였다.

정리하자면, 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할 무렵 일본은 그 기회를 틈타 조선의 급진개화파를 지원해 갑신정변(1884년 12월 4일)을 일으켰다. 청은 정여창으로 하여금 북양수사의

28) 권혁수, 『근대 한중관계사의 재조명』(혜안, 2007년), p.265.

29) 권혁수,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 p.246.

30) 위의 책, pp.140-141.

31) 장학근, 앞의 논문, p.103.

초용 양위 등을 끌고 인천에 가서 조선주둔군을 응원해 주었다. 비록 이번에는 직접적인 군사개입은 없었지만 조선에서 일본의 군사행동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즈음 조선에 대한 기본 전략은 이미 북양육군에서 북양수사로 바뀌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북양해군이 급성장하면서 바다에서 일본세력을 몰아냈으며, 청은 조선의 여러 항구, 인천 원산 부산 영흥만 등을 순항하며 서서히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해 나갔다.

VI. 북양함대의 발전과 조선을 둘러싼 해양 분쟁

1. 거문도사건

청프전쟁에서 청의 패배와 갑신정변에서 일본의 태도를 보고 민비집단을 청일 양국을 불신하게 되었고, 점차 러시아에 접근하는 정책을 폈다. 주한 러시아공사 베베르(K. I. Waeber)는 능란한 외교 수완으로 청의 지나친 간섭에 염증을 느끼고 있던 조선정부에 접근하여, 친러 세력을 심는 데 성공하였다. 1885년 초 뮐렌도르프(P. G. Möllendorff)는 조선정부에 러시아와 조약을 맺을 것을 건의하면서, 러시아에서 군관을 데리고 와서 군대를 훈련시키고 대신에 러시아에게 원산만의 사용권을 제공하자고 했다. 러시아가 부동항을 얻을 경우 러시아 해군이 대대적으로 남하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대응해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해 1885년 4월 15일 군함 6척과 상선 2척으로 거문도를 점령하였다.³²⁾

1885년 5월 초 이홍장은 조선국왕에게 절대로 가볍게 영국의 거문도 점령을 허락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편지를 썼다. 정여창은 초용 양위를 인솔해 조선에 도착해 이홍장의 편지를 고종에게 제출하였다.³³⁾ 편지에서는 영국은 러시아 군함 블라디보스토크를 경계할 해상 교두보를 확보하여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러시아와의 분쟁사태를 우회적으로 돌파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과정에서 거문도를 점령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건은 조선보다도 러시아와 일본 및 청을 더욱 자극하였다. 특히 러시아는 영국이 즉각 철수하지 않으면 조선의 영흥만이나 다른 섬을 점령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고, 일본과 청 역시 영국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였다. 오히려 조선정부는 영국해군이 거문도에 정착해 항구를 만드는 상황을 모르고 있다가 이홍장의 경고문을 보고서야 알게 되었다.

이홍장은 정여창에게 군함 초용과 양위를 이끌고 거문도를 관찰하도록 했는데, 이 때 조선 측에서는 참관 嚴世永과 독일인 뮐렌도르프를 태워 함께 갔다. 그들은 6척의 영국

32) 姜鳴, 앞의 책, p.204.

33) 『籌議巨磨島』(1885년 5월 6일, 광서11년(고종 22년) 3월 21일), 『譯署函稿』(권17)(『李鴻章全集』, pp.4779-4780).

군함과 2척의 상선을 발견했고, 섬 위에 휘날리는 영국국기를 보았다. 거문도에 있던 영국함장 맥클리어(J. P. Maclear)은 뮐렌도르프가 영국군함이 거문도에 국기를 세운 일 등을 비판하자, 이번 행동은 러시아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나가사키에 있는 영국 원동함대 사령관과 직접 교섭할 것을 제안하였다. 정여창의 군함은 나가사키로 건너가서 원동함대 사령관 도우웰(S. W. Dowell)을 만나 거문도의 불법점거를 거듭 따지고 점거한 일에 대한 해답을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었다.³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고 철수하지 않자 이홍장은 이 사건이 러시아와 일본을 자극할 것을 우려하였다. 실제로 1886년 초 러시아가 군함을 조선의 바다에 파견해 시위했고, 일본도 자주 군함을 조선의 각 항구로 보내었다. 특히 러시아는 청조로부터 광대한 토지를 획득한 후 만주에서 세력범위를 넓히고 조선으로 진출을 기도하면서 청에 실제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 주중 러시아공사는 총리아문에 자국이 영흥만을 점령하는 것으로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보상으로 삼겠다고 위협하였다. 영국이 예고도 없이 거문도를 점령한 이른바 거문도사건은 무려 22개월간이나 계속 되었다. 청으로부터 러시아가 조선영토를 점령하지 않겠다는 보장을 받은 후, 1887년 2월 27일 영국해군은 거문도를 떠났다.

2. 러시아의 남하

1885년 6월 청프전쟁이 끝나자 청조는 전쟁 중 이미 완성되었으나 중국에 오지 못한 철갑선 정원과 진원 및 순양함 제원을 독일로부터 뒤늦게 인수하였다. 이 세 척의 신형 군함이 천진 대고에 오면서 북양수사의 군사력을 크게 향상되었으며, 당시 청 일본 영국 러시아 등이 조선을 둘러싸고 전개된 국제분쟁 중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였다. 거문도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러시아 태평양함대는 군항 블라디보스토크를 기점으로 꾸준히 남하하려고 시도했으며, 특히 조선의 영흥만을 탐내었다. 청일양국의 간섭에 불만을 품은 조선의 일부 대신들은 1886년 7월 비밀리에 러시아정부에 접촉하여 그들의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를 알아낸 원세개가 이홍장에게 전보를 쳐서 조선의 일부 관리가 러시아와 연합해 영국에 대항하려 한다고 보고했다.³⁵⁾

마침 러시아 선박이 영흥만에 나타났다는 소식을 접한 청조는 정여창의 북양함대를 부산 원산 영흥만 일대에 출동시켜 러시아를 견제하며 조선에 압력을 넣기로 하였다. 그 해 8월초 정여창은 북양의 새로운 주력군함인 정원 진원 제원과 기존 군함인 위원 초용 양위 등 6척을 총출동시켜 부산을 거쳐 원산으로 향하였다. 정원과 진원은 북양수사를

³⁴⁾ 『高宗實錄』(고종 22년 4월 6일)(『한국해양사 자료집』(4), p.593).

³⁵⁾ 『總署收北洋大臣李鴻章文』(1886년 9월 18일, 光緒 12년 8월 21일)(『清季中日韓關係史料』, p.2129).

대표하는 거함이었으며, 이즈음 초용과 양위는 이미 전성기가 지나고 있었다. 북양함대는 조선의 바다를 순시한 후 군함 일부를 블라디보스토크로 보내었다. 청과 러시아 사이에 길림성 동쪽 국경의 경계를 놓고 담판을 하던 오대징 일행을 태워 그들의 귀국을 돕기 위해서였다.³⁶⁾ 북양함대 가운데 초용과 양위 2척은 블라디보스토크에 대기시키고 나머지 군함 정원 진원 제원 위원 4척은 돌아오는 길에 선박을 수리하고 연료를 보급 받는다는 이유로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하였다.

일본 국내는 북양함대의 거대전함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떠들썩하였다. 그런데 북양수사가 나가사키에서 군함을 수리 중일 때, 우연히 청의 수병과 나가사키 경찰 간에 두 차례 유혈 충돌하는 유명한 나가사키사건이 발생하였다. 나가사키사건이 일어나던 같은 날인 8월 13일 원세개는 전보를 통해 조선국왕이 러시아공사 베베르를 통해 비밀편지를 붙여 군함을 보내 보호해 줄 것을 희망하면서 조선을 영원히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전했다. 원세개는 이홍장에게 신속히 외교적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을 요청하면서 자신에게 500명의 군인만 있으면 조선국왕을 폐위시킬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이홍장은 사태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하여 정여창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를 요청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러시아함대가 도착하기 전에 먼저 인천항으로 출동하도록 지시했다.

8월 19일 이홍장은 정여창에게 연락해 군함 제원과 위원을 인솔해 신속히 인천으로 오도록 조치하였다. 그리고 남양수사 제독 吳安庚에게 南瑞 南琛 開齊 등 3척의 순양함 및 保民을 포함한 4척의 군함을 거느리고 인천에 출동하도록 지시했다.³⁷⁾ 이홍장은 주일 중국공사 徐承祖에게 조선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보호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정원과 진원의 수리가 끝나면 병선을 조선으로 출동시키라고 전했다. 동아시아 최대의 철갑선인 정원과 진원까지 출동시킬 것을 염두에 둔 것은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에 대한 이홍장의 깊은 우려를 잘 보여준다.

1880년대 후반 북양수사가 아시아 최대의 해군력을 갖추면서 연해방위를 벗어나 외양 작전능력을 배양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원양항해훈련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다. 함대는 매년 여름과 가을 사이 해안 방어훈련을 하면서 요동과 조선을 순회하였고, 2-3척의 함정으로 일본의 항구를 방문하였다. 북양수사는 북방에 얼음이 어는 시기에는 남방으로 가서 겨울을 피했는데, 중국의 화동 화남지역의 항구는 물론 남중국해까지 가서 훈련을 하였다. 1888년 9월 30일 해군아문의 혁현 등은 『北洋海軍章程』을 제정하였다. 이 장정은 14조항으로 이루어졌는데, 서양해군의 규칙과 제도를 참고해 만든 근대중국의 첫 번째 해군장정이었다. 이 장정의 제정은 북양수사가 드디어 북양해군을 이루었음을 상징하

36) 『中國近代海軍史事日誌(1860-1911)』, p.139.

37) 권혁수, 『19世紀末 韓中 關係史 研究』, 191쪽.

였다. 그 해 12월에 북양함대가 정식으로 편제되었다.³⁸⁾

정리하자면, 청일 간 분쟁이 마무리될 무렵 러시아가 기회를 틈타 남하하려고 했다. 영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먼저 거문도를 점령(1885년 4월)하였다. 이홍장의 지시 아래 정여창은 초용과 양위에 조선 관리를 태우고 거문도 상황을 관찰한 후 주변국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자 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조선의 땅을 조차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영국도 거문도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그 후에도 러시아의 남하정책은 영국뿐만 아니라 청과 일본을 자극하여 조선의 바다를 둘러싼 대립이 심화되었다. 특히 1880년대 중반은 북양수사가 급속하게 발전하는 시기로 청은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주도적으로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였다. 북양수사는 정원과 진원과 같은 철갑선을 앞세워 황해를 벗어나 한반도를 둘러싼 남해와 동해의 제해권을 장악하려고 시도하면서 일본을 자극하였다.

VII. 맺음말

요약하자면, 1880년대 북양수사가 황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수시로 조선에 군함을 파견해 육군보다 먼저 군사행동을 하였다. 점차 수사의 지원이 없으면 육군이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뀌었다.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산둥에서 인천으로 올 수 있는 기동력을 갖춘 근대적 해군의 출현은 전통적인 조청관계에 균열을 일으켰다. 북양수사 군사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과정은 곧 청이 조선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개입을 가능케 한 배경이자 조선에서의 우위를 결정짓는 과정이었다. 청은 해군력을 바탕으로 조선에 침투하려는 일본세력을 축출하고 한 동안 우위를 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양해군의 성립에 자극을 받은 일본은 해군력 강화에 주력했으며 1890년대 동북아 정세에 새로운 위기를 몰고 왔다.

38) 북양함대는 당시 아시아 1위의 규모로 일본의 해군력을 능가했으며, 북양해군의 대권은 직례총독이자 북양대신인 이홍장의 손에 있었다.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등장에 대한 일고찰

석 미 자(고려대)

目次

1. 서론
2. 북양정부 시기 직업 외교관의 형성
3. 남경정부 시기 직업 외교관의 양성
4.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대두
5. 결론

1. 서론

남경정부 초기 시기 외교부장을 역임한 인물들은 黃郛, 王正廷, 施肇基, 顧維鈞, 陳友仁, 羅文幹, 汪精衛, 張群이었다. 특히 남경정부는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제소해 외교적인 해결 수단을 모색하면서 직업 외교관인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을 차례로 외교부장에 임명하였다. 그리고 외교부의 주요한 직책에도 직업 외교관을 임명했고, 국제연맹 중국 대표단과 중요한 서구 국가의 공사에도 이들을 파견하였다. 만주사변 이후 이들 외교부장은 국내외에서 일본군의 중국 침략 중지와 철수를 위해 최대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특별외교위원회 및 외교위원회와 국제연맹에서 활동하는 외교관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특히 고유균과 라문간은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으로 일본군의 침략을 중지시키지 못하자 남경정부에 정전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강경한 태도로 항전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물론 남경정부는 시기별로 각각 다른 대일본 정책을 전개했고, 그것은 제남사건 시기 북벌우선 정책, 만주사변 시기 부저항주의 방침, 상해사변과 장성항전 시기 저항하며 동시에 교섭하는 정책, 화북사변 시기 일본과 국교 조정 및 타협 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남경정부는 국내의 불안정과 군사력의 약세로 인해 각 시기별로 다른 대응책을 전개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을 실행하였다.

그러나 남경정부는 장성항전 시기 당고정전협정(1933년 5월 31일)을 비밀리에 서둘러

체결하고 제한적인 항전과 동시에 교섭하는 대응책에서 대일본 국교 조정과 타협 정책으로 변경했으며, 이제까지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을 기술 합작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라문간에 이어 왕정위 행정원장을 외교부장에 임명하였다. 왕정위 행정원장과 다음의 장군 외교부장은 이전부터 일본과의 타협 정책을 주장해 왔다. 이는 남경정부가 만주사변 시기 일본군의 침략을 소극적인 항전과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으로 대응하던 방침에서 대일본 타협 정책으로 전환한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당고정전협정 이후 남경정부는 대일본 타협 정책으로 전환하면서 외교부장도 정부의 대책을 지지하고 잘 실행해 줄 수 있는 인물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본고는 이 시기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태도 및 활동과 항전 입장에 대해 고찰해 그 등장과 의미를 검토하겠다.

기존의 연구는 주로 북양정부 시기 외교부의 제도 정비와 직업 외교관의 형성에 주목하여 검토하고 있고, 남경정부 시기, 특히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의 동향에 대해서는 거의 고찰하고 있지 않다. 또한 만주사변 이후 남경정부 직업 외교관의 활동 및 역할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 조명하고 있는 연구는 거의 없고, 북양정부 시기와 중일전쟁 시기 외교관과 외교 제도에 대한 연구가 몇 편 나와 있는 정도이다.¹⁾ 그리고 단지 특정 시기 고유균 외교부장²⁾, 羅文幹 외교부장³⁾ 등 주요한 인물의 견해를 살펴보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기존의 연구로는 만주사변 이후 남경정부의 대일본 정책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했던 직업 외교관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미진할 것이라고 본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고는 만주사변 시기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당고정전협정 이후로 남경정부의 대일본 정책이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과 연계해 외교부장의 임명에도 변화가 있음에 주목했다. 본고는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대두 및 동향과 그 의미

1) 북양정부 시기 외교 제도와 직업 외교관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王立誠, 『中國近代外交制度史』(甘肅人民出版社, 1991), p.207.; 岳謙厚, 『近代外交失敗與民國職業外交家勃興』, 『山西師大學報』, 第27卷 第3期(2000年 7月), pp.97-98.; 石源華, 『論留美歸國學人與民國職業外交家群體』, 『復旦學報』, 2007-4, p.32.; 川島眞, 『中國近代外交の形成』(東京: 名古屋大學出版會, 2004), p.136.; 중일전쟁 시기에 외교부의 제도와 직업 외교관에 대해서는 陳雁의 연구가 대표적이다. 陳雁, 『抗日戰爭時期中國外交制度研究』(上海: 復旦大學出版社, 2002), p.343.

2) 岳謙厚, 『顧維鈞與抗日外交』(石家莊: 河北人民出版社, 1998), p.227; 李雲漢, 『顧維鈞與九一八事變之中日交涉』,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國民政府處理九一八事變之重要文獻』(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委員會, 1992), p.651.; 이외에도 북양정부와 중일전쟁 시기 고유균에 대한 연구가 있다. 金光耀, 『顧維鈞與華盛頓會議』, 『歷史研究』 第5期(1997年), p.20.; William L. Tung 著 董霖 譯, 『V. K. Wellington Koo And China's Wartime Diplomacy(顧維鈞與中國戰時外交)』(臺北: 傳記文學出版社, 1978), p.11.

3) 張皓, 『1932-1933年羅文幹出長外交與國民政府對日政策』, 『抗日戰爭研究』, 2000-3, pp.34-56.

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북양정부 시기 직업 외교관의 형성

여기에서는 북양정부 시기부터 외교부가 전문화, 근대화라는 방침의 개혁을 실행하여 전문적인 외교 인재의 충원뿐만 아니라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직업 외교관이 형성되기 시작한 점에 대해 살펴보겠다. 아울러 북양정부가 주로 시험과 심사 제도를 통해 직업 외교관을 선발, 육성하는 양상을 간략하게 고찰하겠다.

북양정부 시기 점차 외교관 시험 제도가 정비되면서 외교관은 주로 시험과 심사 제도를 통해 합격한 인물들 중에서 임명되었다. 북양정부는 ‘외교관영사관임용잠행장정(外交官領事館任用暫行章程, 1912년 11월 27일)’, ‘외교관영사관관제(外交官領事官官制, 1914년 12월)’, ‘외교관영사관자격심사규칙(外交官領事館資格審査規則, 1915년 9월 30일)’, ‘외교관영사관고시령(外交官領事館考試令, 1915년 9월)’을 차례로 공포하여 외교관의 선출 기준을 정하였다. 이 시기 외교관영사관 시험은 1915년 제1회, 1919년 제2회가 실시되었다. 당시 외교부는 청말 외무부의 직원들 중 일부 고위 만주족 관료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직무를 유지시켰고, 주로 시험과 심사를 통한 선발 기준이 정해지면서 점차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고 법률과 경제, 국제관계 등을 학습한 전문가들로 충원하였다.⁴⁾

그리고 육정상(1871-1949) 초대 외교총장은 외교부를 전문화, 근대화시키기 위해 조직의 개편과 외교관의 충원 및 육성에 주력하였다. 그는 외교부에 주로 국제법 및 국제관계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며 외국 공사로서 실무적인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충원하였다. 그는 북경 동문관 출신으로 청말 駐러시아 공사관에서 번역, 參贊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네덜란드 공사, 러시아 공사 등을 역임하였다. 그는 프랑스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면서 근대 외교에 관한 지식을 갖춘 초기 직업 외교관이었다. 외교총장에 부임하기 以前, 그는 원세개에게 요구 조건을 제시하여 승낙을 받았다. 그 내용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안혜경을 외교부 차장에 임명하고, 부서 내의 인사 및 업무를 실행할 때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그는 전문적인 외교 인재의 선발 및 육성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여 다음과 같이 3원칙을 결정하였다.

- 1) 외교 인원은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채용 기준은 省의 경계를 타파하고, 외국어에 능숙해야 한다. 3) 외교부 내외의 인사 추천은 이 원칙에 적합하지 않으면 접수하지 않는다.⁵⁾

4) 川島眞, 앞의 책, pp.124-127.

5) 國史館中華民國史外交志編纂委員會, 『中華民國史外交志(初稿)』(臺北: 國史館, 2002), pp.227-228.

또한 1915년 외교관영사관고시령에 의해 외교관 선발 시험은 4개의 장으로 나뉘어 시행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 시험과목: 국문과 외국어, 제2 시험과목: 헌법, 국제공법, 국제사법, 외교법, 제3 시험과목: 행정법규, 형법, 민법, 상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정치학, 경제학, 재정학, 상업사 등 10개의 과목 중 4개 과목의 선택, 제4 시험과목: 약장성안(約章成案), 외교사건, 초의문독(草擬文牘)⁶⁾

위와 같이 직업 외교관은 시험에 합격하거나 외국 유학으로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고, 정치, 경제, 법률, 국제관계 등 외교와 관련된 지식을 갖추었으며, 외국 공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인물들 중에서 선발되었다. 그들은 채용된 후에도 외교 부서와 해외 공관에서 대외관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면서 외국어와 관련 전문 지식을 계속 수학하였다. 또한 외교관은 외교부와 재외 공관의 직원으로 세분할 수 있고, 特任, 簡任, 荐任, 委任의 4종류의 등급으로 구분되었다. 아울러 육정상은 주외국 공관 직원들도 앞에서 제시한 3원칙을 적용해 외교부에서 파견하였다.

이러한 개혁에 의해 외교부는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도 점차 전문화가 향상되었고, 외국 유학, 유창한 외국어 실력 등 상당히 동일한 배경을 가진 직업 외교관 집단을 형성하였다. 북양정부는 외교부의 전문화, 근대화에 대한 육정상의 노력을 인정하여 직업 외교관 중에서 주로 외교총장을 임용했으며,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총장으로는 육정상 이외에도 고유균, 안혜경, 梁如浩, 孫寶琦, 汪大燮, 胡惟德 등이 있었다. 이들도 외교부의 전문화에 대한 육정상의 개혁 정신을 계승하여 외교부의 근대화와 인재의 육성에 주력하여 전문적인 외교관의 선발과 육성에 도움을 주었다.

이로 인해 직업 외교관은 1920년대 초 이미 외교부 총장, 차장, 司長, 참사, 과장, 공사 등으로 외교부의 중요한 직무를 거의 모두 담당했고, 1920년대 초 이미 ‘외교과(外交系)’라고 불리기도 하였다.⁷⁾ 당시 직업 외교관은 국제연맹 및 국제회의에 참여해 활동하면서 외국어 실력과 외교 관련 지식을 발휘하여 국내외에서 명망을 얻고 있었다. 북양정부 집권층도 직업 외교관의 전문성과 견해를 존중했고, 외교 업무에 대해 크게 간섭하지 않았다.⁸⁾ 이를 통해 북양정부 시기에 외교의 제도 및 운영 면에서 근대화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직업 외교관이 형성되어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6) 國史館中華民國史外交志編纂委員會, 앞의 책, pp.237-238.

7) 國史館中華民國史外交志編纂委員會, 앞의 책, p.243.

8) 國史館中華民國史外交志編纂委員會, 앞의 책, p.20.

3. 남경정부 시기 직업 외교관의 양성

남경정부도 북양정부와 마찬가지로 시험과 심사 제도를 통해 합격한 인물들 중에서 외교관을 임명했지만, 대외 교섭 사무가 증가하고 중일전쟁 시기 일본군의 침략과 같은 국가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외교관 임용 규정의 제한을 두지 않고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물들도 많이 임용하였다.⁹⁾ 유문도, 하요조, 楊杰 같은 군인, 정천방 같은 국민당 중앙집행위원, 蔣廷黻, 胡適 같은 학자 등 직업 외교관이 아닌 인물들도 대사나 공사에 임명하였다.¹⁰⁾

그러나 만주사변 이후 남경정부는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을 전개하면서 전문적인 외교관들에게 주로 대외관계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담당시켰다.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은 국내외에서 대일본 정책과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참여해 일정한 역할을 담당했고, 점차 외교적 해결 수단의 토대가 되는 항전과 영토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중일전쟁 시기에도 남경정부는 일본과 전면적인 전쟁에 직면하여 더욱 중앙집권적으로 외교 정책을 결정했지만, 직업 외교관을 여전히 국제연맹 및 각 국가와 외교의 제일선에 배치하였다. 그들은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에 대해 항일 외교를 전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원과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과 대책을 설명하며 활동하였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본장에서는 남경정부가 시험과 심사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외교관을 임용한 것에 대해 간략하게 고찰하겠다. 남경정부는 1928년 7월 ‘외교부주외공관직원고시간장(外交部駐外使領館職員考試簡章)’을 임시로 발표했고, 1929년 1월에는 ‘외교관영사관임용잠행조례(外交官領事館任用暫行條例)’와 ‘외교관영사관자격심사위원회잠행규칙(外交官領事館資格審查委員會暫行規則)’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당시 외교관영사관임용잠행조례는 다음과 같다.

외교관영사관임용잠행조례(外交官領事官任用暫行條例)

제1조 본 조례에서 외교관은 공사관 수행원 이상의 인원을 말하고, 영사관은 영사관 수습 영사 이상의 인원을 말한다.

제2조 외교관, 영사관의 임용은 외교관영사관 시험에 합격한 인원 중에서 선발하여 임용한다.

제3조 시험 제도가 아직 확립되기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고 외교관영사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합격된 자 중에서 외교관, 영사관으로 임용해야 한다.

- 1) 현재 외교부 荐任 이상의 직 혹은 고급 위임직
- 2) 현재 공사관 수행원 이상의 직, 영사관 수습 영사 이상의 직 혹은 공관 주사로 이미

⁹⁾ 國史館中華民國史外交志編纂委員會, 앞의 책, pp.275-276.

¹⁰⁾ 王立誠, 앞의 책, p.297.

3년 이상인 자

3) 이전 외교부를 포함해서 이미 외교부에서 荐任 이상의 직 혹은 고급 위임 직에서 3년 이상인 자

4) 공사관 수행원 이상의 직 혹은 영사관 수습 영사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인 자
제4조 공관 인원으로서는 3년의 만기가 되어야 승진할 수 있지만, 특별한 공적이 있을 때에는 외교관영사관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인정되는 경우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조 대사, 공사의 임용은 위 조문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6조 외교관, 영사관의 임용 절차는 관계가 아직 선포되기 이전에는 대사, 공사 이외에는 잠시 외교부의 부령으로써 파견한다.

제7조 본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1929년 1월 16일)¹¹⁾

이러한 규정 하에 외교부는 1929년 2월 제1회 외교관영사관 시험을 실시했고, 시험 합격자들 중에서 외교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관영사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직원으로 임명하였다. 그리고 1929년 1월에는 ‘공관학습원잠행장정(使領館學習員暫行章程)’을, 1930년 7월에는 ‘외교부공관임용인원훈련반간장(外交部使領館任用人員訓練班簡章)’을 공포하여 시행하였다. 여기에 의거해 임용한 이후에도 외교부는 공사관 수행원, 영사, 수습 영사 이하의 직원을 3개월 동안 훈련시켰으며, 심사회가 합격한 인원을 외교부장에게 보고하여 등록하고 해외 기구로 파견하였다.¹²⁾

이후 1933년 ‘외교관영사관자격심사위원회잠행규칙(外交官領事館資格審査委員會暫行規則)’에도 제1조에서 한 국가 이상의 외국어에 능통할 것을 필수 조건으로 정하고 있고,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이전 혹은 현재 외교 기관에서 직무 성적이 탁월한 자이거나 이전 혹은 현재 외교부 및 공관에서 근무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하나의 조건에 충족하면 합격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¹³⁾ 외교부는 1936년 품격, 학식, 용모, 적응성을 심사의 주요한 기준으로 제시했으며, 장군 외교부장도 품격, 학식, 태도, 예절, 외국어를 중요한 심사 요소로 강조하였다.¹⁴⁾ 또한 黨籍이 외교관 및 영사관을 임용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하였다. 1933년 3월 11일 발표된 공무원 임용법에는 국민 혁명에 힘을 쏟을 것을 요구하는 조항이 있었고, 중앙상무위원회는 1929년 9월 11일 국민당 당원과 비당원이 경쟁할 경우 당원에게 혜택을 주도록 지시하였다.¹⁵⁾

楊樹人은 1929년 2월 말 외교관영사관 시험에 합격해 3개월의 견습 기간을 거친 후에

11) 南京國民政府外交部, 『外交部公報』 第1卷 第9號(1929年 1月), pp.2-3.

12) 劉達人 謝孟園, 『中華民國外交行政史略』(臺北: 國史館, 2000), p.80.

13) 陳體強, 陳體強, 『中國外交行政』(重慶: 商務印書館, 1943), pp.259-260.

14) 陳體強, 위의 책, p.250.

15) 陳體強, 위의 책, pp.258-259.

소련 대사관에서 근무하였다. 그는 1930년 4월 다시 독일 공사관으로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면서 베를린 대학에서 독일어와 외교 관련 과목을 수학하였다. 당시 그는 남경정부가 공사관의 경비와 직원들의 봉급을 제때에 지불하지 못하고 40일에서 50일 정도 지난 후에 보내기도 하였는데, 이런 경우 담당 공사가 직원들의 생활을 책임져야 했다고 회고하기도 하였다.¹⁶⁾

그러나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남경정부는 만주사변 시기 일본군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연맹에 제소·선전하는 외교적인 대책을 모색하면서 북양정부 시기부터 업무를 수행한 직업 외교관들을 많이 충원하였다. 이로 인해 직업 외교관은 북양정부 시기 외교부의 전문화, 근대화의 개혁에 의해 외교 인재로 충원, 육성되며 형성되어 국제연맹 및 국제회의에 참가해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만주사변 이후부터 남경정부에서도 다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4. 만주사변 이후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의 대두

전술한 것처럼 만주사변 발발 이후 남경정부는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에 대한 외교·선전 정책으로 일본군을 압박해 중국에서 철수시키고 사태를 해결하려고 모색했고, 이로 인해 외교부에 전문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행할 직업 외교관을 충원하였다. 외교부장도 직업 외교관 출신인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을 연이어 임명하였다. 이들 외교부장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연맹 중국 대표단 등 다른 외교관들의 활동을 지원했고,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항전 입장을 취하면서 그런 연후에야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 정책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본장에서는 이들 외교부장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수행 태도 및 활동에 대해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만주사변이 발발했을 때, 왕정정이 외교부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는 남경정부의 부저항주의 방침과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은 학생들의 구타 사건으로 곧 사직하였고, 시조기가 외교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시조기(1877-1958)는 영국 공사 겸 국제연맹 중국 대표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경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 외교부에서는 이금륜 정무차장이 외교부장 대리로 직무를 수행하였고, 宋子文이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였다.

시조기는 말년에 호적의 권고로 자서전을 편찬했지만, 곧 건강이 악화되어 『시조기조선

16) 楊樹人, 『追隨蔣作賓大使的回憶』, 『傳記文學』第6卷 第1期, 1965, pp.30-31.; 楊樹人, 『俄國事務專家夏維崧先生的回憶』, 『傳記文學』第1卷 第3期, 1965, p.16.

회억록』을 1914년 그가 처음 영국 공사로 파견될 때까지밖에 서술하지 못하였다. 그는 청말 1893년 워싱턴에서 楊子通 흠차대신의 번역원으로 외교 관련 직무를 시작하였다. 일찍이 그는 1902년 코넬 대학 문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귀국 이후 북양정부 시기 영국 공사, 미국 공사, 외교부 총장 등을 역임하였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그는 영국 공사로 런던에 있었으며, 파리강화회의와 워싱턴 회의에도 중국 대표로 참가하였다.

만주사변 시기 시조기는 국제연맹에서 중국 대표로 관동군의 침략을 제소하였고, 서구 열강에 대한 외교와 선전 업무로 바쁘게 활동하였다. 그는 1929년 1월 이미 영국 공사로 임명되어 다음해 국제연맹 중국 대표로 참석하였으며, 1931년 10월 3일 왕정정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당시 북양정부 시기부터 초기 직업 외교관이었던 그가 외교부장에 임명된 것은 남경정부가 관동군의 침략을 외교적인 수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 혹은 지지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진지매는 직업 외교관이 국내의 불안정한 정세에 관계없이 국외에서 수준 있는 외교관으로 활동한 점에 대해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였다.¹⁷⁾ 그는 시조기에 대해 북양정부 시기부터 명망 있는 직업 외교관으로 군벌들의 혼란한 정세 속에서 개인적인 사상을 거의 말하지 않았고, 영국과 미국 공사로 충실하게 활동했다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만주사변 시기 남경정부는 국제연맹의 감독 하에 양국이 직접 교섭을 진행해 해결하자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양국 간 직접 교섭을 반대하였다. 국제연맹에서 중일 양국 대표가 직접 교섭 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타협하지 못하고 대립하자, 요시자와 켄키치는 만주에 국제연맹 조사단을 파견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방안은 처음에 중국이 제기했는데, 일본의 반대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관동군이 만주를 점차 점령해 나가자 일본은 조사단의 파견을 다시 제안하였다. 실제로 요시자와 켄키치의 조사단 파견 제안은 중국의 일본 제재 조치의 요구나 국제연맹의 결의안에 의한 일본군의 철수에 대한 압박을 완화시켰고, 침략을 확대하는 관동군에 대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였다.¹⁸⁾ 요시자와 켄키치는 국제연맹 11월 23일 이사회에서 중국이 조약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나 각지에서 일어나는 반일운동이 일본의 권리와 이익에 손해를 준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양국 간 교섭과 군사적인 행위를 간섭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조사단을 파견해 갈등의 원인과 해결책을 찾자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국제연맹 조사단의 파견 제안에 대하여 시조기 중국 대표는 즉각 다음과 같이 반대하였다.

17) 陳之邁, 『施肇基早年回憶錄跋』, 『傳記文學』第9卷 第6期, 1966, p.7.

18) 徐藍, 『英國與中日戰爭(1931-1941)』(北京: 北京師範學院出版社, 1991), p.36.

국제연맹 조사단의 파견은 중복된 병폐와 같다. 중국은 이 제의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국제연맹 조사 위원단의 성립으로 일본군의 완전한 철수의 개시나 최단시간 내의 진행이 연기된다면 동의할 수 없다. 중국은 조사 위원단의 파견 여부와 관계없이 국제연맹 이사회가 완수해야 할 업무는 만주사변의 사태를 확대하지 않고 즉시 전쟁을 중지시키며 일본군의 철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본다. 중국은 관동군의 철수를 즉시 시작하고 신속하게 완성해야 한다고 요청한다.¹⁹⁾

이와 같이 시조기는 국제연맹 드루먼드 사무총장이 조사단 파견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주었을 때 토론의 여지가 없는 방안이라고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러나 중국의 국제연맹 조사단 파견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구 열강은 이 제안을 찬성하였고, 국제연맹 12월 10일 결의안으로 통과시켰다. 시조기는 브리앙 주석에게 12월 10일 결의안에 국제연맹 조사단 파견에 관한 내용 이외에도 일본 군대의 철수를 규정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실제로 국제연맹 조사단의 파견은 시조기의 지적대로 일본이 군대의 철수를 지연시키고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복된 병폐와 같았다. 이와 같이 중일 양국의 직접 교섭을 둘러싼 갈등은 12월 10일 결의안에 의해 리튼 조사단을 파견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고, 만주사변의 해결은 이 조사단의 조사와 보고 이후로 연기되었다. 결국 남경정부의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宣傳 정책은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관동군의 침략을 견제하는 유효한 장치로 작용하지 못하였다. 국제연맹의 결의안과 국제 공약도 만주사변의 해결을 위한 권고안 정도로 작용하였다.

이후 시조기는 국제연맹과 관련된 직무로 피로가 쌓여 중국 대표를 사직하였고, 안해경이 1932년 1월 국제연맹 중국 대표로 임명되었다. 곧 시조기는 주미국 공사로 파견되었는데, 그것은 고유군이 일본군의 침략에 대한 미국의 태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잘 처리,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를 미국으로 보내도록 제안한 요인도 있었다.²⁰⁾ 그는 1936년 6월 남경정부가 각 국가와의 우호 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해 공사를 대사로 승격시킬 때 초대 미국 대사가 되었다. 장성항전 시기 그는 당고정전협정의 조항에 대해 중국에 불리하고 적절하지 못하다고 반대의 뜻을 표시하면서 남경정부의 대일본 타협 정책을 불만스러워하였다.²¹⁾ 결국 그는 1937년 5월 미국 대사를 사임하고 귀국하였다. 이를 종합해 보면, 그는 외교 관련 업무를 묵묵하게 완수해 내는 실력 있는 직업 외교관이었고, 동료들 간의 신뢰도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시조기 외교부장이 국제연맹에서 중국 대표로 활동하는 관계로 남경으로 돌아오

19) 『外交部關於中日交涉的工作報告』,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앞의 책, p.240.

20)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譯, 『顧維鈞回憶錄』第2分冊(北京: 中華書局, 1985), p.26.

21) 『羅文幹致何應欽, 黃郛世電』(1933年 5月 31日), 中國史學會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抗日戰爭』第1卷(七七之前)(成都: 四川大學出版社, 1997), p.481.

지 못하자 장개석은 11월 23일 고유균을 외교부장 대리로 임명했고, 5일 후 외교부장 서리로 결정하였다. 고유균(1888-1985)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1912년부터 원세개의 영문 비서와 외교부 비서처의 직무로 공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는 파리강화회의에도 참석했고, 국제연맹의 창립 준비 단계부터 맹약을 제정하는 일에 관여하였다. 국제연맹이 1920년 성립되고 난 후, 그는 국제연맹 중국 전권 대표와 이사회 중국 대표로 국가의 권익을 위해 국제연맹이 公道를 주관하도록 촉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유균은 남경정부가 제2차 북벌을 시작할 때 수배령을 내린 명단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만주사변 시기 국제연맹과 국제회의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직업 외교관으로 특별외교위원회의 위원으로 초빙되었다. 만주사변 발발 이후, 그는 10월 12일 장학량의 제의에 의해 남경으로 와서 특별외교위원회의에 참가하였다. 그는 송자문이 외교부장의 직무를 수용하도록 요청했을 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요구 조건을 제시하였다.

첫째, 외교부장의 직무를 유효하게 집행하기 위해 주외국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에 정기적으로 경비를 지불해야 한다. 둘째, 해외 공관과 외교부 내부의 직원을 임명할 때 외교부장의 전권으로 처리하고, 정부의 특별한 지시나 명령을 받지 않는다. 셋째, 국민당 중앙정치회의는 중요한 정치와 외교 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나는 국민당 당원도 아니고 중앙정치회의의 위원도 아니므로, 외교에 관한 결의를 할 때 나에게 먼저 알려주어야 한다.²²⁾

위의 글은 남경정부 초기 외교부장이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에 참가하지 못했고, 외교 정책에 대한 결정권도 없었으며, 전문가로서의 견해도 존중받지 못했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외교부장은 재외 공관과 외교부 내의 직원에 대한 임명권도 미약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고유균은 외교부장이 되어도 막중한 책임에 비하여 그 직무의 수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았고, 외교 관계 직원 임명에 대한 전권과 중앙정치회의에서 외교 정책을 결정할 때 미리 그 사항을 자신에게 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송자문 재정부장은 이 요구 조건을 장개석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고, 그를 중요한 외교 관계 결정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허가하였다.

당시 고유균은 국제연맹이 中日 양국의 갈등을 전적으로 해결해 줄 수는 없으며 국제 분쟁을 해결할 때 조정의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양국 간 직접 교섭 요청을 수용하는 등 다른 대책도 세울 것을 제안하였다.

22) 「顧維鈞關於特種外交委員會及就任外交部長的回憶」,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앞의 책, pp.460-461.

일본은 국제연맹 이사회의 결의안을 준수하여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을 것이다. 국제연맹 이사회는 그 결의안을 실행할 강제력이 없으며, 일본 군대를 압박하지 못한다. 中日 양국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연맹의 감독과 도움 하에 두 국가가 담판하여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정상적인 방법은 談判이다. 만약 중국이 일본의 직접 교섭 제안을 완전히 거절하게 되면, 일본은 국제연맹에 항거하는 책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²³⁾

안혜경도 국제연맹에 의한 외교적 해결 방안이 성과를 거두기 어려웠다고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왕정정이 학생들의 구타 사건으로 사직하고 특별외교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이금륜 외교부 차장은 중국어가 서툴렀다. 고유균은 국제연맹의 창립 단계부터 참가해 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여 특별외교위원회에서 관련 견해를 제시하며 공헌하였다. 그도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의한 조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았다. 남경정부가 만주사변을 국제연맹에 제소해 외교적 해결을 모색했지만, 국제연맹 회원국과 구국공약 서명국 중 어느 국가도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지 않아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²⁴⁾

위의 두 글은 모두 국제연맹의 조정에 의한 국제분쟁 처리 방식이 강제력이 없어서 실제적 해결이 어려우므로 전적으로 맡겨둘 수 없다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국제연맹의 국제분쟁 해결에 대한 현실적 인식을 근거로 하여, 고유균은 일본의 양국 간 직접 담판 요구를 완전히 거절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중일 양국의 교섭에 의한 해결 방식을 고려할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라문간(1888-1941)은 만주사변 시기 특별외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했고, 상해사변 시기 고유균과 송자문의 추천으로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그는 1904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법률을 공부하여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변호사 자격을 획득하였다. 북양정부 시기 그는 1921년 10월 워싱턴 회의에도 중국 대표단의 고문으로 참가했고, 1928년 3월에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외교총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1928년 12월 동북 변방군 사령장관 공서 고문으로 있었고, 만주사변 이후 장학량의 제의로 고유균, 유철과 함께 특별외교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였다.

장개석이 1931년 12월 15일 광둥파와 연합 과정에서 하야하자, 국민당 4屆1中全會에서

23) 中國社會科學院 近代史研究所 譯, 『顧維鈞回憶錄』第1分冊(北京: 中華書局, 1983), pp.416-417.; 「顧維鈞關於特種外交委員會及就任外交部長的回憶」,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앞의 책, pp.455-457.

24) 「顏惠慶關於特種外交委員會的回憶」, 中國國民黨中央黨史委員會, 앞의 책, pp.451-454.; 顏惠慶 著 吳建雍 李宝臣 葉鳳美 譯, 『顏惠慶自傳』(北京: 商務印書館, 2003), p.221.

는 12월 28일 당무를 개혁하여 林森을 남경정부의 주석으로, 손과를 행정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이때 라문간은 사법, 행정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곧 손과 정부가 제정과 국정 운영의 어려움으로 해체되고 다시 장개석과 왕정위의 연합정부가 성립하였다. 이때 라문간은 외교부 부장으로 결정되었으며, 일본군의 침략이 확대되는 상해사변과 장성항전의 중요한 시기에 외교부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상해사변 시기 라문간은 강경한 태도로 군사적인 항전 방안을 주장해 남경정부의 제한적인 항전과 정전 협정 체결 방침을 반대하였다. 그의 이러한 견해도 불구하고, 남경정부는 일본과 정전 담판을 시작하였다. 정전 교섭에서 일본의 무리한 요구 조건과 회의의 잦은 결렬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라문간은 남경정부가 외교적인 대응에 역점을 두고 국제연맹의 결의안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만, 국제사회가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여 公理와 거리가 멀다고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상해사변 발생 이후 중국은 국제공약을 존중하고 공리를 믿으며 강권에 유린되지 않도록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래서 중국은 부득이한 정당방위 이외에는 국제연맹의 결의안을 충실히 수행하였다. 중국은 일본군의 침략을 국제연맹에 제소하였고, 구국공약과 부전조약의 회원국이 엄중히 주의하여 주도록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이는 중국이 국제연맹의 회원국으로서 의무를 이행하고 있으므로, 다른 회원국들도 공동으로 국제공법의 존엄을 유지하자고 하는 의미였다. 그러나 일본군은 국제공약을 위반하고 국제연맹의 여러 차례 결의안을 경시하였으며,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하고 무력 침략을 남용하였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국제연맹은 일본군의 침략과 파괴 행위를 제재하지 않았고, 우방도 일본의 선전에 미혹되었다. 특히 某國 외교 당국은 국회 내에서 중국의 실정 및 역사에 대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많았다. 금일 세계는 단지 중국이 고군분투하여 국제공약을 유지하려고 하여도 실제로 公理를 지키기 어렵다. 중국 국민은 평화를 사랑하지만, 세계 大同의 이상은 실현되기에 멀다. 중국 국민들은 공리를 신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일치단결하여 분발, 자강하고 나라를 잘 다스릴 방법을 강구하며, 공동으로 힘을 합하여 국난에 대응해야 한다. 그 후에야 외교상의 발언도 역량이 있게 된다.²⁵⁾

위와 같이 라문간은 국제사회에서 공약의 준수와 공리 증진의 어려움을 지적하면서 우선적으로 중국의 일치단결과 자강이 있어야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실제로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은 일본 군대가 침략을 중지할 수 있는 유효한 제재 조치를 채택하지 않았고, 교섭을 중재할 때도 일본의 무리한 제안을 옹호하기도 하였다. 서구 열강들, 특히 영국은 일본의 방침에 호응하기도 하였는데, 위에서 말하는 모국은 영국을 말한다. 이로 인해 라문간은 중국 군대의 항전과 영토 방위가 중요하므로, 상해 제

25)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史料編纂委員會, 『革命文獻』 第36輯(臺北: 中國國民黨中央委員會黨史史料編纂委員會, 1991), p.8218.

19로군에게 계속 지원하여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한다는 견해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그는 국제연맹에도 중국의 입장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했으며, 일본 대표의 중국 비난에 대해 반박하면서 만주국의 불승인을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그는 1933년 2월 1일 국제연맹에서 만주국의 불승인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여기에 반대하는 영국에 반박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국제연맹은 현재 엄중한 시기에 있으며, 국제연맹 이사회 및 대회는 여러 차례 통과시킨 국제연맹의 결의안과 원칙을 두려움 없이 원용해야 한다. 1932년 3월 12일 국제연맹은 결의안에서 회원국이 국제연맹 맹약 및 구국공약을 위반하여 조성된 상황과 체결된 조약 및 협정을 승인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을 결정하였다. 제네바의 열강 대표들은 만주국 정부의 부인을 명백하게 선언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결의안의 원칙에 대한 책임과 법규를 회피하고자 하는 의미와 같다. 국제연맹은 중국의 주권을 존중하여 괴뢰 조직인 만주국에 대한 국가 승인을 하지 않는다고 발표해야 한다.²⁶⁾

위의 글에서 라문간은 1932년 3월 12일 국제연맹 결의안의 원칙과 국제 공약을 존중하여 불법으로 수립된 만주국에 대한 불승인을 선언하고, 19개국 위원회의 건의서에도 반드시 명문으로 이를 규정해야 한다는 뜻을 드러내었다. 이때 국제연맹 19개국 위원회는 만주국의 불승인 여부에 대해 각 국가들의 견해 차이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였고, 특히 영국은 만주국을 불승인하는 규정을 반대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만주국을 불승인하기 위해 위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였고, 19개국 위원회가 리튼보고서를 심의·연구한 후 대책을 건의할 때 중국에 유리하도록 중국 대표단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장성항전 시기 남경정부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저항하며 동시에 교섭하는 정책을 실행하면서 서둘러 정전 협정을 체결하자 라문간은 이를 반대하였다. 이후 당고정전 협정이 비밀리에 체결되자 그는 여기에 대한 불만으로 사직했으며, 新疆 지역의 교섭을 처리하도록 파견되었다. 라문간이 1933년 8월 18일 사직하자, 남경정부는 곧 왕정위 행정원장을 겸임 외교부장으로 임명했고, 국민당 중앙정치회의의 비서장인 唐有壬을 유승결의 뒤를 이어 외교부 상무차장으로 결정하였다.

이때 왕정위와 당유임은 모두 일본으로 유학했고, 당유임은 일본의 정황을 잘 알고 있는 왕정위의 친한 친구였다. 실제로 왕정위가 외교부장이 된 것은 앞으로 남경정부가 일본과의 충돌 사건을 타협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미와 같았다. 왕정위는 직업 외교관이 아닌 외교부장으로서 이전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이 일관되고 강경한 태도로 대일본

26) 陸俊, 『三月來外交大事記』, 南京國民政府外交部, 『外交部公報』第6卷 第1號(1933年 1月-3月), pp.7-8.

정책을 요청한 것에 비하여 타협 정책을 주장해오고 있었다. 상해사변과 장성항전 시기에도 그는 일본과의 교섭 및 타협에 의한 해결책을 언급하였다. 또한 화북사변 시기 그는 1935년 12월 외교부장을 사임할 때까지 일본과 충돌이 발생한 그 지방 정부에서 사태를 해결할 것을 기본 방침으로 결정했고, 남경정부의 대일본 타협 정책을 중요하게 실행하였다.

당고정전협정 이후, 남경정부는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선전 대응책에서 기술 합작 정책으로 변경하였고, 일본과도 항전하며 동시에 교섭하는 대책에서 타협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남경정부는 1933년 3월 일본의 국제연맹 탈퇴와 서구 열강의 일본에 대한 제재의 반대로 이제까지 국제연맹을 신뢰해 대책을 모색하던 방침에서 일본에 대한 타협 정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그것은 대일본 타협 정책을 주장해 오던 왕정위를 외교부장으로 임명하고, 국제연맹 및 일본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대처하던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을 더 이상 임용하지 않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왕정위 행정원장 겸 외교부장은 1935년 11월 1일 국민당 4期 6中全會 개막일 기념 촬영식장에서 남경 晨光 통신사 기자인 孫鳳鳴의 저격으로 입원하며 사직하였다. 뒤이어 장군이 5期 1中全會의 개각으로 외교부장에 임명되었다. 이때 장개석은 행정원장을 겸임했고, 장작빈 주일본 대사가 내정부장에, 하응흠이 군정부장에, 吳鼎昌이 실업부장에, 張嘉璈가 철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당시 그들은 모두 일본으로 유학하여 그 정세를 잘 아는 인물들이었다. 이로 인해 이를 친일파의 개각이라고도 불렀다.

장군은 왕정위의 뒤를 이어 외교부장이 된 후 개각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견해를 표명하였다.

국제연맹의 일본에 대한 압박과 중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본과 타협을 도모하고 일본군의 침략을 방지하기 위해 단행된 개각이었다.²⁷⁾

위와 같이 장군은 장개석의 선안내후양외 정책을 이해하면서 국내를 정비할 2, 3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그동안 일본과 타협하여 중일관계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인식하였다. 그는 保定의 陸軍速成學堂 보병 제2대에서 군사 교육을 받았고, 군사 유학생으로 일본 振武學校를 졸업하였으며, 사단 후보생으로 제13사단 야포 제19연대에서 훈련하였다. 그는 장개석과 육군속성학당에서부터 일본 유학까지 동기생이었고, 이전부터 아시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일본과 친선·협력할 것을 주장해 왔다. 또한 그는 이전 왕정위 외교부장이 지방 정부에 일본과의 충돌 사건을 처리하도록 맡겨 둔 방침에서 중앙 정부가 외교적으로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모색하도록 변경하였다.

27) 張群 著 古屋奎二 譯, 『日華・風雲の七十年』(東京: サンケイ출판, 1980), pp.50-53.

아래의 (표 1-1)과 (표 1-2)는 국민정부 시기 외교부장, 외교부 차장을 역임한 인물들을 대상으로 삼아 만들어졌다. (표 1-1)을 보면 만주사변 이후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으로 이어지는 직업 외교관 출신 외교부장들이 차례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교부는 1927년 7월 5일 외교부 차장을 정무차장과 상무차장으로 2명을 임명해 조직을 확대, 개편했으며, (표 1-2)에는 그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다. (표 1-3)과 (표 1-4)도 만주사변이 발발한 이후에 주요한 각 국가의 공사와 국제연맹 중국 대표단이 모두 직업 외교관으로 임명되었다는 것을 잘 나타내고 있다.

(표 1-1) 국민정부 시기 외교부장

외교 부장	재임 날짜	퇴임 날짜	외교부장	재임날짜	퇴임 날짜
호한민	1925.7.1	1927.5.11	장군	1935.12.12	1937.3.4
오조추	1927.5.10	1928.1.3	왕충혜	1937.3.4	1941.4.10
黃郛	1928.2.10	1928.6.8	곽태기	1941.4.10	1941.12.27
왕정정	1928.6.8	1931.10.3	송자문	1941.12.27	1945.7.30
시조기	1931.10.3	1931.11.23	장개석(兼代)	1941.12.27	1942.10.20
고유균(대)	1931.11.23	1931.12.30	王世杰	1945.7.30	1948.12.22
진우인	1931.12.30	1932.1.29	오철성	1948.1.22	1949.3.21
라문간	1932.1.29	1933.8.17	부병상	1949.3.21	1949.5.28
왕정위(겸)	1933.8.17	1935.12.12			

출처: 王立誠, 『中國近代外交制度史』, 甘肅人民出版社, 1991, p.305.

(표 1-2) 국민정부 시기 외교부 차장

외교부 차장	재임 날짜	퇴임 날짜	외교부 차장	재임 날짜	퇴임 날짜
朱北莘	1927.8.6	1928.11.6	당유임**	1934.2.21	1935.12.20
곽태기	1927.8.6	1928.3.6	진개*	1935.12.20	1938.6.15
唐悅良	1928.3.6	1928.11.6	曾鎔浦**	1938.6.15	1941.9.6
朱北莘*	1928.11.6	1929.10.26	부병상*	1941.7.25	1942.12.8
唐悅良**	1928.11.6	1929.10.26	전태**	1941.10.23	1942.12.8
이금륜*	1929.10.26	1932.1.6	吳國禎*	1942.12.8	1945.8.29
張我華**	1929.10.26	1930.4.14	호세택**	1943.5.13	1945.8.29
王家禎**	1930.4.14	1932.1.6	甘乃光*	1945.8.29	1947.4.30
부병상	1932.1.6	1932.1.31	劉鐸**	1945.8.29	1947.5.8
감개후**	1932.1.6	1932.1.31	유사순*	1947.4.30	1949.1.18
곽태기*	1932.1.31	1932.6.25	엽공초**	1947.6.11	1949.1.18
서모**	1932.1.31	1932.6.25	엽공초*	1949.1.18	1949.10.1
서모*	1932.6.25	1941.7.25	董霖**	1949.3.12	1949.11.18
유승결**	1932.6.25	1934.2.21			

출처: 王立誠, 『中國近代外交制度史』, 甘肅人民出版社, 1991, p.306.

* 정무차장, ** 常務차장을 말함

(표 1-3) 주요 국가의 공사

국가 구분	공사	재입 날짜	퇴입 날짜
영국	시조기	1929. 1. 22	1932. 5. 30
	곽태기	1932. 5. 14	1941. 5. 9
미국	안혜경	1931. 9. 25	1933. 1. 7
	시조기	1933. 1. 7	1937. 5. 24
독일	유문도	1931. 10. 17	1933. 9. 13
	유승걸	1933. 9. 13	1935. 6. 28
프랑스	高魯	1928. 10. 12	1931. 7. 16
	고유균	1932. 8. 5	1941. 5. 9
소련	안혜경	1933. 1. 6	1936. 3. 23

(표 1-4) 국제연맹 중국 대표단

구분	중국 대표단
1930년(제11차 대회)	장작빈, 고노, 오조추
1931년(제12차 대회)	시조기, 왕가정, 吳凱聲
1932년(특별대회)	안혜경, 羅忠誥, 王麟閣
1932년(제13차 대회)	고유균, 안혜경, 곽태기
1933년(특별대회)	고유균, 안혜경, 곽태기
1933년(제14차 대회)	고유균, 안혜경, 곽태기
1934년(제15차 대회)	곽태기, 라충이, 김문사

5. 결론

이와 같이 본고는 북양정부 시기 외교관의 선발에 대한 시험과 심사 제도가 정비되면서 직업 외교관이 형성되었고, 이어 남경정부 시기에도 시험과 심사를 주요한 기준으로 삼아 외교관을 양성하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만주사변 이후 남경정부는 일본군의 침략을 국제연맹에 제소해 서구 열강에 선전하면서 외교적인 대응을 모색해 외교부장, 각 국가의 공사, 국제연맹 중국 대표단 등 외교부의 주요한 직책에 직업 외교관을 충원하였다.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으로 이어지는 외교부장들도 모두 직업 외교관이었다.

전술한 것처럼 직업 외교관은 북양정부 시기 외교부의 전문화, 근대화의 개혁에 의해 외교 인재로 충원, 육성되었고, 외교부의 국내외 부서에서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에 따라서 점차 전문 외교관으로 양성되었다. 육정상 초대 외교총장은 외교부를 전문화, 합리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하고, 외교 인재의 충원 및 육성에 힘을 기울였다. 그는 외교부에 외국 유학으로 유창하게 외국어를 구사하고 국제법과 국제관계 등 외교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추었으며, 외국 공사로서 실무 경력이 있는 인물들을 충원하였다. 그는 외교관영사관 시험과 심사에 의해 선발된 외교관들이 장기간 복무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점차 정비하였고, 주요한 해외 공관에도 그들을 파견하였다. 또한 남경

정부 외교부도 청말 총리각국사무아문과 외무부, 북양정부의 외교부를 계승하면서 조직을 더욱 세분화, 전문화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었다.

이를 토대로 하여 북양정부 시기 직업 외교관은 국제연맹 및 국제회의에 참가하여 중국의 국제적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만주사변 시기 남경정부가 일본군의 침략을 중지시키기 위해 국제연맹에 제소·선전하는 외교적인 대응책을 모색하면서 다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계기를 맞이하였다. 특히 만주사변 발발 이후 시조기, 고유균, 라문간 외교부장은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국내외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대처해 나가면서 다른 외교관들의 활동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이들 외교부장은 남경정부의 국제연맹에 대한 외교 정책을 지지했지만, 일본군의 침략이 확대됨에 따라 점차 강경한 태도로 군사적인 대응과 영토 방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것이 전제된 하에 외교적인 대응도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만주사변 시기부터 일본군의 침략에 대해 군사적으로 항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상해사변 시기 상해정전협정과 장성항전 시기 당고정전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나 남경정부는 1933년 2월 국제연맹에서 만주국을 불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성항전 시기 당고정전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면서 일본에 대해 항전과 교섭 정책을 병행하던 대책에서 대일본 타협 정책으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외교부장도 이전부터 일본과 타협을 주장한 왕정위와 장군으로 임명하였다. 이와 같은 외교부장의 변경은 남경정부가 만주사변 시기부터 상해사변과 장성항전 시기를 거치며 군사적인 항전보다 외교적인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지속적으로 국제연맹 및 서구 열강의 일본 제재를 기대했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일본과 타협을 모색하려는 정책 변화와도 관련된 것이었다.

韓寒-方舟子 論爭에 나타난 현대 중국 담론 형성과 확산 네트워크

최 은 진(국민대)

目次

- I. 머리말
- II. 韓寒 현상과 매체
- III. 매체 네트워크와 논쟁의 함의
- IV. 맺음말

I. 머리말

韓寒의 대필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된 方舟子의 논쟁은 2011년 말에서 시작되어 2012년 8월 정도까지 상당히 장기간 지속되었고 보통 한방대전, 방한논전이라 불리며 엄청난 토론 참여자가 전쟁처럼 논쟁을 이끌어 나간 사건이다. 2012년 인민일보 선정 인터넷 10대 사건에 포함된 논쟁은 규모와 지속의 면에서 전무후무한 논쟁이었다.

한한의 대필여부에 대한 의혹은 2007년 그의 작품 <장안란>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바로 잠잠해졌다. 그러나 2012년 대필논쟁은 상당히 오랜기간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여 이루어졌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기간 논쟁을 전개했던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논쟁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참여자의 범위와 확산의 속도 및 논의의 지속성으로 인해 대필여부의혹 자체를 밝히는 것을 넘어 이러한 논쟁의 시대적 배경과 함의에 대한 관심도 촉발되었다. 따라서 논쟁자체의 특징을 밝히는 것과 동시에 짧게는 2000년대의 ‘한한현상’과 길게는 개혁개방이래 형성된 중국의 사상문화적 변화와 그 구조적 메커니즘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¹⁾ 접근의 각도도 한한이

1) 대중들의 공공토론을 볼 수 있는 논의였지만 90년대 전개된 국가와 시장의 긴밀한 관계를 보지 못하고 국가를 반대하는 자유주의의 틀을 전제로 한 논의였기에 방주자와 방한파 또한 韓寒 문제의 본질은 허위자유주의의 특징인 정치소비주의, 정치상업주의인데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보았다. 石力月, 『作爲政治的商業主義與政治的消解及重構』, 『開放時代』, 2012. 5.

작가이며 카레이서, 음반생산자, 슈퍼블로거, 신공공지식인 등 역할의 진화에 따라 문학 적 접근, 문화산업에서의 접근, 정치사상사적 접근, 미디어산업에서의 접근 등 다양하다.

한한과 한한의 팬덤이 일으키는 현상은 중국의 중요한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중국에서도 인터넷의 도입 이후 대중의 목소리는 가시적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은 조회수와 댓글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여 여론의 생산과 확산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개입하여 그 영향력을 날로 증대시켜 나가고 있다.

네트워킹에 의해 끊임없이 적군과 아군을 만들어 내고 논의를 확장시켜 나가는 인터넷 상에서의 논쟁은 전쟁을 방불케 하며 새로운 인터넷 용어를 만들어 내고 가치를 생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에서도 이미 인터넷 상의 논쟁은 주요한 인터넷 사건진행과 해결의 기본적 프로세스가 되었다.

한한韓寒은 흔히 '80후(80后)'의 대표작가로 거론되는 젊은 작가로서 중국에서 지명도와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는 작가이면서 유명한 카레이서이고 또 슈퍼블로거이며 공공지식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신공공지식인으로 불리워지면서 작가로서의 활동을 뛰어넘고 있지만 그와 관련되어 벌어진 많은 논쟁은 문학과 관련된 것이었다. 즉 한한은 인터넷 문학의 기수로서 쓰레기문학이라는 주류문단, 기성문단의 비판에 대해 기성문단의 권위를 부정하되 조롱과 신랄한 비판의 문체를 사용하여 철저히 대중을 옹호하였다. 따라서 주류문학의 권위에 대한 한한의 과격적 언행, 반권위주의, 교육체제의 시스템을 비웃는 반체제적 태도 등이 한한이 논쟁의 중심에 선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한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주로 문학측면에서만 조명되었다.²⁾ 그런데 2012년 소위 '방한대전'·'한방논전'으로 중국에서는 공공영역의 문제와 관련된 미디어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³⁾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웨이보나 블로그등 인터넷매체의 기술적 특징에 주목하거나 커뮤니케이션적 시각에 초점을 두어 현상적 설명에 그치는 경향이 있다.⁴⁾ 따라서 문화현상으로서의 한한현상과 관련지어 논쟁을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반면 한한현상이 매체의 발전과 특징과 긴밀한 관련을 지니고 전개된 측면을 고려하여 웨이보를 비

2) 박자영의 연구는 시기구분기법을 사용해서 빠링허우문학이 만들어진 과정을 설명하여 문화산업화 과정과 컨벤서스에 대해 고찰하였다.박자영, 「메이드 인 '바링허우」, 『中國現代文學』, 제53권(2010년): 최재용, 「한한이 촉발한 문학논쟁과 그 문학사적 의미」, 『中國現代文學』 第61號, 2012.6, 141-170.

3) 공공영역이 형성의 전제가 되는 평등한 토론이 전개되었다고 보는 입장과 龐旭처럼 신랑웨이보에서 방한지쟁을 실증적으로 분석해서 이성적 토론과 비판, 공공성 등이 나타나는 공공영역이 형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입장으로 나뉜다. 龐旭.2010. 「微博名人對網公共事件的表達與哈貝馬斯公共領域的構建-以新浪微博加V名人對絡“方韓之爭輿”的探討論為例」, 『學術論壇』, 05期.

4) 양국빈은 楊國斌 (Yang, 2009) 은 『中國互聯網的力量』, (The Power of the Internet in China) 에서 이러한 기술결정론에 대한 회의를 표방한 바 있다. 이외 이민자, 「중국정부의 인터넷 통제와 활용」, 2013년 현대중국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참고.

못한 대중매체와 인터넷매체간의 상호작용이라는 네트워크를 시야에 넣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한과 그로 인해 촉발된 여러 논쟁들이 거친 욕설과 투박한 논리 말싸움이라는 표면의 내부에 개혁개방이래 다원적 가치관과 의식이 형성되는 과정의 단면이 드러나 있다고 보고 그 기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빠르게 변화한 미디어매체가 끼친 영향이 반영된 논쟁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의 전개 과정에 주요한 무대가 된 인터넷 매체 블로그와 웨이보, 전통매체, 지식인과 대중들의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시나웨이보, 시나블로그, 카이디스취, 텐야논단, 각종 신문매체 등을 주요한 자료로 한한과 방주자 논쟁의 확산과정의 기제와 네트워크를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중국의 사회변화과정에서의 문화생산기제가 창출하는 담론형성과 확산의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된 배경과 함의가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II. 韓寒 현상과 매체

1. 문화산업체제의 구축과 한한 현상

한한은 청소년시기 1999년 문학대회에서 수상한 이후 현재 작가이자 매체의 공공지식인이 되었다. 13년간의 기간동안 소위 한한현상을 만들어내고 80후세대의 대표자로 인식되기까지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한한과 방주자 논쟁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리고 이 13년간은 중국의 매체를 포함한 문화산업화 과정이 내재하고 있다. 즉 출판과 문학이 산업화되고 다양한 매체와 연계되는 과정이 한한현상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런점에서 한한현상을 매체의 산업화과정과 연결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한한은 上海에서 개최된 1998년 신개념작문대회에서 <규중회인>으로 1회, 2회 모두 1등과 2등에 입상하였다. 이 대회는 국어교육의 문제를 제기한 첸리췌(전리군)을 비롯한 교수들의 현행교육의 문제제기와 대학이 대회개최의 자율적인 추진의 주체가 되어 실시한 자유로운 글쓰기 대회였다. 국어교육의 문제가 사회적 공감을 얻어 제도권의 재제도화를 통해 사각지대 놓였던 작가들을 양성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글쓰기대회는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회적 의미가 큰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제도의 문제를 제기하는 제도에서 한한이 수상했다는 것이 한한의 의미를 각인시키는데 매우 중요했다는 점이다.

한한은 수상 이후 그 경력에 힘입어 작품 <三重門>으로 베스트셀러로 주목을 받았지만 작품으로서 보다 더 주목을 받게 된 것은 학교에서의 낙제, 두 차례의 유급과 휴학 등 현행교육제도에 대한 부적응과 베스트셀러작가라는 독특함 때문이었다. 이를 두고

2000년 11월 25일 CCTV 프로그램 對話에서 ‘한한현상’이란 제목의 토론이 벌어졌다. 한한과 달리 우등생 작가 황쓰루(黃思路)도 있었다는 점에서 한한은 문제 있는 학생으로 주목되고 참여한 교수들도 교육부적응을 논했지만 한한은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된다. 그리고 이후 한한은 대학교육을 거부했고 자신의 이러한 교육에 대한 입장을 작품의 내용으로 삼았다. <三重門>을 포함해 이후 소설 <霧下一度> 등에서도 현행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져서 한한은 교육체제에 대한 비판자로서의 이미지를 갖게 되었다.

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보통의 공민, 열등한 한한이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은 천재일수 있고 크게 성공한 것으로 대중에게 비취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문단과 지식계에 대해 신랄한 표현과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였는데 이것이 교육체제에 대한 도전에서 비롯된 반권위주의자로서의 이미지를 형성했던 것이다. 지식인들은 이러한 그의 태도를 90년대 이래 사회에 확산된 공리주의가 초래한 냉소주의에서 비롯된 반지성주의라고 보았지만 일반대중들은 오히려 새로운 계몽주의자, 도전적, 개척적, 자아실현을 주장하는 자로서 보았다. 이러한 현저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1990년대 시장화의 확산과정에서 국가는 오히려 법제와 제도를 통해 시장화를 강화하는 주체적 작용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심각한 빈부격차나 자본의 폐해에 따른 기층민중의 문제가 발생했지만 지식계는 여전히 국가간섭의 약화와 자유시장체제의 확산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간섭에 반대하는 의식형태인 자유주의는 사회적 의식형태의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왕후이 등 신좌파가 1994년 이후 지적을 해왔고 반면 여전히 국가와 시장의 조우 속에서 시장의 강화를 강조하는 것이 국가와 체제에 반대하는 주장은 주류의식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러므로 한한의 교육체제에 대한 반대는 국가체제에 대한 반대의 의제와 맞닿아 있게 되고 교육의 시장화도 전개되어 가면서 대중들은 한한을 계몽의 이미지로 받아들이기 쉬웠던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이미지는 바로 문화산업의 구축과정과 맞물려 있다. 박자영은 중국문화산업은 출판, 잡지, 방송, 각종 콘텐츠가 서로 연계 확장되는 소위 컨버서스를 이루어나가는 전개과정을 밟았다고 본다. 이러한 과정에 한한현상도 놓여 있다.

우선 한한의 삼중문이 2000년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제도권에서 개최한 1999년 신개념작문대회에서의 입상 때문이다. 이것은 대학진학도 보장해 주는 대회였고 대학과 시장이 결합하여 만든 대회라는 성격을 띤다. 본인이 대학진학을 거부했지만 그의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 대회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 즉 제도권의 도움에 의한 성공이었고 시장과 결합된 제도권의 대회가 출판의 베스트셀러에 영향을 준 것이다. 물론 반교육체제의 이미지의 부각과 함께 이루어졌다.⁵⁾

2002년에는 출판사 사장 路金波와 한한이 합작을 한다. 이 시점부터 한한의 작품에는

박학다식했던 고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고 이러한 성격이 강했던 <삼중문>과 <零下一度>는 출판사의 상업성을 고려하여 오락적 요소가 내포된 작품으로 대체되기 시작했고 그 역시 카레이서의 생활을 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대회출신인 콕경명은 대학을 다니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출판사와 협업을 하고 스스로 작가양성과 출판기획을 겸하는 사업가가 되면서 2003년 청춘문학장르를 만들어냈다. 그는 포브스지가 선정한 기업가로서도 알려질 정도로 출판사업의 상업성의 아이콘이 되었다. 주목할 것은 당시 80후세대용어가 나타나게 되는데 2003년 청춘문학의 탄생과 함께 라는 것이다. 반항과 방황의 세대는 우울과 슬픔의 무력한 청춘으로 묘사되고 그들의 위로와 자기정체성의 형성을 하는데 작용하게 되면서 청춘문학작품은 80후세대를 통합하는 문화적인 기호를 획득하며 상업성이 대중성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⁶⁾ 콕경명이 문화의 영역으로 산업과 문학콘텐츠를 결합시켜 상업적 대중성의 담론을 주도해 나갔다면 한한의 경우는 콕경명과 선을 긋고 반권위주의와 반체제 담론을 이끌어 나간다.

2005년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80후세대의 팬을 확보하게 된다. 이것은 앞에서 언급한대로 2003년 문학산업으로 형성된 80후정체성을 지닌 네티즌들이었다. 이들은 2006년 ‘한백논쟁韓白之爭’에서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논쟁에서 한한은 기성세대인 바이예白燁가 80후세대의 문학은 시장에만 진입했고 문단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비평한 것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文壇是个屁誰都別裝逼』라는 반박문을 올린다. ‘屁’나 ‘逼’ 등이 들어간 제목에서부터 알 수 있다시피, 이 글은 다소 과격한 언사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바이예의 학술적인 글과는 전혀 다른 자유분방한 언어를 사용하여 공격하였다. 한한은 “읽고서 재미있다고 느껴지는 것이라면 모두 순문학”이며 “대부분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쓴 것은 모두 순문학이다”라고 주장하였는데, 이런 작가들이 오히려 시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쓰고 싶은 것을 쓴다”며 바이예의 권위주의와 문단의 특권의식을 비난하였다.⁷⁾ 그리고 한한의 팬들이 집중적으로 바이예의 블로그를 공격하여 바이예가 블로그를 폐쇄하게 되면서 한한과 팬들에 대해 도덕적 비난도 일어났다. 이 시기에는 논쟁 참여자는 두 사람의 지인들을 위주로 전개되었지만 그러나 이 사건은 오히려 80후세대의 의식과 정체성을 기성세대의 권위주의에 대한 도전으로 형성하게 하고 2006년 이후 한한을 80후 세대의 대표 아이콘, 인터넷 공간을 자신들의 주전장으로 만들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한편 80후세대의 인터넷에서의 활동이 중요한 저변이 되면서 2007년 작가협회가 콕경명 등을 회원으로 영입했다. 즉 이것은 과거와 같은 문화생산형태가 아닌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일 수 있었다.

5) 石力月, 위의 논문, 33쪽.

6) 王芳, 『主流媒體上的80后形象研究』, 『青年研究』, 2009.3, 63쪽.

7) 최재용, 위의 논문, 145-146쪽

그러나 한한은 작가협회 가입을 거부하고 출판산업의 활동을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그의 반권위주의, 반체제적 이미지를 확고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이미지는 여러 미디어 매체를 통해 옮겨 다니는 새로운 문화산업의 전략인 컨버전스의 방식에 따라 이루어졌다. 그는 작가이자 독립앨범을 낸 가수이자 잡지의 창간자로 활동해 나갔기 때문이다.⁸⁾

한한에게 2008년은 반체제, 반제도권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되는 결정적인 시기였다. 한한은 사천대지진과 북경올림픽을 계기로 각종 매체에서는 80후세대를 부정적 시각이 아닌 자신감과 애국정신, 선명한 개성, 독립적인 판단, 개방적 태도 등을 지닌 세대로 묘사하기 시작했다.⁹⁾ 또한 주요매체 <인민일보>, <중국청년보>, <남방주말> 모두 2008년 올림픽개최 전후로 80후세대의 사회활동의 측면을 중요시하는 글을 많이 실기 시작했다.¹⁰⁾ 즉 2008년 이후 80후세대는 인터넷 공간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의견을 드러냈고 전통적 매체에서도 이러한 점을 주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힘입어 한한은 사회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언급하는 공공지식인으로 선정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는 작가로서의 재능보다는 세대를 대표하는 그의 포지셔닝에 힘입은 바 컸다.

2008년 6월 15일 밤 12시 후난 위성방송湖南衛視 ‘零点鋒云’프로그램에서 한한과 陳丹青이 대담 때문이었다. 여기서 한한은 라오서老舍, 마오둔茅盾, 빙신冰心 등 중국 현대문학사상 대단히 중요한 인물들이 글솜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였고 천단칭도 바진巴金을 거론하여 이에 동의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즉각적인 반발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¹¹⁾ 이후 한한은 자신의 블로그를 진지로 감고 수차례 반박문을 올리고 한치도 물러서지 않는 반론을 제기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매우 많은 사람들이 의견을 제출하여 오랜 동안 대치 상태를 지속했다. 이 역시 권위에 대한 도전의 의미라고 볼 수 있다. 비판측의 주요한 내용은 첫째 한한은 지식의 수준이나 독서량이 아직 미흡하므로 문학의 대가들을 함부로 평가해서는 안된다. 둘째 중국의 문화와 정신을 상징하는 대가들을 모욕해서는 안된다는 것으로 반대파의 주장은 권위주의적 발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반론일 수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언론의 자유, 개인 의견의 발표 권리 존중, 정부의 환심을 사는 글이 아닌 일반민중을 대변하는 글이어야 한다는 것이 반박논리였다. 이는 매체의 자

8) 쟂킨스에 따르면 컨버전스는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에 걸친 콘텐츠의 흐름, 여러 미디어 산업 간의 흐름,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디라도 기꺼이 찾아가고자 하는 미디어 수용자들의 이주성 행동을 의미’한다. Henry Jenkins, *Convergence Culture: When Old and New Media Collid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2006; 헨리 쟂킨스, 김동신 외 옮김, *컨버전스 컬처* (비즈니스비즈, 2008), 박자영, 앞의 논문, 287쪽.

9) 王芳, 논문, 64쪽.

10) 李景 方藍, 『80后, 90后的 媒體形象呈現』, 『新聞世界』, 2010.1期, 53쪽.

11) 논쟁의 개요는 <http://book.sina.com.cn/ping/hanhan.shtml>

유, 누구나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는 독립적 견해를 제시할 공간의 형성으로서의 매체 활용 등의 주장과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매체 역시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을 것이다.

2008년 한한은 신라의 10대블로그에 선정이 되었다. 한한은 2008년까지 105편의 블로그 문장을 써서 매일 8.7편을 지속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공공의제를 다룬 글이 전체의 65%를 넘는 69개였고 북경올림픽, 사천대지진, 교육과 관련된 것들이었다.¹²⁾ 그렇다면 한한은 문화산업의 다른 측면일 뿐이지 자발적인 비판의식, 도전과 개혁의식, 반권위주의 등 천박한 상업성과는 다른 계몽의 추구라고 과연 말할 수 있는가.¹³⁾ 평가와 별개로 한한은 2005년 이래 블로그를 통해 공공지식인으로서 작가와 문단에 대한 도전을 매체를 활용하여 전개해 왔고 그 주요한 화제는 언론의 자유와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으며 80후 세대를 기반으로 구축해 왔다는 사실이다.

2. 공공지식인 한한

한한은 2008년 이후 각종 잡지의 표지를 장식하게 시작했다. <남방인물주간> <韓寒 賦>에서는 청년선봉으로 80년대 대표적 인물로 묘사되었다. 2008년 12월 그는 公盟法律研究中心의 공민책임상, 2009년 <南方人物週刊>의 당해인물, <新世紀週刊>의 2009년도 인물, <亞洲週刊>의 2009년 풍운인물, <時代週報>의 2009년 중국진보를 추동한 100인, 2010년 <타임>지 세계 영향력 있는 백인 오라클의 2위, 2010년 미국의 <외교정책> 잡지의 세계백대사상가, 2010년 <環球日報>의 중국10대직언군자의 한명으로 선정되었다. 어떻게 해서 그는 매체가 선정하는 사상가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도 국내외의 잡지에서 2008년, 2009년에 걸쳐 선정된 것이다.

<그림 1>은 2000년 이후 한한현상을 보도

<그림 1> 한한현상 보도 신문잡지의 지역별 분포¹⁴⁾



12) 劉新玲, 關變娜, 『網路青年意見領袖形成要素的社會學分析』, 『長春理工大學學報』, 25卷 9期, 2012년 9월, 61-62쪽.

13) 박자영은 전자로 최재용은 후자로 보고 있다. 즉 한한은 결국 문화산업의 컨버전스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고 최재용은 광경명의 천박한 상업성과는 다른 건전한 대중성을 대변한다고 보는 것이다.

14) CNKI참조

한 신문잡지를 조사한 것으로 주로 북경, 광둥, 상해지역의 잡지와 신문에서 많은 보도가 이루어진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신문잡지의 발간수에 비례해 볼 때 소위 남방계 신문이 보도를 많이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30세도 채 되지 않은 그가 이렇게 된 이유는 그의 글이 정말 시대를 좌우할 정도였기 때문인가. 이에 대해 기존의 학계에서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대학에서만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고 90년대 후반 실제 주변화된 것 때문이라고 보기도 한다. 즉 기존의 지식인들은 주변화 되고 매체의 발전에 따라 매체지식인과 소위 스타가 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식인들은 비판역량을 상실하고 정치를 말하지 않게 된 것이다.¹⁵⁾ 그러자 이들을 대신해서 정치를 논하게 된 것이 바로 한한과 같은 매체지식인이었던 것이다.¹⁶⁾ 한편 한한을 학계의 지식인들이 전문적 학술의 부족으로 비판하게 되면 한한은 권위주의로 이들을 비판하게 되고 한한의 팬들은 언론의 자유와 체제적 비판으로 대응하게 되면서 소위 비판적 지식인들은 매체에서 반대중적 입장이 되고 만다. 이것이 한한을 더욱 주목하게 만든 요인이 될 수 있었다. 즉 한한은 매체지식인이지만 전통매체의 지식인들의 전문적 지식과 학술적 배경을 지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중매체가 한한에게 준 명성은 그의 상업적 가치를 높인다. 2011년 그는 커피광고로 많은 돈을 벌었다. 그리고 이것은 인터넷 슈퍼블로거의 입지에 기반한 것이다.

그러므로 한한은 더욱 공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80후를 대변하는 상징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이 때문에 반지성주의라는 지식계의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한한의 팬들은 한한이 자신들과 같은 평범한 사람으로서 성공한 측면을 인정한다. 그리고 이는 인터넷 블로그를 기반으로 파격적 언술의 방식과 대중과의 소통으로 이루어졌고 엄청난 팬의 확보가 대중매체에서 한한을 주시하고 형상화하고 이상화시키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한한은 당대의鲁迅노신으로 승격되었다. ¹⁷⁾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한한에 대한 주목도 적지 않았는데 2010년 5월 14일 카이디스취 문화평론에 在下華明은 한한을 노신에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지만 한한은 어리다는 점에서 노신보다 우세하고 양자는 시대의 ‘등에’라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한한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사람에 대해 중국인들의 관심이 상당하다면 이러한 멸시하는 사람들의 심안은 바늘귀보다 크다고 할 수 있는가라는 문장이 실려 있다. ¹⁸⁾

15) 余曉冬, 「微博對公共領域復興的解構」, 『新媒體』, 2011年 第2期, 61-62쪽.

16) 余越, 李名亮, 「微博空間公共知識分子的身分建構」, 『今傳媒』, 2012年 第9期, 20쪽; 石力月, 作為政治的商業主義與政治的消解及重 构, 開放時代, 2012.5, 35쪽.

17) 章玉政, 「從公共領域到公共討論-試析方舟子韓寒之爭引發的公共傳播現象」, 『傳播學研究』, 2012年 第6期, 32쪽.

18) 也談韓寒, 在下畢明, 2010-5-14, 21:43:59, 凱迪社區 > 文化散論 <http://club.kdnet.net/dispbbs.asp?page=1&>

또한 한한은 또 한차례 지식인들과 논쟁을 벌이게 되는데 2010년 8월 75세의 대만에 서 온 좌파로 간주되던 李敖은 인터뷰에서 한한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을 하면서 한한이 지식계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다. 그는 단지 저급하게 대중을 호도할 뿐이라는 것이었다.¹⁹⁾ 그러므로 한한을 무시하고 멸시하며 지식계에 들어 올 수 없다는 인식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였고 젊은 세대로서 학력이 부족한 보통의 공민으로서의 입장은 더욱 주목받고 대중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작용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80후 청춘문학의 상업적 성공과 전통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작용을 하였다.

Ⅲ. 매체 네트워크와 논쟁의 함의

1. 한한-방주자 논쟁의 전개

1) ‘韓三編’과 지식계

2011년 12월 23일, 24일, 26일 <談革命>, <說民主>, <要自由>라는 한삼편이 그의 블로그에 올랐다. 2012년 1월 15일 IT블로그 작가 麥田이 <人造韓寒:一場關於公民的 鬧劇>에서 논전의 서막이 올랐다. 보통 한삼편을 논전의 서막으로 보지 않지만 전반적 현상파악을 해 보면 한삼편이 논쟁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한삼편은 주제와 논의 방식 사고 등에서 한한이 주목을 받게 만들었고 그것이 한한의 그동안의 작품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이다.²⁰⁾

주제가 광대한 것에 비해 글은 짧았기 때문에 논의의 여지를 남겼다. 많은 지식계의 반응과 질문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것으로 웨이보뿐 아니라 논단, 블로그, 전통매체 등 많은 언론에서 제기되었다는 것이다. 한한의 지지자 뿐 아니라 반대자들도 포함된다.

그러나 대개 학술적 분석보다는 포장된 영웅주의적 논조만 보였다. 한한의 부친 한인균이 2011년 12월 24일 웨이보에

“내가 한한에게 전화하여 왜 이런 주제를 선택했는지 혁명과 민주를 말했는지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라고 했다니 그는 두편의 작은 문장에서 말한 것은 분명한 것이고 단 이러한 제목을 취한 것은 사람들이 이전에 감히 말하지 못했던 말을 대담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였고 쟁명할 수 있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 내생각도 그렇다 어떤 학자는 유감스럽게도 상황을 모르고 대담하게 학식도 적고 학술도 없는 전문가도 아닌 사람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천박하여 이러한 주제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boardid=2&id=3407198.

19) 韓寒入不了知識境界2010-08-31 11:12:00 來源: 金陵晚報(南京) 跟貼 0 條 手机看新聞

20) 石力月, 위의 논문, 28쪽.

정말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라고 했다.

易中天은 26일 웨이보에서

“한한이 공부도 적고, 학술도 모자라고 전문가도 아니다라고 한 것은 따분한 이야기이다. 당신은 공부도 많이하고 학술도 훌륭하고 매우 전문가인데 한한과 같은 이러한 만큼도 이야기하지 않는가. 오히려 한한이 공부도 적고, 학술도 모자라고 전문가도 아니므로 시대에 맞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새로운 옷은 어떤 것도 입지 않았고 단지 자신의 진실만을 적라라하게 노출시켰을 뿐이다, 당연히 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도 배워가고 있다.”

여기에는 공공여론공간(웨이보)과 지식계사이에 분열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즉 혁명, 민주, 자유는 지식인들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공공여론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며 언어의 표현방식도 지식계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분리된 인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한이 이전 한백논쟁(2006)과 문학대사비판(2008)논쟁 때 보여주는 대응방식과 매우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즉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방식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문단의 권위, 나아가 지식인집단의 권위, 학술집단의 권위에 대해 비판하고 대적하는 방식이며 자신만의 말하는 방식과 스타일이 있다고 주장하는 ‘봉쇄성’을 지니고 있다.

한삼편은 엄격한 학리가 없고 낮은 수준이지만 문화계요소로 주목된 통속적인 표현으로 논쟁을 끌어내어 중요한 문제로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 한삼편의 가치는 한한의 영향력을 통해 개혁, 민주, 자유 등 중대한 문제가 광활한 공공의 주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데 있었다.²¹⁾ 그러나 이 글은 반국수주의를 내세우고 일정한 보수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한의 변절로 느껴질 정도라고 하고 맥전도 이 한삼편 때문에 의심을 품게 되었다는 것이다.

2) 대필의혹과 질의

2012년 1월 15일 인터넷 인사 IT평론인 麥田은 **블로그**에 문장을 발표<人造韓漢 一場關於公民的鬧劇료극>, 한한은 그 부친 韓仁均, 합작인 路金波가 만들어 낸 인물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주목을 이끌어 냈다. 블로그의 많은 글이 어떻게 자동차경주 전날 쓰여질 수 있는가라고 하면서 그의 이중플레이의 마각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21) 余越, 李名亮, 상동.

바로 다음날 1월 16일 한한이 블로그에서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한한배후의 조작단이 있는 증거를 찾는 사람에게 2천 만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명백을 주장했다.

이틀만인 1월 18일 맥전이 한한에게 사과하고 한한에 대한 의혹의 증거가 부족했다고 시인했다. 이때까지 신랑웨이보에서 代筆을 관건사로 하는 내용의 웨이보글은 152,514건이었다. 한한의 글을 늘 추천했던 매체 시나블로그내에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당히 고립적이고 고정적인 한한의 팬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맥전도 대응하기 어려웠다. 22)

그런데 과학자로서 학술부패의 문제를 논리적으로 파헤쳐온 가짜적발(打假)로 지명도가 상당히 높은 방주자가 개입하면서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 역시 공공지식으로 불리워지며 많은 팬을 지니고 있고 한한과 달리 웨이보를 활용했다. 23)

웨이보를 통해 상당히 빠르고 광범위하게 청년영수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하게 하겠다는 것이 방주자의 의도였다. 그는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관점에 따라 합리적 질문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논리적 추론에 따른 질문들이었지 실제 증거를 제시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방주자는 웨이보에서 대다수 네티즌과 상호작용하고 자신의 블로그를 장웨이보 공구를 활용, 웨이보사용자들이 읽게 하면서 블로그와 연동하여 질문을 제기했다. 웨이보상에서 한한의 많은 작품들 특히 13년전 상해신개념작가대회에서 일등상을 획득한 단문 <杯中窺人>을 포함하여 대필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한한의 아버지 한인균의 작품이라고 본 것이다.

이후 논쟁은 매우 격렬하게 진행되고 웨이보를 개설하지 않은 한한은 자신의 신랑블로그를 주로 활용하였다. 1월 19일 <인조방주자>를 써서 대응했다. 한한의 첫웨이보는 수만의 전달과 평론이 이루어졌고 한한은 당시의 웨이보들을 삭제했지만 여전히 대필을 관건사로 하는 웨이보는 37098건이다.

방주자는 부단히 질문을 하였고 학생시대의 <삼중문> 의 의혹을 제기하였다. 그러자 한한은 자신의 블로그에 <正常文章一篇>을 발표하여 방주자의 대머리를 운운하며 격렬하게 공격을 했다. 방주자는 한한을 문품과 인품이 모두 바르지 못하다라고 했고 한한은 방주자에게 5宗罪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후 한한 작품의 각종 질의가 따르면서 의학각도, 연대배경등 여러 각도에서 많은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다.방주자가 삼중문의 원고에서 많은 착별자를 찾아내에 원고를 베끼면서 틀린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심증일 뿐이며 <求醫>작품의 17살짜리가 6살 많은 사람에게 샤오꾸냥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 한인균이 썼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했다. 이러한 질문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방식으로 논전은 이어갔다.

22) 余曉冬, 『微博對公共領域復興的解構』, 『新媒體』, 2011年 第 2期, 61-62쪽.

23) 한한의 1월 18일에서 8월 7일까지의 웨이보글은 800건이 넘고 장웨이보들이다.

이에 대해 한한은 블로그에 자신의 삼중문 수고를 올려 놓았지만 역시 믿지 않았다.

웨이보가 개설되지 않은 한한 대신 아버지 한인군이 웨이보상에서 대응을 했다. 논의 끝에 1월 29일 한한이 변호사를 고용하여 명예훼손으로 방주자를 고소했고 방주자가 다시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것은 당연한 권리라고 명확히 응전을 했다. 즉 한한은 법을 통해 대응을 했다. 이에 대해 지식인과 전통매체는 한한의 대응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즉 반체제적 주장, 언론의 자유를 표방하던 한한의 태도를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매체의 왜곡문제로 국면이 전환된다.

1월 29일 이미 한한이 방주자를 법적차원 제도권 차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송을 낸 것에 대해 전통매체는 토론의 방식에 초점을 맞추어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 실제 논쟁에서 나타나는 진리추구의 문제 이면에 존재하는 매체의 상업화가 가져온 폐해와 상업적 동기가 한한의 문제를 야기했다는 본질적 측면 및 공공지식인의 허위적 측면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닌가. 매체의 상업화에 따른 왜곡의 측면, 굴절의 측면을 호도하는 것이 이 단계에 나타난다.

2월 3일 한한이 블로그상에 ‘방한지쟁’이라고 명명을 한 이후 논전에 빠졌다. 그리고 소송도 철회하였고 이후에는 대중의 논전으로 전화되었다. 역시 대필을 관건사로 하는 웨이보는 659520건이었다.

3) 논쟁의 확산 과 매체의 왜곡문제

한한이 사라지고 난 뒤 방주자와 한한타도(도한)진영은 다른 사회유명인들과 함께 대필의혹을 계속 전개했다. 이것은 주로 각 진영의 팬(분사)들이 전개하게 된 것이어서 2월 3일에서 29일까지 791424건의 웨이보가 대필 관건사의 글이었다.

3월에는 한한의 결석, 방주자가 羅永浩 분쟁에 가담하는 이유 때문에 (王立軍사건:충칭 모델) 확실히 논쟁이 줄어들면서 대필을 관건사로 하는 웨이보는 247320건이었다. 그러다 4월 1일 한한이 <삼중문>의 手稿인 <光明與磊落낙>을 출판하자 방주자가 다시 질문을 제기하자 다시 논쟁이 시작되었는데 내용은 크게 차이가 없고 반복적인 것이나 3월에 비해 웨이보는 453420건으로 늘어났다. 4월 15일 도한파의 주력 황린이 한한과 한한 부친에게 사망통첩을 했다. 그러나 점차 방주자가 다른일에 관심을 갖고 한한의 수고가 성공적으로 출판이 되자 다시 가라앉게 시작하면서 5월엔 354492건, 6월에는 148392건으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2월 이후 웨이보는 한한의 반대파들에 의한 논의가 전개되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매체의 상업성과 한한의 주장에 대한 관계였다. 팽효운(彭曉雲), 崔韋平교수 등이 웨이보에서 지적한 바 있다. 즉 한한은 소비주의와 반항자의 표준 등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여 정치를 소비해서 이득을 얻은 고수이다. 금전과 상업화로 치장된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한 세태를 볼 때 안타깝다는 것 등으로 매체가 만든 정치소비주의도 시장이 만들어낸 허구적 이데올로기일뿐이고 한한의 주장은 이러한 가짜주의일뿐 실은 매체지식인과 동일한 이익추구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2. 신랑웨이보와 매체 네트워크

1) 신랑웨이보 영향력 명인의 네트워크

논쟁의 현장은 주로 웨이보였다. 웨이보가 블로그에 비해 실시간 소통, 짧은 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무한한 네트워크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적 진화로 그간 하버마스의 공공영역 형성을 중국에서 가능하게 할 중요한 매체가 될 것으로 기대해 왔다. 더욱이 중국호련망신식중심(CNNIC)에 따르면 2011년 12월 말 웨이보 사용자는 2.5억명, 네티즌 사용률 48.7%로서 도시의 주민들 상당수가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웨이보에도 여론 주도층이 존재하고 그것은 현실의 각종 직업과 영향력을 가상 공간에서도 작용하게 되는 구조로 이들이 모든 여론을 실제 좌우한다는 소수의 유희장이라는 비판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렇게 된 이유는 2009년 8월 출시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신랑웨이보의 인증명인제도를 시행한 것과 관련이 있다. 신랑웨이보는 신랑블로그의 슈퍼블로거들은 웨이보의 인증명인으로 옮김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들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이들의 인기에 힘입어 웨이보 가입자를 급증시켰다. 이러한 상업적 전략에 따라 실제 신랑 웨이보는 영향력 있는 웨이보주의 순위를 하루마다 설정해서 검색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이 웨이보상의 많은 사건들의 여론주도층으로 기능했고 이들 여론주도층들의 직업과 기능 및 가치관이 비슷하고 대개 매체인, 경제인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구디에망 등이 처음 정부에 의해 폐쇄되기도 했지만 신랑웨이보는 상업적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면서 그 영향력을 확대해 나갔다.²⁴⁾ 신랑웨이보는 명인인증(유명인 인증)기능 외에 발표(발포), 전달(轉發), 팔로우(關注), 평론이 있고 매 웨이보는 140글자를 넘지 못하는 단문으로 작성을 해야 해서 지식인만이 아닌 누구나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개할 수 있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의 팬(粉絲)이 되면서 쉽게 그를 따를 수 있다는 점에서 누구나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대개 여론지도층은 여론지도층끼리 또 보통네티즌도 보통네티즌끼리 서로 많은 관계를 형성하지만 소위 ‘의제’는 보통 여론주도층이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번 논쟁의 경우 대중들이 더 많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의 웨이보 사용자들은 웨이보를 통해 상호작용과 소통을 오락적 요소보다 더 중시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리

24) 余曉冬, 위의 논문, 62쪽.

고 이러한 경향은 웨이보사용자들이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2년 초 정부는 반체제인사의 웨이보차단을 위해 웨이보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25)

이하에서는 신랑웨이보의 논쟁참여자들의 네트워크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수십만의 관계를 살펴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인증명인들이 기본적인 여론주도층이 될 가능성을 상정하고 이들의 입장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표 1> 신랑웨이보의 方韓논쟁에 참여한 加V인증명인²⁶⁾

	加V名人	구체적 직업	팬의 수	한한 관련 웨이보수량	기본입장	지역
학자	慕容雪村	유명작가	3,894,222	14	한한 지지	북경
	何兵	中國政法大學교수	457,238	34	방주자 지지	
매체인	袁莉wsj	《華爾街日報》中文網主編	1,309,361	31	한한지지	
	思想聚焦	평론편집인	1,497,262	130	한한지지	
	六六	출판인	4,633,796	34	방주자지지	상해
기타	左小祖咒	악가수	1,182,103	36	한한 지지	북경
	羅永浩	과학계통	3,184,938	172	방주자지지	북경
	潘石屹	SOHO이사장	15,234,005	32	한한지지	북경

주: 팬수는 2013년 5월 1일 산정

2012년 10월 신랑웨이보 영향력 순위 100명, 2013년 3월 영향력 순위 100명, 4월 15일 100명을 종합하여 중복되는 영향력 순위의 웨이보주를 조사해 보면 3회 이상 지속적으로 올라 있는 경우는 47명, 2회 이상은 47명, 1회는 65명 총159명을 선정했다.²⁷⁾

논쟁 참여 영향력 웨이보주 36명 중 한한지지자는 22명으로 다양한 직종을 지녔는데 연예인, 예술가등이 7명, IT계통경제인이 5명, 경제인이 4명, 편집, 작가, 학자 등이6명 등이다. 近代史學者 章立凡(269,062,북경,18, BNC薄荷糯米葱中國設計師 洪晃 ilook(7,464,552북경24 , 작가 琢磨先生(1,142,074해외7, 와馬伯庸(1,120,767북경4-맥전과 모두 전형적 음모론, 인육수색이라고 봄), 慕容雪村(,감독 叫獸易小星 인터넷 평론인 五岳散人(877,033 북경146, 평론편집인 思想聚焦(1,554,831광저우133), 《華爾街日報》中文網주 편집袁莉wsj(1334743,북경31 , 악가수 左小祖咒(1,216,804,북경36), 가수 高曉松(15,417,468 미국,24) , 伊能靜(8,290,469 대만4) ,연극인 宁財神(4,932,679 상해21), 배우姚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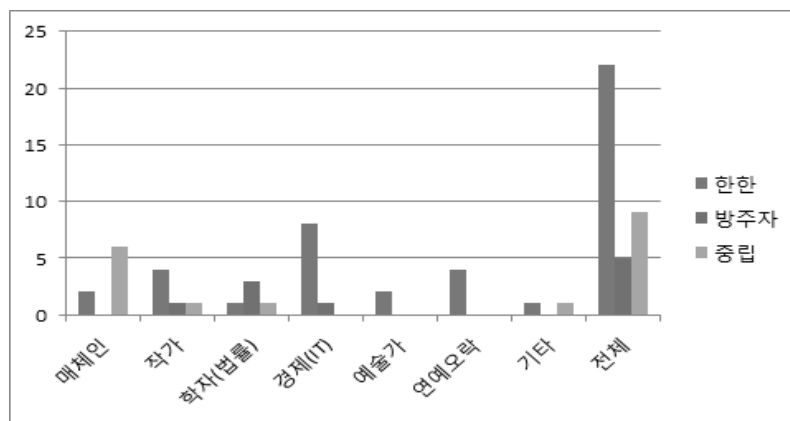
25) 조현준, 『한중마이크로블로그 이용의도에 대한 실증연구』, 『한중사회과학연구』, 제11권 제11호 통권 26호, 2013. 1, 122쪽.

26) 2012년 5월

27) 신랑웨이보 검색일자, 2013년 4월 15일

(46,249,782,북경 6)부동산任志强(14,605,259북경25- 2012년 6월 29일 주학근(상해대학역사학과교수)의 회의내용을 웨이보에 소개-“한한은 학술연구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토론의 막을 연 것이다. 스스로 혁명중의 반혁명이 되었다. 젊은이는 조급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자동차경주가 아니다,) 河夏文化傳播有限公司ceo 夏河(2,192,961북경4 , 深圳東方港灣投資管理有限공사 但斌(5,159,638심천58)-@霧滿攔江는 한한에 대한 사망위협과 같은 일이 벌어져서는 안된다, 한한은 글을 쓰는 사람일뿐이다, 테러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亭林鎮工作室의 웨이보의 내용도 소개하고 있는데 鳳凰网的vip博主, 倒韓派의 주력 黃麟이 한한과 한한의 부친에게 최후 사망통첩을 보낸 사실을 소개하고 있다. 봉황망의 웨이보는 그러므로 격한 도한파들이 4월 초에 활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4월 19일 19시 37분, 23시15분에 올렸는데 그 자체전발차수가 42816이고 이것은 179가 되었다. 주로 후반부의 내용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

인터넷매체优米网 설립자,王利芬(1,824,494북경45-한한의 자유논란 것 전하고 한한의 부친, 배우요신 등의 의견을 전하고 한한의 상당한 지지자), SOHO이사장 潘石屹(15,306,655 북경 32한한의 논혁명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 搜狐총재劉春1,722,294북경22, 6688.com창시자 天使投資人薛蛮子(11,414,694 북경,이다. 방주자 지지는 4명으로 中國政法大學法學院副院 何兵(461,133북경41,北京科技大學管理學院教授 趙曉(5,980,376 북경, 작가 六六(4,767,149상해34, 錘子科技창시인 羅永浩(3,241,940북경,, 학자, 작가, 과학자, 경제인이다. 중립자는 10명으로 매체종사자들이 방송인 閻丘露薇 鳳凰周刊의鄧飛 ,香港衛視楊錦麟, 방송인 李靜, 인터넷평론가 所長別開槍是我, 경제평론가 侯宁 , 작가 天才小熊猫 및 법률가 袁裕來 및 종교인 延參法師, 老榕(542054 북경44)이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한의 지지자가 많고 이들의 직업은 다양하므로 한한지지자 그룹은

상당히 복잡하고 중층적으로 얽혀있다. 중립자가 그다음으로 매체인들이 중립자인 경우가 많으며 방주자 지지층은 학자와 작가 등으로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수적으로 본다면 한한의 팬이 훨씬 많지만 내부에 연령층차와 지식구조와 가치의 다원성은 방주자의 지지층에 비해 훨씬 다양하고 복잡하고 실제 철저한 한한지지자가 많다고 할 수는 없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28) 즉 한한 지지자층은 다양한 층차로 한한의 형상화에 따라 형성된 역사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는 4천만 이상의 팔로워를 지닌 배우 姚晨의 웨이보로 한삼편에 대한 소개, 한한에 대한 지지와 격려, 한한을 80후, 90후세대의 이상으로 보고 소개하고 있는데 전달차수가 1000회를 넘고 있다. 평론 역시 1000회이상 이어서 일단 인증명인과 일반네티즌간의 네트워크의 존재를 알 수 있다.

2) 매체간 네트워크

웨이보상 웨이보주들간 즉 질의과의 논증네트워크를 찾아볼 수 있다.

방주자, 맥전, 팡효운, 張放, 劉戈, 蕭鷹, 張鶴慈, 陳笑黎가 초기 주자였고 이후의 기수인 中財尙超, 石毓智, eporom 등은 보통의 네티즌들과 끊임없는 증거를 논의하고 올리는 역할을 했다. 서로 의논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으로 단순히 여론지도층의 논의를 옮기는 역할만 한 것은 아니다. 질의과, 정한과, 騎牆派간의 관계도 밀접하였으며 인신공격도 마다하지 않았다. 어떠한 권위도 없이 자신들의 견해를 끊임없이 표출했던 점에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이 장기간의 논쟁으로 지속되게 만든 요인이다. 웨이보와 다른 매체와의 상호작용과 확산네트워크는 증거를 찾아나가는 과정에서 방주자를 보아도 그는 포털사이트의 인터넷논단, 블로그 등에서 찾아냈고 팡효운도 망이싸이트에서 장방과 소용은 자신의 블로그를 진지로 삼고 웨이보를 확산의 도구로 활용했다. 그러므로 인터넷 공간은 논의를 위해 복합적으로 활용되었고 연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IV. 맺음말

방한논쟁은 매체의 담론형성 네트워크의 형성과 확산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이를 통해 전통매체와 인터넷 매체의 상호작용과 관계, 특히 웨이보와 블로그 등의 여론의 생성과 확산의 긴밀한 메커니즘 및 대중매체와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매체는 시장화를 통해 여론 형성의 대중참여 공간을 확대해 주었으나 왜곡의 메커니즘을 태생적으로 지니고

28) 章玉政, 앞의 논문, 30쪽.

이러한 작용이 여론형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동시에 여론생성의 공간을 확대해 주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네트워크적 속성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한한과 방주자의 논쟁에서는 매체와 매체의 공공지식인들의 권력과 자본의 메커니즘이 진정한 공공성 즉 대중의 권리, 권익과 대치될 수 있다는 측면과 자유주의 내부의 분화와 지형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고대일본의 庭園과 祥瑞

김 은 정(충남대)

目次

- I. 머리말
- II. 神泉苑과 祥瑞
- III. 令制와 祥瑞
- IV.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의미
- V. 맺음말

I. 머리말

고대 일본에서 宮都¹⁾는 천황이 律令이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전국을 지배하는 소위 통치의 거점공간이었다. 그 중심 공간인 宮의 중추부는 內裏, 大極殿, 朝堂, 曹司, 庭園으로 구성되었으며, 그 구조와 기능은 달랐지만 고대 율령국가에서 政務, 儀式, 饗宴의 場으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들 공간은 일찍부터 宮都연구의 중심테마로 주목받았으며, 그 결과 많은 연구 성과를 낳게 되었다²⁾. 정원에 관한 연구도 그 일련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그 실태는 다른 宮의 중추부와 비교해 관련 사료가 부족하다보니 아직 해명되지 않은 부분이 많다. 여기에서 말하는 정원³⁾은 宮 안팎에 조성된 禁苑을 가리키

-
- 1) 宮都是 岸俊男이 ‘宮室·都城’, 혹은 ‘宮殿·都城을 조합해서 만든 造語이다. 본 논고에서 다루고 있는 宮都是 주로 궁실과 궁전, 즉 왕궁을 가리키는 말이다(岸俊男, 『日本の古代宮都』, 巖波書店, 1993, 2쪽).
 - 2) 關野貞, 『平城京及大內裏考』, 『東京帝國大學紀要』工科第3冊, 1907; 喜田貞吉, 『藤原京』, 觴故郷舎出版部, 1942; 八木充, 『古代日本の都』, 講談社現代新書, 1974; 鬼頭清明, 『日本古代都市論序說』, 法政大學出版局, 1977; 岸俊男, 『宮都和木簡—よみがえる古代史』, 吉川弘文館, 1977; 同, 『古代宮都の探究』, 塙書房, 1984; 同, 『日本古代宮都の研究』, 巖波書店, 1988; 同, 『日本の古代宮都』, 巖波書店, 1993; 狩野久, 『日本古代の國家と都城』, 東京大學出版會, 1990; 今泉隆雄, 『古代宮都の研究』, 吉川弘文館, 1993; 山中章, 『日本古代都城の研究』, 柏書房, 1997; 同, 『長岡京研究序說』, 塙書房, 2001; 橋本義則, 『平安宮成立史の研究』, 塙書房, 1995; 同, 『古代宮都の內裏構造』, 吉川弘文館, 2011; 直木孝次郎, 『難波宮と難波津の研究』, 吉川弘文館, 1994; 仁藤敦史, 『古代王權と都城』, 吉川弘文館, 1998; 林部均, 『古代宮都形成過程の研究』, 青木書店, 2001; 小澤毅, 『日本古代宮都構造の研究』, 青木書店, 2003 등 다수의 연구가 있다.
 - 3) 庭園은 ‘美觀·慰樂·實用 등의 목적을 위해 築山·泉山을 설치하고, 樹木과 芝生 등을 갖춘

며, 건물, 연못, 溝, 관상용 식물, 수목 등이 있는 공간을 가리킨다.

고대 일본에서 본격적인 정원의 출현은 天武·持統천황기에 보이는 白錦後苑, 御苑⁴⁾이며, 藤原宮의 내부에도 정원이 조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 그리고 平城宮 안팎에는 東院, 楊梅宮(楊梅院), 松林苑(北松林·松林·松林宮), 西池(宮), 南苑(南樹苑)이 조영되었다.

곳'을 말한다(『日本國語大辭典 第2版』, 小學館, 2001, 536쪽). 고대 일본에서 庭園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목적으로 조영된 공간을 시마(シマ, 嶋)라고 불렀다. 嶋(島와 同字)는『說文解字』(許慎撰)에 의하면 ‘海中往往有山可依止曰嶋’를 뜻하였으나, 『時代別國語大辭典 上代編』에는 嶋의訓은 시마(シマ)로, 바다에 있는 島가 아니라 강물의 흐름으로 인해 만들어진 지역, 연못과 築山이 있는 정원, 林泉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즉 본래 한자 嶋에는 정원의 의미가 없으며, 일본어의 시마(シマ)에 정원의 의미가 있었던 것이다. 고대 일본에서 시마(シマ)의 風情은『萬葉集』에 보이는 ‘嶋宮’을 통해 엿볼 수 있는데, 그곳에는 연못, 磯, 완만하게 흐르는 池溝, 새, 철쭉과 같은 관상용 식물이 있었다. 이 시마(シマ)는 岸俊彦의 精緻한 분석을 통해 그 전모가 드러났다(岸俊彦, 『嶋雜考』, 『日本古代文物の研究』, 塙書房, 1988, 275~320쪽). 고대 일본에서 정원을 뜻하는 용어에는 苑이 있다. 문헌사료에서 苑의 용례를 살펴보면, 天平 16년(744)에 大伴家持가 고향에서 읊은 노래에, ‘苑’에 꿀꽃이 피어 있다는 구절이 보인다(『萬葉集』 권 17-3918). 그리고『懷風藻』에 大津皇子가 읊은 오언 ‘春苑言宴’ 한 수에 ‘開衿臨靈沼, 遊目步金苑’과 大學博士 田辺史百枝가 읊은 오언 ‘春苑, 應詔’ 한 수에 ‘松風韻添詠, 梅花薰帶身’이라는 구절을 보이는데, 이로 보아 苑에 높이 있고 그 주변에 소나무, 매화꽃과 같은 관상용 식물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日本書紀』天武천황 14년(685) 11월 戊申(6일)條에 보이는 ‘白錦後苑’의 유력한 후보지로써 飛鳥淨御原宮의 내곽 북서쪽에 위치한 동서 100미터 이상, 남북 230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는 飛鳥京跡苑池유구가 상정된다. 그리고 平城宮 북쪽에는 松林苑이 소개하였는데, 남북 1.2 km, 동서 1km에 이르는 광대한 시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松林苑 내에는 내곽으로 보이는 남북 210미터, 동서 200미터로 된 정방형의 건물지, 猫塚苑池, 八上池, 水上池 등이 있었다. 또한 平城宮에는 소개지는 불분명하지만 南苑이 있었으며, 『續日本紀』를 보면 그곳에 樹木, 연못, 넓은 空閑地, 건물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平安京에는 神泉苑이 조영되었는데, 苑 내에는 乾臨閣, 左右閣, 釣臺, 瀧殿, 馬圻殿과 같은 건물과 그 중간에 섬이 있는 연못이 설치되어 있었다. 神泉苑은 천황의 觀魚宴, 避暑, 祈雨御修法, 遊樂의 場이었을 뿐만 아니라 美作國과 大宰府에서 진상한 사슴과, 供御에 사용될 물고기가 사육되었다. 결국 고대 일본에서 苑은 건물, 넓은 空閑地, 연못, 관상용 식물, 樹木, 禽獸 등이 있는 소위 정원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고대 일본에서 정원을 가리키는 용어를 생각함에 있어 주의해야 될 용어가 園이다. 園의 사용형태를 보면, 桃, 李가 피어 있거나(『萬葉集』 권19-4139, 4140), 또는 大郡宮 주변에 있는 園에 白雉를 풀어 놓았던 것으로 보아(『日本書紀』白雉 元年(650) 2月 戊寅條), 정원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園의 용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園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園(‘園’과 同字)은『說文解字』에 ‘園, 所以樹果也’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樹果’ 즉 과수원을 의미하는 용어였다. 또한『和名類聚抄』에 ‘園圃曾乃 一云曾乃布, 所以種蔬菜也’라고 쓰여 있어, 園을 소노(ソノ)라고 읽었으며, 거기에서 蔬菜를 재배하고 있었다. 이러한 園의 의미는『令集解』田令 桑漆條의 義解에 “園地에 뽕나무와 옷나무를 심었다”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4)『日本書紀』 권29 天武천황 14년 (685) 11월 戊申(6일)條; 『同』 권30 持統천황 5년(691) 3월 丙子(5일)條.

5) 후보지로서 飛鳥淨御原宮의 북서쪽에 위치한 飛鳥京跡苑池유구, 혹은 藤原宮의 북동쪽에 위치한 원지유구가 상정된다.

平城宮 정원은 平城宮을 중심으로 東院지구 정원은 동쪽으로 돌출한 부분의 남동쪽에, 松林苑은 북쪽에, 西池는 중앙구 大極殿지구 북서쪽에 위치하며, 南苑도 平城宮 남서쪽에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상정된다. 이러한 平城京 정원의 스타일은 松林苑을 제외하면 대체로 長岡京에 계승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헌자료와 木簡을 통해 확인 가능한 長岡京 정원에는 嶋院과 南園이 있다⁶⁾. 그리고 平安京에는 南으로는 2條, 西로는 大宮, 北으로는 3條, 東으로는 壬生이라는 큰 도로로 둘러싸인 남북 4町, 동서 2町, 합계 8町의 규모를 갖는 神泉苑이 유일하게 조성되었다.⁷⁾

고대 일본에서 宮 안팎에 조성된 정원은 천황의 유락과 감상의 場이었을 뿐만 아니라, 통치자에 따라 사용빈도의 차이는 보이지만 의식과 향연의 場으로 사용되었다⁸⁾. 또한 정원은 供御를 위한 야채·과일 등이 재배되는 곳이기도 하였다⁹⁾. 그러나 고대일본의 정원은 비단 이와 같은 사용형태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즉 平安京의 神泉苑은 諸國에서 진상된 祥瑞가 서식하는 場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이다. 원래 祥瑞는 고대 중국에서 漢代 이후 陰陽五行思想과 天人相關思想에 입각해 발달한 사상으로, 그것의 출현은 통치자의 德·不德을 나타내는 자연계의 표시였다. 고대 일본에서도 祥瑞는 改元, 即位, 入太子 등의 정치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통치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¹⁰⁾.

6) 嶋院의 소재지는 長岡宮 남서쪽 向日구릉 남서 끝자락에 위치한 段丘崖 아래에 옛 小畑川가 있었던 것을 근거로 右京 3條 1坊과 左京 3條 2坊 1町 남쪽에 있는 SD801801에서 출토된 ‘嶋院’ 목간을 근거로 左京 3條 2坊 1町이 추측되고 있다(堀裕, 『長岡京造營組織と左京三條二坊一·八·九町』, 『長岡京木簡』2, 財團法人向日市埋藏文化財センター·向日市教育委員會, 1993). 그리고 南園은 平安京 神泉苑과의 위치 관계에서 勅旨所·近衛府에 하사한 옛 長岡京 左京 3條 1坊 8·9·10·15·16町으로 보는 견해와(吉野秋二, 『神泉苑の誕生』, 『史林』88-6, 2005, 1~19쪽.), 옛 小畑川 근처에서 연못, 늪 상태의 유구가 검출되고 內廷관사 계통의 軒瓦가 출토됨에 따라 左京 4條 1坊 10·11町 근처로 보는 견해가 있다(國下多美樹, 『長岡京の庭園-離宮と園池司』, 『研究論集17平安時代庭園の研究-古代庭園研究II-』(奈良文化財研究所學報第86冊), 2011, 126~127쪽). 이 밖에도 長岡京에는 南院, 猪隈院, 東院, 木蓮子院, 山桃院과 같은 離宮이 다수 존재하였으며, 山桃院은 그 명칭으로 보아 平城宮의 楊梅宮을 계승한 離宮으로 생각된다.

7) 『拾芥抄』『拾芥抄』卷中 宮城部第19 諸院 “神泉苑, 天子遊宴所, 以近衛次將爲別當, 乾臨閣, 謂之正殿, [金岡壘石], 二條南, 大宮西八町, [三條北壬生東] 善女龍王, 常見此所, 上代者有公卿別當, 『者』長保年中道綱(卿)補之”

8) 金銀貞, 『聖武朝の特質についての一考察-節會の分析から-』, 『歴史』119, 2012, 1~26쪽; 同, 『平城宮 庭園의 使用形態와 그 特徵』, 『백제연구』57, 2013, 178~202쪽.

9) 『令義解』職員令 園池司條 “正一人, 掌諸苑池, 謂, 凡苑池之所有, 有可以供御者, 皆司其地, 令不浪侵也, 種殖蔬菜樹菓 謂, 草可食者, 皆爲蔬菜, 樹菓猶菓子, 其種殖二字, 兼屬蔬菜樹菓也, 等事, 佑一人, 令史一人, 使部六人, 直丁一人, 園戶”에서 알 수 있듯이, 정원을 의미하는 ‘苑’에서 야채와 과일 등의 식자재가 재배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東野治之, 『飛鳥奈良朝の祥瑞災異思想』, 『日本歴史』259, 1969; 福原榮太郎, 『祥瑞考』, 『ヒストリア』65, 1974; 重松明久, 『古代における祥瑞思想の展開と改元』, 『古代國家と宗教文化』, 吉川弘文館, 1986; 大隅清陽, 『儀制令における禮と法-律令法系の構造的性質をめぐって-』, 笹山晴生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律令制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1993; 茂木直人, 『祥瑞に關する制度の實

또한 祥瑞는 출현 지역의 정치적·경제적인 불상사 혹은 혼란을 은폐·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¹¹⁾. 이와 같은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祥瑞가 神泉苑에 서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정원의 실태를 이해함에 있어 간과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神泉苑의 역사적 의미를 해명하기 위해, 먼저 제Ⅱ장에서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사례를 검토하여 祥瑞가 神泉苑에 등장한 시기를 확정해 보고자 한다. 제Ⅲ장에서는 養老儀制令 祥瑞條와 六國史의 검토를 통해 令制下에서 祥瑞가 어떻게 진상되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에서 드러난 결과를 통해,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본 발표가 神泉苑 나아가서 고대 일본에 조영된 정원의 일본적인 특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Ⅱ. 神泉苑과 祥瑞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사례를 검토하기에 앞서, 먼저 祥瑞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자.『延喜式』 권21 治部省式 祥瑞條에는 祥瑞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대략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大瑞에는 景星, 慶雲, 黃·眞人, 河精, 麟, 鳳, 鸞, 比翼鳥, 同心鳥, 永樂鳥, 富貴, 吉利, 神龜, 龍, 騶虞, 白澤, 神馬, 周帀, 角端, 解廌, 比肩獸, 六足獸, 茲白, 白象, 一角獸, 天鹿, 籠封, 猨耳, 豹犬, 露犬, 玄珪明珠, 玉英, 山稱萬歲, 慶山, 山車, 象車, 鳥車, 根車, 金車, 朱草, 屈軼, 蓂莢, 平露, 蓬甫, 蒿柱, 金牛, 玉馬, 玉猛獸, 玉甕, 神鼎, 銀甕, 瓶甕, 丹甕, 醴泉, 浪井, 河水清, 河水五色, 江水五色, 海水不揚波의 59 종류.

上瑞에는 三角獸, 白狼, 赤羆, 赤熊, 赤狡, 赤兔, 九尾狐, 白狐, 玄狐, 白鹿, 白麕, 兕, 玄鶴, 青鳥, 赤鳥, 三足鳥, 赤鷲, 赤雀, 比目魚, 甘露, 廟生祥木, 福草, 禮草, 萍實, 大貝, 白玉赤文, 紫玉, 玉羊, 玉龜, 玉牟, 玉典, 玉璜, 黃銀, 金勝, 珊瑚鉤, 駭鷄犀及戴通, 璧琉璃, 鷄趣의 38 종류.

中瑞에는 白鳩, 白鳥, 蒼鳥, 白翠, 白雉, 雉白首, 翠鳥, 黃鵠, 小鳥生大鳥, 朱鴈, 五色鴈, 白雀, 赤狐, 黃羆青熊, 玄貉, 赤豹, 白兔, 九眞奇獸, 流黃出穀, 澤穀生白玉, 瑯玕景, 碧石潤色, 地出珠, 陵出黑丹, 威委, 威綏, 延喜, 福並, 紫脫常生, 賓連達, 善茅, 草木長生の 32 종류.

態』, 『駒澤史學』 63, 2004 등이 있다.

11) 西別府元日, 『祥瑞出現と國司行政-承和初年佐渡國の事例を中心として』, 『日本歴史』 556, 1994, 1~18쪽.

下瑞에는 柜杯, 嘉禾, 芝草, 華平, 人參生, 竹實滿, 椒桂合生, 木連理, 嘉木, 戴角麕鹿, 駁麕, 神雀, 冠雀, 黑鳩, 白鵠의 15 종류가 있다.

그리고 이하는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 관련 기사이다.

- ① 『日本文德天皇實錄』 권8 齊衡 3년(856) 12월 丁酉(28일)條
美作國獻**白鹿**, 詔放神泉苑.
- ② 『日本三代實錄』 권15 貞觀 10년(868) 11월 丁巳(28일)條
大宰府獻**白鹿一**, 放神泉苑.
- ③ 『日本三代實錄』 권30 元慶 원년(877) 3월 甲辰(3일)條
備後國獲**白鹿一**而獻之, 雪白可愛, 奉覽太上天皇, 後放於神泉苑.
- ④ 『日本三代實錄』 권43 元慶 7년(883) 5월 辛卯(26일)條
神泉苑裏舊有放鹿, 是日, 生**白鹿**, 遠客來朝, 得此禎祥, 豈不懿歟.
- ⑤ 『日本三代實錄』 권50 仁和 3년(887) 7월 丁丑(6일)條
是日, 綾綺·仁壽兩殿之間, 獲**白龜一**, 放神泉苑.
- ⑥ 『扶桑略記』 권제26 裏書 延長 年(928) 9월 丙子(4일)條
天台山捕送**白鹿二頭**, 依勅令放神泉.

사료 ①을 보면 文德천황 3년(856) 12월에 美作國에서 上瑞인 白鹿을 진상하였는데, 이에 詔를 내려 神泉苑에 白鹿을 풀어 놓았으며, ②는 清和천황 10년(868) 11월에 大宰府가 진상한 白鹿 한 마리를 神泉苑에 풀어 놓았다. ③은 陽成천황 원년(877) 3월에 備後國에서 白鹿 한 마리를 잡아서 진상했는데, 눈처럼 하얀 사슴이 너무나 사랑스러워 太上天皇인 清和上皇에게 보인 후에 그것을 神泉苑에 풀어 놓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사료 ④는 이전 神泉苑 뒤쪽에 풀어 놓은 사슴¹²⁾이 白鹿을 낳았는데, 마침 渤海의 사신 裴頌 등이 來朝한 것과 때를 같이 한다고 판단하여 白鹿을 吉兆로 간주하였다. ⑤는 內裏의 綾綺殿과 仁壽殿의 사이에서 잡은 白龜 한 마리를 神泉苑에 풀어 주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보이는 白龜는 治部省式의 祥瑞 리스트에는 보이지 않지만, 白龜가 奈良시대에 神龜로 인식되어 大瑞로 취급되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祥瑞로 판단해도 무관할 것이다. ⑥

12) 『類聚國史』 권194 渤海 天長 원년(824) 4월 辛丑(22일)條 “幸神泉苑, 試令渤海狗遂苑中鹿, 中途而休焉”, 『日本三代實錄』 권25 貞觀 16년(874) 3월 庚午(11일)條 “麋鹿一入宮城內, 於神祇官北門頭, 有人捉得, 以放神泉苑”을 보면, 神泉苑에 사슴 등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보이는 사슴은 일반적인 獸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祥瑞인 白鹿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은 醍醐천황 6년(928)에 天臺山 즉 比叡山에서 잡은 白鹿 두 마리를 神泉苑에 풀어 놓았다는 내용이다.

이상의 내용으로 보아 神泉苑에 출현한 祥瑞는 대부분 白鹿이었으며¹³⁾, 그 시기는 文德천황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은, 祥瑞가 처음으로 정원에 출현한 것이 平安京의 神泉苑이 아닌, 孝德천황기에 大郡宮 주위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園’이었다는 것이다. 白雉 원년(650) 2월에 穴戶國司 草壁連醜經이 國造首의 一族인 贅가 麻山에서 잡은 白雉를 진상하였는데, 이에 대해 百濟君 豐璋 등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 가운데, 僧旻法師가 白雉의 출현은 왕의 치세와 德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결국 이 白雉는 祥瑞로 인정되어 大郡宮 주변의 園에 풀어 놓게 되었다¹⁴⁾. 그리고 天武천황 10년(681) 9월에 周防國에서 진상된 赤龜를 嶋宮의 연못에 풀어 놓은 사례가 있다¹⁵⁾. 嶋宮은 蘇我馬子の 저택으로 사용되었던 곳으로, 天武천황 10년(681) 당시에는 草壁황자의 宮으로 사용되었다. 여기에서 왜 赤龜를 天武천황의 正宮인 飛鳥淨御原宮의 苑池가 아닌 草壁황자가 거주했던 嶋宮의 연못에 풀어 놓았는지는 알 수 없으나¹⁶⁾, 어쨌든 天武천황기에 祥瑞를 정원에 풀어 놓은 것이 사실인 것 같다.

孝德·天武천황기에 보이는 두 사례와 神泉苑의 관계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은 祥瑞가 정원에 출현한 사례는 天武천황 10년(681) 이후 齊衡 3년(856)에 美作國에서 진상된 白鹿이 神泉苑에 등장할 때까지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그 사이 祥瑞가 진상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지면상 관련 기사를 모두 제시할 수는 없지만, 이 시기에 약 190회에 걸쳐 祥瑞가 진상되었으며, 그 중에는 白鹿, 白雉, 白龜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세기~9세기 중반까

13) 本田明日香은 고대 일본에서 白色 계통의 祥瑞가 압도적으로 많은 이유는, 왕권·권력과 白色이 깊은 관련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同, 『日本古代における祥瑞の色とその意義—色と權力表徴』, 『日本歴史』 650, 2002. 27쪽).

14) 『日本書紀』 白雉 원년(650) 2월 庚戌朔 戊寅(9일)條 “穴戶國司草壁連醜經, 獻白雉曰, 國造首之同族贅, 正月九日, 於麻山獲焉. 於是問諸百濟君, 百濟君曰, 後漢明帝永平十一年, 白雉在所見焉, 云云. 又問沙門等, 沙門對曰, 耳所未聞, 目所未覩. 宜赦天下, 使悅民心. 道登法師曰, 昔高麗欲營伽藍, 無地不覽, 便於一所白鹿徐行. 遂於此地營造伽藍, 名白鹿園寺, 住持佛法. 又白雀見于一寺田庄. 國人僉曰, 休祥. 又遣大唐使者, 持死三足鳥來, 國人亦曰, 休祥. 斯等雖微, 尚謂祥物. 況復白雉. 僧旻法師曰, 此謂休祥足爲希物. 伏聞, 王者旁流四表, 則白雉見. 又王者祭祀不相踰, 宴食·衣服有節則至, 又王者清素, 則山出白雉. 又王者仁聖則見. 又周成王時, 越裳氏來獻白雉曰, 吾聞, 國之黃耆曰, 久矣無別風淫雨, 江海不波溢三年於茲矣. 意中國有聖人乎. 蓋往朝之. 故重三譯而至. 又晋武帝咸寧元年, 見松滋, 是即休祥. 可赦天下, 是以白雉使放于園”

15) 『日本書紀』 天武천황 10년(681) 9월 辛丑(5일)條 “周芳國貢赤龜, 乃放嶋宮池”

16) 飛鳥淨御原宮의 부속 원지로 판단되는 飛鳥京後苑池跡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문헌사료의 첫 출현이 『日本書紀』 天武천황 14년(685) 11월 戊申(6일)條 “幸白錦後苑”인 것으로 보아, 飛鳥京後苑池가 天武천황 10년(681)에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

지 祥瑞를 정원에 풀어 놓았다는 기사는 전무하다. 관련 기사가 생략된 것일까? 아니면 그 어떠한 이유가 있었던 것일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와 孝德·天武천황기에 보이는 그것의 의미를 이해하고, 나아가 文德천황기부터 神泉苑에 祥瑞가 출현하게 된 배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작업일 것이다.

Ⅲ. 令制와 祥瑞

제Ⅱ장에서 도출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祥瑞이 발견되어 그것이 朝廷에 진상되
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기본이 되는 史料가 바로 養老儀制
令 祥瑞條이다.

⑦ 『令義解』卷6 儀制令 祥瑞條 17)

①凡祥瑞應見，若麟鳳龜龍之類，依圖書合大瑞者，隨即表奏(謂，祥瑞所出之官司，勘據圖書，合大瑞者，不待元日，即時表奏)，其表唯顯瑞物色目及出處所，不得苟陳虛飾，徒事浮詞，上瑞以下，並申所司(謂，申治部，凡上瑞以下，皆先申官，官府治部，而此稱申所司者，據其應掌驗之所也)，元日以聞，②其鳥獸之類，有生獲者，仍遂其本性，放之山野(謂，凡麟甲羽毛，產自山水之氣，飲啄飛栖，不服人之訓養，故放令遂生，若有訓人哈哺，保其喘息，雖在籠紲，而不可觸死者，皆待報至，然後放之也)，餘皆送治部，若有不可獲(謂，雲氣之類，不可親附者)，及木連理之類，不須送者，所在官司，案驗非虛，具畫圖上，③其須賞者，臨時聽勅

이 條文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祥瑞의 발견, 勘當, 奏上(①), 둘째는 治部省에 진상되는 祥瑞의 실태(②), 셋째는 褒賞(③)이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麟·鳳·龜·龍과 같은 祥瑞가 출현했을 때는 圖書 즉 孫氏瑞應圖, 熊氏瑞應圖와¹⁸⁾ 대조하여 그 진위를 판단한 후에, 大瑞인 경우에는 즉시 瑞의 종류와 출현지역을 기록하여 表를 올려야 했다. 그리고 上瑞 이하인 경우에는 所司 즉 治部省에 알린

17) 이 條文은 『唐令拾遺』 儀制令 復舊 제12條 [開元 7년·同 25년令] 와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보아, 唐制를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唐令拾遺』 儀制令 復舊 제12條 [開元 7년·同 25년令] “諸祥瑞應見，若麟·鳳·龜·龍之類，依圖書合大瑞者，隨即表奏。其表惟言瑞物色目及出處所，不得苟陳虛飾。告廟頒下後，百官表賀。其諸瑞並申所司，元日以聞，其鳥獸之類，有生獲者，各隨其性，放之山野。餘送太常。若不可獲，及木連理之類，不可送者，所在官司，案驗非虛，具畫圖上”

18) 水口幹記, 『延喜治部省式祥瑞條における『修文殿御覽』の利用について』, 『日本古代漢籍受容の史的研究』, 汲古書院, 2005. 『令集解』 同條 跡說에 ‘圖書, 謂瑞圖書, 此非禁書之例故, 國群亦合有耳’ 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보아, 각 國郡에 瑞書가 소장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元日朝賀 때에 천황에게 보고해야 했다. 즉 令文에 보이는 祥瑞의 진상 절차는 大瑞는 發見者→國司→太政官→天皇, 上瑞 이하는 發見者→國司→太政官→治部省→太政官(元日)→天皇 순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 과정은 養老 4년(720) 1월 1일의 辯官口宣에 “依改常例, 太政官申符瑞者, 大瑞已下, 皆悉省加勘當, 申送辯官, 但上瑞已下, 更造奏文, 十二月終進太政官”¹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가 일어났다. 종래에는 祥瑞를 발견했을 때는 ‘隨卽表奏’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다. 그러나 養老 4년(720) 이후에는 모든 祥瑞는 治部省이 勘當을 한 후에 辯官으로 보내졌고, 上瑞 이하는 元日朝賀 때에 사용할 奏文을 작성하여 12월 말까지 太政官에 보내야 했다. 즉 大瑞 이하는 發見者→國司→太政官→治部省→弁官→(太政官)→天皇, 上瑞 이하는 發見者→國司→太政官→治部省→太政官(12월 말)→天皇 순으로 보고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왜 養老 4년(720)에 治部省이 辯官에 祥瑞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야 했던 것일까? 그 이유는 大瑞일 경우에 즉시 表를 올리는 보고 형태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表奏라는 보고 형태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國司를 통해 진상된 모든 祥瑞를 治部省이 勘當한 후에, 辯官을 경유하여 太政官에 보고케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大隅清陽은 “황제의 정치적 주도권이 확립된 율령체제 아래에서, 동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祥瑞의 처리를 기본적으로 관료기구=所司에 위임하였으며, 황제는 그것을 중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료기구가 祥瑞를 처리할 때에 기준이 되는 祥瑞의 순위별 목록이 국가의 기본법인 습이 아니라 諸司의 시행세칙인 式에 규정되어 있었던 것은, 이 제도가 祥瑞의 보고라는 이데올로기적인 정치활동을 관료기구가 관리·통제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 두려고 했던 것이다”²⁰⁾고 지적하였는데, 정곡을 찌르는 견해이다. 즉 養老 4년(720)의 辯官口宣은 祥瑞의 진상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폐단의 방지뿐만 아니라, 祥瑞를 처리함에 있어 官人을 관여시켜 그 과정을 보다 객관화시키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이 條文은 治部省에 진상된 祥瑞의 실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鳥와 獸를 산 채로 잡았을 경우에는 그 본성에 따라 산과 들에 놓아 주고, 그 나머지를 治部省에 보냈다. 그리고 만약 잡을 수 없거나 木連理와 같이 운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官司 즉 諸國의 國司가 진위 여부를 확인한 후에, 전부 그림을 그려서 보고해야 했다. 여기에서 발표자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其鳥獸之類, 有生獲者, 仍遂其本性, 放之山野”라는 부분이다. ‘鳥獸之類’에 대해 義解는 鱗·甲·羽·毛 비늘, 딱딱한 껍질, 깃털, 털이 있는 것을 가리키며, 이것들은 자연의 기운을 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길들인다고 해서 따르지 않는다. 이로 인해 放生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19) 『令集解』 권28 儀制令 祥瑞條.

20) 大隅清陽, 『儀制令における礼と法—律令法系の構造的性質をめぐって—』, 笹山晴生先生還曆記念會編, 『日本律令論集 上卷』, 吉川弘文館, 1993, 536~537쪽.

또한 사람이 음식으로 길들여 그 생명을 보존시켜 대바구니와 고삐로 매어 둔다고 해도, 만지거나 해서 죽여서는 안 되며, 모두 (太政官)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것을 풀어주어야 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살아 있는 鱗·甲·羽·毛의 祥瑞를 잡았을 경우, 결국 이것들은 모두 산과 들에 풀어 준 셈이다. 그리고 治部省으로 보낸 祥瑞 가운데 雲氣와 木連理 즉 구름, 물, 나무, 풀은 실제 대신에 그림을 그려 보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¹⁾.

六國史에 보이는 祥瑞의 진상 형태를 보면 대부분 ‘獻白鹿’²²⁾, ‘獻白龜’²³⁾, ‘獻白雉’²⁴⁾, ‘獲神馬’²⁵⁾, “飛驒國言, 慶雲見”²⁶⁾, “武藏國言, 有木連理”²⁷⁾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 慶雲이나 木連理의 진상이 ‘見→言’이나 ‘有→言’으로 표현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祥瑞를 발견한 자가 國司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다시 國司가 治部省에 전달하는 방법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그에 반해 白龜, 白雉, 神馬 등은 ‘獻’(혹은 잡은 후에 獻함)자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만 令制가 제 역할을 발휘하고 있었던 8세기~9세기 초반의 사례인 점을 감안한다면, ‘獻’의 의미는 祥瑞의 종류와 출현지역을 기록한 表를, 國司가 太政官에 奏上한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닐까 한다.

결국 養老儀制令 祥瑞條의 검토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令制下에서 살아 있는 鱗·甲·羽·毛의 祥瑞 자체가 진상되는 일은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추론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8세기~9세기 중반에 祥瑞가 정원에 출현한 사례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오히려 文德천황기에 祥瑞가 神泉苑에 출현한 것이 異例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令制下의 실태를 감안할 때, 孝德·天武천황기에 祥瑞를 정원에 풀어 놓은 행위를 크게 부각시킬 필요는 없으며, 그것은 정원에서 禽獸 등이 사육되고 있었던 사용 형태 내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21) 『令集解』 권28 儀制令 祥瑞條 ‘不可獲’와 ‘及木連理之類’에 대해 古記는 전자는 구름과 물, 후자는 풀과 나무를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延喜式』 권21 治部省式 祥瑞를 보면 木連理은 ‘仁木也, 異本同枝, 或枝旁出, 上更還合’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22) 『續日本紀』 권제3 慶雲 3년(706) 7월 己巳(28일)條 “周防國守從七位下引田朝臣秋庭等, 獻白鹿”

23) 『續日本紀』 권제19 天平勝寶 5년(753) 11월 己亥(2일)條 “尾張國獻白龜”

24) 『續日本紀』 권제34 寶龜 8년(777) 11월 丙寅(18일)條 “長門國獻白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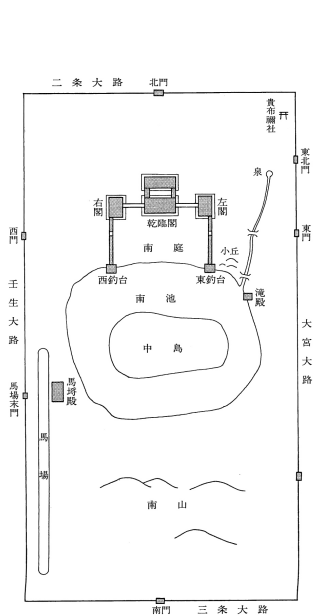
25) 『續日本紀』 권제13 天平 11년(739) 3월 癸丑(21일)條 “得大宰少貳從五位下多治真人伯等解僂, 對馬嶋目正八位上養德馬飼連乙麻呂所獲神馬, 青身白髮尾. 謹檢符瑞圖曰, 青馬白髮尾者, 神馬也”

26) 『續日本紀』 권제3 寶龜 9년(778) 7월 癸丑(9일)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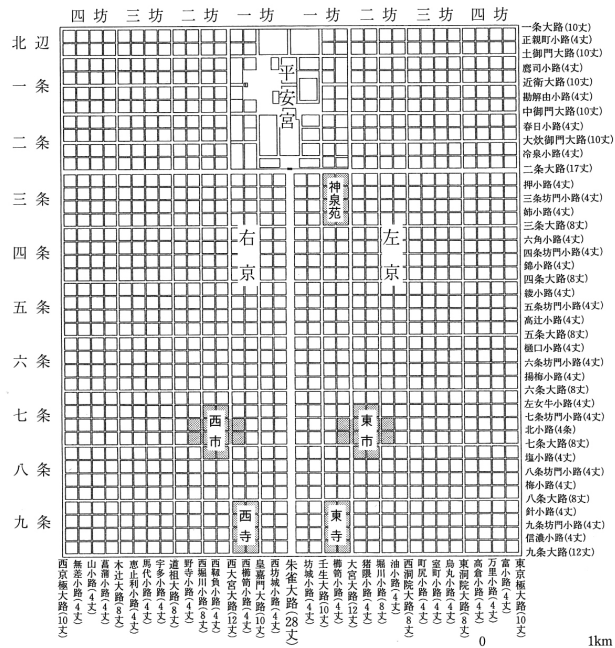
27) 日本後紀』 권제12 延曆 23년(804) 1월 丁丑(1일)條 “武藏國言, 有木連理, 近江國獻白雀”, 『續日本紀』 권제11 天平 3년(731) 1월 庚戌(1일)條에는 “美作國獻木連理”라고 보인다. 『日本後紀』 권제24 弘仁 5년(814) 8월 辛酉(1일)條 “大和國八嶋寺有嘉禾, 一莖十八穗”

IV.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의미

平安京의 神泉苑은 南으로는 2條, 西로는 大宮, 北으로는 3條, 東으로는 壬生이라는 큰 도로로 둘러싸인 남북 4町, 동서 2町, 합계 8町의 정원이다²⁸⁾ 【도 1】. 神泉苑의 위치, 규모, 구조는 西田直二郎과 太田靜六의 精緻한 문헌사료의 검토와 古圖의 고증을 통해 그 면모가 밝혀졌다²⁹⁾. 【도 2】는 太田靜六이 문헌사료와 古圖를 바탕으로 嵯峨천황기의 神泉苑을 복원한 것이다.



【도 2】 神泉苑 복원도
(嵯峨천황의 弘仁頃)



【도 1】 平安京 전체도

또한 左京職이 2條 大路에 인접한 2町을 제외한 10町 주위에 1町마다 7그루의 버드나무를 심었던 것으로 보아³⁰⁾, 神泉苑의 담장 밖에는 버드나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平安京의 神泉苑은 平城京과 長岡京의 정원과 비교했을 때 확연히 구별되었다. 예

28) 『拾芥抄』拾芥抄』卷中 宮城部第19 諸院 “神泉苑, 天子遊宴所, 以近衛次將爲別當, 乾臨閣, 謂之正殿, [金岡壘石], 二條南, 大宮西八町, [三條北壬生東] 善女龍王, 常見此所, 上代者有公卿別當, 『者』長保年中道綱(卿)補之”
 29) 西田直二郎, 『神泉苑』, 『京都史蹟の研究』, 吉川弘文館, 1961, 3~63쪽; 太田靜六, 『神泉苑の研究』, 『寢殿造の研究』(新裝版), 吉川弘文館, 2010, 45~66쪽.
 30) 『延喜式』 권41 彈正台式 “凡神泉苑廻地十町内, 令京職栽柳, 町別七株”, 『同』, 『凡神泉大學廻地, 令京職掃除之, 穀倉院亦同』, 『延喜式』 권42 左右京職式 神泉柳條 “凡神泉苑廻地十町内, 令京職栽柳, 町別七株”

를 들어 宮 안팎에 다수 존재했던 정원이 平安京에서는 유일하게 神泉苑 한 곳만 조영되었다는 점. 반드시 단일한 공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던 정원이³¹⁾, 神泉苑 안에 모든 정원시설이 설치되었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시설이 등장했는데, 즉 正殿인 乾臨閣의 左右에 閣을 만들고, 左右閣은 行廊에 의해 釣臺와 연결되었다. 乾臨閣과 연못이 한 세트가 되어 사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乾臨閣은 그 명칭으로 보아 중국식 건물임에 틀림없고, 閣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2층 이상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乾臨閣의 용마루 양쪽 끝에 鷗尾를 올린 점으로 보아 지붕은 기와로 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구조를 갖는 神泉苑은 平城宮과 長岡京에 설치된 諸정원이 천황의 감상과 유락의 場, 節會를 포함한 연중행사의 場으로 사용되었던 것과 달리, 草創期에는 오로지 遊覽과 宴會를 목적으로 조영한 桓武천황의 專有 공간으로 사용되었다³²⁾. 그러나 神泉苑은 9세기 중반 이후가 되면 그 성격을 완전히 달리한다. 【표 1】은 桓武천황기~光孝천황기에 보이는 神泉苑을 포함한 宮 중추부의 사용형태를 정리한 것이다³³⁾. 桓武천황기에 神泉苑은 遊覽, 宴會의 場으로 사용되었으나, 平城천황기와 嵯峨천황기에 이르면 7월 7일 節會와 9월 9일 重陽의 場이라는 의미가 더해진다. 이러한 양상은 淳和천황기에 遊釣가 추가되었지만 기본적으로 계승되었다. 仁明天황기에 이르면 水禽의 遊獵가 새롭게 등장한다. 그리고 文德천황기부터 靈場으로 사용되는데, 흥미롭게도 齊衡 3년(856)에 美作國에 진상한 白鹿을 神泉苑에 풀어 놓은 것도 바로 이 때였다.

神泉苑은 齊衡 3년(856)에 주술을 부리는 靈驗한 자가 출현한³⁴⁾ 이후, 怨靈·疫神을 慰撫하는 御靈會³⁵⁾, 祈雨를 위한 法會³⁶⁾의 場으로 사용되었다. 주로 천황의 감상과 유락,

31) 東院지구 정원은 東院(楊梅宮)과 남동쪽 모서리에 위치한 원지 SG5800을, 西池는 佐紀池 下層의 연못 유구와 그 남쪽에 담으로 둘러싸인 西池宮을 포함한 공간을 의미했다.

32) 金銀貞, 『神泉苑에 보이는 고대 한반도 庭園의 영향』(제64회 충남대학교 백제연구 공개강좌 발표문, 2013).

33) 平安宮 중추부는 행사에 따라 사용법이 구분되었다. 內裏는 元日 節會, 朝堂院은 大嘗祭·伊勢大神宮의 奉幣, 豐樂院은 大嘗會·1월 7일 節會·1월 16일 節會·1월 17일 大射, 平城천황기 이후의 神泉苑은 7월 7일 節會·9월 9일 重陽, 馬圻殿은 1월 17일 大射, 5월 5일 節會의 場으로 사용되었다. 이것은 平安宮 중추부가 처음부터 용도에 맞게 계획적으로 조영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神泉苑도 마찬가지였다는 뜻도 된다.

34) 『日本文德天皇實錄』 권8 齊衡 3년(856) 8월 辛未(1일)條 “別遣勅使於神泉苑, 試諸持呪有驗者聽度”

35) 『日本三代實錄』 권7 貞觀 5년(863) 5월 壬午(20일)條 “於神泉苑修御靈會 …… 所謂御靈者, 崇道天皇, 藤原夫人, 及觀察使, 橋逸勢, 文室宮田麻呂等是也, 並坐事被誅, 冤魂成厲, 近代以來, 疫病繁發, 死亡甚衆, 天下以爲, 此灾, 御靈之所生也……”, 『同 甲申(22일)條 “天皇御雅院, 召見神泉苑御靈舞童會”

36) 『日本三代實錄』 권7 貞觀 17년(875) 6월 丙寅(15일)條 “屈六十僧於大極殿, 限三箇日, 轉讀大般若經, 十五僧於神泉苑, 修大雲輪請雨經法, 並祈雨也”, 『同』己巳(18일)條 “大極殿讀經, 神泉苑修法,

節會를 포함한 연중행사의 場으로 사용되었던 정원이, 文德천황기에 이르러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靈場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이다. 발표자는 이와 같은 神泉苑의 변화와 祥瑞의 출현이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令制下에서 祥瑞를 정원에 풀어 놓는 행위는 상정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율령체제가 弛緩되어 갔던 9세기 중반에, 더욱이 靈場으로 그 모습이 변해 버린 神泉苑은 祥瑞가 서식할 수 있는 諸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표 1】 桓武천황~光孝천황 통치기에 보이는 平安宮 중추부의 사용형태

	內裏	朝堂院	豐樂院	神泉苑	馬埒殿(武德殿)
桓武朝	1월1일節會	1월17일大射,7월7일節會,遣唐使과건		遊覽, 宴會	1월17일大射,5월5일節會
平城朝	1월1일節會	政務(上表·奏上)	大嘗會	7월7일節會,9월9일重陽,연회	1월17일大射, 5월5일節會
嵯峨朝	1월1일節會(임시로 열린5월5일節會·9월9일重陽?)	大嘗祭,伊勢大神宮에奉幣,政務	1월7일節會,1월16일節會,1월17일大射,新嘗祭	7월7일절회,9월9일重陽,花宴	1월17일大射, 5월5일節會
淳和朝	1월1일節會,1월16일節會,9월9일重陽,曲宴,內宴,論議	伊勢大神宮에奉幣	1월7일節會,1월16일節會,1월17일大射,相撲節會,新嘗祭辰日의연회	7월7일節會·9월9일重陽,遊釣	1월17일大射,1월18일賭射,5월5일節會
仁明朝	1월1일節會,禦杖獻上,曲宴,論議,相撲節會(7월17일),9월9일重陽,遣唐使과건	伊勢大神宮에奉幣,轉讀,遣唐使과건	1월7일節會,1월17일大射,大嘗會,遣渤海使와渤海客에게향연을배품	7월7일節會,연회,피서,水禽의遊獵(放隼拂水禽,放鷓隼)	1월17일大射, 5월5일節會
文德朝	1월1일節會,1월7일節會,9월9일重陽,轉讀,연회	大嘗祭, 轉讀	1월7일節會,1월17일大射,1월18일賭射,新嘗祭辰日의연회,大嘗會	靈場, 祥瑞(白鹿)	1월17일大射,1월18일賭射,5월5일節會
清和朝	1월1일節會,卯杖獻上,奏擬階文,1월7일節會,1월16일節會,朔旦冬至, 新嘗祭 辰日의연회,童相撲, 相撲節會(7월26일),轉讀,연회	大嘗祭, 轉讀	1월7일節會,1월17일大射,1월18일賭射,新嘗祭辰日의연회,大嘗會	怨靈, 疫病으로 인한 御靈會, 祈雨를 위한 轉讀, 祥瑞(白鹿)	1월17일大射(建禮門前),1월18일賭射,5월5일節會
陽成朝	1월1일節會,卯杖獻上,奏擬階文,1월7일節會,1월16일節會,朔旦冬至, 新嘗祭 辰日의연회,童相撲,相撲節會(7월26일),9월9일重陽,論議,內宴,貢駒,佛名懺悔,式部·兵部二省의成遷擬階短冊奏上,式部省의諸國銓擬郡司擬文奏上,轉讀,연회	轉讀, 蕃客	轉讀,大嘗祭(「朝堂院의修造때문?」)	祈雨를 위한 御靈會, 祥瑞(白鹿)	1월17일大射(建禮門前),1월18일賭射,5월5일節會
光孝朝	1월1일節會,卯杖獻上,奏擬階文,1월7일節會,1월16일節會,新嘗祭辰日의연회,童相撲,相撲節會(7월26일),9월9일重陽,論議,內宴,貢駒,佛名懺悔,式部·兵部二省의成遷擬階短冊奏上,式部省의諸國銓擬郡司擬文奏上,轉讀	伊勢大神宮에奉幣,大嘗祭	大嘗會	觀魚, 祥瑞(白龜)	1월17일大射(建禮門前),1월18일賭射,5월5일節會

* 출전은 六國史, 『類聚國史』·『日本紀略』에 의한다.

更二日, 未得快澍也”, 『同』元慶 원년(877) 6월 乙未(26일)條 “屈傳灯大法師位教日於神泉苑, 率廿一僧, 修金翅鳥王經法, 祈雨也”

V. 맺음말

본 발표는 정치적인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祥瑞가 9세기 중반에 神泉苑에 출현하게 된 의미를 해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논지를 전개해 나갔다.

먼저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사례를 검토하여 祥瑞가 神泉苑에 등장한 시기를 확정해 보았다. 그 결과 神泉苑에 출현한 祥瑞는 대부분 白鹿이었으며, 그 始期는 文德천황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神泉苑에 보이는 祥瑞의 진상 실태를 이해하기 위해 養老儀制令 祥瑞條를 검토해 본 결과, 令制下에서 살아 있는 鱗·甲·羽·毛의 祥瑞 자체가 진상되는 일은 없었으며, 오히려 文德천황기에 祥瑞가 神泉苑에 출현한 것이 異例적이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이유는 율령체제의 弛緩과 文德천황기에 神泉苑이 종교적인 성향이 강한 靈場으로 탈바꿈 한 것과 무관하지 않았다.

이상의 발표는 관련 사료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보니, 많은 부분에서 억지스러운 추측이 난무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아낌없는 질정을 바란다.

鎌倉幕府의 対馬장악과 大高麗관계

고 은 미(방송통신대)

目次

서론

I. 対馬의 大高麗관계의 변화

II. 対馬의 在庁官人の 변화

III. 対馬守護의 무역항 장악

결론

서론

본 발표에서는 鎌倉幕府의 등장이 大高麗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対馬의 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일본에 최초의 무가정권인 鎌倉幕府가 등장한 것은 주로 일본국내의 사회체제의 변화와 연관되어 논의되어질 뿐, 대외관계와 관련되어 논의되어지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다. 단지, 몽고와 전쟁에까지 이르게 된 원인의 하나로, 鎌倉幕府가 싸우는 속성을 가진 무사들의 정권이라는 점이 거론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대외관계는 상호적인 관계로, 특정 국가의 정권이나 체제가 바뀌면, 그 주변국가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제로 鎌倉幕府가 등장한 직후, 対馬와 高麗간에는 그 이전까지 일상적으로 존재하던 교류관계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 확인된다. 그러한 변화가 鎌倉幕府의 등장 및 막부측 인물의 対馬 진출과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I. 対馬의 大高麗관계의 변화

먼저 鎌倉時代 초기에 対馬와 高麗사이에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사료1을 검토하고자 한다.

史料1

高麗国金州防禦使 牒 日本国对馬嶋,

当使准, 越今年上月十有四日,

貴国使介明頼等四十人, 乘船三艘, 来泊于州南浦, 使訊語問其所以来者, 号称進奉, 兼献文
牒牒道, 其文甚爲擾雜, 其語過乎勿恭, 非進奉之礼也, 大抵兩國相通文牒, 必指於某国某州例有
恒矣, 往年秋八月恒平等十一人所齎来文牒徒以讒諛之事, 直指牒 京朝禮賓省, 其可以任意而交
受乎, 具事呻報朝廷, 朝廷之議不上於一, 而使之遣還, 金此一字消不見齎来, 此亦失礼之甚矣,
当券廉察使更伝報于

朝廷, 朝廷共不許其交接, 使之解纜發遣, 故所齎来文牒, 及 進奉方物率皆還給以送, 其数目
録于後, 想宜知悉, 右事須牒,

泰和六年二月 日 牒

官 ○直 ○非 ○二

牒後還送,

進奉物目,

円鮑貳仟帖,

黒鮑貳仟果,

鹿皮三拾枚,

原¹⁾

史料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泰和6년(1206) 1월, 对馬는 사신 明頼
等 40명을 高麗의 金州에 보내, 進奉이라고 칭하며 牒狀과 方物을 헌상했다. 그러나 高麗
측에서 보자면, 그 첩장은 난잡하고 문장도 ‘進奉之禮’에 맞지않아 크게 실례되었기 때문
에, 高麗조정은 对馬의 사신을 맞아 들이지 않고, 牒狀 및 方物과 함께 돌려보냈다. 그
이전인 1205년 8월에도 对馬는 恒平等의 11명을 高麗에 보냈으나, 그 牒狀에는 단지 ‘讒
諛之事’가 쓰여있는데다 직접 高麗의 禮賓省앞으로 보낸 것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사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돌려보냈다.

对馬가 高麗에 牒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연히 ‘某国某州’ 즉 高麗国金州 앞으로 보내는
것이 상례인데, 1205년에 对馬의 사신이 가져온 牒狀에는 ‘京朝禮賓省’이라고 쓰여있어
그것이 외교상의 문제가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206년의 牒狀에 대해서는 이를 문
제삼지 않고 있어, 1205년의 경험에서 배워 牒狀의 수신처는 高麗国金州였다고 보여지나,

1) 『平戸記』 延応2年(1240)4月17日条. 이 사료에 대해서는, 近藤剛氏が 東山御文庫本을 바탕으로, 中院通茂交合本을 비롯한 여러 写本을 이용하여 校合·校訂한 결과를 논문에 게재하고 있으며(『平戸記』 所載 『泰和六年二月付高麗国金州防禦使牒狀』について, 『古文書研究』 70, 2010, p.20), 사료는 近藤剛氏の 논문에서 인용하였다. 그러나 사료상에 보이는 印의 表示는 생략하였다.

이번에는 문서의 형식의 ‘進奉之禮’에 맞지않는 것이 문제였다.

이 두사례를 종합해보면, 對馬와 高麗간에는 ‘進奉之禮’에 맞는 문서를 통한 進奉關係가 1205년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은 확실치 않지만, 이 당시에는 어느정도 정기적인 왕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료가 있다.

史料2

十四日壬辰晴, 高麗國牒狀到來, 今日及披覽云々, 其狀書樣,
 高麗國全羅州道按察使牒日本國惣官大宰府,
 當使准, 彼國對馬嶋人, 古來貢二一進邦物, 歲修和好, 亦我本朝, 從其所便, 特營館舍, 撫以
 恩信, 是用海邊州縣島嶼居民, 恃前來交好, 無所疑忌彼告, 金海府對馬人等舊所住依之處, 奈
 何, 於丙戌六月, 乘其夜寐, 入自城竇, 奪掠正屋訖, 比之已甚, 又何邊村塞, 擅使往來, 彼此一
 同, 無辜百姓侵擾不已, 今者,
 國朝取問上件事, 固當職差承存等二十人, 晉牒前去, 且元來進奉禮制, 廢絕不行, 船數結多,
 無常往來, 作為惡事, 是何因由, 如此事理, 疾速廻報, 右具前事, 須牒
 日本國惣官, 謹牒,
 丁亥二月 日 牒
 副使兼監倉使轉輪提默刑獄兵馬公事龍虎軍郎將兼三司判官趙判²⁾

史料2는 1227년 高麗가 일본의 대외외교창구에 해당하는 大宰府에 보낸 牒狀인데, 그 내용은 對馬 주민이 高麗의 연안을 침략한 것을 항의한 것이다. 그중에서 進奉關係에 관련된 부분에 밑줄을 쳤는데, 그에 따르면 원래 對馬는 高麗에 方物을 바치고 매년 수교하고 있었기 때문에, 高麗측은 對馬를 위해 관사를 설치하고 접대했으나, 그러한 進奉關係는 1227년의 시점에서는 폐지되어 시행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史料1에서 高麗는 對馬가 進奉을 명목으로 사신을 파견하는 것을 당연시하고 있어서, 1206년의 시점은 아직 進奉關係가 폐지되기 이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206년 경이 高麗와 對馬간의 進奉關係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로, 進奉關係의 형식도 어느 정도 정비되어 있던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왜 1205·6년에 보내진 對馬의 牒狀은 선례를 무시하고 직접 高麗의 禮賓省앞으로 보내거나, 내용도 종래의 형식에서 벗어나거나 하는 변화를 보였던 것일까?

그것을 해명할 실마리가 되는 것이 1205년 恒平等이 가져온 牒狀에 ‘讒諛’의 내용이

2) 『吾妻鏡』安貞元年(1227)5月14日条.

씩여 있었다는 사실이다. ‘讒諛’라고 하는 것은 남을 중상모략하고 윗사람에게 아첨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직접 高麗의 禮賓省앞으로 牒狀을 보낸 것 자체가 ‘讒諛’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당시 尙馬는 누구를 중상모략했고, 왜 그것을 高麗의 禮賓省앞으로 보낸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尙馬내부의 권력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1205년 이전에 尙馬에는 그 이전까지 高麗와 進奉關係를 맺어왔던 세력을 대신해, 새롭게 권력을 장악한 세력이 있어, 그들이 高麗와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고자 했던 것을 아닐까?) 그 때문에 그 이전부터 高麗와 進奉關係를 맺어온 세력을 중상하는 牒狀을 高麗의 禮賓省앞으로 보낸 것은 아닐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1205년 이전의 尙馬의 내부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 尙馬의 在庁官人の 변화

일본에서는 8·9세기 이후 지방관인 国司는 임명되어도 현지에 부임하지 않는 경우가 증가하여, 지방의 행정사무는 지방관청에 상주하는 관리에게 위임되는 경향이 발생하였다. 그 결과 不在国司와 대비해 지방행정관청인 国衙에 상주하는 관인들은 在庁 혹은 在庁官人 이라고 불렸고, 이들이 실제 행정사무를 담당하였다.⁴⁾

이러한 상황은 尙馬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 지리적 위치상, 尙馬의 在庁官人은 일반 행정 이외에 高麗와의 교섭도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다음의 사례에서 확인된다. 1185년 平氏를 토벌하고 尙馬를 장악한 源範賴는 源賴朝의 명령을 받아 尙馬守藤原親光을 맞이하기 위해 尙馬에 배를 보내려고 했으나, 藤原親光는 平氏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高麗로 건너간 상황이었다. 그래서 源範賴는 高麗에 사신을 보내 藤原親光를 귀국시킬 것을 尙馬의 在庁官人에게 명령했다. 尙馬의 在庁官人은 5월 23일 高麗에 사신을 보냈는데, 이때 尙馬의 守護였던 河内義長는 이 사신편으로 藤原親光에게 서신을 보내, 平氏는 전부 멸망했으니 걱정말고 빨리 귀국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6월 14일 藤原親光는 尙馬로 돌

3) 이와 관련해, 李領氏は 1205년에 내항한 恒平等과, 1206년에 내항한 明賴等은 고려와의 무역을 둘러싸고 경쟁관계에 있는 세력이었다고 추정하고 있다(李領, 『倭寇と日麗關係史』, 東京大学出版会, 1999, pp.66~67). 그러나, 恒平等과 明賴等은 둘다 고려측으로부터 牒狀이 기존의 進奉의 예와 맞지않은 것을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자 모두 이전에 고려와 進奉關係를 맺어온 세력과는 다르다고 보여진다. 한편, 恒平等 일행을 尙馬 이외의 지역에서 파견된 사신이라고 보는 견해(溝川晃司, 『日麗關係の變質過程—關係惡化の経緯とその要因—』 『国際日本学』 1, 2003, p.78) 및 恒平等·明賴의 양자 모두를 尙馬의 공적기관에서 파견한 사신이 아니라, 尙馬의 주민이 사적으로 고려와의 무역을 시도한 움직임으로 보는 견해(近藤剛, 注1前掲論文, p.30)가 존재한다. 이러한 견해는 恒平等·明賴 양측을 尙馬의 사신으로 판단한 고려의 인식을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4) 竹内理三, 『在庁官人の武士化』 『竹内理三著作集第六卷 院政と平氏政權』, 角川書店, 1999, p.6.

아왔다.⁵⁾

이 사례로부터 당시 高麗와 対馬 사이에는 일상적이며 평화로운 연락관계가 있었고, 그것을 담당한 것이 対馬의 在庁官人이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新城常三氏は 寿永2年(1183)11月4日의 後白河院庁下文⁶⁾를 근거로 들어, 당시 在庁官人에게는 관할지역내의 선박과 선원을 징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⁷⁾ 그에 따르면 対馬의 在庁官人도 선박과 선원에 대한 징발권을 이용하여 高麗와도 왕래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막부가 対馬를 장악하는 과정은 물론, 대외관계에 대한 개입문제를 검토할 때도 対馬의 在庁官人의 움직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기존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鎌倉時代に 対馬의 在庁官人이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11세기에서 12세기에 걸쳐 対馬의 在庁官人중에 그 성명이 확인되는 것은 阿比留氏이다. 竹内理三氏は 対馬의 在庁官人和 阿比留氏와의 관계를 검토하여⁸⁾, 阿比留氏가 在庁官人인 것이 확인되는 최초의 사례로 下県郡豆殿村의 観音堂의 鐘銘에 “奉懸^(鐘)鑄洪鐘, 日本国管対馬嶋下県郡殿豆御寺前, 檀越正六位上權掾阿比留宿禰良家, 以去寛弘五年八月二十八日鑄之畢, 後者以去仁平三年十月三日鑄增畢, 願主正六位上行掾阿比留宿禰吉房” 라고 기록되어 있는 점을 들고 있다. 그에 따르면 観音堂의 鐘은 먼저 寛弘5年(1008)에 ‘正六位上權掾阿比留宿禰良家’에 의해 주조되어, 그후인 仁平3年(1153)에 ‘正六位上行掾阿比留宿禰吉房’에 의해 수리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竹内氏は 12세기경이 되면 対馬의 在庁官人은 阿比留氏가 독점하고 있었다고 지적하고 그 근거로서 다음의 사료를 들고 있다.

史料3

『如解 非無異論者, 件島為代祈禱可寄進之, 在御判』
(マ) (マ)
 八幡宮師等 申請 國裁
(カ) (カ)
 請被恩垂 景迹, 且為鎮護國家御祈禱便領島常燈料子細愁狀,
 合壹町參段内
 (中略)
 永曆元年三月日 權宮師 慶暹

5) 『吾妻鏡』 文治元年(1185)5月23日・6월14일条.

6) 『三宅長策氏所藏文書』 『平安遺文』 8—4117.

7) 新城常三, 『国衙機構の一考察—船所について—』(森博士還曆記念会編 『対外関係と社会経済』, 塙書房, 1968) pp.298~289.

8) 竹内理三, 『対馬の古文書』 『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1, 1950, pp.69~70.

(マ)

月宮師 永令

講師

件燈油料畠國判有限, 且無止御莊嚴, 且鎮護國家御祈禱也, 仍在廳官人等, 加進署判,

大掾阿比留在判

掾 阿比留在判

掾 阿比留在判

依國免明白, 且又為滅罪生善, 奉免如件,

惣檢校⁹⁾

史料4

八幡宮主神司藤秋依

補任掾官并主神司職事

目藤原秋依

右人, 蒙國宣, 掾官并主神司職補任如件,

文治五年四月二日

掾阿比留在判

掾阿比留在判

掾阿比留在判

掾阿比留在判

大掾阿比留在判

目代伴朝臣在判¹⁰⁾

史料3·4에서 永曆元年(1160)과 文治5年(1189)에 在庁官人으로 서명하고 있는 것이 阿比留氏 이외에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료들을 종합하여 竹内氏は 阿比留氏が 11세기 초기부터 対馬의 在庁官人으로 활동하여, 12세기에는 在庁官人을 전부 독점하였다고 평가했다.

또한 鎌倉時代에는 阿比留氏를 대신해 宗氏が 対馬를 장악하게 되는데, 그 시기를 『対馬島誌』에 宗氏が 対馬에 건너갔다고 하는 寛元3年(1245)이었다고 주장했다.¹¹⁾ 즉 당시 対馬의 在庁官人으로 세력을 가지고 있던 阿比留氏が 大宰府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大宰少弐인 武藤氏が 宗氏의 先祖에 해당하는 惟宗重尚라는 인물을 対馬로 보내, 阿比留平太郎를 토벌시키고 対馬의 地頭職에 임명했다는 것이다.

宗氏의 先祖에 해당하는 惟宗氏が 13세기 중반에 阿比留氏를 정벌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학자들은 많다. 예를 들어, 田中健夫氏は, 『対州編年略』·『対馬国記』·『寛政重修諸家

9) 『對馬嚴原町鹿島由己氏所藏文書』 『平安遺文』 7—3092.

10) 『對馬嚴原八幡宮文書』 『鎌倉遺文』 1—379.

11) 竹内理三, 注8前掲論文, p.66.

譜』등을 근거로, 宗氏が 対馬에 건너간 시기를 寛元3年(1245)이나 4年(1246)으로 판단하고 있다.¹²⁾ 또한, 川添昭二氏도, 対馬에는 원래부터 在庁官人인 阿比留氏が 있었으나, 寛元4年(1245)에 武藤氏は 자신의 가신인 宗氏를 파견하여 阿比留氏를 토벌했다고 주장하고 있다.¹³⁾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존재한다. 長節子氏¹⁴⁾는 阿比留征服說이 문헌상에 보이는 가장 빠른 예가 에도시대에 작성된 『寛永諸家系図伝』이라는 점을 들어, 중세의 기본사료를 바탕으로 阿比留征服說을 재검토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長氏は 竹内氏が 인용한 사료를 근거로 11세기 초기부터 文治5年(1189)경까지 対馬의 在庁官人이 대부분 阿比留氏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다는 점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建久6年(1195)에는 그러한 상황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주장하고 다음의 사료를 들고 있다.

史料5

對馬嶋

註進^(大奉幣) 御神寶料物内京進并博多交易算用目錄事

合准玖佰柒拾疋内

(中略)

右, 件御神寶用途物, 或自京都進, 或博多交易進, 任式數, 令散用之, 注進如件,

建久六年五月五日 權大目藤原在判

掾阿比留在判

掾藤原在判

掾阿比留在判

掾惟宗

掾藤原在判

掾阿比留在判¹⁵⁾

자료5에 의하면, 자료3·4에는 보이지 않던 藤原氏나 惟宗氏가 서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長氏は, 在庁官人의 서열은 서명의 순서로 보아 阿比留氏가 최상위이고, 藤原氏가 그 다음이고, 惟宗氏は 3위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1195년 이후에 対馬의 在庁官人의 세력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延慶3年(1310)의 正八幡宮政所下文¹⁶⁾로,

12) 田中健夫, 『中世の対馬と宗氏の勢力拡張』 『中世海外交渉史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81, 初版 1959, p.97.

13) 川添昭二, 『大宰府の終末』(古都大宰府を守る会編 『大宰府の歴史五』, 西日本新聞社, 1986)p.105.

14) 長節子, 『宗氏の出自』 『中世日朝関係と対馬』, 吉川弘文館, 1987, pp.3~11.

15) 『對州編年略』卷一 『鎌倉遺文』補1—162.

16) 『對馬海神社藏古文書寫』 『鎌倉遺文』 31—24007.

거기에는 10명의 惟宗氏와 阿比留氏が 서명하고 있는데, 惟宗氏が 正大宮司로서 제1위로 서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195년 이후 惟宗氏は 세력을 크게 확대하여, 1310년에는 阿比留氏를 넘어서게 되었다고 상정하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결과, 長氏は 宗氏의 선조인 惟宗氏が 1246년에 처음으로 対馬로 건너갔다는 설은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1246년이후에도 阿比留氏が 여전히 활약하고 있는 점을 보면, 어떤 특정 무력행동을 계기로 惟宗氏의 패권이 돌연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阿比留制服說을 부정했다. 1246년의 阿比留制服說을 비판하고 1195년을 전후로 対馬의 在庁官人 내부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는 長說은 사료에서 확인되는대로 수긍되는 부분이 많지만, 조금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

그것은 在庁官人중에 보이는 藤原氏에 대해서이다. 史料4에 의하면, 文治5年(1189)4月, 対馬의 在庁官人중에서 掾·大掾은 阿比留氏が 독점하고 있었지만, 目에는 藤原秋依가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 秋依가 掾로 승진한 것이 사료4로, 掾에 阿比留氏 이외의 사람이 참가한 것은 적어도 1189년까지는 거슬러 올라간다.

이 秋依에 대해서는 다른 사료에서도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史料6

校正分

八幡宮政所

定八幡宮大宮大宮司職事

掾藤原秋依

右人, 任譜第之旨, 補任件職, 如件,

建久元年七月六日

大宮司掾阿比留在判

惣宮師講師同

正宮師講師同

殿上宮師講師同

宮師講同¹⁷⁾

史料7

大宰府符

正六位上行掾藤原秋依

右人, 言上 官之間, 可借外從五位下之狀, 府擬如右,

建永元年十月十七日 正六位上行大典藤原朝臣

正三位行大貳藤原朝臣^(顯惟)

17) 『對馬下津八幡宮文書』 『鎌倉遺文』補1—101.

少貳從五位下藤原朝臣在御判¹⁸⁾

史料7에 의하면 建永元年(1206)에 秋依는 掾에 재직하고 있으므로, 그는 1189년에서 1206년까지 掾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따라서 史料5에서 在庁官人중 第2位로 서명하고 있는 藤原氏は 秋依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같은 사료에 보이는 權大目藤原도 秋依가 目中에서 掾로 승진한 후에 目的地位를 계승한 것으로 보여 동족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史料6에서는 秋依의 下津八幡宮(現 嚴原八幡宮)의 大宮司職은 譜代 즉 대대로 계승해 온 직책이라는 점이 보이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在庁官人 藤原氏は 対馬의 토착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1189년 이전에 対馬의 在庁官人을 阿比留氏が 독점하고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는 의문으로, 藤原氏が 1189년 이전부터 在庁官人으로 재직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1195년경에 対馬의 在庁官人으로 새롭게 등장한 세력은 惟宗氏 이외에는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 惟宗氏が 宗氏의 선조라는 사실은 宗氏의 系譜類에서 확인된다. 『寛永諸家系圖傳』에는 惟宗右馬助의 아들로, 宗助國의 부친에 해당하는 인물로 某가 있는데, 그에 대한 注釈에 “寛元四年(1246), 阿比留家を追討し, 始て対馬の國をとり, 宗をもって氏とす. 是宗家の始なり.”²⁰⁾라고 쓰여있어, 宗氏의 선조가 惟宗氏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竹内氏は, 対馬의 宗氏が 平安時代 이래로 大宰府의 관리로서 九州에 세력을 떨치고 있던 惟宗氏의 계통이라고 보고 있다.²¹⁾ 長氏도 対馬의 在庁官人인 惟宗氏와, 大宰府의 在庁官人인 惟宗氏は 계통적으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²²⁾

惟宗氏は 막부가 파견한 인물이 大宰府를 장악하는데 협력한 일족으로, 鎌倉時代に 걸쳐 大宰府의 在庁官人은 惟宗氏が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게 된다.²³⁾ 이렇게 大宰府의 在庁官人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던 惟宗氏의 일족이 対馬의 在庁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당연히 막부측에서 파견한 対馬守護의 존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음장에서는 対馬守護의 동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18) 『對馬阿比留彌七郎氏所藏文書』 『鎌倉遺文』 3—1645.

19) 川添昭二氏は, 史料7에 대해서 원본이 아니라 사본이고 문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사료의 내용 자체는 인정해도 좋지 않을까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鎌倉初期の對外關係と博多』 箭内健次編 『鎖國日本と國際交流 上卷』, 吉川弘文館, 1988, p.8). 史料7에 의해, 藤原秋依가 從五位下로 승진했는가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사료4·6등과 대조해서 판단하면, 당시 秋依가 掾의 지위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

20) 『寛永諸家系圖傳』 第六.

21) 竹内理三, 注8前掲論文, p.66.

22) 長節子, 注14前掲論文, p.10.

23)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鎮西奉行の成立』 『日本中世国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70, p.96.

Ⅲ. 対馬守護의 무역항 장악

鎌倉時代 초기의 対馬守護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점이 많다. 佐藤進一氏は 『吾妻鏡』 文治元年(1185)5月23日条에 등장하는 河内義長가 対馬守護가 확인되는 첫번째 사례이지만, 그는 文治4年(1188)3月15日에는 鎌倉에서 열린 鶴岡大法会에서 頼朝를 따르는 행렬에 참가하고 있다고 지적한다.²⁴⁾ 그후 寛喜2年(1230)에는 武藤資能가 対馬守護인 것이 확인되지만, 그것이 언제까지 소급되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한다.

그러나 해석여하에 따라서는 建仁年間(1201~1204)의 対馬守護의 활동이 확인되는 흥미로운 사료가 있으므로, 이하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史料8

從五位下行對馬守源朝臣光經解 申請官職事,

請特蒙官裁, 因准去仁安·治承·建仁三箇年例, 被成下官符雜事參箇條子細狀,

(中略)

一, 請被停止府使亂入并守護人對捍國役事, 右光經謹檢案内, 府使宰事於濟物亂入之條, 更無其謂, 當島者本自依無田地, 京都濟物無式數, 廻船商人等着岸之條, 以前分之辨可宛濟物之處, 近代守護人不交國宰之沙汰, 一向押領之條, 理可然哉, 凡者武家下知狀備, 國衙隨國司之下知, 庄園可依領家命之由, 具被定置畢, 而背彼狀, 號守護人之沙汰, 一向掠領之條, 未曾有狼藉也, 望請官裁, 早云府使亂入, 云守護押領, 不帶國判之外, 停止自由狼藉, 唐船着岸之時, 前分國宰守護人相半可致沙汰之由, 欲被宣下者,

以前之條事任代々之例, 為被成下, 依請官符, 勒在狀, 謹解,

弘安十年七月二日從五位下行對馬守源朝臣光經²⁵⁾

弘安10年(1287)7月13日, 조정에서는 각국에서 올라온 신청문서를 조정회의에서 처리하는 ‘條事定’가 행해져, 越前·淡路·對馬國司가 신청한 여러가지 사항이 결정되었다. 史料8은 그중에서 對馬守源光經가 올린 解狀의 일부분이다. 그 신청의 내용은, 大宰府의 사자가 對馬에 난입하는 사태와 守護가 세금을 독점하는 상황을 고발한 것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大宰府의 사자가 貢物徵収 를 구실로 對馬에 난입하는 사태는 정말 부당한 행위이다. 對馬는 경작지가 없어 교토에 바치는 공물은 ‘廻船商人等’이 내항하면 그들이 납부하는 ‘前分’²⁶⁾으로 충당했으나, 최근에는 守護가 國司의 관여를 배제하고 일체를 독점하고 있

24) 佐藤進一, 『増訂鎌倉幕府守護制度の研究』, 東京大学出版会, 1971, p.241.

25) 『勘仲記』 弘安10年7月13日条.

다. 막부에서는 国衛는 国司가 관할하고 莊園은 장원영주가 지배할 것을 명하는 下知狀가 발급되었지만, 守護는 이러한 명령을 위반하고 전부를 강탈하고 있다. 이러한 府使·守護의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唐船이 내항하면 ‘前分’은 国司와 守護가 절반씩 관할하도록 官符를 내려주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이러한 尙馬国司의 신청은 1287년의 상황을 반영할 것일까? 그것은 당시의 ‘條事定’의 성격과 관련이 있는데, 曾我良成氏에 의하면 조정에서 행해지는 ‘條事定’은 11세기 후반에는 관례화하여, 원래 国司가 필요에 따라 제출하던 解狀도 承久年間(1219~1221)부터는 조정에서 제출시키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한다.²⁷⁾ 따라서 承久年間 이후의 解狀과 그에 따라 발급되는 官符는, 거기에 어떤 날짜가 적혀 있더라도, 내용 자체는 承久年間 이전의 사항이 관례적으로 반복되었다고 지적했다.

曾我氏는 그 근거로 『勘仲記』弘安10年7月13日條에 보이는 治曆元年(1065)7月24日의 越中国解는, 弘安10年7月3日의 越中守源仲經의 解狀과 거의 같고, 『勸修寺家文書』에 보이는 天明9年(1789)正月21日의 越中守源弘富의 解狀과도 동일한 내용인 점을 들고 있다. 따라서 史料8은 1287년 당시에 실제로 발생한 문제를 처리했다기보다는, 과거에 발생한 사항을 그대로 재현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網野善彦氏도 史料8을 ‘條事定’라고 하는 조정의 의식을 위해 씌여진 문서로, 반드시 1287년경의 상황을 반영했다고는 볼 수 없고, 源光經의 解狀중에 “因准去仁安·治承·建仁三箇年例”라고 보이는 점에서, 建仁年間(1201~1204)에서 그다지 멀지않은 시기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²⁸⁾ 즉 史料8에 보이는 尙馬守護는 建仁年間이나 그 이전에 임명되어, 尙馬를 출입하는 무역선에 대해 ‘前分’이라는 입항세를 징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守護의 움직임과 1195년 이전에 尙馬의 在庁官人에 惟宗氏가 참가한 점을 종합해서 판단하면, 守護가 尙馬의 在庁에 영향력을 미친 것은 1195년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建仁년간이 되자 守護는 国司를 배제하고 입항세를 독점하였던 것이다. 입항하는 선박에서 징수하는 세금을 독점했다고 하는 것은

26) ‘前分’에 대해서는, 網野善彦氏가 교역을 행하기 전에 납부하는 入港稅라고 해석하고 있는데(『中世民衆生活の様相』 『中世再考』日本エディタースクール出版部, 1986, p.75), 문맥상으로 볼 때, 그 의견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網野氏는 ‘廻船商人’을 일본 국내의 상인으로 판단하여 唐船과 구별하고 있다. 그러나, 사료에서 ‘廻船商人’이 입항시에 国司에 납부하는 ‘前分’을 守護가 강탈했다고 호소하고, 그를 정지시키고, 唐船이 입항할 때의 ‘前分’을 国司와 守護가 절반씩 수취하게 해달라고 신청하고 있으므로, 표현방식은 달라도 ‘廻船’과 唐船은 동일하다고 보여진다.

27) 曾我良成, 「諸国条事定と国解慣行—王朝国家地方行政の一側面—」 『日本歴史』 378, 1979, pp.28~35.

28) 網野善彦, 注26前掲論文, p.74.

무역항 역시 守護가 장악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직후에 해당하는 1205·6년에 尙馬는 관례를 무시하는 첩장을 高麗에 보내왔다(사료1). 이것은 이제까지 進奉關係에 관여했던 세력을 배제하고 守護가 尙高麗關係의 주도권을 장악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尙馬가 1205년 이전까지 高麗와 맺어온 進奉關係는 守護側이 관례를 무시하는 첩장을 계속해서 보냈기 때문인지 폐지되고 만다(사료2). 물론, 그것으로 尙馬와 高麗간의 왕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이전까지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사적인 무역은 계속되었다. 그것이 倭寇禁圧을 조건으로 하는 進奉關係라는 새로운 전개를 보이는 것은 사료2가 일본에 전달된 뒤의 일이지만, 본 발표에서는 막부측의 尙馬 장악으로 그 이전까지 존재했던 尙馬와 高麗간의 進奉關係은 일단 終止符를 찍었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한다.

결론

본 발표에서는 鎌倉幕府의 등장이 일본의 대高麗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尙馬의 사례를 들어 살펴보았다. 결론을 간단하게 말하면, 鎌倉時代의 초기에 幕府의 지방군사지휘관에 해당하는 守護가 尙馬의 무역권을 장악하면서 그전까지 尙馬가 高麗와 맺고 있던 進奉관계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전시일본 스포츠 정화운동으로 본 여가 속 중간계급 정체성의 형성과 변형

최 자 명(펜실베니아대)

目次

서론

1. 국가통제이전 중간계급 스포츠
 2. 사상선도와 스포츠계의 혼돈
 3. 스포츠정화 좌담회, 1930년 11월6일
 4. “스포츠 정화”의 실제
 5. 프로야구의 탄생과 꼴찌의 자존심
 6. 스포츠 정화로서의 스포츠 대중화
 7. 1940년대 스포츠 정화 의제의 실현과 퇴행
- 결론

서론

여가활동은 행위자의 경제, 시간적 여유의 표현일 뿐만 아니라, 계급의 지표이기도 하다. 행위자는 장비를 구입하고, 시간을 할애하며, 같이 즐길 사람을 찾아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과 방학, 그리고 또래집단이 있는 도쿄제국대학이 근대일본 여가 활동의 중심지가 된 것은 자연스럽다. 도쿄대는 여가에 대한 경제적 인적 투자가 모이는 공간이었고, 이곳에서 “아마추어”라는 여가 속 중간계급 정체성이 나타났다.

이 글이 도쿄제대학생을 중간계급으로 이해하는 만큼, 중간계급이란 무엇이고, 왜 동대생을 중간계급으로 이해하는지 설명이 필요하다. 전전기 일본에서, 중간계급은 평균적인 수입을 얻는 중위(中位)계급을 의미하지 않았다. 1922년 도쿄시의 사회조사는 중간계급을 월수 60엔에서 250엔 사이의 가정으로 정의하고, 그 의미를 “최소한의 문화생활”은 누리지만 여유있게 누리지는 못하는 경제상태로 해석했다.¹⁾ 곧, 중간계급이란, 문화적으로는 엘리트이나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도쿄대생은 문화적 엘리트였지만

1) 東京府內務部社會課編, 『東京市及近接町村中等階級生計費調査』, 東京, 1925, pp.49-50.

기대수입은 이 범주에 들어간다. 1930년대, 대졸자 사무직은 본봉이 월수 70-80엔, 보너스를 합쳐도 100엔선이었고, 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해서 과장급 관료가 된다해도, 평균월급은 200엔정도였다. 도쿄제대신문의 한 필자는 “중학교에서 샐러리맨”으로 기어올라가는 와중에 “사회이상을 실현하고 문화생활을 누리려 노력하는” 대학생을 “모든면에서 중간계급적”이라고 규정했다.²⁾

대학 스포츠는 대학생이 단지 미래의 중간계급 시민이었을 뿐만 아니라, 캠퍼스에서 이미 엘리트 문화를 향유했음을 말해준다. 재산이 많지 않은 학생도 스포츠활동의 기회를 얻었다. 1886년, 도쿄대 교수와 학생은 도쿄제대운동회를 창립했으며, 1930년대 도쿄대생의 반수가 운동회 회원이었고, 총 10%의 학생이 운동회 클럽선수로 활동했다. 운동회 선배조직, 아가몬 운동회는 각종 활동을 후원했다. 이런 환경에서, 도쿄대생은 엘리트로서 서구의 “아마추어”라는 계급분위의 개념을 받아들였다.

어떻게 “아마추어”는 중간계급적인가? 1866년, 영국의 아마추어 체육협회 (British Amateur Athletics Club)는 사상 최초로 아마추어를 정의했다.³⁾ 그들은 돈을 위해 경기하지 않고, 프로와 경기하지 않으며, 스포츠 기술을 직업적으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일터에서 근육이 단련되는 노동자이지 않았다. 이 정의는 일터와 여가의 분리, 혹은 경기참가자의 여가활동 중 돈걱정을 하지 않을 만큼 든든한 화이트칼라 직업을 전제한다. 이 개념은 영향력이 있었다. 1974년까지, 올림픽 참가자는 스포츠 외부의 직업이 있어야했고, 1년에 연습을 위해 4주만 일을 쉴 수 있었다. 화이트칼라 직업이 아마추어 개념의 핵심이고, 그들은 노동자, 과학계 연습하는 “프로”와 구별되어야했다. 이 아마추어 개념은 대일본체육협회를 매개로, 일본사회에 수입되었다.

스포츠정화운동은 도쿄 육대학 야구리리가 선도하는 대학스포츠의 프로화에 대한 도쿄대 선배들의 반응이었다. 고등교육기관에서 스포츠시합이 성해지고, 스타선수가 캠퍼스와 취직시장에서 특권적인 지위를 확보하자, 제대운동회의 지도자들은 이를 계급정체성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고 강하게 비판했다. 운동회의 선배, 지도자들은 학생선수의 학력저하, 운동시설의 독점, 불공정한 입학이 초래한 학생스포츠의 프로화를 문제시하고, 스포츠의 아마추어 정체성의 재건을 외쳤고, 이 외침은 국가의 스포츠정책을 일변시켰다.

전시일본 스포츠사의 선행연구는 스포츠계의 재편과정에서 국가가 수행한 역할을 강조해왔다. 다이쇼 민주주의의 연구자에게, 전시 일본국가는 번영하는 일본스포츠계의 파괴자였다. 1928년은 일본국가가 스포츠계를 통치수단으로서 이용하기 시작한 순간이었고, 1940년대 전반의 야구 중지는 서양스포츠에 대한 일본국가의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이해됐다.⁴⁾ 이들 논의에는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적인 이해

2) 帝國大學新聞社, 『當世大學生氣質』, 東京, 1926, p.14.

3) Eugene A. Glader, *Amateurism and Athletics* (Leisure Press, 1978), pp.100-101, p.17.

가 전제되어있다. 그러나, 누가 국가를 구성하고, 움직였을까?

스포츠정화운동을 살피며, 이 글은 일본 스포츠사에서 중간계급 시민의 역할을 조명한다. 스포츠사에서 국가와 사회의 경계선은 불명확하며, 1930년대 스포츠사의 동력은 국가의 일률적 학생통제, 일방적인 시민단련보다는, 국가의 힘을 빌린 중간계급 시민들의 자기통제였다. 중간계급 시민들은 아마추어주의의 회복을 위해 국가를 움직였다. 그들의 계급정체성은 제도개혁, 대중화, 그리고 국가통제를 성립시키는 힘이었고, 역설적으로 중간계급 정체성이 계급적 성격을 상실하고 사회구성원 다수가 비슷한 수준의 문화활동을 누리며 스스로 중간계급으로 생각하는 대중적 중간계급사회를 창출하는 역설적인 동력이기도 했다.

1. 국가통제이전 중간계급 스포츠

전간기 일본 스포츠계는 경제적, 제도적으로 계급적 성격이 강했다. 1909년, 아시아 최초의 IOC위원이 된 강도관(講道館) 유도의 창설자 가노 지고로(嘉納治五郎)는 1911년 도쿄대, 와세다, 게이 등의 대학 스포츠클럽을 기반으로 대일본 체육협회(이하 체협)를 조직, 일본에서의 올림픽행정을 총괄했다. 체협은 계급 본위의 아마추어 개념을 서구에서 그대로 받아들였다. 1911년, 체협 최초의 행사였던 올림픽 예선전에서 참가자격은 “학생과 신사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서, 중졸이상의 학력자로 한정되었다.⁵⁾ 체협은 1921년, 작업장에서 신체를 단련하는, 예를 들어 우편배달부같은 노동자들을 “준프로”로 규정하고, 1922년 공식적으로 노동자들의 국제스포츠경기 참가를 금지했다.⁶⁾ 경제적으로도 스포츠는 많은 부분 중간계급의 전유물이었다. 조정보트가 비싼 것은 물론, 야구공하나의 가격도 2엔, 미쓰이 사무직의 초임급 100엔의 2%에 해당한다. 또한, 외국인선교사의 전래, 국가의 지원, 졸업생의 기부에 의해 탄생한 도쿄제대 운동회 자체가, 이 시기 중간계급 이하의 사람들이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쉽사리 얻기 어려웠다는 점을 방증한다. 그리하여, 일본의 스포츠 문화는 학원스포츠라는 형태로 출발했다. 1920년대까지, 야구리그 등의 학교대항시합이 사실상 일본 스포츠계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문부성은 1921년 관방학교 위생과와 그 아래 체육운동계를 두고, 내무성도 보건위생조사위원회를 설치했

4) 入江克己、『日本ファシズム下の体育思想』、東京：不昧堂出版、1986；同、『昭和スポーツ史論：明治神宮競技大會と國民精神總動員運動』、東京：不昧堂出版、1991；入江克己、『大正自由体育の研究』、東京：不昧堂出版、1993；坂上康博、『權力装置としてのスポーツ：帝國日本の國家戰略』、1998；Allen Guttman and Lee Thompson, *Japanese Sports: A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山室寛之、『野球と戦争：日本野球受難小史』、東京：中央公論新社、2010.

5) 大日本体育協會編、『大日本体育協會史』上、東京、1936, p.15, p.168.

6) 「アマチュア問題の解決」, 大日本体育協會, 『アスレチックス』第一卷 第一号, 1922年4月, p.131.

으나, 그 활동은 전국 스포츠시설을 조사하는 수준에 그쳤다.⁷⁾

2. 사상선도와 스포츠계의 혼돈

1928년 도쿄대에서 스포츠가 정책의 도구가 되는 전기가 일어났다. 학생운동가들이 공산당에 가입한 것이 문제가되어, 학교체육은 학생운동에의 대항책으로 주목받은 것이다. 1928년 문부성의 제국대학학생감회의에서 학생감들은 스포츠 장려에 “학생의 열을 운동방면에 향하게 해 악사상의 주입을 방지”하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다.⁸⁾ 문부대신 쇼다 가즈에(勝田主計)도, “경조부박(輕佻矯激)한 사설(邪說) (…)과 상용(相容)하지 않는” 스포츠가 “사상선도”에 “유력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운도쿄기의 엄숙화, 무도의 보급, 신궁대회와 천황천람을 구상했다. 실제로 이후 제대에서 운동설비 보강에 예산을 따로 편성하기도 했다. 유사과학적인 설명도 뒤따랐다. 문부성 체육과장 기따 도요끼찌(北豊吉)는 “과격사상 같은 비정상 사상은 많이 체력의 허약자, 나아가 정신이상자의 사이에 양성되는 경우가 많다”고 일갈, 스포츠와 좌익대책을 직결했다.⁹⁾ 재계도 이 토론에 반응했다. 예를 들어, 다카시마야 오복점(高島屋呉服店)의 인사담당자는 선호하는 구직자에 대한 설문에서 “스포츠맨”이라고, 선호하지 않는 구직자는 “신경쇠약, 근시, 과격사상의 소유자”라고 답했다. 동대 신문에도, 취직시장에서 스포츠맨의 인기가 느껴졌다. 1930년 경, 제국대학신문에는 “구직할 때는 검도를 합니다”라는 동대생의 농담, 그리고 1935년 경 운동회 클럽 선수의 활발한 취직상황이 보도됐다.¹⁰⁾

좌익학생운동가는 선수중심의 스포츠클럽에 대해 비판의 날을 세웠다. 1928년 6월, 학생운동 단체에서 “스포츠의 대중화”라는 구호가 터져나왔고, 1931년 공산청년연맹 동대지부의 활동가들은 선수중심의 학교스포츠를 비판하며 육대학야구리그에서 벌어들이는 야구부의 입장료수입을 포함한 제대운동회의 예산결산의 투명화를 요구했다.¹¹⁾ 1929년,

7) 入江克己, 『昭和スポーツ史論』.

8) 『1928年の回顧, 文化科學界, 思想善導講座』, 『帝國大學新聞』, 1929년1월1일, p.4.

9) 「熱を運動に向けて思想の惡化を防ぐ」, 『帝國大學新聞』, 1928년5월21일, p.2. 『教育週報』 158, 1928, 5월26일, p. 2. 『文部時報』 280, 1928년7월1일, p.2; 北豊吉, 「体育運動と思想問題」, 『アスレチックス』, 1928년10월, pp.2-5.

10) 高島屋呉服店人事係, 「健康が第一條件」, 『帝國大學新聞』, 1932년6월6일, p.3; 「梶原君は住友へ: 運動部選手の就職」, 『帝國大學新聞』, 1935년3월11일, p.9; 田中貞次, 「悪い伝統をぬげ」, 『帝國大學新聞』, 1930년2월17일, p.8.

11) 岸野雄三編, 『近代体育スポーツ年表』, 東京: 大修館書店, 1973, p.149. 坂上, 『權力裝置』, p.150에서 재인용; 東京帝國大學學生課, 『最近における本學内の左翼學生組織とその運動の概要』, 1932, pp.1-2, p.4; 「やりたいやりたい野球がやりたい」, 日本共産青年同盟東大細胞, 『赤門戰士』 1931년10월24일, p.2; 「學生スポーツの確立へ」, 『赤門戰士』 1932년, 5월30일, p.1.

스포츠 대중화는 고교학생운동가의 의제가 되어, 1월 니가따 고교에서는 선수제도, 학교 대항시합의 폐지, 운동시설의 일반개방이 논의되어 6월 학생대회에서 개혁안이 가결되었다. 또한, 학교대항경기 때 일반학생에게서 경비를 각출하는 응원단이 비판의 표적이 되어, 1928년 5월 제4고를 필두로, 1고등 몇개의 고교가 응원단을 폐지해버렸다.¹²⁾ 결국 중간계급은 엘리트문화를 누리지만,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 엘리트로서의 정체성에 그다지 충성스럽지 않았던 바, 이 논전을 통해, 중간계급 시민의 초월적인 여가상이 도전받고, 스포츠는 통치, 취직, 그리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곧 운동회 지도자가 반응했다. 1930년, 동대야구부 감독 아시다 고헤(蘆田公平)는 학생 운동가의 비판을 받아들이면서도 학생선수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아시다는 운동부 경비집행의 투명화를 주장하는 한편으로 학생선수를 스포츠 대중화의 첨병으로 규정, 학생의 대표로서 “선수의 품위”와 선수에 지도받으며 스포츠를 즐기는 학생상을 제시했다. 다른 논자도 아시다의 선수제도개혁, 스포츠 대중화라는 의제에 동의했다. 이들은 학생과 선수가 모두 아마추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도쿄대생이 프로와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확인받고 싶어했다.¹³⁾ 아시다는 선수의 프로화를 선수의 품위를 직결하는 “대문제”로 이해하고, 육대학리그 입장료수입이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학력이 부족한 선수를 입학시키는 실태를 힐난했다.¹⁴⁾ 어느 논자는 학교당국이 선수를 학교의 “간판”으로 사용하고, 선수를 학생이 아니라 “인기배우”로 만든다고 개탄했다. 철험 이사 고 다까시(郷隆)는 “학생이 스포츠만을 정진한다면 그는 학생선수가 아니라 직업선수”라고 일갈했다.¹⁵⁾ 토론의 기저에는 여가생활에서 돈버는 프로와 거리를 두는, 동대운동회 관계자의 계급의식이 가로놓여있었고, 암묵적으로 전제된 동대생의 화이트칼라 커리어가 “타락”한 배우, 그리고 프로선수와 대비되었다.¹⁶⁾

12) 「スポーツ奨勵に反抗運動」, 『帝國大學新聞』, 1929年1月28日, p.4; 「校友會の改革に近く生徒大會: 選手反對の叫び」, 『帝國大學新聞』, 1929年6月3日, p.6; 「校友會改革派泡吹く勝つ」, 『帝國大學新聞』, 1929年6月17日, p.6. 久富達夫, 「運動競技はよいものである」, 『帝國大學新聞』, 1929年7月1日, p.8. 「四高率先して応援団を廢止す」, 『帝國大學新聞』, 1928年5月14日, p.4. 「運動部の大衆化問題」, 『帝國大學新聞』, 1929年6月17日, p.8.

13) 蘆田公平, 「大局を誤る選手廢止論はいや」, 『帝國大學新聞』, 1929年6月17日, p.8. Howard J Savage, *American College Athletics* (NewYork: The Carnegie Foundation for the Advancement of Teaching, 1929).

14) 蘆田公平, 「嚴格な規則とその運用が肝要」, 『帝國大學新聞』, 1930年6月23日, p.8.

15) 郷隆, 「奥の難問を含む現下の運動會」, 『帝國大學新聞』, 1929年12月2日, p.8.

16) 「スポーツの陷穽」, 『帝國大學新聞』 1930年9月22日, 10月6日.

3. 스포츠정화 좌담회, 1930년 11월6일¹⁷⁾

아까몬 운동회가 토론의 창구로 떠올랐다. 1930년 11월, 운동회 선배들이 제국대학신문사가 주최한 “스포츠정화좌담회”에 모습을 드러냈다. 참가자는 동대교수 스에히로 이즈마로(末広巖太郎), 아즈마 류마로(東竜太郎), 야구부감독 아시아 고헤(蘆田公平), 기자 히사또미 다쓰오(久富達夫), 그리고 운동회 출신의 아마추어단체의 지도자들이었다. 이들은 일본아마추어 스포츠계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면서도, 화이트칼라 커리어가 따로 있었다. 토론의 핵심은 학생선수스포츠에서 아마추어리즘을 회복하느냐였다. 토론자는 금전문제의 배제를 핵심으로 간주하면서도, 학생다움이라는 개념을 아마 개념에 추가했다. 한 논자는 럭비경기가 수업시간에 개최되는 실태를 문제시하며 “학업을 무시하는 행위를 하는 스포츠맨은 아마추어가 아니다”고 일갈했다. 이 언설도, 학원스포츠의 아마로서의 성격을, 스스로의 교육된 화이트칼라로서의 커리어가 전제된 채, 금전관계의 부재와 학생다움에서 발원하는 계급의식에서 출발하는 것이었다. 히사또미는 “스스로 생활의 중심을 경기에 둔 사람도 프로로 간주해야한다”는 말로 이 발언을 정리했다.

아마추어주의에의 집착은, 스포츠 자본주의에 대해 이 논자들이 느꼈던 불안감과 접합한다. 제대운동회도 스포츠에서 돈을 벌었다. 아시다에 의하면, 1930년 와세다와 게이오의 야구부는 이 도쿄육대학야구리그에서 입장료수입으로 10만엔을, 동대 야구부도 2만4천엔을 벌어들였다. 그 해 동대운동회의 총예산액 37178.45엔 중, 야구부의 입장료수입이 2/3였던 것이다.¹⁸⁾ 도쿄시 당국은 1930년 육대학리그측에 야구관람세를 부과하려고 시도하기까지 했다.¹⁹⁾

입장료에 관한 의견은 다양했다. 스에히로는 아마추어 경기도 학교대항시합의 “홍행화”는 자연스러운 일로 이해, 입장료징수를 문제시하지 않았지만, 고 다카시는 스포츠대중화를 위해 입장료 폐지를 주장, 스에히로와 반대극단에 섰다. 다수는 선수 개인과 팀이 직접 입장료를 취하는 것을 부패의 근원으로 인식, 입장료 수입을 팀 운영과 개인의 사치가 아닌 공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시스템을 희망하며, 운동회와 국가가 입장료 행정에 나설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학생사상대책으로 스포츠를 장려하는 문부성의 시책에 비판적이었다. 일례로 스에히로는 스포츠와 건강을 연결짓는 문부관료를 비판하며, “운동꺾기는 운동꺾기 그자체에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논자들은 국가에 더 적극적 역할을 요구했다. 히사또미는 대학 운동부를 위한 국가지원금을, 스에히로

17) 「運動會の惡傾向とその矯正の道を聞く:本社主催スポーツ浄化座談會」, 『帝國大學新聞』, 1930년 11월 20일, pp.8-9.

18) 「會員は減っても支出は膨張:運動會の決算なる」, 『帝國大學新聞』, 1931년 6월 29일, p.7.

19) 「野球を娯樂と見て今度は見物人から徴税」, 『東京朝日新聞』, 1930년 11월 5일, p.7.

는 학원스포츠를 관리하는 문부성의 통제단체를 기대했다.

4. “스포츠 정화”의 실제

<운동회개혁>

좌담회후, 운동회 개혁이 시작됐다. 1930년 11월28일, 아까몬 운동회와 운동회 선수들은 집회에서 “스포츠정화”결의안을 채택하고, 클럽이 아니라 운동회 총무부가 입장료를 정산할 것, 그리고 운동회의 이름으로 입장료가 있는 시합에 참가하지 않을 것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운동회는 은행가를 고용, 클럽 입장료사무를 담당시켰다. 또한, 운동회 내 각부의 경기참가를 인가하는 시합심사위원회를 설치했다.²⁰⁾

이 개혁과 함께, 야구부는 무감독 운영을 결의했다. 아시다가 “야구부의 자주화”를 외치며 감독직을 사임, 육대학리그 이사장이 되자, 야구부는 팀원의 합의에 의해 경기했다. 제대신문은 이 조치를 감독이 독직사건을 일으키는 타대학과 대조를 이루는, “순진한 학생스포츠의 진보”라고 평했다. 유도부도 강도관에서 독립했다. 1930년까지, 강도관은 1882년 설립이래 단증발급, 경기개최, 잡지출판을 통해 일본유도의 문화와 산업의 허브 역할을 담당했다. 동대유도부도 강도관이 인정한 코치에게 배우고, 이들 코치가 심판을 하는 학교대항시합에 참가했다. 1930년, 30년간 동대유도부 코치를 한 사범이 은퇴하자, 동대유도부는 더이상 “프로”인 강도관 주관 시합에 불참하고, 선배단체인 아까몬 유도부의 조력아래 연습과 경기를 행하기로 했다.²¹⁾

<야구통제령>

일본의 스포츠 정화운동이 미국의 경험과 달리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원동력은 아까몬 운동회와 문부성의 긴밀한 관계였다. 존 쉴린 (John Thelin)이 지적하듯이, 미국대학스포츠의 문제를 처음 지적한 카네기 재단은 대학과 조직적 연결고리가 없었고, 학교대항시합의 통제단체인 전국대학체육협회(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는 학업에 기반하지 않는 선수모집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보다는 “대규모 학교대항시합의 재정적 법적 이해를 수호하는 로비단체”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아까몬 운동회는 일본교육체제에서 가지는 특별한 위치와 국가와의 관계를 기반으로 사실상 국가를 움직였다. 1930년대 전

20) 「果然赤門運動會運動場かにも乗り出す」, 『帝國大學新聞』, 1930년12월1일, p.331.

21) 「スポーツ浄化運動追々具体化する」, 『帝國大學新聞』, 1930년12월15일, p.7. 「野球部先輩が団体を組織」, 『帝國大學新聞』, 1931년6월1일, p.7; 東田ひでお, 「學生常道の進むべき道」, 『帝國大學新聞』, 1930년12월15일, p.7.

반 문부대신 하포야마 이찌로(鳩山一郎)도, 1939년 문부성 체육과장 오가사와라 미찌오(小笠原道雄)도 제대운동회 출신이었다. 1929년부터 1932년까지, 아까몬 운동회는 점진적으로 문부성에 영향을 끼쳤다. 문부성과 스포츠정화운동을 연결한 기관은 1929년 문부대신의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체육심의회였다. 1930년 문부대신의 “체육운동의 합리적 진흥 방책에 관한 건”에 답하기 위해, 체육심의회는 17명의 특별위원회를 꾸려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회에 아시다 고헤, 아즈마 류따로, 그리고 오가사와라 미찌오가 들어갔다.²²⁾

개혁안은 입장료행정을 감독하는 관료기구의 정비, 또한 상업화에 거리를 두는 선수자질의 엄격화, 코치에 대한 과대한 보상 및 선수의 진학에 있어 부패의 방지 등, 스포츠 정화좌담회의 의제와 거의 닮아있었다. 체육심의회는 답신은 야구통제임시위원회에 의해 작성된, 1932년 3월의 야구통제령으로 결정됐다. 아까몬 운동회원들처럼, 문부관료도, “아마추어”와 “학생”이라는 정체성을 통해 학생선수상을 규정했다.²³⁾

문부성과 연결되며 스포츠정화운동의 영향력도 대학을 넘어 고교, 전문학교에 미치게 되었다. 문부성의 기본적인 통제기관은 부현단위체육회였다. 소학교부터 대학까지, 학교 대항시합은 부현체육회의 인가를 받아야했고, 또 시합의 주최자에 시합의 예산결산을 문부성에 보고하도록 했다. 프로와 아마의 시합금지도 명문화되었고, 1932년 대학팀이 메이저리그 올스타팀과 시합을 못하는 행정적 근거가 됐다. 시합에 참가하는 선수 자격도 엄격하게 규정됐다. 선수모집에 있어 학비면제와 생활비보조 등의 금전관계가 금지됐고, 중등학교에서 다음해로 진급에 실패한 선수는 학교대항시합이 금지됐다. 편입생, 전학생은 일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출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잠재적인 트레이드의 효과를 없앴다.

통제령의 타협적 성격도 강했다. 이 통제령은 스포츠 자본주의에의 정면도전은 아니었다. 오히려, 이는 통제불가능의 상업화를 방지하는 최후의 안전장치로서, 국가기관을 개입시키는 것이었다. 문부성 체육과장인 야마카와 잣니도 이 통제령이 야구의 금압이 아니라 경기의 수를 통제하는 것이라고 명언했다. 또 통제령은 기존에 행해지는 대교시합의 대부분을 인정했고, 철도회사와 신문사가 새로운 대회를 우후죽순처럼 창설하는 것을 막을 뿐이었다. 그런의미에서, 이 통제령은 스포츠자본주의를 부정하기보다는 대회주최권을 제한하고 게임수를 조절하는 국가와 사회의 타협이었다. 또한 야구통제령은 통제의

22) John R. Thelin, *Games Colleges Play: Scandal and Reform in Intercollegiate Athletics*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4), p.65, pp.60-61; 「スポーツの短期講習に優を貰った鳩山さん」, 『帝國大學新聞』, 1932年1月25日, p.7; 「グラウンドの敷地を砲兵工廠跡に目指す」, 『帝國大學新聞』, 1932年1月25日, p.7; 「小笠原氏祝賀會」, 『帝國大學新聞』, 1939年10月2日, p.11; 『文部省年報』, 1929年、上、p.4; 山川健, 『野球統制の話』, 東京, 1932, p.5.

23) 「問題多い野球の正道を示す: 体育審議會の淨化案」, 『帝國大學新聞』, 1931年10月26日, p.7; 「スポーツ淨化の大綱なる」, 『帝國大學新聞』, 1932年2月8日, p.7. 山川, 『野球統制』, pp.8-9, pp.16-18; 文部大臣鳩山一郎, 「野球の統制並に試行に關する訓令」, 文部省訓令第四号, 1932年、3月28日. 山川, 『野球統制』, pp.187-201.

한계가 명확했다. 육대학리그처럼, 고교, 전문학교, 대학 클럽들은 학교대항시합시 예산결산을 문부성에 보고하도록 했지만, 경기수와 상업후원자에 관해 자치를 유지했다. 또한, 졸업 이후 학생의 커리어도 야구통제령의 통제 범위 바깥이었고, 이는 학생이 프로선수가 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맹점을 의미했다.²⁴⁾

<도쿄육대학야구리그의 개혁>

문부성을 움직이면서, 아까몬 운동회원은 직접 육대학리그의 개혁에 착수했다. 1931년, 신입이사장 아시다는 선수 트레이드의 금지, 전학생의 당년시합출장금지 개혁안을 관철시켰고, 리그 당국이 직접 금전사무를 담당하고 학생선수를 금전문제에서 분리하는 개혁안을 통과시켰다.²⁵⁾²⁶⁾

다음 개혁대상은 육대학리그였다. 1932년 6월, 동대운동회간부는 도쿄소재 대학들을 설득하기 시작, 7월에는 스포츠정화기구로 전일본학생체육연합을 결성했다.²⁷⁾ 이 단체의 첫 회합에서 동대운동회관계자는 육대학리그에서의 단판제도를 제안했다. 1933년 이전 리그전은 한 팀이 다른 다섯팀과 네번씩 경기했지만, 이 제안에서 한팀은 타팀과 한경기만 치루게 되고, 1년간 리그의 총 경기는 60경기에서 15경기로 줄게 된다. 도쿄대 운동회는 가을리그만 3개월이 넘는다며 “학생의 본분”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²⁸⁾ 이 제안은 문부성이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현실화되었다. 오무라 이찌조(大村一藏)에 의하면, 1932년 10월, 문부성측은 도쿄시의 야구관람세를 신설하려는 시도를 막아내기 위해, 리그기간의 단축, 과도한 입장료수입의 제한에 효과적인 개혁안을 자문했다. 동대측은 여기에 “단판제”를 제안했고, 문부성측은 만족했다. 체육과장 야마카와는 1932년 12월 리그관계자를 모아 학업 상 선수는 물론 일반학생을 위해서도 단판제가 필요하다고 육대학체육회장을 설득했다.²⁹⁾ 1933년, 리그당국은 단판제도를 채택, 1934년까지 리그는 단판제

24) 山川、『野球統制』、pp.193-194, p.24.

25) 「六大學リーグ大改革を行ふ：新入選手は一ヵ年間はリーグ戦へ出られぬ」、『東京朝日新聞』, 1931年2月25日, p.3.

26) 「學生スポーツ浄化、帝大一石投ず」、『東京朝日新聞』, May 3rd, 1931, p.7.

27) 「スポーツ浄化に八大學の協力を求む」、『帝國大學新聞』, 1932年6月13日, p.7; 「各大學を總動員し新たに団体結成へ」、『帝國大學新聞』, 1932年6月20日, p.7; 「各大學呼応市場化連盟なる」、『帝國大學新聞』, 1932年6月27日, p.7; 「増加運動大童：全日本學生体育連合愈々正式に結成」、『帝國大學新聞』, 1932年7月4日, p.7.

28) 「リーグ戦の期間三ヶ月は長すぎる」、『帝國大學新聞』, 1932年9月19日, p.7; 「選手の墮落はファンにも罪あり」、『帝國大學新聞』, 1932年9月26日, p.7.

29) 「一シーズン制提唱に早慶帝賛意を表す、他三校は賛否を留保」、『東京朝日新聞』, 1932年12月15日, p.11; 「六大學の答申集まる」、『東京朝日新聞』, 1932年12月18日, p.3. 「六大學野球先輩団二シーズンを支持」、『東京朝日新聞』, 1933年1月24日, p.7; 「リーグ戦二シーズン案文部省一蹴」、『東京朝日新聞』, 1933年1月26日, p.2; 大村一藏, 「何處へ行く、リーグ」、『帝國大學新聞』, 1934年3月23日,

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단판제는 선수의 “학생의 본분”을 지키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고, 여론악화로 2년만에 끝났다. 야구기자 오타 시게루(太田茂)는 시합수가 줄었어도 연습량이 줄지 않았으며, 실전경험부족으로 기술만 퇴보했음을 지적, 예전으로의 복귀를 주장했다. 제국대학신문의 필자도 와세다체육회처럼 입장료수입에 전면적으로 의존하는 클럽은 입장료수입의 감소로 입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문부성은 결국 1935년 입장료수입의 상한을 설정하는 조건으로 육대학리그의 원상복귀를 허락했다. 리그 당국은 “선수의 연습을 한층 유의미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원상복귀를 성명했다. 이 조치는 스포츠정화운동의 성공과 실패 둘다를 의미한다. 입장료수입의 상한과 리그전 기간의 단축이라는 아마 스포츠통제의 원칙은 살아남았다. 각대학은 입장료 수입의 최대 배분액을 6만엔으로 정한 문부성의 규정을 인정하고, 시합을 주말더블헤더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학업을 버리고 긴 시간 연습하는 학생선수의 “특별한 지위”를 승인했으니, 아마추어주의의 핵심을 부정했다. 스포츠정화운동가의 육대학리그 개혁운동은 맹연습하는 선수제도에서 아마추어라는 간판을 지키기 위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다.³⁰⁾

<고전 분리>

스포츠 정화운동가는 각종목의 사제대연맹이 주관하는 고등학교와 전문학교의 전국적인 학교대항대회에서 고교와 전문학교의 토너먼트를 분리하는 개혁에도 손을 댔다. 운동이 본격화한 1933년, 고전분리는 이미 새로운 의제가 아니었다. 육상, 수영, 정구, 조정, 농구, 그리고 탁구에서는 고교와 전문학교가 분리해서 경기하는 반면, 야구, 검도, 유도, 사격, 그리고 배구는 분리되지 않았다. 그중 고전 야구대회는 사제대야구연맹이 주최했지만, 6천엔의 경비는 오사카 마이니찌 신문, 그리고 고시엔구장의 소유자 한큐철도회사가 전액 부담했다. 이 상황에서 아까몬 운동회가 문부성과 고교와의 연결고리를 활용해서 개혁을 추진했다. 1933년 9월, 오무라 이찌조 등 운동회 선배, 야마카와 문부성 체육국장, 그리고 도쿄대 운동회 선수들이 제국대학신문의 좌담회에 모여앉았다. 토론의 출발점

p.4.

30) 太田四洲, 「實際が代弁したばかばかしい野球一季制」, 『帝國大學新聞』 June 5th, 1933年6月5日, p.10; 太田四洲, 「この結果を見よ:馬鹿なる一季制のたたり」, 『帝國大學新聞』, 1934年2月26日, p.10; 大村一藏, 「二季制と配分金問題」, 『帝國大學新聞』, 1935年3月30日, p.8. 小出秀世, 「入場料からみた野球一季制」, 『帝國大學新聞』, 1933年6月12日, p.12; 「東京大學野球リーグ戦2季制愈復活」, 『東京朝日新聞』, 1934年12月20日, p.3; 「早大の問題も解消、リーグ戦二十日開幕:待望の二シーズン制で」, 『東京朝日新聞』, 1935年4月6日, p.11; 「六大學リーグ二季制復活」, 『東京朝日新聞』, 1934年12月19日, p.13; 「東京大學野球リーグ戦二季制愈々復活」, 『東京朝日新聞』, 1934年12月20日, p.3.

은 왜 추가경비가 드는 고전분리를 해야하느냐였다. 야구부 선수는 고전간 기술차가 상당해서 전문학교가 세시즌 연속 우승했다는 점을 환기했다. 오무라는 “고교와 전문학교는 풍격이 다르다. 고교는 기술은 유치하지만 원기로 압도해서, 보면 기분이 좋다”고 덧 붙이고, 고전대회가 시작한 1912년에는 고교수가 적었지만, 1933년에는 32개 학교가 되었으니 분리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학생스포츠는 교육제도의 단층을 넘어 확산되었지만, 고교가 연패하자 위계의 관념이 환기되었던 것이다. 분리의 필요성을 공유한 후, 토론자들은 상업후원을 폐지하고, 참가고교에서 참가비를 각출하는 형태로 고교간의 대회를 고전대회에서 떼어내고, 나아가 동북, 규슈, 교토, 도쿄의 네 제국대학이 주재하는 지역예선을 폐지하고, 모든 팀을 한 곳에 모아 결승까지 전경기를 진행하는 의견을 냈다.³¹⁾

좌담회 후, 동대 운동회는 고교 팀이 적은 유도, 검도, 배구를 제외한 전종목의 고전분리를 결의, 동대야구부관계자가 다른 세 제국대학 운동회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1934년 11월 고교장들은 고교야구대회 상업후원자를 청산하기로 결정했고, 이듬해 3월 동대야구부는 사제대연맹의 해산을 선언했다. 다른 세 제국대학은 4월, 동대와 문부성이 주도하는 고교야구연맹의 탄생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 연맹해산의 결정을 받아들였다. 1935년 5월 전국 고등학교 야구연맹이 탄생했다. 고전대회에 참가한 고교는 모두 이 연맹에 가맹했다.³²⁾

고교야구연맹은 스포츠 정화운동에서 세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로, 참가학교가 50엔씩 참가비를 내고, 문부성이 2000엔을 지원함으로써, 3500엔의 경비가마련되어, 티켓을 1엔씩, 50엔씩 받고 팔아 수천명의 관중을 동원하며 돈을 벌던 신문사와 철도회사가 사라졌다. 둘째, 지역예선이 사라져, 당번교의 예산관리아래 하나의 장소에서 전경기가 치루어져, 예산결산의 처리가 투명해지고 선수에 대한 통제력이 향상되었다. 셋째, 아마추어 스포츠의 주관자로서 동대와 문부성이 가지는 상징적 지위가 강화되었다. 고교야구대회의 우승교는 문부성의 우승기와 동대가 기증한 우승컵을 1년간 보관했다.³³⁾

31) 「高専と高校を區別して行へ」, 『帝國大學新聞』, 1933年8月7日, p.3; 「インターハイ改革のために: 本社主催の座談會」, 『帝國大學新聞』, 1933年9月18日, p.5; 9月25日, p.5; 大村一藏, 「高専野球見るべき改革」, 『帝國大學新聞』, 1934年7月2日, p.10.

32) 「まず高専の分離を決議」, 『帝國大學新聞』, 1933年9月25日, p.9; 「有料競技會には依然參加不可」, 『帝國大學新聞』, 1934年11月19日, p.5; 「四帝大連盟を解散, 本學獨自分で開催」; 「連盟本部京大野球部の疎漏な決算報告」, 『帝國大學新聞』, 1934年2月4日, p.2; 龜井五夫, 「解散した四帝大連盟」, 『帝國大學新聞』, 1935年3月30日, p.8; 「高校野球問題: 一高が中心で高校連盟を結成」 『帝國大學新聞』, 1935年4月8日, p.2; 「高校野球連盟案實現殆ど確實」, 『帝國大學新聞』, 1935年5月27日, p.5.

33) 「顧問に五氏を擁し規則全部決まる」, 『帝國大學新聞』, 1935年6月24日, p.5.

5. 프로야구의 탄생과 끝씨의 자존심

스포츠정화운동가는 학원스포츠의 프로화를 부정하며 자신의 계급정체성을 확인했지만, 프로야구의 탄생을 막지는 못했다. 육대학리그가 배출한 선수층이 두터워지고, 1932년과 34년, 일본팀이 메이저리그 올스타팀에 연패하자, 일본에서도 프로야구를 만들자는 여론이 생겼다. 아마와 프로의 경기를 금지한 야구통제령은 역설적으로 프로야구 탄생을 촉진했다. 메이저리그팀과 경기한 와세다 대학 중견수가 통제령에 의해 아마 지위를 상실, 대학에서 쫓겨났다. 이들 선수는 1935년 이후 출범한 프로야구단에 합류했다.³⁴⁾ 미국 팀에의 일방적 패배와 미국팀과의 시합에 나타난 열광은, 아마추어 선수의 한계와 프로야구의 성공가능성을 가늠하게 했다.³⁵⁾ 곧, 지역기반을 가진 여섯개의 프로구단이 일본 프로야구리그를 조직했다.

프로야구의 탄생을 대해 논객의 입장은 둘로 갈렸다. 맑스주의 사회비평가 도사카 준(戸坂潤)은 프로의 탄생이 스포츠에 대한 “문부성적 관념”, 혹은 “부르주아적 여가관”의 파산으로 이해했다. 반면, 스포츠정화운동의 지지자는 프로와 아마의 분리를 완성하는 의미에서, 프로의 탄생을 긍정적으로 봤다. 요꼬따 기사부(横田喜三郎)는 프로야구가 “학생야구의 인기를 가져가면”, 인기에서 파생된 문제가 사라져 “학생야구의 정화”가 완성되리라 예상했다.³⁶⁾ 그러나, 이들의 기대는 학생 선수들이 1935년이래 대거 프로야구단과 계약하면서 무너졌다. 와세다 2루수 출신 미하라 오사무(三原脩)는 1935년 요미우리과 계약, 일본 최초의 프로 선수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중학교에서 프로로 이어지는 선수수급체제가 고등교육기관에 형성되었다.³⁷⁾

반면, 고교와 제대의 선수는 프로 입단을 하지 않고, 동대운동부는 행정/재정적으로도 독립을 허용받지 않았다. 1931년 2월, 1927년부터 입장료수입으로 운동부 예산상 자립했던 동대야구부는 운동회 일반회계에 재편입되었다. 선수의 사치는 의식적으로 금기시되었다. 1933년 동대야구부는 소위 “정화예산”을 편성, 저렴한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했다. 프로화를 멀리한 동대야구부의 성적은 사립대학의 야구부와 동급이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나빴다. 통산승률은 3할이하고, 1933년에서 패전까지 육대학리그에서 최하위를 면한

34) 「米國無敵軍來朝の刺激つひに職業野球誕生」, 『東京朝日新聞』(夕刊), 1934년12월, 28일, p.4.

35) 橋戸信, 「出現を期待す:難關は組織と經營」, 『帝國大學新聞』, November 19th, 1934년11월19일, p.12.

36) 横田喜三郎, 「職業野球論」, 『帝國大學新聞』, 1935년12월28일, p.12. 橋戸, 「出現を期待す:難關は組織と經營」, p.12.

37) 「職業野球団誕生近し: 三原・山本加入」, 『東京朝日新聞』, 1934년6월29일, p.3. 「早・慶・關に大物が集中:目に立つ職業団入り」, 『東京朝日新聞』, 1937년3월25일, p.8; 「プロ入りは卒業式後にせよ」, 『東京朝日新聞』, 1939년3월11일, p.8.

것은 단지 2회뿐이었다. 연패하는 제대운동회는 동대에서 화제가 되었다. 1941년, 한 운동회 선배는 운동회의 야구부, 럭비부, 조정, 농구까지 “부진이 심각하다”고 평가하고, 사립대학과 동대의 기술적 격차를 인정했다.³⁸⁾

6. 스포츠 정화로서의 스포츠 대중화

스포츠 정화운동은 스포츠 대중화와도 맞물린다. 앞서 살폈듯이, 운동회 선배는 선수를 비선수의 전위대로 규정하고 학생의 대표자로서의 품위회복을 말하며, 비선수의 스포츠 활동을 도와주는 선수의 역할을 말했다. 학생의 목소리는 더 직접적이었다. 1931년, 공학부 학우회, 정우회(丁友會) 학생들은 선수의 시설독점에서 초래되는 비선수의 운동기회 부족을 문제시, 운동회에 예산공개, 회비인하, 그리고 선수의 운동회비 납부를 요구했다.³⁹⁾ 이 요구는 선수의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스포츠정화운동과 상통한다.

곧 운동회가 비선수를 위해 얼마의 예산을 쓰는지 공표되었다. 공학부 학생들에의하면, 1931년, 비회원선수는 4588엔을 운동회비로 납부했지만, 운동회는 431엔만을 비선수행사에 사용했다. 운동회 회원에 야구리그 입장권을 할인해주는 데 379엔이 들었고, 전학테니스대회, 소프트볼대회에 50엔이 들었을 뿐이었다. 또한, 이 항의로 동대의 부족한 스포츠 시설이 현안으로 떠올랐다. 교토제대, 규슈제대가 10000평의 운동장을 운용하는 데 비교해, 2000평의 동대 운동장은 운동회원들에게 좁아보였다. 학생들의 요구에 대해, 운동회 당국은 “아마추어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아마추어 테니스코트”의 건설, 운동장확장, 학내 농구, 배구대회의 개최를 포함해서 비선수행사를 늘리는 계획을 발표했다. 운동회 클럽도 이 노선에 호응했다. 1933년 4월, 조정부는 1학년을 향해 “코치주간”을 실시, 초심자를 가르쳤으며, 비선수의 “아마추어”를 참가자격으로 하는 학내 조정대회를 열었다. 수영부도 “비선수”의 “아마추어”를 위한 학내대회를 열었다.⁴⁰⁾

이 과정에서 “아마추어”는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스포츠 정화좌담회에서 아마추어는 기본적으로 여가와 별이를 분리한 중간계급 선수의 자기규정이었다. 반면, 공학부

38) 「懸案の野球部も一般會計に編入す: 約四千円台膨張を示した運動會の來年度予算」, 『帝國大學新聞』, 1931年2月23日, p.7. 「野球部悩む」, 『帝國大學新聞』, 1933年2月27日, p.7; 宇野庄治, 「帝大の不振を衡く」, 『帝國大學新聞』, 1941年2月3日, p.7.

39) 東龍太郎, 「カレッジスポーツの本質と意義」, 『帝國大學新聞』, 1931年4月13日, p.12; 「運動會の大衆化は徹底していない」, 『帝國大學新聞』, 1931年11月30日, p.7; 「合理化を目指し運動會を大改革」, 『帝國大學新聞』, 1933年2月6日, p.7.

40) 「來年擴張してもまだ狭い運動場」, 『帝國大學新聞』, 1931年11月23日, p.7; 「一高跡に建設の總合的大體育館: 柔劍道場は図書館の傍に」, 『帝國大學新聞』, 1932年12月12日, p.7; 「アマチュアのために全力を注ぐ」, 『帝國大學新聞』, 1931年11月30日, p.7; 「水泳學内大會」, 『帝國大學新聞』, 1933年11月4日, p.13; 東京帝國大學運動會, 『運動會報』 2, 東京, 1935, p.102.

학생과 운동회의 대화에서 아마추어는 기술수준이 선수보다 못하고, 선수들 때문에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빼앗긴 비선수를 의미했고, 이 전환은 스포츠가 특권이 아닌 복지의 항목으로 사회에 전파되는 키는, 스포츠사의 또 하나의 방향을 말해준다.

운동회의 스포츠 대중화는 1932년 이후 본격화되었다. 학내대회예산은 780엔이 되어, 전년 431엔에 비해 증가했다. 운동구 대출서비스도 활발해졌다. 1937년, 야구정구 용구의 대출은 12399건으로, 학생 한명 당 1년에 1.5회정도 꼴이다. 스포츠 시설의 건설도 본격화했다. 1932년 1월, 아까몬 운동회가 운동장 건설계획을 세웠고, 동대운동회장 하야시 하루오(林春雄)는 “대중적인 운동장”을 건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운동회는 수영장, 야구장, 농구배구코트, 유도검도장도 차례로 건설했다. 1934년 운동회는 3천엔을 기부, 농구, 배구코트를 만들었으며, 2만엔을 내어 수영장을 착공했다. 또한, 1937년 동대당국이 1만엔, 운동회가 5천엔을 내어, 농학부에 야구장을 건설했다. 유도장과 총합대운동장도 1938년 착공했다.⁴¹⁾

7. 1940년대 스포츠 정화 의제의 실현과 퇴행

1930년대 말 이후, 일본 스포츠계는 전시체제를 배경으로 스포츠정화운동의 의제를 많은 부분 실현했다. 가장 눈에 띄는 발전은 학생 스포츠 통할기구의 탄생이다. 1941년, 일본의 모든 학교에서 보국단이 결성되자, 학교 스포츠 클럽들은 보국단의 단련부(鍛鍊部)로 편입되었고, 문부성은 단련부를 통할하는 대일본 학도체육진흥회(学徒体育振興会)를 설립, 모든 종목의 학원스포츠를 통어하는 관료통제기구가 탄생했다. 이 단체는 각종 학교의 단련부들을 통할하며 고전대회, 육대학리그 등 각종 학교대항 스포츠대회를 개최권을 넘겨받았다. 고전대회를 인수한 학도체육진흥회는 모든 종목의 고전분리를 완수했고, 일주일간 모든 종목의 선수들을 한 자리에 모아, 각각 고등학교 체육대회, 전문학교 체육대회를 열었다. 국가에 의한 스포츠의 보조도 실현되었다. 체협은 1938년 설립된 후생성으로부터 20개의 각종목별 전국적인 스포츠연맹에 대해 10000엔의 보조금을 받았다. 종목별로 배당된 500엔은 적은 액수지만, 이는 정화좌담회에서 논의된 스포츠 국가보조의 최초의 사례였다. 입장료에 의존하는 대학클럽의 운영방식도 제한받았다. 1939년 경기수

41) 東京帝國大學運動會, 『運動會報』 5, 東京, 1938, p.106; 「グラウンドの敷地を砲兵工廠跡に目指す」, 『帝國大學新聞』, 1932년1월25일, p.7; 「本學運動場の擴張運動」, 『帝國大學新聞』, 1932년12월12일, p.7; 「新學生食堂地階に豪華プール新設: 總工費2万円運動會で寄付」, 『帝國大學新聞』, 1934년5월21일, p.9; 「待望のプール七日から開放」, 『帝國大學新聞』, 1935년9월2일, p.2; 「新プール使用の競技」, 『帝國大學新聞』, 1935년9월9일, p.11; 「本郷に合宿新築: 野球部懸案を具体化」, 『帝國大學新聞』, 1936년12월21일, p.11; 「震災前の面影偲ぶ, 入母屋造りの柔剣道場デビュー」, 『帝國大學新聞』, 1937년4월26일, p.11.

가 25% 줄었고, 입장료 배분 상한선도 추가적으로 30% 깎았다. 전학회 단련부가 되며 회비걱정을 하지 않게 된 동대운동회는 1942년 육대학리그 입장료 배분금을 포기, 입장료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오랜 꿈을 이뤘다.⁴²⁾

이 과정에서, 스포츠의 대중화는 대규모 시설건설이라는 형태로 촉진됐다. 1939년부터 1943년까지, 후생성은 각도부현의 체육관 설립비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했다. 1930년대 초반 도쿄대에서 선수에 소외된 일반 학생의 체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갖가지 체육시설이 생겨났다면, 1930년대 후반, 40년대초반, 역시 선수중심의 스포츠 문화를 시정하기 위해 체력단련시설이 전국적으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1930년대 스포츠정화운동가들의 주장에 의해 학내 시설이 만들어진 데 반해, 30년대 말엽에는 군부와 후생성의 건민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이 과정에서 스포츠의 계급적 성격은 급속하게 퇴색했다. 스포츠담론의 차원에서도 “스포츠를 위한 스포츠”는 전시 건민운동의 흐름 속에서 스포츠가 체력단련의 수단으로 인식되면서 의미를 잃었다. 스포츠정화운동은 대중화를 통해 역설적으로 스포츠문화의 계급적 성격을 희석했다.⁴³⁾

전시기 자원압박으로 구기운동은 일시적으로 중단됐다. 1943년, 문부성은 학도체육실시요강을 발표했고, 학교대항야구시합과 프로야구리그가 중지되었다. 1943년말, 도쿄대 운동회에서는 출정 병사를 위해 수영훈련을 시켰고, 호신부적을 나눠주었다. 전쟁은 스포츠정화의 의제를 진전시키는 한편으로, 스포츠자체에 타격을 줬다. 그러나, 자원압박으로 인한 학교대항시합의 중지는 2년만에 끝났다. 점령당국은 육대학리그, 프로야구를 부활시켰고, 1946년 “야구민주화”의 이름으로 야구통제령을 폐지해버렸다.⁴⁴⁾ 다시 중등학교에서 대학과 프로로 올라가는 선수수급체계가 교육제도 안에 부활했다. 1946년 봄, 도쿄대야구부는 육대학리그에서 2위를 했지만, 이후 성적은 꼴찌로 되돌아왔다. 1942년 육대학야구리그의 입장료수입을 포기했던 도쿄대 운동회는 전후 다시 육대학리그의 입장료를 받아 운동회를 운영했다. 결국, 스포츠 자본주의와의 싸움은 패전과 함께 끝났고, 정화운동은 파생의제인 스포츠 대중화를 통해서만 역사적인 의의를 남기게 되었다.

결론

일본의 패전은 스포츠사에서 또 한번의 전환점이었다. 스포츠의 국가통제는 군국주의

42) 「燦! 六高の四優勝」, 『帝國大學新聞』, 1942年8月10日, p.1. 高岡博之, 「大日本体育課意の成立」, p.215; 「リーグ戦当日賣りは廢止」, 『東京朝日新聞』 1941年9月12日, p.2; 「本學リーグ戦配分金を辭退」, 『帝國大學新聞』, 1942年4月20日, p.5.

43) 厚生省健民局鍛鍊課, 『國民鍛鍊・鍛鍊施設・鍛鍊用具』, 東京, 1943, p.116.

44) 「野球統制令は廢止」, 『東京朝日新聞』, 1946年4月16日, p.2.

적인 것으로 매도되고, 대일본체육회는 다시 국가기관 외부의 체험으로 돌아왔다. 야구통제령은 중간계급 시민들이 국가를 움직여 만들었으나, 도쿄대 야구부 90년사의 저자는 이 통제령을 문부성의 “야구 탄압”의 일환으로 이해했다. 종목별 통제기관은 정화운동의 산물이지만, 전후 이 통제기관들은 관료제의 외부로 빠져나왔다.

아까몬 운동회는 일본 스포츠계에서 중간계급 정체성을 정의한 영향력있는 그룹이었다. 그들의 계급정체성은 스포츠 클럽, 학교대항시합, 그리고 스포츠행정의 개혁을 추동하는 힘이었다. 스포츠정화운동은 스포츠행정의 제도와 스포츠 시설의 건설을 통한 스포츠 대중화라는 의미있는 의제를 파생, 실현했다. 그러나 그들은 중간계급의 불안한 경제적 지위와 여가에 대한 대중적 인기가 맞물린 스포츠의 프로화는 막지 못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일본 중간계급 사회에 무엇을 기여했는가? 동대운동회는 학생들에게 스포츠를 즐길 기회를 주었고, 학교 대항시합을 주최하며 학교제도 안에서 스포츠문화를 확산시켰다. 또한 스포츠 정화 운동을 통해 역설적으로 이들은 아마추어 개념을 탈계급화했고, 전시기에는 건민정책의 흐름을 타고 중간계급 스포츠문화를 계급 장벽을 넘어에 까지 확산시켰다. 동대 운동회 지도자는 계급 정체성을 지키려는 노력에 의해, 역설적으로 중간계급 문화의 대중화, 혹은 대중적 중간계급사회의 형성과정에 일조하게 되었던 것이다. 도쿄대는 여가의 프로화에 저항하는 계급적 아마추어주의의 거점이자, 아마추어리즘이 선수의 계급의식에서 대중화의 구호로 탈바꿈하는 핵심적인 사회공간이었다.

‘듣는 주체’의 창출과 전시 동원

— 전쟁기 (1931-45) 일본의 라디오 청취 지도 —

정 지 희(동경대)

目次

- I. 머리말
- II. 라디오 방송과 청취지도의 출현
- III. 1930년대의 단체청취 실험
- IV. 총력전하의 청취지도: 필청(必聽), 강제청취, 청취자
- V.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전시기 (1931-45) 일본의 라디오 청취지도의 이론과 실시, 그 영향과 한계를 분석함으로써 라디오를 어떻게 들을 것인가를 둘러싼 담론과 실천이 청취자로 대변되는 일반대중과 방송관계자로 대변되는 일본의 정치적·문화적 지도자들 사이에 중요하고도 복잡한 교섭과 대립의 지점을 형성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여기서 청취지도란 넓게는 ‘올바른’ 청취태도와 습관을 가진 청취자를 창출하기 위한 방송관계자, 정부당국, 교육자 등에 의한 청취자의 라디오 수신행위예의 개입을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일본에서 1930년대 이래 진행되었던 일련의 그러한 시도들을 가리킨다. 본고는 청취지도의 이론을 마련하고 단체청취라는 구체적인 실험을 실시했던 태평양 전쟁 발발까지의 시기를 제1기로, 그리고 청취지도의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한 태평양 전쟁 발발 이후의 시기를 제2기로 구분하여 전시일본의 청취지도의 역사적 전개를 규명하고자 한다.

방송 초기 라디오 청취자의 탄생에 관해서는 야마구치 마코토(山口誠)나 미즈코시 신(水越伸)에 의해 연구가 상당히 진전된 데 반해 전시 일본의 방송 청취자에 관해서는 다케야마 아키코(竹山昭子)의 신문잡지 청취자란을 중심으로 한 분석 이외에는 선행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¹⁾ 물론 청취지도의 한 양태이자 구체적인 실례로서의 1930년

1) 山口誠의 라디오 연구는 일관되게 초기 라디오 청취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그 중에서

대의 단체청취 시도에 관한 연구로는 구로다 이사무(黒田勇), 이시카와 아키라(石川明) 등의 분석을 들 수 있으나 이들 연구 또한 단체청취 운동을 넓은 의미에서의 청취지도의 역사와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²⁾ 본고는 방송의 송신자와 수신자의 직접적 접촉에 의해 일어나는 행위인 청취지도를 문제시함으로써 전시 일본의 라디오사 연구가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방송정책이나 방송내용 이외의 영역을 조명하고자 한다.³⁾ 한편, 청취자의 사상, 행동, 일상을 규제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규율적 시선과 이러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예속되지도 않는 ‘듣는 주체’로서의 청취자의 모습을 복원함으로써 라디오 청취 자체를 다만 수동적 수신행위로 보는 단순한 접근이나 일본의 전시 라디오 청취자란 순종적이거나 혹은 맹목적인 방송의 추종자라는 식의 일반적 이미지를 재고하고자 한다. 다음 장에서는 청취지도의 구체적 실례의 분석에 앞서 일단 일본에서의 라디오 방송의 개시와 청취지도의 출현의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겠다.

II. 라디오 방송과 청취지도의 출현

전시 일본에서 라디오는 당시 이용 가능한 가장 선진적인 전자(電子)대중매체였다.⁴⁾ 그리고 그 전자매체적 특성상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수의 청취자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국민통합 내지는 선전(propaganda)의 기관으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이러한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대중매체로서의 방송은 발신자 입장에서 보았을 때 한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했다. 이는 바로 방송의 내용은 통제할 수 있어도 분산되어 있는 다수의 청취자가 라디오를 수신하는 맥락은 쉽게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달리 말해 제도로서의 방송의 범위 밖에서 이루어지는 동시다발적인 수신행위는 방송관계자의 견지에서 보면 일종의 미지의 영역으로, 강력한 매스커뮤니케

도 특히, 山口誠, 「オーディエンスの作法とメディアの三層構造」,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7, 2005, pp.51-66, 「聴く習慣,その条件街頭ラジオとオーディエンスのふるまい」,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3, 2003, pp.144-61, 「放送をつくる第三組織: 松下電気製作所と耳の開発」 『メディア史研究』 20, 2006.5, pp.26-49.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in Umesao Tadao et al. eds.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vol. xiv: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Japan's Competing Modernities*, pp.358-378. 竹山昭子, 『史料が語る太平洋戦争下の放送』, 京都, 世界思想社, 2005, pp.195-212.

2) 黒田勇, 『ラジオ体操の誕生』, 東京, 青弓社, 1999, 石川明, 「社団法人日本放送協会の事業部活動: 大阪中央放送局の団体聴取をめぐる」, 津金澤聰廣編, 『近代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東京: 同文館出版 1996, pp.193-216.

3) 중요한 예외는 黒田, 앞의 책.

4) 일본의 텔레비전 방송의 정식 개시는 1953년의 일이다.

이선 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가진 방송이 소기의 효과를 달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찰하고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상이자 표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⁵⁾ 이러한 방송의 특성은 자연스럽게 방송을 듣는 주체인 청취자의 청취태도와 습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관심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본고에서 주목하는 청취지도 이외에도 청취자 연구·조사의 발전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일본에서 라디오 방송은 1925년 동경방송국에 의해 정식으로 개시되어 1926년 동경방송국, 오사카방송국, 나고야방송국을 통합한 사단법인 일본방송협회(이하NHK)의 결성이후 전국적 방송망을 갖추기 시작했다. 방송초기 NHK의 활동은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과 제작 등, 송신의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 아무래도 청취자들의 청취방식에까지 세세한 관심을 둘 여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 라디오 청취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이유는 초기 라디오 방송관(觀)과도 관련이 있다. 도쿄 방송국 초대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의 방송개시일 방침연설에서도 엿볼 수 있듯, 초기부터 라디오 방송은 오락기관으로서만이 아니라 정보 취득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기회의 균등 및 교육의 사회화라는 교육적 기관으로서의 역할 또한 부여받았다.⁶⁾ 그러나 사실 다이쇼기(大正期, 1912-26)만 하더라도 일반 대중의 라디오관은 새로운 형태의 오락으로서의 가치에 집중되어 있었다. 1926년 당시 방송시간상 보도가 20퍼센트, 오락과 교양의 비율이 각각 40퍼센트로 그 비중이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체신성이 실시한 제1회 『라디오에 관한 조사』에 따르면 청취자가 주로 듣는 프로그램의 상위는 라쿠고(落語), 고단(講談), 나니와부시(浪花節) 등 오락 프로그램군이 접하였다. 청취자 선호프로그램을 백분율로 환산했을 때 교양은 27퍼센트, 보도는 8퍼센트에 지나지 않는 데 반해 위안은 65퍼센트를 접하였다.⁷⁾

그러나 이와 같은 단지 오락 기관으로서의 라디오관은 남자보통선거권 도입 이래의 사회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 그리고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으로 이어지는 전쟁의 격화와 더불어 1930년대부터 교양과 보도의 중요성이 한층 대두되면서 중언을 고하게 된다. NHK는 1931년 4월 6일 방송의 교육적 이용, 특히 사회교육을 주목표로 하는, 교양 중심의 제2방송을 정식으로 개시하고, 1935년 4월 15일부터는 학교방송 또한 전국적으로 실시하였다. 만주사변 이래 정부의 정보선전정책 또한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라디

5) Paddy Scannell, "Introduction: The Relevance of Talk," in P. Scannell, ed., *Broadcast Talk*, Newbury Park, CA: Sage, p.3, John Durham Peters, "The Uncanniness of Mass Communication in Interwar Social Thought," *Journal of Communication* 46-3, Summer 1996, pp.108-113.

6) 後藤新平의 연설 원고는 日本放送協會編, 『日本放送史』,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1965, 上, p.63 참조.

7) 日本放送協會編, 『日本放送史』, pp.124-26. 山口誠, 『英語講座の誕生:メディアと教養が出会う近代日本』, 講談社, 2001, p.26.

오 방송의 중점 이동에 따라 후술하듯 방송관계자들과 각부현의 사회교육담당자 등을 중심으로 과연 청취자들이 라디오를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문제시하기 시작했다.

물론 이전에도 딱히 집중해 듣는 것도 아니면서 하루 종일 라디오를 켜놓는 식의 청취 습관, 혹은 반대로 언제 어떤 프로그램이 방송되는지 몰라 방송을 놓치는 경우에 대한 우려는 종종 있어왔다. 이러한 청취태도의 개선을 용이하게 하도록 라디오 방송중에 방송 예고를 실시한다거나 주요 신문의 라디오판(版)이나 라디오란(欄)에 게재되는 편성표를 미리 확인하도록 독려하거나 하는 등의 방식이 고안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방안들은 후일 한 방송관계자가 회고하듯, 듣는 방식의 훈련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임에 틀림이 없다.⁸⁾ 그러나 1930년대, 특히 다음 장에서 소개하는 단체청취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한 1934년 이후의 방송관계자들의 활동은 방송예비활동, 방송청취, 사후활동을 포함하는 청취의 전과정을 대상으로 청취지도의 기본 이론과 실천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청취지도라는 개념 자체를 일반화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청취자의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고 교정하고자 시도했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의, 청취자들의 청취태도에 관한 산발적인 관심의 표명과는 확실히 구분된다고 하겠다. NHK 총무국 보급부 사업과장 스즈키 겐(鈴木玄)은 후일 1931년부터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까지의 기간을 ‘방송청취지도 시대’라 지칭하고 ‘어떤 방송을 일상생활에 도입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방송을 들어야 하는가를 청취자 자체에게 지도해야만 하는 시기’였다고 정의내린 바 있는데 이는 실로 이 시기의 특징을 단적으로 잘 드러내준다 하겠다.⁹⁾ 또한 이 시기 개발된 청취지도의 이론과 구체적인 지도방식들은 태평양 전쟁기는 물론이거니와 본고에서는 지면의 제약 때문에 다루지 않지만, 전후 라디오 청취지도의 밑그림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기에 다음 장에서는 1930년대를 대표하는 청취지도의 실례로서 단체청취운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III. 1930년대의 단체청취 실험

단체청취 운동은 생활조건을 공유하는 청취자로 하여금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특정한 방송을 지도자의 지도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청취하도록 장려한다는 취지하에 NHK가 교육자, 방송연구자, 각부현(府縣) 사회교육과 등과 연계하여 실시한 방송교육은

8) 春, 『番組企畫: 聴取指導』, 『放送研究』 2-10, 1942.11, p.8. 저자명이 春로만 기재되어 있다. 『放送研究』의 연구 논문이나 특집 기사의 경우 저자 성명이 명기되어 있으나 番組企畫란과 같이 짧은 보고의 경우 저자의 성만 기재하거나 저자명을 생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본고 각주의, 이틀이나 성명이 명기되지 않은 기사들은 이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春는 라디오판, 라디오란과 방송예고 이외에도 잡지 『방송』과 농촌 일부에 배포되었던 『라디오특보』를 넓은 의미에서 듣는 습관의 훈련과 관련된 활동이었다고 소개한다.

9) 鈴木玄, 『放送の政治性強化と普及業務の進路』, 『放送研究』 3-3, 1943.3, p.6.

등이다. 보통 1934년 농촌청년의 단체청취용으로 제작·방송된 『농촌에의 강좌(農村への講座)』 프로그램을 그 시초로 본다. 이는 NHK 오사카 중앙방송국(이하 JOBK) 사회교육과장 니시모토 미토지(西本十三二)가 시가현(滋賀縣) 라디오 상인조합과 시가현 사회교육과의 요청에 따라 농촌불황의 타개와 농촌에의 라디오 보급을 목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¹⁰⁾ 단체청취를 위해 따로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은 『농촌에의 강좌』가 시초이지만, JOBK는 이미 1933년부터 이미 기존 프로그램인 『주산(珠算)강좌』등을 활용하여 도시 청취자를 대상으로 단체청취를 시도한 바 있다. 이를 주도하였던 주지과(周知課) 마지마 테루오(間島輝夫)가 시사하듯 단체청취는 특정의 단기적 목표나 농촌지역 라디오 보급만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가장 효과적인 라디오의 교육적 이용법’을 추구하는 새로운 청취방식의 실험이었다.¹¹⁾

제1회 『농촌에의 강좌(農村への講座)』(총 11강(講), 2주간 방송) 를 위해 JOBK는 시가현 농촌보습학교 40개를 섭외해 미리 라디오 교본을 무료로 배포한 결과 총 2천명 이상이 단체청취에 참여하였다. 『농촌에의 강좌』 방송을 중심으로 한 단체청취 실험은 2년간 총 5회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단체청취활동은 주변 부현(府縣)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1회당 단체청취 참가자수도 2만에서 3만까지 증가했다. 니시모토는 식민지 조선의 대구에서도 한 단체가 제3회 방송을 청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1935년부터 도시 청년단과 청년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주산실습』, 『상도를 말하다』, 『청년의 음악』 등의 방송을 편성하여 단체청취를 시도했고 같은 해 도시와 농촌 청년 모두를 단체청취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청년학교』 프로그램도 방송되었다.¹²⁾ 이후 단체청취는 『교사의 시간』, 『부인의 시간』, 『어린이의 시간』, 『점원의 시간』, 『청년상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단체청취운동은 구로다 이사무(黒田勇)와 이시카와 아키라(石川明)에 의해 각각 라디오가 사회교육에 이용된 실례로서, 라디오 보급과 전시체제하 국가에 의한 ‘국민의 조직화’라는 관점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본고는 청취방식의 훈련 및 청취습관 형성이라는 운동 목표에 주목하고자 한다. 니시모토 미토지는 단체청취운동을 제창하기 이전에 이미 ‘[라디오] 강좌가 과연 널리 그리고 유효하게 이용되고 있는가에 관해 커다란 의문을 갖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1927년 이래 영국, 미국, 스웨덴 등지에서 사회교육 일환으로 실시되었던 단체

10) 프로그램 제작 배경에 관해서는 西本三十二,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上)』, 『放送』 6-2, 1936.2, p. 49 참조.

11) 間島輝夫, 本野亨一, 『都市における団体聴取の發展』, 『放送』 6-8, 1936.8, p. 56.

12) 西本三十二,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下)』, 『放送』 6-4, 1936.4, p. 70. 대구 청취단체 언급에 관해서는 西本三十二,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中)』, 『放送』 6-3, 1936.3, p. 26.

청취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던 차에 시가현으로부터의 요청을 호기로 삼아 단체청취라는 새로운 청취방식을 시험해보고자 했음을 밝힌 바 있다.¹³⁾ 총4회에 걸친 『농촌에의 강좌』를 통한 단체청취 실험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는 일본의 방송사업이 그동안 프로그램 제작에 집중한 데 반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듣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지도는 거의 고려하지 않았다고 평하고 『농촌에의 강좌』가 비록 소소하게나마 이러한 지도를 시도했으니 앞으로도 다양한 단체청취의 방법을 통해서 라디오 이용의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창함으로써 단체청취를 이상적인 청취지도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¹⁴⁾

그렇다면 단체청취의 실험을 통해 운동의 지도자들이 청취자들로 하여금 배우고 익히기를 희망했던 청취방식이란 어떠한 것이었을까? 단체청취운동의 양대 이론가라 할 수 있는 니시모토와 마지마의 언설을 종합해보면 ‘유의미한 강연을 한층 더 유의미하게 청취’할 수 있도록 다수의 참가자가 특정한 목적을 설정해서 빠뜨리고 못 들은 부분을 서로 보완해주며 난해한 점은 함께 연구함으로써 그 강의를 충분히 터득하고, 나아가 상호 그 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연구한 후 이렇게 이해한 내용을 각 개인이 실생활에서 이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를 위해서 청취자들은 특정한 청취습관을 몸에 익혀야 했는데, 방송청취 전 예비학습을 실시하고, 청취중에는 요점을 기입하며, 청취후에는 들은 내용을 복습하고 토론하는 3단계 방식이었다. 이러한 청취습관을 유도하기 위해 NHK는 단계별 청취의 편의를 고려한 라디오 교본을 제작하여 방송 전에 배포하였다. 즉 이 시기 청취지도란 자신의 목적에 맞춰 청취할 프로그램을 선정하고 라디오 교본을 미리 입수한 후 방송 전에 예습을 통해 교본의 내용을 숙지하고,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 도착해 중요사항과 의문점 등을 메모하면서 집중해서 방송을 들은 후, 이를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비교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충분히 방송내용을 이해하고, 그 내용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청취자의 창출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하겠다.¹⁵⁾

이러한 청취방식은 청취자가 근대적 시간관념을 필두로 한 일련의 규율을 내면화하지 않고서는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것이었다. 단체청취운동의 지도자들역시 그 점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니시모토와 마지마 모두 단체청취운동 성공에는 적당한 지도자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며 니시모토는 단체청취를 경험한 학생들이 장래에 각자 지도자가 되어 자신의 생활공간에서 청취지도를 실시할 것을 희망하는 한편 지방 유력자, 청년지도자, 그리고 교육자 등을 중심으로

13)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上)』, p.48.

14)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下)』, p.72.

15)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上)』, p.49, p.50, 間島輝夫, 『団体聴取の組織と其の指導』, 『放送』 7-8, 1937.8, p.27, p.30.

한 잠재적 지도자 개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¹⁶⁾ 즉 단체청취는 통제된 청취환경에서 지도자들의 규범적 가르침에 따라 청취자들이 ‘올바른’ 청취방식을 배우고 익히는 장(場)을 형성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라디오 청취에 수반하는 일련의 규율을 체화하여 중국에는 혼자서도 효과적으로 방송을 듣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청취습관을 타인들에게도 전파할 수 있는 특정한 형태의 ‘듣는 주체’를 만들고자 하는 시도였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단체청취는 방송인, 교육자, 부현(府縣) 사회교육 담당자들에게 종종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던 라디오 청취자의 청취태도 및 습관을 직접 관찰하고 교정할 실질적인 접점과 기회를 제공하였다. NHK는 각 단체청취 지도자들을 통해 청취자의 신상정보, 이해도, 방송에 대한 반응, 사용된 지도방식 등에 관해 수집한 정보의 일부는 잡지 『방송』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청취지도와 관련해서는 3단계 청취방식을 따르는 이외에도 감상문 발표, 청취노트 제출과 첨삭 등의 방법이 활용된 것을 알 수 있다.¹⁷⁾

이러한 견지에서 보면 단체청취는 대중의 사상, 행동, 그리고 일상생활을 규제하여 특정 방향으로 지도·훈육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규율적 시선에 의해 규정된 운동이었다고 하겠다.

물론 이것이 단체청취운동 지도자들이 청취자들로 하여금 다만 엄격한 감시하에 주어진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도록 강요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니시모토와 JOBK는 청취자들이 일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청취에 임할 때만 높은 청취의지와 집중력을 기대할 수 있음을 누누이 지적하였고¹⁸⁾ 청취자들의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생활향상에 대한 갈망에 호소함으로써 이러한 목적의식을 환기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제1회 『농촌예의 강좌』 라디오 교본 제2집 권두언에는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수칙에 따라 공동청취를 실시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효과로 인격의 완성과 공동생활의 향상을 들고 있다. 특히 그 도입초기의 단체청취는 후일 구로다 이사무나 이시카와 아키라가 ‘자주적 상호비판’ 혹은 ‘자율의 존중’이라 칭한, 방송내용에 대한 비판적 청취와 상호토론 등의 자유주의적인 청취지도방식을 일정 정도 포함하는 것이기도 했다.¹⁹⁾ 이러한 요소들은 청취자의 사상과 행동을 규제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시선과 일견 모순되는 듯 보이나, 청취지도가 자기규율을 내재화해 외부 개입 없이도 규범적인 태도와 습관을 유

16)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下)』, p.71, 間島, 『団体聴取の組織と其の指導』, p.27.

17) 예를 들면, 間島輝夫, 本野亨一, 『ラジオ青年講座の聴取状況』, 『放送』 8-12, 1938.12, pp.53-55, 大阪中央放送局周知課, 『大阪市店員の時間利用状況』, 『放送』 8-4, 1938.4, pp.49-56.

18)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上)』, p.49. JOBK의 『昭和九年事業生成績報告』에도 ‘참가자가 일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단체청취의 심리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조건으로 명시되어 있다. 石川, 『社団法人日本放送協會の‘事業部’活動』, p.302.

19) 間島, 『団体聴取の組織と其の指導』, p.30. 黒田, 『ラジオ体操の誕生』, p.166. 石川, 『社団法人日本放送協會の‘事業部’活動』, p.210.

지하는 청취자의 창출을 상정했다는 입장에서 본다면, 청취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여지 자체가 청취자의 사상, 행동, 생활을 둘러싼 규율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단체청취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청취자들에 의한 자주적인 문화운동으로 발전하리라는 1930년대 운동지도자들의 기대는 실현되지 못했다. 비록 소수이나 단체청취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참가자들은 존재하였지만 청취자집단내의 마땅한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 단체청취운동은 담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자발적 지도자의 성장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JOBK는 편의상 정부당국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고자 하였다. 각부현의 학무부장과 사회교육과의 주도하에 라디오 청취지도자의 양성을 담당하는 하부조직을 구성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1935년 오사카 라디오교육연구회의 발족으로 구체화되었고 이 라디오연구회의 조직망은 이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 라디오연구회는 중일전쟁 개시와 더불어 정부당국의 주지선전의 말단조직화하는 경향을 보여, 부인회, 청년단, 상회 등을 대상으로 한 단체청취도 점차 시국인식 심화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²⁰⁾

IV. 총력전하의 청취지도: 필청(必聽), 강제청취, 청취자

앞서 소개한, 1930년대를 ‘청취지도의 시대’라 칭했던 스즈키 겐은 태평양 전쟁 개시부터 종전까지의 시기를 ‘여론지도 시대’라 칭하였다.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맞물려 최신의 전황을 가장 신속하게 알려주는 라디오방송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였고 이러한 변화는 라디오계약자수의 비약적 증가로 이어져 라디오의 정보·선전기관으로서의 중요성은 확대일로에 있었다. 1941년 12월 태평양 전쟁의 발발과 동시에 방송의 새로운 사명은 국책의 철저, 여론의 지도, 그리고 국민의 전의 고양에 집중되었다.²¹⁾ 다만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들이 이렇게 국책 위주의 방송으로부터의 청취자의 이탈을 의식하기라도 한 듯 ‘방송과 대중의 결합’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대중에 관하여』라는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인 마루야마 (테쓰오로 추정)는 다음과 같이 청취자가 방송을 듣는 것 자체의 중요성을 환

20) 예를 들어 제4회 『농촌에의 강좌』의 455개의 참가단체 중 자발적 단체는 41개(참가자수 3,161명)로 집계되었다. 黒田, 『ラジオ体操の誕生』, p.159-60. 라디오교육연구회에 관해서는 같은 책, pp. 160-61, pp.168-69, 間島, 『団体聴取の組織と其の指導』, pp.28-30, 西本 『我が國に於ける団体聴取の展開(中)』, pp. 27-28.

21) 竹山昭子, 『戦争と放送: 資料が語る戦時下情報操作とプロパガンダ』, 東京, 社會思想社, 1999, pp. 10-16.

기시킨다.

방송은 대중과 유기적 결합으로부터 출발한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방송과 청취자를 밀접하게 결합시키는 것이다. 한 명이라도 많은 사람이 방송에 친밀감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선전도 계몽도 지도도 교화도 모두 대다수의 청취자가 라디오 스위치를 켜야지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으로, 듣든 안 듣든 이쪽이 생각하는 대로만 하면 대중은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독선적인 사고방식은 결과적으로 방송을 청취자로부터 유리시킬 뿐이다. 방송과 대중의 결합은 (중략) [방송이] 대중생활의 속으로 자연스럽게 침투하여 있는 그대로 소화 흡수되어야만 성립된다.²²⁾

또 다른 프로그램 기획 담당자 역시 비슷한 논지를 전개하는 한편, ‘방송과 대중의 결합’을 위한 청취지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좋은 방송을 제공하기만 하면 청취자는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식의 사고방식은 (중략) 결국 사물의 일면밖에 보지 못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좋은 시간에 내보낸다 해도 단지 그것만으로는 도저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정말로 그 프로그램을 청취자들이 듣지 않는다면 전혀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런 시간에 이런 프로그램을 내보내면 청취자는 아마도 들어줄 것이라는 추정에 근거해 적당한 방송 시각에 적당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것, 그리고 그런 추정에 이르기까지의 기초 조사연구 등은 이미 상당한 단계에 이르렀고 또한 이러한 추정에 근거하여 실시된 방송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 정도에 머물러도 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들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듣고 있다는 현실에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보 더 전진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와 같이 전국민이 청취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아니 그들로 하여금 반드시 듣게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프로그램이 많아진 때에, 언제, 어떠한 경우에,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들을 것인가라고 하는, 청취자의 듣는 방식의 훈련과 지도는 바로 목하의 급무라고 할 만할 것이다.²³⁾

그렇다면 태평양전쟁시기의 청취자는 어떻게 라디오를 들어야 했을까? 미야모토 요시오(宮本吉夫)가 전쟁개시일 수상관저로부터 방송한 『라디오 앞에 모여 주십시오』는 개전 직후 어떠한 청취방식 및 습관이 장려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당시 정보국의 방송 담당 부서인 제2부 제3과장이었던 미야모토는 국민들로 하여금 다음과 같이 방송을 듣도록 독려했다.

오늘밤부터 국민에게 빨리 알려야 하는 것이 있으면 매시간 시작 무렵에 방송할 것이

22) 丸山, 『番組企畫: ‘大衆’に就いて』, 『放送研究』3-6, 1943.06, p. 14.

23) 春, 『番組企畫: 聴取指導』, p. 8.

므로 모쪼록 매시간의 시작에, 예를 들어 여섯 시라든가 열 시와 같은 정각에는 반드시 라디오 스위치를 켜주십시오.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는 정부의 요청이나 생각을 매일 밤 방송하므로 이 시간도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이에 더해 돌발적인 중요사안이 있으면 그 이외의 시간에도 방송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누군가 주위의 한 사람은 반드시 라디오를 듣고 있다가 미리 통지가 있을 경우에는 라디오 앞에 모여 주십시오. 공장이나 사무소의 라디오도 항상 신경을 써주십시오. 또, 거리, 영화관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정부의 중요한 방송은 반드시 확성기로 방송해주시십시오. (중략) 이렇게 해서 국민이 한 마음이 되어 총진군한다면 (중략) 어떠한 대적(大敵)이라 해도 결단코 두려워 할 것이 없습니다.²⁴⁾

즉, 미야모토는 방송청취와 생활이 거의 분리되지 않을 정도로 청취자체를 생활화하는 것을 개전직후의 이상적인 청취방식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미야모토의 방송이 시사하는 점은 넓은 의미의 청취지도의 대상은 이제 단체청취 참가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으로 확대되었다는 점이라 하겠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일본 정부의 예상보다 장기화됨에 따라 총력전 체제의 지속을 위해서는 전쟁초기 미야모토가 상정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선별적이고 규율화된 청취방식이 요구되었다. 전쟁수행을 위한 증산이 최우선시 되는 한편 물자 및 인력 부족으로 인한 실생활에의 압박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전력(戰力)증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라디오를 듣는 습관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라디오 청취로 인해 필요한 시간이 희생되어 다소라도 전력(戰力)증강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이는 본말전도’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강조되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피하기 위한 새로운 청취습관이 요구되었던 것이다.²⁵⁾ NHK 기획부는 동(同)방송협회가 청취자를 대상으로 발간한 월간 시국잡지 『방송』 1942년 6월호에 『방송 듣는 법(放送の聴き方)』이라는 기사를 실어 청취자들에게 장기전 생활에 적합한 청취방식을 설명했다. 기사의 첫 표제어 “선택해서 들어 주십시오”는 시대가 요구하는 청취방법을 단적으로 드러냈다. 이 기사는 어떤 방송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방송의 제목과 방송 요일 및 시간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일본 국민이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방송은 일요일 이외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방송되는 정부당국의 중요국책에 관한 방송과 매주 화, 목요일의 오후 8시부터 방송되는 육군당국의 군사발표였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프로그램은 매일의 뉴스인데 기사는 같은 내용의 뉴스를 반복해서 듣지 않도록 재방송 시간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청취자의 생활습관에 맞춰 선택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매주 일요일 밤 7시부터 10시

24) 방송원고는 宮本吉夫, 「ラジオの前にお集まり下さい」, 『放送』 2-1, 1942.1, p.9 참조.

25) 中澤道夫, 「放送生活化の意味」, 『放送研究』 3-8, 1943.8, p.7. 필자는 사무국 기획부. 역시 사무국 기획부의 小川和夫 역시 비슷한 논지의 글을 실고 있다. 小川和夫, 「放送生活の限界」, 『放送研究』 3-8, 1943.8, pp.7-10.

사이의 연예와 강연 프로그램이고 네 번째로는 학교방송이나 「농가의 시간」, 「부인의 시간」 등 직역대상의 프로그램을 들고 있다. 또한 방송국에서 방송 사이에 레코드를 트는 동안에는 잘 들리도록 수신기를 조절하고 매일 밤 5시 50분부터 방송되는 당일 밤과 다음날 아침 방송 프로그램 예고를 듣거나 라디오관을 확인할 것, 그리고 비상시 ‘그대로 스위치를 끄지 말고 있으라는 지시가 있지 않는 한, 청취가 끝나면 스위치를 바로 끌 것 등을 요청하였다.²⁶⁾

여기서 의문은 바로 전쟁 말기 청취자들은 과연 방송인들과 정부당국이 제안한 방식대로 라디오를 청취했는가하는 점이다. 1943년 2월호 『방송연구』에는 「청취지도의 제문제」라는 제하에 방송 및 청취지도 담당자들의 논고가 게재되어 있는데 이들의 일반대중의 청취태도와 습관에 대한 언설을 통해 실제 청취상태를 짐작해볼 수 있는 바가 적지 않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논고들은 방송은 청취자들이 듣지 않으면 소용없다는 견지로부터 청취지도의 개선방안을 이야기하면서도 청취지도와 청취태도 형성 및 규제에 관한 방송인들의 능력부족과 자율적으로 청취지도에 따라 올바른 방식으로 라디오를 듣지 않는 청취자들에 대한 절망감의 토로를 기저에 깔고 있어 전쟁 말기 선별적이되 주의 깊은 청취를 고창한 청취지도의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당시 사무국교양부장이었던 니시모토 미토지는 “라디오는 국가의 의지를 전달한다. 따라서 이것[라디오]을 듣는 것은 국민적 행위이다”라고들 한다. 전시하 라디오 방송은 전부 국책적 의의를 갖는 것이지만 「정부의 시간」이나 중요강연을 필두로 전황뉴스, 정부뉴스 등은 국민 필청(必聽)을 요하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민필청이라고는 해도 라디오는 강제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이를 국민의 도덕적 의무감에 호소하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며 필청운동의 실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니시모토는 또한 청취지도의 문제는 일본에 있어서는 여전히 ‘거의 미개척의 영역에 속한다’고 평하고 단체청취의 가장 중요한 조건인 올바른 지도자의 양성은 여전히 요원한 일이기에 ‘단체청취운동의 진전을 기대하는 것은 황하가 맑아지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개탄하였다.²⁷⁾ 사무국 기획부의 미야카와 미쓰오(宮川三雄)는 ‘전쟁이래 방송의 사명이 배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각자가 바빠진 사정이나 방송내용이 전전(戰前)과 비교해 딱딱해질 수밖에 없는 사정상, 청취자는 방송으로부터 멀어져가는 경향이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⁸⁾

국민대중의 실질적인 청취태도와 습관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음에 불안을 느낀 일부 방송인들은 법률에 의한 강제청취라는 극단적인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바로 1930년대 이래 단체청취운동을 지도해왔던 마지마 데루오 역시 그 중 한 사람이었다. 당시 오

26) 日本放送協會企畫部, 「放送の聴き方」, 『放送』 2-6, 1942.6, p. 109-111.

27) 西本十三二, 「聴取指導の基本問題」, 『放送研究』 3-2, 1943.2, pp.5-6, p.14, p.15.

28) 宮川三雄, 「聴取指導の原則」, 『放送研究』 3-2, 1943.2, p.19.

사카국 문예과장이었던 마지마는 ‘국민 한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일상을 규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국민이 자기생활을 반성하고 전쟁목적수행을 위해 이를 규정하는 태도에 철저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라디오에 대한 일상적 관심이 산만한 것’이라 지적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의 타개책으로서 그는 “특정 상황의 국민생활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특정 종목의 청취를 단지 장려하거나 국민의 자발적 행동에 따라 실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차라리 법적규제에 의거에 감행하는 편이 전쟁생활의 라디오의 사명에 적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²⁹⁾

이시카와 아키라는 이러한 마지마의 강제청취 제안에 대해, 1930년대 단체청취 과정에서 자율적 청취자 조직을 주창했던 이전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름을 강조하고 이를 전시중 방송 사업활동의 이념화와 결부시킨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같은 호 『방송연구』에 실린 논고에서 미야카와와 같은 방송인은 마지마가 제안하는 강제청취안에 앞서 필칭이라는 접근 자체에도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야카와는 ‘실사 필칭의 명령이 떨어졌다 해도 각자의 가정까지 찾아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라 지적한다. 그는 국민필칭은 전쟁일주연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 제한해야지 매일이 되면 그 효력이 오히려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민필칭의 시간이라 할 수도 없다면서, ‘이러한 시간은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혼련해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주장한다.³⁰⁾ 여기서 언급해두고 싶은 점은 강제청취라는 방안 자체가 실현가능성이 희박했다는 점과 아무리 방송의 국가적 사명이 강조되었다 해도 이러한 상황 자체만으로는 마지마가 강제청취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데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오히려 본고의 관심은 마지마가 태도를 바꾼 개인적 이유보다는 강제청취라는 사고방식이 청취지도라는 위로부터의 규율적 시선에 일관되게 존재했던, 대중의 사상, 행동, 그리고 일상을 규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드러내는 방식에 있다. 강제청취를 주장하면서도 마지마가 이상으로 내세운 청취자란 방송인이나 정부당국의 개입 없이도 자율적으로 규범적 라디오 청취를 수행하는 개인이었음을 위에서 논한 바 있다. 비록 1930년대의 청취지도가 청취자들로 하여금 방송에 비판적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여지를 다소간 부여했다 해도 청취자들은 결국 그러한 자유를 ‘유의미한 방송을 좀 더 유의미하게 이용’한다는 범주내에서 누릴 것을 요구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전쟁 말기 강제청취의 제창은 청취대중이 방송인들 그리고 정부당국이 바라는 대로 자기규율을 통해 올바른 방식으로 라디오를 듣는 청취 주체로 거듭나기에 실패했을 때, 그들을 규제하고자 하는 위로부터의 욕망이 투박한 방식으로 그 맨얼굴을 드러낸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29) 間島輝夫, 『聴取指導の方向』, 『放送研究』 3-2, 1943.2, p.27, p.29

30) 宮川, 『聴取指導の原則』, p.21.

V. 맺음말

이후 전황은 악화일로로 치달아갔고 전력부족과 일본 주요도시에 대한 연합군의 공습은 방송시간의 삭감과 전파관제에 의한 잦은 주파수 변경, 공습에 의한 빈번한 방송의 중단과 같은 문제들을 초래했다. 이는 정규방송의 송수신 자체에 큰 차질을 가져와 청취지도 자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되었다. 이런 청취조건에서는 규범적인 청취습관을 이미 몸에 익힌 청취자라 해도 방송을 제대로 듣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³¹⁾ 결국 전시기 청취지도의 시도는 그 실행자들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전시기 일본의 라디오 청취자란 부단히 규제하지 않으면 방송인이나 정부당국이 원하는 규범적인 틀에서 빠져나가버리기 일쑤였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결말이 대다수의 청취자들이 라디오를 듣지 않았다거나 방송내용을 무시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송관계자들이 청취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청취지도가 제대로 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개탄하던 전쟁말기에도 일본의 라디오 수신계약자수는 증가하여 사상 최고에 달했다.³²⁾ 즉 청취자들은 방송인이나 정부당국이 정해진 규범적인 방식이 아니라도 그들 나름대로 라디오를 듣고 즐기고 이용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라디오 청취지도의 사례는 기존에 알려진 이미지보다 훨씬 더 복합적인 전시기 일본 라디오 청취자상(像)을 제공한다.

31) 전파관제에 관해서는 竹山, 『史料が語る太平洋戦争下の放送』, pp.88-105 참조.

32) 수신기 보유 가구수는 1944년 처음으로 전체가구수의 50퍼센트를 상회하였다.